

2025 장애통계연보

김현지·이주화·오윤지·김태웅·현지원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김현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통계팀 팀장)

공동연구원 : 이주화 (공주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오윤지 (Universite Paris-Est Creteil 교육관리자)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통계팀 선임연구원)

현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통계팀 연구원)

발간사



Ⅱ 목 차

I. 2025 장애통계연보 체계	1
1. 작성배경	1
2. 작성목표	2
3. 작성방향 및 체계	3
4. 세부작성원칙	5
5. 장애통계연보 체계	6
1) 국내지표	6
2) 국외지표	17
II. 국내통계	24
1. 장애인구	24
1) 장애인구	26
2. 건강 및 보건	57
1) 건강상태	59
2) 건강행태	72
3) 보건의료이용	85
4) 정신건강	107
5) 사망	113
3. 가족	116
1) 가구구성	117
2) 가족형성	122
3) 다문화 가족	127
4. 주거	129
1) 주거	131

2) 주택 환경	141
2) 주택 환경	142
3) 주거복지사업	147
3) 주거복지사업	148
5. 교육	150
1) 교육수준	152
2) 보육	156
3) 유치원	160
4) 특수교육	162
5) 교육기관 편의시설	171
6. 노동과 직업재활	173
1) 경제활동	175
2) 의무고용	187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189
4) 장애인기업	191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196
6) 직업재활	198
7. 재정	208
1) 재정	209
8. 소득과 소비	213
1) 소득	215
2) 소비	218
3) 빈곤	224
9. 문화 및 사회참여	226
1) 문화 및 여가활동	227
2) 사회참여	230
10. 사회보장	238
1) 사회보험	240
2) 공공부조	247
3) 사회서비스	265



11. 인권보호	297
1) 사회적 차별	299
2) 장애인 인권보호	310
3) 학대·폭력 경험	319
4) 성폭력	324
5) 학대피해 현황	333
12. 접근성	339
1) 물리적 접근성	341
2) 정보 접근성	360
3) 사법 접근성	363
13. 재난 및 안전	364
1) 사망 현황	365
2) 장애인 안전시설	366
3) 장애인 보호구역	369
4)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370
III. 국외통계	371
1. OECD 회원국	371
1) 장애인구	373
2) 교육	377
3) 고용	379
4) 재정	383
5) 정신건강	399
2. EU	405
1) 장애인구	407
2) 건강	409
3) 주거	411
4) 교육	414
5) 고용	416
6) 빈곤	422

3. 독일	426
1) 장애인구	428
2) 교육	432
3) 고용	436
4) 재정	443
5) 복지	445
6) 정신건강	447
4. 프랑스	450
1) 장애인구	452
2) 교육	458
3) 고용	460
4) 재정	466
5) 복지	469
6) 정신건강	474
5. 일본	477
1) 장애인구	479
2) 교육	482
3) 고용	488
4) 재정	499
5) 복지	501
6) 정신건강	504
IV. 지표설명	505
1. 국내통계 지표	505
2. 국외통계 지표	520
1) OECD	520
2) EU	523
3) 독일	524
4) 프랑스	530
5) 일본	535



표목차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26
〈표 1-1-2〉 등록장애인 수(2024) -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27
〈표 1-1-3〉 등록장애인 수 - 지역별, 연도별	29
〈표 1-1-4〉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2024) - 생애주기별	31
〈표 1-1-5〉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2024) - 장애유형별	32
〈표 1-1-6〉 신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34
〈표 1-1-7〉 신규 등록장애인 수(2024) - 장애유형별, 지역별	36
〈표 1-1-8〉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37
〈표 1-1-9〉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비율 - 지역별, 연도별	38
〈표 1-1-10〉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39
〈표 1-1-11〉 장애영유아 현황 - 연령별, 연도별	40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	41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42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43
〈표 1-1-13〉 장애영유아 현황(2024) -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정도별	44
〈표 1-1-14〉 장애아동 현황 - 연도별	45
〈표 1-1-15〉 장애아동 현황 - 지역별, 연도별	46
〈표 1-1-16〉 장애아동 현황(2024)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49
〈표 1-1-17〉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연도별	50
〈표 1-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지역별, 연도별	51
〈표 1-1-19〉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2024)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54
〈표 1-1-20〉 장애정도심사 - 연도별	55
〈표 1-1-21〉 장애정도심사(2024) - 장애유형별	56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59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61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62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64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65
〈표 2-1-6〉 만성질환 유병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67
〈표 2-1-7〉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68
〈표 2-1-8〉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70
〈표 2-2-1〉 장애인 흡연상태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72
〈표 2-2-2〉 장애인 하루 평균 흡연량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74
〈표 2-2-3〉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76
〈표 2-2-4〉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78
〈표 2-2-5〉 장애인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80
〈표 2-2-6〉 장애인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82
〈표 2-2-7〉 규칙적 운동 실천률 - 장애인, 비장애인	84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 및 판정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85
〈표 2-3-2〉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 - 검진종류별, 연도별	87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2023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88
〈표 2-3-4〉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 - 검진종류별, 연도별	90
〈표 2-3-5〉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2023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91
〈표 2-3-6〉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소견 현황(2023년)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93
〈표 2-3-7〉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95
〈표 2-3-8〉 장애인 진료비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97
〈표 2-3-9〉 장애인 의료비 수급권자 현황 - 수급자격별, 연도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99



〈표 2-3-10〉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100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연도별	101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102
〈표 2-3-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연도별	103
〈표 2-3-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104
〈표 2-3-1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	105
〈표 2-3-1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106
〈표 2-4-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연도별	107
〈표 2-4-2〉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108
〈표 2-4-3〉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분상태 및 우울증)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109
〈표 2-4-4〉 정신의료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111
〈표 2-4-5〉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 연도별	112
〈표 2-5-1〉 장애인 조사망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113
〈표 2-5-2〉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115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	117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유형별	118
〈표 3-1-3〉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현황(2020) - 지역별	119
〈표 3-1-4〉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2020) - 가구원 수별	120
〈표 3-1-5〉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세대구성(2020) - 세대유형별	121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122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22
〈표 3-2-3〉 결혼 시 연령 - 장애유형별	123
〈표 3-2-4〉 결혼 시 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23
〈표 3-2-5〉 결혼 시 배우자 '장애 있음' 비율 - 장애유형별, 연도별	124
〈표 3-2-6〉 결혼 시 배우자 '장애 있음'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124
〈표 3-2-7〉 자녀 현황 및 자녀 장애 유무 - 장애유형별	125
〈표 3-2-8〉 자녀 현황 및 자녀 장애 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25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126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26
〈표 3-3-1〉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127
〈표 3-3-2〉 장애인 가구원과 결혼이민자·귀화자와의 관계	128
〈표 4-1-1〉 주택소유가구 현황 - 연도별,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131
〈표 4-1-2〉 주택소유자 현황 - 연도별, 연령대별, 지역별	132
〈표 4-1-3〉 주택유형 현황 - 연도별	133
〈표 4-1-4〉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현황 - 연도별	134
〈표 4-1-5〉 사용 방 수 현황 - 연도별	135
〈표 4-1-6〉 무주택 기간 현황 - 연도별	136
〈표 4-1-7〉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연도별	137
〈표 4-1-8〉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연도별	138
〈표 4-1-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연도별	139
〈표 4-1-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40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141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42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143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44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145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46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 연도별	147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연도별	148
〈표 4-3-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149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152
〈표 5-1-2〉 장애인의 교육수준(2023) - 지역별	153
〈표 5-1-3〉 장애인의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154
〈표 5-1-4〉 장애인의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55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156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57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158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159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160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161



〈표 5-4-1〉 특수학교 수 -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162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설립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164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장애영역별, 연도별, 지역별	166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설립별, 연도별, 지역별	167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설립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168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169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취업분야별, 연도별, 졸업유형별	170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유형별,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171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유형별,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계속)	172
〈표 6-1-1〉 경제활동상태(2024)	175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176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2024)	177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2024)	178
〈표 6-1-5〉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2024) - 종사상 지위별	179
〈표 6-1-6〉 취업자의 직업(2024) - 종사상 지위별	180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2024) -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여부별	181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2024)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182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2024)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183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2024)	184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2024)	185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2024)	186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187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연도별	188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189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190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191

〈표 6-4-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193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194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195
〈표 6-5-1〉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196
〈표 6-5-2〉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197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198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장애유형별, 연도별	199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200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201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203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의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204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205
〈표 6-6-8〉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2022) - 지역별	206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207
〈표 7-1-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 연도별	209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 연도별	210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211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세부항목별	212
〈표 8-1-1〉 장애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 장애유형별, 연도별	215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연도별	216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 연도별	217
〈표 8-2-1〉 장애인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 장애유형별, 연도별	218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연도별	219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소비지출액 - 연도별	220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 장애유형별, 연도별	221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	222
〈표 8-3-1〉 장애인구 및 전체인구 중위소득, 빈곤율 - 연도별	224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경상소득) - 연도별	225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비율 - 장애유형별	227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228
〈표 9-1-3〉 생활체육 실행 유형 - 연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229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비율 - 장애유형별, 연도별	230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231
〈표 9-2-3〉 투표 미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232
〈표 9-2-4〉 투표 미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232
〈표 9-2-5〉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 및 고용률 - 연도별	233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직급별	234
〈표 9-2-7〉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시도별	235
〈표 9-2-8〉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236
〈표 9-2-9〉 사회적 고립도(도움 요청 대상) - 연도별	237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240
〈표 10-1-2〉 장애연금 수급현황 - 장애연금 등급별, 연도별	241
〈표 10-1-3〉 장애연금 수급현황(2024) - 장애연금 등급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242
〈표 10-1-4〉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해등급별, 지역별	243
〈표 10-1-5〉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입형태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245
〈표 10-1-6〉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입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246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 현황(전체 수급자 비교) - 연도별, 지역별	247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현황 -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248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249
〈표 10-2-4〉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2023)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250
〈표 10-2-5〉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251
〈표 10-2-6〉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253
〈표 10-2-7〉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254
〈표 10-2-8〉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256
〈표 10-2-9〉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257
〈표 10-2-10〉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59
〈표 10-2-11〉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260
〈표 10-2-12〉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262

〈표 10-2-13〉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263
〈표 10-2-14〉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264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 연도별	265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66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267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계속)	268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령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269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270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급여 이용현황 -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271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별지원급여 이용현황 -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272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현황 - 연도별	273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 연도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274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 연도별	275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 연도별, 지역별	276
〈표 10-3-12〉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근무시간, 월평균보수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277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 연도별	278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79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80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81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82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83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284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285
〈표 10-3-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86
〈표 10-3-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87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288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계속)	289
〈표 10-3-2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규모별, 연도별	290
〈표 10-3-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시도별	291
〈표 10-3-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293
〈표 10-3-2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294
〈표 10-3-28〉 장애인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현황 - 연도별, 지역별	296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299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301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연도별	302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303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연도별	304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305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306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307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연도별	308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309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연도별	310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연도별	311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312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313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연도별	315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각하·기각 사유별	316
〈표 11-2-7〉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연도별, 기관유형별, 권역별	317
〈표 11-2-8〉 정신요양시설 입소 현황 - 입소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318
〈표 11-3-1〉 정서적 학대 경험 - 장애유형별	319
〈표 11-3-2〉 신체적 학대 경험 - 장애유형별	320
〈표 11-3-3〉 경제적 착취 경험 - 장애유형별	321
〈표 11-3-4〉 방임 및 유기 경험 - 장애유형별	322

〈표 11-3-5〉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323
〈표 11-4-1〉 성적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324
〈표 11-4-2〉 성적 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325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326
〈표 11-4-4〉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 연도별	327
〈표 11-4-5〉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 연도별, 피해자 장애유형별, 피해유형별	328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 지역별, 시설유형별	329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연도별	330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연도별	331
〈표 11-4-9〉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 연도별	332
〈표 11-5-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333
〈표 11-5-2〉 장애인학대의심 사례판정 결과 -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334
〈표 11-5-3〉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335
〈표 11-5-4〉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336
〈표 11-5-5〉 장애인학대 유형 - 학대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337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기필요 및 소지여부 - 장애유형별	341
〈표 12-1-2〉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적 - 연도별, 지역별	343
〈표 12-1-3〉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345
〈표 12-1-4〉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지역별	347
〈표 12-1-5〉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348
〈표 12-1-6〉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분류별	349
〈표 12-1-7〉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350
〈표 12-1-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 장애정도별, 연도별, 장애유형별	351
〈표 12-1-9〉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352
〈표 12-1-10〉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3년)	353
〈표 12-1-1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8년)	354
〈표 12-1-1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23년)	355
〈표 12-1-13〉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356
〈표 12-1-14〉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357
〈표 12-1-15〉 저상버스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358
〈표 12-1-16〉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359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수준 현황 - 연도별	360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연도별	361
〈표 12-2-3〉 웹 접근성 현황 - 연도별, 산업분야별	362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363
〈표 13-1-1〉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전체인구 비교) - 연도별, 사망원인별	365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시설유형별	366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367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369
〈표 13-4-1〉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증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연도별	370
〈표 14-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 (2024)	373
〈표 14-1-2〉 OECD 국가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2024)	375
〈표 14-2-1〉 OECD 국가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2024): 16-64세	377
〈표 14-2-2〉 OECD 국가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2024년): 16-29세 이하	378
〈표 14-3-1〉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379
〈표 14-3-2〉 OECD 국가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380
〈표 14-3-3〉 OECD 국가 성별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381
〈표 14-3-4〉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24)	382
〈표 14-4-1〉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383
〈표 14-4-2〉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384
〈표 14-4-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지출 비율	385
〈표 14-4-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0년)	386
〈표 14-4-5〉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1년)	387
〈표 14-4-6〉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2년)	388
〈표 14-4-7〉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3년)	389
〈표 14-4-8〉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4년)	390
〈표 14-4-9〉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5년)	391
〈표 14-4-10〉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6년)	392
〈표 14-4-11〉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7년)	393
〈표 14-4-12〉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8년)	394
〈표 14-4-1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9년)	395
〈표 14-4-1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0년)	396
〈표 14-4-15〉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1년)	397

〈표 14-4-16〉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2년) ..	398
〈표 14-5-1〉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399
〈표 14-5-2〉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공공)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400
〈표 14-5-3〉 OECD 국가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401
〈표 14-5-4〉 주요 OECD 국가 국민 1인당 정신건강 지출	401
〈표 14-5-5〉 OECD 국가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402
〈표 14-5-6〉 OECD 국가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403
〈표 14-5-7〉 OECD 국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404
〈표 15-1-1〉 EU 국가 장애출현율 - 연도별, 국가별	407
〈표 15-1-2〉 EU 국가 장애출현율(2024)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408
〈표 15-2-1〉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 연도별, 국가별	409
〈표 15-2-2〉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2024)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410
〈표 15-3-1〉 EU 국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 - 연도별, 국가별	411
〈표 15-3-2〉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 - 연도별, 국가별	412
〈표 15-3-3〉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지 내 환경 문제 - 연도별	413
〈표 15-4-1〉 EU 국가의 학업중단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414
〈표 15-4-2〉 EU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415
〈표 15-5-1〉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416
〈표 15-5-2〉 EU 국가의 장애인 고용률(2022)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417
〈표 15-5-3〉 EU 국가의 실업률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418
〈표 15-5-4〉 EU 국가의 장애인 실업률(2022)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419
〈표 15-5-5〉 EU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420
〈표 15-5-6〉 EU 국가의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2022)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	421
〈표 15-6-1〉 EU국가 내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422
〈표 15-6-2〉 EU 국가 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장애인의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423
〈표 15-6-3〉 EU 국가 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424
〈표 16-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428
〈표 16-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429



〈표 16-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2023년)	430
〈표 16-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인원별	431
〈표 16-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	432
〈표 16-2-2〉 학교유형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연도별 ·	433
〈표 16-2-3〉 지원 영역별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 (2022/2023 대비 2023/2024)	434
〈표 16-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435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일자리 - 연도별	436
〈표 16-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2023년)	437
〈표 16-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고용률 (2023년)	438
〈표 16-3-4〉 사업장별 고용의무 이행 현황 (2023년)	439
〈표 16-3-5〉 통합청(Integrationsämter) 지출 현황(2019/2020년)	440
〈표 16-3-6〉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연도별)	441
〈표 16-3-7〉 (준)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24년)	441
〈표 16-3-8〉 (준)중증장애인 장기 실업 현황(2024년 평균)	442
〈표 16-4-1〉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2023년)	443
〈표 16-5-1〉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445
〈표 16-5-2〉 장애인 통합지원 항목별 수급자 및 지출액(2023년)	446
〈표 16-6-1〉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수급자 현황(2021년)	447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현황(2022년)	448
〈표 16-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23년)	449
〈표 17-1-1〉 2022년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연령별 성인장애인구 비율	452
〈표 17-1-2〉 2022년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성인장애인구 비율	453
〈표 17-1-3〉 2022년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15세 이상 인구 비율	453
〈표 17-1-4〉 2022년 기능제한에 대한 연령별 성인장애인구 비율	454
〈표 17-1-5〉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고령장애인구 비율	455
〈표 17-1-6〉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인구 특성	455
〈표 17-1-7〉 장애인 시설(서비스) 입소(이용)자 수	456
〈표 17-1-8〉 장애인 시설(서비스) 입소(이용) 고령자	457
〈표 17-2-1〉 2022년 일반가구 거주 장애인 가구 상황 및 교육 수준	458
〈표 17-2-2〉 연도별 구직자 교육수준	459
〈표 17-3-1〉 2023년 유형별 장애인구의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	460

〈표 17-3-2〉 2023년 장애개념에 따른 취업 장애인구의 사회학적 특성	461
〈표 17-3-4〉 2023년 장애 개념에 따른 장애인 급여생활자 직업 특성	462
〈표 17-3-5〉 고용의무 기업체와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현황	462
〈표 17-3-6〉 고용의무 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달성률	463
〈표 17-3-7〉 2023년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의무 직접고용 달성 정도별 비율	463
〈표 17-3-8〉 장애인구의 구직률 - 연도별	464
〈표 17-3-9〉 구직 기간	464
〈표 17-3-10〉 고용의무자격 구직자의 주요 신청 (종사)업종군	465
〈표 17-3-11〉 카테고리별 구직자 수	465
〈표 17-4-1〉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연 지출 현황	466
〈표 17-4-2〉 장애보상수당(PCH), 제3자보상수당(CTP) 수급자 수 변화	467
〈표 17-4-3〉 2022년 전체인구 연령별 PCH 및 CTP 수급자 분포 비율	467
〈표 17-4-4〉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	468
〈표 17-5-1〉 1999년~2022년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전체인구의 빈곤율 지표	469
〈표 17-5-2〉 2021년 인구 특성별 빈곤 정도	469
〈표 17-5-3〉 2022년 심각한 제약 유형에 따른 인구의 월 소득수준	470
〈표 17-5-4〉 2022년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박탈 상황에 대한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비율	471
〈표 17-5-5〉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특성 및 현황	472
〈표 17-5-6〉 고용의무자격 구직자 중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수 추이	473
〈표 17-6-1〉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	474
〈표 17-6-2〉 정신질환시설 치료환자 현황	476
〈표 18-1-1〉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 성별, 장애유형별	479
〈표 18-1-2〉 일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령별	479
〈표 18-1-3〉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480
〈표 18-1-4〉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480
〈표 18-1-5〉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480
〈표 18-1-6〉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장애정도별	480
〈표 18-1-7〉 일본 정신장애인 (외래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481
〈표 18-1-8〉 일본 정신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481
〈표 18-2-1〉 특별지원교육관련 연도별 예산 개요	482
〈표 18-2-2〉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482



〈표 18-2-3〉 특별지원학교의 운영 현황	483
〈표 18-2-4〉 특별지원학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483
〈표 18-2-5〉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484
〈표 18-2-6〉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484
〈표 18-2-7〉 통급(通級) 지도를 받는 학생 수 - 장애유형별	485
〈표 18-2-8〉 통급(通級)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485
〈표 18-2-9〉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486
〈표 18-2-10〉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486
〈표 18-2-11〉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487
〈표 18-3-1〉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488
〈표 18-3-2〉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488
〈표 18-3-3〉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기업규모별	490
〈표 18-3-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산업별	490
〈표 18-3-5〉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제조업별	491
〈표 18-3-6〉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기업규모별	492
〈표 18-3-7〉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492
〈표 18-3-8〉 전년도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493
〈표 18-3-9〉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493
〈표 18-3-10〉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493
〈표 18-3-11〉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494
〈표 18-3-12〉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494
〈표 18-3-13〉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494
〈표 18-3-14〉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494
〈표 18-3-15〉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495
〈표 18-3-16〉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495
〈표 18-3-17〉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496
〈표 18-3-18〉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496
〈표 18-3-19〉 일본 “Hello Work”를 통한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 연도별	497
〈표 18-3-20〉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 장애유형별	497
〈표 18-3-21〉 장애인 해고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498
〈표 18-3-22〉 장애인 해고 수 - 해고 사유별	498
〈표 18-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24~2025년도	499

〈표 18-5-1〉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 -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501
〈표 18-5-2〉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단차의 해소	502
〈표 18-5-3〉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장애인용 화장실	502
〈표 18-5-4〉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502
〈표 18-5-5〉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503
〈표 18-6-1〉 정신과병원의 상황 - 병원수, 병상수	504
〈표 18-6-2〉 정신과 병원의 개황	504



그림목차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5
[그림 2-1-1]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24
[그림 2-1-2]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2024년) - 장애유형별	24
[그림 2-1-3]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2024년) - 지역별	25
[그림 2-1-4] 전체 인구/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연도별	25
[그림 2-2-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2022년) - 만성질환 유형별	57
[그림 2-2-2]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 연도별	57
[그림 2-2-3]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2022년)	58
[그림 2-2-4] 장애인 조사망률 및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연도별	58
[그림 2-3-1] 1인 가구 비율 - 장애유형별(2023년)	116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2020년)	116
[그림 2-4-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129
[그림 2-4-2]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129
[그림 2-4-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30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1년)	130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150
[그림 2-5-2]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2023년)	150
[그림 2-5-3]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2023년)	151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을	151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비교(2024년)	173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173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2024년)	174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2024년)	174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174
[그림 2-7-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208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208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2023년)	213
[그림 2-8-2]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2023년)	213
[그림 2-8-3]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 비용(2023년)	214

[그림 2-8-4] 연도별 빈곤율 - 전체 가구 비교	214
[그림 2-9-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2023년)	226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을 - 연도별	226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 연도별	238
[그림 2-10-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 연도별	238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활동지원사 활동인원 - 연도별	239
[그림 2-10-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연도별	239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297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연도별	297
[그림 2-11-3]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 - 연도별	298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연도별	298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2021년)	339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2023년)	339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2024년)	340
[그림 2-13-1]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2023년) - 전체인구, 장애인구	364
[그림 2-13-2]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364
[그림 3-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24년)	371
[그림 3-1-2] OECD 국가 장애인 교육수준 - 고등교육 비율(16-64세, 2024년)	371
[그림 3-1-3]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24년)	372
[그림 3-1-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2021년)	372
[그림 3-2-1] EU 국가의 장애인 출현율 - 장애정도별(2024년)	405
[그림 3-2-2] EU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18-24세) - 장애유무별(2022년)	405
[그림 3-2-3] EU 국가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연도별	406
[그림 3-2-4] EU 국가의 빈곤 현황 - 장애유무별(2024년)	406
[그림 3-3-1]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연령별	426
[그림 3-3-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2023년)	426
[그림 3-3-3] 독일: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2023년)	427
[그림 3-3-4] 독일: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 연도별	427
[그림 3-4-1] 프랑스: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성인장애인구 비율(2022년)	450
[그림 3-4-2] 프랑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2023년)	450
[그림 3-4-3] 프랑스: 돌봄 지원 유형별 지출 및 수급자 현황	451
[그림 3-4-4] 프랑스: 경제적 박탈 상황 -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비교(2022년)	451
[그림 3-5-1] 일본: 장애수첩 소지자 수 (2021년)	477
[그림 3-5-2] 일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상황 - 장애별, 연도별	477
[그림 3-5-3] 일본: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개요 (2025년)	478

I 2025 장애통계연보 체계

1. 작성배경

- 생애주기별 다양화된 장애인 욕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관련 통계 생산 및 분석 필요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이하 CRPD)의 제31조(통계와 자료수집)에 의하면, ‘적절한 자료수집’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실태 및 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임을 규정
- 그러나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수집된 통계자료(CRPD의 제31조)들은 장애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그리고 통계자료의 내용 및 수준이 장애인복지정책의 평가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United Nations, 2014)
- 각 부처에서 발간된 통계들은 실태조사 및 투입지표들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모니터링 역할로서의 산출 및 성과지표들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현실
 - 최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이 시급함
- 장애인 인권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충족을 고려한 핵심 통계들의 수집이 요구됨
 - 인천전략과 CRPD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장애통계연보 틀을 구축하고, 주요 지표들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2. 작성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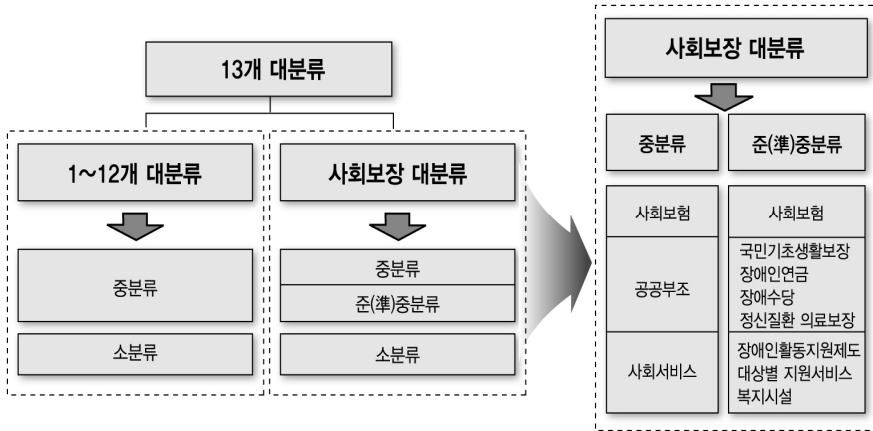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수준과 장애인의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함
 - 장애통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실태분석 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복지 정책의 모니터링과 연동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들을 포함
- 정부부처의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료를 수록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수준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노력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통계자료와의 차별성을 이루도록 함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들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함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독일, 스웨덴, 일본 등 국가들의 장애인 통계 지표들을 수록하여, 국외 국가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가능토록 함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통계 및 지표를 수집 및 생산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
 -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작성방향 및 체계

- 장애통계연보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분류 및 중분류를 도출한 후 소분류(세부지표)를 개발
 - 사회지표 대분류(11개), 보건복지통계연보 대분류(9개), 장애인통계(7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대분류(13개)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분류 구성함
 - 중분류 및 소분류는 각각의 상위분류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각각의 분류들의 수준과 내용은 통일성을 기함
- 2014년 12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아동, 여성,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 조항에 대한 개선 및 관련 정책 강화 등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중분류 체계에 포함
-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행정자료를 수록 및 재가공하여 세부 지표들을 제시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사업, 편의증진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장제도들을 포괄
- 기존에 생산되고 있던 장애인 소득 및 소득불평등 지표 수집
 - 장애인 소득, 빈곤율 등
- 장애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사회조사,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수집
- 수록된 통계 및 지표는 장애인 특성별(장애유형, 성별, 장애정도 등) 접근이 가능하고, 향후 대표성·연속성·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함



- 특히 ‘사회보장’ 대분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중분류(3개)로 체계화 하였으며, 여타 중분류와 다르게 장애인복지서비스들을 명시하는 준(準)중분류를 추가 구성함으로써, 다른 중분류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사회보장영역을 강조함



- 위의 절차를 통해 구축된 장애통계연보 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구, 건강 및 보건, 가족, 주거, 교육, 노동과 직업재활, 재정, 소득과 소비, 문화 및 사회참여, 사회보장, 인권보호, 접근성, 재난 및 안전 등임
 - 중분류는 각 대분류에 1~6개로 구성되며, 대분류에 대한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사업들을 의미
 - 소분류는 각 중분류에 1~10개로 구성되며, 주요 투입 및 산출지표로 구성



[그림 1-1] 장애통계연보 체계

4. 세부작성원칙

- 2025년 장애통계연보의 자료 수록은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함
- 각 세부지표는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제시되도록 함
- 필요시 전국가구와 비교를 가능토록 함
- 각 세부지표에 대한 주요 설명 및 지표명을 제시하여, 통계 의미와 이해도를 높임
- 주요지표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시함



5. 장애통계연보 체계

1) 국내지표

(1) 장애인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구	장애인구	등록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1-1-1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제1조 제2조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표 1-1-2			
			지역별, 연도별	표 1-1-3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	생애주기별	표 1-1-4			표 1-1-5
			장애유형별	표 1-1-5			
		신규 등록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표 1-1-6	표 1-1-7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유형별, 지역별	표 1-1-7			
		전체인구대비 등록장애인구	연도별	표 1-1-8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지역별, 연도별	표 1-1-9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 출현율	연도별	표 1-1-10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영유아 현황	연령별, 연도별	표 1-1-11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지역별, 연도별	표 1-1-12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1-13			
		장애아동 현황	연도별	표 1-1-14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1-15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6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연도별	표 1-1-17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1-18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표 1-1-19	통계청 등록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정도심사	연도별	표 1-1-20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유형별	표 1-1-21			

(2) 건강 및 보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건강 및 보건	건강상태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ADL)	장애유형별	표 2-1-1	장애인실태조사	제25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장애유형별	표 2-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1-4		
		만성질환 유병률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표 2-1-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표 2-1-6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1-7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건강검진통계연보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표 2-1-8		
	건강행태	장애인 흡연상태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2-1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건강검진통계연보	
		장애인 하루 평균 흡연량		표 2-2-2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표 2-2-3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신체일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2-4		
		장애인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신체일수		표 2-2-5		
		장애인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		표 2-2-6		
		규칙적 운동 실천률	연도별, 장애인/비장애인	표 2-2-7		
	보건의료 이용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및 판정 결과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1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건강검진통계연보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	검진종류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2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	검진종류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4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5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소견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6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3-7		
		장애인 진료비 현황		표 2-3-8		
		장애인 의료비 수급권자 현황	수급자격별, 연도별, 지역별	표 2-3-9	복지로 복지통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관련 기관 현황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2-3-10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2-3-1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표 2-3-1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2-3-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표 2-3-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2-3-14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표 2-3-16		
	정신건강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 정도	장애유형별	표 2-4-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2-4-2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기분상태 및 우울증)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4-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정신의료기관 현황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표 2-4-4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보건 예산	연도별, 지역별	표 2-4-5		
	사망	장애인 조사망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5-1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인구동향조사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표 2-5-2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사망원인통계	

(3) 가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가족	가구구성	가구구성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표 3-1-1	장애인실태조사	제6조 제7조 제23조
		가구규모		표 3-1-2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현황	지역별	표 3-1-3	통계청 인구조사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거주 가구 비교	표 3-1-4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세대구성		표 3-1-5		
	가족형성	결혼상태	장애유형별	표 3-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2		
		평균초혼연령	장애유형별	표 3-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4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장애유무	장애유형별	표 3-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6		
		자녀 현황 및 장애자녀 여부	장애유형별	표 3-2-7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8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장애유형별	표 3-2-9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3-2-10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표 3-3-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장애인 가구원과 결혼이민자·귀화자와의 관계	연도별	표 3-3-2		

(4) 주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주거	주거	전체/장애인가구의 주택소유가구 현황	연도별,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표 4-1-1	주택소유통계	제19조
		전체/장애인의 주택소유 현황	연도별, 연령대별, 지역별	표 4-1-2		
		주택유형 현황	연도별	표 4-1-3	주거실태조사	
		주택사용면적 현황		표 4-1-4		
		사용 방 수 현황		표 4-1-5		
		무주택 기간 현황		표 4-1-6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표 4-1-7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표 4-1-8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표 4-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4-1-10		
	주택 환경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장애유형별	표 4-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장애유형별	표 4-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4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장애유형별	표 4-2-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4-2-6		
	주거 복지사업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연도별	표 4-3-1	주거실태조사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1순위		표 4-3-2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연도별	표 4-3-3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5) 교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교육	교육수준	장애인의 교육수준	전체 인구 비교	표 5-1-1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7조 제24조 제26조
			지역별	표 5-1-2		
			장애유형별	표 5-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1-4		
	보육	보육시설 이용 현황	장애유형별	표 5-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2-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지원여부, 지역별	표 5-2-3	보육통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지역별	표 5-2-4		
	유치원	유치원 이용 현황	장애유형별	표 5-3-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5-3-2		
	특수교육	특수학교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 설치별	표 5-4-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특수교육통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 설치별	표 5-4-2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연도별, 시도별, 장애영역별	표 5-4-3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표 5-4-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특수학급 학생 수	연도별, 시도별, 설립별, 학교과정별	표 5-4-5	특수교육통계	
		졸업생 진학현황	연도별, 졸업유형별	표 5-4-6		
		졸업생 취업현황	취업분야별, 연도별, 졸업유형별	표 5-4-7		
	교육기관 편의시설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편의시설 유형별	표 5-5-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6) 노동과 직업재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노동과 직업재활	경제활동	경제활동상태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표 6-1-1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제6조 제26조 제27조
			연도별 비교	표 6-1-2		
		취업자의 인적 구성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전체인구, 장애인구 비교	표 6-1-4		
		취업자의 산업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비교	표 6-1-5		
		취업자의 직업		표 6-1-6		
		임금근로자 특성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규모별, 정규직여부별	표 6-1-7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8		
		실업자의 인적 구성	표 6-1-9			
		실업자의 구직활동	구직기간별, 구직경로별, 구직방법별	표 6-1-10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	희망고용형태별, 희망산업별, 희망직업별, 희망사업체별, 희망 근로시간별, 희망 월 평균소득별	표 6-1-11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표 6-1-12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연도별	표 6-2-2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기업체 장애인 고용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표 6-3-1	기업체장애인 고용실태조사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수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표 6-4-1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표 6-4-4		
	취업 관련 활동 경험	지난 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6-5-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지난 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표 6-5-2		
	직업재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시설유형별, 장애유형별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시설유형별	표 6-6-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일자리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지역별	표 6-6-4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사업별 지원자 수	연도별, 사업별	표 6-6-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기관유형별, 연도별	표 6-6-7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	지역별	표 6-6-8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6-6-9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7) 재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정	재정	GDP 대비 근로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연도별	표 7-1-1	SOCX Statistics	-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비율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 국회 예산	
		장애인 정책국 예산 추이	연도별	표 7-1-3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연도별, 세부항목별	표 7-1-4		

(8) 소득과 소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소득과 소비	소득	장애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8-1-1	장애인실태조사	제28조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연도별	표 8-1-2	가계금융·복지조사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표 8-1-3			
	소비	장애인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8-2-1	가계동향조사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연도별	표 8-2-2	가계금융·복지조사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소비지출액		표 8-2-3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8-2-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표 8-2-5			
	소득과 소비	빈곤	장애인구 및 전체인구 중위소득, 빈곤율	연도별	표 8-3-1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 분위별 가구소득(경상소득)		표 8-3-2		가계금융·복지조사



(9) 문화 및 사회참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문화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	장애유형별	표 9-1-1	장애인실태조사	제29조 제30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1-2		
		생활체육 참여형태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9-1-3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사회참여	장애인 투표 참여 여부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9-2-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표 9-2-2		
		투표 미 참여 이유	장애유형별	표 9-2-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9-2-4		
		장애인 공무원 수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표 9-2-5	인사혁신통계연보	
		장애인 공무원 수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직급별	표 9-2-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연도별, 시도별	표 9-2-7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9-2-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도 (도움 요청 대상)	연도별	표 9-2-9	사회조사	

(10) 사회보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사회 보장	사회보험	가입한 연금 종류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1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연금 수급현황	장애연금 등급별, 연도별	표 10-1-2	국민연금통계연보		
			장애연금 등급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 10-1-3			
		장해급여 수급현황	연도별, 성별, 장해등급별, 연령별	표 10-1-4	산재보험 사업연보,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가입형태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5	장애인실태조사		
		건강보험 가입현황	가입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1-6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사회 보장	공공 부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 현황	(전체 수급자 비교)연도별, 지역별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표 10-2-2	장애인실태조사		
		장애 인 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연도별	표 10-2-3	복지통계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표 10-2-4		
		장애 수당	차상위장애인 연금 수급자 현황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 10-2-5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수급자 현황	
			장애수당 수급자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표 10-2-6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 10-2-7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수급자 현황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표 10-2-8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 10-2-9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수급자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사회 보장	공공 부조	정신 질환 의료 보장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2-1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연도별, 상병별	표 10-2-11	의료급여통계연보, 의료급여 주요통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의료보장 현황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표 10-2-1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연도별	표 10-2-13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의료보장 현황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표 10-2-14	
사회 보장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연도별	표 10-3-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지원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3-2	
			수급자 수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0-3-3	
				연령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0-3-4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표 10-3-5	
			활동지원급여 이용현황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표 10-3-6	
			특별지원급여 이용현황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표 10-3-7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보조 이용 현황	연도별	표 10-3-8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연도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표 10-3-9	
			본인부담금 현황	연도별	표 10-3-10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연도별, 지역별	표 10-3-11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보수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표 10-3-12	
	사회 서비스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연도별	표 10-3-13	제19조 제28조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3-14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표 10-3-15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표 10-3-1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현황	연도별	표 10-3-18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 현황		표 10-3-1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현황		표 10-3-2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표 10-3-21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3-22	
	복지 시설	장애 인 활동 지원 제도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시설유형별, 연도별, 시도별	표 10-3-23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규모별, 연도별	표 10-3-24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현황	시설유형별, 연도별, 시도별	표 10-3-2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10-3-26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10-3-27	국가정신건강현황
			장애인회 보건의료기관 지정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0-3-28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1) 인권보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인권 보호	사회적 차별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장애유형별	표 11-1-1	장애인실태조사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1-2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11-1-3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표 11-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11-1-5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표 11-1-6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표 11-1-7	사회조사 (복지·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노동) 결과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장애유형별, 연도별	표 11-1-9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표 11-1-10		
	장애인 인권 보호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연도별	표 11-2-1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연도별	표 11-2-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연도별, 영역별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영역별, 연도별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기간·각하 사유별	표 11-2-6	국가정신건강현황	
		정신의료기관 입원현황	입원유형별, 연도별, 기관유형별, 권역별	표 11-2-7		
		정신요양시설 입소 현황	입소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표 11-2-8	장애인실태조사	
	학대폭력 경험	정서적 학대 경험	장애유형별	표 11-3-1		
		신체적 학대 경험		표 11-3-2		
		경제적 착취 경험		표 11-3-3		
		방임 및 유기 경험		표 11-3-4		
	가정 폭력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시도별	표 11-3-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폭력	성적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장애유형별	표 11-4-1	장애인실태조사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표 11-4-2		
		성폭력 상담소 수	시도별	표 11-4-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연도별	표 11-4-4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 실적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연도별, 피해자 장애유형별, 피해유형별	표 11-4-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지역별, 시설유형별	표 11-4-6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연도별	표 11-4-7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실적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표 11-4-8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표 11-4-9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학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표 11-5-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장애인학대의심 사례판정 결과		표 11-5-2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1-5-3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표 11-5-4		
		장애인학대 유형	학대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표 11-5-5		

(12) 접근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장애인보조기기 필요 및 소지 여부	보조기구 종류별, 장애유형별	표 12-1-1	장애인실태조사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	연도별, 지역별	표 12-1-2	보건복지통계연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현황	연도별, 품목별	표 12-1-3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현황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2-1-4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현황	연도별, 품목별	표 12-1-5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	연도별, 분류별	표 12-1-6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현황	연도별, 품목별	표 12-1-7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자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장애정도별,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2-1-8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연도별	표 12-1-9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2-1-10 표 12-1-11 표 12-1-12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설치 현황	지역별,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표 12-1-13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교통수단별	표 12-1-14	교통약자이용편의시설 태조사	
		저상버스 도입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2-1-15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연도별, 지역별	표 12-1-16		
	정보 접근성	장애인 디지털정보격차지수 현황	연도별	표 12-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표 12-2-2		
		웹 접근성 현황	연도별, 산업분야별	표 12-2-3	웹 접근성 실태조사	
	사법 접근성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연도별	표 12-3-1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13) 재난 및 안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재난 및 안전	비의도적 사망사고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전체인구 비교)	연도별, 사망원인별	표 13-1-1	사망원인통계 결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제10조 제11조 제14조
	장애인 안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연도별, 시설유형별	표 13-2-1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표 13-2-2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현황	연도별, 시도별	표 13-3-1	행정안전통계연보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표 13-4-1	경찰통계연보	

2) 국외지표

(1) OECD 회원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OECD 회원국	장애인구	장애인 출현율	국가별, 연령별, 성별	표 14-1-1	Eurostat, EU-SILC, 국가별 통계	-	
			국가별, 연령별	표 14-1-2			
	교육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국가별, 학력별	표 14-2-1	Eurostat, EU-SILC, 장애인실태조사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 16-29세 이하	국가별, 학력별	표 14-2-2	Eurostat, EU-SILC		
	고용	장애인 고용률	국가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국가별, 근로형태별, 장애여부	표 14-3-2			
			국가별, 성별, 근로형태별	표 14-3-3			
		장애인 실업률	국가별, 장애여부, 성별	표 14-3-4	Eurostat, 「Unemployment rates by level of disability」,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재정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국가별, 연도별	표 14-4-1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표 14-4-2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지출 비율		표 14-4-3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	국가별,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4-4-4			
				표 14-4-5			
				표 14-4-6			
				표 14-4-7			
				표 14-4-8			
				표 14-4-9			
				표 14-4-10			
				표 14-4-11			
				표 14-4-12			
				표 14-4-13			
표 14-4-14							
표 14-4-15							
표 14-4-16							
정신건강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국가별, 연도별	표 14-5-1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인구 10만 명당 (공공)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국가별	표 14-5-2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국가별, 의료공급기관별	표 14-5-3				
	국민 1인당 정신건강 지출	국가별	표 14-5-4	Mental Health Atlas, WHO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국가별, 연도별, 성별	표 14-5-5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국가별, 연도별, 성별	표 14-5-6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국가별, 연도별	표 14-5-7				



(2) EU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EU	장애인구	장애인 출현율	국가별, 연도별	표 15-1-1	Eurostat, EU-SILC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표 15-1-2		
	건강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국가별, 연도별	표 15-2-1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표 15-2-2		
	주거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	연도별, 국가별	표 15-3-1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		표 15-3-2		
		장애인의 주거지 내 환경 문제	연도별	표 15-3-3		
	교육	장애인의 학업중단율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4-1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		표 15-4-2		
	고용	장애인의 고용률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5-1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5-5-2		
		장애인의 실업률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5-3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5-5-4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5-5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표 15-5-6		
	빈곤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표 15-6-1	Eurostat, EU-SILC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 위험에 처한 장애인의 비율		표 15-6-2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표 15-6-3		

(3) 독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독일	장애인구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6-1-1	중증장애인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6-1-2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표 16-1-3		
			연도별, 장애원인별	표 16-1-4		
	교육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 학생)의 통합교육비율	연도별	표 16-2-1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	
		학교유형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 학생 현황	연도별, 학교유형별	표 16-2-2		
		지원 영역별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	연도별, 학교유형별	표 16-2-3		
		특수학교 현황	연도별	표 16-2-4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일자리	연도별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성별, 연령별, 대상별, 산업부문별	표 16-3-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민간, 공공부문별	표 16-3-3		
		사업장별 고용의무 이행 현황	민간, 공공부문별	표 16-3-4		
		통합청 지출 현황	연도별, 지출항목별	표 16-3-5	BIH 연례보고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	연도별	표 16-3-6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준)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성별, 연령별, 국적별	표 16-3-7		
		(준)중증장애인 장기 실업 현황	연도별, 실업지속기간별	표 16-3-8		
	재정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연도별, 급여유형별	표 16-4-1	재활정보	
	복지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표 16-5-1	장애인 통합지원	
		장애인 통합지원 항목별 수급자 및 지출액	항목별	표 16-5-2		
	정신건강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수급자 현황	성별, 연령별, 장소별	표 16-6-1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통계	병원 기본데이터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현황	병원유형별, 연도별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	환자 유형별, 병원유형별	표 16-6-3		



(4) 프랑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프랑스	장애인구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연령별 성인장애인구 비율	연령별, 장애기준 유형별	표 17-1-1 표 17-1-2	통계로 보는 장애	-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15세 이상 인구 비율	-	표 17-1-3			
		기능제한에 대한 연령별 성인장애인구 비율	연령별, 기능제한 내용별	표 17-1-4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고령장애인구 비율	연령별, 장애기준 유형별	표 17-1-5			
		65세 이상 고령장애인구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표 17-1-6			
		장애인 시설(서비스) 입소(이용)자 수	시설유형별	표 17-1-7			
		장애인 시설(서비스) 입소(이용) 고령자	연령별, 시설유형별	표 17-1-8			
		교육	일반가구 거주 장애인의 가구 상황 및 교육수준	장애인구/전체인구, 혼인여부, 자녀여부, 가구구성, 거주상황, 교육수준			표 17-2-1
	연도별 구직자 교육 수준		장애인구/전체인구, 연도별, 교육수준별	표 17-2-2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고용	유형별 장애인의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	장애의미별, 성별	표 17-3-1	통계로 보는 장애		
		장애개념에 따른 취업 장애인구의 사회학적 특성	장애의미별, 성별, 연령, 가족사항, 교육수준, 직업분류	표 17-3-3			
		장애개념에 따른 취업 장애인 급여생활자 직업 특성	장애의미별, 기관유형, 계약유형, 노동시간	표 17-3-4			
		고용의무 기업체와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현황	연도별	표 17-3-5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고용의무 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달성률	연도별	표 17-3-6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의무 직접고용 달성 정도별 비율	기업규모, 기업분야	표 17-3-7			
		장애인구의 구직률	연도별	표 17-3-8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구직 기간	연도별	표 17-3-9			
		고용의무자격 구직자의 주요 신청 (총사)업종군	연도별	표 17-3-10			
		카테고리별 구직자 수	연도별	표 17-3-11			
	재정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연 지출 현황	연도별, 돌봄 지원 유형별	표 17-4-1	사회보장정책 평가보고서		
		장해보상수당, 제3자보상수당 수급자 수 변화	연도별	표 17-4-2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 보고서		
		전체인구 연령별 PCH 및 ACTP 수급자 분포 비율	연령별	표 17-4-3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수당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	출처	CRPD
		장애보상수당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	연도별	표 17-4-4	자립에 대한 지원 통계	
	복지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전체인구의 빈곤율 지표	연도별	표 17-5-1	삶, 소득수준	
		인구 특성별 빈곤 정도	인구 특성별	표 17-5-2	사회기초수당조사	
		심각한 제약 유형에 따른 인구의 월 소득수준	제약 유형별	표 17-5-3	삶, 소득수준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박탈 상황에 대한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비율	장애인구/전체인구	표 17-5-4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특성 및 현황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가족상황, 수당수급, AAH보충수당	표 17-5-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수당	
		고용의무자격 구직자 중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수 추이	연도별	표 17-5-5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정신건강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	연도별, 시설유형별	표 17-6-1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정신질환시설 치료환자 현황	연도별, 치료 유형별	표 17-6-2		



(5) 일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1	출처	CRPD
일본	장애인구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성별, 장애유형별	표 18-1-1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
		일본 장애인 수	장애유형별, 연령별	표 18-1-2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환자조사	
		일본 신체장애인(재택환자) 수	연도별, 연령별	표 18-1-3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1-4		
		일본 지적장애인(재택환자) 수	연도별, 연령별	표 18-1-5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정도별	표 18-1-6		
		일본 정신장애인(외래환자) 수	연도별, 연령별	표 18-1-7	환자조사	
		일본 정신장애인 수	성별, 연령별	표 18-1-8		
	교육	특별지원교육관련 예산 개요	항목별, 연도별	표 18-2-1	특별지원교육자료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학교유형별	표 18-2-2		
		특별지원학교 운영 현황	학교유형별, 장애유형별	표 18-2-3		
		특별지원학교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2-4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교원유형별	표 18-2-5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연도별	표 18-2-6		
		통급 지도를 받는 학생 수	학교별, 장애유형별	표 18-2-7		
		통급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2-8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국립, 공립, 사립, 장애유형별	표 18-2-9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국립, 공립, 사립, 장애유형별	표 18-2-10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표 18-2-11		
	고용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주요지표별	표 18-3-1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연도별	표 18-3-2		
			기업규모별	표 18-3-3		
			산업별	표 18-3-4		
			제조업별	표 18-3-5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기업규모별	표 18-3-6		
		일본 특례회사 현황	기업수, 근로자 수, 장애인 수	표 18-3-7		
		전년도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기관별, 주요지표별	표 18-3-8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9		
			장애유형별	표 18-3-10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11		
			장애유형별	표 18-3-12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13		
			장애유형별	표 18-3-1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변수	통계표-1	출처	CRPD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15		
			장애유형별	표 18-3-16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주요지표별	표 18-3-17		
			장애유형별	표 18-3-18		
		"Hello Work"를 통한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연도별	표 18-3-19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장애유형별	표 18-3-20		
		장애인 해고 수	연도별, 장애유형별	표 18-3-21		
			해고사유별	표 18-3-22		
	재정	장애인시책 관계 예산 개요	연도별	표 18-4-1	장애인백서	
	복지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호수	연도별,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표 18-5-1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단차의 해소	표 18-5-2	대중교통이용 등 이동 원활화실적보고서	
			장애인용 화장실	표 18-5-3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연도별, 교통수단별	표 18-5-4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연도별, 설치유형별	표 18-5-5	장애인백서	
	정신건강	정신과병원의 상황	병원수, 병상수, 병동수, 휴상중병동수	표 18-6-1	정신보건복지자료	
		정신과 병원의 개황	병원수, 병동수, 병상수, 병원유형별	표 1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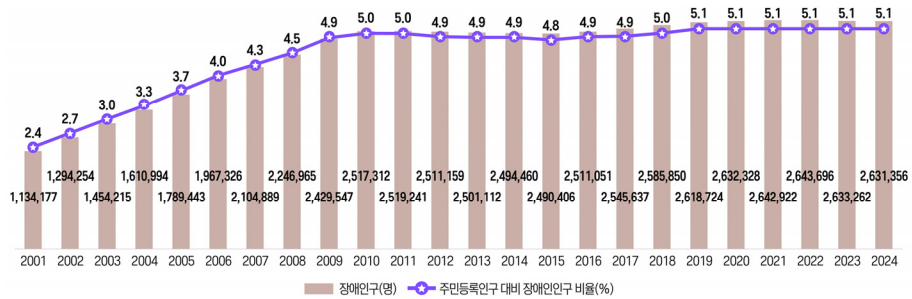


Ⅱ 국내통계

1. 장애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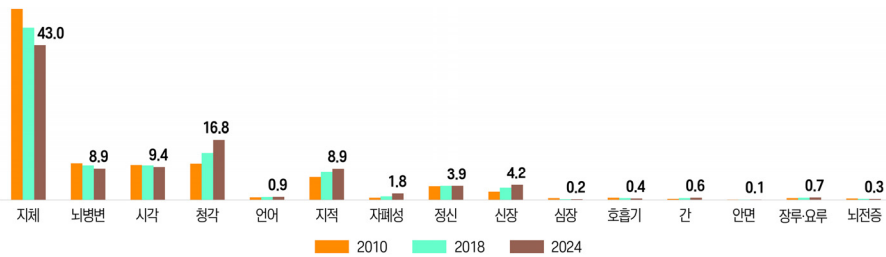
[그림 2-1-1]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 - 연도별



[그림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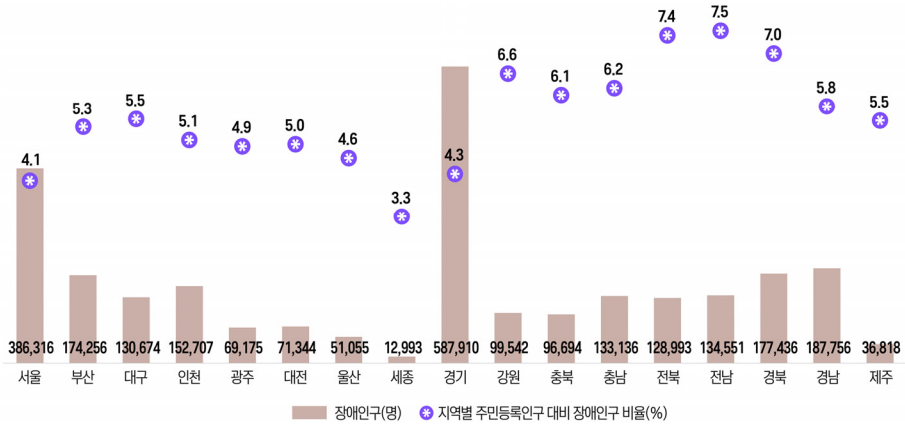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2024년) - 장애유형별



-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으로, 전체 인구(51,217,221명) 대비 5.1%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016년부터 증가추세였으나 2023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3.0%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 16.8%, 시각장애 9.4%, 뇌병변장애 8.9%, 지적장애 8.9% 순임
 ※※ 장애유형 확대 : 5개 유형 → 10개 유형(2000.1.) → 15개 유형(20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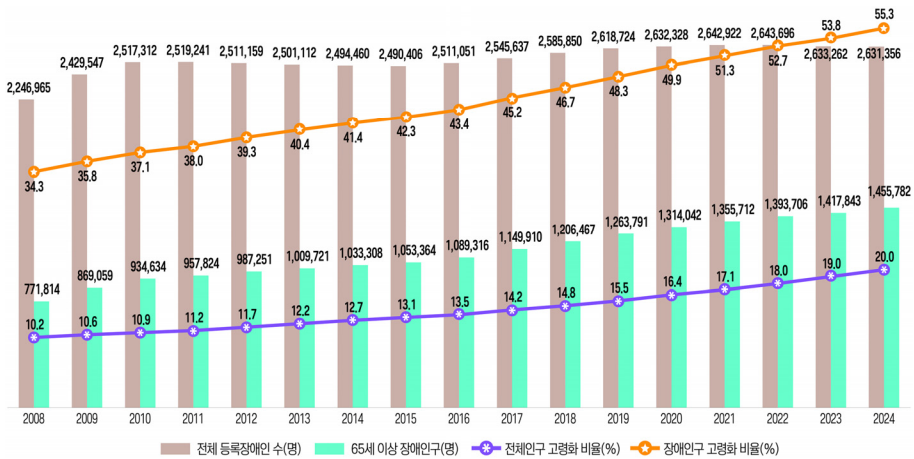
[그림 2-1-3]

등록장애인 수 및 장애인구 비율(2024년) - 지역별



[그림 2-1-4]

전체 인구/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연도별



- 2024년 기준 지역별 등록장애인을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이 각각 587,910명, 386,316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별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은 '전남'이 7.5%로 가장 높고, '전북' 7.4%, '경북' 7.0% 등의 순임
- 2024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2,631,356명)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 수는 1,455,782명(55.3%)으로 고령화 수준은 2021년 50%를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1) 장애인구

(1) 등록장애인

〈표 1-1-1〉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2001	1,134,177	682,325	64,950	115,911	105,711	94,951	2,516	32,581	28,118	7,114	-	-	-	-	-	-
2002	1,294,254	754,651	91,998	135,704	123,823	103,640	4,014	39,494	32,094	8,836	-	-	-	-	-	-
2003	1,454,215	813,916	117,514	152,857	126,488	12,837	112,043	5,717	46,883	34,884	10,409	7,039	3,108	673	6,585	3,262
2004	1,610,994	883,296	142,804	170,107	141,908	13,474	119,207	7,740	54,333	38,175	11,634	9,768	4,072	1,114	8,182	5,180
2005	1,789,443	965,014	168,585	189,933	160,565	15,022	127,881	9,518	63,642	41,823	12,807	11,728	5,160	1,490	9,575	6,700
2006	1,967,326	1,049,396	195,253	196,507	182,361	22,794	137,596	10,926	75,058	44,571	13,739	13,035	5,875	1,863	10,461	7,891
2007	2,104,889	1,114,094	214,751	216,881	203,324	14,882	142,589	11,874	81,961	47,509	14,352	14,289	6,329	2,149	11,184	8,721
2008	2,246,965	1,191,013	232,389	228,126	223,102	15,458	146,898	12,954	86,624	50,474	14,732	14,984	6,968	2,337	11,740	9,166
2009	2,429,547	1,293,331	251,818	241,237	245,801	16,249	154,953	13,933	94,776	54,030	15,127	15,860	7,730	2,505	12,437	9,760
2010	2,517,312	1,337,722	261,746	249,259	260,403	17,207	161,249	14,888	95,821	57,142	12,864	15,551	7,920	2,696	13,072	9,772
2011	2,519,241	1,333,429	260,718	251,258	261,067	17,463	167,479	15,857	94,739	60,110	9,542	14,671	8,145	2,715	13,098	8,950
2012	2,511,159	1,322,131	257,797	252,564	258,589	17,743	173,257	16,906	94,638	63,434	7,744	13,879	8,588	2,709	13,374	7,806
2013	2,501,112	1,309,285	253,493	253,095	255,399	17,830	178,866	18,133	95,675	66,551	6,928	13,150	9,194	2,696	13,546	7,271
2014	2,494,460	1,295,608	251,543	252,825	252,779	18,275	184,355	19,524	96,963	70,434	6,401	12,445	9,668	2,689	13,867	7,084
2015	2,490,406	1,281,497	250,862	252,874	250,334	18,813	189,752	21,103	98,643	74,468	5,833	12,033	10,324	2,685	14,116	7,069
2016	2,511,051	1,267,174	250,456	252,794	271,843	19,409	195,283	22,853	100,069	78,750	5,507	11,831	11,042	2,680	14,404	6,956
2017	2,545,637	1,254,130	252,819	252,632	302,003	20,321	200,903	24,698	101,175	83,562	5,399	11,807	11,843	2,692	14,718	6,935
2018	2,585,850	1,238,521	253,076	252,953	342,580	20,744	206,916	26,703	102,140	87,892	5,303	11,761	12,524	2,689	15,027	7,021
2019	2,618,724	1,223,088	252,112	253,039	377,068	21,482	212,930	28,678	102,974	92,399	5,264	11,520	13,154	2,672	15,290	7,054
2020	2,632,328	1,207,197	250,130	252,275	395,707	22,380	217,084	30,802	103,052	97,496	5,226	11,530	13,806	2,676	15,424	7,093
2021	2,642,922	1,191,036	247,636	251,489	411,528	23,034	221,500	33,650	104,152	102,045	5,151	11,484	14,427	2,710	16,003	7,077
2022	2,643,696	1,173,652	242,939	250,064	423,589	23,242	225,457	37,596	104,175	105,195	5,030	11,257	15,022	2,719	16,691	7,068
2023	2,633,262	1,151,503	237,562	247,821	431,869	22,685	229,511	42,732	103,907	107,636	4,854	10,765	15,609	2,747	17,074	6,987
2024	2,631,356	1,132,644	234,703	246,182	442,034	22,389	233,322	47,350	103,215	111,084	4,781	10,512	16,098	2,756	17,397	6,889
	100.0	43.0	8.9	9.4	16.8	0.9	8.9	1.8	3.9	4.2	0.2	0.4	0.6	0.1	0.7	0.3

주: 각년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으로 2023년에 비해 1,906명 감소하였음
-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3.0%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 16.8%, 시각장애 9.4%, 뇌병변장애 8.9%, 지적장애 8.9% 순으로 많음

※※ 장애유형 변천사

- 1982년 2월: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자(「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2조)
- 1990년 12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으로 변경(「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 2000년 1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1단계 확대: 5유형 → 10유형)
- 2003년 7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2단계 확대: 10유형 → 15개 유형)
- ※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변경(2007년 10월 시행), 간질장애인 → 뇌전증장애인(2014년 6월 시행)

〈표 1-1-2〉 등록장애인 수(2024) -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2,631,356	1,132,644	234,703	246,182	442,034	22,389	233,322	47,350
		100.0	43.0	8.9	9.4	16.8	0.9	8.9	1.8
성별	남	1,525,056	660,204	135,378	146,198	231,521	15,709	140,359	38,924
		58.0	58.3	57.7	59.4	52.4	70.2	60.2	82.2
	여	1,106,300	472,440	99,325	99,984	210,513	6,680	92,963	8,426
		42.0	41.7	42.3	40.6	47.6	29.8	39.8	17.8
생애 주기별	영유아기 (0~5세)	7,827	227	2,338	97	673	1,034	1,101	2,193
		0.3	0.0	1.0	0.0	0.2	4.6	0.5	4.6
	아동청소년기 (6~18세)	88,556	3,094	6,920	1,909	2,968	3,563	41,879	26,989
		3.4	0.3	2.9	0.8	0.7	15.9	17.9	57.0
	청년기 (19~34세)	151,504	18,840	11,141	9,266	7,212	918	77,666	15,428
		5.8	1.7	4.7	3.8	1.6	4.1	33.3	32.6
	중장년기 (35~64세)	927,687	432,783	76,298	93,434	63,130	7,962	96,858	2,735
		35.3	38.2	32.5	38.0	14.3	35.6	41.5	5.8
	노년기 (65세 이상)	1,455,782	677,700	138,006	141,476	368,051	8,912	15,818	5
		55.3	59.8	58.8	57.5	83.3	39.8	6.8	0.0
장애정도	심한 장애	966,428	215,683	129,754	44,518	82,036	11,269	233,322	47,350
		36.7	19.0	55.3	18.1	18.6	50.3	100.0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1,664,928	916,961	104,949	201,664	359,998	11,120	-	-
		63.3	81.0	44.7	81.9	81.4	49.7	-	-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3)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법령상 정의 및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생애주기별 수해정보를 참고하여 영유아기(0~5세), 아동청소년기(6~18세), 청년기(19~34세), 중장년기(35~64세), 노년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함

• 영유아: 「모건보건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아동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수해정보 기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남성이 58.0%로 여성 42.0%보다 16.0%p 많음
- 생애주기별로는 노년기가 5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장년기가 35.3%, 청년기가 5.8%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63.3%로 심한 장애 36.7%보다 26.6%p 많음

※※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함



〈표 1-1-2〉 등록장애인 수(2024) - 장애유형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계		103,215	111,084	4,781	10,512	16,098	2,756	17,397	6,889
		3.9	4.2	0.2	0.4	0.6	0.1	0.7	0.3
성별	남	51,794	66,792	3,107	7,731	11,093	1,626	10,915	3,705
		50.2	60.1	65.0	73.5	68.9	59.0	62.7	53.8
	여	51,421	44,292	1,674	2,781	5,005	1,130	6,482	3,184
		49.8	39.9	35.0	26.5	31.1	41.0	37.3	46.2
생애 주기별	영유아기 (0~5세)	-	19	30	2	60	3	25	25
		-	0.0	0.6	0.0	0.4	0.1	0.1	0.4
	아동청소년기 (6~18세)	33	176	220	37	328	22	152	266
		0.0	0.2	4.6	0.4	2.0	0.8	0.9	3.9
	청년기 (19~34세)	5,644	2,664	686	174	548	182	290	845
		5.5	2.4	14.3	1.7	3.4	6.6	1.7	12.3
	중장년기 (35~64세)	73,988	56,933	1,626	2,916	8,417	1,664	4,460	4,483
		71.7	51.3	34.0	27.7	52.3	60.4	25.6	65.1
	노년기 (65세 이상)	23,550	51,292	2,219	7,383	6,745	885	12,470	1,270
		22.8	46.2	46.4	70.2	41.9	32.1	71.7	18.4
장애정도	심한 장애	100,779	82,928	3,471	9,904	600	1,346	1,605	1,863
		97.6	74.7	72.6	94.2	3.7	48.8	9.2	27.0
	심하지 않은 장애	2,436	28,156	1,310	608	15,498	1,410	15,792	5,026
		2.4	25.3	27.4	5.8	96.3	51.2	90.8	73.0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3)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법령상 정의 및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생애주기별 수해정보를 참고하여 영유아기(0~5세), 아동청소년기(6~18세), 청년기(19~34세), 중장년기(35~64세), 노년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함

• 영유아: 「모건보건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아동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수해정보 기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장애유형 및 성별로 살펴보면, 자폐성 장애는 남성이 82.2%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언어·지적·자폐성·심장·뇌전증을 제외한 장애유형은 중장년기 이후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지적·시각·청각·신장·호흡기 장애는 중장년기 이후 비율이 95% 이상임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지적, 자폐성의 경우 심한장애의 비율이 100.0%를 차지하고, 정신·호흡기 장애 또한 심한장애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남. 반면, 간·장루요루 장애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의 비율이 90% 이상임

〈표 1-1-3〉 등록장애인 수 - 지역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7	2,104,889	346,275	148,145	100,082	108,823	57,280	59,978	40,758	-
2008	2,246,965	368,955	156,966	106,448	116,697	61,575	64,348	44,402	-
2009	2,429,547	401,638	168,493	113,509	126,878	66,191	68,884	47,210	-
2010	2,517,312	414,522	172,765	117,141	131,815	68,518	71,164	49,013	-
2011	2,519,241	411,570	171,729	117,183	132,732	68,675	71,626	48,926	-
2012	2,511,159	407,528	170,743	116,839	133,467	68,534	71,647	48,982	7,081
2013	2,501,112	403,435	169,750	116,567	133,778	68,372	71,441	48,950	7,202
2014	2,494,460	398,908	168,663	115,983	133,855	68,288	71,198	49,014	7,943
2015	2,490,406	393,245	168,084	115,694	134,191	68,079	70,890	49,326	9,079
2016	2,511,051	391,027	168,950	117,111	135,623	68,569	71,425	49,533	9,845
2017	2,545,637	391,753	171,384	119,766	138,304	69,233	72,180	50,205	10,623
2018	2,585,850	392,911	173,819	123,068	141,769	69,884	72,927	50,640	11,404
2019	2,618,724	394,804	175,370	125,482	144,565	70,175	73,215	51,013	12,046
2020	2,632,328	394,001	176,258	126,383	146,296	70,054	72,840	51,112	12,346
2021	2,642,922	391,609	176,361	127,245	148,575	69,801	72,461	51,297	12,628
2022	2,643,696	389,620	175,858	127,332	150,670	69,388	71,858	51,306	12,829
2023	2,633,262	387,448	175,062	130,288	151,782	69,202	71,342	51,210	12,908
2024	2,631,356	386,316	174,256	130,674	152,707	69,175	71,344	51,055	12,993
	100.0	14.7	6.6	5.0	5.8	2.6	2.7	1.9	0.5

주: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87,910명(22.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386,316명(14.7%), 경남 187,756명(7.1%), 경북 177,436명(6.7%), 부산 174,256명(6.6%) 순임



〈표 1-1-3〉 등록장애인 수 - 지역별, 연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407,247	85,594	79,826	107,895	116,141	125,731	143,009	151,785	26,320
2008	435,698	91,448	85,097	116,908	120,481	134,898	151,898	162,753	28,393
2009	477,021	97,604	90,958	125,556	130,807	144,039	164,885	175,198	30,676
2010	500,704	101,067	94,654	130,646	134,235	147,918	170,396	180,880	31,874
2011	505,052	101,283	94,855	131,108	134,239	146,524	170,479	181,044	32,216
2012	505,519	100,579	94,137	124,872	133,054	145,788	169,699	180,285	32,405
2013	506,464	99,660	93,563	124,561	132,006	144,324	168,836	179,530	32,673
2014	508,330	98,970	93,612	124,721	130,932	143,128	168,650	179,276	32,989
2015	512,882	98,324	93,536	124,801	129,769	141,837	168,089	179,070	33,510
2016	522,437	98,928	94,688	126,406	130,345	141,578	169,643	180,665	34,278
2017	533,259	99,959	95,844	128,503	131,303	142,174	172,533	183,510	35,104
2018	547,378	100,693	97,086	131,908	131,746	142,213	176,550	186,014	35,840
2019	559,796	101,480	97,686	133,717	132,361	141,883	180,888	187,956	36,287
2020	569,491	101,607	97,916	134,222	132,183	140,929	181,322	188,713	36,655
2021	578,120	101,675	97,788	134,696	132,010	139,831	182,452	189,499	36,874
2022	582,359	101,498	97,734	134,527	131,544	138,300	182,180	189,569	37,124
2023	583,750	100,321	96,884	133,686	129,964	136,269	177,997	188,250	36,899
2024	587,910	99,542	96,694	133,136	128,993	134,551	177,436	187,756	36,818
	22.3	3.8	3.7	5.1	4.9	5.1	6.7	7.1	1.4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를 2023년과 비교하면, 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에서는 등록장애인 수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음

〈표 1-1-4〉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2024) - 생애주기별

(단위: 명, %)

구분	계	영유아기 (0-5세)	아동청소년기 (6-18세)	청년기 (19-34세)	중장년기 (35-64세)	노년기 (65세 이상)
전국	2,631,356 100.0	7,827 0.3	88,556 3.4	151,504 5.8	927,687 35.3	1,455,782 55.3
서울	386,316 100.0	1,196 0.3	12,388 3.2	24,501 6.3	129,555 33.5	218,676 56.6
부산	174,256 100.0	504 0.3	5,437 3.1	9,055 5.2	58,445 33.5	100,815 57.9
대구	130,674 100.0	405 0.3	4,189 3.2	7,521 5.8	45,464 34.8	73,095 55.9
인천	152,707 100.0	460 0.3	5,357 3.5	8,695 5.7	55,991 36.7	82,204 53.8
광주	69,175 100.0	207 0.3	2,886 4.2	5,169 7.5	26,871 38.8	34,042 49.2
대전	71,344 100.0	250 0.4	2,723 3.8	5,230 7.3	26,869 37.7	36,272 50.8
울산	51,055 100.0	175 0.3	2,059 4.0	3,280 6.4	19,698 38.6	25,843 50.6
세종	12,993 100.0	84 0.6	774 6.0	955 7.4	5,029 38.7	6,151 47.3
경기	587,910 100.0	2,151 0.4	23,680 4.0	38,113 6.5	220,911 37.6	303,055 51.5
강원	99,542 100.0	211 0.2	2,419 2.4	4,559 4.6	33,769 33.9	58,584 58.9
충북	96,694 100.0	264 0.3	3,158 3.3	5,808 6.0	34,811 36.0	52,653 54.5
충남	133,136 100.0	411 0.3	4,169 3.1	6,912 5.2	45,918 34.5	75,726 56.9
전북	128,993 100.0	259 0.2	3,476 2.7	5,994 4.6	42,273 32.8	76,991 59.7
전남	134,551 100.0	230 0.2	3,244 2.4	5,757 4.3	43,236 32.1	82,084 61.0
경북	177,436 100.0	376 0.2	4,770 2.7	8,121 4.6	57,121 32.2	107,048 60.3
경남	187,756 100.0	499 0.3	6,057 3.2	9,498 5.1	68,213 36.3	103,489 55.1
제주	36,818 100.0	145 0.4	1,770 4.8	2,336 6.3	13,513 36.7	19,054 51.8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임

- 2)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법령상 정의 및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생애주기별 수해정보를 참고하여 영유아기(0-5세), 아동청소년기(6-18세), 청년기(19-34세), 중장년기(35-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함
- 영유아: 「모건보건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아동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수해정보 기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2024), 「장애인등록현황(2024년 말 기준)」을 저자가 가공함

- 2024년 지역별 등록장애인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노년기(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광주,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노년기(65세 이상) 비율이 50.0% 이상임
- '노년기'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1.0%)이며,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기'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6.6%)임



〈표 1-1-5〉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2024) -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전국	2,631,356	1,132,644	234,703	246,182	442,034	22,389	233,322	47,350
	100.0	43.0	8.9	9.4	16.8	0.9	8.9	1.8
서울	386,316	156,133	37,462	40,225	66,232	3,220	28,114	8,965
	100.0	40.4	9.7	10.4	17.1	0.8	7.3	2.3
부산	174,256	72,162	18,075	17,361	28,055	1,534	13,027	3,103
	100.0	41.4	10.4	10.0	16.1	0.9	7.5	1.8
대구	130,674	48,649	11,982	11,745	29,915	1,112	11,335	1,995
	100.0	37.2	9.2	9.0	22.9	0.9	8.7	1.5
인천	152,707	65,857	13,191	13,825	28,468	1,494	12,115	2,651
	100.0	43.1	8.6	9.1	18.6	1.0	7.9	1.7
광주	69,175	27,849	6,538	7,069	10,332	607	7,862	1,306
	100.0	40.3	9.5	10.2	14.9	0.9	11.4	1.9
대전	71,344	30,380	6,764	6,773	10,056	630	7,289	1,434
	100.0	42.6	9.5	9.5	14.1	0.9	10.2	2.0
울산	51,055	22,276	4,602	4,759	8,017	452	4,905	989
	100.0	43.6	9.0	9.3	15.7	0.9	9.6	1.9
세종	12,993	5,688	1,106	1,229	1,833	131	1,278	416
	100.0	43.8	8.5	9.5	14.1	1.0	9.8	3.2
경기	587,910	257,682	52,970	54,566	92,297	5,162	50,790	13,181
	100.0	43.8	9.0	9.3	15.7	0.9	8.6	2.2
강원	99,542	47,393	8,502	9,094	14,957	761	8,739	1,188
	100.0	47.6	8.5	9.1	15.0	0.8	8.8	1.2
충북	96,694	43,130	8,064	8,660	14,219	709	11,330	1,331
	100.0	44.6	8.3	9.0	14.7	0.7	11.7	1.4
충남	133,136	59,838	10,329	11,953	22,814	1,045	13,127	1,806
	100.0	44.9	7.8	9.0	17.1	0.8	9.9	1.4
전북	128,993	58,933	10,683	10,641	21,613	1,301	12,936	1,379
	100.0	45.7	8.3	8.2	16.8	1.0	10.0	1.1
전남	134,551	64,176	10,446	12,852	19,872	1,031	12,700	1,315
	100.0	47.7	7.8	9.6	14.8	0.8	9.4	1.0
경북	177,436	73,522	14,317	14,817	37,962	1,261	17,108	2,029
	100.0	41.4	8.1	8.4	21.4	0.7	9.6	1.1
경남	187,756	85,323	16,348	16,680	28,594	1,517	16,872	3,253
	100.0	45.4	8.7	8.9	15.2	0.8	9.0	1.7
제주	36,818	13,653	3,324	3,933	6,798	422	3,795	1,009
	100.0	37.1	9.0	10.7	18.5	1.1	10.3	2.7

주: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말 기준 지역별 등록장애인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전남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47.6%), 전북(45.7%), 경남(45.4%), 충남(44.9%) 등의 순임

〈표 1-1-5〉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2024)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국	103,215 3.9	111,084 4.2	4,781 0.2	10,512 0.4	16,098 0.6	2,756 0.1	17,397 0.7	6,889 0.3
서울	16,314 4.2	19,223 5.0	887 0.2	1,980 0.5	2,818 0.7	395 0.1	3,159 0.8	1,189 0.3
부산	8,103 4.7	8,652 5.0	394 0.2	862 0.5	948 0.5	221 0.1	1,216 0.7	543 0.3
대구	5,935 4.5	5,486 4.2	222 0.2	359 0.3	782 0.6	143 0.1	693 0.5	321 0.2
인천	4,914 3.2	6,948 4.5	259 0.2	581 0.4	826 0.5	147 0.1	1,045 0.7	386 0.3
광주	3,201 4.6	2,820 4.1	124 0.2	268 0.4	428 0.6	66 0.1	438 0.6	267 0.4
대전	3,321 4.7	3,127 4.4	120 0.2	267 0.4	403 0.6	85 0.1	433 0.6	262 0.4
울산	1,462 2.9	2,341 4.6	143 0.3	238 0.5	395 0.8	73 0.1	282 0.6	121 0.2
세종	480 3.7	532 4.1	27 0.2	59 0.5	88 0.7	11 0.1	86 0.7	29 0.2
경기	20,138 3.4	27,145 4.6	1,219 0.2	2,365 0.4	4,166 0.7	653 0.1	4,152 0.7	1,424 0.2
강원	3,184 3.2	3,550 3.6	124 0.1	439 0.4	594 0.6	99 0.1	706 0.7	212 0.2
충북	3,631 3.8	3,648 3.8	144 0.1	339 0.4	544 0.6	93 0.1	628 0.6	224 0.2
충남	5,242 3.9	4,413 3.3	194 0.1	480 0.4	624 0.5	133 0.1	860 0.6	278 0.2
전북	5,382 4.2	3,908 3.0	147 0.1	314 0.2	530 0.4	126 0.1	694 0.5	406 0.3
전남	5,534 4.1	4,200 3.1	167 0.1	418 0.3	686 0.5	91 0.1	716 0.5	347 0.3
경북	7,178 4.0	5,906 3.3	263 0.1	589 0.3	1,031 0.6	184 0.1	916 0.5	353 0.2
경남	7,886 4.2	7,507 4.0	278 0.1	742 0.4	999 0.5	205 0.1	1,143 0.6	409 0.2
제주	1,310 3.6	1,678 4.6	69 0.2	212 0.6	236 0.6	31 0.1	230 0.6	118 0.3

주: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청각, 지적, 자폐성 장애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대구, 경북이 각각 22.9%, 2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편임
 -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충북, 광주가 각각 11.7%, 1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편임
 - 자폐성장애인의 비율은 세종이 3.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편임



〈표 1-1-6〉 신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연도별	2021	86,943	14,423	13,214	6,496	28,522	2,000	5,214	2,085
	2022	79,725	13,349	12,092	5,939	25,547	1,866	4,797	2,531
	2023	86,249	14,412	13,154	6,353	26,916	1,686	5,297	3,312
	2024	85,947	14,239	13,622	6,155	27,284	1,655	5,034	2,948
		100.0	16.6	15.8	7.2	31.7	1.9	5.9	3.4
성별	남	49,192	7,573	7,717	3,488	14,473	1,182	3,043	2,274
		100.0	15.4	15.7	7.1	29.4	2.4	6.2	4.6
	여	36,755	6,666	5,905	2,667	12,811	473	1,991	674
		100.0	18.1	16.1	7.3	34.9	1.3	5.4	1.8
생애 주기별	영유아 (0~5세)	3,714	61	596	24	142	701	691	1,465
		100.0	1.6	16.0	0.6	3.8	18.9	18.6	39.4
	아동청소년 (6~18세)	5,889	449	151	135	54	353	3,191	1,452
		100.0	7.6	2.6	2.3	0.9	6.0	54.2	24.7
	청년 (19~34세)	2,731	700	250	239	74	19	492	31
		100.0	25.6	9.2	8.8	2.7	0.7	18.0	1.1
	중장년 (35~64세)	23,426	5,721	4,986	2,133	2,594	265	634	-
		100.0	24.4	21.3	9.1	11.1	1.1	2.7	-
	노년 (65세 이상)	50,187	7,308	7,639	3,624	24,420	317	26	-
		100.0	14.6	15.2	7.2	48.7	0.6	0.1	-
장애정도	심한 장애	29,320	1,600	6,480	584	411	638	5,034	2,948
		100.0	5.5	22.1	2.0	1.4	2.2	17.2	10.1
	심하지 않은 장애	56,627	12,639	7,142	5,571	26,873	1,017	-	-
		100.0	22.3	12.6	9.8	47.5	1.8	-	-

주: 1) 각 연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3)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법령상 정의 및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생애주기별 수해정보를 참고하여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함

• 영유아: 「모건보건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아동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수해정보 기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기준 신규 등록장애인은 85,947명으로 전년 대비 302명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는 청각 장애인이 전체 신규 등록장애인 중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16.6%, 뇌병변장애 15.8%, 신장장애 11.1% 순으로 나타남

• 신규 등록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49,192명으로 여성 36,755명의 약 1.3배 정도임

• 신규 등록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56,627명으로 심한 장애 29,320명의 약 1.9배 정도임

〈표 1-1-6〉 신규 등록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생애주기별, 장애정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21	2,123	8,948	236	871	944	54	1,593	220
	2022	1,764	8,213	202	780	933	40	1,484	188
	2023	2,017	9,243	226	886	987	41	1,554	165
	2024	1,839	9,521	220	898	907	38	1,420	167
		2.1	11.1	0.3	1.0	1.1	0.0	1.7	0.2
성별	남	892	6,023	174	716	598	25	923	91
		1.8	12.2	0.4	1.5	1.2	0.1	1.9	0.2
	여	947	3,498	46	182	309	13	497	76
		2.6	9.5	0.1	0.5	0.8	0.0	1.4	0.2
생애주기별	영유아 (0~5세)	0	1	8	-	11	1	7	6
		0.0	0.0	0.2	-	0.3	0.0	0.2	0.2
	아동청소년 (6~18세)	14	20	15	5	9	2	12	27
		0.2	0.3	0.3	0.1	0.2	0.0	0.2	0.5
	청년 (19~34세)	556	240	10	14	36	3	20	47
		20.4	8.8	0.4	0.5	1.3	0.1	0.7	1.7
	중장년 (35~64세)	1,168	4,191	102	303	684	29	531	85
		5.0	17.9	0.4	1.3	2.9	0.1	2.3	0.4
	노년 (65세 이상)	101	5,069	85	576	167	3	850	2
		0.2	10.1	0.2	1.1	0.3	0.0	1.7	0.0
장애정도	심한 장애	1,350	9,097	154	835	94	2	72	21
		4.6	31.0	0.5	2.8	0.3	0.0	0.2	0.1
	심하지 않은 장애	489	424	66	63	813	36	1,348	146
		0.9	0.7	0.1	0.1	1.4	0.1	2.4	0.3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3)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는 법령상 정의 및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생애주기별 수해정보를 참고하여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8세),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구분함

• 영유아: 「모건보건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아동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청년: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수해정보 기준: 영유아(0~5세), 아동(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중년(30~49세), 장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신규 등록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영유아(0~5세)는 자폐성 장애가 39.4%, 아동청소년(6~18세)은 지적 장애가 54.2%, 청년(19~34세) 및 중장년(35~64세)은 지적 장애가 각각 25.6%, 24.4%, 노년(65세 이상)은 청각 장애가 48.7%로 가장 많음



〈표 1-1-7〉 신규 등록장애인 수(2024) - 장애유형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국 (100.0)	85,947 (100.0)	14,239 (16.6)	13,622 (15.8)	6,155 (7.2)	27,284 (31.7)	1,655 (1.9)	5,034 (5.9)	2,948 (3.4)	1,839 (2.1)	9,521 (11.1)	220 (0.3)	898 (1.0)	907 (1.1)	38 (0.0)	1,420 (1.7)	167 (0.2)
서울 (17.1)	14,721 (100.0)	2,130 (14.5)	2,365 (16.1)	1,090 (7.4)	5,276 (35.8)	206 (1.4)	520 (3.5)	506 (3.4)	351 (2.4)	1,629 (11.1)	34 (0.2)	177 (1.2)	146 (1.0)	5 (0.0)	256 (1.7)	30 (0.2)
부산 (7.2)	6,202 (100.0)	980 (15.8)	1,026 (16.5)	506 (8.2)	1,969 (31.7)	98 (1.6)	254 (4.1)	166 (2.7)	123 (2.0)	849 (13.7)	16 (0.3)	49 (0.8)	55 (0.9)	3 (0.0)	101 (1.6)	7 (0.1)
대구 (5.7)	4,876 (100.0)	587 (12.0)	647 (13.3)	292 (6.0)	2,256 (46.3)	81 (1.7)	238 (4.9)	100 (2.1)	94 (1.9)	443 (9.1)	6 (0.1)	28 (0.6)	42 (0.9)	1 (0.0)	54 (1.1)	7 (0.1)
인천 (5.9)	5,046 (100.0)	842 (16.7)	877 (17.4)	339 (6.7)	1,433 (28.4)	138 (2.7)	339 (6.7)	178 (3.5)	102 (2.0)	574 (11.4)	12 (0.2)	48 (1.0)	59 (1.2)	0 (0.0)	98 (1.9)	7 (0.1)
광주 (2.5)	2,127 (100.0)	347 (16.3)	326 (15.3)	171 (8.0)	578 (27.2)	32 (1.5)	194 (9.1)	80 (3.8)	55 (2.6)	251 (11.8)	7 (0.3)	21 (1.0)	25 (1.2)	3 (0.1)	32 (1.5)	5 (0.2)
대전 (2.7)	2,330 (100.0)	465 (20.0)	405 (17.4)	168 (7.2)	496 (21.3)	53 (2.3)	159 (6.8)	81 (3.5)	99 (4.2)	292 (12.5)	7 (0.3)	28 (1.2)	34 (1.5)	1 (0.0)	36 (1.5)	6 (0.3)
울산 (1.8)	1,541 (100.0)	310 (20.1)	274 (17.8)	106 (6.9)	345 (22.4)	37 (2.4)	112 (7.3)	61 (4.0)	29 (1.9)	195 (12.7)	1 (0.1)	26 (1.7)	17 (1.1)	0 (0.0)	23 (1.5)	5 (0.3)
세종 (0.5)	406 (100.0)	69 (17.0)	78 (19.2)	31 (7.6)	94 (23.2)	18 (4.4)	20 (4.9)	36 (8.9)	8 (2.0)	31 (7.6)	0 (0.0)	3 (0.7)	7 (1.7)	1 (0.2)	7 (1.7)	3 (0.7)
경기 (22.9)	19,703 (100.0)	3,393 (17.2)	3,158 (16.0)	1,392 (7.1)	5,687 (28.9)	449 (2.3)	1,259 (6.4)	837 (4.2)	409 (2.1)	2,176 (11.0)	64 (0.3)	226 (1.1)	235 (1.2)	12 (0.1)	366 (1.9)	40 (0.2)
강원 (3.0)	2,606 (100.0)	552 (21.2)	424 (16.3)	187 (7.2)	654 (25.1)	25 (1.0)	157 (6.0)	79 (3.0)	47 (1.8)	360 (13.8)	7 (0.3)	26 (1.0)	41 (1.6)	1 (0.0)	43 (1.7)	3 (0.1)
충북 (3.4)	2,919 (100.0)	564 (19.3)	491 (16.8)	192 (6.6)	720 (24.7)	54 (1.8)	252 (8.6)	101 (3.5)	53 (1.8)	358 (12.3)	6 (0.2)	41 (1.4)	27 (0.9)	0 (0.0)	48 (1.6)	12 (0.4)
충남 (4.5)	3,846 (100.0)	691 (18.0)	594 (15.4)	278 (7.2)	1,149 (29.9)	99 (2.6)	289 (7.5)	144 (3.7)	72 (1.9)	366 (9.5)	12 (0.3)	44 (1.1)	30 (0.8)	4 (0.1)	68 (1.8)	6 (0.2)
전북 (4.2)	3,578 (100.0)	601 (16.8)	553 (15.5)	249 (7.0)	1,271 (35.5)	99 (2.8)	215 (6.0)	92 (2.6)	78 (2.2)	312 (8.7)	7 (0.2)	21 (0.6)	20 (0.6)	2 (0.1)	50 (1.4)	8 (0.2)
전남 (4.0)	3,426 (100.0)	732 (21.4)	567 (16.5)	287 (8.4)	842 (24.6)	50 (1.5)	263 (7.7)	78 (2.3)	78 (2.3)	402 (11.7)	14 (0.4)	24 (0.7)	26 (0.8)	2 (0.1)	52 (1.5)	9 (0.3)
경북 (6.5)	5,621 (100.0)	806 (14.3)	765 (13.6)	324 (5.8)	2,412 (42.9)	88 (1.6)	331 (5.9)	130 (2.3)	85 (1.5)	484 (8.6)	10 (0.2)	65 (1.2)	50 (0.9)	0 (0.0)	66 (1.2)	5 (0.1)
경남 (6.7)	5,760 (100.0)	1,015 (17.6)	881 (15.3)	442 (7.7)	1,733 (30.1)	95 (1.6)	337 (5.9)	201 (3.5)	134 (2.3)	671 (11.6)	14 (0.2)	59 (1.0)	70 (1.2)	2 (0.0)	96 (1.7)	10 (0.2)
제주 (1.4)	1,239 (100.0)	155 (12.5)	191 (15.4)	101 (8.2)	369 (29.8)	33 (2.7)	95 (7.7)	78 (6.3)	22 (1.8)	128 (10.3)	3 (0.2)	12 (1.0)	23 (1.9)	1 (0.1)	24 (1.9)	4 (0.3)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지역 하단에 표기한 ()는 전체 신규 등록장애인 대비 지역별 신규 등록장애인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지역별 신규 등록장애인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9,703명으로 전체 신규 등록장애인 중 22.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울 17.1%, 부산 7.2%, 경남 6.7%, 경북 6.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8〉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구 비율
2001	48,021,543	1,134,177	2.36
2002	48,229,948	1,294,254	2.68
2003	48,386,823	1,454,215	3.01
2004	48,583,805	1,610,994	3.32
2005	48,782,274	1,789,443	3.67
2006	48,991,779	1,967,326	4.02
2007	49,268,928	2,104,889	4.27
2008	49,540,367	2,246,965	4.54
2009	49,773,145	2,429,547	4.88
2010	50,515,666	2,517,312	4.98
2011	50,734,284	2,519,241	4.97
2012	50,948,272	2,511,159	4.93
2013	51,141,463	2,501,112	4.89
2014	51,327,916	2,494,460	4.86
2015	51,529,338	2,490,406	4.83
2016	51,696,216	2,511,051	4.86
2017	51,778,544	2,545,637	4.92
2018	51,826,059	2,585,850	4.99
2019	51,849,861	2,618,724	5.05
2020	51,829,023	2,632,328	5.08
2021	51,638,809	2,642,922	5.12
2022	51,439,038	2,643,696	5.14
2023	51,325,329	2,633,262	5.13
2024	51,217,221	2,631,356	5.14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비율은 장애인구/주민등록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1,356명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51,217,221명)의 5.14%에 해당함
 •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추세이며, 장애인구는 2023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임



〈표 1-1-9〉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 인구 비율 - 지역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7	4.27	3.40	4.13	4.01	4.08	4.05	4.06	3.71	-	3.67	5.69	5.30	5.41	6.24	6.52	5.33	4.75	4.71
2008	4.54	3.62	4.40	4.27	4.33	4.33	4.35	3.99	-	3.86	6.06	5.60	5.79	6.49	7.03	5.68	5.05	5.06
2009	4.88	3.93	4.76	4.56	4.68	4.62	4.64	4.23	-	4.16	6.45	5.95	6.16	7.05	7.53	6.18	5.39	5.45
2010	4.98	4.02	4.84	4.66	4.78	4.71	4.73	4.35	-	4.25	6.61	6.11	6.29	7.18	7.71	6.33	5.50	5.58
2011	4.97	4.02	4.84	4.67	4.74	4.69	4.73	4.31	-	4.23	6.59	6.07	6.24	7.16	7.65	6.32	5.47	5.59
2012	4.93	4.00	4.83	4.66	4.69	4.66	4.70	4.27	6.26	4.18	6.54	6.01	6.16	7.10	7.63	6.29	5.43	5.55
2013	4.89	3.98	4.81	4.66	4.65	4.64	4.66	4.23	5.90	4.14	6.46	5.95	6.08	7.05	7.57	6.25	5.39	5.50
2014	4.86	3.95	4.79	4.65	4.61	4.63	4.65	4.20	5.09	4.11	6.41	5.93	6.05	7.00	7.51	6.24	5.35	5.43
2015	4.83	3.92	4.78	4.65	4.59	4.62	4.67	4.20	4.31	4.10	6.35	5.91	6.01	6.94	7.43	6.22	5.32	5.37
2016	4.86	3.94	4.83	4.71	4.61	4.67	4.72	4.23	4.05	4.11	6.38	5.95	6.03	6.99	7.44	6.28	5.35	5.34
2017	4.92	3.97	4.94	4.84	4.69	4.73	4.80	4.31	3.79	4.14	6.45	6.01	6.07	7.08	7.50	6.41	5.43	5.34
2018	4.99	4.02	5.05	5.00	4.80	4.79	4.89	4.38	3.63	4.19	6.53	6.07	6.20	7.17	7.55	6.60	5.51	5.37
2019	5.05	4.06	5.14	5.15	4.89	4.82	4.96	4.44	3.54	4.23	6.58	6.11	6.30	7.28	7.59	6.79	5.59	5.41
2020	5.08	4.08	5.20	5.23	4.97	4.83	4.98	4.50	3.47	4.24	6.59	6.12	6.33	7.33	7.61	6.87	5.65	5.43
2021	5.12	4.12	5.26	5.33	5.04	4.84	4.99	4.57	3.40	4.26	6.61	6.12	6.36	7.39	7.63	6.95	5.72	5.45
2022	5.14	4.13	5.30	5.39	5.08	4.85	4.97	4.62	3.34	4.29	6.61	6.13	6.34	7.43	7.61	7.01	5.78	5.47
2023	5.13	4.13	5.32	5.49	5.06	4.88	4.95	4.64	3.34	4.28	6.57	6.08	6.28	7.41	7.55	6.97	5.79	5.46
2024	5.14	4.14	5.33	5.53	5.05	4.91	4.96	4.65	3.33	4.29	6.56	6.08	6.23	7.42	7.52	7.01	5.82	5.49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비율은 지역별 인구 대비 장애인구(장애인구/주민등록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지역별 2024년 전체 인구 대비 장애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7.52%로 가장 높고, 세종이 3.33%로 가장 낮음
-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7년 대비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장애인구 비율이 2.93%p 감소함
- 2007년 대비 2024년의 장애인구 비율 증가폭은 경북에서 1.68%p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대구 1.51%p, 부산 1.20%p, 전북 1.18%p 순임

(2) 장애인 출현율

〈표 1-1-10〉 장애인 출현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복장애
2011	5.61	2.72	0.59	0.51	0.50	0.04	0.28	0.01	0.23	0.10	0.04	0.04	0.02	0.00	0.03	0.02	0.48
2014	5.59	2.71	0.48	0.53	0.50	0.03	0.36	0.02	0.23	0.12	0.02	0.03	0.02	0.01	0.03	0.01	0.49
2017	5.39	2.51	0.52	0.51	0.52	0.03	0.38	0.03	0.22	0.15	0.01	0.02	0.02	0.01	0.03	0.02	0.42

주: 1) 2011년의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중복 장애를 반영함

2) 2014, 2016년의 경우 재가장애인은 중복장애를 별도 산정하였으나, 시설장애인은 행복e음을 통해 파악하여 중복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 가지 장애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3) 2008, 2020년, 2023년 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출현율을 제시하지 않음(출처: 2020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11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110.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122.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2011년 5.61%에서 2017년 5.39%로 다소 감소함

• 출현율 변화폭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가 0.21%p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지적 장애가 0.10%p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3) 장애영유아 현황

〈표 1-1-11〉 장애영유아 현황 - 연령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영유아 인구	장애영유아 인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율
2010	2,734,976	8,448	36	493	1,170	1,880	2,122	2,747	0.31
2011	2,777,209	7,933	37	401	1,023	1,569	2,322	2,581	0.29
2012	2,816,103	7,886	33	508	1,097	1,473	1,967	2,808	0.28
2013	2,769,255	7,442	29	437	1,088	1,549	1,908	2,431	0.27
2014	2,741,835	7,657	31	446	1,067	1,583	2,032	2,498	0.28
2015	2,739,901	8,122	26	459	1,066	1,566	2,196	2,809	0.30
2016	2,680,088	8,598	46	521	1,047	1,583	2,293	3,108	0.32
2017	2,568,516	8,983	46	517	1,157	1,640	2,313	3,310	0.35
2018	2,415,349	9,175	41	482	1,066	1,804	2,482	3,300	0.38
2019	2,285,605	9,679	43	483	1,014	1,721	2,898	3,520	0.42
2020	2,121,390	9,728	36	381	915	1,614	2,825	3,957	0.46
2021	1,943,208	9,691	28	409	801	1,598	2,734	4,121	0.50
2022	1,791,788	9,230	20	352	728	1,320	2,700	4,110	0.52
2023	1,668,293	8,811	25	330	728	1,178	2,324	4,226	0.53
2024	1,581,764	7,827	34	341	675	1,068	1,933	3,776	0.49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모자보건법」(시행 2025.4.1.)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전체 영유아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영유아 인구(1,581,764명) 대비 장애영유아 인구(7,827명)의 비율은 0.49%로 나타남
• 연도별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 0.03%p 감소함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2008	523,287	1,538	0.29	157,882	580	0.37	127,920	440	0.34	154,506	522	0.34	87,243	254	0.29	89,887	337	0.37
2009	511,746	1,507	0.29	153,636	539	0.35	124,359	434	0.35	152,192	555	0.36	85,754	266	0.31	87,627	337	0.38
2010	502,633	1,405	0.28	153,080	524	0.34	123,208	438	0.36	152,329	553	0.36	85,822	276	0.32	87,180	343	0.39
2011	502,766	1,331	0.26	156,472	489	0.31	124,198	422	0.34	158,758	513	0.32	87,003	252	0.29	89,215	319	0.36
2012	502,984	1,292	0.26	160,319	487	0.30	126,056	409	0.32	164,473	506	0.31	87,735	227	0.26	90,620	325	0.36
2013	489,543	1,261	0.26	159,465	497	0.31	123,728	387	0.31	163,530	479	0.29	85,828	192	0.22	89,639	287	0.32
2014	480,047	1,324	0.28	159,816	521	0.33	122,409	385	0.31	162,895	484	0.30	84,480	213	0.25	87,879	279	0.32
2015	472,648	1,420	0.30	162,479	565	0.35	122,626	402	0.33	162,895	500	0.31	83,026	222	0.27	85,620	250	0.29
2016	453,439	1,465	0.32	160,015	615	0.38	120,756	418	0.35	158,698	525	0.33	80,055	225	0.28	83,041	303	0.36
2017	429,218	1,539	0.36	152,465	672	0.44	115,998	444	0.38	150,553	539	0.36	76,483	241	0.32	78,013	320	0.41
2018	394,198	1,479	0.38	142,927	682	0.48	109,021	467	0.43	141,271	492	0.35	71,502	230	0.32	71,977	354	0.49
2019	369,938	1,486	0.40	134,093	734	0.55	102,851	473	0.46	133,224	550	0.41	67,419	225	0.33	66,304	339	0.51
2020	339,289	1,481	0.44	123,962	728	0.59	94,343	463	0.49	122,051	550	0.45	62,164	230	0.37	60,634	294	0.48
2021	307,525	1,449	0.47	112,344	701	0.62	85,308	474	0.56	112,522	538	0.48	57,894	238	0.41	55,312	277	0.50
2022	282,707	1,366	0.48	102,950	653	0.63	77,883	503	0.65	106,904	517	0.48	53,473	236	0.44	52,168	258	0.49
2023	263,305	1,341	0.51	94,922	605	0.64	72,799	486	0.67	103,151	505	0.49	48,933	224	0.46	49,085	254	0.52
2024	250,043	1,196	0.48	88,787	504	0.57	69,171	405	0.59	100,917	460	0.46	45,378	207	0.46	47,013	250	0.53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모자보건법」(시행 2025.4.1.)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지역별 전체 영유아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등록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018년~2023년 자료는 원자료 정정에 따라 재분석함)

- 2024년 기준 지역별 장애영유아 수는 경기도 2,1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1,196명으로 많음
- 지역별 전체 영유아 인구 대비 장애영유아 인구 비율은 제주가 0.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 0.61%, 대구 0.59% 순임
- 2008년 장애영유아 수와 비교하면, 세종(2012년 대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73명 증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감소함(342명 감소)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2008	67,142	184	0.27	-	-	-	733,284	2,266	0.31	78,474	244	0.31	85,787	262	0.31	117,283	344	0.29
2009	66,078	177	0.27	-	-	-	725,746	2,254	0.31	76,946	262	0.34	84,846	271	0.32	117,882	362	0.31
2010	66,090	200	0.30	-	-	-	734,996	2,183	0.30	75,851	237	0.31	85,391	256	0.30	119,513	342	0.29
2011	67,754	172	0.25	-	-	-	748,040	2,079	0.28	75,635	230	0.30	87,291	235	0.27	123,274	333	0.27
2012	69,826	196	0.28	7,360	11	0.15	758,105	2,091	0.28	75,796	217	0.29	88,139	225	0.26	120,211	334	0.28
2013	69,574	177	0.25	8,052	14	0.17	746,577	1,978	0.26	73,455	193	0.26	86,592	204	0.24	118,938	328	0.28
2014	70,124	177	0.25	11,783	19	0.16	737,803	2,065	0.28	72,309	191	0.26	85,340	214	0.25	117,484	347	0.30
2015	70,709	204	0.29	17,888	35	0.20	738,754	2,149	0.29	71,392	222	0.31	84,670	239	0.28	117,546	345	0.29
2016	69,468	196	0.28	20,671	39	0.19	729,339	2,329	0.32	69,029	233	0.34	82,861	258	0.31	115,819	366	0.32
2017	66,455	215	0.32	23,564	55	0.23	706,088	2,370	0.34	65,614	215	0.33	79,261	266	0.34	112,339	389	0.35
2018	61,743	208	0.34	25,520	69	0.27	677,880	2,507	0.37	61,381	194	0.32	75,035	268	0.36	106,134	391	0.37
2019	57,822	217	0.38	26,837	83	0.31	651,271	2,752	0.42	59,096	185	0.31	70,938	274	0.39	99,617	430	0.43
2020	52,566	250	0.48	26,208	104	0.40	615,708	2,765	0.45	56,583	187	0.33	66,339	278	0.42	92,278	475	0.51
2021	46,869	232	0.49	25,207	93	0.37	572,784	2,684	0.47	53,153	232	0.44	61,100	299	0.49	84,101	512	0.61
2022	41,857	213	0.51	23,853	68	0.29	533,496	2,508	0.47	50,371	-	-	55,804	272	0.49	77,210	472	0.61
2023	38,041	181	0.48	21,727	86	0.40	501,387	2,401	0.48	47,443	224	0.47	52,270	285	0.55	71,639	450	0.63
2024	35,338	175	0.50	20,411	84	0.41	480,559	2,151	0.45	44,902	211	0.47	49,506	264	0.53	67,560	411	0.61

주: 1) 인구수는 각 연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모자보건법」(시행 2025.4.1.)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지역별 전체 영유아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등록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018년~2023년 자료는 원자료 정정에 따라 재분석함)

〈표 1-1-12〉 장애영유아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전체 영유아	장애 영유아	%
2008	98,863	312	0.32	98,315	294	0.30	138,585	404	0.29	188,721	634	0.34	35,793	139	0.39
2009	96,787	323	0.33	95,844	293	0.31	134,724	422	0.31	187,727	599	0.32	34,643	141	0.41
2010	96,178	309	0.32	95,123	246	0.26	134,446	409	0.30	188,640	604	0.32	34,496	123	0.36
2011	97,233	283	0.29	96,196	237	0.25	136,529	360	0.26	192,054	561	0.29	34,791	117	0.34
2012	98,167	292	0.30	97,468	221	0.23	138,395	320	0.23	195,016	606	0.31	35,433	127	0.36
2013	96,006	263	0.27	95,456	192	0.20	136,156	319	0.23	191,336	546	0.29	35,380	125	0.35
2014	94,369	246	0.26	94,151	210	0.22	134,949	306	0.23	190,029	539	0.28	35,968	137	0.38
2015	93,151	259	0.28	94,460	237	0.25	135,507	320	0.24	189,730	595	0.31	36,800	158	0.43
2016	89,923	295	0.33	91,910	257	0.28	133,079	333	0.25	184,865	600	0.32	37,120	140	0.38
2017	84,546	328	0.39	87,010	250	0.29	126,956	375	0.30	177,307	645	0.36	36,646	120	0.33
2018	77,965	310	0.40	80,516	249	0.31	117,991	418	0.35	165,098	709	0.43	35,190	148	0.42
2019	72,052	313	0.43	75,543	244	0.32	110,542	484	0.44	154,348	738	0.48	33,710	152	0.45
2020	65,896	290	0.44	70,300	250	0.36	101,387	458	0.45	140,064	754	0.54	31,618	171	0.54
2021	59,169	298	0.50	63,771	266	0.42	91,859	473	0.51	124,927	760	0.61	29,363	165	0.56
2022	53,699	305	0.57	58,305	287	0.49	82,877	496	0.60	111,035	685	0.62	27,196	172	0.63
2023	49,227	284	0.58	54,397	273	0.50	74,941	457	0.61	100,004	591	0.59	25,022	164	0.66
2024	46,097	259	0.56	51,737	230	0.44	68,939	376	0.55	92,285	499	0.54	23,121	145	0.63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모자보건법」(시행 2025.4.1.)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지역별 전체 영유아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등록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018년-2023년 자료는 원자료 정정에 따라 재분석함)



〈표 1-1-13〉 장애영유아 현황(2024) -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인구	장애 영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유아 비율
전체	2,631,356 (100.0)	7,827 (100.0)	34 (100.0)	341 (100.0)	675 (100.0)	1,068 (100.0)	1,933 (100.0)	3,776 (100.0)	0.30
지체	1,132,644 (43.0)	227 (2.9)	4 (11.8)	14 (4.1)	49 (7.3)	41 (3.8)	52 (2.7)	67 (1.8)	0.02
시각	234,703 (8.9)	97 (1.2)	- (-)	5 (1.5)	10 (1.5)	16 (1.5)	25 (1.3)	41 (1.1)	0.04
청각	246,182 (9.4)	673 (8.6)	29 (85.3)	100 (29.3)	110 (16.3)	122 (11.4)	145 (7.5)	167 (4.4)	0.27
언어	442,034 (16.8)	1,034 (13.2)	- (-)	- (-)	- (-)	65 (6.1)	315 (16.3)	654 (17.3)	0.23
지적	22,389 (0.9)	1,101 (14.1)	- (-)	- (-)	28 (4.1)	113 (10.6)	311 (16.1)	649 (17.2)	4.92
뇌병변	233,322 (8.9)	2,338 (29.9)	- (-)	218 (63.9)	453 (67.1)	571 (53.5)	534 (27.6)	562 (14.9)	1.00
자폐	47,350 (1.8)	2,193 (28.0)	- (-)	- (-)	5 (0.7)	102 (9.6)	509 (26.3)	1,577 (41.8)	4.63
정신	103,215 (3.9)	- (-)	- (-)	- (-)	- (-)	- (-)	- (-)	- (-)	-
신장	111,084 (4.2)	19 (0.2)	- (-)	1 (0.3)	5 (0.7)	6 (0.6)	2 (0.1)	5 (0.1)	0.02
심장	4,781 (0.2)	30 (0.4)	- (-)	- (-)	1 (0.1)	10 (0.9)	12 (0.6)	7 (0.2)	0.63
호흡기	10,512 (0.4)	2 (0.0)	- (-)	- (-)	- (-)	- (-)	- (-)	2 (0.1)	0.02
간	16,098 (0.6)	60 (0.8)	- (-)	1 (0.3)	12 (1.8)	13 (1.2)	17 (0.9)	17 (0.5)	0.37
안면	2,756 (0.1)	3 (0.0)	- (-)	1 (0.3)	- (-)	2 (0.2)	- (-)	- (-)	0.11
장루요루	17,397 (0.7)	25 (0.3)	1 (2.9)	1 (0.3)	2 (0.3)	4 (0.4)	3 (0.2)	14 (0.4)	0.14
뇌전증	6,889 (0.3)	25 (0.3)	- (-)	- (-)	- (-)	3 (0.3)	8 (0.4)	14 (0.4)	0.36
남	1,525,056 (58.0)	4,911 (62.7)	21 (61.8)	161 (47.2)	354 (52.4)	616 (57.7)	1,228 (63.5)	2,531 (67.0)	0.32
여	1,106,300 (42.0)	2,916 (37.3)	13 (38.2)	180 (52.8)	321 (47.6)	452 (42.3)	705 (36.5)	1,245 (33.0)	0.26
심한 장애	966,428 (36.7)	5,983 (76.4)	10 (29.4)	239 (70.1)	460 (68.1)	775 (72.6)	1,491 (77.1)	3,008 (79.7)	0.62
심하지 않은 장애	1,664,928 (63.3)	1,844 (23.6)	24 (70.6)	102 (29.9)	215 (31.9)	293 (27.4)	442 (22.9)	768 (20.3)	0.11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영유아는 「모자보건법」(시행 2025.4.1.)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영유아 비율은 '장애영유아 인구/전체 장애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기준 장애유형별 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 영유아 중 뇌병변장애가 2,338명(29.9%)으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2,193명(28.0%), 지적장애 1,101명(14.1%), 언어장애 1,034명(13.2%)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장애인구 대비 영유아 비율은 지적장애 4.92%, 자폐성장애 4.63%, 뇌병변장애 1.0% 순으로 높음

(4) 장애아동 현황

〈표 1-1-14〉 장애아동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아동 인구	장애아동 인구	비율
2008	10,655,575	77,594	0.73
2009	10,396,743	81,687	0.79
2010	10,156,455	80,075	0.79
2011	9,921,012	78,186	0.79
2012	9,691,876	76,191	0.79
2013	9,431,699	74,617	0.79
2014	9,186,841	73,195	0.80
2015	8,961,805	72,583	0.81
2016	8,736,051	72,139	0.83
2017	8,480,447	72,260	0.85
2018	8,176,335	72,618	0.89
2019	7,928,907	74,362	0.94
2020	7,710,946	75,478	0.98
2021	7,483,944	77,955	1.04
2022	7,271,460	81,340	1.12
2023	7,077,206	86,178	1.22
2024	6,876,330	90,070	1.31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아동인구(6,876,330명) 대비 장애아동 인구(90,070명)의 비율은 1.31%로 나타남
- 전체 아동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장애아동 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은 꾸준히 향상됨



〈표 1-1-15〉 장애아동 현황 - 지역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2008	1,953,656	13,580	0.7	668,053	4,693	0.7	541,440	4,172	0.8	602,938	4,248	0.7	354,692	2,599	0.7	347,325	2,810	0.8
2009	1,894,778	14,024	0.7	642,125	4,771	0.7	524,549	4,270	0.8	585,764	4,537	0.8	348,594	2,708	0.8	338,023	2,946	0.9
2010	1,831,288	13,612	0.7	617,100	4,682	0.8	507,597	4,226	0.8	569,705	4,527	0.8	341,441	2,790	0.8	330,075	2,920	0.9
2011	1,768,278	13,117	0.7	595,314	4,500	0.8	491,525	4,137	0.8	560,738	4,408	0.8	333,635	2,749	0.8	324,241	2,863	0.9
2012	1,706,371	12,562	0.7	576,050	4,467	0.8	475,914	4,026	0.8	552,663	4,321	0.8	325,190	2,645	0.8	317,184	2,783	0.9
2013	1,643,201	12,203	0.7	557,009	4,364	0.8	458,458	3,897	0.9	541,461	4,297	0.8	315,000	2,560	0.8	309,484	2,733	0.9
2014	1,587,019	11,909	0.8	539,436	4,235	0.8	441,992	3,757	0.9	529,721	4,216	0.8	305,259	2,514	0.8	299,342	2,681	0.9
2015	1,528,191	11,688	0.8	526,093	4,216	0.8	426,830	3,692	0.9	518,543	4,172	0.8	294,090	2,478	0.8	285,984	2,575	0.9
2016	1,465,561	11,381	0.8	510,957	4,251	0.8	414,010	3,611	0.9	506,365	4,164	0.8	283,131	2,440	0.9	275,694	2,582	0.9
2017	1,404,967	11,314	0.8	491,887	4,260	0.9	399,139	3,523	0.9	490,472	4,188	0.9	272,417	2,419	0.9	263,207	2,580	1.0
2018	1,329,310	11,193	0.8	472,343	4,350	0.9	381,331	3,495	0.9	472,888	4,169	0.9	260,042	2,400	0.9	249,543	2,540	1.0
2019	1,277,981	11,273	0.9	455,670	4,552	1.0	366,094	3,501	1.0	458,390	4,289	0.9	250,112	2,458	1.0	237,783	2,517	1.1
2020	1,227,792	11,265	0.9	442,776	4,682	1.1	352,737	3,510	1.0	443,334	4,402	1.0	241,381	2,518	1.0	228,182	2,495	1.1
2021	1,173,816	11,383	1.0	428,695	4,872	1.1	338,746	3,629	1.1	432,106	4,525	1.0	233,384	2,550	1.1	219,070	2,504	1.1
2022	1,129,765	11,739	1.0	417,034	5,148	1.2	328,538	3,824	1.2	426,252	4,789	1.1	225,959	2,664	1.2	212,552	2,539	1.2
2023	1,093,009	12,277	1.1	406,296	5,455	1.3	321,580	4,142	1.3	422,117	5,109	1.2	218,076	2,804	1.3	206,401	2,679	1.3
2024	1,056,861	12,668	1.2	395,045	5,572	1.4	313,500	4,311	1.4	416,312	5,443	1.3	209,921	2,888	1.4	199,895	2,779	1.4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 2024년 기준 지역별 장애아동 수는 경기도가 24,16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12,668명으로 많음
 - 지역별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은 제주가 1.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 1.55%, 경북 1.52% 순임
- 2024년 장애아동 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음

〈표 1-1-15〉 장애아동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2008	269,010	1,802	0.7	-	-	-	2,676,173	18,696	0.7	309,539	2,370	0.8	331,949	2,936	0.9	427,574	3,295	0.8
2009	260,126	1,891	0.7	-	-	-	2,635,330	19,502	0.7	302,355	2,505	0.8	325,247	2,998	0.9	423,034	3,432	0.8
2010	251,979	1,894	0.8	-	-	-	2,610,656	19,418	0.7	294,593	2,501	0.8	318,980	2,983	0.9	419,355	3,386	0.8
2011	245,450	1,788	0.7	-	-	-	2,570,035	19,101	0.7	287,131	2,494	0.9	312,736	2,911	0.9	416,209	3,344	0.8
2012	239,801	1,753	0.7	22,213	133	0.6	2,531,449	18,745	0.7	279,546	2,404	0.9	305,042	2,852	0.9	394,611	3,137	0.8
2013	233,033	1,673	0.7	24,164	130	0.5	2,483,663	18,277	0.7	270,744	2,371	0.9	296,753	2,776	0.9	388,503	3,117	0.8
2014	227,482	1,640	0.7	33,488	167	0.5	2,434,461	18,114	0.7	262,025	2,298	0.9	287,806	2,710	0.9	380,830	3,092	0.8
2015	221,872	1,674	0.8	49,240	234	0.5	2,393,096	18,150	0.8	253,556	2,231	0.9	278,845	2,663	1.0	374,044	3,090	0.8
2016	215,910	1,664	0.8	57,458	274	0.5	2,358,077	18,256	0.8	245,015	2,220	0.9	271,682	2,594	1.0	368,267	3,117	0.8
2017	208,500	1,672	0.8	66,834	332	0.5	2,313,378	18,404	0.8	235,464	2,164	0.9	262,948	2,599	1.0	362,295	3,183	0.9
2018	199,861	1,667	0.8	74,768	407	0.5	2,266,245	18,785	0.8	224,893	2,127	0.9	254,140	2,589	1.0	352,133	3,207	0.9
2019	193,047	1,694	0.9	80,513	486	0.6	2,223,563	19,467	0.9	217,388	2,135	1.0	246,187	2,641	1.1	341,552	3,324	1.0
2020	186,950	1,761	0.9	83,214	544	0.7	2,190,957	19,926	0.9	211,536	2,076	1.0	239,792	2,616	1.1	332,379	3,452	1.0
2021	179,967	1,792	1.0	85,513	588	0.7	2,151,071	20,820	1.0	205,720	2,153	1.0	233,067	2,697	1.2	323,460	3,607	1.1
2022	173,957	1,887	1.1	87,090	620	0.7	2,102,904	21,674	1.0	200,293	2,243	1.1	225,613	2,786	1.2	315,089	3,764	1.2
2023	168,488	1,981	1.2	86,357	739	0.9	2,058,859	22,985	1.1	193,668	2,360	1.2	219,627	2,980	1.4	307,573	4,052	1.3
2024	162,731	2,090	1.3	85,511	812	0.9	2,011,334	24,161	1.2	187,323	2,458	1.3	213,611	3,193	1.5	299,234	4,258	1.4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표 1-1-15〉 장애아동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전체 아동	장애 아동	%
2008	397,772	2,977	0.7	392,582	3,021	0.8	528,687	4,157	0.8	719,258	5,006	0.7	134,927	1,232	0.9
2009	387,946	3,279	0.8	380,970	3,165	0.8	511,529	4,341	0.8	704,295	5,232	0.7	132,078	1,312	1.0
2010	378,306	3,315	0.9	369,238	3,055	0.8	496,897	4,290	0.9	689,581	5,178	0.8	129,664	1,298	1.0
2011	369,200	3,267	0.9	359,112	2,987	0.8	485,334	4,224	0.9	674,667	5,043	0.7	127,407	1,253	1.0
2012	359,087	3,174	0.9	348,993	2,869	0.8	472,798	4,091	0.9	659,198	4,955	0.8	125,766	1,274	1.0
2013	347,912	3,160	0.9	337,216	2,801	0.8	458,739	4,139	0.9	641,986	4,840	0.8	124,373	1,279	1.0
2014	336,820	3,053	0.9	326,307	2,733	0.8	445,197	4,067	0.9	626,181	4,741	0.8	123,475	1,268	1.0
2015	326,202	3,006	0.9	317,374	2,707	0.9	433,483	3,983	0.9	611,250	4,745	0.8	123,112	1,279	1.0
2016	315,083	3,008	1.0	307,644	2,694	0.9	422,489	3,847	0.9	595,702	4,754	0.8	123,006	1,282	1.0
2017	302,482	3,004	1.0	295,837	2,674	0.9	408,233	3,858	0.9	579,947	4,812	0.8	122,440	1,274	1.0
2018	287,479	2,960	1.0	281,867	2,700	1.0	390,774	3,842	1.0	558,471	4,883	0.9	120,247	1,304	1.1
2019	274,429	3,009	1.1	270,670	2,730	1.0	377,416	3,961	1.0	540,294	5,003	0.9	117,818	1,322	1.1
2020	263,774	2,980	1.1	261,470	2,720	1.0	365,104	3,996	1.1	523,311	5,172	1.0	116,257	1,363	1.2
2021	253,190	3,069	1.2	252,214	2,820	1.1	353,786	4,123	1.2	505,713	5,398	1.1	114,426	1,425	1.2
2022	243,091	3,159	1.3	243,378	2,937	1.2	341,137	4,371	1.3	486,669	5,625	1.2	112,139	1,571	1.4
2023	233,870	3,311	1.4	235,793	3,110	1.3	327,216	4,598	1.4	469,249	5,898	1.3	109,027	1,698	1.6
2024	224,838	3,487	1.6	228,107	3,233	1.4	314,754	4,792	1.5	452,106	6,144	1.4	105,247	1,781	1.7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임

2)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3)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4) 비율은 '장애아동 인구/전체 아동 인구'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행정안전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1.)

〈표 1-1-16〉 장애아동 현황(2024)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90,070	2,881	8,773	1,787	3,398	4,551	39,221	28,220	15	166	217	35	362	23	160	261
	100.0	3.2	9.7	2.0	3.8	5.1	43.5	31.3	0.0	0.2	0.2	0.0	0.4	0.0	0.2	0.3
남	60,878	1,399	4,956	1,027	1,800	3,137	25,487	22,426	8	100	134	25	147	11	84	137
	100.0	2.3	8.1	1.7	3.0	5.2	41.9	36.8	0.0	0.2	0.2	0.0	0.2	0.0	0.1	0.2
여	29,192	1,482	3,817	760	1,598	1,414	13,734	5,794	7	66	83	10	215	12	76	124
	100.0	5.1	13.1	2.6	5.5	4.8	47.0	19.8	0.0	0.2	0.3	0.0	0.7	0.0	0.3	0.4
0-13세	63,222	1,378	6,816	1,044	2,354	4,346	23,967	22,568	-	79	154	15	231	15	112	143
	100.0	2.2	10.8	1.7	3.7	6.9	37.9	35.7	-	0.1	0.2	0.0	0.4	0.0	0.2	0.2
14-17세	26,848	1,503	1,957	743	1,044	205	15,254	5,652	15	87	63	20	131	8	48	118
	100.0	5.6	7.3	2.8	3.9	0.8	56.8	21.1	0.1	0.3	0.2	0.1	0.5	0.0	0.2	0.4
심한 장애	78,493	844	5,797	547	2,255	1,065	39,221	28,220	13	56	171	22	-	13	37	232
	100.0	1.1	7.4	0.7	2.9	1.4	50.0	36.0	0.0	0.1	0.2	0.0	-	0.0	0.0	0.3
심하지 않은 장애	11,577	2,037	2,976	1,240	1,143	3,486	-	-	2	110	46	13	362	10	123	29
	100.0	17.6	25.7	10.7	9.9	30.1	-	-	0.0	1.0	0.4	0.1	3.1	0.1	1.1	0.3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

2) 장애아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정의함

3) 장애정도에서 '심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3급, '심하지 않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4~6급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24). 「장애인 등록 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 2024년 기준 장애아동 수는 90,070명으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4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로는 남자가 60,878명으로 여자 29,192명에 비해 31,686명 더 많음(약 2.1배)
- 연령별로는 0-13세가 63,222명으로 14-17세 26,848명에 비해 36,374명 더 많음(약 2.4배)
- 장애정도별로는 심한 장애가 78,493명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 11,577명에 비해 66,916명 더 많음(약 6.8배)



(5)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표 1-1-17〉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등록장애인 수	65세 이상 장애인구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전체인구 고령화 수준
2007	2,104,889	688,884	32.7	9.9
2008	2,246,965	771,814	34.3	10.2
2009	2,429,547	869,059	35.8	10.6
2010	2,517,312	934,634	37.1	10.9
2011	2,519,241	957,824	38.0	11.2
2012	2,511,159	987,251	39.3	11.7
2013	2,501,112	1,009,721	40.4	12.2
2014	2,494,460	1,033,308	41.4	12.7
2015	2,490,406	1,053,364	42.3	13.1
2016	2,511,051	1,089,316	43.4	13.5
2017	2,545,637	1,149,910	45.2	14.2
2018	2,585,850	1,206,467	46.7	14.8
2019	2,618,724	1,263,791	48.3	15.5
2020	2,632,328	1,314,042	49.9	16.4
2021	2,642,922	1,355,712	51.3	17.1
2022	2,643,696	1,393,706	52.7	18.0
2023	2,633,262	1,417,843	53.8	19.0
2024	2,631,356	1,455,782	55.3	20.0

주: 1) 인구수는 각 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은 전체인구수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용어조회 '고령화율')이므로 전체 등록장애인구 대비 65세 이상 장애인구로 비율을 구성하였음

3)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 = 당해연도 65세 이상 장애인구/당해연도 전체 등록장애인

자료: 1)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2.)

2) 행정안전부(각 년도), 「고령인구비율(시도)」,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5.22.)

- 2024년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455,782명으로, 장애인의 고령화 수준은 55.3%임. 이는 전체 인구 고령화 수준 20.0%에 비해 35.3%p 높은 수치임

• 장애인구 중 약 55%가 노인이라는 의미는 노인이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만, 고령화 수준 측면만 고려할 때 이미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고령화는 1956년 UN회의에서 처음으로 채택 사용된 용어로 각 국가의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져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와 충격을 줄 만큼 기형적인 연령 구조를 말함.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 함(권혁남, 전상길, 2009, 고령자의 고용장애 요인과 고령인구 활용에 관한 국가별 전략 연구, 국제 지역연구 18권 2호, 여름 p.39-78)

〈표 1-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지역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2007	346,275	107,798	31.1	148,145	43,980	29.7	100,082	29,005	29.0	108,823	29,715	27.3	57,280	18,366	32.1	59,978	18,309	30.5
2008	368,955	121,014	32.8	156,966	49,195	31.3	106,448	32,521	30.6	116,697	33,761	28.9	61,575	20,544	33.4	64,348	20,588	32.0
2009	401,638	137,934	34.3	168,493	55,802	33.1	113,509	36,164	31.9	126,878	38,493	30.3	66,191	22,983	34.7	68,884	22,893	33.2
2010	414,522	149,235	36	172,765	59,590	34.5	117,141	38,772	33.1	131,815	41,673	31.6	68,518	24,528	35.8	71,164	24,522	34.5
2011	411,570	153,042	37.2	171,729	61,172	35.6	117,183	39,660	33.8	132,732	43,409	32.7	68,675	25,120	36.6	71,626	25,244	35.2
2012	407,528	157,861	38.7	170,743	63,415	37.1	116,839	40,917	35.0	133,467	45,579	34.2	68,534	25,907	37.8	71,647	26,056	36.4
2013	403,435	161,812	40.1	169,750	65,711	38.7	116,567	42,226	36.2	133,778	47,205	35.3	68,372	26,470	38.7	71,441	26,602	37.2
2014	398,908	165,049	41.4	168,663	67,829	40.2	115,983	43,342	37.4	133,855	48,744	36.4	68,288	26,953	39.5	71,198	27,089	38.0
2015	393,245	166,807	42.4	168,084	69,592	41.4	115,694	44,280	38.3	134,191	50,204	37.4	68,079	27,272	40.1	70,890	27,712	39.1
2016	391,027	170,403	43.6	168,950	72,493	42.9	117,111	46,588	39.8	135,623	52,194	38.5	68,569	28,086	41.0	71,425	28,767	40.3
2017	391,753	178,153	45.5	171,384	77,669	45.3	119,766	50,780	42.4	138,304	56,064	40.5	69,233	29,280	42.3	72,180	30,326	42.0
2018	392,911	184,850	47.0	173,819	82,170	47.3	123,068	55,151	44.8	141,769	60,165	42.4	69,884	30,116	43.1	72,927	31,555	43.3
2019	394,804	192,480	48.8	175,370	86,350	49.2	125,482	58,915	47.0	144,565	64,260	44.5	70,175	30,938	44.1	73,215	32,719	44.7
2020	394,001	199,455	50.6	176,258	90,292	51.2	126,383	61,883	49.0	146,296	68,197	46.6	70,054	31,664	45.2	72,840	33,540	46.0
2021	391,609	204,269	52.2	176,361	93,507	53.0	127,245	64,584	50.8	148,575	72,155	48.6	69,801	32,205	46.1	72,461	34,213	47.2
2022	389,620	209,255	53.7	175,858	96,173	54.7	127,332	66,631	52.3	150,670	76,054	50.5	69,388	32,671	47.1	71,858	34,776	48.4
2023	387,448	213,035	55.0	175,062	98,294	56.1	130,288	70,410	54.0	151,782	79,155	52.2	69,202	33,203	48.0	71,342	35,148	49.3
2024	386,316	218,676	56.6	174,256	100,815	57.9	130,674	73,095	55.9	152,707	82,204	53.8	69,175	34,042	49.2	71,344	36,272	50.8

주: 1) 등록장애인 수는 각 년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비율은 고령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등록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018년~2023년 자료 정정에 따라 재분석함)

- 2024년 기준 지역별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을 살펴보면, 전남이 61.0%로 가장 높고, 경북 60.3%, 전북 59.7%, 강원 58.9% 순으로 높음. 반면, 세종은 고령화 수준이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 연도별 장애인구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고령화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표 1-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2007	40,758	11,182	27.4	-	-	-	407,247	120,233	29.5	85,594	31,238	36.5	79,826	27,680	34.7	107,895	39,542	36.6
2008	44,402	12,649	28.5	-	-	-	435,698	135,305	31.1	91,448	35,112	38.4	85,097	30,989	36.4	116,908	44,918	38.4
2009	47,210	13,919	29.5	-	-	-	477,021	153,730	32.2	97,604	38,837	39.8	90,958	34,534	38.0	125,556	50,272	40.0
2010	49,013	15,055	30.7	-	-	-	500,704	168,005	33.6	101,067	42,076	41.6	94,654	37,388	39.5	130,646	53,978	41.3
2011	48,926	15,364	31.4	-	-	-	505,052	174,078	34.5	101,283	43,221	42.7	94,855	38,121	40.2	131,108	54,977	41.9
2012	48,982	16,027	32.7	7,081	3,026	42.7	505,519	180,483	35.7	100,579	44,250	44.0	94,137	38,741	41.2	124,872	53,715	43.0
2013	48,950	16,608	33.9	7,202	3,107	43.1	506,464	185,811	36.7	99,660	44,692	44.8	93,563	39,054	41.7	124,561	54,703	43.9
2014	49,014	17,124	34.9	7,943	3,416	43.0	508,330	191,266	37.6	98,970	45,265	45.7	93,612	39,699	42.4	124,721	56,112	45.0
2015	49,326	17,825	36.1	9,079	3,840	42.3	512,882	197,161	38.4	98,324	45,596	46.4	93,536	40,219	43.0	124,801	57,151	45.8
2016	49,533	18,553	37.5	9,845	4,188	42.5	522,437	205,377	39.3	98,928	46,730	47.2	94,688	41,698	44.0	126,406	59,325	46.9
2017	50,205	19,809	39.5	10,623	4,613	43.4	533,259	218,781	41.0	99,959	48,997	49.0	95,844	43,648	45.5	128,503	62,231	48.4
2018	50,640	20,850	41.2	11,404	4,956	43.5	547,378	232,279	42.4	100,693	50,667	50.3	97,086	45,475	46.8	131,908	66,046	50.1
2019	51,013	21,793	42.7	12,046	5,332	44.3	559,796	246,574	44.0	101,480	52,593	51.8	97,686	46,986	48.1	133,717	69,080	51.7
2020	51,112	22,776	44.6	12,346	5,573	45.1	569,491	260,738	45.8	101,607	54,244	53.4	97,916	48,455	49.5	134,222	71,136	53.0
2021	51,297	23,690	46.2	12,628	5,796	45.9	578,120	272,982	47.2	101,675	55,653	54.7	97,788	49,606	50.7	134,696	72,707	54.0
2022	51,306	24,547	47.8	12,829	5,990	46.7	582,359	283,870	48.7	101,498	57,080	56.2	97,734	51,104	52.3	134,527	74,091	55.1
2023	51,210	25,159	49.1	12,908	6,007	46.5	583,750	291,799	50.0	100,321	57,559	57.4	96,884	51,510	53.2	133,686	74,628	55.8
2024	51,055	25,843	50.6	12,993	6,151	47.3	587,910	303,055	51.5	99,542	58,584	58.9	96,694	52,653	54.5	133,136	75,726	56.9

주: 1) 등록장애인 수는 각 연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비율은 고령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등록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018년~2023년 자료 정정에 따라 재분석함)

〈표 1-1-18〉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 - 지역별, 연도별(계속)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전체	65세 이상	%
2007	116,141	45,794	39.4	125,731	53,423	42.5	143,009	53,539	37.4	151,785	50,013	32.9	26,320	9,067	34.4
2008	120,481	49,420	41.0	134,898	59,490	44.1	151,898	59,635	39.3	162,753	56,214	34.5	28,393	10,459	36.8
2009	130,807	55,404	42.4	144,039	65,634	45.6	164,885	67,366	40.9	175,198	63,222	36.1	30,676	11,872	38.7
2010	134,235	58,458	43.5	147,918	69,718	47.1	170,396	71,420	41.9	180,880	67,394	37.3	31,874	12,822	40.2
2011	134,239	59,822	44.6	146,524	70,125	47.9	170,479	72,341	42.4	181,044	68,909	38.1	32,216	13,219	41.0
2012	133,054	61,140	46.0	145,788	71,853	49.3	169,699	74,151	43.7	180,285	70,513	39.1	32,405	13,617	42.0
2013	132,006	61,864	46.9	144,324	72,455	50.2	168,836	75,577	44.8	179,530	72,009	40.1	32,673	13,965	42.7
2014	130,932	62,610	47.8	143,128	73,397	51.3	168,650	77,305	45.8	179,276	73,848	41.2	32,989	14,260	43.2
2015	129,769	63,387	48.8	141,837	73,927	52.1	168,089	78,400	46.6	179,070	75,347	42.1	33,510	14,644	43.7
2016	130,345	65,025	49.9	141,578	75,357	53.2	169,643	81,079	47.8	180,665	78,246	43.3	34,278	15,207	44.4
2017	131,303	67,278	51.2	142,174	77,527	54.5	172,533	86,018	49.9	183,510	82,735	45.1	35,104	16,001	45.6
2018	131,746	68,860	52.3	142,213	78,573	55.3	176,550	91,551	51.9	186,014	86,516	46.5	35,840	16,687	46.6
2019	132,361	71,093	53.7	141,883	79,767	56.2	180,888	97,412	53.9	187,956	90,193	48.0	36,287	17,306	47.7
2020	132,183	73,078	55.3	140,929	80,852	57.4	181,322	100,564	55.5	188,713	93,630	49.6	36,655	17,965	49.0
2021	132,010	74,485	56.4	139,831	81,252	58.1	182,452	103,581	56.8	189,499	96,691	51.0	36,874	18,336	49.7
2022	131,544	75,745	57.6	138,300	81,639	59.0	182,180	105,715	58.0	189,569	99,605	52.5	37,124	18,760	50.5
2023	129,964	75,826	58.3	136,269	81,462	59.8	177,997	104,778	58.9	188,250	101,082	53.7	36,899	18,788	50.9
2024	128,993	76,991	59.7	134,551	82,084	61.0	177,436	107,048	60.3	187,756	103,489	55.1	36,818	19,054	51.8

주: 1) 등록장애인 수는 각 연도 말 기준이며, 연령별 통계는 2007년부터 생산되었음
 2) 비율은 고령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등록현황"을 저자가 가공함 (2018년~2023년 자료 정정에 따라 재분석함)



〈표 1-1-19〉 장애인구의 고령화 수준 및 현황(2024) -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체	2,631,356	1,132,644	234,703	246,182	442,034	22,389	233,322	47,350	103,215	111,084	4,781	10,512	16,098	2,756	17,397	6,889
65세 이상	1,455,782	677,700	138,006	141,476	368,051	8,912	15,818	5	23,550	51,292	2,219	7,383	6,745	885	12,470	1,270
	(55.3)	(59.8)	(58.8)	(57.5)	(83.3)	(39.8)	(6.8)	(0.0)	(22.8)	(46.2)	(46.4)	(70.2)	(41.9)	(32.1)	(71.7)	(18.4)
	100.0	46.6	9.5	9.7	25.3	0.6	1.1	0.0	1.6	3.5	0.2	0.5	0.5	0.1	0.9	0.1
65세-74세	618,510	323,660	63,362	59,006	89,414	4,949	12,331	5	18,950	29,425	1,160	4,187	5,436	539	5,031	1,055
	100.0	52.3	10.2	9.5	14.5	0.8	2.0	0.0	3.1	4.8	0.2	0.7	0.9	0.1	0.8	0.2
75세 이상	837,272	354,040	74,644	82,470	278,637	3,963	3,487	-	4,600	21,867	1,059	3,196	1,309	346	7,439	215
	100.0	42.3	8.9	9.8	33.3	0.5	0.4	-	0.5	2.6	0.1	0.4	0.2	0.0	0.9	0.0
남	733,867	322,986	72,282	74,483	189,525	6,167	8,397	2	9,672	29,643	1,457	5,746	4,697	465	7,712	633
	100.0	44.0	9.8	10.1	25.8	0.8	1.1	0.0	1.3	4.0	0.2	0.8	0.6	0.1	1.1	0.1
여	721,915	354,714	65,724	66,993	178,526	2,745	7,421	3	13,878	21,649	762	1,637	2,048	420	4,758	637
	100.0	49.1	9.1	9.3	24.7	0.4	1.0	0.0	1.9	3.0	0.1	0.2	0.3	0.1	0.7	0.1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

2) ()는 고령화 수준으로,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장애인현황」, 통계청 KOSIS (자료인출일: 2025.6.5.)

- 2024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고령화 수준을 살펴보면, 청각장애가 83.3%로 가장 높고, 장루·요루장애 71.7%, 호흡기장애 70.2%, 지체장애 59.8% 등의 순임
- 2024년 기준으로 고령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6.6%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 25.3%, 시각장애 9.7%, 뇌병변장애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837,272명으로 65-74세 618,510명 보다 218,762명 더 많음. 특히 75세 이상 고령장애인 중 청각장애가 33.3%로 높은 편임
 - 성별로는 남성이 733,867명으로 여성 721,915명 보다 11,952명 더 많음

6) 장애정도심사

〈표 1-1-20〉 장애정도심사 - 연도별

(단위: 건, %)

구 분	총계	장애정도결정			미해당	확인 불가	결정 보류
		소계	심한	심하지 않은			
누계	3,526,173 (100.0)	2,971,121 (84.3)	1,634,777 (46.4)	1,336,344 (37.9)	502,340 (14.2)	7,851 (0.2)	44,861 (1.3)
2007 (0.4)	15,204 (100.0)	14,414 (94.8)	13,874 (91.3)	540 (3.6)	370 (2.4)	29 (0.2)	391 (2.6)
2008 (0.8)	26,683 (100.0)	25,113 (94.1)	23,697 (88.8)	1,416 (5.3)	811 (3.0)	71 (0.3)	688 (2.6)
2009 (1.1)	37,230 (100.0)	35,365 (95.0)	33,581 (90.2)	1,784 (4.8)	917 (2.5)	154 (0.4)	794 (2.1)
2010 (4.6)	163,943 (100.0)	152,058 (92.8)	136,134 (83.0)	15,924 (9.7)	7,996 (4.9)	837 (0.5)	3,052 (1.9)
2011 (6.0)	211,371 (100.0)	169,602 (80.2)	111,850 (52.9)	57,752 (27.3)	36,653 (17.3)	1,325 (0.6)	3,791 (1.8)
2012 (6.8)	239,854 (100.0)	192,724 (80.4)	113,568 (47.3)	79,156 (33.0)	42,105 (17.6)	762 (0.3)	4,263 (1.8)
2013 (6.6)	232,655 (100.0)	189,433 (81.4)	111,898 (48.1)	77,535 (33.3)	39,102 (16.8)	656 (0.3)	3,464 (1.5)
2014 (6.7)	237,548 (100.0)	194,901 (82.0)	118,091 (49.7)	76,810 (32.3)	38,406 (16.2)	768 (0.3)	3,473 (1.5)
2015 (6.4)	226,931 (100.0)	189,156 (83.4)	114,087 (50.3)	75,069 (33.1)	34,502 (15.2)	289 (0.1)	2,984 (1.3)
2016 (6.7)	236,419 (100.0)	200,616 (84.9)	102,999 (43.6)	97,617 (41.3)	33,208 (14.0)	130 (0.1)	2,465 (1.0)
2017 (6.7)	237,330 (100.0)	203,844 (85.9)	96,360 (40.6)	107,484 (45.3)	31,021 (13.1)	227 (0.1)	2,238 (0.9)
2018 (7.2)	253,075 (100.0)	216,230 (85.4)	95,393 (37.7)	120,837 (47.7)	34,016 (13.4)	318 (0.1)	2,511 (1.0)
2019 (7.3)	256,154 (100.0)	215,778 (84.2)	96,952 (37.8)	118,826 (46.4)	36,761 (14.4)	572 (0.2)	3,043 (1.2)
2020 (6.6)	231,502 (100.0)	194,948 (84.2)	94,080 (40.6)	100,868 (43.6)	33,615 (14.5)	431 (0.2)	2,508 (1.1)
2021 (6.6)	234,295 (100.0)	198,037 (84.5)	93,978 (40.1)	104,059 (44.4)	33,532 (14.3)	370 (0.2)	2,356 (1.0)
2022 (6.4)	226,440 (100.0)	193,155 (85.3)	94,641 (41.8)	98,514 (43.5)	30,733 (13.6)	346 (0.2)	2,206 (1.0)
2023 (7.0)	246,581 (100.0)	210,949 (85.5)	109,151 (44.3)	101,798 (41.3)	32,966 (13.4)	303 (0.1)	2,363 (1.0)
2024 (6.0)	212,958 (100.0)	174,798 (82.1)	74,443 (35.0)	100,355 (47.1)	35,626 (16.7)	263 (0.1)	2,271 (1.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총계는 누계를 의미함

3)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연도 하단에 표기한 ()는 전체 장애정도심사 총계 대비 연도별 비율을 의미함

5) 장애정도 결정에서 '심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3급, '심하지 않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4-6급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장애정도심사 건수는 212,958건임. 심사결과별로 살펴보면, '장애정도결정'은 82.1%, '미해당'은 16.7%로 나타남
-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정도심사 건수는 총 3,526,173건이며, 이 중 84.3%(2,971,121명)가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장애정도 결정 건수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100,355건으로 심한 장애인 74,443건보다 25,912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21〉 장애정도심사(2024) - 장애유형별

(단위: 건, %)

구분	총계	장애정도결정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소계	심한	심하지 않은			
전체	212,958 (100.0)	174,798 (82.1)	74,443 (35.0)	100,355 (47.1)	35,626 (16.7)	263 (0.1)	2,271 (1.1)
뇌병변 (16.8)	35,820 (100.0)	30,361 (84.8)	13,974 (39.0)	16,387 (45.7)	5,010 (14.0)	15 (0.0)	434 (1.2)
지체 (19.9)	42,318 (100.0)	28,610 (67.6)	4,084 (9.7)	24,526 (58.0)	13,418 (31.7)	24 (0.1)	266 (0.6)
정신 (8.5)	18,183 (100.0)	14,804 (81.4)	13,447 (74.0)	1,357 (7.5)	3,007 (16.5)	14 (0.1)	358 (2.0)
지적 (7.7)	16,400 (100.0)	13,600 (82.9)	13,600 (82.9)	-	2,663 (16.2)	133 (0.8)	4 (0.0)
신장 (6.8)	14,555 (100.0)	14,543 (99.9)	13,931 (95.7)	612 (4.2)	7 (0.0)	-	5 (0.0)
시각 (7.1)	15,138 (100.0)	12,940 (85.5)	2,253 (14.9)	10,687 (70.6)	1,874 (12.4)	26 (0.2)	298 (2.0)
청각 (22.5)	47,913 (100.0)	41,466 (86.5)	1,559 (3.3)	39,907 (83.3)	6,251 (13.0)	25 (0.1)	171 (0.4)
자폐성 (4.0)	8,545 (100.0)	7,294 (85.4)	7,294 (85.4)	-	1,245 (14.6)	3 (0.0)	3 (0.0)
뇌전증 (1.0)	2,132 (100.0)	1,365 (64.0)	253 (11.9)	1,112 (52.2)	468 (22.0)	-	299 (14.0)
호흡기 (1.2)	2,645 (100.0)	2,231 (84.3)	2,139 (80.9)	92 (3.5)	345 (13.0)	21 (0.8)	48 (1.8)
언어 (1.9)	4,001 (100.0)	3,150 (78.7)	1,199 (30.0)	1,951 (48.8)	556 (13.9)	2 (0.0)	293 (7.3)
장루·요루 (1.3)	2,672 (100.0)	2,621 (98.1)	172 (6.4)	2,449 (91.7)	27 (1.0)	-	24 (0.9)
심장 (0.5)	1,019 (100.0)	462 (45.3)	348 (34.2)	114 (11.2)	515 (50.5)	-	42 (4.1)
간 (0.7)	1,424 (100.0)	1,218 (85.5)	180 (12.6)	1,038 (72.9)	180 (12.6)	-	26 (1.8)
안면 (0.1)	193 (100.0)	133 (68.9)	10 (5.2)	123 (63.7)	60 (31.1)	-	-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

2) 총계는 누계를 의미함

3) %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장애유형 하단에 표기한 ()는 전체 장애정도심사 총계 대비 장애유형별 비율을 의미함

5) 장애정도 결정에서 '심한'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1-3급, '심하지 않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4-6급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심사 건수를 살펴보면, 청각장애가 22.5%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19.9%, 뇌병변장애 16.8%, 정신장애 8.5%, 지적장애 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장애(45.3%), 뇌전증장애(64.0%), 지체장애(67.6%), 안면장애(68.9%)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장애를 인정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신장장애(99.9%), 장루·요루 장애(98.1)의 장애인정률은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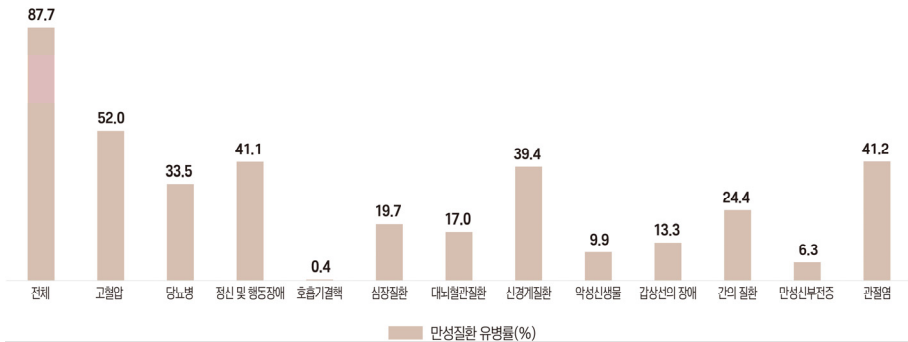
※※ 장애정도심사: 2007년 4월 중증장애인 장애판정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정도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 2007년 4월부터 의사중심의 장애정도심사 체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재심사로 변경됨

2. 건강 및 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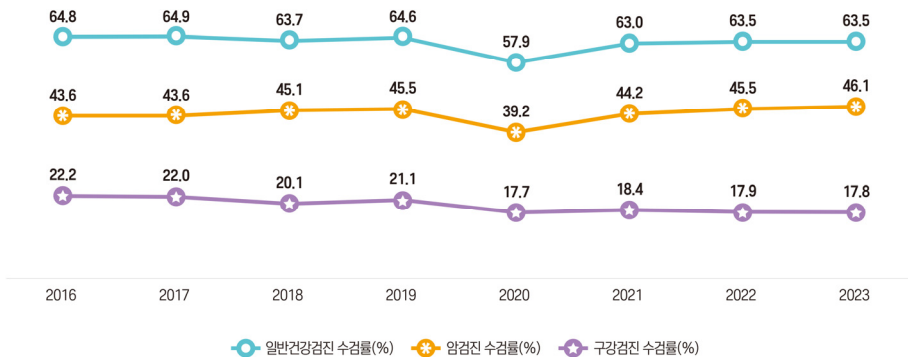
[그림 2-2-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2022년) - 만성질환 유형별



[그림 2-2-2]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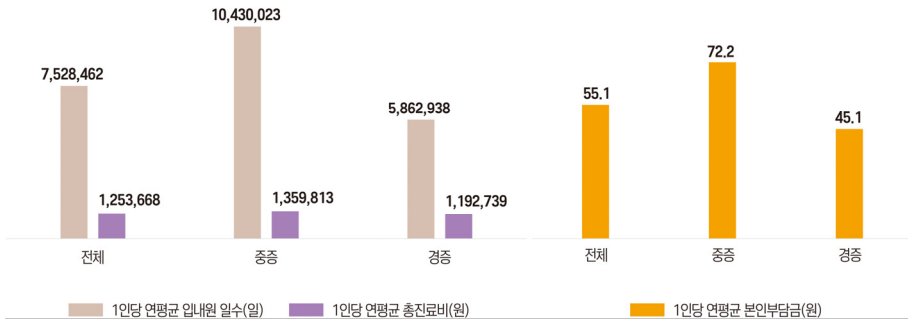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임
- 만성질환 유형별로는 고혈압 유병률이 5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절염 41.2%, 정신 및 행동장애 4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호흡기질환 유병률은 0.4%로 가장 낮음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5%, 암검진 수검률은 46.1%, 구강검진 수검률은 17.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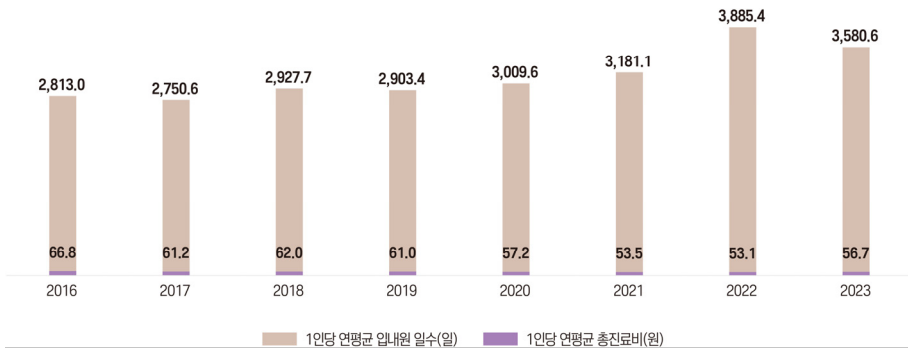
[그림 2-2-3]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2022년)



[그림 2-2-4]

장애인 조사망률 및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연도별



- 2022년 기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55.1일이며,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7,528,462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253,668원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인이 경증 장애인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더 크게 나타남
- 2023년 기준, 장애인 조사망률은 3,581.6명이고, 고의적 자해로 인한 조사망률은 56.7명임
- 전년 대비 장애인 조사망률은 감소하였으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증가함

1) 건강상태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표 2-1-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1.2	89.9	46.0	85.0	92.3	74.2	48.4	28.3
	일부 지원필요	12.2	6.8	25.0	12.2	4.5	14.6	40.3	51.4
	상당 지원필요	4.5	2.3	17.0	2.4	2.4	5.6	9.3	17.8
	전적 지원필요	2.0	1.0	11.9	0.3	0.7	5.7	2.0	2.6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75.5	84.9	34.8	83.5	84.6	69.6	43.2	22.4
	일부 지원필요	13.3	8.8	23.6	11.3	9.1	11.9	38.3	34.9
	상당 지원필요	7.6	4.3	23.7	4.5	4.9	11.4	13.8	31.0
	전적 지원필요	3.6	2.0	17.8	0.7	1.4	7.1	4.6	11.7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9.3	96.7	67.6	94.0	95.0	82.2	61.9	36.0
	일부 지원필요	7.1	2.2	15.9	4.7	3.4	8.2	29.8	46.8
	상당 지원필요	2.1	0.6	7.9	1.0	0.7	6.0	6.2	12.7
	전적 지원필요	1.6	0.6	8.5	0.3	0.9	3.5	2.0	4.5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7.9	99.2	87.5	99.3	99.3	94.7	97.4	96.8
	일부 지원필요	1.2	0.6	5.8	0.7	0.3	3.7	1.6	2.4
	상당 지원필요	0.4	0.1	2.8	0.0	0.3	0.4	0.4	0.8
	전적 지원필요	0.5	0.1	3.9	0.0	0.1	1.2	0.6	0.0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1.2	96.4	68.0	90.5	96.5	88.7	80.4	62.5
	일부 지원필요	6.2	2.8	17.5	8.5	2.4	5.1	14.6	33.6
	상당 지원필요	1.6	0.5	8.4	1.0	0.6	4.0	3.5	2.4
	전적 지원필요	1.0	0.3	6.2	0.0	0.5	2.1	1.5	1.5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5.6	97.0	77.1	99.0	97.9	95.1	97.7	99.2
	일부 지원필요	2.3	1.9	10.7	0.7	1.4	2.4	1.0	0.8
	상당 지원필요	1.1	0.6	6.1	0.2	0.4	0.8	0.5	0.0
	전적 지원필요	1.0	0.6	6.2	0.0	0.2	1.8	0.9	0.0
움거 앉기	지원 불필요	92.7	94.2	68.2	96.2	96.5	91.8	97.2	97.4
	일부 지원필요	4.0	3.4	14.1	3.0	2.5	4.1	1.5	2.6
	상당 지원필요	1.8	1.3	9.6	0.8	0.7	1.5	0.2	0.0
	전적 지원필요	1.5	1.0	8.1	0.0	0.4	2.7	1.1	0.0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5.0	96.2	76.9	98.6	98.0	93.3	96.9	96.3
	일부 지원필요	2.9	2.4	12.0	0.9	1.4	4.3	1.6	3.7
	상당 지원필요	1.0	0.7	4.9	0.5	0.4	2.0	0.5	0.0
	전적 지원필요	1.1	0.6	6.3	0.0	0.2	0.4	1.1	0.0
보행	지원 불필요	77.0	78.3	36.8	81.0	82.9	80.9	86.5	85.9
	일부 지원필요	15.0	15.1	32.1	12.7	13.9	11.9	8.8	11.2
	상당 지원필요	4.2	3.4	14.1	4.7	2.1	2.4	2.8	2.4
	전적 지원필요	3.7	3.2	17.0	1.5	1.0	4.8	1.9	0.5
이동	지원 불필요	69.9	75.2	31.0	75.7	78.3	74.4	54.7	40.1
	일부 지원필요	17.3	16.0	28.0	12.9	15.8	14.7	25.4	24.1
	상당 지원필요	8.2	4.8	21.7	9.1	4.3	4.5	16.3	31.5
	전적 지원필요	4.7	4.0	19.3	2.3	1.6	6.4	3.6	4.3
배변	지원 불필요	89.8	95.4	67.5	96.0	95.6	85.8	74.5	52.0
	일부 지원필요	5.0	2.3	11.5	24.0	2.5	6.2	17.5	32.9
	상당 지원필요	2.3	1.1	8.2	1.1	0.8	4.2	5.4	12.1
	전적 지원필요	2.8	1.2	12.7	0.6	1.1	3.9	2.6	3.0
배뇨	지원 불필요	91.5	95.9	68.6	96.2	95.6	88.6	83.2	72.3
	일부 지원필요	3.9	1.5	11.4	2.4	2.7	3.9	10.6	20.9
	상당 지원필요	2.0	1.2	7.3	1.0	0.6	3.9	3.8	4.8
	전적 지원필요	2.6	1.4	12.7	0.4	1.1	3.7	2.4	2.0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만 6세 이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80-281.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 불필요에 응답한 비율에서 '이동'이 69.9%, '목욕하기'가 75.5%, '보행'이 77.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4.5	90.3	91.0	87.7	97.4	97.7	85.9
	일부 지원필요	13.1	6.6	6.9	10.1	2.0	2.3	11.9
	상당 지원필요	1.6	2.2	2.2	1.4	0.3	0.0	1.3
	전적 지원필요	0.8	0.9	0.0	0.8	0.4	0.0	0.9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80.9	83.0	83.5	76.8	97.9	96.0	80.2
	일부 지원필요	13.2	9.2	11.6	16.3	0.5	4.0	7.2
	상당 지원필요	4.3	5.9	4.5	5.5	0.9	0.0	11.5
	전적 지원필요	1.5	1.9	0.4	1.3	0.7	0.0	1.0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9.2	94.8	97.0	92.9	98.5	98.6	89.4
	일부 지원필요	8.5	3.6	3.0	4.8	0.9	1.4	2.5
	상당 지원필요	1.5	0.8	0.0	2.3	0.2	0.0	7.7
	전적 지원필요	0.8	0.9	0.0	0.0	0.5	0.0	0.4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9.4	99.3	99.2	97.6	99.4	98.6	97.8
	일부 지원필요	0.0	0.6	0.8	1.7	0.2	1.4	1.7
	상당 지원필요	0.0	0.0	0.0	0.6	0.4	0.0	0.5
	전적 지원필요	0.6	0.2	0.0	0.0	0.0	0.0	0.0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3.6	95.3	98.1	96.9	99.4	99.0	90.8
	일부 지원필요	4.8	3.5	1.9	1.4	0.2	1.0	8.4
	상당 지원필요	1.0	0.8	0.0	1.7	0.0	0.0	0.9
	전적 지원필요	0.6	0.4	0.0	0.0	0.4	0.0	0.0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8.8	97.6	97.0	96.6	99.4	100.0	98.3
	일부 지원필요	0.0	1.1	3.0	1.7	0.0	0.0	0.1
	상당 지원필요	0.6	0.8	0.0	1.7	0.2	0.0	1.6
	전적 지원필요	0.6	0.5	0.0	0.0	0.4	0.0	0.0
움켜 앉기	지원 불필요	98.6	95.0	97.0	94.9	98.9	100.0	90.7
	일부 지원필요	0.1	2.9	3.0	3.6	0.5	0.0	7.7
	상당 지원필요	0.5	1.3	0.0	1.5	0.2	0.0	1.6
	전적 지원필요	0.9	0.9	0.0	0.0	0.4	0.0	0.0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8.8	96.7	99.2	95.4	99.4	100.0	91.9
	일부 지원필요	0.1	1.9	0.8	3.1	0.0	0.0	7.3
	상당 지원필요	0.8	0.7	0.0	1.5	0.2	0.0	0.9
	전적 지원필요	0.3	0.7	0.0	0.0	0.4	0.0	0.0
보행	지원 불필요	93.5	83.4	81.4	75.9	97.1	96.5	84.0
	일부 지원필요	4.1	10.9	16.7	18.6	2.0	3.5	6.7
	상당 지원필요	1.5	3.5	1.9	4.0	0.3	0.0	7.2
	전적 지원필요	0.9	2.2	0.0	1.5	0.6	0.0	2.1
이동	지원 불필요	78.8	78.7	74.5	66.7	96.8	95.1	78.9
	일부 지원필요	13.4	12.7	13.2	20.4	2.3	4.9	9.7
	상당 지원필요	6.9	5.6	11.2	9.9	0.3	0.0	9.2
	전적 지원필요	0.9	3.0	1.1	3.1	0.6	0.0	2.1
배변	지원 불필요	91.3	95.2	94.4	94.9	99.3	97.4	23.2
	일부 지원필요	5.5	2.9	4.0	2.9	0.2	2.6	4.6
	상당 지원필요	1.3	0.7	1.5	0.0	0.0	0.0	5.6
	전적 지원필요	1.9	1.2	0.0	2.2	0.6	0.0	66.6
배뇨	지원 불필요	93.3	95.4	98.2	95.2	993.0	98.6	58.1
	일부 지원필요	3.8	2.3	1.8	3.4	0.2	1.4	2.7
	상당 지원필요	1.0	0.9	0.0	0.0	0.0	0.0	10.5
	전적 지원필요	1.8	1.4	0.0	1.5	0.6	0.0	28.7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만 6세 이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80-281.

-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지원 불필요에 응답한 비율에서 '이동'이 69.9%, '목욕하기'가 75.5%, '보행'이 77.0%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옷 갈아입기	지원 불필요	81.2	81.6	80.7	31.1	70.5	86.9	82.7	61.6
	일부 지원필요	12.2	12.2	12.2	44.3	20.2	9.1	10.8	24.6
	상당 지원필요	4.5	4.5	4.5	17.9	5.6	2.6	4.7	9.0
	전적 지원필요	2.0	1.7	2.6	6.6	3.7	1.4	1.9	4.8
목욕하기	지원 불필요	75.5	77.4	72.7	23.5	67.6	85.0	74.2	55.7
	일부 지원필요	13.3	12.6	14.4	35.7	19.0	8.9	13.6	23.0
	상당 지원필요	7.6	6.9	8.4	28.4	7.7	3.8	8.7	13.1
	전적 지원필요	3.6	3.1	4.4	12.4	5.7	2.3	3.5	8.1
구강청결	지원 불필요	89.3	89.3	89.2	39.2	79.5	94.2	91.0	75.9
	일부 지원필요	7.1	7.4	6.6	44.4	13.1	3.8	5.8	15.7
	상당 지원필요	2.1	2.1	2.1	11.0	4.3	1.0	1.8	4.8
	전적 지원필요	1.6	1.2	2.1	5.4	3.0	1.0	1.4	3.6
음식물 넘기기	지원 불필요	97.9	98.3	97.3	93.2	97.0	98.5	97.9	95.2
	일부 지원필요	1.2	0.9	1.5	4.3	1.3	0.7	1.3	2.4
	상당 지원필요	0.4	0.4	0.5	0.5	1.1	0.3	0.3	1.0
	전적 지원필요	0.5	0.4	0.7	2.0	0.7	0.5	0.5	1.4
식사하기	지원 불필요	91.2	91.6	90.6	65.9	85.7	94.5	91.7	81.4
	일부 지원필요	6.2	6.1	6.3	24.9	9.3	3.7	6.0	12.3
	상당 지원필요	1.6	1.5	1.8	5.4	3.1	0.8	1.6	3.7
	전적 지원필요	1.0	0.8	1.3	3.8	2.0	1.0	0.7	2.6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지원 불필요	95.6	96.4	94.6	94.8	95.4	96.9	94.9	90.9
	일부 지원필요	2.3	2.0	2.8	3.1	1.2	1.6	3.0	4.2
	상당 지원필요	1.1	0.8	1.4	0.0	1.3	0.8	1.2	2.4
	전적 지원필요	1.0	0.9	1.2	2.1	2.1	0.8	0.9	2.5
움켜 앉기	지원 불필요	92.7	94.2	90.8	92.4	93.9	95.1	91.2	86.2
	일부 지원필요	4.0	3.2	5.0	3.3	2.3	2.4	5.3	6.3
	상당 지원필요	1.8	1.4	2.4	0.2	1.0	1.5	2.3	4.1
	전적 지원필요	1.5	1.2	1.9	4.2	2.7	1.0	1.3	3.4
앉은 자세 유지	지원 불필요	95.0	96.1	93.5	91.8	94.5	96.6	94.4	90.3
	일부 지원필요	2.9	2.3	3.8	5.6	2.8	1.7	3.5	5.1
	상당 지원필요	1.0	0.8	1.3	0.5	0.9	0.8	1.2	2.2
	전적 지원필요	1.1	0.8	1.4	2.2	1.8	0.9	0.9	2.5
보행	지원 불필요	77.0	81.8	70.5	79.0	86.9	85.1	70.3	67.6
	일부 지원필요	15.0	11.5	19.9	13.4	4.9	9.0	20.7	16.5
	상당 지원필요	4.2	3.6	5.1	2.8	2.9	2.8	5.4	7.2
	전적 지원필요	3.7	3.1	4.5	4.9	5.3	3.2	3.7	8.7
이동	지원 불필요	69.9	75.1	62.7	44.4	70.5	81.0	64.6	54.0
	일부 지원필요	17.3	13.9	22.0	24.9	13.7	10.7	21.4	20.5
	상당 지원필요	8.2	7.3	9.4	22.8	9.8	4.7	9.1	15.0
	전적 지원필요	4.7	3.8	5.9	7.9	6.0	3.5	4.9	10.4
배변	지원 불필요	89.8	90.7	88.7	54.3	82.6	94.4	90.5	78.8
	일부 지원필요	5.0	4.9	5.2	27.3	9.7	2.4	4.4	10.6
	상당 지원필요	2.3	2.2	2.4	10.8	4.4	1.3	2.0	5.1
	전적 지원필요	2.8	2.2	3.7	7.6	3.2	1.8	3.1	5.5
배뇨	지원 불필요	91.5	92.5	90.2	68.2	87.3	95.4	91.4	82.6
	일부 지원필요	3.9	3.7	4.0	20.1	6.0	2.0	3.7	8.0
	상당 지원필요	2.0	1.6	2.4	4.8	3.6	1.1	2.0	4.0
	전적 지원필요	2.6	2.1	3.4	7.0	3.1	1.6	2.9	5.5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만 6세 이상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99-602.

- 성별에 따른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주요 항목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17세 이하에서 지원불필요에 응답한 비율이 '목욕하기' 23.5%, '옷 갈아입기' 31.1%, '구강청결' 39.2%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이란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73.6	93.0	59.7	80.6	45.2	34.1	18.3
	일부 지원필요	16.1	5.1	19.8	13.0	38.9	32.5	24.7
	상당 지원필요	6.0	1.2	9.6	5.2	10.5	20.0	25.0
	전적 지원필요	4.3	0.8	10.9	1.2	5.5	13.4	32.0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69.4	83.3	37.5	76.5	73.4	51.7	8.5
	일부 지원필요	16.4	11.1	25.0	11.6	17.6	24.9	21.1
	상당 지원필요	8.3	3.3	17.2	7.9	5.6	13.4	28.4
	전적 지원필요	5.9	2.4	20.3	4.0	3.5	9.9	34.2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62.2	72.9	22.3	70.8	69.7	60.5	8.0
	일부 지원필요	19.3	17.0	24.8	13.9	18.2	23.1	18.6
	상당 지원필요	10.9	6.3	25.7	9.6	8.0	7.9	28.6
	전적 지원필요	7.6	3.8	27.2	5.6	4.2	8.5	42.4
청소*	지원 불필요	63.1	71.6	22.0	73.6	71.9	63.7	14.1
	일부 지원필요	20.3	18.4	26.7	13.0	17.7	20.8	22.9
	상당 지원필요	9.6	6.2	24.0	7.6	6.4	8.5	22.4
	전적 지원필요	7.0	3.8	27.2	5.8	4.0	6.9	30.8
발레하기*	지원 불필요	62.8	71.4	23.4	72.0	71.0	63.3	11.9
	일부 지원필요	20.1	18.1	26.0	15.1	18.4	20.9	33.6
	상당 지원필요	9.9	6.8	23.8	7.5	6.6	8.4	23.8
	전적 지원필요	7.1	3.7	26.8	5.5	4.0	7.3	37.4
약 행거먹기*	지원 불필요	84.7	94.5	61.4	85.8	90.9	78.4	25.0
	일부 지원필요	10.4	4.0	19.7	11.3	6.3	15.2	42.9
	상당 지원필요	2.8	0.7	10.2	2.2	1.5	3.5	9.6
	전적 지원필요	2.1	0.8	8.7	0.7	1.2	2.9	20.5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70.0	86.3	45.1	76.8	72.5	50.4	4.2
	일부 지원필요	12.8	7.9	17.9	11.5	16.3	21.9	27.0
	상당 지원필요	8.8	3.5	14.8	7.6	6.9	12.6	32.5
	전적 지원필요	8.3	2.3	22.3	4.1	4.2	15.1	31.7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0.2	72.1	22.0	70.7	64.0	50.1	8.7
	일부 지원필요	17.4	14.3	21.6	12.1	20.5	22.0	31.3
	상당 지원필요	11.5	7.8	20.3	9.1	9.9	10.1	24.9
	전적 지원필요	10.8	5.7	36.1	8.1	5.6	17.8	21.9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전체는 만 6세 이상 기준, *문항은 만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83.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68.8	91.1	93.3	92.6	98.9	94.8	83.8	89.2
	일부 지원필요	18.4	6.9	4.8	6.0	0.4	4.4	8.1	6.0
	상당 지원필요	8.6	1.1	1.8	0.8	0.1	0.9	1.3	2.6
	전적 지원필요	4.2	0.9	0.0	0.6	0.6	0.0	6.8	2.1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59.2	77.5	74.0	76.7	94.6	93.9	76.9	76.4
	일부 지원필요	23.6	16.5	19.3	14.2	4.7	4.7	12.3	12.9
	상당 지원필요	13.3	3.9	4.7	5.4	0.0	1.4	1.9	8.0
	전적 지원필요	4.0	2.0	2.0	3.8	0.7	0.0	8.9	2.8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51.5	64.0	64.7	54.9	91.9	88.9	65.7	68.2
	일부 지원필요	27.3	22.5	22.9	22.6	6.5	6.4	18.4	21.0
	상당 지원필요	15.5	10.5	9.0	17.6	0.9	4.6	5.6	6.7
	전적 지원필요	5.7	3.0	3.4	4.9	0.6	0.0	10.3	4.1
청소*	지원 불필요	57.8	63.8	63.2	47.8	93.0	88.0	63.4	69.5
	일부 지원필요	27.7	24.2	23.2	27.1	5.5	8.7	20.8	20.2
	상당 지원필요	10.1	9.5	10.2	19.2	0.8	3.3	5.0	6.2
	전적 지원필요	4.5	2.4	3.4	5.9	0.7	0.0	10.8	4.1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58.0	66.7	65.0	49.9	92.8	86.2	64.5	72.6
	일부 지원필요	26.6	21.9	24.0	24.2	5.8	9.2	20.6	17.6
	상당 지원필요	10.5	8.3	7.7	20.9	0.7	4.6	4.0	5.7
	전적 지원필요	5.0	3.0	3.4	4.9	0.7	0.0	10.8	4.1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67.2	91.5	91.7	89.7	98.8	96.6	88.0	86.5
	일부 지원필요	26.6	5.8	6.7	8.6	0.5	3.4	4.4	11.1
	상당 지원필요	3.7	1.3	1.6	1.0	0.5	0.0	7.2	2.4
	전적 지원필요	2.4	1.3	0.0	0.6	0.2	0.0	0.5	0.0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44.0	84.8	83.9	84.4	97.4	93.6	76.6	64.6
	일부 지원필요	24.3	8.7	7.4	7.2	1.5	3.6	9.0	18.7
	상당 지원필요	19.2	4.0	6.0	6.3	0.5	1.5	3.3	9.2
	전적 지원필요	12.5	2.5	2.8	2.1	0.6	1.4	11.0	7.5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51.4	74.2	68.3	61.7	93.8	91.1	70.4	65.7
	일부 지원필요	25.3	11.7	16.1	14.1	4.3	5.6	12.4	15.8
	상당 지원필요	17.7	7.9	11.2	14.3	1.0	1.0	5.2	10.9
	전적 지원필요	5.7	6.2	4.4	9.9	0.8	2.3	12.0	7.6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전제는 만 6세 이상 기준, *문항은 만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83.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화 사용하기	지원 불필요	73.6	75.9	70.5	21.8	63.3	84.9	71.9	56.2	82.9
	일부 지원필요	16.1	14.6	18.1	35.0	17.3	9.2	18.8	22.4	12.8
	상당 지원필요	6.0	5.6	6.5	20.0	10.7	3.5	5.8	11.4	3.1
	전적 지원필요	4.3	3.8	4.9	23.2	8.7	2.4	3.5	9.9	1.3
물건사기	지원 불필요	69.4	72.7	64.7	17.9	53.8	80.3	68.9	45.1	82.3
	일부 지원필요	16.4	14.0	19.6	24.5	21.7	11.3	17.8	24.7	12.0
	상당 지원필요	8.3	8.0	8.8	35.2	13.9	5.3	7.5	17.4	3.5
	전적 지원필요	5.9	5.3	6.8	22.3	10.5	3.1	5.8	12.8	2.3
식사준비*	지원 불필요	62.2	62.1	62.3	-	48.9	73.0	58.6	38.0	74.1
	일부 지원필요	19.3	20.2	18.1	-	20.8	15.0	21.5	25.4	16.3
	상당 지원필요	10.9	10.1	12.0	-	16.2	7.1	12.1	20.1	6.4
	전적 지원필요	7.6	7.6	7.6	-	14.1	4.9	7.9	16.4	3.2
청소*	지원 불필요	63.1	65.0	60.4	-	53.8	73.6	58.8	40.8	74.1
	일부 지원필요	20.3	19.7	21.1	-	22.5	15.8	22.5	27.1	17.0
	상당 지원필요	9.6	8.6	11.0	-	12.3	6.2	11.0	17.3	5.8
	전적 지원필요	7.0	6.7	7.4	-	11.3	4.4	7.6	14.8	3.1
빨래하기*	지원 불필요	62.8	64.5	60.5	-	52.9	74.7	58.0	40.8	73.7
	일부 지원필요	20.1	19.5	20.9	-	21.0	14.5	23.1	26.3	17.1
	상당 지원필요	9.9	9.0	11.1	-	13.7	6.4	11.2	17.6	6.1
	전적 지원필요	7.1	6.9	7.4	-	12.4	4.4	7.7	15.3	3.1
약 챙겨먹기*	지원 불필요	84.7	85.4	83.7	-	65.9	89.8	85.5	66.8	93.5
	일부 지원필요	10.4	10.1	10.8	-	22.4	7.1	9.9	21.9	4.7
	상당 지원필요	2.8	2.8	2.8	-	6.9	1.7	2.6	6.3	1.1
	전적 지원필요	2.1	1.7	2.7	-	4.7	1.4	2.1	5.0	0.7
금전관리	지원 불필요	70.0	74.3	64.1	7.6	49.6	82.2	70.4	45.0	83.3
	일부 지원필요	12.8	10.4	16.1	13.3	16.7	8.1	14.7	19.2	9.4
	상당 지원필요	8.8	7.5	10.7	31.6	16.4	5.0	8.4	17.0	4.5
	전적 지원필요	8.3	7.8	9.0	47.5	17.3	4.7	6.5	18.8	2.7
교통수단 이용하기	지원 불필요	60.2	66.0	52.3	13.2	53.1	74.3	56.0	37.6	72.3
	일부 지원필요	17.4	15.2	20.5	18.4	19.1	12.2	20.1	20.9	15.6
	상당 지원필요	11.5	8.9	15.2	23.6	14.2	7.4	12.8	19.3	7.4
	전적 지원필요	10.8	9.9	12.0	44.5	13.6	6.1	11.2	22.2	4.7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전체는 만 6세 이상, *문항은 만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03-605.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립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17세 이하의 자립정도가 낮음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이란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 이상의 것으로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3) 만성질환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연도	2016	82.2	82.0	94.2	78.1	82.0	76.3	66.5	63.6
	2017	84.3	83.4	95.1	79.1	85.1	76.7	69.6	66.6
	2018	84.3	83.8	94.4	79.7	86.1	77.2	66.9	65.9
	2019	86.4	85.9	95.2	81.8	88.5	78.7	69.7	67.8
	2020	86.8	86.2	95.3	82.1	88.8	78.6	70.2	69.1
	2021	87.7	87.3	95.4	83.4	89.8	78.8	71.4	70.9
	2022	87.7	87.6	95.1	83.7	90.1	79.6	70.3	70.5
만성 질환 유형	고혈압	52.0	55.4	61.8	51.7	61.2	38.4	15.0	1.8
	당뇨병	33.5	34.7	35.0	34.4	35.4	22.8	14.1	3.5
	정신 및 행동장애	41.1	33.8	55.3	32.2	42.4	42.0	47.9	65.9
	호흡기결핵	0.4	0.3	0.3	0.4	0.5	0.3	0.2	0.0
	심장질환	19.7	19.7	21.4	18.3	24.7	16.7	5.0	1.2
	대뇌혈관질환	17.0	13.0	59.8	13.6	17.5	30.3	4.3	0.4
	신경계질환	39.4	38.0	62.4	32.7	40.2	33.9	23.1	14.3
	약성신생물	9.9	9.8	8.7	10.2	11.4	14.0	2.7	0.5
	갑상선의 장애	13.3	13.5	10.1	12.9	13.6	12.9	11.0	4.5
	간의 질환	24.4	26.8	17.8	24.5	23.7	16.7	16.0	6.2
	만성신부전증	6.3	2.7	3.6	3.3	3.8	2.4	0.7	0.1
	관절염	41.2	49.7	30.4	40.0	49.1	24.7	16.7	4.1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2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27, 329, 331.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2, 394, 39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66, 368, 37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80, 382, 384.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53, 355, 357.

- 2022년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가 99.3%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지적장애가 70.3%로 가장 낮음

• 만성질환 유형별로는 고혈압 유병률이 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절염 41.2%, 정신 및 행동장애 41.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호흡기결핵의 유병률은 0.4%로 가장 낮음



〈표 2-1-5〉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유형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	2016	83.4	98.7	95.7	87.0	95.2	64.1	93.9	98.0
	2017	99.0	98.7	95.2	87.3	95.3	63.6	94.6	98.2
	2018	99.4	93.2	85.6	86.9	82.3	66.2	94.1	98.1
	2019	99.4	99.0	97.2	89.3	96.0	70.6	95.2	99.1
	2020	99.4	99.0	97.1	88.4	96.5	71.1	95.0	99.2
	2021	99.4	99.1	97.4	89.3	96.4	71.4	94.9	99.0
	2022	99.3	99.1	97.4	89.5	96.4	73.3	95.1	99.0
만성 질환 유형	고혈압	26.9	81.5	62.9	53.4	45.4	35.0	53.6	21.7
	당뇨병	29.4	63.6	39.3	32.5	46.0	22.9	34.7	17.7
	정신 및 행동장애	98.1	29.0	29.6	36.6	19.4	25.1	32.0	97.1
	호흡기결핵	0.3	0.8	0.4	2.5	0.6	0.3	0.5	0.3
	심장질환	8.5	44.0	85.2	34.3	15.2	10.5	20.6	9.1
	대뇌혈관질환	5.1	14.7	13.2	11.4	7.6	7.4	12.4	12.7
	신경계질환	62.0	39.7	31.8	35.4	25.5	26.3	35.5	46.0
	악성신생물	4.6	14.6	12.8	16.6	47.3	9.2	67.2	7.1
	갑상선의 장애	15.8	23.1	18.3	12.4	11.0	12.2	13.4	15.9
	간의 질환	25.8	32.2	23.5	23.1	80.9	23.7	25.2	22.0
	만성신부전증	1.2	89.5	9.9	3.9	8.8	1.1	8.5	1.2
	관절염	22.7	30.7	31.6	34.3	28.8	34.1	38.8	34.9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결과인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대와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2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27, 329, 331.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2, 394, 39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66, 368, 37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80, 382, 384.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53, 355, 357.

- 만성질환 유형 및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의 장애, 만성신부전증 유병률은 심장장애가 각각 81.5%, 63.6%, 23.1%, 89.5%로 가장 높음
- 정신 및 행동장애 유병률은 정신장애와 뇌전증장애가 각각 98.1%, 97.1%로 높음
- 심장질환의 유병률은 심장장애가 85.2%가 가장 높고, 심장장애 44.0%, 호흡기 장애 34.3% 순으로 나타남
- 대뇌혈관질환 유병률은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가 각각 59.8%, 30.3%로 높게 나타남
- 신경계질환 유병률은 뇌병변장애와 정신장애가 각각 62.4%, 62.0%로 높게 나타남
- 악성신생물 유병률은 장루·요루장애와 간장애가 각각 67.2%, 47.3%로 높게 나타남
- 간의 질환 유병률은 간장애가 80.9%로 높게 나타남
- 관절염 유병률은 지체장애와 청각장애가 각각 49.7%, 49.1%로 높게 나타남

〈표 2-1-6〉 만성질환 유병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만성질환 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0-64세	65세 이상	중증	경증
연도	2016	82.2	77.8	88.1	72.6	94.3	81.3	82.7
	2017	84.3	80.1	89.8	81.3	95.0	84.1	84.4
	2018	84.3	80.4	89.4	74.6	94.9	83.9	84.5
	2019	86.4	83.0	91.0	77.5	95.8	85.5	87.0
	2020	86.8	83.6	91.0	77.6	95.6	85.7	87.4
	2021	87.7	84.7	91.7	78.7	95.9	86.3	88.4
	2022	87.7	84.7	91.6	78.4	95.9	85.7	88.8
만성 질환 유형	고혈압	52.0	48.7	56.6	32.1	69.7	42.6	57.5
	당뇨병	33.5	32.9	34.4	24.0	41.9	29.7	35.7
	정신 및 행동장애	41.1	35.0	49.4	33.9	47.5	49.0	36.6
	호흡기질환	0.4	0.4	0.3	0.2	0.5	0.4	0.4
	심장질환	19.7	18.9	20.7	10.1	28.1	17.1	21.2
	대뇌혈관질환	17.0	15.8	18.7	8.8	24.3	17.0	17.0
	신경계질환	39.4	34.3	46.3	30.5	47.3	40.6	38.7
	악성신생물	9.9	10.7	8.8	6.6	12.8	7.6	11.3
	갑상선의 장애	13.3	10.2	17.4	11.9	14.5	12.7	13.6
	간의 질환	24.4	25.3	23.3	23.2	25.5	21.4	26.1
	만성신부전증	6.3	6.6	5.8	5.4	7.1	10.1	4.1
	관절염	41.2	34.1	50.7	28.1	52.7	29.5	47.9

- 주: 1)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당년도 장애인 중 12개의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을 의미함
 2)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은 의료이용 내역에 근거한 결과로, 해당년도에 의료이용이 있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이에 일반건강검진에 근거한 결과인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차이가 있음
 3)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2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26-331.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91-39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65-37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79-384.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p.352-357.

- 2022년 만성질환 유병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1.6%로 남성 84.7% 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95.9%, 0-64세 78.4%임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88.8%, 중증 85.7%임



〈표 2-1-7〉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계		주의군(1~2개)		대사증후군(3~5개)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도	2021	752,157	619,588	82.4	382,060	50.8	237,528	31.6
	2022	750,241	618,057	82.4	372,814	49.7	245,243	32.7
	2023	742,026	611,751	82.4	361,615	48.7	250,136	33.7
성별	남	464,510	386,490	83.2	241,785	52.1	144,705	31.2
	여	277,516	225,261	81.2	119,830	43.2	105,431	38.0
연령별	19세 이하	148	64	43.2	62	41.9	2	1.4
	20~44세	93,676	56,451	60.3	43,953	46.9	12,498	13.3
	45~64세	298,015	241,077	80.9	151,920	51.0	89,157	29.9
	65세 이상	350,187	314,159	89.7	165,680	47.3	148,479	42.4
장애유형	지체	397,543	334,860	84.2	190,398	47.9	144,462	36.3
	뇌병변	38,978	32,909	84.4	18,353	47.1	14,556	37.3
	시각	79,017	64,456	81.6	38,474	48.7	25,982	32.9
	청각	116,863	98,243	84.1	58,323	49.9	39,920	34.2
	언어	4,530	3,469	76.6	2,327	51.4	1,142	25.2
	지적	47,493	30,115	63.4	23,184	48.8	6,931	14.6
	자폐성	4,051	2,323	57.3	1,987	49.0	336	8.3
	정신	18,586	15,395	82.8	9,356	50.3	6,039	32.5
	신장	20,694	18,570	89.7	11,581	56.0	6,989	33.8
	심장	1,133	891	78.6	586	51.7	305	26.9
	호흡기	2,263	1,830	80.9	1,243	54.9	587	25.9
	간	4,594	3,898	84.8	2,696	58.7	1,202	26.2
	안면	1,053	754	71.6	499	47.4	255	24.2
	장루·요루	3,687	3,051	82.8	1,849	50.1	1,202	32.6
	뇌전증	1,541	987	64.0	759	49.3	228	14.8
장애정도	중증	201,452	155,446	77.2	98,767	49.0	56,679	28.1
	경증	540,574	456,305	84.4	262,848	48.6	193,457	35.8
지역	서울	104,136	85,351	82.0	48,961	47.0	36,390	34.9
	부산	46,177	37,784	81.8	23,836	51.6	13,948	30.2
	대구	35,187	28,574	81.2	17,643	50.1	10,931	31.1
	인천	44,156	36,761	83.3	21,010	47.6	15,751	35.7
	광주	19,856	16,113	81.1	9,865	49.7	6,248	31.5
	대전	20,502	16,434	80.2	9,718	47.4	6,716	32.8
	울산	15,965	12,711	79.6	8,183	51.3	4,528	28.4
	세종	3,900	3,023	77.5	1,832	47.0	1,191	30.5
	경기	171,890	141,167	82.1	82,264	47.9	58,903	34.3
	강원	27,751	23,497	84.7	13,333	48.0	10,164	36.6
	충북	28,388	23,386	82.4	13,826	48.7	9,560	33.7
	충남	38,020	31,940	84.0	18,204	47.9	13,736	36.1
	전북	36,144	30,749	85.1	17,195	47.6	13,554	37.5
	전남	39,581	34,105	86.2	19,815	50.1	14,290	36.1
	경북	48,587	39,869	82.1	24,434	50.3	15,435	31.8
	경남	52,620	42,696	81.1	27,101	51.5	15,595	29.6
	제주	9,166	7,591	82.8	4,395	47.9	3,196	34.9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79-392.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5-358.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5-348.

- 2023년 기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82.4%이고, 주의군(1-2개) 비율은 48.7%,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은 33.7%임

-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개수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비율: 69.2%
 - 주의군(1-2개): 46.6%, 대사증후군(3-5개): 22.6%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82.4%로 동일하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은 증가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은 38.0%로, 남성 31.2%에 비해 6.8%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이 42.4%로 가장 높고, 45-64세 29.9%, 20-44세 13.3%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이 37.3%로 가장 높고, 지체 36.3%, 청각 34.2%, 신장 33.8%, 시각 32.9%, 장루·요루 32.6% 등의 순이고, 자폐성의 경우 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은 35.8%로 중증장애 28.1%에 비해 7.7%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의 장애인 대사증후군(3-5개) 비율이 37.5%로 가장 높고, 강원 36.6%, 충남 36.1%, 전남 36.1% 등의 순임



〈표 2-1-8〉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도	2021	752,157	272,768	36.3	367,919	48.9	416,191	55.3	192,562	25.6	177,091	23.5
	2022	750,241	270,652	36.1	373,562	49.8	410,466	54.7	203,726	27.2	188,438	25.1
	2023	742,026	265,112	35.7	370,307	49.9	403,431	54.4	212,272	28.6	200,964	27.1
성별	남	464,510	163,117	35.1	230,535	49.6	264,315	56.9	120,708	26.0	102,061	22.0
	여	277,516	101,995	36.8	139,772	50.4	139,116	50.1	91,564	33.0	98,903	35.6
연령별	19세 이하	148	24	16.2	18	12.2	40	27.0	-	-	-	-
	20~44세	93,676	32,454	34.6	19,051	20.3	29,754	31.8	13,133	14.0	8,916	9.5
	45~64세	298,015	95,839	32.2	132,880	44.6	162,942	54.7	81,852	27.5	70,140	23.5
	65세 이상	350,187	136,795	39.1	218,358	62.4	210,695	60.2	117,287	33.5	121,908	34.8
장애유형	지체	397,543	147,981	37.2	207,908	52.3	223,217	56.1	123,270	31.0	113,646	28.6
	뇌병변	38,978	14,482	37.2	22,584	57.9	21,624	55.5	11,208	28.8	11,522	29.6
	시각	79,017	25,289	32.0	38,481	48.7	43,375	54.9	23,156	29.3	21,461	27.2
	청각	116,863	38,660	33.1	62,188	53.2	65,367	55.9	32,776	28.0	32,924	28.2
	언어	4,530	1,281	28.3	1,966	43.4	2,279	50.3	1,041	23.0	943	20.8
	지적	47,493	16,634	35.0	10,667	22.5	16,192	34.1	6,526	13.7	6,150	12.9
	자폐성	4,051	1,735	42.8	490	12.1	850	21.0	388	9.6	281	6.9
	정신	18,586	9,398	50.6	5,320	28.6	10,312	55.5	5,464	29.4	5,483	29.5
	신장	20,694	5,487	26.5	14,522	70.2	12,167	58.8	5,268	25.5	5,601	27.1
	심장	1,133	300	26.5	462	40.8	642	56.7	272	24.0	270	23.8
	호흡기	2,263	622	27.5	1,102	48.7	1,245	55.0	482	21.3	454	20.1
	간	4,594	1,308	28.5	2,121	46.2	3,080	67.0	843	18.4	845	18.4
	안면	1,053	305	29.0	380	36.1	493	46.8	250	23.7	193	18.3
	장루·요루	3,687	1,097	29.8	1,768	48.0	2,096	56.8	1,073	29.1	990	26.9
	뇌전증	1,541	533	34.6	348	22.6	492	31.9	255	16.5	201	13.0
장애정도	중증	201,452	71,911	35.7	85,315	42.4	97,319	48.3	48,417	24.0	47,088	23.4
	경증	540,574	193,201	35.7	284,992	52.7	306,112	56.6	163,855	30.3	153,876	28.5
지역	서울	104,136	38,012	36.5	52,278	50.2	55,120	52.9	31,924	30.7	29,808	28.6
	부산	46,177	15,177	32.9	21,492	46.5	25,767	55.8	11,836	25.6	11,091	24.0
	대구	35,187	11,394	32.4	16,515	46.9	18,682	53.1	9,662	27.5	9,176	26.1
	인천	44,156	15,991	36.2	22,780	51.6	24,773	56.1	13,246	30.0	12,428	28.1
	광주	19,856	6,430	32.4	8,542	43.0	11,543	58.1	5,390	27.1	5,311	26.7
	대전	20,502	6,943	33.9	9,820	47.9	10,738	52.4	5,918	28.9	5,599	27.3
	울산	15,965	5,277	33.1	7,306	45.8	8,307	52.0	3,733	23.4	3,475	21.8
	세종	3,900	1,376	35.3	1,806	46.3	1,859	47.7	1,039	26.6	982	25.2
	경기	171,890	62,971	36.6	86,261	50.2	92,450	53.8	50,595	29.4	46,099	26.8
	강원	27,751	10,154	36.6	15,305	55.2	15,826	57.0	8,078	29.1	8,109	29.2
	충북	28,388	10,356	36.5	14,522	51.2	15,235	53.7	7,937	28.0	7,541	26.6
	충남	38,020	14,448	38.0	20,242	53.2	20,515	54.0	11,579	30.5	11,046	29.1
	전북	36,144	13,559	37.5	19,543	54.1	19,972	55.3	11,297	31.3	11,367	31.4
	전남	39,581	15,087	38.1	21,117	53.4	23,698	59.9	11,051	27.9	11,302	28.6
	경북	48,587	16,649	34.3	24,064	49.5	25,701	52.9	13,051	26.9	12,633	26.0
	경남	52,620	17,530	33.3	24,011	45.6	28,408	54.0	13,400	25.5	12,491	23.7
	제주	9,166	3,758	41.0	4,703	51.3	4,837	52.8	2,536	27.7	2,506	27.3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79-384.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9-372.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9-362.

- 2023년 기준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비율)을 살펴보면, 높은 혈당이 5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높은 혈압 49.9%, 복부비만 35.7%, 높은 중성지방혈중 28.6%,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중 27.1% 순으로 나타남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복부비만(25.5%), 높은 혈압(45.1%), 높은 혈당(40.1%), 높은 중성지방혈중(19.6%),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중(17.2%)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복부비만과 높은 혈당은 감소 추이를, 높은 혈압, 높은 중성지방혈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중은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높은 혈당을 제외한 4가지 위험요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중의 격차는 13.6%p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가지 위험요인 모두 65세 이상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복부비만은 정신장애가 50.6%, 높은 혈압은 신장장애가 70.2%, 높은 혈당은 간장애가 67.0%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복부 비만을 제외한 4가지 위험요인의 경우 경증장애가 중증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복부비만은 제주가 41.0%, 높은 혈압은 강원이 55.2%, 높은 혈당은 전남이 59.9%, 높은 중성지방혈중과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중은 전북이 각각 31.3%, 3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은 아님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별 기준(출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보건통계」)

-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이상지질혈중(높은 중성지방혈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한 개인이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주의군은 한 개인이 2가지 이하 가지고 있는 상태임

구분	기준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또는 문진표상 '고혈압'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높은 혈당	공복 혈당 100mg/dL 이상 또는 문진표상 '당뇨병'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높은 중성지방혈중	혈관 내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150mg/dL 이상 또는 문진표상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중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미만 또는 문진표상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2) 건강행태

(1) 장애인 흡연상태 및 흡연량

〈표 2-2-1〉 장애인 흡연상태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현재흡연	현재금연	비흡연
연도	2016	703,375	19.8	20.9	59.3
	2017	710,368	19.2	21.5	59.3
	2018	773,523	18.4	21.5	60.1
	2019	769,533	18.0	20.4	61.6
	2020	672,700	17.7	20.5	61.8
	2021	751,918	17.6	19.7	62.7
	2022	750,146	17.4	19.9	62.8
	2023	741,951	17.1	20.0	62.9
성별	남	464,453	25.8	31.0	43.3
	여	277,498	2.6	1.7	95.7
연령별	19세 이하	148	8.1	2.0	89.9
	20~44세	93,672	18.8	10.0	71.2
	45~64세	297,987	25.6	21.8	52.6
	65세 이상	350,144	9.5	21.2	69.3
장애 유형	지체	397,499	20.5	21.7	57.7
	뇌병변	38,975	11.3	22.9	65.8
	시각	79,010	18.3	21.2	60.6
	청각	116,849	11.5	19.7	68.8
	언어	4,530	15.4	21.4	63.2
	지적	47,490	8.5	2.6	88.9
	자폐성	4,051	1.0	0.4	98.6
	정신	18,586	24.5	8.6	66.9
	신장	20,692	10.1	27.4	62.5
	심장	1,133	8.1	30.1	61.8
	호흡기	2,262	7.1	35.8	57.2
	간	4,593	12.1	32.3	55.6
	안면	1,053	20.3	19.2	60.5
	장루·요루	3,687	12.2	29.3	58.5
	뇌전증	1,541	17.0	9.0	74.0
장애 정도	중증	201,433	14.5	14.7	70.8
	경증	540,518	18.1	22.0	59.9
지역	서울	104,122	15.0	21.9	63.1
	부산	46,177	16.9	21.6	61.5
	대구	35,187	17.8	19.6	62.6
	인천	44,156	19.9	22.4	57.7
	광주	19,856	14.9	18.1	67.0
	대전	20,502	16.9	20.9	62.3
	울산	15,965	18.8	23.6	57.5
	세종	3,899	15.1	22.0	62.9
	경기	171,849	18.4	22.1	59.5
	강원	27,745	17.0	19.5	63.5
	충북	28,386	18.4	18.1	63.5
	충남	38,019	17.6	17.9	64.5
	전북	36,144	15.3	16.6	68.2
	전남	39,581	14.2	12.2	73.6
	경북	48,585	16.5	16.9	66.6
	경남	52,612	18.1	20.3	61.6
	제주	9,166	16.7	17.2	66.1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흡연상태는 현재흡연, 현재금연, 비흡연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현재흡연: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
 · 현재금연: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 비흡연: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없는 사람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7-142.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1-13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09-114.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99-304.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11-316.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9-334.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95-300.
 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85-290.

- 2023년 기준 장애인 흡연상태를 살펴보면, '현재흡연' 17.1%, '현재금연' 20.0%, '비흡연' 62.9%로 나타남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흡연상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현재흡연(18.6%), 현재금연(17.1%), 비흡연(64.3%)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흡연' 비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현재흡연' 비율은 25.8%로 여성 2.6%에 비해 23.2%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4세, 45~64세의 '현재흡연' 비율이 각각 18.8%, 2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현재흡연' 비율이 2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20.5%, 안면장애 20.3%, 시각장애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자폐성 장애의 '현재흡연' 비율은 1.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현재흡연' 비율이 18.1%로 중증장애 14.5%에 비해 3.6%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재흡연'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인천 19.9%, 울산 18.8, 경기 및 충남 각 18.4%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전남 14.2%, 광주 14.9%, 서울 15.0% 등이 있으나,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은 아님



〈표 2-2-2〉 장애인 하루 평균 흡연량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반갑 미만	반갑-한갑 미만	한갑-두갑 미만	두갑 이상
연도	2016	138,934	15.5	41.5	41.1	1.9
	2017	136,068	15.7	42.3	40.2	1.8
	2018	142,433	16.5	43.5	38.3	1.7
	2019	138,778	16.7	43.4	38.2	1.7
	2020	119,021	17.2	44.8	36.6	1.5
	2021	131,864	17.0	45.2	36.4	1.5
	2022	130,332	16.8	45.4	36.3	1.5
	2023	126,917	17.1	45.6	35.8	1.5
성별	남	119,600	15.6	45.8	37.0	1.5
	여	7,317	40.0	42.5	16.8	0.7
연령별	19세 이하	12	58.3	41.7	-	-
	20~44세	17,592	21.1	50.1	27.4	1.3
	45~64세	76,109	13.4	45.3	39.6	1.6
	65세 이상	33,204	23.2	44.0	31.6	1.2
장애유형	지체	81,549	14.3	46.7	37.6	1.4
	뇌병변	4,400	24.0	45.7	29.0	1.3
	시각	14,419	17.2	46.7	34.8	1.3
	청각	13,411	21.9	44.3	32.6	1.2
	언어	698	20.3	44.8	33.8	1.0
	지적	4,033	33.7	34.0	29.2	3.0
	자폐성	42	57.1	21.4	16.7	4.8
	정신	4,553	22.8	34.6	39.1	3.5
	신장	2,079	27.4	49.3	22.5	0.9
	심장	92	21.7	54.3	23.9	-
	호흡기	160	21.3	43.8	33.1	1.9
	간	556	26.6	48.4	24.3	0.7
	안면	214	17.3	50.5	31.8	X
	장루·요루	449	21.8	47.9	29.8	0.4
	뇌전증	262	23.7	48.9	26.0	1.5
장애정도	중증	29,176	22.6	42.5	32.9	1.9
	경증	97,741	15.4	46.6	36.7	1.3
지역	서울	15,592	20.2	46.7	31.9	1.2
	부산	7,816	17.8	46.3	34.4	1.4
	대구	6,266	17.3	43.6	37.5	1.6
	인천	8,770	16.7	48.0	34.0	1.2
	광주	2,964	16.3	44.9	37.4	1.4
	대전	3,452	17.8	46.0	34.6	1.6
	울산	3,004	14.7	51.2	32.7	1.3
	세종	589	18.2	46.5	34.3	1.0
	경기	31,627	16.8	47.5	34.5	1.3
	강원	4,722	15.9	44.5	38.0	1.7
	충북	5,212	17.4	43.3	37.8	1.5
	충남	6,699	16.0	44.3	38.2	1.6
	전북	5,517	16.7	43.6	37.8	1.8
	전남	5,633	16.3	41.3	40.2	2.2
	경북	8,020	16.3	43.1	38.8	1.8
	경남	9,508	15.6	44.8	38.0	1.6
	제주	1,526	15.5	37.9	44.6	2.0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7-142.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1-13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09-114.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99-304.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11-316.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5-340.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01-306.
 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91-296.

- 2023년 기준 현재 흡연 중인 장애인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살펴보면, '한갑 이상'(한갑-두갑 미만, 두갑 이상 포함)이 37.3%로 나타남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반갑 미만(18.8%), 반갑-한갑 미만(51.5%), 한갑-두갑 미만(29.0%), 두갑 이상(0.7%)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한갑-두갑 미만, 두갑 이상 포함)인 비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은 38.5%로 여성 17.5%에 비해 21.0%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5~64세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은 41.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이 4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39.0%, 시각장애 3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은 38.0%로 중증장애 34.9%에 비해 3.1%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한갑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제주 46.7%, 전남 42.4%, 경북 40.6%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서울 33.1%, 울산 34.1% 등이 있음



(2)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표 2-2-3〉 장애인 연간 음주 횟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일주일 중			한달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다
			1회 이하	2-4회	5-7회			
연별	2018	773,676	9.1	15.5	4.3	11.7	3.8	55.6
	2019	769,422	8.9	15.0	4.0	12.1	4.1	55.8
	2020	672,555	9.0	14.8	3.7	11.9	4.3	56.2
	2021	751,832	8.7	14.3	3.6	11.5	4.5	57.5
	2022	749,969	8.6	14.4	3.5	11.9	4.7	56.9
	2023	741,813	8.6	14.0	3.4	12.4	4.9	56.7
성별	남	464,344	11.3	20.2	5.2	14.2	4.5	44.6
	여	277,469	4.0	3.7	0.5	9.3	5.5	77.0
연령별	19세 이하	148	3.4	3.4	-	18.9	5.4	68.9
	20-44세	93,651	8.8	14.2	2.0	17.5	7.8	49.7
	45-64세	297,916	11.4	19.3	3.9	14.8	5.9	44.7
	65세 이상	350,098	6.2	9.4	3.3	8.9	3.3	68.9
장애 유형	지체	397,406	10.1	17.6	4.0	13.6	5.1	49.7
	뇌병변	38,969	6.4	8.2	2.2	10.8	4.7	67.7
	시각	79,002	9.9	16.7	3.9	14.2	5.4	49.8
	청각	116,825	7.4	10.7	3.6	11.6	4.5	62.2
	언어	4,530	9.1	12.7	3.3	12.7	5.3	56.9
	지적	47,485	4.2	4.4	0.8	7.2	4.0	79.3
	자폐성	4,051	1.9	1.3	0.1	4.4	3.9	88.3
	정신	18,586	3.2	3.6	0.8	6.0	4.3	82.1
	신장	20,692	4.0	3.0	0.4	9.5	5.4	77.6
	심장	1,133	7.5	8.7	0.9	14.6	6.3	62.0
	호흡기	2,262	5.1	8.8	1.9	9.9	3.8	70.5
	간	4,593	4.2	4.8	0.8	7.3	2.8	80.1
	안면	1,052	11.6	18.9	4.3	18.9	6.9	39.4
	장루·요루	3,686	7.0	9.4	2.7	11.4	4.8	64.6
장애 정도	뇌전증	1,541	4.7	5.6	1.0	10.7	7.9	70.1
	중증	201,409	6.4	9.0	2.2	10.5	4.9	67.0
지역	경증	540,404	9.4	15.9	3.9	13.0	4.9	52.9
	서울	104,106	9.0	14.2	3.4	13.9	6.1	53.4
	부산	46,170	9.4	13.9	3.4	12.9	4.5	55.9
	대구	35,182	8.7	13.1	3.2	12.1	4.4	58.5
	인천	44,147	9.8	15.9	3.5	13.6	6.0	51.2
	광주	19,849	8.3	12.6	2.9	11.9	4.6	59.7
	대전	20,495	8.7	13.9	2.6	14.0	5.0	55.7
	울산	15,963	10.0	15.5	2.7	14.8	5.3	51.6
	세종	3,899	10.0	15.1	1.9	15.4	6.0	51.5
	경기	171,833	9.5	15.3	3.4	14.0	6.0	51.9
	강원	27,736	7.8	13.7	2.9	12.0	4.1	59.5
	충북	28,376	8.3	13.8	3.4	11.5	4.5	58.5
	충남	38,009	7.3	13.8	3.9	10.4	3.9	60.7
	전북	36,140	6.8	11.3	3.4	9.2	3.8	65.5
	전남	39,574	6.4	11.3	3.5	7.3	2.4	69.1
	경북	48,582	7.1	11.9	3.4	9.8	3.4	64.3
	경남	52,586	8.6	15.0	4.1	11.6	4.0	56.8
	제주	9,166	7.2	14.3	4.1	11.3	4.3	58.7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21-129.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11-319.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3-331.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1-349.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07-315.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97-305.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연간 음주 횟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고위험 음주 기준에 해당되는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일주일 중 2-4회, 5-7회 포함)'의 비율은 17.4%로 나타남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연간 음주 횟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일주일 중 1회 이하(13.4%), 일주일 중 2-4회(19.5%), 일주일 중 5-7회(2.7%), 한 달에 1회 이상(22.6%), 1년에 1회 이상(8.2%), 술을 마시지 않는다(33.6%)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은 25.3%로 여성 4.1%에 비해 21.2%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5-64세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은 23.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면장애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이 2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21.6%, 시각장애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은 19.7%로 중증장애 11.2%에 비해 8.5%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연간 음주 횟수가 '일주일 중 주2회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인천 19.5%, 경남 19.1%, 경기 18.6%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전북 14.6%, 전남 14.8%, 경북 15.4% 등이 있음



(3) 장애인 신체활동 현황

〈표 2-2-4〉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연도	2018	773,397	70.2	8.3	6.1	6.0	2.5	3.5	1.3	2.2
	2019	769,461	69.6	7.9	6.2	6.3	2.6	3.8	1.3	2.2
	2020	672,641	69.6	8.1	6.4	6.1	2.5	3.8	1.3	2.2
	2021	751,968	69.7	8.2	6.3	6.2	2.5	3.8	1.3	2.1
	2022	750,201	68.8	8.1	6.5	6.5	2.6	4.0	1.3	2.1
	2023	741,746	68.2	8.1	6.7	6.7	2.7	4.1	1.3	2.0
성별	남	464,363	62.4	9.9	8.0	7.7	3.3	4.8	1.7	2.3
	여	277,383	77.8	5.2	4.6	5.1	1.8	3.1	0.8	1.5
연령별	19세 이하	148	53.4	17.6	4.1	8.1	2.7	8.8	1.4	4.1
	20~44세	93,669	56.3	12.9	10.0	8.5	3.4	5.7	1.4	1.8
	45~64세	297,975	60.0	11.5	9.1	8.3	3.3	4.6	1.5	1.7
	65세 이상	349,954	78.3	4.0	3.9	4.9	2.1	3.3	1.1	2.4
장애 유형	지체	397,389	66.0	8.9	7.4	7.2	3.0	4.2	1.4	1.9
	뇌병변	38,967	75.5	5.5	4.8	5.2	2.1	3.5	1.2	2.2
	시각	78,988	66.0	8.8	7.2	7.2	3.0	4.3	1.5	2.0
	청각	116,811	72.7	6.2	5.3	5.9	2.4	3.9	1.4	2.4
	언어	4,526	67.1	8.6	7.3	6.4	2.3	4.2	1.3	2.8
	지적	47,480	70.1	7.8	6.1	5.5	2.1	4.9	1.0	2.4
	자폐성	4,051	53.3	9.6	9.5	9.3	3.7	8.7	2.1	3.8
	정신	18,582	78.3	6.5	4.3	4.3	1.3	2.8	0.7	1.8
	신장	20,686	69.2	8.2	7.2	7.4	2.8	2.9	0.9	1.4
	심장	1,132	68.7	9.0	7.3	6.4	2.9	3.8	0.7	1.1
	호흡기	2,261	75.1	5.3	5.5	5.1	2.5	2.7	1.1	2.7
	간	4,593	62.2	8.4	8.4	8.9	3.6	4.7	1.5	2.3
	안면	1,053	55.9	13.1	9.9	7.8	5.0	5.2	1.4	1.6
	장루·요루	3,686	70.3	7.7	6.5	5.9	2.4	3.4	1.3	2.4
장애 정도	뇌전증	1,541	71.8	7.5	5.5	6.4	2.9	3.0	0.5	2.3
	중증	201,395	71.5	7.5	5.8	5.7	2.2	4.0	1.1	2.1
	경증	540,351	66.9	8.4	7.1	7.1	2.9	4.2	1.4	2.0
지역	서울	104,122	64.6	8.7	7.4	7.7	3.1	4.8	1.7	2.1
	부산	46,177	67.4	8.1	6.6	6.9	3.0	4.3	1.6	2.2
	대구	35,187	72.7	7.0	5.7	5.8	2.3	3.5	1.0	1.8
	인천	44,155	62.8	9.6	8.0	7.7	3.4	4.8	1.7	2.1
	광주	19,856	67.7	8.7	6.7	6.6	2.7	4.0	1.3	2.3
	대전	20,502	65.4	8.9	7.4	7.1	3.2	4.6	1.5	1.9
	울산	15,965	59.5	9.5	8.5	9.1	3.8	5.7	1.7	2.2
	세종	3,900	61.4	10.4	8.3	8.7	3.7	4.3	1.1	2.2
	경기	171,846	63.5	9.6	7.9	7.8	3.1	4.7	1.5	1.9
	강원	27,737	72.4	6.6	5.7	5.7	2.5	3.7	1.1	2.3
	충북	28,386	70.7	7.8	6.4	5.8	2.3	3.7	1.1	2.2
	충남	38,020	73.1	7.3	5.3	5.4	2.3	3.4	1.2	2.1
	전북	35,943	75.6	6.3	5.0	4.8	2.0	3.1	1.0	2.1
	전남	39,581	77.1	5.9	4.9	4.7	1.9	2.9	0.8	1.8
	경북	48,584	77.5	5.6	4.7	5.1	1.8	2.8	0.9	1.5
	경남	52,619	69.2	7.6	6.4	6.2	2.8	4.1	1.4	2.3
	제주	9,166	71.1	7.7	6.0	5.8	2.5	3.8	1.1	2.0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는 평소 1주일 동안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를 의미함
 · 고강도 신체활동의 예: 달리기, 에어로빅,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간헐 운동, 계단으로 물건 나르기 등
-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0-138.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0-328.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2-34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0-358.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16-324.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06-314.

- 2023년 기준 장애인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를 살펴보면, '없음(0일)'이 68.2%, '1일 이상'은 31.8%임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0일(53.1%), 1일(13.9%), 2일(11.4%), 3일(10.0%), 4일(4.0%), 5일(5.0%), 6일(1.4%), 7일(1.2%)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37.6%로 여성 22.2%에 비해 15.4%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의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이 4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면장애 44.1%, 간장애 3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신장애는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33.1%로 중증장애 28.5%에 비해 4.6%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간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울산 40.5%, 세종 38.6%, 인천 37.2%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22.5%, 전남 22.9%, 전북 24.4% 등이 있음



〈표 2-2-5〉 장애인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연도	2018	773,399	48.8	8.0	8.2	10.3	4.5	8.2	3.0	9.0
	2019	769,480	47.0	8.0	8.4	10.8	4.7	8.7	3.2	9.2
	2020	672,642	45.2	8.2	8.6	10.9	5.0	9.0	3.2	9.9
	2021	751,976	43.5	8.5	8.7	11.1	5.1	9.3	3.2	10.6
	2022	750,210	42.2	8.3	8.9	11.6	5.2	9.7	3.3	11.0
	2023	741,796	40.8	8.3	9.1	11.8	5.5	10.2	3.4	10.9
성별	남	464,387	38.7	9.7	9.9	11.9	5.6	10.1	3.5	10.5
	여	277,409	44.2	6.0	7.8	11.6	5.2	10.3	3.2	11.6
연령별	19세 이하	148	54.1	13.5	6.1	9.5	2.7	7.4	2.0	4.7
	20~44세	93,667	40.4	13.0	12.1	11.7	4.7	10.8	2.3	4.8
	45~64세	297,970	38.9	11.3	11.3	12.8	5.7	9.6	3.1	7.3
	65세 이상	350,011	42.5	4.6	6.5	11.0	5.5	10.4	4.0	15.6
장애 유형	지체	397,414	39.8	8.8	9.7	12.2	5.7	9.9	3.5	10.3
	뇌병변	38,974	46.7	5.8	6.8	9.9	4.7	9.6	3.4	13.1
	시각	78,994	37.5	8.7	9.8	12.5	5.9	11.0	3.6	11.1
	청각	116,816	40.8	6.8	7.5	11.3	5.3	10.4	3.8	13.9
	언어	4,528	40.1	10.0	9.2	10.7	5.1	9.8	3.7	11.4
	지적	47,484	48.3	9.3	8.8	9.1	3.6	10.8	2.2	7.7
	자폐성	4,051	32.6	9.9	12.0	12.6	5.9	16.4	2.9	7.8
	정신	18,583	49.6	8.2	7.2	9.5	3.5	9.1	2.5	10.4
	신장	20,685	39.6	8.4	10.8	15.4	6.2	8.1	2.8	8.7
	심장	1,132	36.4	8.4	11.7	12.6	7.2	10.3	2.4	11.0
	호흡기	2,262	44.3	5.2	8.5	11.3	5.9	8.8	4.0	12.1
	간	4,594	31.8	7.7	11.5	14.2	7.2	11.6	4.0	11.9
	안면	1,053	36.8	12.8	10.9	12.9	6.5	10.0	2.9	7.1
	장루·요루	3,685	36.0	7.6	9.4	11.6	5.8	11.2	3.8	14.5
	뇌전증	1,541	44.5	8.8	8.1	10.3	5.5	9.9	2.7	10.3
장애 정도	중증	201,410	46.4	8.3	8.4	10.4	4.5	9.6	2.8	9.6
	경증	540,386	38.7	8.3	9.4	12.3	5.8	10.4	3.6	11.4
지역	서울	104,119	37.4	8.6	10.0	13.2	5.9	11.2	4.0	9.7
	부산	46,176	38.0	8.4	8.9	12.4	5.7	10.5	4.0	12.0
	대구	35,187	38.4	7.5	8.9	12.2	5.9	9.8	3.7	13.5
	인천	44,155	41.4	9.5	10.0	12.1	5.6	9.9	3.0	8.5
	광주	19,856	36.4	8.7	10.0	12.1	5.4	10.2	3.3	13.7
	대전	20,502	39.6	8.7	9.6	12.9	6.1	10.0	4.3	8.8
	울산	15,965	33.7	9.5	10.6	13.4	6.8	11.8	3.3	11.0
	세종	3,899	39.3	11.0	12.2	12.4	5.1	9.5	2.2	8.3
	경기	171,850	40.2	9.6	10.1	12.5	5.6	10.3	3.2	8.7
	강원	27,737	43.6	7.0	8.8	11.5	5.2	9.4	2.9	11.7
	충북	28,385	45.5	8.1	8.3	10.2	5.0	9.0	3.0	10.8
	충남	38,019	46.7	7.4	7.6	9.4	4.7	9.0	3.9	11.3
	전북	35,995	43.2	7.3	7.7	10.5	5.3	9.9	3.6	12.5
	전남	39,581	47.0	6.3	7.2	9.7	4.1	10.1	2.3	13.4
	경북	48,585	44.6	6.4	7.5	10.6	4.9	9.0	3.4	13.6
	경남	52,619	38.5	7.7	8.6	11.4	5.3	10.9	3.4	14.2
	제주	9,166	45.6	8.6	9.3	11.1	5.3	9.1	2.7	8.4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는 평소 1주일 동안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를 의미함
 · 중강도 신체활동의 예: 빠르게 걷기, 복식 테니스,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가벼운 물건 나르기, 청소 등
-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39-147.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9-337.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41-349.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9-367.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5-333.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15-323.

- 2023년 기준 장애인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를 살펴보면, '없음(0일)'이 40.8%, '1일 이상'은 59.2%임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0일(32.5%), 1일(13.0%), 2일(14.1%), 3일(14.8%), 4일(6.3%), 5일(10.8%), 6일(2.8%), 7일(5.7%)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61.3%로 여성 55.8%에 비해 5.5%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5-64세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의 비율은 6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장애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이 6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67.4%, 장루·요루장애 6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신장애는 50.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61.3%로 중증장애 53.6%에 비해 7.6%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울산 66.3%, 광주 63.6%, 서울 62.6%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전남 53.0%, 충남 53.3%, 제주 54.4% 등이 있음



〈표 2-2-6〉 장애인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연도	2018	773,326	76.9	5.7	4.6	4.9	2.0	2.8	1.0	2.2
	2019	769,392	75.9	5.8	4.7	5.2	2.1	3.0	1.0	2.2
	2020	672,603	75.2	5.9	4.9	5.2	2.1	3.1	1.1	2.5
	2021	751,907	75.3	6.0	4.9	5.2	2.1	3.2	1.1	2.5
	2022	750,194	74.7	6.0	4.9	5.5	2.2	3.1	1.0	2.6
	2023	741,716	73.5	6.2	5.2	5.7	2.3	3.4	1.1	2.6
성별	남	464,352	66.3	7.7	6.4	7.2	3.1	4.4	1.5	3.4
	여	277,364	85.6	3.7	3.1	3.1	1.1	1.6	0.5	1.3
연령별	19세 이하	148	69.6	10.8	5.4	4.7	2.0	2.7	X	4.1
	20~44세	93,666	67.4	10.1	7.3	6.3	2.5	3.8	1.0	1.6
	45~64세	297,960	67.7	8.7	6.8	7.1	2.8	3.7	1.1	2.2
	65세 이상	349,942	80.2	3.0	3.2	4.3	1.9	3.0	1.1	3.2
장애 유형	지체	397,370	71.6	6.6	5.7	6.2	2.6	3.6	1.2	2.6
	뇌병변	38,964	77.7	4.6	4.0	4.8	1.9	3.0	1.1	2.9
	시각	78,982	71.0	6.6	5.7	6.3	2.7	3.8	1.2	2.7
	청각	116,808	76.6	4.9	4.2	4.9	2.0	3.3	1.2	3.0
	언어	4,527	73.6	6.5	5.2	5.0	2.4	3.5	1.2	2.6
	지적	47,482	80.6	6.4	3.8	3.3	1.2	2.5	0.5	1.6
	자폐성	4,050	69.6	9.0	6.5	4.4	2.5	4.2	1.0	2.8
	정신	18,582	83.7	5.5	3.1	2.9	0.8	1.8	0.5	1.7
	신장	20,683	73.7	6.8	5.6	6.3	2.3	2.6	0.7	1.9
	심장	1,133	69.7	6.4	8.3	5.9	2.6	3.6	1.1	2.3
	호흡기	2,262	76.3	4.5	4.2	4.7	2.5	3.5	1.5	2.7
	간	4,594	64.2	8.1	7.2	7.9	3.3	4.0	1.5	3.8
	안면	1,053	67.6	9.8	6.6	6.7	2.6	3.4	1.7	1.5
	장루·요루	3,685	73.5	5.7	5.2	5.6	2.0	3.7	1.0	3.3
	뇌전증	1,541	77.0	5.5	4.5	4.0	2.5	2.7	1.0	2.8
장애 정도	중증	201,388	77.5	6.0	4.3	4.5	1.8	2.8	0.9	2.2
	경증	540,328	72.1	6.3	5.5	6.1	2.5	3.6	1.2	2.7
지역	서울	104,114	69.2	6.8	6.0	6.8	2.8	4.1	1.4	2.9
	부산	46,177	70.8	6.2	5.5	6.3	2.6	4.1	1.4	3.2
	대구	35,187	75.6	5.3	4.5	5.3	2.1	3.2	1.1	2.9
	인천	44,153	70.6	7.3	5.8	6.4	2.6	3.7	1.2	2.5
	광주	19,856	73.4	6.8	5.2	5.3	2.4	3.2	1.1	2.8
	대전	20,502	72.4	6.6	5.5	6.0	2.4	3.5	1.2	2.5
	울산	15,965	64.0	7.5	6.4	7.3	3.6	5.1	2.8	3.5
	세종	3,900	68.8	8.4	7.7	6.1	2.5	3.2	1.0	2.3
	경기	171,836	70.4	7.2	5.9	6.5	2.6	3.8	1.1	2.5
	강원	27,729	77.4	5.1	4.5	4.9	2.0	2.8	0.8	2.5
	충북	28,386	76.6	5.7	4.5	4.8	2.0	3.2	0.9	2.3
	충남	38,018	80.1	5.2	3.8	3.9	1.7	2.6	0.8	1.9
	전북	35,943	79.5	4.9	4.1	4.2	1.7	2.5	0.8	2.4
	전남	39,581	81.5	4.8	3.7	3.9	1.4	2.2	0.5	2.0
	경북	48,584	81.4	4.2	3.8	3.9	1.6	2.3	0.8	2.0
	경남	52,619	73.4	6.1	5.1	5.6	2.3	3.3	1.2	2.9
	제주	9,166	76.8	5.6	4.7	4.8	2.2	2.8	0.8	2.4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4) '근력운동 시행일수'는 평소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 근력운동 시행일수를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48-156.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8-34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0-358.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68-376.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34-342.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24-332.

- 2023년 기준 장애인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를 살펴보면, '없음(0일)'이 73.5%, '1일 이상'은 26.5%임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0일(62.9%), 1일(10.0%), 2일(8.6%), 3일(8.2%), 4일(3.2%), 5일(4.0%), 6일(1.2%), 7일(1.7%)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33.7%로 여성 14.4%에 비해 19.3%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1일 이상' 비율이 19.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장애의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이 3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면장애 32.4%, 자폐성장애 3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신장애는 16.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은 27.9%로 중증장애 22.5%에 비해 5.5%p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간 근력운동 시행일수가 '1일 이상'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울산 36.0%, 세종 31.2%, 서울 30.8%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전남 18.5%, 경북 18.6%, 충남 19.9% 등이 있음



〈표 2-2-7〉 규칙적 운동 실천률 - 장애인, 비장애인

(단위: %)

구분		2018	2020	2022	2024
전체	계	100.0	100.0	100.0	100.0
	실천함	38.3	40.9	45.5	48.4
	실천하지 않음	61.7	59.1	54.5	51.6
장애인	계	100.0	100.0	100.0	100.0
	실천함	35.1	35.9	38.9	43.0
	실천하지 않음	64.9	64.1	61.1	57.0
비장애인	계	100.0	100.0	100.0	100.0
	실천함	38.5	41.2	45.9	48.6
	실천하지 않음	61.5	58.8	54.1	51.4

주 1) 연도는 조사연도를 의미함

2) 규칙적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등산,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함(출처: 사회조사 조사표)

3)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여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장애인으로 분류함

자료 1) 통계청, 2018~2020~2022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1.29.)

2) 통계청, 2024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5.7.4.)

- 2024년 기준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43.0%로 비장애인 48.6%에 비해 5.6%p 낮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2018년(35.1%)부터 2024년(43.0%)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

3) 보건의료이용

(1) 장애인 건강검진 현황

〈표 2-3-1〉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 및 판정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일반건강검진 수검 현황			판정결과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정상A	정상B (경계)	질환의심			유질환자
								계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연도	2016	1,085,875	703,526	64.8	100.0	2.7	21.4	35.0	32.2	8.8	40.9
	2017	1,093,947	710,486	64.9	100.0	2.6	20.7	33.9	31.0	8.8	42.9
	2018	1,213,784	773,676	63.7	100.0	4.8	21.5	28.1	24.4	8.9	45.6
	2019	1,192,713	770,163	64.6	100.0	4.0	17.5	31.9	28.8	9.2	46.6
	2020	1,161,556	672,863	57.9	100.0	3.5	16.1	32.6	29.6	9.6	47.8
	2021	1,193,333	752,157	63.0	100.0	3.3	15.6	32.2	29.3	9.7	48.9
	2022	1,181,951	750,241	63.5	100.0	3.2	15.1	31.3	28.5	9.6	50.4
성별	남	701,413	464,510	66.2	100.0	2.8	15.2	32.6	29.5	10.4	49.4
	여	466,905	277,516	59.4	100.0	3.6	13.7	27.0	24.8	7.2	55.7
연령별	19세 이하	187	148	79.1	100.0	20.9	45.3	29.7	28.4	8.1	4.1
	20~44세	150,985	93,676	62.0	100.0	9.5	31.2	46.7	44.0	10.3	12.6
	45~64세	443,591	298,015	67.2	100.0	3.5	18.2	33.7	30.1	10.7	44.6
	65세 이상	573,555	350,187	61.1	100.0	1.0	7.1	23.5	21.4	7.7	68.4
장애 유형	지체	559,542	397,543	71.0	100.0	2.9	14.9	28.0	24.9	9.3	54.2
	뇌병변	89,646	38,978	43.5	100.0	3.0	13.0	24.6	22.2	7.5	59.5
	시각	115,746	79,017	68.3	100.0	3.0	17.7	28.8	25.6	9.5	50.5
	청각	187,650	116,863	62.3	100.0	1.4	6.2	35.7	34.2	9.1	56.8
	언어	8,027	4,530	56.4	100.0	5.0	19.3	35.2	31.3	11.4	40.6
	지적	86,593	47,493	54.8	100.0	8.7	30.7	42.5	39.1	10.5	18.2
	자폐성	7,794	4,051	52.0	100.0	12.9	34.8	47.1	45.0	7.4	5.3
	정신	42,160	18,586	44.1	100.0	4.4	19.9	40.6	37.4	10.4	35.1
	신장	45,978	20,694	45.0	100.0	0.5	3.4	21.8	21.1	6.2	74.4
	심장	2,025	1,133	56.0	100.0	1.7	8.8	38.6	37.3	6.6	50.9
	호흡기	4,292	2,263	52.7	100.0	1.0	10.2	36.5	34.0	10.0	52.3
	간	7,407	4,594	62.0	100.0	1.9	11.5	33.4	30.7	10.3	53.2
	안면	1,430	1,053	73.6	100.0	6.3	22.2	37.1	33.7	9.7	34.4
	장루·요루	7,143	3,687	51.6	100.0	3.2	14.0	30.5	27.9	9.4	52.3
장애 정도	뇌전증	2,885	1,541	53.4	100.0	5.0	22.2	52.2	50.6	9.3	20.6
	중증	383,548	201,452	52.5	100.0	4.4	17.9	35.3	32.5	9.7	42.4
지역	경증	784,770	540,574	68.9	100.0	2.6	13.4	28.7	26.0	9.0	55.3
	서울	168,944	104,136	61.6	100.0	3.0	13.8	29.9	27.3	9.2	53.2
	부산	75,673	46,177	61.0	100.0	3.3	15.1	31.1	28.7	7.9	50.5
	대구	57,340	35,187	61.4	100.0	3.5	14.9	31.6	28.8	9.0	50.0
	인천	66,675	44,156	66.2	100.0	2.8	14.0	29.4	26.8	9.2	53.8
	광주	30,845	19,856	64.4	100.0	3.6	17.1	32.7	30.5	8.3	46.6
	대전	31,454	20,502	65.2	100.0	3.4	15.7	30.9	28.2	9.4	50.0
	울산	23,825	15,965	67.0	100.0	3.1	17.7	35.5	33.1	8.5	43.8
	세종	5,778	3,900	67.5	100.0	4.8	17.9	31.1	27.8	9.9	46.1
	경기	263,830	171,890	65.2	100.0	3.1	15.0	30.1	27.1	9.7	51.8
	강원	40,911	27,751	67.8	100.0	2.7	12.5	28.4	25.6	9.5	56.4
	충북	44,316	28,388	64.1	100.0	3.2	14.1	31.2	28.3	9.5	51.5
	충남	60,177	38,020	63.2	100.0	2.6	14.2	30.2	26.9	10.7	53.1
	전북	56,977	36,144	63.4	100.0	3.3	13.9	29.1	26.1	9.1	53.6
	전남	61,750	39,581	64.1	100.0	2.5	13.2	29.1	26.6	8.7	55.2
	경북	79,386	48,587	61.2	100.0	3.3	14.6	30.6	27.7	9.2	51.5
	경남	84,537	52,620	62.2	100.0	3.2	15.7	32.7	30.2	8.5	48.4
	제주	15,900	9,166	57.6	100.0	2.6	14.6	32.5	30.3	9.3	50.3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4) 판정현황 전체(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계), 유질환자의 합을 의미함)
 5) 질환의심의 계는 일반 질환의심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23-32.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3-32.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0.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3-32.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7.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7.
 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37.

- 2023년 기준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은 742,026명이고 수검률은 63.5%임.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정상(A, B)' 17.7%, '질환의심' 30.5%, '유질환자'가 51.8%로 수검인원 중 80.0% 이상이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 및 판정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전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75.9%
- 판정결과: 정상A(10.6%), 정상B(29.5%), 질환의심(32.2%), 유질환자(27.6%)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수검률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판정결과 '유질환자' 비율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수검률은 66.2%로 여성 59.4%에 비해 6.8%p 높고, 판정결과 '유질환자' 비율은 여성이 55.7%로 남성 49.4%에 비해 6.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수검률이 61.1%로 가장 낮은 편이고, 판정결과 '정상(A, B)' 비율은 19세 이상이 66.2%, '질환의심' 비율은 20~44세가 46.7%, '유질환자' 비율은 65세 이상이 68.4%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검률이 높은 장애유형으로는 안면장애 73.6%, 지체장애 71.0%, 시각장애 68.3%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장애 43.5%, 정신장애 44.1%, 신장장애 45.0% 등이 있음. 판정결과 '정상(A, B)' 비율은 자폐성장애가 47.7%, '질환의심' 비율은 뇌전증장애가 52.2%, '유질환자' 비율은 신장장애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수검률은 68.9%로 중증장애 52.5%에 비해 16.4%p 높고, 판정결과 '유질환자' 비율은 경증장애가 55.3%로 중증장애 42.4%에 비해 12.9%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검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강원 67.8%, 세종 67.5%, 울산 67.0%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 57.6%, 부산 61.0%, 경북 61.2% 등이 있음. 판정결과 '질환의심'의 비율은 울산이 35.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유질환자' 비율은 강원이 56.4%로 높게 나타남

※※ 일반건강검진(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통계설명자료)

- 실시범위 및 대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구분	검진대상	실사주기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년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64세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 해당연도: 짝수 해는 짝수년도, 홀수 해는 홀수년도

- 주요항목

-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결과 판정 기준

판정 결과	판정 기준
정상A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경계)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당뇨 질환의심 (확진검사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어 검사 등이 필요한 자
유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

〈표 2-3-2〉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 - 검진종류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2016	1,742,629	759,652	43.6	978,080	527,413	53.9	1,540,778	526,011	34.1
2017	1,805,397	786,422	43.6	988,519	530,515	53.7	1,613,242	559,606	34.7
2018	1,860,544	839,355	45.1	1,032,708	547,658	53.0	1,645,908	589,750	35.8
2019	1,909,436	869,315	45.5	1,040,764	558,000	53.6	1,695,219	612,630	36.1
2020	1,884,208	738,026	39.2	1,024,228	478,329	46.7	1,681,433	509,693	30.3
2021	1,887,627	833,425	44.2	1,047,675	545,023	52.0	1,676,622	569,280	34.0
2022	1,837,741	836,070	45.5	1,034,650	539,303	52.1	1,631,920	565,850	34.7
2023	1,815,827	836,408	46.1	1,016,601	532,060	52.3	1,598,361	562,129	35.2

구분	간암 검진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폐암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2016	67,970	38,573	56.8	418,089	218,413	52.2	436,475	180,582	41.4	-	-	-
2017	66,447	38,602	58.1	427,428	219,007	51.2	446,530	183,451	41.1	-	-	-
2018	76,981	46,125	59.9	445,698	219,707	49.3	465,790	185,721	39.9	-	-	-
2019	78,369	47,637	60.8	450,804	222,095	49.3	471,540	187,662	39.8	-	-	-
2020	79,538	44,464	55.9	439,638	181,831	41.4	463,687	158,740	34.2	28,218	9,719	34.4
2021	79,364	47,967	60.4	449,140	209,859	46.7	466,441	181,124	38.8	26,128	11,967	45.8
2022	78,992	48,090	60.9	439,680	203,006	46.2	457,954	174,649	38.1	28,065	14,393	51.3
2023	78,466	48,852	62.3	433,278	200,206	46.2	451,312	173,092	38.4	30,435	16,309	53.6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3) 전체는 검진종류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인원이 기준임

4) 검진종류별 검진주기와 검진대상이 상이하며, 관련 내용은 하단 설명문을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10.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9.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0.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8.

- 2023년 기준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은 1,815,827명이고 수검률은 46.1%임. 검진종류별로 수검률을 살펴보면, 위암 52.3%, 대장암 35.2%, 간암 62.3%, 유방암 46.2%, 자궁경부암 38.4%, 폐암 53.6%임

2023년 기준 암검진 수검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전체(59.8%), 위암(64.6%), 대장암(41.6%), 간암(76.1%), 유방암(65.1%), 자궁경부암(61.2%), 폐암(53.0%)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검률은 2020년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

※ 국가 암검진(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통계설명자료)

구분	검진대상	실시 주기
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해당연도 출생자	2년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인 자 전체	1년
간암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6개월 (연2회)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인 여성 중 해당연도 출생자	2년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인 여성 중 해당연도 출생자	2년
폐암	· 만 54~74세 흡수/흡수년도 출생자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에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급여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

* 해당연도: 짝수 해는 짝수년도, 홀수 해는 홀수년도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2023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1,815,827	836,408	46.1	1,016,601	532,060	52.3	1,598,361	562,129	35.2
성별	남	1,002,584	484,916	48.4	576,229	317,528	55.1	154,155	44,154	28.6
	여	813,243	351,492	43.2	440,372	214,532	48.7	374,307	135,059	36.1
연령별	20~29세	11,126	2,241	20.1	87,923	45,882	52.2	297,362	93,798	31.5
	30~39세	14,359	5,196	36.2	171,538	91,552	53.4	464,980	195,294	42.0
	40~49세	94,011	53,179	56.6	279,881	170,819	61.0	437,281	187,043	42.8
	50~59세	317,437	143,207	45.1	252,787	153,685	60.8	398,738	85,994	21.6
	60~69세	502,281	271,591	54.1	224,472	70,122	31.2	524,142	185,072	35.3
	70~79세	464,661	245,586	52.9	46,182	23,031	49.9	457,848	206,538	45.1
	80세 이상	411,952	115,408	28.0	369,527	206,099	55.8	616,371	170,519	27.7
장애 유형	지체	864,387	455,887	52.7	494,002	297,947	60.3	11,061	3,224	29.1
	뇌병변	158,623	48,294	30.4	85,421	28,376	33.2	47,858	11,426	23.9
	시각	177,446	86,656	48.8	100,765	56,788	56.4	86	12	14.0
	청각	333,214	146,961	44.1	179,863	90,107	50.1	64,117	15,253	23.8
	언어	12,495	4,737	37.9	6,993	2,917	41.7	63,679	15,950	25.0
	지적	78,439	25,057	31.9	42,426	15,304	36.1	2,420	896	37.0
	자폐성	1,105	129	11.7	319	93	29.2	7,481	2,391	32.0
	정신	75,445	24,546	32.5	42,517	15,001	35.3	9,434	3,409	36.1
	신장	74,457	27,133	36.4	42,133	15,489	36.8	1,430	585	40.9
	심장	2,843	1,297	45.6	1,523	673	44.2	10,093	2,692	26.7
	호흡기	8,126	3,298	40.6	4,446	1,866	42.0	3,324	1,011	30.4
	간	11,430	5,458	47.8	6,050	3,069	50.7	489,125	132,932	27.2
	안면	1,796	978	54.5	1,076	660	61.3	1,109,236	429,197	38.7
	장루·요루	11,740	4,237	36.1	6,584	2,602	39.5	441,822	145,508	32.9
장애 정도	뇌전증	4,281	1,740	40.6	2,483	1,168	47.0	599,426	214,180	35.7
	중증	575,427	208,612	36.3	317,064	128,517	40.5	557,113	202,441	36.3
	경증	1,240,400	627,796	50.6	699,537	403,543	57.7	880,445	334,542	38.0
지역	서울	269,190	116,423	43.2	50,902	25,273	49.7	29,481	10,584	35.9
	부산	120,053	52,769	44.0	58,015	31,999	55.2	6,791	2,084	30.7
	대구	88,960	37,345	42.0	26,630	14,455	54.3	345,071	131,870	38.2
	인천	105,398	51,547	48.9	26,557	14,106	53.1	56,146	24,118	43.0
	광주	47,505	22,097	46.5	19,223	10,429	54.3	56,742	19,717	34.7
	대전	47,384	21,546	45.5	4,626	2,628	56.8	82,289	29,485	35.8
	울산	34,114	16,331	47.9	218,635	115,421	52.8	84,003	29,982	35.7
	세종	8,205	3,858	47.0	34,851	20,635	59.2	91,657	32,570	35.5
	경기	395,108	188,503	47.7	37,595	20,610	54.8	114,018	37,983	33.3
	강원	63,441	33,407	52.7	51,982	27,333	52.6	113,690	38,568	33.9
	충북	65,238	30,516	46.8	52,552	27,496	52.3	21,722	5,726	26.4
	충남	92,715	42,832	46.2	57,780	32,168	55.7	1,389,869	509,089	36.6
	전북	93,885	43,564	46.4	71,724	36,223	50.5	96,431	26,349	27.3
	전남	102,221	49,320	48.2	74,072	38,944	52.6	112,061	26,691	23.8
	경북	128,150	57,306	44.7	14,069	6,288	44.7	47,944	11,438	23.9
	경남	129,602	59,699	46.1	868,120	476,795	54.9	64,117	15,253	23.8
	제주	24,658	9,345	37.9	63,219	24,867	39.3	766,645	307,656	40.1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4) 전체는 검진종류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실질인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84-196, 213-215, 229-231, 248-250, 257-259.

-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암검진 수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전체 암검진 수검률은 48.4%로 여성 43.2%에 비해 5.2%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와 60~69세의 전체 암검진 수검률이 각각 56.6%, 5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20~29세와 80세 이상은 각각 20.1%, 28.0%로 낮게 나타남

〈표 2-3-3〉 장애인 암검진 수검 현황(2023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명, %)

구분		간암 검진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폐암 검진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전체		78,466	48,852	62.3	433,278	200,206	46.2	451,312	173,092	38.4	30,435	16,309	53.6
성별	남	51,389	32,076	62.4	-	-	-	-	-	-	15,637	8,998	57.5
	여	27,077	16,776	62.0	433,278	200,206	46.2	451,312	173,092	38.4	65	33	50.8
연령별	20~29세	7,882	5,036	63.9	-	-	-	11,124	2,241	20.1	6,628	3,113	47.0
	30~39세	18,727	11,538	61.6	-	-	-	14,354	5,196	36.2	17,800	9,995	56.2
	40~49세	26,420	17,458	66.1	28,129	14,143	50.3	28,133	12,670	45.0	6,007	3,201	53.3
	50~59세	17,625	11,316	64.2	54,875	29,970	54.6	54,865	27,739	50.6	17,237	8,904	51.7
	60~69세	7,812	3,504	44.9	101,348	62,748	61.9	99,946	55,767	55.8	13,198	7,405	56.1
	70~79세	3,020	1,953	64.7	115,037	64,083	55.7	112,022	51,064	45.6	15,785	9,083	57.5
	80세 이상	36,911	23,314	63.2	133,889	29,262	21.9	130,868	18,415	14.1	9,864	5,473	55.5
장애 유형	지체	35,650	25,171	70.6	205,980	110,814	53.8	205,404	93,849	45.7	-	-	-
	뇌병변	4,751	2,395	50.4	35,421	9,396	26.5	37,266	8,792	23.6	911	333	36.6
	시각	6,805	4,620	67.9	41,357	21,025	50.8	42,372	18,664	44.0	519	236	45.5
	청각	9,993	6,475	64.8	83,709	33,925	40.5	83,637	27,993	33.5	26	13	50.0
	언어	457	260	56.9	2,130	925	43.4	2,232	860	38.5	122	65	53.3
	지적	3,291	1,752	53.2	18,803	6,582	35.0	30,961	6,451	20.8	133	68	51.1
	자폐성	20	13	65.0	46	13	28.3	789	20	2.5	44	22	50.0
	정신	3,098	1,540	49.7	21,308	7,862	36.9	22,860	6,857	30.0	161	72	44.7
	신장	6,762	3,351	49.6	16,883	6,162	36.5	17,750	6,334	35.7	44	11	25.0
	심장	163	96	58.9	552	232	42.0	664	286	43.1	6,820	3,179	46.6
	호흡기	397	232	58.4	1,151	492	42.7	1,177	492	41.8	23,615	13,130	55.6
	간	6,368	2,503	39.3	1,846	1,028	55.7	1,965	1,057	53.8	6,372	3,393	53.2
	안면	74	54	73.0	448	280	62.5	491	268	54.6	10,171	5,521	54.3
	장루·요루	431	267	61.9	2,472	892	36.1	2,422	628	25.9	13,892	7,395	53.2
장애 정도	뇌전증	206	123	59.7	1,172	578	49.3	1,322	541	40.9	29,752	16,013	53.8
	중증	25,618	14,095	55.0	131,924	47,609	36.1	150,301	43,399	28.9	6,512	3,067	47.1
지역	경증	52,848	34,757	65.8	301,354	152,597	50.6	301,011	129,693	43.1	17,399	9,796	56.3
	서울	4,836	2,980	61.6	63,753	29,647	46.5	67,506	27,803	41.2	6,709	3,743	55.8
	부산	4,235	2,809	66.3	29,084	12,654	43.5	30,333	11,233	37.0	1,114	680	61.0
	대구	2,241	1,443	64.4	21,495	8,912	41.5	22,621	8,202	36.3	1,171	573	48.9
	인천	1,987	1,293	65.1	23,689	11,591	48.9	24,771	10,196	41.2	1,546	758	49.0
	광주	1,741	1,083	62.2	11,606	5,667	48.8	12,488	5,261	42.1	1,512	792	52.4
	대전	353	225	63.7	11,222	5,566	49.6	12,038	5,012	41.6	1,684	918	54.5
	울산	15,767	9,752	61.9	7,678	3,567	46.5	8,218	3,516	42.8	2,271	1,231	54.2
	세종	2,629	1,808	68.8	1,895	882	46.5	2,024	839	41.5	2,461	1,282	52.1
	경기	2,188	1,310	59.9	89,610	42,454	47.4	94,714	38,465	40.6	397	204	51.4
	강원	3,042	1,855	61.0	14,727	7,549	51.3	14,841	6,408	43.2	28,203	15,419	54.7
	충북	3,488	2,115	60.6	15,908	7,860	49.4	16,452	6,433	39.1	1,005	465	46.3
	충남	5,235	3,345	63.9	22,569	10,503	46.5	23,075	8,402	36.4	1,227	425	34.6
	전북	5,983	3,624	60.6	23,774	10,761	45.3	24,404	9,093	37.3	316	92	29.1
	전남	6,136	4,053	66.1	26,933	13,097	48.6	26,845	8,791	32.7	911	333	36.6
	경북	1,277	737	57.7	31,722	13,162	41.5	32,400	10,508	32.4	20,106	11,152	55.5
	경남	57,730	38,975	67.5	31,157	13,566	43.5	31,881	10,746	33.7	1,401	610	43.5
	제주	14,327	6,572	45.9	6,456	2,768	42.9	6,701	2,184	32.6	3,097	1,663	53.7

주: 1) 기전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사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4) 전체는 검진종류별 중증 인원을 제외한 실질인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84-196, 213-215, 229-231, 248-250, 257-259.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면장애와 지체장애의 경우 각각 54.5%, 52.7%로 전체 암검진 수검률이 높은 반면, 자폐성장애는 11.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음. 검진종류별로는 자폐성장애의 자궁경부암 수검률이 2.5%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전체 암검진 수검률은 50.6%로 중증장애 36.3%에 비해 14.3%p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암검진 수검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강원 52.7%, 인천 48.9%, 전남 48.2%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제주 37.9%, 대구 42.0%, 서울 43.2% 등이 있음



〈표 2-3-4〉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 - 검진종류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간암 검진(상반기)		
	수검인원	위암		수검인원	대장암		수검인원	간암 의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6	527,413	979	0.19	526,011	153	0.03	15,530	150	0.97
2017	530,515	963	0.18	559,606	199	0.04	15,438	140	0.91
2018	547,658	985	0.18	589,750	414	0.07	23,476	259	1.10
2019	558,000	948	0.17	612,630	407	0.07	24,901	270	1.08
2020	478,329	862	0.18	509,693	358	0.07	24,195	221	0.91
2021	545,023	913	0.17	569,280	389	0.07	28,403	245	0.86
2022	539,303	883	0.16	565,850	354	0.06	27,469	218	0.79
2023	532,060	805	0.15	562,129	282	0.05	23,308	256	1.10

구분	간암 검진(하반기)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폐암 검진		
	수검인원	간암 의심		수검인원	유방암 의심		수검인원	자궁경부암 의심		수검인원	폐암 의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6	23,043	156	0.68	218,413	369	0.17	180,582	47	0.03	-	-	-
2017	23,164	150	0.65	219,007	379	0.17	183,451	37	0.02	-	-	-
2018	22,287	214	0.96	219,707	329	0.15	185,721	35	0.02	-	-	-
2019	22,736	177	0.78	222,095	360	0.16	187,662	25	0.01	-	-	-
2020	20,269	190	0.94	181,831	344	0.19	158,740	21	0.01	9,719	430	4.42
2021	19,564	178	0.91	209,859	392	0.19	181,124	34	0.02	11,967	594	4.96
2022	20,621	166	0.81	203,006	397	0.20	174,649	27	0.02	14,393	545	3.79
2023	25,544	336	1.32	200,206	434	0.22	173,092	32	0.02	16,309	376	2.31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수검자 기준임

2) 비율 = (암판정인원/수검인원) X 100(%)

3) 검진종류별 수검인원은 기존 암환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인 건강 통계」 p.59, 70, 80, 89, 101, 104.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9, 69, 79, 87, 98, 101.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7, 47, 57, 65, 76, 79.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0, 229, 248, 256, 267.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12, 231, 250, 258, 269, 272, 279.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24, 243, 262, 270, 281, 284, 290.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97, 216, 235, 243, 254, 257, 263.

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197, 216, 232, 240, 251, 254, 260.

- 2023년 기준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인원 수는 '위암'이 80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방암 의심' 434명, '폐암 의심' 376명, '간암 의심(하반기)' 336명, '대장암' 282명, '간암 의심(상반기)' 256명, '자궁경부암 의심' 32명 순으로 나타남. 수검인원 대비 암판정 비율은 '폐암 의심'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남

2023년 기준 전체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위암(8,554명, 0.10%), 대장암(2,728명, 0.04%), 간암 의심(상반기)(3,251명, 0.69%), 간암 의심(하반기)(4,183명, 0.91%), 유방암 의심(8,090명, 0.18%), 자궁경부암 의심(433명, 0.01%), 폐암 의심(5,476명, 3.41%)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암(의심) 판정 비율은 '간암 의심', '폐암(의심) 판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남

〈표 2-3-5〉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2023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위암 검진			대장암 검진			간암 검진(상반기)		
		수검인원	위암		수검인원	대장암		수검인원	간암 의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532,060	805	0.15	562,129	282	0.05	23,308	256	1.10
성별	남	317,528	604	0.19	334,542	205	0.06	15,253	187	1.23
	여	214,532	201	0.09	227,587	77	0.03	8,055	69	0.86
연령별	20~29세	-	-	-	-	-	-	-	-	-
	30~39세	-	-	-	-	-	-	-	-	-
	40~49세	45,882	21	0.05	-	-	-	2,176	9	0.41
	50~59세	91,552	83	0.09	93,798	32	0.03	5,221	41	0.79
	60~69세	170,819	256	0.15	195,294	94	0.05	8,344	104	1.25
	70~79세	153,685	286	0.19	187,043	99	0.05	5,733	73	1.27
	80세 이상	70,122	159	0.23	85,994	57	0.07	1,834	29	1.58
장애 유형	지체	297,947	384	0.13	307,656	134	0.04	12,058	142	1.18
	뇌병변	28,376	49	0.17	33,852	14	0.04	1,145	14	1.22
	시각	56,788	88	0.15	56,456	36	0.06	2,220	29	1.31
	청각	90,107	200	0.22	107,316	64	0.06	3,258	35	1.07
	언어	2,917	5	0.17	3,224	3	0.09	126	-	-
	지적	15,304	17	0.11	11,426	3	0.03	780	6	0.77
	자폐성	93	-	-	12	-	-	8	-	-
	정신	15,001	15	0.10	15,253	8	0.05	706	6	0.85
	신장	15,489	28	0.18	15,950	9	0.06	1,490	7	0.47
	심장	673	2	0.30	896	-	-	41	X	X
	호흡기	1,866	3	0.16	2,391	X	X	115	X	X
	간	3,069	5	0.16	3,409	X	X	1,174	13	1.11
	안면	660	-	-	585	-	-	20	-	-
	장루·요루	2,602	7	0.27	2,692	8	0.30	122	2	1.64
장애 정도	중증	128,517	197	0.15	132,932	62	0.05	6,495	66	1.02
	경증	403,543	608	0.15	429,197	220	0.05	16,813	190	1.13
지역	서울	73,342	117	0.16	80,844	46	0.06	3,070	30	0.98
	부산	34,710	59	0.17	33,246	18	0.05	1,857	28	1.51
	대구	25,273	46	0.18	20,973	12	0.06	1,372	14	1.02
	인천	31,999	39	0.12	36,826	18	0.05	1,376	18	1.31
	광주	14,455	11	0.08	13,550	8	0.06	680	10	1.47
	대전	14,106	31	0.22	14,003	6	0.04	572	4	0.70
	울산	10,429	10	0.10	10,584	5	0.05	461	6	1.30
	세종	2,628	3	0.11	2,084	X	X	115	X	X
	경기	115,421	160	0.14	131,870	75	0.06	4,829	51	1.06
	강원	20,635	22	0.11	24,118	7	0.03	891	9	1.01
	충북	20,610	38	0.18	19,717	13	0.07	655	9	1.37
	충남	27,333	40	0.15	29,485	11	0.04	890	10	1.12
	전북	27,496	38	0.14	29,982	7	0.02	1,017	12	1.18
	전남	32,168	51	0.16	32,570	17	0.05	1,604	14	0.87
	경북	36,223	75	0.21	37,983	18	0.05	1,722	20	1.16
	경남	38,944	52	0.13	38,568	17	0.04	1,871	19	1.02
	제주	6,288	13	0.21	5,726	3	0.05	326	X	X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4) 비율 = (암판정인원/수검인원) X 100(%)

5) 검진종류별 수검인원은 기준 암환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통통계」, p.197~203, 216~222, 232~247, 251~256, 260~265.

-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암검진 수검 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검진종류에서 남성의 암(의심) 판정 비율이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남(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제외)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검진종류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암(의심) 판정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2-3-5〉 장애인 암검진 수검인원 중 암(의심) 판정 현황(2023년) - 검진종류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명, %)

구분		간암 검진(하반기)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			폐암 검진		
		수검인원	인원	비율	수검인원	인원	비율	수검인원	인원	비율	수검인원	인원	비율
전체		25,544	336	1.32	200,206	434	0.22	173,092	32	0.02	16,309	376	2.31
성별	남	16,823	237	1.41	-	-	-	-	-	-	16,013	372	2.32
	여	8,721	99	1.14	200,206	434	0.22	173,092	32	0.02	296	4	1.35
연령별	20~29세	-	-	-	-	-	-	2,241	-	-	-	-	-
	30~39세	-	-	-	-	-	-	5,196	-	-	-	-	-
	40~49세	2,860	29	1.01	14,143	35	0.25	12,670	3	0.02	-	-	-
	50~59세	6,317	75	1.19	29,970	90	0.30	27,739	2	0.01	3,113	49	1.57
	60~69세	9,114	115	1.26	62,748	116	0.18	55,767	7	0.01	9,995	218	2.18
	70~79세	5,583	80	1.43	64,083	127	0.20	51,064	9	0.02	3,201	109	3.41
	80세 이상	1,670	37	2.22	29,262	66	0.23	18,415	11	0.06	-	-	-
장애 유형	지체	13,113	174	1.33	110,814	213	0.19	93,849	20	0.02	11,152	228	2.04
	뇌병변	1,250	17	1.36	9,396	28	0.30	8,792	X	X	610	13	2.13
	시각	2,400	36	1.50	21,025	48	0.23	18,664	X	X	1,663	51	3.07
	청각	3,217	59	1.83	33,925	45	0.13	27,993	7	0.03	1,909	60	3.14
	언어	134	X	X	925	5	0.54	860	-	-	63	4	6.35
	지적	972	6	0.62	6,582	24	0.36	6,451	X	X	92	X	X
	자폐성	5	-	-	13	-	-	20	-	-	-	-	-
	정신	834	8	0.96	7,862	42	0.53	6,857	2	0.03	333	8	2.40
	신장	1,861	23	1.24	6,162	22	0.36	6,334	-	-	236	4	1.69
	심장	55	X	X	232	X	X	286	-	-	13	-	-
	호흡기	117	X	X	492	X	X	492	-	-	65	2	3.08
	간	1,329	8	0.60	1,028	4	0.39	1,057	-	-	68	2	2.94
	안면	34	-	-	280	-	-	268	-	-	22	-	-
	장루·요루	145	2	1.38	892	-	-	628	-	-	72	3	4.17
장애 정도	뇌전증	78	-	-	578	X	X	541	-	-	11	-	-
	중증	7,600	85	1.12	47,609	146	0.31	43,399	5	0.01	3,179	83	2.61
	경증	17,944	251	1.40	152,597	288	0.19	129,693	27	0.02	13,130	293	2.23
지역	서울	3,215	39	1.21	29,647	68	0.23	27,803	6	0.02	1,823	48	2.63
	부산	2,278	88	3.86	12,654	32	0.25	11,233	3	0.03	993	22	2.22
	대구	1,608	14	0.87	8,912	16	0.18	8,202	X	X	739	16	2.17
	인천	1,433	15	1.05	11,591	22	0.19	10,196	X	X	1,365	30	2.20
	광주	763	8	1.05	5,667	16	0.28	5,261	-	-	403	4	0.99
	대전	721	4	0.55	5,566	16	0.29	5,012	-	-	382	10	2.62
	울산	622	6	0.96	3,567	6	0.17	3,516	2	0.06	378	15	3.97
	세종	110	-	-	882	2	0.23	839	-	-	45	4	8.89
	경기	4,923	52	1.06	42,454	59	0.14	38,465	4	0.01	3,743	87	2.32
	강원	917	4	0.44	7,549	15	0.20	6,408	2	0.03	680	15	2.21
	충북	655	3	0.46	7,860	13	0.17	6,433	X	X	573	15	2.62
	충남	965	15	1.55	10,503	32	0.30	8,402	X	X	758	12	1.58
	전북	1,098	8	0.73	10,761	38	0.35	9,093	4	0.04	792	19	2.40
	전남	1,741	20	1.15	13,097	32	0.24	8,791	-	-	918	14	1.53
	경북	1,902	14	0.74	13,162	20	0.15	10,508	5	0.05	1,231	38	3.09
	경남	2,182	40	1.83	13,566	42	0.31	10,746	2	0.02	1,282	23	1.79
	제주	411	6	1.46	2,768	5	0.18	2,184	-	-	204	4	1.96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암검진 수검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4) 비율 = (암판정인원/수검인원) X 100(%)

5) 검진종류별 수검인원은 기존 암환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통통계」, p.197~203, 216~222, 232~247, 251~256, 260~265.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위암, 대장암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의 암(의심) 판정 비율이 유사하고, 간암의 경우 경증장애가 중증장애에 비해 암(의심) 판정 비율이 높음. 유방암과 폐암의 경우 중증장애가 경증장애에 비해 암(의심) 판정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3-6〉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소견 현황(2023년)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구강검진 수검 현황			종합소견				
		대상인원	수검인원	수검률	계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필요
전체		1,168,318	208,490	17.8	100.0	0.5	30.4	29.8	39.3
성별	남	701,413	138,706	19.8	100.0	0.5	29.3	29.3	40.9
	여	466,905	69,784	14.9	100.0	0.6	32.5	30.7	36.2
연령별	19세 이하	187	71	38.0	100.0	X	35.2	36.6	26.8
	20~44세	150,985	37,359	24.7	100.0	0.7	28.7	37.3	33.3
	45~64세	443,591	92,840	20.9	100.0	0.5	28.4	30.8	40.3
	65세 이상	573,555	78,220	13.6	100.0	0.4	33.5	25.0	41.1
장애 유형	지체	559,542	111,649	20.0	100.0	0.5	31.5	30.6	37.4
	뇌병변	89,646	10,597	11.8	100.0	0.5	29.0	27.7	42.8
	시각	115,746	21,820	18.9	100.0	0.5	30.8	31.2	37.5
	청각	187,650	29,855	15.9	100.0	0.5	32.5	27.0	40.0
	언어	8,027	1,472	18.3	100.0	0.3	25.3	28.5	45.9
	지적	86,593	15,800	18.2	100.0	0.6	23.2	30.4	45.7
	자폐성	7,794	1,443	18.5	100.0	1.1	31.4	43.2	24.3
	정신	42,160	5,661	13.4	100.0	0.5	20.8	24.1	54.5
	신장	45,978	6,003	13.1	100.0	0.6	29.6	28.6	41.2
	심장	2,025	366	18.1	100.0	0.5	33.3	29.2	36.9
	호흡기	4,292	631	14.7	100.0	0.5	34.5	23.8	41.2
	간	7,407	1,402	18.9	100.0	0.7	30.5	29.3	39.5
	안면	1,430	365	25.5	100.0	0.8	31.0	29.3	38.9
	장루·요루	7,143	945	13.2	100.0	0.7	28.6	27.2	43.5
장애 정도	뇌전증	2,885	481	16.7	100.0	1.0	25.8	31.0	42.2
	중증	383,548	59,449	15.5	100.0	0.5	27.7	29.2	42.6
	경증	784,770	149,041	19.0	100.0	0.5	31.5	30.0	38.0
지역	서울	168,944	29,534	17.5	100.0	0.1	28.0	33.6	38.2
	부산	75,673	13,647	18.0	100.0	0.1	31.7	30.7	37.5
	대구	57,340	8,309	14.5	100.0	0.3	21.9	34.2	43.6
	인천	66,675	15,597	23.4	100.0	0.7	31.1	26.0	42.2
	광주	30,845	6,213	20.1	100.0	0.1	25.1	37.3	37.6
	대전	31,454	8,227	26.2	100.0	0.6	34.4	32.3	32.7
	울산	23,825	7,781	32.7	100.0	0.3	52.2	20.5	27.1
	세종	5,778	1,075	18.6	100.0	0.3	33.5	34.0	32.2
	경기	263,830	46,319	17.6	100.0	0.9	27.6	32.6	38.9
	강원	40,911	6,626	16.2	100.0	1.3	22.2	30.0	46.4
	충북	44,316	10,530	23.8	100.0	0.8	33.0	24.2	41.9
	충남	60,177	9,305	15.5	100.0	0.3	32.6	27.5	39.6
	전북	56,977	13,118	23.0	100.0	0.4	32.0	26.0	41.6
	전남	61,750	7,522	12.2	100.0	0.2	30.2	26.3	43.2
	경북	79,386	9,027	11.4	100.0	0.7	34.8	24.3	40.2
	경남	84,537	13,025	15.4	100.0	0.2	29.7	27.9	42.2
	제주	15,900	2,635	16.6	100.0	0.1	39.5	26.7	33.7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임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4) 수검률 = (수검인원/대상인원) X 100(%)
 5) 종합소견 개(구강검진 수검인원은 양호, 주의, 질환의심, 치료필요의 합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266-282.

- 2023년 기준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인원은 208,490명이고 수검률은 17.8%임. 종합소견을 살펴보면, '양호' 0.5%, '주의' 30.4%, '질환의심' 29.8%, '치료필요'가 39.3%로 수검인원 중 69.1%가 구강건강에 대해 질환이 의심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기준 전체 구강검진 수검 및 종합소견 현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전체 구강검진 수검률: 27.0%
- 판정결과: 양호(0.7%), 주의(32.2%), 질환의심(37.2%), 치료필요(30.0%)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9.8%로 여성 14.9%에 비해 4.9%p 높고,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 비율은 남성이 40.9%로 여성 36.2%에 비해 4.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 이하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38.0%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은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남.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의 비율은 45세 이상(45-64세, 65세 이상)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장애유형으로는 안면장애 25.5%, 지체장애 20.0%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유형으로는 뇌병변장애 11.8%, 신장장애 13.1%, 장루·요루장애 13.2% 등이 있음.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 비율은 정신장애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언어장애 45.9%, 지적장애 45.7% 등의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9.0%로 중증장애 15.5%에 비해 3.5%p 높고,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 비율은 중증장애가 42.6%로 경증장애 38.0%에 비해 4.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구강검진 수검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울산 32.7%, 대전 26.2% 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11.4%, 전남 12.2% 등이 있음. 종합소견 결과 '치료필요' 비율은 강원 46.4%, 대구 43.6%, 전남 43.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구강검진(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통계설명자료)

- 실시범위 및 대상

- 구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 피부양자'임

구분	검진대상	실시주기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근로자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연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직장 피부양자	· 만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64세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 해당연도: 짝수 해는 짝수년도, 홀수 해는 홀수년도

- 주요항목

- 치아검사: 치아우식증, 인접면우식의심치아, 수복치아, 상실치아
- 치주조기검사: 치은염증, 치석

- 구강검진 결과 판정 기준(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

판정 결과	판정 기준
양호	· 치과병력, 구강건강습관 문제 등 이상 소견이 없고, 수복치아, 치료가 필요한 우식 치아가 없는 경우
주의	· 구강검사결과 수복치아가 있거나 기타 이상소견에서 구강악습관 등 주의가 필요한 소견이 있는 경우 · 치면세균막검사(40세) 결과 '보통'으로 판정받은 경우 · 문진 평가 결과 각 항목에 1개 이상의 이상 소견을 보여, '생활습관 위험도'에 '주의' 혹은 '위험으로 표시된 경우
질환의심	· 우식 의심치아가 있거나 치은염이나 치석이 '경증'으로 존재하는 경우 · 치면세균막검사(40세) 결과 '개선요망'으로 판정받은 경우
치료필요	· 명확한 우식치아가 있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치주질환(잇몸병)에서 치석이 중증 이상 있거나 치주낭이 존재하는 경우

(2)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표 2-3-7〉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일, 원)

구분		적용인구	진료실인원	입내원일수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입내원 1회당 진료비
연도	2016	2,423,456	2,348,609	133,148,808	54.9	70,947.2
	2017	2,474,899	2,404,224	139,937,688	56.5	78,358.6
	2018	2,570,851	2,502,296	148,571,222	57.8	83,974.7
	2019	2,605,005	2,537,439	152,377,661	58.5	89,788.1
	2020	2,619,427	2,535,276	143,796,378	54.9	98,708.0
	2021	2,629,451	2,552,035	144,088,715	54.8	104,446.5
	2022	2,618,706	2,566,345	145,765,586	55.7	107,585.0
	2023	2,622,562	2,566,395	144,503,239	55.1	113,565.7
성별	남	1,517,893	1,475,412	76,143,797	50.2	119,108.4
	여	1,104,669	1,090,983	68,359,442	61.9	107,391.8
연령별	19세 이하	98,863	97,344	3,649,911	36.9	106,124.8
	20~44세	295,296	277,736	9,617,170	32.6	120,750.4
	45~64세	818,425	792,626	42,195,780	51.6	119,142.1
	65세 이상	1,409,978	1,398,689	89,040,378	63.2	110,452.0
장애 유형	지체	1,147,414	1,122,837	50,251,004	43.8	96,853.7
	뇌병변	235,660	231,893	22,054,596	93.6	131,965.3
	시각	246,925	241,274	9,529,161	38.6	91,897.3
	청각	429,965	424,665	20,050,704	46.6	89,657.2
	언어	22,590	22,065	1,308,449	57.9	112,057.4
	지적	229,099	215,914	8,944,399	39.0	78,739.5
	자폐성	42,691	40,901	1,040,616	24.4	57,426.9
	정신	103,648	102,674	12,993,989	125.4	78,122.2
	신장	106,872	106,784	15,629,888	146.2	218,632.4
	심장	4,811	4,789	215,911	44.9	318,034.5
	호흡기	10,632	10,586	562,328	52.9	186,386.6
	간	15,566	15,536	624,416	40.1	397,502.4
	안면	2,744	2,643	84,298	30.7	89,608.0
장애 정도	장루·요루	16,969	16,875	862,214	50.8	174,463.1
	뇌전증	6,976	6,959	351,266	50.4	105,730.2
장애 정도	중증	965,166	935,848	69,680,294	72.2	127,441.8
	경증	1,657,396	1,630,547	74,822,945	45.1	100,643.2
지역	서울	388,423	379,980	20,731,074	53.4	122,282.6
	부산	174,784	171,295	11,878,911	68.0	110,798.6
	대구	129,904	127,267	7,767,260	59.8	109,738.1
	인천	150,286	146,920	7,816,444	52.0	120,405.6
	광주	69,005	67,551	4,219,524	61.1	111,598.0
	대전	71,187	69,816	3,992,645	56.1	109,165.0
	울산	51,032	49,963	2,899,910	56.8	115,448.7
	세종	12,782	12,558	643,337	50.3	121,109.2
	경기	579,340	565,902	27,907,814	48.2	122,469.1
	강원	99,957	97,616	4,474,179	44.8	115,540.8
	충북	96,389	94,218	4,870,309	50.5	112,225.3
	충남	132,583	129,735	6,945,072	52.4	107,885.4
	전북	129,460	127,362	8,303,488	64.1	100,068.9
	전남	135,796	133,344	8,713,757	64.2	101,952.0
	경북	177,348	173,373	9,802,546	55.3	106,944.1
	경남	187,480	183,530	11,529,909	61.5	107,854.0
	제주	36,806	35,965	2,007,060	54.5	101,948.1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적용인구'는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제공받는 장애인 인구를 의미함
 4) '진료실 인원'은 건강보험대상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로 실인원과 다를 수 있음
 5)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제공받는 장애인 1명이 1년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방문 일수의 평균을 의미함
 ※ 입내원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 입내원일수/적용인구
 6)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한 명이 의료기관에 1일 입내원할 때 지출하는 진료비의 평균
 ※ 입내원 1회당 진료비 = 진료비/입내원일수

-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418-420.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91-393.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57-359.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47-549.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59-561.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97-599.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05-614.
 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95-604.

- 2023년 기준 정부나 사회보장기금으로 부터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적용인구) 수는 2,622,562명이고, 진료실인원 수는 2,566,395명임. 입내원일수는 144,503,239일이며,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55.1일,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113,565.7원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실인원,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입내원일수와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1.7일 더 길고,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11,716.6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높아지고,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20-44세가 120,750.4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신장장애가 146.2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간장애가 397,520.4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중증장애가 경증장애에 비해 27.1일 더 길고, 입내원 1회당 진료비는 중증장애가 경증장애에 비해 26,798.6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가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 68.0일, 전남 64.2일, 전북 64.1일 등이 있고, 입내원 1회당 진료비가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 122,282.6원, 경기 122,469.1원, 세종 121,109.2원 등이 있음

〈표 2-3-8〉 장애인 진료비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천원, 원)

구분		진료실인원(명)	총진료비(천원)	본인부담금(천원)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원)	본인부담금(원)
연도	2016	2,348,609	11,240,246,142	1,869,355,242	4,785,916	795,941
	2017	2,404,224	12,922,948,012	2,175,332,493	5,375,101	904,796
	2018	2,502,296	14,652,772,963	2,397,795,315	5,855,731	958,238
	2019	2,537,439	16,053,215,192	2,624,587,972	6,324,294	1,033,978
	2020	2,535,276	16,673,457,983	2,752,827,670	6,573,759	1,085,343
	2021	2,552,987	17,677,480,641	2,946,297,973	6,924,234	1,154,059
	2022	2,567,207	18,454,873,990	3,079,892,081	7,188,697	1,199,705
	2023	2,567,399	19,328,566,126	3,218,664,998	7,528,462	1,253,668
성별	남	1,476,131	10,645,380,372	1,717,818,490	7,211,677	1,163,730
	여	1,091,268	8,683,185,754	1,500,846,508	7,956,969	1,375,323
연령별	19세 이하	97,359	438,140,002	66,360,253	4,500,252	681,604
	20~44세	277,931	1,306,498,626	183,432,403	4,700,802	659,993
	45~64세	793,084	5,729,080,122	772,993,983	7,223,800	974,668
	65세 이상	1,399,025	11,854,847,375	2,195,878,359	8,473,649	1,569,578
장애 유형	지체	1,123,351	6,165,249,829	1,269,768,059	5,488,267	1,130,340
	뇌병변	232,007	3,223,355,098	558,823,103	13,893,353	2,408,648
	시각	241,372	1,153,075,832	232,065,394	4,777,173	961,443
	청각	424,758	2,337,887,604	495,952,046	5,504,046	1,167,611
	언어	22,078	169,460,241	29,708,863	7,675,525	1,345,632
	지적	216,055	834,120,945	94,724,902	3,860,688	438,430
	자폐성	40,914	78,602,458	18,530,389	1,921,163	452,911
	정신	102,687	1,088,933,463	83,078,314	10,604,395	809,044
	신장	106,784	3,553,547,524	339,093,676	33,277,902	3,175,510
	심장	4,789	82,100,143	9,423,198	17,143,484	1,967,675
	호흡기	10,586	127,225,149	20,502,886	12,018,246	1,936,793
	간	15,536	280,345,671	33,103,085	18,044,907	2,130,734
	안면	2,643	9,579,417	1,893,691	3,624,448	716,493
	장루·요루	16,879	170,548,379	26,290,772	10,104,176	1,557,602
장애 정도	중증	936,279	9,765,411,056	1,273,163,972	10,430,023	1,359,813
	경증	1,631,120	9,563,155,070	1,945,501,026	5,862,938	1,192,739
지역	서울	380,088	2,977,789,476	485,506,346	7,834,474	1,277,352
	부산	171,333	1,521,190,537	239,612,024	8,878,561	1,398,516
	대구	127,281	999,731,717	155,046,402	7,854,524	1,218,143
	인천	146,953	1,111,300,618	178,321,278	7,562,286	1,213,458
	광주	67,559	544,511,451	88,394,341	8,059,791	1,308,402
	대전	69,827	515,280,773	82,551,060	7,379,392	1,182,223
	울산	49,973	384,027,536	66,417,321	7,684,700	1,329,064
	세종	12,568	91,568,061	16,024,229	7,285,810	1,275,002
	경기	566,195	4,042,709,792	689,575,261	7,140,137	1,217,911
	강원	97,791	628,044,261	107,925,936	6,422,311	1,103,639
	충북	94,267	647,197,830	109,495,882	6,865,582	1,161,551
	충남	129,783	896,784,475	158,198,666	6,909,876	1,218,948
	전북	127,412	991,776,178	165,346,399	7,784,009	1,297,730
	전남	133,381	1,044,914,215	182,454,479	7,834,056	1,367,920
	경북	173,444	1,247,725,719	210,163,065	7,193,825	1,211,706
	경남	183,576	1,441,006,564	241,926,953	7,849,646	1,317,857
	제주	35,968	243,006,923	41,705,357	6,756,198	1,159,513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진료실 인원 은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로 실인원과 다를 수 있음
 4) '총 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5)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1명이 1년 동안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지출하는 진료비의 평균을 말함
 ※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 총진료비/진료실인원
 6)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청구명세서 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1명이 1년 동안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지출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의 평균을 말함
 ※ 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금 = (진료비-급여비)/진료실인원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430-432.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403-405.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69-371.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59-561.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71-573.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09-611.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45-654.
 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35-644.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총 진료비는 약 19조 3천억 원 이상이며, 그 중 본인부담금 총액인 약 3조 2천억 원임.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7,528,462원이며,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253,668원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은 매해 증가하고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745,292원 더 높고, 본인부담금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1,593원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65세 이상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569,578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장장애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각각 33,277,902원, 3,175,510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는 중증장애가 경증장애에 비해 4,567,085원 더 높고, 본인부담금 또한 중증장애가 경증장애에 비해 167,074원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료실인원, 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나타남.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가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 8,878,561원, 광주 8,059,791원 등이 있고,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이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 1,398,516원, 전남 1,367,920원 등이 있음

〈표 2-3-9〉 장애인 의료비 수급권자 현황 - 수급자격별, 연도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연도	2017	93,499	100.0	39,382	42.1	54,117	57.9
	2018	91,882	100.0	37,991	41.3	53,891	58.7
	2019	91,007	100.0	36,859	40.5	54,148	59.5
	2020	91,537	100.0	37,040	40.5	54,497	59.5
	2021	92,671	100.0	35,491	38.3	57,180	61.7
	2022	91,981	100.0	34,478	37.5	57,503	62.5
	2023	91,948	100.0	33,060	36.0	58,888	64.0
	2024	89,736	100.0	32,835	36.7	56,901	63.4
장애정도	중증	39,738	100.0	17,582	44.2	22,156	55.8
	경증	49,998	100.0	15,253	30.5	34,745	69.5
지역	서울	14,052	100.0	5,757	41.0	8,295	59.0
	부산	7,519	100.0	2,853	37.9	4,666	62.1
	대구	5,456	100.0	1,986	36.4	3,470	63.6
	인천	5,665	100.0	2,296	40.5	3,369	59.5
	광주	3,333	100.0	1,479	44.4	1,854	55.6
	대전	2,854	100.0	1,228	43.0	1,626	57.0
	울산	1,286	100.0	531	41.3	755	58.7
	세종	272	100.0	92	33.8	180	66.2
	경기	15,202	100.0	5,132	33.8	10,070	66.2
	강원	3,333	100.0	1,112	33.4	2,221	66.6
	충북	2,821	100.0	1,072	38.0	1,749	62.0
	충남	3,092	100.0	1,154	37.3	1,938	62.7
	전북	6,447	100.0	2,021	31.3	4,426	68.7
	전남	5,271	100.0	1,559	29.6	3,712	70.4
	경북	5,882	100.0	1,961	33.3	3,921	66.7
	경남	5,789	100.0	1,973	34.1	3,816	65.9
	제주	1,462	100.0	629	43.0	833	57.0

주: 1) 각 년도 12월말 기준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복지포털 통계(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37&datsCln=1045&datsClt=WS)
(검색일 2025-5-25),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2024년 기준 전체 장애인 의료비 수급권자 수는 89,736명이며, 수급자격별로는 '의료급여 2종'은 32,835명(36.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56,901명(63.4%)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급권자 수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증감을 반복하였고, 2023년 대비 2024년 2,212명 감소함. 수급자격별로는 '의료급여 2종'은 2017년 대비 2024년 감소한 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24년 감소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수급권자 수는 49,998명으로 중증장애에 39,738명에 비해 10,260명이 더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의 전체 수급권자 수가 각각 14,052명, 15,202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의료비 지원(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I)」 p381-382)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표 2-3-10〉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연도	2020	76	6	16	10	26	18
	2021	100	10	16	10	46	18
	2022	107	14	19	10	46	18
	2023	120	17	22	10	53	18
	2024	120	17	22	10	53	18
	2025	121	17	22	10	53	19
지역	서울	18	2	2	1	7	6
	부산	13	1	4	1	6	1
	대구	8	1	-	1	5	1
	인천	8	1	1	1	3	2
	광주	5	1	-	1	3	-
	대전	8	1	1	-	4	2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16	2	1	1	11	1
	강원	5	1	1	1	1	1
	충북	7	1	1	-	4	1
	충남	4	1	-	1	2	-
	전북	3	1	-	1	1	-
	전남	2	1	1	-	-	-
	경북	7	1	3	-	2	1
	경남	11	1	5	-	3	2
	제주	6	1	2	1	1	1

- 주: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장애인건강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지정함
- 2)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건강법」 제7조에 근거하여 지정한 곳을 의미함
-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치과)병원, 보건소 등에 설치·위탁·운영지원한 곳을 의미함
- 4) '재활의료기관'은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장애인건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정함
-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58조, 제59조 등에 근거하여 지정 및 운영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20), 「2020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참고·서식-」 p.110~116.

- 2) 보건복지부(2021), 「2021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58~266.
- 3) 보건복지부(2022), 「2022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63~271.
- 4) 보건복지부(2023), 「2023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66~276.
- 5) 보건복지부(2024), 「2024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71~278.
- 6) 보건복지부(2025), 「2025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p.263~272.

- 2025년 기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관련 전체 기관수는 121개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재활의료기관' 53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2개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9개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7개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10개소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개소수는 2020년 76개소에서 2025년 121개소로 45개소 증가하였고, 기관유형별로는 해당기간동안 '재활의료기관' 27개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11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6개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개소가 증가하였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동일 개소수를 유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개소수는 서울 18개소, 경기 16개소, 부산 13개소, 경남 11개소 등이 운영되는 반면, 울산과 세종은 운영 및 지정된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관운영별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 1~5개소가 있음.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을 제외한 지역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고, '재활의료기관'은 울산, 세종,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 1~11개소가 운영됨. 마지막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3)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표 2-3-11〉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4	물리치료	22.4	29.6	31.6	12.7	15.8	11.9	4.4	4.2	2.0	4.8	19.8	3.4	11.8	7.9	20.6
	작업치료	1.6	0.2	7.4	-	0.2	-	5.1	14.1	4.6	-	-	4.6	-	-	4.2
	언어치료	1.7	-	3.5	0.2	1.7	5.3	9.9	42.6	-	-	-	-	-	-	4.0
	음악치료	1.0	-	0.6	-	0.4	-	7.8	17.4	6.9	-	-	-	-	-	-
	놀이치료	0.7	-	0.9	-	0.4	-	3.5	14.5	4.6	-	-	-	-	-	-
	미술치료	1.1	-	0.8	0.2	0.4	3.5	7.4	28.5	4.2	-	-	-	-	-	-
	심리행동치료	1.1	0.2	0.7	0.2	-	-	4.8	23.1	6.6	-	1.4	-	-	-	3.3
	기타	1.1	0.3	1.5	-	0.2	1.8	6.7	26.8	1.4	-	-	3.2	-	-	-
2017	물리치료	22.9	29.6	34.2	14.3	16.0	4.1	6.0	2.3	8.9	10.2	14.5	18.1	5.8	26.1	4.2
	작업치료	1.5	0.4	6.0	0.5	-	-	5.1	13.6	1.1	-	-	-	-	-	-
	언어치료	2.1	0.1	3.1	0.2	0.5	26.3	13.7	41.0	-	-	-	-	-	-	-
	음악치료	0.9	-	1.0	-	-	6.7	6.6	15.2	2.5	-	-	-	-	-	-
	놀이치료	0.9	0.1	0.7	0.1	-	13.1	5.2	19.2	2.3	-	-	-	-	-	-
	미술치료	0.9	-	0.6	0.2	-	7.4	6.6	17.0	2.9	-	-	-	-	-	-
	심리행동치료	1.0	0.1	0.6	-	-	4.2	8.2	17.7	2.9	-	-	-	-	-	-
	기타	1.4	0.3	3.8	0.2	-	4.1	7.2	19.4	2.0	-	-	-	-	-	-
2020	물리치료	20.1	28.9	29.7	9.2	11.8	7.9	7.1	0.7	4.9	6.9	9.9	11.4	5.7	13.8	5.6
	작업치료	1.6	0.7	7.6	-	0.2	3.8	3.4	12.6	0.4	0.7	-	0.4	-	-	2.9
	언어치료	2.0	0.1	2.9	-	0.9	21.6	11.5	37.5	-	-	-	-	-	0.9	3.2
	음악치료	0.6	-	0.6	0.1	0.3	1.0	3.7	11.2	0.5	-	-	-	-	-	1.6
	놀이치료	0.7	-	0.6	0.1	0.2	6.6	4.6	16.7	0.1	-	-	-	-	-	-
	미술치료	0.7	-	0.4	0.1	0.2	3.0	3.7	18.6	0.5	-	-	-	-	-	0.9
	심리행동치료	1.0	0.2	0.5	0.2	-	1.9	4.3	16.8	6.8	0.4	-	-	1.2	-	1.7
	기타	0.6	0.3	0.8	-	0.3	3.3	1.9	14.1	1.0	-	-	-	-	-	0.8
2023	물리치료	20.9	29.7	24.3	13.9	17.2	15.7	5.1	1.3	5.0	8.4	11.2	10.5	7.2	11.4	7.5
	작업치료	0.9	0.1	4.2	0.2	-	5.2	3.2	5.4	0.3	0.2	1.5	-	-	-	0.1
	언어치료	2.1	-	2.6	-	0.8	22.1	11.5	45.0	0.3	-	-	-	-	-	3.9
	음악치료	0.5	-	0.5	0.1	-	0.9	3.2	10.7	0.6	-	-	-	-	-	-
	놀이치료	0.8	-	0.9	-	0.1	6.5	4.2	17.6	-	-	-	-	-	-	1.6
	미술치료	0.7	-	0.5	-	0.1	5.5	4.9	13.8	-	-	-	-	-	-	0.9
	심리행동치료	0.7	-	0.8	0.1	0.1	3.1	4.0	12.0	0.4	0.3	-	-	0.6	-	1.8
	기타	1.5	0.2	2.1	-	0.1	8.2	8.3	31.2	-	0.2	-	-	-	-	1.0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30.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49.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3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45.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의 이용률은 물리치료가 20.9%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언어, 지적, 자폐성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유형에서 물리치료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재활치료로 나타남



〈표 2-3-12〉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014	물리치료	22.4	16.2	30.8	16.8	7.1	19	31.4	16.8	22.2
	작업치료	1.6	1.9	1.2	24.3	2.3	0.8	0.6	9.7	1.6
	언어치료	1.7	1.9	1.3	45.9	1.4	0.2	0.2	3.9	1.6
	음악치료	1	1.1	0.9	14.5	2.9	0.4	-	2.7	1.1
	놀이치료	0.7	0.8	0.5	9.2	1.6	0.3	0.1	1.7	0.7
	미술치료	1.1	1.2	0.9	20.4	2.4	0.2	0.1	1.1	1.1
	심리행동치료	1	1.5	0.3	16.6	1.7	0.7	-	2.2	1
	기타	1.1	1.4	0.7	16.9	2	0.5	0.3	2.5	1.1
2017	물리치료	22.9	16.0	32.1	17.8	10.1	17.7	31.1	17.5	22.9
	작업치료	1.5	1.3	1.8	20.0	2.0	0.9	0.4	3.4	1.5
	언어치료	2.1	2.5	1.6	52.0	2.3	0.2	0.1	5.3	2.1
	음악치료	0.9	1.0	0.7	15.7	2.4	0.1	0.0	2.4	0.9
	놀이치료	0.9	1.1	0.7	17.7	1.7	0.1	0.1	2.2	0.9
	미술치료	0.9	0.9	0.9	15.7	2.7	0.1	0.0	2.4	0.9
	심리행동치료	1.0	1.1	1.0	18.4	2.3	0.3	0.0	2.5	1.0
	기타	1.4	1.4	1.5	21.8	2.2	0.7	0.3	3.0	1.4
2020	물리치료	20.1	15.9	25.9	16.6	10.1	19.0	23.7	15.2	20.1
	작업치료	1.6	1.5	1.7	20.9	2.0	1.0	0.7	3.1	1.6
	언어치료	2.0	2.5	1.3	55.6	1.3	0.4	0.1	4.7	2.0
	음악치료	0.6	0.6	0.6	13.8	0.7	0.1	0.1	1.4	0.6
	놀이치료	0.7	15.9	0.6	20.9	0.5	0.0	0.1	1.7	0.7
	미술치료	0.7	0.8	0.4	17.4	0.5	0.1	0.1	1.5	0.7
	심리행동치료	1.0	1.1	0.9	12.7	1.8	0.9	0.2	2.3	1.0
	기타	0.6	0.6	0.6	11.2	0.5	0.4	0.2	1.2	0.6
2023	물리치료	20.9	16.1	27.4	11.8	5.9	18.8	25.7	13.3	20.9
	작업치료	0.9	0.8	0.9	16.9	1.4	0.4	0.1	2.1	0.9
	언어치료	2.1	2.6	1.5	58.7	2.0	0.2	0.0	5.6	2.1
	음악치료	0.5	0.5	0.4	13.1	0.6	0.1	0.0	1.4	0.5
	놀이치료	0.8	0.8	0.7	21.4	0.5	0.1	0.1	2.0	0.8
	미술치료	0.7	0.7	0.8	19.8	0.7	0.0	0.0	1.8	0.7
	심리행동치료	0.7	0.8	0.4	14.5	1.3	0.1	0.1	1.8	0.7
	기타	1.5	1.8	1.1	39.3	1.1	0.1	0.2	3.7	1.5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5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31.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25-527.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68-570.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27.4%로 남성 16.1% 보다 월등히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이 25.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17세 이하의 언어치료의 비율이 58.7%로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가 물리치료를 받는 비율은 24.9%로 중증장애 13.3%에 비해 높은 반면, 그 외의 서비스에서는 중증장애가 경증장애보다 높게 나타남

〈표 2-3-13〉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2014	물리치료	2.4	2.3	3.2	2.3	2.2	2.5	2.6	2.1	1.6	1.9	2.4	1.9	2.5	1.0	2.3	1.6
	작업치료	4.5	3.9	3.5		1.6	-	7.3	2.8	6.3	-	-	1.0	-	-	-	1.0
	언어치료	2.0	2.0	2.3	2.7	2.7	1.5	1.7	1.8	-	-	-	-	-	-	-	1.0
	음악치료	2.2	1.0	2.4	-	4.0	-	2.4	1.2	2.0	-	-	-	-	-	-	-
	놀이치료	2.2	-	1.5	-	4.0	-	1.7	1.5	3.1	-	-	-	-	-	-	-
	미술치료	1.8	1.0	1.6	2.0	4.0	4.4	1.3	1.3	3.1	-	-	-	-	-	-	-
	심리행동치료	2.3	1.2	1.6	2.0	-	-	2.1	1.8	3.6	-	1.0	-	-	-	-	1.0
	기타	6.0	2.3	3.6	-	3.0	1.0	7.9	4.1	15.0	-	-	13.0	-	-	-	-
2017	물리치료	2.0	1.9	2.9	1.6	1.8	1.0	1.5	1.0	1.9	1.3	1.0	1.6	2.8	1.7	2.8	1.8
	작업치료	2.8	2.6	2.6	9.6	-	-	2.3	1.6	7.0	-	-	4.6	-	-	-	4.2
	언어치료	1.7	3.1	2.6	1.0	2.5	2.5	1.2	1.7	-	-	-	-	-	-	-	4.0
	음악치료	1.6	1.0	1.3	-	-	1.0	1.7	1.6	1.8	-	-	-	-	-	-	-
	놀이치료	2.0	1.0	1.7	5.0	1.0	1.5	1.6	3.3	2.1	-	-	-	-	-	-	-
	미술치료	1.8	-	0.6	2.0	1.0	1.0	1.9	2.7	1.4	-	-	-	-	-	-	-
	심리행동치료	1.4	1.7	1.7	-	1.0	0.5	1.4	1.3	2.1	-	-	-	-	-	-	-
	기타	2.9	2.8	2.8	1.0	-	1.1	2.7	2.0	5.2	-	-	-	-	-	-	-
2020	물리치료	2.7	2.6	3.1	2.9	2.7	3.5	2.6	1.0	3.6	3.2	1.8	2.0	1.6	2.3	19.9	2.0
	작업치료	4.0	7.5	3.5	-	1.4	1.3	2.2	2.1	2.7	14.6	-	2.0	-	-	-	2.5
	언어치료	2.4	8.5	1.5	-	2.0	6.2	1.9	2.1	-	-	-	-	-	4.0	-	2.0
	음악치료	1.4	-	1.7	2.0	0.8	1.3	1.5	1.5	1.0	-	-	-	-	-	-	1.5
	놀이치료	2.4	1	1.0	20.0	1.2	9.9	1.5	2.4	1.0	-	-	-	-	-	-	-
	미술치료	1.3	2.4	0.8	2.0	0.8	3.2	1.1	1.6	1.0	-	-	-	-	-	-	1.0
	심리행동치료	2.5	2.5	1.0	6.1	-	2.1	2.0	2.3	3.3	1.0	-	-	1.0	-	-	2.0
	기타	3.3	1.6	1.7	-	3.3	29.2	2.1	2.7	1.3	-	-	-	-	-	-	1.0
2023	물리치료	1.3	1.3	1.6	1.3	1.2	1.6	1.6	1.0	1.1	1.3	4.1	1.7	1.4	0.5	1.8	1.1
	작업치료	1.4	1.2	1.6	1.0	-	1.4	1.0	1.5	4.8	1.0	1.0	-	-	-	1.0	1.2
	언어치료	1.4	-	1.6	-	1.6	1.8	1.1	1.6	1.0	-	-	-	-	-	-	1.1
	음악치료	1.3	-	1.6	1.0	-	0.6	1.3	1.1	2.4	-	-	-	-	-	-	-
	놀이치료	1.5	22.0	1.1	-	2.0	2.8	0.7	1.0	2.0	-	-	-	-	-	-	0.7
	미술치료	1.1	22.0	1.3	-	0.7	0.9	0.7	1.3	2.0	-	-	-	-	-	-	1.2
	심리행동치료	1.0	-	1.0	1.0	0.8	1.2	1.0	1.1	0.7	1.0	-	-	2.0	-	-	1.5
	기타	1.6	2.7	2.0	-	1.0	1.4	1.3	1.6	-	-	-	-	-	-	0.6	2.3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3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50.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4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46.

- 2023년 기준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은 전체적으로 기타치료가 1.6시간으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의 경우 놀이치료, 미술치료가 각각 22.0시간으로 다른 치료에 비해 더 긴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정신장애의 경우 작업치료를 받는 시간이 4.8시간, 언어장애의 경우 놀이치료가 2.8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표 2-3-14〉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014	물리치료	2.4	2.4	2.4	2.9	2.1	2.5	2.4	2.6	2.4
	작업치료	5.4	4.6	4.4	2.9	7.6	4.2	4.8	4.5	5.6
	언어치료	2.0	2.0	1.9	1.8	1.7	3.3	3.8	2.0	2.3
	음악치료	2.2	2.4	1.8	3.0	1.7	1.8	1.0	2.2	2.4
	놀이치료	2.2	2.3	1.9	1.8	2.3	2.7	2.1	2.2	1.0
	미술치료	1.8	1.7	1.9	1.5	2.1	2.5	1.5	1.7	3.4
	심리행동치료	2.3	2.3	2.3	1.6	3.8	1.8	-	2.4	1.2
	기타	6.0	7.4	2.0	5.1	8.0	6.3	3.4	6.5	2.0
2017	물리치료	2.0	2.0	2.0	1.8	1.7	2.0	2.0	2.3	1.9
	작업치료	2.8	3.8	1.9	1.2	3.1	4.7	4.7	2.4	5.7
	언어치료	1.7	1.9	1.5	1.7	1.6	2.4	3.0	1.7	3.4
	음악치료	1.6	1.7	1.3	1.3	2.1	1.6	1.0	1.6	-
	놀이치료	2.0	2.0	2.1	1.6	2.7	4.2	1.0	2.1	0.7
	미술치료	1.8	2.0	1.5	1.7	1.8	2.6	-	1.8	1.0
	심리행동치료	1.4	1.2	1.8	1.3	1.6	1.7	1.0	1.5	0.6
	기타	2.9	2.6	3.2	1.8	3.6	4.2	3.8	3.0	2.4
2020	물리치료	2.7	2.6	2.8	3.2	3.2	2.5	2.8	3.1	2.6
	작업치료	4.0	2.5	5.7	2.5	2.4	7.3	4.4	3.2	6.2
	언어치료	2.4	1.9	3.7	2.4	1.7	4.1	2.4	1.9	5.9
	음악치료	1.4	1.4	1.5	1.5	1.6	1.0	1.0	1.5	0.9
	놀이치료	2.4	1.9	3.4	2.5	1.8	1.0	3.3	1.7	6.7
	미술치료	1.3	1.4	1.1	1.3	1.4	1.0	1.5	1.3	1.3
	심리행동치료	2.5	2.4	2.7	2.1	2.3	2.7	3.8	2.4	2.7
	기타	3.3	2.6	4.3	4.5	2.0	1.5	2.5	2.3	5.7
2023	물리치료	1.3	1.3	1.3	1.6	1.8	1.3	1.3	1.6	1.2
	작업치료	1.4	1.6	1.2	1.1	1.8	2.2	1.3	1.4	1.3
	언어치료	1.4	1.7	0.9	1.4	1.2	2.5	0.4	1.4	1.4
	음악치료	1.3	1.3	1.4	1.3	1.0	2.5	-	1.3	0.8
	놀이치료	1.5	1.9	0.8	1.0	1.6	21.6	1.7	1.5	1.0
	미술치료	1.1	1.0	1.2	0.8	1.5	9.2	-	1.1	1.0
	심리행동치료	1.0	1.1	0.7	0.9	1.2	2.0	0.8	1.0	1.3
	기타	1.6	1.7	1.3	1.3	2.4	2.3	3.2	1.6	1.4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장애정도는 2017년 이전에는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2020년부터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5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32.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28.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71.

- 재활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음악치료 시간이 0.1시간, 미술치료 시간이 0.2시간 많았고, 그 외의 치료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에서는 물리치료, 18~44세 이하와 65세 이상에서는 기타치료, 45~64세 이하에서는 놀이치료가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가 중증장애에 비해 심리행동치료에서만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5〉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2014	물리치료	2.7	2.5	4.9	2.6	1.4	1.5	2.3	0.9	1.4	1.7	3.4	0.9	5.1	2.0	5.7	0.5
	작업치료	5.2	3.7	6.7	-	1.0	-	4.2	11.8	0.1	-	-	-	-	-	-	2.9
	언어치료	9.3	-	7.2	5.6	6.1	4.2	9.0	16.2	-	-	-	-	-	-	-	4.0
	음악치료	2.5	-	5.5	-	-	-	2.5	6.4	0.8	-	-	-	-	-	-	-
	놀이치료	5.3	-	4.9	-	-	-	9.2	6.5	0.3	-	-	-	-	-	-	-
	미술치료	3.7	3.7	6.7	0.7	-	7.9	2.3	9.3	0.6	-	-	-	-	-	-	-
	심리행동치료	4.0	3.3	4.7	0.7	-	-	4.2	8.1	1.5	-	5.0	-	-	-	-	4.2
	기타	9.2	19.0	13.7	-	2.5	0.4	6.3	6.1	0.4	-	-	22.0	-	-	-	-
2017	물리치료	2.8	2.8	3.6	2.4	2.0	-	5.1	18.0	1.5	2.1	1.6	1.4	0.3	1.6	1.1	0.2
	작업치료	5.4	3.3	4.6	5.6	-	-	5.8	13.5	-	-	-	-	-	-	-	-
	언어치료	12.3	21.6	11.5	4.0	2.4	8.1	9.0	22.4	-	-	-	-	-	-	-	-
	음악치료	6.4	1.5	4.5	-	-	15.0	3.3	16.5	-	-	-	-	-	-	-	-
	놀이치료	7.1	0.1	1.7	4.0	24.0	17.0	3.3	14.7	-	-	-	-	-	-	-	-
	미술치료	7.0	-	4.4	4.0	24.0	12.0	4.5	16.9	0.7	-	-	-	-	-	-	-
	심리행동치료	7.6	-	11.6	-	60.0	-	5.6	16.7	2.9	-	-	-	-	-	-	-
	기타	8.7	5.1	10.1	1.0	-	4.6	7.1	18.1	2.7	-	-	-	-	-	-	-
2020	물리치료	2.4	2.5	2.3	2.9	2.5	4.6	1.5	16.8	0.7	0.9	1.6	1.2	2.3	2.3	1.4	0.6
	작업치료	5.6	4.4	3.0	-	0.5	4.7	11.6	12.6	3.4	1.2	-	1.0	-	-	-	2.1
	언어치료	8.0	41.9	5.3	-	4.7	12.2	6.0	9.8	-	-	-	-	-	5.0	-	3.8
	음악치료	5.1	-	10.7	5.0	0.8	4.0	4.2	7.2	0.0	-	-	-	-	-	-	0.9
	놀이치료	5.6	8.0	0.0	5.0	0.1	12.6	4.8	7.6	0.0	-	-	-	-	-	-	0.0
	미술치료	4.2	8.0	0.0	5.0	1.0	17.7	2.7	6.3	0.0	-	-	-	-	-	-	5.0
	심리행동치료	3.6	1.2	0.5	1.7	-	9.6	3.0	10.3	0.9	1.6	-	-	13.3	-	-	1.3
	기타	8.4	2.7	2.5	-	7.0	16.1	10.1	15.5	0.1	-	-	-	-	-	-	1.5
2023	물리치료	3.8	3.1	11.0	2.0	2.4	10.0	3.8	8.7	1.1	1.9	1.3	1.0	4.8	10.9	3.3	1.6
	작업치료	11.8	2.6	13.6	4.3	-	10.9	7.8	18.8	22.8	24.0	1.6	-	-	-	3.7	36.2
	언어치료	13.1	-	19.4	-	8.1	13.1	11.8	13.7	0.0	-	-	-	-	-	-	8.0
	음악치료	6.0	-	14.3	10.0	-	3.0	3.1	8.7	0.0	-	-	-	-	-	-	-
	놀이치료	9.7	0.2	8.2	-	0.2	7.1	9.1	13.0	1.0	-	-	-	-	-	-	7.8
	미술치료	7.4	0.2	13.1	-	3.8	5.4	6.1	9.5	1.0	-	-	-	-	-	-	10.0
	심리행동치료	10.7	-	13.5	5.2	12.2	5.8	7.4	16.0	17.9	9.6	-	-	0.2	-	-	3.1
	기타	17.5	16.9	22.4	-	17.0	13.6	10.3	25.9	-	-	-	-	-	-	76.9	9.5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32.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51.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41.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47.

- 2023년 기준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은 전체적으로 언어치료가 13.1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치료비용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3-16〉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 월 평균 비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014	물리치료	2.7	3	2.6	8.6	3.4	3.5	2.1	3.3	2.8
	작업치료	5.2	5.5	4.3	5.8	2.6	1.9	12.3	4	14.5
	언어치료	9.3	10.6	6.7	9.3	9.6	0.8	13.4	9.4	8.8
	음악치료	2.5	1.9	3.4	5.1	1	-	-	2.4	7.4
	놀이치료	5.3	5	5.8	9.3	3.4	-	3.2	4.6	20
	미술치료	3.7	4.5	2.2	5.8	1.5	-	4.7	3.4	12.0
	심리행동치료	4	4.3	2.3	4.7	4	2.7	-	3.5	5.6
	기타	9.2	6.5	16.7	10.7	4.4	11.3	13.3	7.2	18.2
2017	물리치료	2.8	3.0	2.7	7.2	5.2	3.4	2.2	3.4	2.7
	작업치료	5.4	5.6	5.2	6.3	5.7	1.3	8.1	6.0	0.6
	언어치료	12.3	12.4	12.0	11.8	12.4	13.0	36.0	12.3	13.9
	음악치료	6.0	7.7	2.4	7.2	4.9	-	1.5	6.0	-
	놀이치료	7.1	8.2	4.7	9.3	0.5	-	0.1	6.8	10.2
	미술치료	7.0	8.6	4.7	10.2	2.6	-	-	7.0	24.0
	심리행동치료	7.6	8.2	6.6	10.7	3.1	-	-	7.1	6.2
	기타	8.7	9.5	7.6	10.8	6.0	5.0	10.2	9.3	5.4
2020	물리치료	2.4	2.6	2.2	4.1	3.0	2.5	2.2	2.3	2.4
	작업치료	5.6	7.3	3.6	10.2	2.2	2.7	3.0	6.5	3.1
	언어치료	8.0	6.2	13.0	7.9	5.6	17.1	0.7	7.2	13.8
	음악치료	5.1	6.1	3.8	5.0	9.2	0.0	1.2	5.4	0.8
	놀이치료	5.6	7.0	3.2	6.2	1.3	0.0	3.7	5.4	6.8
	미술치료	4.2	4.6	3.1	4.4	4.8	0.0	3.7	4.3	3.9
	심리행동치료	3.6	4.4	2.3	7.1	2.1	0.9	1.9	3.9	2.3
	기타	8.4	9.2	7.3	12.1	7.7	2.4	4.1	10.0	4.7
2023	물리치료	3.8	3.8	3.8	13.8	14.2	3.6	3.1	6.9	2.9
	작업치료	11.8	14.2	8.8	10.2	11.3	16.7	17.2	12.5	8.3
	언어치료	13.1	13.5	11.9	13.1	10.8	18.6	18.0	13.0	14.0
	음악치료	6.0	5.1	7.7	5.8	9.4	0.0	-	5.9	9.9
	놀이치료	9.7	10.8	7.9	10.8	3.8	0.2	0.5	10.3	4.4
	미술치료	7.4	8.5	6.1	7.3	7.0	13.5	-	7.5	6.5
	심리행동치료	10.7	10.3	11.7	9.2	13.5	0.0	23.4	11.0	4.8
	기타	17.5	18.5	15.5	16.0	30.6	20.7	21.8	17.5	18.4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장애정도는 2017년 이전에는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2020년부터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52.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32.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28.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71.

-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의 월 평균 비용을 성별로 살펴보면, 음악치료와 심리행동치료를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심리행동치료, 나머지 연령의 경우 기타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정신건강

(1) 스트레스

〈표 2-4-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정도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	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매우 많이 느낌	20.9	21.2	24.9	18.1	17.2	17.4	13.0	37.9	27.1	24.7	32.7	13.8	33.0	40.9	39.2	27.3			
2014 느끼는 편	40.1	40.3	41.0	44.2	37.8	41.0	36.8	31.0	38.5	39.9	32.3	45.9	17.2	33.5	30.2	42.5			
2014 보통	21.1	21.0	19.7	21.1	24.3	23.3	23.0	26.6	16.8	16.7	24.2	24.1	17.1	-	23.0	24.8			
2014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0.6	13.2	17.7	15.5	22.3	-	13.7	13.7	10.8	12.9	30.7	25.6	7.6	5.4			
2014 전혀 느끼지 않음	2.9	2.2	3.8	3.4	2.9	2.9	4.9	4.6	3.9	5.0	-	3.3	2.0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7 매우 많이 느낌	18.0	18.7	23.1	16.0	14.2	19.6	9.6	21.2	20.6	23.1	16.3	34.0	13.1	4.7	16.1	20.9			
2017 느끼는 편	40.1	40.4	41.2	41.5	37.5	29.9	37.6	41.1	39.5	39.9	52.7	36.3	41.8	53.4	50.0	45.8			
2017 보통	20.6	20.1	16.5	22.3	24.8	34.9	22.9	24.4	15.9	20.2	16.2	20.1	22.4	27.9	13.5	15.6			
2017 느끼지 않는 편	18.4	18.5	14.9	18.0	19.4	14.9	25.2	9.7	19.1	15.1	14.8	9.6	19.5	14.1	20.4	16.9			
2017 전혀 느끼지 않음	3.0	2.3	4.3	2.1	4.2	0.8	4.6	3.6	4.9	1.7	0.0	0.0	3.2	0.0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0 대단히 많이 느낌	5.1	7.4	4.1	2.1	9.7	4.5	3.3	6.7	8.9	5.4	8.2	5.6	3.8	6.4	10.0	5.0			
2020 많이 느끼는 편	28.3	36.1	27.8	25.4	28.7	24.2	27.8	29.1	35.7	31.8	39.0	24.7	39.1	30.1	33.9	28.6			
2020 조금 느끼는 편	52.8	46.9	55.3	54.7	50.6	49.7	45.3	49.6	45.7	50.9	43.6	53.4	48.8	54.0	49.3	52.0			
2020 거의 느끼지 않음	13.8	9.6	12.8	17.8	10.9	21.6	23.5	14.5	9.6	11.9	9.2	16.3	8.3	9.5	6.8	1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23 대단히 많이 느낌	5.2	4.8	8.4	4.6	3.4	3.6	5.0	5.6	7.6	7.4	5.1	9.7	6.5	3.4	7.5	14.1			
2023 많이 느끼는 편	25.9	25.9	33.1	25.4	19.6	26.6	23.3	27.3	31.6	33.2	32.6	34.7	18.8	37.1	25.9	31.1			
2023 조금 느끼는 편	46.0	48.1	40.9	46.5	47.9	53.1	41.0	41.6	37.9	43.6	45.3	35.1	52.3	41.5	40.0	40.9			
2023 거의 느끼지 않음	22.9	21.2	17.5	23.5	29.1	16.6	30.6	25.5	23.0	15.9	17.0	20.4	22.4	17.9	26.6	14.0			

주: 1) 무응답제외

2) 조사연도별로 조사대상의 연령기준이 상이함

· 2014년(만 19세 이상), 2017년·2020년·2023년(만 12세 이상)

3)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47.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71.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6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71.

-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대단히 많이 느낌' 5.2%, '많이 느끼는 편' 25.9%, '조금 느끼는 편' 46%로 77.1%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31.1%는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전증장애는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호흡기장애 44.4%, 뇌변장장애 41.5%, 신장장애 40.6%, 안면장애 40.5%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표 2-4-2〉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인지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4	대단히 많이 느낌	20.9	20.3	21.9	-	22.8	23.5	18.0	23.4	19.1
	많이 느끼는 편	40.1	39.5	40.9	-	41.6	40.9	38.8	39.5	40.3
	조금 느끼는 편	21.1	22.2	19.6	-	19.7	19.9	22.6	19.6	22.1
	거의 느끼지 않는 편	15.0	15.3	14.6	-	12.9	13.6	17.0	14.1	15.7
	전혀 느끼지 않음	2.9	2.8	3.0	-	2.9	2.1	3.5	3.4	2.8
2017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많이 느낌	18.0	17.7	18.5	15.2	16.4	21.6	15.8	20.7	16.2
	느끼는 편	40.1	40.5	39.5	47.5	43.8	40.2	38.6	39.4	40.1
	보통	20.6	20.2	21.1	13.7	20.8	19.7	21.4	19.5	21.4
	느끼지 않는 편	18.4	18.7	18.1	21.5	16.2	15.8	21	17.3	19.2
20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5.0	5.0	5.0	4.9	4.5	5.5	4.8	6.5	4.1
	많이 느끼는 편	28.6	29.4	27.5	23.6	31.2	31.7	26.0	30.6	27.5
	조금 느끼는 편	52.0	51.7	52.4	48.8	50.6	51.8	52.6	49.1	53.7
	거의 느끼지 않음	14.4	13.8	15.1	22.8	13.7	11.1	16.6	13.8	14.4
20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단히 많이 느낌	5.2	5.2	5.1	5.4	7.2	6.3	4.1	7.2	4.1
	많이 느끼는 편	25.9	24.5	27.9	20.8	24.7	30.8	23.5	29.1	24.3
	조금 느끼는 편	46.0	46.6	45.1	56.9	48.1	45.0	45.9	42.9	47.5
	거의 느끼지 않음	22.9	23.7	21.9	16.9	20.0	18.0	26.5	20.8	22.9

주: 1) 무응답제외

2) 조사년도별로 조사대상의 연령기준이 상이함

· 2014년(만 19세 이상), 2017년·2020년·2023년(만 12세 이상)

3)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62.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54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54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92.

-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29.7%, 여성의 33.0%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46~64세 이하 중 37.1%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살펴보면, 심한 장애의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은 36.3%로 심하지 않은 장애 28.4%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우울

〈표 2-4-3〉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분상태 및 우울증)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우울증상이 없음	우울증상이 있음			
				계	가벼운 우울증상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
연도	2019	105,028	79.3	20.7	13.5	6.1	1.1
	2020	90,592	79.9	20.1	13.2	6.0	0.9
	2021	92,411	79.8	20.2	13.5	5.9	0.9
	2022	97,503	80.0	20.0	13.4	5.8	0.9
	2023	86,308	80.2	19.8	13.2	5.7	0.9
성별	남	55,247	82.3	17.7	12.1	4.9	0.7
	여	31,061	76.6	23.4	15.1	7.1	1.1
연령별	20세	1,674	76.9	23.1	13.6	7.4	2.0
	30세	4,377	72.2	27.8	16.4	9.7	1.7
	40세	7,957	69.6	30.4	20.2	8.8	1.4
	50세	15,924	76.4	23.6	15.9	6.8	1.0
	60세	26,301	80.8	19.2	12.7	5.6	0.9
	70세	30,075	85.9	14.1	9.9	3.7	0.5
장애유형	지체	46,467	81.8	18.2	12.6	4.9	0.6
	뇌병변	4,948	73.2	26.8	15.9	8.9	2.0
	시각	9,216	80.4	19.6	13.6	5.3	0.7
	청각	9,317	82.3	17.7	12.3	4.9	0.6
	언어	612	73.9	26.1	14.7	10.5	1.0
	지적	7,279	81.2	18.8	11.0	6.3	1.4
	자폐성	501	80.0	20.0	13.2	6.2	0.6
	정신	3,107	65.5	34.5	19.2	12.4	2.9
	신장	2,944	76.1	23.9	16.7	6.3	0.9
	심장	161	76.4	23.6	19.3	4.3	-
	호흡기	304	74.3	25.7	18.1	7.2	X
	간	635	86.3	13.7	9.9	3.8	-
	안면	165	74.5	25.5	17.0	8.5	-
	장루·요루	388	80.2	19.8	12.9	6.4	0.5
장애정도	뇌전증	264	64.8	35.2	20.5	11.4	3.4
	중증	27,222	77.2	22.8	14.1	7.4	1.3
	경증	59,086	81.6	18.4	12.8	4.9	0.7
지역	서울	12,489	77.1	22.9	15.0	6.9	0.9
	부산	5,594	80.7	19.3	12.9	5.5	0.8
	대구	4,213	82.1	17.9	12.1	5.0	0.9
	인천	5,353	78.0	22.0	14.3	6.6	1.1
	광주	2,392	79.6	20.4	13.7	6.0	0.8
	대전	2,359	78.0	22.0	14.3	6.7	1.0
	울산	2,005	82.5	17.5	12.0	4.8	0.7
	세종	494	76.5	23.5	17.6	4.5	1.4
	경기	20,478	78.1	21.9	14.8	6.2	1.0
	강원	3,194	81.0	19.0	12.4	5.6	1.0
	충북	3,156	81.4	18.6	12.0	5.6	1.0
	충남	3,983	82.1	17.9	11.7	5.5	0.7
	전북	3,826	83.4	16.6	11.3	4.5	0.8
	전남	4,188	86.3	13.7	8.9	4.1	0.6
	경북	5,328	85.4	14.6	10.2	3.9	0.4
	경남	6,130	82.3	17.7	12.1	4.9	0.8
	제주	1,126	77.4	22.6	15.7	5.9	1.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한 만 20, 30, 40, 50, 60, 70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기준(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제외함)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X):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X로 표기함

4) 정신건강검사(기본상태 및 우울증) 세부항목(PHQ-9)은 다음과 같음

- 우울증상이 없음: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평가결과 점수 0-4점
- 가벼운 우울증상: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평가결과 점수 5-9점
-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평가결과 점수 10-19점
- 심한 우울증 의심: 정신건강검사 평가도구 평가결과 점수 20-27점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7-86.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9-88.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74-93.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74-89.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74-89.

- 2025년 기준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기본상태 및 우울증)를 살펴보면 '우울증상이 없음'이 80.2%이고, '우울증상이 있음(가벼운 우울 증상,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심한 우울증 의심)'은 19.8%임

2023년 기준 전체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연보」)

· 우울증상이 없음(81.1%), 가벼운 우울증상(14.1%),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4.4%), 심한 우울증 의심(0.4%)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우울증상이 있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증상이 있음' 비율은 23.4%로 남성 17.7%에 비해 5.7%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의 '우울증상 있음' 비율이 30.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전증 장애의 '우울증상 있음' 비율은 35.2%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신장애 34.5%, 뇌병변장애 26.8%, 언어장애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우울증상이 있음' 비율은 22.8%로 경증장애 18.4%에 비해 4.4%p 높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울증상이 있음'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세종 23.5%, 서울 22.9%, 제주 22.6%, 인천 및 대전 각 22.0% 등이 있음

(3) 정신의료기관 현황 및 예산

〈표 2-4-4〉 정신의료기관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단위: 개소, 병상, 명)

구분		기관수	병상수	입원환자 수
2015년		1,449	83,696	70,628
2016년		1,515	83,405	69,220
2017년		1,554	81,734	67,441
2018년		1,670	79,257	66,108
2019년		1,839	78,739	65,436
2020년		1,936	79,432	62,702
2021년		2,038	75,474	59,412
2022년		2,109	71,564	56,785
2023년		2,202	67,634	56,705
기관종류	종합병원 정신과	215	4,699	3,025
	병원 정신과	43	3,054	2,589
	정신병원	252	58,649	50,036
	요양병원 정신과	4	-	-
	한방병원 정신과	4	242	226
	의원 정신과	1,682	990	829
	한의원 정신과	2	-	-
지역별	서울	652	3,737	2,884
	부산	185	5,058	4,267
	대구	109	4,077	3,635
	인천	96	3,829	3,402
	광주	63	2,056	1,710
	대전	89	1,419	1,141
	울산	33	1,366	1,207
	세종	15	108	85
	경기	474	12,821	11,113
	강원	44	1,894	1,487
	충북	56	3,336	2,554
	충남	63	4,280	3,230
	전북	69	2,797	2,449
	전남	57	3,953	3,350
	경북	70	7,534	6,322
	경남	96	9,030	7,629
	제주	31	339	240

주: 1) 기관수는 전체기관수임

2) 병상 수에는 개방병상을 포함함

3)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62.

- 2023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의 수는 2,202개소, 병상수는 67,634병상, 입원환자수는 56,705명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기관수는 증가 추이를, 병상수와 입원환자수는 감소 추이를 보임
-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의원 정신과가 1,682개소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수와 입원환자수는 정신병원이 각각 58,649병상, 50,036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652개소, 474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병상수와 입원환자수는 경기도 각각 12,821병상, 11,113명으로 가장 많음



〈표 2-4-5〉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 연도별

(단위: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5,326	5,309	5,587	6,208	6,845	7,757
부산	3,872	4,495	6,373	7,275	8,119	8,760
대구	3,788	3,939	4,382	5,133	6,296	7,267
인천	3,151	3,371	4,291	5,984	6,413	7,357
광주	7,995	7,787	8,314	9,391	10,054	11,212
대전	6,716	7,249	8,492	9,563	10,246	11,312
울산	3,836	4,193	4,669	5,782	7,698	8,745
세종	3,513	2,909	3,546	4,129	7,058	10,547
경기	4,376	5,312	5,298	6,207	6,716	7,324
강원	7,147	8,050	7,769	9,946	12,063	13,194
충북	6,051	7,021	7,693	8,927	11,335	12,860
충남	5,909	7,413	7,200	10,528	11,185	9,969
전북	7,554	8,865	9,609	12,036	13,975	15,580
전남	4,306	5,118	6,027	8,377	8,834	9,413
경북	4,121	5,406	6,148	8,414	9,057	9,389
경남	2,758	3,135	3,504	5,721	6,119	6,606
제주	5,985	6,423	6,062	8,319	8,662	12,324
전국(평균)	4,791	5,389	5,815	7,139	7,934	8,710

주: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 당해연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집행액 총액* / 당해연도 추계인구수**

*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예산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당해연도 추계인구수(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p.45.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45.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45.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47.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33.
 6)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47.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8,710원으로, 전년 대비 776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15,580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 13,194원, 충북 12,860원, 제주 12,324원 등의 순임. 반면, 경남은 6,606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5) 사망

〈표 2-5-1〉 장애인 조사망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10만 명당)

구분		연앙인구	사망인원	조사망률
연도	2016	2,498,757	70,290	2,813.0
	2017	2,525,879	69,478	2,750.6
	2018	2,560,296	74,957	2,927.7
	2019	2,597,048	75,402	2,903.4
	2020	2,620,914	78,879	3,009.6
	2021	2,636,127	83,858	3,181.1
	2022	2,648,800	102,916	3,885.4
	2023	2,638,479	94,474	3,580.6
성별	남	1,527,069	52,942	3,466.9
	여	1,111,411	41,532	3,736.9
연령별	19세 이하	96,839	222	229.2
	20~44세	299,474	1,378	460.1
	45~64세	836,393	11,202	1,339.3
	65세 이상	1,405,775	81,672	5,809.8
장애유형	지체	1,162,578	30,796	2,648.9
	뇌병변	240,251	17,315	7,207.1
	시각	248,943	7,619	3,060.5
	청각	427,729	21,718	5,077.5
	언어	22,964	783	3,409.8
	지적	227,484	2,280	1,002.3
	자폐성	40,164	44	109.6
	정신	104,041	2,334	2,243.3
	신장	106,416	8,247	7,749.8
	심장	4,942	272	5,503.8
	호흡기	11,011	1,312	11,915.4
	간	15,316	377	2,461.6
	안면	2,733	30	1,097.7
	정류·요루	16,883	1,232	7,297.5
장애정도	뇌전증	7,028	115	1,636.4
	중증	974,047	40,250	4,132.2
	경증	1,664,432	54,224	3,257.8
지역	서울	388,534	13,053	3,359.6
	부산	175,460	6,601	3,762.1
	대구	130,100	4,558	3,503.5
	인천	151,226	4,964	3,282.5
	광주	69,295	2,288	3,301.8
	대전	71,600	2,538	3,544.7
	울산	51,258	1,588	3,098.1
	세종	12,869	425	3,302.6
	경기	583,055	19,246	3,300.9
	강원	100,910	3,883	3,848.0
	충북	97,309	3,661	3,762.2
	충남	134,107	5,180	3,862.6
	전북	130,754	5,206	3,981.5
	전남	137,285	5,691	4,145.4
	경북	178,799	7,216	4,035.8
	경남	188,910	7,014	3,712.9
	제주	37,012	1,362	3,679.9



-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출처: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77)
 2)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3) 조사망률: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연도의 추정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자로 표현한 지표임.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통계설명자료, p.20.
 $\text{조사망률} = \text{총 사망자 수} / \text{연앙인구} \times 100,000$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p.445-447.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417-419.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83-385.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73-575.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85-587, 623-625.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23-625.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87-689.
 8)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77-686.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사망인원 수는 94,474명, 조사망률은 3,580.6명임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사망현황(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사망인원: 352,511명, 조사망률: 689.2명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인원 수와 조사망률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이다, 2023년 감소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조사망률은 3,736.9명으로 남성 3,466.9명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조사망률은 5,809.8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흡기장애의 조사망률은 11,915.4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장장애 7,749.8명, 장루·요루장애 7,297.5명, 뇌병변장애 7,207.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의 조사망률은 4,132.2명으로 경증장애 3,257.8명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전남 4,145.4명 경북 4,035.8명, 전북 3,981.5명 등이 있음

〈표 2-5-2〉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10만 명당)

구분		사망원인 순위	조사망률	구분		사망원인 순위	조사망률
연도	2017	7	61.2	장애유형	심장	14	20.2
	2018	7	62.0		호흡기	7	136.2
	2019	8	61.0		간	12	13.1
	2020	10	57.2		안면	-	-
	2021	11	53.5		장루·요루	9	77.0
	2022	12	53.1		뇌전증	3	142.3
	2023	11	56.7	장애정도	중증(1~3급)	11	55.6
성별	남	9	73.2		경증(4~6급)	11	57.3
	여	11	33.9	지역	서울	11	54.6
연령별	10~19세	3	12.2		부산	11	62.1
	20~29세	2	25.3		대구	11	60.0
	30~39세	2	37.9		인천	12	50.9
	40~49세	2	62.3		광주	8	64.9
	50~59세	7	57.2		대전	10	48.9
	60~69세	8	52.1		울산	8	74.1
	70~79세	9	62.9		세종	10	31.1
	80세 이상	11	71.3		경기	11	59.9
장애유형	지체	10	55.1		강원	9	67.4
	뇌병변	11	55.8		충북	11	53.4
	시각	11	55.8		충남	10	73.8
	청각	11	63.1		전북	12	39.0
	언어	7	78.4		전남	13	48.1
	지적	15	10.1		경북	11	53.7
	자폐성	8	2.5		경남	10	52.4
	정신	4	144.2		제주	12	45.9
	신장	10	73.3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출처: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87)
 2) 사망원인별 사망률(Cause-specific death rate)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연앙인구 × 100,000. 특정 사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위로 표시한 지표임.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통계설명자료, p.20.
 -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 =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연앙인구 × 100,000
 3) 사망원인 순위: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8차에 따라 사인을 집계하고, 통계청의 57개 사인(일반사망선택분류표)을 46개 사인으로 재분류하여 사망에 따라 사망원인 순위를 산정함. (출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통계설명자료, p.20.
 4) 고의적 자해 사망자수가 0인 경우는 결과표에서 제외함
 5)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1)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420~450.
 2)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386~416.
 3)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76~604.
 4)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588~616, 626~656.
 5)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27~654.
 6)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90~718.
 7)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p.687~715.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는 11순위이며,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56.7명임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 현황(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사망자 수: 13,978명, 조사망률: 27.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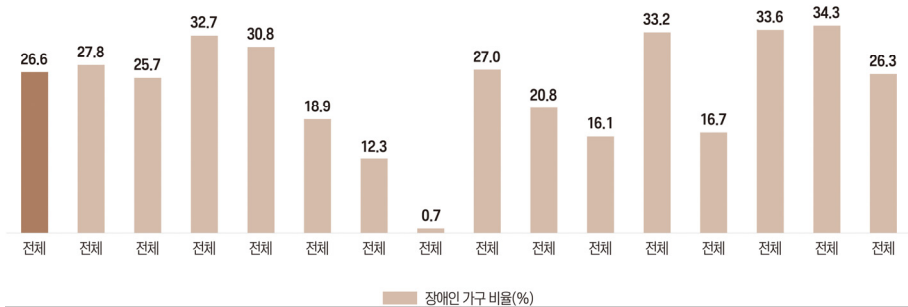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의 조사망률은 감소하나, 2023년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73.2명으로 여성 33.9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에서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이 71.3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 20~49세의 경우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가 2순위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호흡기장애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144.2명, 142.3명, 136.2명으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반면, 자폐성장애의 경우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2.5명으로 낮음
- 장애정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각각 55.6명, 57.3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울산 74.1명, 충남 73.8명 등이 있음



3.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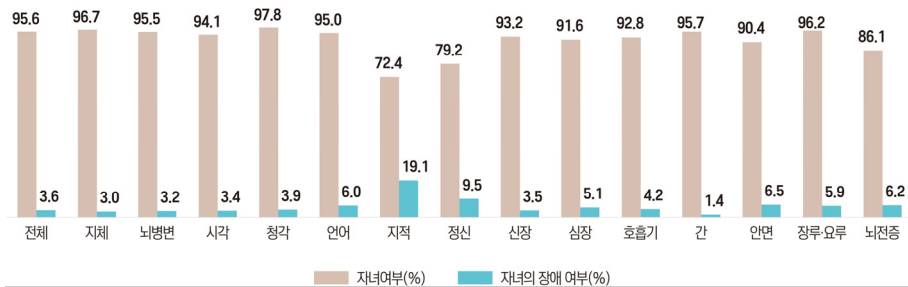
[그림 2-3-1]

1인 가구 비율 - 장애유형별(2023년)



[그림 2-3-2]

자녀 현황 및 장애 자녀 여부(2020년)



-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6.6%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비율은 장루·요루 장애가 34.3%로 가장 높고, 안면장애 33.6%, 호흡기장애 33.2%, 시각장애 3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혼인 경험이 있는 장애인 중 95.6%가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3.6%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27.6%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 20.8% 순임
 - 장애유형별로 장애자녀가 있는 비율은 지적장애가 19.1%로 가장 높고 정신장애 9.5% 순임

1) 가구구성

(1) 가구구성 및 규모

〈표 3-1-1〉 가구구성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가구	26.6	27.8	25.7	32.7	30.8	18.9	12.3	0.7
부부	31.6	36.1	30.7	32.6	38.8	26.5	3.4	-
기타1세대	0.9	0.3	1.4	0.5	0.5	0.8	2.9	0.9
부부+미·기혼자녀	22.7	21.1	23.1	19.1	11.9	36.7	48.3	71.8
편부+미혼자녀	2.0	1.5	1.6	1.7	1.4	2.1	5.2	2.8
편모+미혼자녀	6.8	5.2	6.3	5.4	4.5	6.7	15.9	14.1
부부+양친	0.2	0.1	0.3	-	0.5	0.5	0.3	-
부부+편부모	1.6	1.6	1.5	1.4	3.2	0.8	0.3	-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0.2	0.2	0.4	-	0.0	-	0.2	-
조부모+손자녀	0.7	0.8	1.2	0.4	0.5	-	1.6	-
기타2세대	1.9	1.5	2.6	1.3	1.7	1.3	3.4	1.3
부부+자녀+양친	0.7	0.6	0.9	0.4	1.0	-	0.6	2.4
부부+자녀+편부모	2.0	1.8	2.6	2.0	2.1	4.2	2.0	2.4
기타3세대	2.0	1.4	1.5	2.2	3.1	1.5	3.0	3.7
비혈연가구	0.1	-	-	0.2	-	-	0.6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인가구	27.0	20.8	16.1	33.2	16.7	33.6	34.3	26.3
부부	11.6	37.2	30.0	39.7	38.9	24.7	40.3	21.7
기타1세대	6.4	0.9	2.0	0.3	1.0	-	0.1	1.9
부부+미·기혼자녀	20.1	24.6	30.5	18.1	31.7	30.0	10.8	25.2
편부+미혼자녀	4.7	2.0	4.7	2.2	0.3	1.9	2.6	4.7
편모+미혼자녀	18.6	6.9	4.8	0.2	2.9	4.9	5.3	14.6
부부+양친	0.3	-	-	-	0.7	-	-	-
부부+편부모	0.3	1.1	2.7	0.6	0.9	0.9	1.4	0.7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1.4	-	-	-	0.6	-	-	1.4
조부모+손자녀	0.1	0.3	1.7	0.4	0.1	-	-	-
기타2세대	4.7	1.5	0.8	0.7	1.7	1.5	1.0	2.3
부부+자녀+양친	-	0.6	-	1.3	0.5	-	2.6	0.3
부부+자녀+편부모	1.2	2.5	3.5	1.5	2.5	0.4	0.8	0.9
기타3세대	2.9	1.4	3.0	1.7	1.5	2.1	0.8	-
비혈연가구	0.7	0.4	-	-	-	-	-	-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17.

-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부부 가구가 31.6%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6.6%, 부부+미·기혼자녀 22.7%, 편모+미혼자녀 6.8%, 편부+미혼자녀, 부부+자녀+편부모, 기타 3세대가 각각 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에서 부부+미·기혼자녀 비율이 71.8%로 높았고, 편모/편부+미혼자녀의 비율은 정신장애가 23.3%, 지적장애 21.1%로 높게 나타남



〈표 3-1-2〉 가구규모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26.6	27.8	25.7	32.7	30.8	18.9	12.3	0.7
2인 가구	40.6	42.8	40.4	39.7	46.3	35.1	21.1	10.9
3인 가구	17.5	15.8	18.5	15.2	12.8	16.9	30.8	31.9
4인 가구	10.8	9.7	10.0	8.4	6.6	21.4	26.4	43.4
5인 이상 가구	4.5	3.8	5.4	4.1	3.4	7.7	9.4	13.1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인 가구	27.0	20.8	16.1	33.2	16.7	33.6	34.3	26.3
2인 가구	37.3	46.8	42.1	42.0	43.3	30.0	47.5	36.5
3인 가구	25.5	19.9	22.9	15.6	19.6	20.7	11.3	24.7
4인 가구	7.0	9.7	10.2	6.6	17.1	9.3	2.9	8.4
5인 이상 가구	3.3	2.8	8.7	2.6	3.3	6.4	4.0	4.1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15.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가구규모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40.6%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26.6%, 3인 가구 17.5%, 4인 가구 10.8%, 5인 이상 가구 4.5%의 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경우 장루·요루장애 34.3%, 안면장애 33.6%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에서 대부분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가구원 수가 3인 이상 경우가 각각 66.6%, 88.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 1인 가구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전체인구	전체가구 (가구)	-	-	19,674,000	20,927,000	22,073,000
	1인 가구(%)	-	-	28.6%	31.7%	35.5%
장애인	등록장애인 (명)	2,519,241	2,494,460	2,545,637	2,623,201	2,646,922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	17.40%	24.30%	26.40%	27.20%	26.60%

주 1) 전체가구: 통계청. (2024).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 p7.

전체가구: 일반가구로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 1인가구,

④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①~④ 일반가구내 외국인도 포함

2)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보건복지부. (2024).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표 3-1-3〉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현황(2020) - 지역별

(단위: 가구, %)

구분	일반가구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비율
			계	활동제약자 1명	활동제약자 2명	활동제약자 3명 이상	
전체	20,926,710	18,687,515	2,239,195	1,907,647	306,237	25,311	10.7
서울	3,982,290	3,580,321	401,969	339,500	57,643	4,826	10.1
부산	1,405,037	1,243,577	161,460	137,940	21,923	1,597	11.5
대구	985,816	882,950	102,866	88,127	13,494	1,245	10.4
인천	1,147,200	1,023,518	123,682	104,638	17,354	1,690	10.8
광주	599,217	536,774	62,443	53,130	8,510	803	10.4
대전	631,208	572,504	58,704	49,715	8,218	771	9.3
울산	444,087	404,360	39,727	34,041	5,273	413	8.9
세종	139,106	129,130	9,976	8,418	1,443	115	7.2
경기	5,098,431	4,600,244	498,187	425,289	66,637	6,261	9.8
강원	661,039	578,781	82,258	70,659	10,862	737	12.4
충북	678,922	603,796	75,126	64,380	9,981	765	11.1
충남	892,222	788,779	103,443	87,698	14,674	1,071	11.6
전북	755,575	657,348	98,227	83,776	13,457	994	13.0
전남	761,518	658,153	103,365	87,870	14,568	927	13.6
경북	1,131,819	993,514	138,305	118,029	19,070	1,206	12.2
경남	1,350,155	1,198,779	151,376	130,654	19,205	1,517	11.2
제주	263,068	234,987	28,081	23,783	3,925	373	10.7

주: 1) 2020년 기준임

2) 일반가구는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를 제외하였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포함함

3) '활동제약자'는 다음 중 한 개 이상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자를 의미함

①보는 것 ②듣는 것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④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⑤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 ⑥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

4) 비율은 전체 가구 중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KOSIS, 다운로드일: 2025-09-01.

- 2020년 기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는 총 2,239,195가구로 일반가구 대비 10.7%를 차지함
 - 가구 내 활동제약자 수별로 살펴보면, '활동제약자 1명'이 1,907,647가구로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중 85.2%를 차지하고, '활동제약자 2명' 306,237가구(13.7%), '활동제약자 3명' 25,311가구(1.1%)임
 - 지역별로 일반가구 대비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3.6%로 가장 높고, 다음을 '전북' 13.0%, '강원' 12.4%, '경북' 12.2% 등의 순임. 반면 세종은 7.2%로 일반가구 대비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20년 기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804,460가구(35.9%)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621,495가구(27.8%), '3인 가구' 424,716가구(19.0%), '4인 가구' 237,715가구(10.6%), '5인 이상 가구' 191,332가구(8.5%) 순으로 나타남
 -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의 경우 '1인 가구'가 6,021,859가구(32.2%)로 가장 많음



〈표 3-1-4〉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2020) - 가구원 수별

(단위: 가구, %)

구분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계	18,687,515	100.0	2,239,195	100.0
1인 가구	6,021,859	32.2	621,495	27.8
2인 가구	5,061,281	27.1	804,460	35.9
3인 가구	3,776,781	20.2	424,716	19.0
4인 가구	3,031,195	16.2	237,715	10.6
5인 이상 가구	927,526	5.0	191,332	8.5

주: 1) 2020년 기준임

2) '활동제약자'는 다음 중 한 개 이상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자를 의미함

①보는 것 ②듣는 것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④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⑤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 ⑥상담원과 의사소통하는 것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KOSIS. 다운로드일: 2025-09-01.

- 2020년 기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는 총 2,239,195가구로 일반가구 대비 10.7%를 차지함
 - 가구 내 활동제약자 수별로 살펴보면, '활동제약자 1명'이 1,907,647가구로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중 85.2%를 차지하고, '활동제약자 2명' 306,237가구(13.7%), '활동제약자 3명' 25,311가구(1.1%)임
 - 지역별로 일반가구 대비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3.6%로 가장 높고, 다음을 '전북' 13.0%, '강원' 12.4%, '경북' 12.2% 등의 순임. 반면 세종은 7.2%로 일반가구 대비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20년 기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804,460가구(35.9%)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621,495가구(27.8%), '3인 가구' 424,716가구(19.0%), '4인 가구' 237,715가구(10.6%), '5인 이상 가구' 191,332가구(8.5%) 순으로 나타남
 -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의 경우 '1인 가구'가 6,021,859가구(32.2%)로 가장 많음

〈표 3-1-5〉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세대구성(2020) - 세대유형별

(단위: 명, %)

구분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계	18,687,515	100.0	2,239,195	100.0
1세대 가구	3,645,515	19.5	506,023	22.6
부부	3,331,944	17.8	473,066	21.1
부부+미혼형제자매	11,295	0.1	2,387	0.1
부부+기타친인척	19,824	0.1	3,775	0.2
가구주+미혼형제자매	172,641	0.9	8,801	0.4
가구주+기타친인척	56,627	0.3	8,072	0.4
1세대 가구 기타	53,184	0.3	9,922	0.4
2세대 가구	8,350,301	44.7	858,333	38.3
부부+미혼자녀	6,037,386	32.3	352,570	15.7
부+미혼자녀	369,941	2.0	40,518	1.8
모+미혼자녀	1,415,735	7.6	216,522	9.7
부부+양친	9,637	0.1	5,472	0.2
부부+한부모	64,293	0.3	62,539	2.8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25,574	0.1	3,375	0.2
조부모+미혼손자녀	31,972	0.2	10,020	0.4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41,452	0.2	21,306	1.0
2세대 가구 기타	354,311	1.9	146,011	6.5
3세대 가구	476,268	2.5	237,070	10.6
부부+미혼자녀+양친	54,654	0.3	21,328	1.0
부부+미혼자녀+부친	33,495	0.2	16,665	0.7
부부+미혼자녀+모친	171,902	0.9	103,554	4.6
3세대 가구 기타	216,217	1.2	95,523	4.3
4세대 이상 가구	2,722	0.0	3,266	0.1
1인 가구	6,021,859	32.2	621,495	27.8
비친족 가구	190,850	1.0	13,008	0.6

주: 1) 2020년 기준임

2) '활동제약자'는 다음 중 한 개 이상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자를 의미함

① 보는 것 ②듣는 것 ③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 ④기억하거나 집중하는 것 ⑤스스로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등 ⑥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KOSIS, 다운로드일: 2025-09-01.

- 2020년 기준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의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 가구'가 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1인 가구' 27.8%, '1세대 가구' 22.6%, '3세대 가구'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세대 가구' 중 '부부'가 2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2세대 가구' 중 '부부+미혼자녀'가 1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활동제약자 없는 가구 또한 '2세대 가구'가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1인 가구' 32.2%, '1세대 가구' 19.5%, '3세대 가구' 2.5% 등의 순임



2) 가족형성

(1) 결혼상태

〈표 3-2-1〉 결혼상태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1.8	60.2	49.8	52.9	53.1	53.2	9.2	-	17.9	60.7	54.3	58.9	76.5	48.5	54.3	34.1
사별	20.7	20.9	18.5	23.9	34.1	14.7	3.2	-	6.7	12.1	14.5	10.6	4.3	12.2	28.9	6.7
이혼	9.7	9.9	13.1	10.9	6.4	10.3	4.7	-	12.0	14.2	9.2	24.6	14.2	11.9	11.2	16.9
별거	0.8	0.7	1.1	1.1	0.9	0.9	0.2	-	0.5	0.9	0.5	0.1	1.5	0.9	0.7	0.0
미혼	17.0	8.4	17.4	11.1	5.5	21.0	82.4	100.0	63.0	11.9	21.4	5.7	3.5	26.5	5.0	42.3
기타(미혼모/부)	0.0	-	-	0.1	0.0	-	0.2	-	-	0.1	-	-	-	-	-	-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80.

〈표 3-2-2〉 결혼상태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	51.8	61.2	39.0	-	18.0	56.9	55.8	38.7	58.3
사별	20.7	5.6	41.2	-	0.4	5.2	33.9	13.4	24.3
이혼	9.7	10.9	8.1	-	3.1	16.3	7.3	9.9	9.6
별거	0.8	0.9	0.6	-	0.3	1.0	0.7	0.8	0.8
미혼	17.0	21.4	11.1	-	78.1	20.6	2.3	37.2	7.0
기타(미혼모/부)	0.0	0.0	0.1	-	0.2	0.0	0.0	0.1	0.0

주: 1)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2017년 이전에는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2020년부터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76.

- 장애인의 현재 결혼상태는 유배우자가 51.8%로 가장 많았고, 사별 20.7%, 미혼 17.0%, 이혼 9.7%, 별거 0.8%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의 미혼 비율이 10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적장애 82.4%, 정신장애 63.0%, 뇌전증장애 42.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유배우자 비율은 61.2%로 여성 39.0%에 비해 22.2%p 높은 반면, 여성은 사별한 비율이 41.2%로 남성 5.6%에 비해 35.6%p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의 유배우자 비율이 58.3%로 심한 장애 38.7%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결혼 시 연령

〈표 3-2-3〉 결혼 시 연령 - 장애유형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만 15-19세	6.4	6.4	4.6	5.7	9.8	1.9	4.5	-	1.2	2.7	6.7	2.7	0.5	-	3.4	3.1
만 20-29세	73.1	72.7	75.5	71.7	76.0	71.1	53.6	-	62.5	74.1	66.9	71.7	72.8	58.8	79.2	68.3
만 30-39세	17.8	18.2	17.6	19.6	12.3	24.2	33.2	-	31.3	20.3	22.5	23.1	23.4	34.2	15.0	24.9
만 40-49세	1.8	1.9	1.9	1.8	1.0	1.2	8.3	-	2.7	1.9	2.9	1.6	2.9	5.2	1.5	3.8
만 50세 이상	0.8	0.7	0.4	1.2	0.9	1.6	0.5	-	2.2	1.1	1.1	1.0	0.5	1.8	0.9	-
평균연령	26.4	26.4	26.6	26.9	25.3	27.4	29.2	-	28.5	27.3	27.5	27.9	28.0	29.3	26.3	26.9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80.

〈표 3-2-4〉 결혼 시 연령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세)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만 15-19세	6.4	0.8	13.1	-	0.6	2.3	8.6	4.3	7.1
만 20-29세	73.1	69.1	78.0	-	42.5	65.8	78.0	69.8	74.2
만 30-39세	17.8	26.7	7.3	-	55.4	26.6	12.0	22.4	16.3
만 40-49세	1.8	2.5	1.1	-	1.4	4.2	0.7	2.5	1.6
만 50세 이상	0.8	1.0	0.7	-	0.0	1.1	0.8	0.9	0.8
평균연령	26.4	28.5	23.9	-	29.9	28.4	25.3	27.2	26.1

주: 1)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2017년 이전에는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2020년부터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76.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평균결혼연령은 26.4세이며, 결혼 시 연령 중 만 20-29세가 73.1%로 가장 많았고, 만 30-39세 17.8%, 만 15-19세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만 20-39세 사이에 대부분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결혼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음



(3) 배우자의 장애유무

〈표 3-2-5〉 결혼 시 배우자 '장애 있음' 비율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배우자	2.5	1.7	0.8	3.1	4.7	2.4	25.4	-	4.4	0.6	0.0	9.0	0.0	0.0	4.6	1.3
2014 배우자	2.7	1.7	1.0	2.1	6.2	3.4	22.1	-	9.5	0.7	0.0	0.0	0.0	0.0	0.0	16.1
2017 배우자	2.4	1.4	2.3	2.5	4.1	7.3	21.1	-	4.1	1.0	-	4.1	-	14.7	0.4	9.8
2020 배우자	3.7	3.0	1.7	3.7	4.6	4.3	33.6	-	6.1	0.3	-	3.7	1.3	7.2	-	4.4
2023 배우자	2.6	1.5	1.9	4.2	3.3	10.0	20.2	-	10.0	1.7	-	1.1	-	4.4	-	10.9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2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22.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36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63.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81.

〈표 3-2-6〉 결혼 시 배우자 '장애 있음'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2011 배우자	2.5	1.9	3.3	-	7.9	3.3	0.7	8.0	1.5	2.6
2014 배우자	2.7	2.1	3.4	-	10	3.8	0.7	7.1	0.8	2.7
2017 배우자	2.4	1.9	3.0	-	6.6	3.7	1.1	5.9	0.9	2.4
2020 배우자	3.7	3.2	4.3	-	7.8	7.0	1.5	8.0	2.0	-
2023 배우자	2.6	2.0	3.4	-	7.5	4.9	1.3	7.3	1.1	

주: 1)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2017년 이전에는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2020년부터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07.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2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2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7.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77.

- 2023년 결혼 당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었던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지적장애가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전증장애 10.9%, 언어, 정신장애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3.4%로 남성 2.0%에 비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아짐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심한 장애 7.3%로 심하지 않은 장애 1.1%에 비해 높게 나타남

(4) 자녀 현황

〈표 3-2-7〉 자녀 현황 및 자녀 장애 유무 -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유무	예	95.6	96.7	95.5	94.1	97.8	95.0	72.4	-	79.2	93.2	91.6	92.8	95.7	90.4	96.2
	아니오	4.4	3.3	4.5	5.9	2.2	5.0	27.6	-	20.8	6.8	8.4	7.2	4.3	9.6	3.8
자녀 수	1명	14.7	14.3	17.0	14.8	8.8	20.2	43.1	-	44.8	18.8	18.9	17.4	20.0	26.7	14.9
	2명	43.8	47.2	41.2	45.5	33.1	47.5	38.4	-	37.0	53.4	42.1	51.7	56.6	47.8	34.1
	3명	21.9	21.1	23.0	22.1	25.5	17.2	13.7	-	12.5	17.8	24.2	20.3	22.3	21.3	24.3
	4명	11.1	9.7	11.3	9.9	17.8	10.5	2.9	-	3.9	6.6	13.5	8.7	1.2	2.1	11.5
	5명이상	8.6	7.7	7.5	7.8	14.8	4.5	1.8	-	1.8	3.4	1.2	1.9	-	2.1	15.1
자녀의 장애 유무	예	3.6	3.0	3.2	3.4	3.9	6.0	19.1	-	9.5	3.5	5.1	4.2	1.4	6.5	5.9
	아니오	96.4	97.0	96.8	96.6	96.1	94.0	80.9	-	90.5	96.5	94.9	95.8	98.6	93.5	94.1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87, 390.

〈표 3-2-8〉 자녀 현황 및 자녀 장애 유무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 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유무	예	95.6	95.0	96.3	-	82.1	92.0	97.9	92.3
	아니오	4.4	5.0	3.7	-	17.9	8.0	2.1	7.7
자녀 수	1명	14.7	15.0	14.2	-	39.0	24.7	9.3	19.9
	2명	43.8	50.3	36.0	-	49.1	60.4	36.2	43.8
	3명	21.9	21.8	21.9	-	9.7	12.9	26.3	21.5
	4명	11.1	8.3	14.3	-	2.2	1.9	15.5	8.0
	5명이상	8.6	4.5	13.5	-	0.0	0.2	12.7	6.8
자녀의 장애 유무	예	3.6	3.1	4.1	-	2.9	3.5	3.6	4.5
	아니오	96.4	96.9	95.9	-	97.1	96.5	96.4	95.5

주: 1)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2017년 이전에는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2020년부터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80, 681, 683.

- 2023년 기준 혼인 경험에 있는 장애인 중 95.6%가 자녀가 있고, 자녀수는 2명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있는 장애인 중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3.6%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자녀가 없는 비율'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27.6%로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 20.8%, 뇌전증장애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비율이 높아짐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비율'은 심하지 않은 장애가 96.7%로 심한 장애 92.3% 보다 높게 나타남



(5)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표 3-2-9〉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산후 조리 도우미	남편	5.7	6.4	-	4.1	13.3	-	-	-	24.6	-	-	-	-	-	-
	친정식구	38.7	29.4	39.6	50.3	42.5	57.1	43.2	-	75.4	50.0	18.4	42.3	-	21.0	-
	시댁식구	8.9	7.4	13.7	-	7.9	-	24.1	-	-	50.0	-	-	-	-	-
	복지기관	-	-	-	-	-	-	-	-	-	-	-	-	-	-	-
	산후조리원	28.1	32.8	37.4	32.9	16.4	42.9	13.4	-	-	-	81.6	57.7	100.0	79.0	-
	산후도우미	8.7	6.8	-	12.7	19.9	-	7.4	-	-	-	-	-	-	-	-
	돌봐주는사람없었음 (혼자했음)	9.2	17.2	-	-	-	-	11.9	-	-	-	-	-	-	-	-
	기타	0.8	-	9.2	-	-	-	-	-	-	-	-	-	-	-	-
산후 조리의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8.3	6.7	18.3	2.5	5.2	42.9	16.1	-	-	-	-	-	-	79.0	-
	충분하다	50.4	42.0	31.6	73.2	68.1	57.1	46.6	-	9.3	50.0	100.0	42.3	100.0	-	-
	부족하다	26.8	27.7	40.9	24.3	26.8	-	17.5	-	24.6	50.0	-	57.7	-	21.0	-
	매우 부족하다	14.5	23.6	9.2	-	-	-	19.8	-	66.1	-	-	-	-	-	-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04-405.

〈표 3-2-10〉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	100.0	-	100.0	100.0	-	100.0	100.0
산후 조리 도우미	남편	5.7	-	5.7	-	8.5	2.5	-	6.3
	친정식구	38.7	-	38.7	-	20.7	59.1	-	39.1
	시댁식구	8.9	-	8.9	-	15.8	1.0	-	11.6
	복지기관	-	-	-	-	-	-	-	-
	산후조리원	28.1	-	28.1	-	42.4	11.7	-	32.1
	산후도우미	8.7	-	8.7	-	10.9	6.2	-	6.0
	돌봐주는사람없었음 (혼자했음)	9.2	-	9.2	-	1.7	17.7	-	3.2
	기타	0.8	-	0.8	-	0.0	1.6	-	1.7
산후 조리의 충분도	매우 충분하다	8.3	-	8.2	-	10.4	5.8	-	16.7
	충분하다	50.4	-	50.4	-	46.5	54.9	-	53.4
	부족하다	26.8	-	26.8	-	34.2	18.5	-	21.2
	매우 부족하다	14.5	-	14.5	-	8.9	20.9	-	8.7

주: 1)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2017년 이전에는 중증(1-3급), 경증(4-6급)으로, 2020년부터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95.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식구가 38.7%로 가장 많았고 산후 조리원 28.1%, 돌봐주는사람 없었음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여성 장애인의 58.7%가 충분했던 것으로, 41.3%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 심장, 간 장애인의 산후조리 충분도가 100.0%로 가장 높은 반면, 정신장애에서 산후조리의 부족함이 90.7%로 가장 높음
 - 연령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45-64세 이하가 60.7%로 18-44세 이하 56.9%로 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친정식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 38.4%로 심한장애 39.1%에 비해 0.7%p 높게 나타남
 - 산후조리의 충분함은 심한 장애가 70.1%로 심하지 않은 장애 49.8%에 비해 높음

3) 다문화 가족

(1) 다문화 가족 중 장애인 가구

〈표 3-3-1〉 장애인 가구원 유무별 다문화가구의 분포 - 거주지역별, 가구소득별

(단위: %, 가구)

구분		장애인 가구원		계
		있음	없음	
전체	2015	6.4	93.6	100.0
	2018	5.8	94.2	100.0
	2021	7.3	92.7	100.0
		(25,383)	(320,634)	(278,036)
거주지역	동부	7.1	92.8	100.0
	읍면부	8.1	91.9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9	83.1	100.0
	100~200만원 미만	11.4	88.6	100.0
	200~300만원 미만	5.2	94.8	100.0
	300~400만원 미만	6.5	93.5	100.0
	400~500만원 미만	5.2	94.8	100.0
	500~600만원 미만	3.3	96.7	100.0
	600만원 이상	3.8	96.2	100.0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40.

- 2021년 가족 내 등록장애인이 있는 다문화가구는 7.3%로 2018년 5.8%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른 국내 전체 장애인 가구 비율인 15.9%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 동부 지역에서는 7.1%, 읍면부에서는 8.1%로 읍면부 다문화 가구에서 등록장애인 가구 비율이 더 높음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낮은 다문화 가구 집단에서 장애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1년 다문화 가구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이 장애인인 비율은 14.9%로, 전년도에 비해 1.7%p 감소함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비율은 54.1%로, 전년도에 비해 12.5%p 증가함

※※ ‘다문화 가족’이란

-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표 3-3-2〉 장애인 가구원과 결혼이민자·귀화자와의 관계

(단위: %)

연도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기타
2012	9.7	60.4	11.2	0.1	1.5	22.8	0.2	0.2	0.4	2.6	0.4	-
2015	10.7	61.6	9.5	-	1.7	14.9	-	0.1	0.4	-	1.0	0.1
2018	16.6	42.6	13.3	-	2.6	17.1	-	0.0	2.3	-	5.0	0.5
2021	14.9	54.1	10.7	0.3	1.3	18.0	-	0.1	-	-	0.6	-

주: 1)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개개인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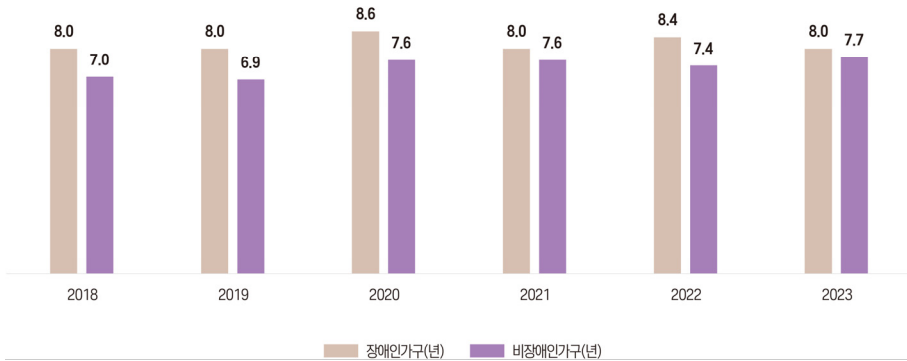
2) 본인은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을 의미하고, 배우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2),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40-41.

4.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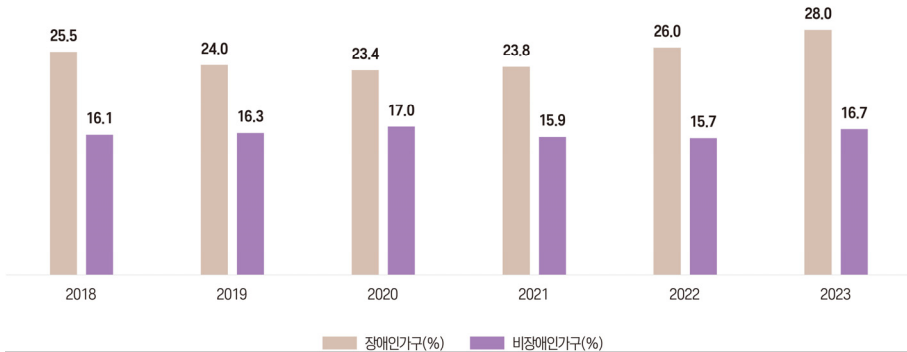
[그림 2-4-1]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그림 2-4-2]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장애인가구/비장애인가구



- 2023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장애인가구가 8.0년, 비장애인가구가 7.7년임
- 2023년 기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장애인가구가 28.0%, 비장애인가구가 16.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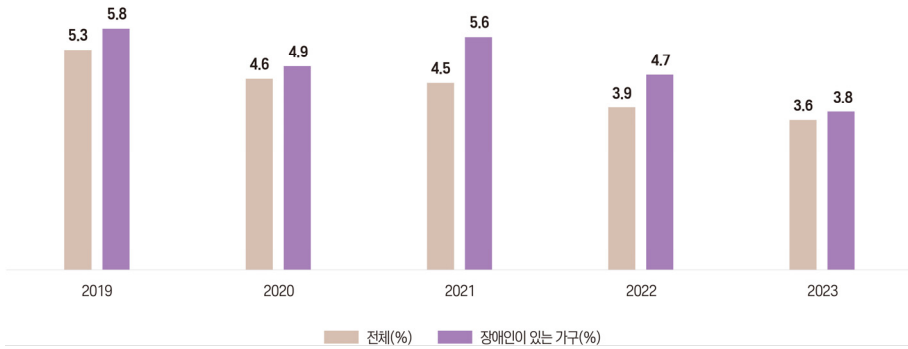
※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

-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RIR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RIR 수치가 20% 이상이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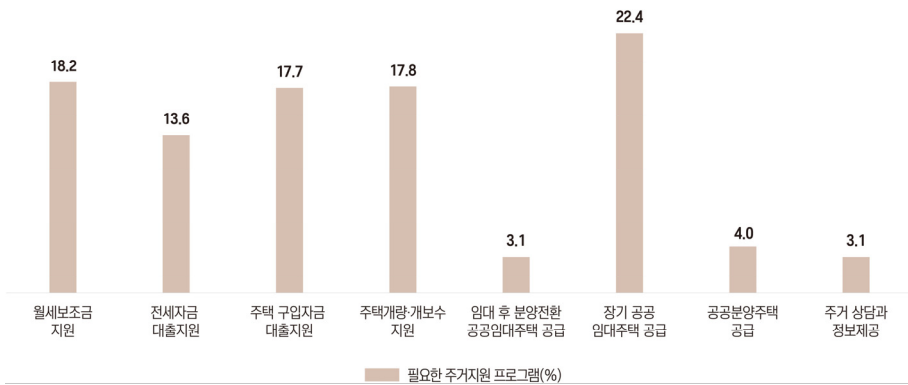
[그림 2-4-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그림 2-4-4]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2021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8%로 전체 3.6%에 비해 0.2%p 높음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22.4%로 가장 높고, 월세보조금 지원 18.2%,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17.8% 등의 순임

1) 주거

(1) 주택소유 현황

〈표 4-1-1〉 주택소유가구 현황 - 연도별, 가구주 연령대별, 지역별

(단위: 천가구, %)

구분		전체			장애인		
		총 가구 (일반가구)	주택소유가구	주택 소유율	총 가구 (일반가구)	주택소유가구	주택 소유율
연도	2018	19,979	11,234	56.2	2,205	1,372	62.2
	2019	20,343	11,456	56.3	2,215	1,388	62.7
	2020	20,927	11,730	56.1	2,213	1,387	62.7
	2021	21,448	12,063	56.2	2,237	1,399	62.5
	2022	21,774	12,232	56.2	2,244	1,400	62.4
	2023	22,073	12,455	56.4	2,273	1,417	62.3
가구주 연령대별	30세미만	1,831	188	10.3	28	8	28.6
	30~39세	3,106	1,136	36.6	86	40	46.5
	40~49세	4,146	2,491	60.1	250	148	59.2
	50~59세	4,865	3,145	64.6	451	276	61.2
	60~69세	4,424	2,995	67.7	601	380	63.2
	70~79세	2,377	1,678	70.6	484	333	68.8
	80세이상	1,324	821	62.1	373	232	62.2
지역	서울	4,142	1,998	48.2	342	194	56.7
	부산	1,462	846	57.9	154	95	61.7
	대구	1,033	603	58.4	114	90	78.9
	인천	1,242	708	57.0	132	82	62.1
	광주	628	366	58.3	61	38	62.3
	대전	655	348	53.1	62	38	61.3
	울산	458	293	64.0	45	31	68.9
	세종	156	91	58.3	11	7	63.6
	경기	5,500	3,117	56.7	506	312	61.7
	강원	698	407	58.3	86	55	64.0
	충북	720	422	58.6	81	53	65.4
	충남	949	549	57.9	113	73	64.6
	전북	767	465	60.6	109	69	63.3
	전남	793	490	61.8	113	73	64.6
	경북	1,147	713	62.2	150	99	66.0
	경남	1,404	884	63.0	162	108	66.7
	제주	278	156	56.1	31	19	61.3

주: 1)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의미함

2) 주택 소유율은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임

· 주택소유율 = (주택소유가구수/일반가구수)*100

자료: 1) 전체: 통계청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 p.3, 22.,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23, 2025.5.20, 거주지역별 주택소유 및 무주택 가구수

2) 장애인: 통계청 (각 년도)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5.5.20.)

- 2023년 기준, 장애인 가구 중 주택소유가구는 1,417천가구이고, 주택 소유율은 62.3%임

• 전체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56.4%로, 장애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약 5.9%p 높음

• 가구주 연령별로 주택 소유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와 장애인 가구 모두 '70~79세'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전체 70.6%, 장애인 68.8%), '50세 이상'은 60% 이상으로 나타남. 장애인 가구의 경우,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이 28.6%로 전체 10.3%에 비해 약 18.3%p 이상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주택 소유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는 '울산'의 주택 소유율(전체 64.0%)이, 장애인 가구는 '대구'의 주택 소유율(78.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남(전체 48.2%, 장애인 56.7%)



〈표 4-1-2〉 주택소유자 현황 - 연도별, 연령대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인	
		주택 소유자	비율	주택 소유자	비율
연도	2018	14,010,290	100.0	817,745	100.0
	2019	14,335,723	100.0	836,462	100.0
	2020	14,696,617	100.0	847,278	100.0
	2021	15,089,160	100.0	855,344	100.0
	2022	15,309,392	100.0	854,498	100.0
	2023	15,618,261	100.0	868,045	100.0
성별	남성	8,408,927	53.8	558,502	64.3
	여성	7,209,334	46.2	309,543	35.7
연령대별	30세미만	251,544	1.6	2,894	0.3
	30~39세	1,479,689	9.5	14,280	1.6
	40~49세	3,305,362	21.2	59,236	6.8
	50~59세	3,938,164	25.2	129,679	14.9
	60~69세	3,553,549	22.8	238,168	27.4
	70~79세	1,880,330	12.0	243,964	28.1
	80세이상	879,875	5.6	179,824	20.7
	사망자	329,748	2.1	-	-
지역	서울	2,643,465	16.9	119,682	13.8
	부산	1,051,261	6.7	58,411	6.7
	대구	740,776	4.7	43,104	5.0
	인천	864,282	5.5	50,131	5.8
	광주	443,367	2.8	23,110	2.7
	대전	433,503	2.8	23,404	2.7
	울산	364,550	2.3	19,359	2.2
	세종	119,296	0.8	4,361	0.5
	경기	3,944,046	25.3	185,923	21.4
	강원	492,745	3.2	34,409	4.0
	충북	511,649	3.3	32,345	3.7
	충남	672,089	4.3	44,741	5.2
	전북	566,305	3.6	43,028	5.0
	전남	605,006	3.9	45,741	5.3
	경북	876,159	5.6	62,078	7.2
	경남	1,089,324	7.0	66,877	7.7
	제주	200,438	1.3	11,341	1.3

주: 연령별 중 '사망자'는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미이전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각 년도),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5.5.20.)

- 2023년 기준 장애인 주택소유자 수는 868,045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 15,618,261명 중 약 5.6%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주택소유자 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나 2022년 소폭 하락하다 2023년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주택 소유자 중 남성은 558,502명(64.3%), 여성은 309,543명(35.7%)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60~69세'와 '70~79세'의 비율이 각각 27.4%, 28.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반면, 전체의 경우 '40~49세', '50~59세', '60~69세'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와 장애인 모두 '경기'의 비율이 각각 25.3%,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2) 주택유형

〈표 4-1-3〉 주택유형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2019	100.0	42.3	41.0	2.4	9.9	2.0	2.4
2020	100.0	41.4	43.6	2.4	8.6	1.5	2.4
2021	100.0	41.0	45.2	1.9	7.9	1.1	2.8
2022	100.0	43.3	41.1	1.9	10.7	0.7	2.2
2023	100.0	41.0	44.8	2.5	8.1	0.7	2.9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2.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2.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2.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6.
 5)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4).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8.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44.8%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 41.0%, 다세대주택 8.1%, 주택이외의 거처 2.9% 순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은 60㎡ 이하가 50.7%로 과반수가 넘고, 평균은 63.3㎡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사용 방 수는 4개가 44.7%로 가장 높고, 3개가 32.7%, 5개 9.5% 순이며, 평균 방 수는 3.5개임



(3) 주택사용면적

〈표 4-1-4〉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현황 - 연도별

(단위: %, m²)

구분	전체	60㎡ 이하 (18평이하)	60㎡~85㎡ (18~25평)	85㎡~102㎡ (25~30평)	102㎡ 초과 (30평 초과)	모름/무응답	평균(㎡)
2019	100.0	49.8	30.0	11.4	8.7	0.2	65.0
2020	100.0	51.9	29.7	11.0	6.8	0.7	63.9
2021	100.0	51.2	31.5	9.6	7.0	0.8	63.0
2022	100.0	51.6	31.0	9.7	7.1	0.7	63.8
2023	100.0	50.7	34.0	8.1	7.2	0.0	63.3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4.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2.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4.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02.
5)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4).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102.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44.8%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 41.0%, 다세대주택 8.1%, 주택이외의 거주 2.9% 순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은 60㎡ 이하가 50.7%로 과반수가 넘고, 평균은 63.3㎡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사용 방 수는 4개가 44.7%로 가장 높고, 3개가 32.7%, 5개 9.5% 순이며, 평균 방 수는 3.5개임

(4) 사용 방 수

〈표 4-1-5〉 사용 방 수 현황 - 연도별

(단위: %, 개)

구분	전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평균(개)
2019	100.0	5.2	5.1	32.8	45.0	9.4	2.4	3.6
2020	100.0	5.9	6.1	33.2	45.0	8.4	1.4	3.5
2021	100.0	6.3	5.5	34.2	43.8	8.7	1.5	3.5
2022	100.0	5.4	6.3	31.8	47.3	8.0	1.2	3.5
2023	100.0	5.6	6.7	32.7	44.7	9.5	0.8	3.5

주: 1) 장애인인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사용 방 수는 침실, 거실, 식당을 포함한 방의 수를 의미함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2.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0.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2.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8.
 5)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4).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8.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44.8%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 41.0%, 다세대주택 8.1%, 주택이외의 거주 2.9% 순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은 60㎡ 이하가 50.7%로 과반수가 넘고, 평균은 63.3㎡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사용 방 수는 4개가 44.7%로 가장 높고, 3개가 32.7%, 5개 9.5% 순이며, 평균 방 수는 3.5개임



(5) 무주택 기간

〈표 4-1-6〉 무주택 기간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2019	100.0	3.8	2.4	2.7	7.0	13.4	70.7
2020	100.0	2.3	2.6	1.7	6.0	13.3	74.1
2021	100.0	1.9	2.2	2.5	6.2	11.6	75.6
2022	100.0	2.7	1.2	4.0	6.0	12.0	74.2
2023	100.0	2.5	2.9	1.8	6.6	12.2	74.0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무주택 기간을 의미함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40.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38.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40.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46.
5)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4),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46.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0년 이상이 74.0%로 가장 높고, 5~10년 12.2%, 3~5년 6.6% 순임
- 2022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장애인가구가 8.4년, 비장애인가구가 7.4년임

(6)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표 4-1-7〉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 - 연도별

(단위: 년)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7.1	6.9	7.7	7.7	7.4	7.7
장애인가구	8.0	8.0	8.6	8.0	8.4	8.0
비장애인가구	7.0	6.9	7.6	7.6	7.4	7.7

주: 1) 장애인가구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2) 각 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원자료를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자료: 1) 국토교통부, 2018~2021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6.20.)
 2)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4.7.22.)
 3) 국토교통부, 2023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5.7.4.)

- 2023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장애인가구가 8.0년, 비장애인가구가 7.7년임



(7) 주거비 부담 수준

〈표 4-1-8〉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없음
2019	100.0	19.0	41.8	16.7	3.5	18.9
2020	100.0	22.5	37.7	17.4	1.7	20.6
2021	100.0	21.0	35.9	20.1	4.4	18.7
2022	100.0	20.5	40.5	15.3	1.5	22.2
2023	100.0	18.9	42.3	15.9	2.1	20.7

주: 1) 장애인인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해당없음'은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이면서 주택마련 및 임차 당시 대출을 했더라도 현재 모두 상환한 경우임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84.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82.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84.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0.
 5)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4).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90.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주택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는 부담됨(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이 61.2%, 부담되지 않음(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18.0%임
- 2023년 기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장애인가구가 26.0%, 비장애인가구가 15.7%임
- ※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
 -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R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RIR 수치가 20% 이상이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

(8)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표 4-1-9〉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연도별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15.8	16.1	16.8	16.3	16.0	15.8
장애인가구	25.5	24.0	23.4	23.8	26.0	28.0
비장애인가구	16.1	16.3	17.0	15.9	15.7	16.7

- 주: 1) 장애인가구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로 정의함
 2) 주택점유형태가 임차(전세, 월세, 연세, 일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3)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월임대료(중위수)/월가구소득(중위수)×100
 * 월임대료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포함되며, 보증금에는 월세이율(월)을 적용함 (2년 월세이율 0.51%)
 * 월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사회보험 수혜금, 정부보조금,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됨
 4) 각 연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원자료를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자료: 1) 국토교통부, 2018-2021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6.20.)
 2)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4.7.22.)
 3) 국토교통부, 2023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5.7.4.)

- 2023년 기준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장애인가구가 28.0%, 비장애인가구가 16.7%임

※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

-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R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RIR 수치가 20% 이상이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



(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4-1-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장애인이 있는 가구	전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8	5.3	4.9	4.6	5.6	4.5	4.7	3.9	3.8	3.6
면적기준 미달가구	3.9	3.8	3.0	3.3	3.6	3.3	2.6	2.8	2.7	2.7
시설기준 미달가구	3.3	3.0	3.2	2.8	3.3	2.7	2.9	2.6	2.4	2.3
침실기준 미달가구	0.4	0.3	0.3	0.2	0.4	0.2	0.3	0.1	0.1	0.2

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산정방식은 국토교통부의 각 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연구보고서」 「부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산정방식을 따름
 2)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면적기준, 시설기준, 침실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판단함
 3) 각 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원자료를 가중치 적용하여 분석함
 자료: 1) 국토교통부, 2018~2021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3.6.20.)
 2) 국토교통부, 2022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4.7.22.)
 3) 국토교통부, 2023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통계청 MDIS, 2025.7.4.)

- 2023년도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8%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면적기준 미달가구는 2.7%, 시설기준 미달가구는 2.4%, 침실기준미달가구는 0.1%인 것으로 나타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총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주거의 양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임(출처: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
- 근거: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
- 시설기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 면적 및 방 개수 기준

가구원수(명)	1	2	3	4	5	6
면적(m ²)	14	26	36	43	46	55
방수(개)	1	1	2	3	3	4

2) 주택 환경

(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표 4-2-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82.9	82.4	83.3	81.1	83.1	87.8	82.7	90.1	81.7	88.5	85.8	85.8	88.2	87.3	80.4	79.8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추	84.9	84.8	85.1	83.2	86.7	90.7	83.1	91.1	79.4	88.4	81.1	84.9	89.0	86.6	81.7	77.3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없음	87.1	86.6	87.8	88.6	87.5	91.8	88.0	90.3	81.9	88.4	87.0	84.6	89.9	86.8	87.5	82.9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93.1	93.3	93.9	94.5	92.3	96.4	91.0	96.4	91.2	94.9	92.9	93.6	95.4	96.2	87.7	89.0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	76.2	76.3	79.3	75.1	74.6	83.0	72.4	90.3	73.8	81.4	82.3	79.3	82.2	85.3	72.3	74.9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51-453.

-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구조·성능 및 환경을 살펴보면,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가 76.2%로 가장 열악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한 비율이 17세 이하가 89.7%, 18-44세 이하가 79.3%, 45-64세 이하가 76.7%, 65세 이상이 74.5%로 연령이 높을수록 충족도가 낮아짐
 - 자폐성의 경우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한 비율이 90.3%로 다른 장애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 주택 환경

(1)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표 4-2-2〉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내열, 내화, 방열 및 방습 양호함	82.9	83.5	82.0	93.5	86.7	83.2	81.3	83.8	82.5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갖추	84.9	85.7	83.7	93.2	86.0	84.1	84.6	84.7	85.0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없음	87.1	87.7	86.3	95.3	88.0	85.7	87.3	86.9	87.2
해일, 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로 부터 안전함	93.1	93.6	92.6	98.0	93.5	93.5	92.6	93.1	93.2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	76.2	77.2	74.8	89.7	79.3	76.7	74.5	76.4	76.1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726-727.

-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구조·성능 및 환경을 살펴보면,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가 76.2%로 가장 열악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한 비율이 17세 이하가 89.7%, 18-44세 이하가 79.3%, 45-64세 이하가 76.7%, 65세 이상이 74.5%로 연령이 높을수록 충족도가 낮아짐
- 자폐성의 경우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설비한 비율이 90.3%로 다른 장애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표 4-2-3〉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편리함	24.7	24.8	20.0	21.6	25.0	35.0	28.5	36.1	23.4	29.0	35.5	25.0	37.9	21.7	18.9	17.9
약간편리함	56.6	56.1	56.0	60.3	56.6	53.6	55.5	57.5	56.0	57.3	51.8	59.9	47.6	57.5	67.1	61.9
약간불편함	16.2	16.9	19.3	16.5	16.3	9.1	12.7	6.0	18.1	12.3	9.3	11.7	12.1	20.1	12.4	14.1
매우불편함	2.4	2.2	4.7	1.6	2.2	2.4	3.3	0.5	2.6	1.4	3.5	3.4	2.4	0.8	1.5	6.1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53.

-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81.3%는 집구조가 생활에 편리(매우 편리함 24.7%, 약간 편리함 56.6%)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8.6%는 불편(약간불편함 16.2%, 매우불편함 2.4%)한 것으로 인식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집구조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낀 비율은 뇌전증장애가 24.0%로 가장 높았으며, 자폐성장애가 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은 심한장애가 19.3%로 심하지 않은 장애 18.3%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표 4-2-4〉 집구조의 생활 편리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4.3	83.6
매우편리함	24.7	25.5	23.7	39.7	27.8	24.3	23.5	24.2	25.0
약간편리함	56.6	57.5	55.4	53.3	59.8	56.1	56.5	56.5	56.7
약간불편함	16.2	14.6	18.4	6.2	10.5	17.0	17.5	16.1	16.3
매우불편함	2.4	2.4	2.5	0.8	1.9	2.6	2.6	3.2	2.0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727.

-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구조의 생활 편리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81.3%는 집구조가 생활에 편리(매우 편리함 24.7%, 약간 편리함 56.6%)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8.6%는 불편(약간불편함 16.2%, 매우불편함 2.4%)한 것으로 인식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집구조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낀 비율은 뇌전증장애가 24.0%로 가장 높았으며, 자폐성장애가 6.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집 구조가 생활에 불편하다는 비율은 심한장애가 19.3%로 심하지 않은 장애 18.3%에 비해 높게 나타남

(3)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표 4-2-5〉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 개조 의사	반드시 개조 원함	1.7	2.5	3.0	1.4	0.2	0.9	0.8	1.3	0.3	1.2	1.5	2.6	0.1	-	3.6
	가급적 개조 원함	9.9	9.8	18.4	9.8	7.8	7.0	8.0	3.8	9.3	6.8	6.1	8.5	2.9	7.8	10.7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5.0	44.8	41.0	46.6	47.0	51.2	45.6	45.5	45.2	40.7	40.5	41.7	44.1	50.9	46.6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8.2	37.3	31.0	37.1	40.5	32.8	41.6	40.8	40.4	48.8	47.3	41.0	49.1	40.6	37.5
	이미 개조하였음	5.2	5.7	6.5	5.0	4.5	8.0	4.1	8.7	4.8	2.6	4.6	6.1	3.8	0.7	4.8
희망 개조 장소 (1순위)	침실	5.8	5.8	4.6	2.5	8.7	8.7	1.9	19.0	14.6	4.4	0.0	18.9	10.3	17.1	12.0
	거실	8.1	6.6	6.5	9.5	8.0	7.9	21.5	9.9	10.5	10.3	0.0	6.0	6.8	0.0	4.9
	주방	17.4	20.7	7.2	28.5	14.5	13.1	15.9	7.3	16.6	9.8	10.9	6.3	38.4	0.0	20.8
	화장실	38.8	35.8	47.2	31.4	35.7	40.3	45.1	46.5	37.8	52.7	57.4	49.4	29.8	66.3	50.6
	현관 (출입구)	26.4	27.5	29.6	22.8	32.5	30.0	13.5	6.9	20.5	22.8	26.6	11.6	14.7	16.6	11.6
	기타	3.4	3.7	4.9	5.3	0.6	0.0	2.1	10.4	0.0	0.0	5.1	7.7	0.0	0.0	0.0

주: 1)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54.

- 주택 개조 의사를 살펴보면, 개조를 원치 않는 비율이 83.2%로 개조를 원한다고 답한 11.6%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장애유형별로 주택개조 의사(반드시 개조 원함 + 가급적 개조 원함)를 살펴보면, 뇌병변장애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전증장애 14.3%, 지체장애 12.3% 등의 순임
- 희망하는 개조 장소(1순위)는 화장실이 38.8%로 가장 많았고, 현관(출입구) 26.4%, 주방 17.4%, 거실 8.1%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 희망개조장소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화장실 개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적장애만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거실 개조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음



〈표 4-2-6〉 주택 개조 의사 및 희망 개조 장소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개조 의사	반드시 개조 원함	1.7	1.3	2.3	1.5	1.1	1.8	2.0	1.6
	가급적 개조 원함	9.9	8.0	12.4	5.3	6.5	9.2	11.5	9.0
	별로 개조 원치 않음	45.0	45.0	45.0	40.0	46.6	42.9	43.2	45.9
	전혀 개조 원치 않음	38.2	40.9	34.5	45.7	42.9	41.4	37.6	38.5
	이미 개조하였음	5.2	4.8	5.8	7.5	2.9	4.7	5.7	5.0
희망 개조장소 (1순위)	침실	5.8	6.2	5.4	12.3	4.8	6.3	5.4	6.0
	거실	8.1	9.8	6.6	25.5	12.0	9.3	6.5	7.8
	주방	17.4	11.3	22.7	10.5	9.3	17.0	13.2	20.3
	화장실	38.8	43.8	34.5	29.3	53.5	41.9	43.5	35.7
	현관 (출입구)	26.4	25.7	27.1	14.6	15.5	24.1	29.2	26.6
	기타	3.4	3.2	3.7	7.9	4.8	1.5	4.1	3.6

주: 1) 희망 개조 장소 문항은 주택개조 의사 문항에 대해 '반드시 개조 원함'과 '가급적 개조 원함'으로 응답한 이들에 한해 조사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727-728.

- 주택 개조 의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개조 의사가 14.7%로 남성 9.3%보다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주택개조 의사가 13.1%로 가장 높고, 17세 이하가 6.8%로 가장 낮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심한 장애의 개조 의사가 13.5%로 심하지 않은 장애 10.6%보다 2.9%p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개조 장소(1순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화장실이 각각 43.8%,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 장소로는 남성은 '현관'(25.7%), '주방'(11.3)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현관'(27.1%), '주방'(22.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주거복지사업

(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표 4-3-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 연도별

(단위: %)

구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공공 임대 주택	공공 분양 주택	민간 분양 특별 공급	임차 급여	수선 유지 급여	기타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주거 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2019	26.5	62.4	73.6	83.6	65.0	38.8	30.0	15.2	23.3	20.4
2020	25.3	64.1	75.3	81.5	62.4	36.8	29.5	15.9	17.6	17.1
2021	23.4	64.3	78.4	85.2	66.2	39.3	33.9	19.8	19.2	19.1
2022	23.9	65.9	77.6	82.4	66.7	39.1	31.3	17.8	16.6	18.7
2023	26.8	65.0	78.4	84.7	66.5	42.7	35.1	19.5	19.9	22.3

주: 1)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2)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8-246.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6-244.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8-246.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35-243.
 5)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4).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35-254.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이 84.7%로 가장 높고,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78.4%, 공공분양주택 66.5%,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 65.0% 순임. 반면 수선유지급여 19.5%, 기타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1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22.4%로 가장 높고, 월세 보조금 지원 18.2%,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17.8%,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17.7% 순임



3) 주거복지사업

(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표 4-3-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월세 보조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공급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공공분야주 택 공급	주거 상당과 정보제공 등	기타
2019	100.0	16.1	12.6	16.9	16.0	6.0	24.6	5.6	2.2	-
2020	100.0	18.0	15.5	19.0	14.7	5.4	18.8	4.5	4.1	-
2021	100.0	15.6	13.4	16.7	13.6	9.4	23.9	5.1	2.3	-
2022	100.0	15.7	16.6	14.2	17.9	5.7	24.1	4.3	1.4	0.1
2023	100.0	18.2	13.6	17.7	17.8	3.1	22.4	4.0	3.1	0.0

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 포함)이 있는 가구) 대상
 자료: 1)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0). 「2019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4.
 2)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1). 「2020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2.
 3)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2). 「2021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24.
 4)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3). 「2022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32.
 5)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2024). 「2023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p.232.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도부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이 84.7%로 가장 높고,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 78.4%, 공공분양주택 66.5%,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 65.0% 순임. 반면 수선유지급여 19.5%, 기타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1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임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22.4%로 가장 높고, 월세 보조금 지원 18.2%,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 17.8%,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17.7% 순임

(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표 4-3-3〉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적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가구)

구분	지원액			총 지원가구	세부지원				
	계	국비	지방비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도배	싱크대 설치	기타
2006	4,000	2,000	2,000	1,091	544	76	102	95	466
2007	3,800	1,900	1,900	1,037	477	72	80	77	425
2008	3,800	1,900	1,900	1,075	491	111	193	160	291
2009	3,800	1,900	1,900	1,093	544	94	143	111	432
2010	3,800	1,900	1,900	1,090	487	128	151	137	444
2011	3,800	1,900	1,900	1,115	449	114	61	128	513
2012	3,800	1,900	1,900	1,054	423	107	58	123	489
2013	3,800	1,900	1,900	1,048	408	128	50	132	443
2014	3,420	1,710	1,710	934	387	102	69	120	385
2015	3,028	1,514	1,514	806	384	109	76	108	312
2016	1,508	753	755	413	188	76	81	59	145
2017	2,788	1,394	1,394	754	345	106	182	105	277
2018	3,318	1,659	1,659	877	424	119	181	111	231
2019	3,272	1,636	1,636	907	418	144	167	124	440
2020	3,326	1,663	1,663	921	369	145	217	131	403
2021	3,680	1,676	2,004	951	298	167	188	152	359
2022	3,420	1,710	1,710	920	353	127	205	113	371
2023	5,700	2,850	2,850	1,563	595	291	295	227	856
2024	5,700	2,850	2,850	1,569	597	249	260	180	1,053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한 가구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음. 이에 세부지원 항목 총 지원가구의 합이 다름

3) '16)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함

('23) 지원대상이 기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됨. 사업명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변경됨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태를 살펴보면, 지원액과 총 지원가구는 각각 5,700백만원, 1,569가구로 전년도와 동일함
- 세부지원별로 살펴보면, 기타가 1,053가구로 가장 많고, 화장실 개조 597가구, 도배 260가구, 문턱 낮추기 249가구 등의 순임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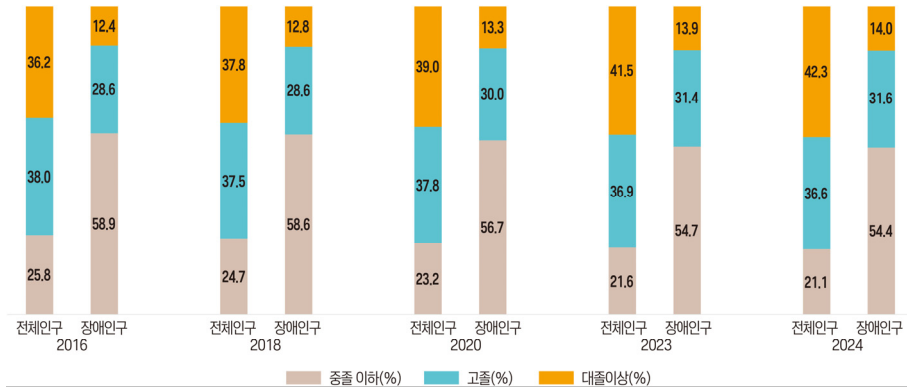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5.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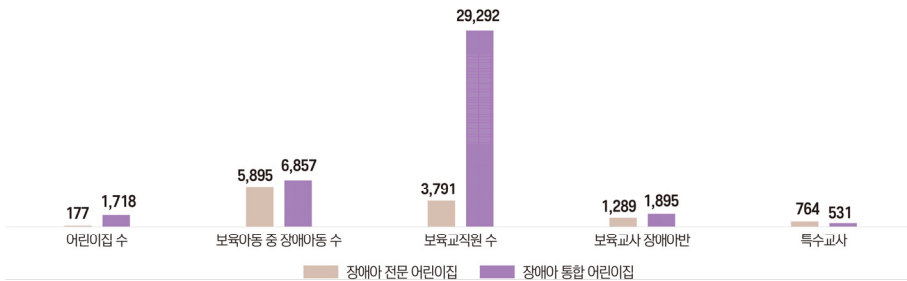
[그림 2-5-1]

장애인 교육수준 - 전체인구비교



[그림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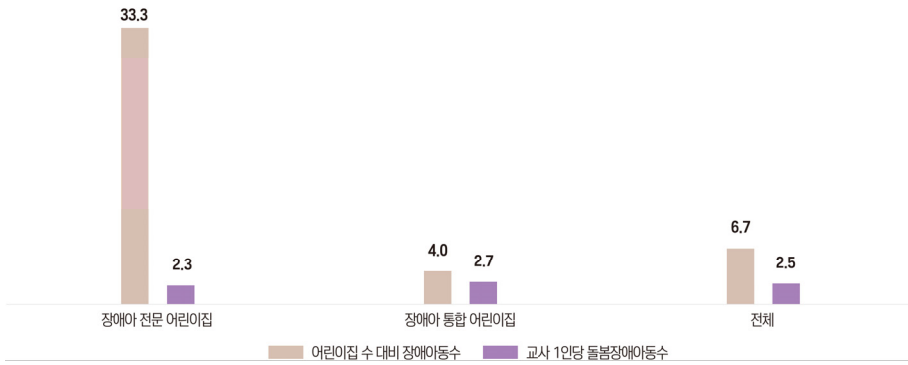
전문/통합 어린이집 수 및 장애아동, 교사 수(2023년)



- 전체인구와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임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24년 기준 중졸 이하가 54.4%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31.6%, 대졸 이상 14.0%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2.3%로 가장 높고, 고졸이 36.6%, 중졸 이하 21.1% 순으로,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2023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전체 172개소이며,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 수 5,779명, 보육교직원 수 3,766명, 장애아반에 배치된 보육교사 수 1,249명, 특수교사 수 827명임
- 2023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전체 1,464개소이며,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 수 6,678명, 보육교직원 수 24,941명, 장애아반에 배치된 보육교사 수 1,738명, 특수교사 수 551명임

[그림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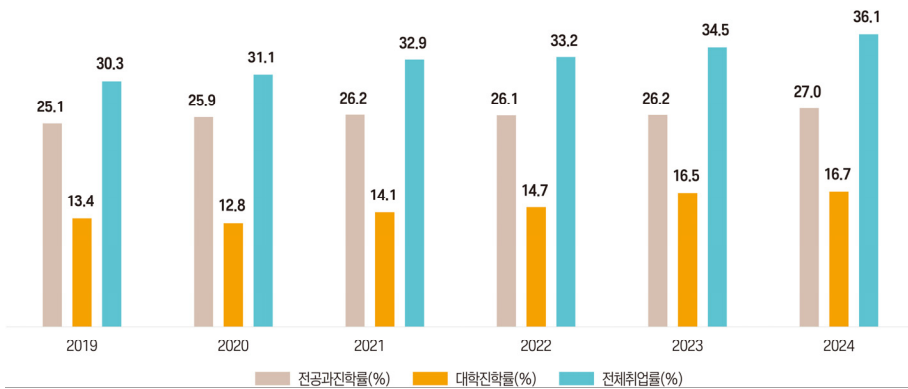
전문/통합 어린이집 및 교사 대비 장애아동 수(2023년)



주: 교사 수는 장애아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를 합한 수임

[그림 2-5-4]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률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1곳 당 약 33.3명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고, 장애 통합 어린이집은 1곳당 2.3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 1인당 돌봄 장애아동수는 전문 어린이집은 1명 당 2.3명, 통합 어린이집은 1명당 2.7명으로 나타남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특수교육기관 졸업생의 전공과진학률, 대학진학률, 전체취업률은 증가 추이를 보임



1) 교육수준

(1) 교육수준

〈표 5-1-1〉 장애인의 교육수준 -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 %p)

구 분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명	%	명	%	명	%
장애인 인구	2015년	2,444,194	1,470,735	60.2	672,425	27.5	301,032	12.3
	2016년	2,441,167	1,438,700	58.9	699,331	28.6	303,136	12.4
	2017년	2,460,079	1,439,784	58.5	712,167	28.9	308,128	12.5
	2018년	2,495,041	1,462,403	58.6	713,451	28.6	319,187	12.8
	2019년	2,526,200	1,437,603	56.9	745,769	29.5	342,828	13.6
	2020년	2,562,873	1,453,052	56.7	769,660	30.0	340,160	13.3
	2021년	2,574,907	1,453,046	56.4	753,280	29.3	368,581	14.3
	2022년	2,583,530	1,417,880	54.9	800,156	31.0	365,495	14.1
	2023년(A)	2,589,047	1,415,888	45.7	812,286	31.4	360,874	13.9
	2024년(B)	2,574,398	1,399,215	54.4	813,651	31.6	361,532	14.0
	증 감(B-A)	-14,649	-16,673	-0.3	1,365	0.2	658	0.1
전체 인구	2015년	42,975,000	11,422,000	26.6	16,330,000	38.0	15,223,000	35.4
	2016년	43,387,000	11,192,000	25.8	16,487,000	38.0	15,708,000	36.2
	2017년	43,735,000	11,095,000	25.4	16,435,000	37.6	16,205,000	37.1
	2018년	44,141,000	10,882,000	24.7	16,569,000	37.5	16,690,000	37.8
	2019년	44,460,000	10,605,000	23.9	16,682,000	37.5	17,173,000	38.6
	2020년	44,756,000	10,377,000	23.2	16,916,000	37.8	17,463,000	39.0
	2021년	45,049,000	10,264,000	22.8	16,908,000	37.5	17,877,000	39.7
	2022년	45,245,000	10,201,000	22.5	16,817,000	37.2	18,228,000	40.3
	2023년(A)	45,379,000	9,804,000	21.6	16,740,000	36.9	18,836,000	41.5
	2024년(B)	45,543,000	9,606,000	21.1	16,672,000	36.6	19,266,000	42.3
	증 감(B-A)	164,000	-198,000	-0.5	-68,000	-0.3	430,000	0.2

주: 1) '전체인구'는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이며, '장애인'은 각 년도 5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2) 대졸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3) 증감은 '23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5). '2015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5.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3.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7). '2017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3.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2018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1.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 '2019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18.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2020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19.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4.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 장애인 상반기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4.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 장애인 상반기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7.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 장애인 상반기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2.
11)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5월)'

- 2024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 42.3%는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 14.0%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음

- 전체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장애인구의 대졸 이상 비율은 2022년, 2023년 감소하다가 2024년 소폭 증가함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2024년 기준 중졸 이하가 54.4%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 31.6%, 대졸 이상 14.0% 순임
- 반면 전체인구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42.5%로 가장 높고, 고졸이 36.6%, 중졸 이하 21.1% 순으로, 전체인구의 교육수준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구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5-1-2〉 장애인의 교육수준(2023) - 지역별

(단위: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8.3	3.8	6.4	6.7	4.7	6.7	10.3	6.2	6.2	6.1	12.9	10.2	11.8	14.9	17.2	11.0	9.8	12.9
초등학교	27.1	22.9	29.2	26.7	26.7	26.3	27.0	27.1	24.1	21.9	28.6	32.8	33.0	27.4	40.9	35.0	25.1	28.6
중학교	16.1	17.6	18.6	17.6	17.8	16.0	15.7	16.7	5.0	17.8	13.0	14.2	15.2	16.1	12.4	12.8	14.7	10.4
고등학교	30.6	32.8	30.4	29.1	34.1	24.9	27.5	37.7	20.9	34.6	28.4	29.0	26.4	30.4	18.5	25.6	34.0	24.6
전공과	0.8	0.6	0.5	1.1	0.7	1.1	1.7	1.5	1.5	0.9	0.7	1.4	0.7	1.4	0.0	0.7	1.2	0.0
대학이상	17.0	22.3	14.9	18.8	16.1	25.0	17.8	10.8	42.4	18.7	16.3	12.4	13.0	9.7	11.0	14.9	15.3	23.6

주: 1) 만 6세 이상 기준

2) 교육수준은 '재학', '종퇴', '졸업', '휴학' 상태를 포함함

3)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 '대학(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을 포함

4) 내부 연구진이 장애인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재분석(다운로드: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025.2.5.).

- 장애인의 교육수준(최종학력)은 '고등학교'가 3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27.1%, '대학이상' 17.0%, '중학교' 16.1%, '무학' 8.3%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은 '대학 이상'이 42.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전남은 '초등학교'가 40.9%로 상대적으로 많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각각 37.6%, 41.9%로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3〉 장애인의 교육수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간질)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8.3	8.3	8.2	6.3	15.6	6.0	3.8	5.4	2.1	1.6	5.1	4.5	0.4	2.7	10.7	2.4
초등학교	27.1	27.0	26.0	25.1	37.9	34.8	22.7	32.8	9.2	18.4	17.1	27.4	8.4	23.5	31.3	20.1
중학교	16.1	16.9	15.7	16.0	17.8	13.1	12.7	12.8	12.5	14.6	12.5	19.2	14.4	9.5	17.4	14.6
고등학교	30.6	30.7	28.2	29.7	18.4	31.6	46.9	29.4	47.1	36.4	30.3	33.1	48.0	34.7	27.9	45.0
전공과	0.8	0.0	0.4	0.4	0.1	0.0	7.4	12.3	0.3	0.0	0.0	0.0	0.0	0.0	0.0	0.0
대학이상	17.0	17.2	21.5	22.4	10.3	14.4	6.6	7.2	28.8	29.0	34.9	15.8	28.9	29.4	12.7	17.9

주: 1) 만 6세 이상 기준

2)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 대학(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을 포함함

3)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18.

- 장애인의 교육수준(최종학력)은 '고등학교'가 3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27.1%, '중학교' 16.1%, '대학이상' 17.0%, '무학' 8.3%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세종은 '대학 이상'이 35.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전남은 '초등학교' 비율이 40.6%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각각 37.9%, 32.8%로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4〉 장애인의 교육수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무학	8.3	3.1	15.3	4.6	0.7	2.1	13.6	7.0	8.9
초등학교	27.1	20.4	36.3	56.5	1.4	11.9	39.7	22.6	29.5
중학교	16.1	17.7	13.9	21.2	5.2	14.0	19.3	15.0	16.7
고등학교	30.6	36.4	22.6	17.7	52.0	44.9	18.6	35.1	28.2
전공과	0.8	1.0	0.7	-	7.4	0.0	0.0	2.4	0.0
대학이상	17.0	21.3	11.2	-	33.3	27.1	8.8	18.0	16.6

주: 1)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 대학(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을 포함함

2) 무응답제외

3)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4)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32.

-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가 30.6%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7.1%, 대학이상 17.0%, 중학교 16.1%, 무학 8.3%, 전공과 0.8% 순임
- 성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고등학교, 전공과,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남성이 58.7%로 여성 34.5%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17세 이하를 제외하고 18~44세 이하가 92.7%로 가장 높고, 45~46세 이하 72.0%, 65세 이상 27.4%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 비율은 중증장애가 55.5%로 경증장애 44.8%보다 높게 나타남



2) 보육

(1) 보육시설 이용

〈표 5-2-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일반보육시설	4.2	-	10.4	-	9.4	2.9	3.1	1.3	-	-	-	-	-	-	-	41.7
장애아통합보육시설	2.4	-	-	-	-	0.7	2.1	5.3	-	-	-	-	-	-	-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3.0	-	1.8	-	-	1.6	2.0	6.5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다나지 않음	90.4	-	87.8	100.0	90.6	94.8	92.8	86.9	-	100.0	100.0	-	100.0	-	100.0	58.3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	100.0	-	100.0	100.0	100.0	-	-	-	-	-	-	-	100.0
1-5시간	32.2	-	14.5	-	-	30.1	57.1	29.6	-	-	-	-	-	-	-	-
6-10시간	67.8	-	85.5	-	100.0	69.9	42.9	70.4	-	-	-	-	-	-	-	100.0
평균이용시간	5.9	-	6.3	-	8.0	7.7	5.1	5.6	-	-	-	-	-	-	-	6.0
월 평균 비용	계	100.0	-	100.0	-	100.0	100.0	100.0	-	-	-	-	-	-	-	100.0
무료	44.1	-	46.3	-	-	69.9	28.1	55.6	-	-	-	-	-	-	-	100.0
1-5만원	19.1	-	14.4	-	-	30.1	29.0	15.9	-	-	-	-	-	-	-	-
6-10만원	29.8	-	39.2	-	100.0	-	42.9	10.2	-	-	-	-	-	-	-	-
11-15만원	-	-	-	-	-	-	-	-	-	-	-	-	-	-	-	-
16-20만원	7.1	-	-	-	-	-	-	18.3	-	-	-	-	-	-	-	-
평균비용	4.6	-	2.6	-	8.0	0.3	5.5	5.2	-	-	-	-	-	-	-	0.0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24-325.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나지 않음이 9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나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는 일반보육시설 4.2%, 장애아통합보육시설과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각각 2.4%, 3.0%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시설에는 뇌병변 장애와 청각장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는 뇌병변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청각장애 8시간, 언어장애가 7.7시간 등의 순임
-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56.0%로 가장 많았고 6-10만원 29.8%, 1-5만원 19.1%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월 평균 비용은 청각장애가 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가 5.5만원 순임

〈표 5-2-2〉 보육시설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보육시설 형태	일반보육시설	4.2	6.2	0.0	4.2	-	-	3.6	8.2
	장애아통합보육시설	2.4	2.9	1.2	2.4	-	-	2.6	0.6
	장애아전담보육시설	3.0	1.8	5.5	3.0	-	-	3.5	0.0
	기타	0.0	0.0	0.0	0.0	-	-	0.0	0.0
	다나지 않음	90.4	89.0	93.2	90.4	-	-	90.3	91.2
1일 평균 이용시간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5시간	32.2	22.2	66.0	32.2	-	-	36.8	0.0
	6~10시간	67.8	77.8	34.0	67.8	-	-	63.2	100.0
	평균이용시간	5.9	6.1	5.2	5.9	-	-	5.7	6.9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무료	44.1	43.0	47.7	44.1	-	-	45.8	32.0
	1~5만원	19.1	14.5	34.2	19.1	-	-	21.7	0.0
	6~10만원	29.8	38.6	0.0	29.8	-	-	24.4	68.0
	11~15만원	0.0	0.0	0.0	0.0	-	-	0.0	0.0
	16~20만원	7.1	3.8	18.1	7.1	-	-	8.1	0.0
	평균비용	4.6	4.5	4.7	4.6	-	-	4.6	4.1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보육시설형태' 문항 중 일반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35~636.

- 보육시설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일반보육시설에 다니는 여성의 비율은 6.8%로 남성 11.0%보다 4.2%p 낮게 나타남
 - 남성의 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6.1시간으로 여성 5.2시간보다 길었으며, 월 평균 비용은 여성은 4.7만원, 남성은 4.5만원으로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더 많았음
 - 장애정도별로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비율을 살펴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 91.2%, 심한장애 90.3%로 심하지 않은 장애가 보육시설을 더 많이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표 5-2-3〉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육 아동				보육 교직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아동	비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2014년	171	8,271	6,699	5,812	887	3,273	171	876	233	1,140	483	178	204
2015년	173	8,348	6,781	5,856	925	3,278	172	817	225	1,180	486	183	215
2016년	174	8,387	7,045	6,106	939	3,449	174	802	271	1,268	498	184	252
2017년	176	8,468	7,023	6,105	918	3,529	176	829	291	1,258	524	187	264
2018년	176	8,397	7,065	6,211	854	3,596	176	909	318	1,202	549	187	255
2019년	176	8,444	7,095	6,301	794	3,730	176	948	400	1,185	567	189	265
2020년	176	8,447	6,923	6,205	718	3,737	176	1,028	414	1,099	562	190	268
2021년	177	8,427	6,912	6,261	651	3,794	177	1,138	465	977	567	192	278
2022년	176	8,365	6,695	6,169	526	3,807	176	1,211	469	906	553	192	300
2023년	172	8,189	6,461	5,997	464	3,766	171	1,249	483	827	537	188	311
2024년	177	8,302	6,321	5,895	426	3,791	176	1,289	503	764	552	195	312
서울	8	281	184	164	20	127	8	32	13	33	11	8	22
부산	15	566	447	444	3	274	15	80	26	72	45	15	21
대구	17	1,013	783	763	20	447	17	161	46	105	74	19	25
인천	7	146	138	137	1	119	7	37	33	9	15	7	11
광주	11	588	536	477	59	293	11	90	28	77	50	15	22
대전	5	122	91	90	1	66	5	19	10	11	9	6	6
울산	10	480	375	355	20	225	9	93	34	30	35	12	12
세종	1	39	14	14	0	12	1	5	2	0	1	1	2
경기	22	905	724	674	50	482	22	143	93	94	62	27	41
강원	4	199	120	117	3	69	4	29	8	10	8	4	6
충북	7	323	223	182	41	118	7	44	19	18	11	7	12
충남	10	441	362	308	54	211	10	74	33	27	27	10	30
전북	10	468	288	277	11	167	10	61	10	39	23	10	14
전남	13	799	574	522	52	321	13	115	42	60	55	16	20
경북	14	940	750	695	55	440	14	138	61	101	71	14	41
경남	19	791	546	544	2	331	19	128	38	60	45	19	22
제주	4	201	166	132	34	89	4	40	7	18	10	5	5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임

3)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4)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5) 장애아동: 아동자격을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1) 보건복지부(2015), 「2014 보육통계」, p.130-132. 2)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통계」, p.131-133.
 3) 보건복지부(2017), 「2016 보육통계」, p.138-140. 4) 보건복지부(2018), 「2017 보육통계」, p.139-141.
 5) 보건복지부(2019), 「2018 보육통계」, p.140-142. 6) 보건복지부(2020), 「2019 보육통계」, p.146-148.
 7) 보건복지부(2021), 「2020 보육통계」, p.144-146. 8) 보건복지부(2022), 「2021 보육통계」, p.144-146.
 9) 보건복지부(2023), 「2022 보육통계」, p.145-147. 10) 보건복지부(2024), 「2023 보육통계」, p.147-149.
 11) 보건복지부(2025), 「2024 보육통계」, p.147-149.

- 2024년 기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전체 177개소이며, 경기도 22개소로 가장 많으며, 경남 19개소, 대구 17개소 순으로 나타남
-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는 대구가 76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695명, 경기도 674명 순임
-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가 1,289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현황을 보였으며, 지역별 전체 보육 교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8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447명, 경북 440명 순임

(3)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표 5-2-4〉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 - 지역별

(단위: 개소, 명)

구분	어린이집 수	보 육 아 동				보 육 교 직 원							
		정원	현원			전체	원장	보육교사		특수 교사	치료사	조리원	기타
			전체	장애 아동	비 장애아			장애아반	그 외				
2014년	872	80,573	72,007	3,835	68,172	12,944	868	616	8,399	698	56	1,296	1,011
2015년	899	82,991	73,212	3,929	69,283	13,466	894	552	8,794	785	55	1,344	1,042
2016년	911	84,019	75,122	4,079	71,043	13,796	905	544	9,011	827	58	1,398	1,053
2017년	946	86,673	77,339	4,066	73,273	14,446	940	558	9,535	833	64	1,435	1,081
2018년	1,000	90,431	79,250	4,189	75,061	15,355	984	610	10,266	809	72	1,515	1,099
2019년	1,100	97,770	85,163	4,568	80,595	17,303	1,096	720	11,772	821	87	1,668	1,139
2020년	1,211	105,805	89,691	4,959	84,732	19,639	1,201	919	13,630	802	83	1,787	1,217
2021년	1,317	113,084	93,828	5,578	88,250	21,645	1,308	1,202	15,051	701	85	1,940	1,358
2022년	1,393	118,083	94,796	6,143	88,653	23,311	1,389	1,490	16,288	599	101	2,033	1,411
2023년	1,464	122,252	95,273	6,678	88,595	24,941	1,457	1,738	17,500	551	114	2,097	1,484
2024년	1,718	139,362	106,314	6,857	99,457	29,292	1,705	1,895	20,931	531	131	2,405	1,694
서울	434	36,680	26,744	1,856	24,888	7,704	426	453	5,295	243	69	565	653
부산	79	5,144	3,753	281	3,472	1,073	78	81	762	22	0	83	47
대구	11	888	617	106	511	186	11	29	114	7	0	13	12
인천	129	10,279	8,205	645	7,560	2,346	129	205	1,711	14	21	197	69
광주	12	679	591	25	566	182	12	7	141	3	0	13	6
대전	56	3,414	2,543	110	2,433	891	56	33	688	6	0	87	21
울산	19	1,543	1,190	86	1,104	328	19	24	238	7	0	28	12
세종	8	1,601	1,140	42	1,098	306	8	7	226	7	0	21	37
경기	664	55,147	44,671	2,623	42,048	11,459	660	756	8,403	179	32	1,010	419
강원	25	2,061	1,482	124	1,358	442	25	38	294	3	0	35	47
충북	11	918	478	49	429	139	11	9	92	5	0	12	10
충남	51	3,259	2,173	145	2,028	660	51	38	439	1	4	47	80
전북	13	1,166	579	42	537	175	13	15	115	1	0	15	16
전남	26	2,481	1,553	92	1,461	395	26	33	270	1	0	32	33
경북	21	1,866	1,163	130	1,033	357	21	40	230	3	1	21	41
경남	51	3,916	2,638	248	2,390	797	51	59	558	20	4	62	43
제주	108	8,320	6,794	253	6,541	1,852	108	68	1,355	9	0	164	148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보육교사: 장애아반 보육교사 / 그 외: 장애아반을 제외한 보육교사

3) 기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수

4) 장애아동: 아동자격을 (영유아, 누리, 방과 후) 장애아인 아동

자료: 1) 보건복지부(2015), 「2014 보육통계」 p.139-141.

3) 보건복지부(2017), 「2016 보육통계」 p.147-149.

5) 보건복지부(2019), 「2018 보육통계」 p.149-151.

7) 보건복지부(2021), 「2020 보육통계」 p.153-155.

9) 보건복지부(2023), 「2022 보육통계」 p.154-156.

11) 보건복지부(2025), 「2024 보육통계」 p.156-158.

2) 보건복지부(2016), 「2015 보육통계」 p.140-142.

4) 보건복지부(2018), 「2017 보육통계」 p.148-150.

6) 보건복지부(2020), 「2019 보육통계」 p.155-157.

8) 보건복지부(2022), 「2021 보육통계」 p.153-155.

10) 보건복지부(2024), 「2023 보육통계」 p.156-158.

- 2024년 기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전체 1,718개소이며, 경기도가 664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434개소, 인천 129개소 순임

• 보육아동 중 장애아동수는 경기도가 2,62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56명, 인천 645명 순임

• 보육교직원 중 장애아반 보육교사는 1,895명, 특수교사는 531명임



3) 유치원

(1) 유치원 이용

〈표 5-3-1〉 유치원 이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유치원 형태	일반유치원	1.6	-	0.0	0.0	12.8	6.0	0.0	0.4	-	0.0	0.0	-	0.0	-	0.0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5.1	-	5.4	0.0	0.0	18.0	0.0	8.1	-	0.0	0.0	-	0.0	-	0.0
	특수학교 유치원(부)	1.4	-	3.2	100.0	0.0	2.5	0.0	0.4	-	0.0	0.0	-	0.0	-	0.0
	기타	-	-	-	-	-	-	-	-	-	-	-	-	-	-	-
	다나지 않음	91.9	-	91.3	0.0	87.2	73.5	100.0	91.1	-	100.0	100.0	-	0.0	-	100.0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	100.0	100.0	100.0	-	100.0	-	-	-	-	100.0	-	-	-
	1~5시간	37.1	-	-	100.0	-	47.3	-	46.4	-	-	-	-	-	-	-
	6~10시간	62.9	-	100.0	-	100.0	52.7	-	53.6	-	-	-	100.0	-	-	-
	평균이용시간	5.8	-	6.6	4.0	7.0	5.6	-	5.7	-	-	-	7.0	-	-	-
월 평균 비용	계	100.0	-	100.0	100.0	100.0	-	100.0	-	-	-	-	100.0	-	-	-
	무료	61.6	-	37.1	100.0	-	79.2	-	68.8	-	-	-	-	-	-	-
	1~5만원	-	-	-	-	-	-	-	-	-	-	-	-	-	-	-
	6~10만원	11.4	-	-	-	-	14.6	-	16.0	-	-	-	100.0	-	-	-
	11~15만원	17.1	-	62.9	-	-	2.8	-	15.2	-	-	-	-	-	-	-
	16~20만원	9.9	-	-	-	100.0	3.4	-	-	-	-	-	-	-	-	-
	평균비용	5.0	-	7.6	-	20.0	2.1	-	3.4	-	-	-	8.0	-	-	-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26-327.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나지 않음이 9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니고 있는 유치원 중에서는 일반유치원 1.6%,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 5.1%, 특수학교 유치원(부) 1.4%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유치원에는 청각장애, 일반유치원 내 특수학급에는 뇌병변장애, 언어장애와 자폐성장애, 특수학교 유치원(부)에는 시각장애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6~10시간이 6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와 간장애가 7.0시간, 뇌병변장애 6.6시간 순임
-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무료가 61.6%로 가장 많았고, 6~10만원 11.4%, 11~15만원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월 평균 비용은 청각장애가 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언어장애가 2.1만원으로 가장 낮음

〈표 5-3-2〉 유치원 이용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시간, 만원)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유치원 형태	일반유치원	1.6	2.1	0.4	1.6	-	-	1.1	4.8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5.1	4.5	6.2	5.1	-	-	4.1	11.0
	특수학교 유치원(부)	1.4	1.3	1.7	1.4	-	-	1.4	1.9
	기타	-	-	-	-	-	-	-	-
	다나지 않음	91.9	92.0	91.8	91.9	-	-	93.4	82.3
1일 평균 이용 시간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5시간	37.1	44.6	22.0	37.1	-	-	34.0	44.3
	6~10시간	62.9	55.4	78.0	62.9	-	-	66.0	55.7
	평균이용시간	5.8	5.7	6.1	5.8	-	-	6.0	5.6
월 평균 비용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무료	61.6	61.9	61.2	61.6	-	-	56.0	75.1
	1~5만원	0.0	0.0	0.0	0.0	-	-	0.0	0.0
	6~10만원	11.4	14.9	4.4	11.4	-	-	7.1	21.7
	11~15만원	17.1	8.5	34.4	17.1	-	-	22.9	3.2
	16~20만원	9.9	14.8	0.0	9.9	-	-	14.1	0.0
	평균비용	5.0	5.3	4.5	5.0	-	-	6.2	2.1

주: 1) 1일 평균 이용시간과 월 평균 비용 문항은 유치원형태 문항 중 일반유치원, 일반유치원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부)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진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을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장애정도별은 2017년 이전에는 중증(1~3급), 경중(4~6급)으로, 2020년부터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37.

- 유치원 이용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여성 91.8%, 남성 92.0%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낮음
 -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은 여성 6.1시간, 남성 5.7시간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시간이 길었으며, 월 평균 비용은 여성 4.5만원, 남성 5.3만원으로 남성의 유치원 이용비용이 더 많았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은 심한 장애 93.4%, 심하지 않은 장애 82.3%로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심한 장애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음



4) 특수교육

(1) 특수학교 수

〈표 5-4-1〉 특수학교 수 -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교)

구분	계	설립별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장애	영아 학급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공과
2010	150	5	55	90	12	18	95	18	7	18	118	140	139	136	83
2011	155	5	59	91	12	18	100	18	7	23	118	145	145	141	100
2012	156	5	60	91	12	16	102	19	7	23	116	145	146	143	108
2013	162	5	66	91	12	16	107	20	7	25	119	150	152	149	115
2014	166	5	69	92	12	15	112	20	7	22	120	154	157	155	121
2015	167	5	70	92	12	15	113	20	7	23	118	155	158	155	127
2016	170	5	74	91	12	14	119	18	7	24	124	158	161	160	133
2017	173	5	76	92	12	14	121	19	7	21	122	159	162	162	137
2018	175	5	78	92	13	14	121	20	7	26	125	161	164	163	143
2019	177	5	81	91	13	14	122	21	7	28	127	163	166	164	147
2020	182	5	87	90	13	14	126	22	7	28	133	167	170	169	154
2021	187	5	92	90	13	14	132	21	7	29	135	172	176	174	158
2022	192	5	97	90	13	14	137	21	7	31	138	176	180	179	163
2023	194	5	99	90	13	13	140	21	7	31	136	177	181	179	164
2024	195	5	100	90	13	13	141	21	7	26	133	178	182	180	166
서울	32	3	11	18	3	4	16	6	3	6	24	28	28	27	26
부산	15	-	8	7	1	1	12	1	-	5	9	12	13	11	9
대구	11	-	5	6	1	1	6	2	1	-	4	10	10	11	11
인천	10	-	6	4	1	1	7	1	-	1	7	9	10	9	8
광주	6	-	4	2	1	-	4	1	-	4	6	6	6	6	5
대전	6	-	4	2	1	-	4	1	-	3	4	6	6	6	6
울산	4	-	2	2	-	1	3	-	-	-	3	4	4	4	4
세종	2	-	2	-	-	-	2	-	-	2	2	2	2	2	2
경기	38	2	14	22	-	2	32	3	1	2	31	33	35	35	28
강원	9	-	8	1	1	1	7	-	-	-	5	9	9	9	8
충북	11	-	4	7	2	1	5	2	1	1	9	10	10	10	10
충남	10	-	8	2	-	-	9	1	-	1	4	9	9	10	9
전북	10	-	6	4	1	1	6	2	-	1	4	9	9	9	9
전남	9	-	4	5	1	-	8	-	-	-	6	9	9	9	9
경북	8	-	3	5	-	-	7	-	1	-	5	8	8	8	8
경남	11	-	9	2	-	-	11	-	-	-	7	11	11	11	11
제주	3	-	2	1	-	-	2	1	-	-	3	3	3	3	3

주: 2024년 4월 1일 기준임

- 자료: 1) 교육부(2010).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8-19.
 2)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8-19.
 3)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8-19.
 4)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7-18.
 5)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1-12.
 6)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0-11.
 7)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8)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9)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0)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1)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2)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3)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4)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26.
 15)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4-26.

- 2024년 기준 특수학교의 수는 195개교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수학교의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8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개교, 부산 15개교 등의 순임
- 설립별로 살펴보면, 공립이 100개교로 가장 많으며, 사립 90개교, 국립 5개교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지적장애가 141개교로 가장 많았고, 자폐장애 21개교, 시각장애, 청각장애 13개교 등의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중학교가 182개교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180개교, 초등학교 178개교 등의 순임

※※ 특수교육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2) 특수학급 수

〈표 5-4-2〉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및 특수학급 수 - 설립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교, 개)

구분	학교수	특수학급 수							
		학급수 (개)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6,245	8,415	41	8,236	138	287	4,897	1,971	1,260
2012	6,598	8,927	45	8,726	156	344	4,999	2,144	1,440
2013	6,919	9,343	46	9,102	195	380	5,085	2,268	1,610
2014	7,148	9,617	48	9,363	206	464	5,073	2,353	1,727
2015	7,397	9,868	46	9,590	232	551	5,121	2,378	1,818
2016	7,543	10,065	46	9,781	238	640	5,155	2,353	1,917
2017	7,799	10,325	46	10,036	243	731	5,281	2,364	1,916
2018	7,954	10,676	46	10,377	253	853	5,480	2,372	1,971
2019	8,200	11,105	46	10,807	252	949	5,807	2,384	1,965
2020	8,523	11,661	46	11,351	264	1,086	6,132	2,468	1,975
2021	8,729	12,042	46	11,725	271	1,228	6,330	2,518	1,966
2022	9,056	12,712	46	12,391	275	1,437	6,701	2,614	1,960
2023	9,288	13,287	44	12,958	285	1,539	7,038	2,721	1,989
2024	9,512	13,931	46	13,583	302	1,623	7,360	2,899	2,049
서울	951	1,630	7	1,575	48	151	854	333	292
부산	535	673	2	657	14	62	376	140	95
대구	347	490	4	484	2	55	271	97	67
인천	517	833	1	824	8	114	451	150	118
광주	245	328	5	313	10	29	180	74	45
대전	283	405	-	395	10	62	200	83	60
울산	227	351	-	351	-	42	177	72	60
세종	131	160	-	160	-	46	75	25	14
경기	2,413	3,833	-	3,776	57	507	1,945	816	565
강원	378	419	3	416	-	39	230	91	59
충북	443	619	8	606	5	91	320	127	81
충남	565	860	4	844	12	113	452	173	122
전북	454	558	3	545	10	73	303	110	72
전남	573	757	1	747	9	72	412	175	98
경북	587	763	-	706	57	51	429	167	116
경남	742	1,074	3	1,014	57	99	589	227	159
제주	121	178	5	170	3	17	96	39	26

주: 1) 학교 수 :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수

2) 각 년도별로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를 포함함

- (2011년) 2학급(인천 1, 경기 1), (2012년) 5학급(인천 공립 2, 경기 공립 3), (2013년) 7학급(인천 공립 2, 경기 공립4, 충북 1), (2014년) 8학급(대구 1, 인천 2, 경기 12, 충북 3), (2015년) 29학급(대구 1, 인천 3, 경기 22, 충북 3), (2016년) 32학급(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3), (2017~2019년) 33학급(대구 1, 인천 3, 경기 25, 충북 4), (2020년) 34학급 (대구 1, 인천 3, 경기 26, 충북 4), (2021년~2022년) 34학급(대구 2, 인천 2, 경기 26, 충북 4), (2023년) 34학급(대구 2, 인천 3, 경기 26, 충북 3) (2024년) 29학급 (대구 2, 인천 3, 경기 24)

- 자료: 1)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0, 31. 2)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0, 31.
 3)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9, 28. 4)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3, 22.
 5)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2, 21. 6)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37.
 7)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37. 8)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37.
 9)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0)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1)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2)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3)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14)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7, 43.

- 2024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의 수는 9,512개교, 특수학급 수는 13,931개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수학급 수를 설립별로 보면 공립이 13,583개로 가장 많았고 사립 302개, 국립 46개 순임
- 학교과정별로는 선풍면 초등학교가 7,360개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899개, 고등학교 2,049개, 유치원 1,623개 순임

※※ 특수학급이란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

〈표 5-4-3〉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장애영역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2010	23,776	1,563	1,150	15,316	3,238	895	1,267	79	15	24	229
2011	24,580	1,495	1,153	15,819	3,371	429	1,917	86	20	35	255
2012	24,720	1,479	1,060	15,513	3,548	340	2,459	79	12	19	211
2013	25,138	1,468	1,053	15,172	3,584	279	3,191	113	38	33	207
2014	25,288	1,380	976	15,235	3,615	217	3,531	76	23	29	206
2015	25,531	1,353	952	14,891	3,707	199	4,000	85	13	48	283
2016	25,467	1,313	863	14,285	3,889	97	4,639	97	18	12	254
2017	25,798	1,307	819	14,379	3,858	229	4,747	88	15	33	323
2018	25,919	1,260	762	14,390	3,680	214	6,065	124	20	30	374
2019	26,084	1,221	709	14,205	3,730	210	5,424	134	17	16	418
2020	26,299	1,188	647	14,230	3,751	69	5,727	148	12	13	514
2021	27,027	1,130	605	14,356	3,826	79	6,247	159	19	7	599
2022	27,979	1,077	589	14,420	3,913	87	6,995	208	10	9	671
2023	28,942	1,079	560	14,540	3,905	68	7,781	206	10	13	780
2024	30,027	1,025	535	14,777	3,784	73	8,742	201	6	12	872
서울	4,531	311	238	1,448	913	4	1,426	7	-	1	183
부산	2,064	73	25	874	313	11	662	13	2	-	91
대구	2,027	53	43	1,115	257	10	347	37	1	-	164
인천	1,988	86	38	1,014	204	5	591	26	-	1	23
광주	1,307	87	19	653	162	3	327	3	1	-	52
대전	1,115	106	9	529	121	1	335	1	-	-	13
울산	795	12	17	474	58	6	212	-	-	-	16
세종	279	2	2	101	35	2	119	2	-	1	15
경기	5,489	33	27	2,803	563	6	1,940	49	-	1	67
강원	919	45	5	505	72	2	253	3	-	2	32
충북	1,462	116	68	754	156	6	304	7	-	1	50
충남	1,441	2	5	790	199	-	411	2	-	1	31
전북	1,190	43	7	674	141	-	251	12	-	-	62
전남	1,240	43	13	770	106	6	275	10	-	1	16
경북	1,536	-	4	1007	98	4	394	17	-	3	9
경남	2,049	11	12	991	319	7	660	3	2	-	44
제주	595	2	3	275	67	-	235	9	-	-	4

주: 1) 정신지체는 2016.2.3.부터 지적장애로 개정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장애구분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장애 구분과 다음
 자료: 1) 교육부(2010).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2)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3)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4)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0.
 5)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4. 6)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3.
 7)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9. 8)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9.
 9)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9. 10)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1)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2)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3)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4)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15)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 2024년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30,02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85명 증가함

-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4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531명, 부산 2,064명 등의 순임
- 장애영역별로는 지적장애가 14,77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과반이 넘어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8,742명, 지체장애 3,784명 등의 순임

〈표 5-4-4〉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설립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10	23,776	948	10,842	11,986
2011	24,580	946	11,313	12,321
2012	24,720	904	11,536	12,280
2013	25,138	892	12,232	12,014
2014	25,288	858	12,706	11,724
2015	25,531	856	13,087	11,588
2016	25,467	855	13,416	11,196
2017	25,798	853	13,874	11,071
2018	25,919	857	14,091	10,971
2019	26,084	877	14,455	10,752
2020	26,299	862	14,940	10,497
2021	27,027	838	15,740	10,449
2022	27,979	848	16,673	10,458
2023	28,942	837	17,575	10,530
2024	30,027	851	18,506	10,670
서울	4,531	481	1,851	2,199
부산	2,064	-	1,487	577
대구	2,027	-	1,225	802
인천	1,988	-	1,594	394
광주	1,307	-	1,048	259
대전	1,115	-	863	252
울산	795	-	532	263
세종	279	-	279	-
경기	5,489	370	2,862	2,257
강원	919	-	854	65
충북	1,462	-	682	780
충남	1,441	-	1,228	213
전북	1,190	-	693	497
전남	1,240	-	662	578
경북	1,536	-	468	1,068
경남	2,049	-	1,779	270
제주	595	-	399	196

자료: 1) 교육부(2010).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2)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3)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4. 4)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1.
5)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 6)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4.
7)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0. 8)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0.
9)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0. 10)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1)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2)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3)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4)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15)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 2024 기준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전체 30,027명 중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대상자 수는 총 19,357명으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대상자 수 10,670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충북, 경북의 경우 사립학교 대상자 수가 국·공립학교 대상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립학교 대상자의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4) 특수학급 학생수

〈표 5-4-5〉 특수학급 학생 수 - 설립별, 학교과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계	설립별			학교과정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43,183	266	42,112	805	924	22,414	10,951	8,894
2012	44,433	261	43,248	924	1,138	21,695	11,659	9,941
2013	45,181	262	43,762	1,157	1,394	21,087	12,023	10,677
2014	45,803	267	44,349	1,187	1,675	20,586	11,973	11,569
2015	46,351	254	44,808	1,293	2,039	20,991	11,312	12,009
2016	46,645	233	45,123	1,289	2,504	21,192	10,602	12,347
2017	47,564	250	46,012	1,302	2,763	22,400	10,256	12,145
2018	48,848	256	47,295	1,298	3,058	24,169	9,990	11,631
2019	50,812	265	49,323	1,224	3,422	26,282	9,907	11,201
2020	52,744	253	51,204	1,287	3,866	27,713	10,327	10,838
2021	54,266	258	52,723	1,285	4,444	28,484	10,755	10,583
2022	57,948	245	56,359	1,344	5,291	30,964	11,317	10,376
2023	61,993	241	60,339	1,413	5,676	33,121	12,425	10,771
2024	65,966	239	64,223	1,504	5,803	35,042	13,778	11,343
서울	7,646	40	7,388	218	585	3,969	1,685	1,407
부산	3,465	13	3,367	85	231	1,922	709	603
대구	2,343	17	2,321	5	207	1,276	489	371
인천	4,464	6	4,404	54	434	2,441	866	723
광주	1,604	30	1,514	60	116	835	362	291
대전	1,977	-	1,925	52	208	1,028	375	366
울산	1,769	-	1,769	-	160	923	360	326
세종	726	-	726	-	163	386	106	71
경기	18,767	-	18,448	319	1,701	9,801	3,973	3,292
강원	1,836	18	1,818	-	158	1,020	381	277
충북	2,730	34	2,677	19	357	1,378	565	430
충남	3,920	18	3,843	59	412	2,059	805	644
전북	2,421	19	2,358	44	238	1,312	476	395
전남	2,957	2	2,914	41	223	1,583	652	499
경북	3,404	-	3,132	272	173	1,873	731	627
경남	4,860	13	4,595	252	359	2,633	1,028	840
제주	1,077	29	1,024	24	78	603	215	181

주: 각 연도별로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을 고등학교에 포함함

· (2012년) 30명(인천 10명, 경기 20명), (2013년) 46명(인천 13명, 경기 27명, 충북 6명), (2014년) 115명(인천 22명, 대구 11명, 경기 65명, 충북 17명), (2015년) 186명(대구 11명, 인천 33명, 경기 123명, 충북 19명), (2016년) 215명(대구 11명, 인천 27명, 경기 155명, 충북 22명), (2017년) 217명(대구 11명, 인천 22명, 경기 153명, 충북 31명), (2018년) 217명(대구 11명, 인천 22명, 경기 153명, 충북 31명), (2019년) 223명(대구 11명, 인천 25명, 경기 151명, 충북 36명), (2020년) 213명(대구 11명, 인천 19명, 경기 147명, 충북 36명), (2021년) 202명(대구 22명, 인천 15명, 경기 149명, 충북 34명), (2022년) 204명(대구 20명, 인천 14명, 경기 137명, 충북 33명), (2023년) 186명(대구 19명, 인천 15명, 경기 128명, 충북 24명), (2024년) 158명(대구 20명, 인천 12명, 경기 126명)

자료: 1)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2)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5.
3) 교육부(2013).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2. 4)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6.
5)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5. 6)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1.
7)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1. 8)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41.
9)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0)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1)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2)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3)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14)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6.

- 특수학급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은 2016년 이후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교과과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의 학생이 18,767명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 수보다 많았으며, 그 중 공립학교 학생 수가 18,44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공립학교의 학생 수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학교과정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5) 졸업생 진로

〈표 5-4-6〉 졸업생 진학현황 -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체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2015	8,979	3,358	2,212	538	608	37.4
	2016	9,482	3,471	2,246	560	665	36.6
	2017	9,786	3,595	2,391	552	652	36.7
	2018	10,063	3,688	2,367	579	742	36.6
	2019	9,961	3,835	2,503	550	782	38.5
	2020	9,699	3,755	2,513	530	712	38.7
	2021	9,308	3,751	2437	495	819	40.7
	2022	9,378	3,831	2,450	539	842	40.9
	2023	8,899	3,799	2,328	581	890	42.7
	2024	8,613	3,764	2,325	566	873	43.7
고등학교	계	6,247	3,719	2,325	543	851	59.5
	특수학교	2,032	1,218	1,144	12	62	59.9
	특수학급	3,263	1,876	1,156	366	354	57.5
	일반학급	952	625	25	165	435	65.7
전공과	계	2,366	45	-	23	22	1.9
	특수학교	2,259	41	-	22	19	1.8
	특수학급	107	4	-	1	3	3.7

주: 1) 각 년도 4월 1일 기준

2) 진학률 = (진학자수/당해년도 졸업자수) * 100

3)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자료: 교육부(각 년도) 「특수교육통계」 p.8.

- 2024년 고등학교 및 전공과 전체 졸업생 8,613명 중 진학한 학생 수는 3,719명으로 43.7%의 진학률을 보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진학자수와 진학률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며 2023년 소폭 하락했다 다시 증가함
- 졸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률은 59.5%이고, 전공과 졸업자의 진학률은 1.0%임. 특히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의 진학률은 65.7%로 높게 나타남



〈표 5-4-7〉 졸업생 취업현황 - 취업분야별, 연도별, 졸업유형별

(단위: 명, %)

구분		졸업생 수	취업분야															취업률
			전체	보건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 ·제과 제빵	이료	영업 ·판매	청소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2015		8,979	1,710	43	522	21	15	119	64	17	150	211	12	125	68	343	30.4	
2016		9,482	1,694	45	636	22	14	131	63	34	124	170	10	125	51	269	28.2	
2017		9,786	1,847	73	633	14	10	109	80	59	153	262	10	140	29	275	29.8	
2018		10,063	1,976	51	667	9	14	151	93	57	209	293	16	143	32	241	31.0	
2019		9,961	1,855	81	498	5	8	81	71	37	253	333	21	174	35	258	30.3	
2020		9,699	1,849	102	498	10	7	103	62	27	232	268	30	245	40	225	31.1	
2021		9,308	1,826	102	477	9	16	117	38	24	245	244	23	232	49	250	32.9	
2022		9,378	1,843	99	471	8	13	95	65	24	301	263	40	211	27	226	33.2	
2023		8,899	1,760	99	491	16	12	127	41	26	220	264	53	166	44	201	34.5	
2024		8,613	1,752	83	409	15	11	142	58	30	239	260	101	159	31	214	36.1	
고등학교	계	6,247	623	26	114	3	5	73	2	16	68	100	40	59	17	100	24.6	
	특수학교	2,032	58	1	12	1	1	2	2	2	5	7	15	4	-	6	7.1	
	특수학급	3,263	515	24	89	2	1	70	-	14	62	84	21	52	17	79	37.1	
	일반학급	952	50	1	13	-	3	1	-	-	1	9	4	3	-	15	15.3	
전공과	계	2,366	1,129	57	295	12	6	69	56	14	171	160	61	100	14	114	48.6	
	특수학교	2,259	1,041	51	279	12	6	60	56	10	160	137	59	91	13	107	46.9	
	특수학급	107	88	6	16	-	-	9	-	4	11	23	2	9	1	7	85.4	

주: 1) 각 년도 4월 1일 기준

2)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진학자 수)} * 100

자료: 교육부(각 년도), 「특수교육통계」 p.8.

- 2024년 전체 졸업생 수 8,613명 중 취업한 학생 수는 1,752명으로 36.1%의 취업률을 보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취업률은 증가 추이를 보임

• 취업분야별로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제품제조'가 4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식음료 서비스' 260명, '청소·세탁' 239명, '기타' 214명, '사무보조' 1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졸업 유형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4.6%이고, 전공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48.6%로 나타남

5) 교육기관 편의시설

(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유형별,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연도	2009	12,145	82.8	88.1	79.8	79.2	64.3
	2010	11,655	84.8	87.9	80.3	81.9	62.1
	2011	11,788	89.1	93.7	87.0	86.1	71.0
	2012	11,897	93.2	97.2	93.4	90.7	80.4
	2013	12,122	91.6	94.7	93.2	92.8	78.1
	2014	12,253	93.6	96.0	94.1	94.5	89.6
	2015	12,312	95.7	97.5	95.9	96.2	93.1
	2016	12,442	96.6	97.9	96.9	97.3	95.7
	2017	12,699	97.5	98.3	97.4	98.0	96.0
	2018	12,117	95.6	97.5	95.3	91.7	85.6
	2019	12,116	96.4	97.8	95.9	92.9	87.2
	2020	12,174	96.9	98.2	96.6	94.3	89.2
	2021	12,231	97.4	98.5	97.1	95.3	90.9
	2022	12,239	97.8	98.6	97.5	96.0	91.8
	2023	12,225	98.0	98.8	97.6	96.4	92.6
설립별	국공립	10,445	98.7	99.1	98.4	97.4	94.8
	사립	1,780	94.0	96.7	93.2	90.7	79.4
학교급별	초등학교	6,303	98.4	98.6	97.9	96.8	94.4
	중학교	3,270	98.0	99.1	97.8	96.2	91.6
	고등학교	2,380	97.4	99.2	96.9	95.6	89.0
	특수학교	194	99.0	98.0	100.0	99.5	99.5
	각종학교	78	89.7	88.5	87.2	87.2	83.3
학급설치 여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8,246	99.3	99.6	99.1	98.1	95.9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3,979	95.5	97.0	94.5	92.9	85.8

자료: 1) 교육부(2009).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80-83. 2) 교육부(2010). 「201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87-90.
 3) 교육부(2011). 「201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86-89. 4) 교육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87-90.
 5)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79-86. 6) 교육부(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92-95.
 7) 교육부(2017).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92-95. 8) 교육부(2018). 「201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3-66.
 9) 교육부(2019). 「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1. 10) 교육부(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1.
 11) 교육부(2021). 「202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1. 12) 교육부(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62-63.
 13) 교육부(2023).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10-111. 14) 교육부(2024).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10-111.



〈표 5-5-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유형별, 연도별, 설립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 여부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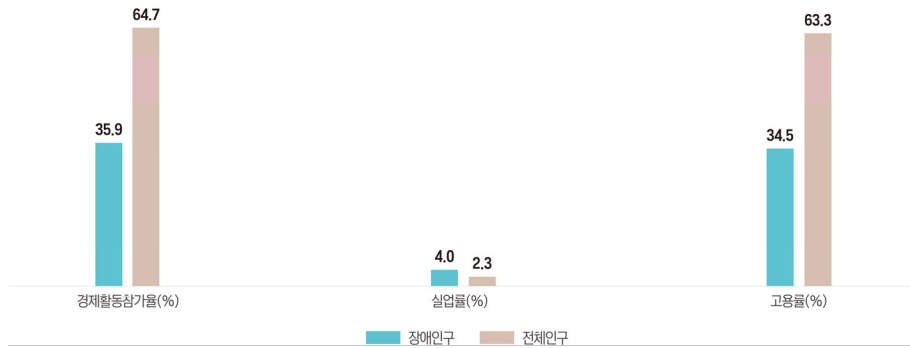
(단위: 교, %)

구분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연도	2009	81.9	-	-	-	75.3
	2010	80.4	67.9	35.8	48.0	65.2
	2011	88.8	81.1	57.5	51.9	76.2
	2012	94.0	87.6	72.9	70.1	84.7
	2013	92.3	79.8	68.8	55.8	81.4
	2014	93.0	82.6	72.6	64.8	85.6
	2015	94.9	87.1	80.2	70.9	89.5
	2016	95.8	90.0	83.4	75.5	91.4
	2017	96.7	92.1	86.2	79.9	92.9
	2018	96.3	90.7	90.0	85.5	91.9
	2019	96.9	91.8	91.7	87.7	94.3
	2020	92.5	97.4	93.1	89.7	86.5
	2021	93.2	97.9	94.5	91.2	88.4
	2022	98.1	93.6	95.0	91.9	89.7
	2023	98.3	94.2	95.5	93.2	90.6
학교별	국공립	98.7	94.8	96.5	94.3	91.7
	사립	95.8	90.7	89.9	87.1	84.2
학교급별	초등학교	98.3	94.9	96.2	93.7	91.2
	중학교	98.6	93.8	95.3	93.2	89.7
	고등학교	98.2	93.0	94.5	92.3	90.2
	특수학교	99.5	99.0	96.9	98.0	99.0
	각종학교	88.5	78.2	79.5	73.1	78.2
학급설치여부	특수학급 설치학교	99.5	95.7	97.3	95.2	92.7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95.8	91.1	91.8	89.2	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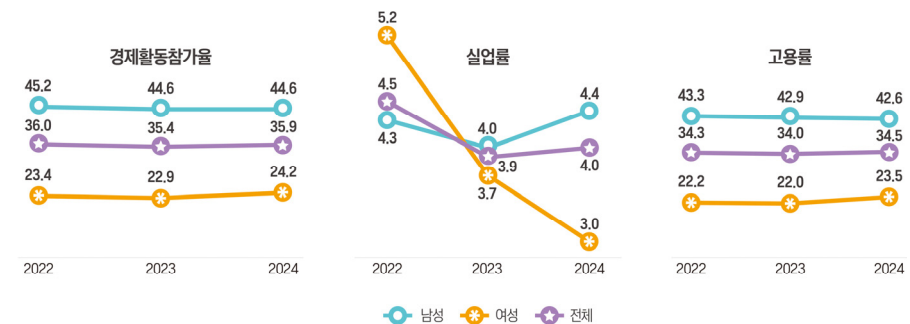
- 2023년 교육기관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5.0%로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편의시설 유형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설치 가 용이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98.8%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 90.6%, 계단 또는 승강기 89.5%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이 96.0%로 사립학교 88.8%보다 설치율이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로 설치율을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98.8%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종학교는 8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각종학교의 경우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이 73.1%로 특수학교의 설치율 98.0%에 비해 24.9%p 낮음
- 학급설치여부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학교가 97.0%로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90.7%에 비해 6.3%p 높음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율이 78.0%로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설치율 95.0%에 비해 17.0%p 낮음

6. 노동과 직업재활

[그림 2-6-1] 경제활동상태 - 전체인구 비교(2024년)



[그림 2-6-2] 경제활동상태 - 성별비교(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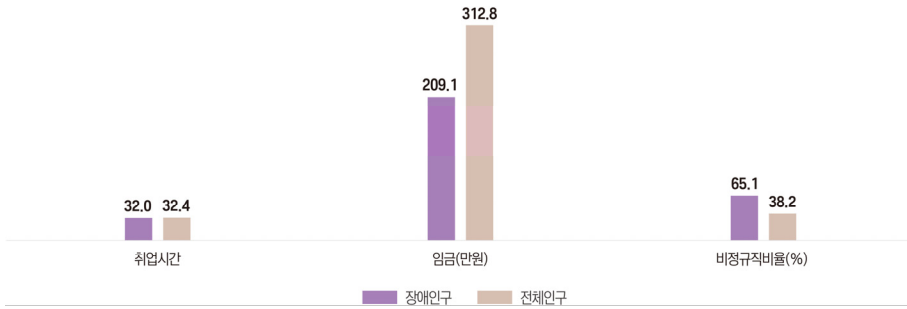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9%로 전체인구 64.7% 보다 28.8%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 4.0%로 전체인구 2.3%보다 1.7%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 34.5%로 전체인구 63.3% 보다 28.8%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전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연도별(2022년~2024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실업률은 감소 후 소폭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42.6%로 여성 23.5%에 비해 19.1%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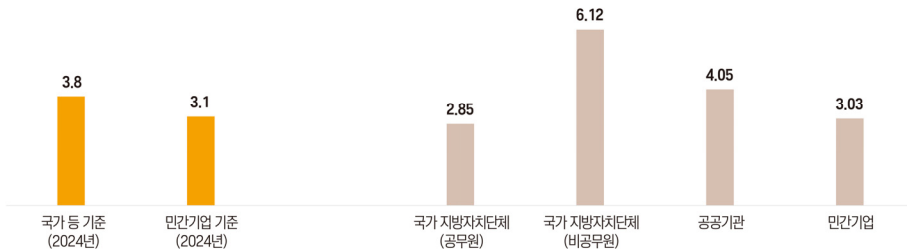
[그림 2-6-3]

임금근로자 근로 특성 - 전체인구 비교(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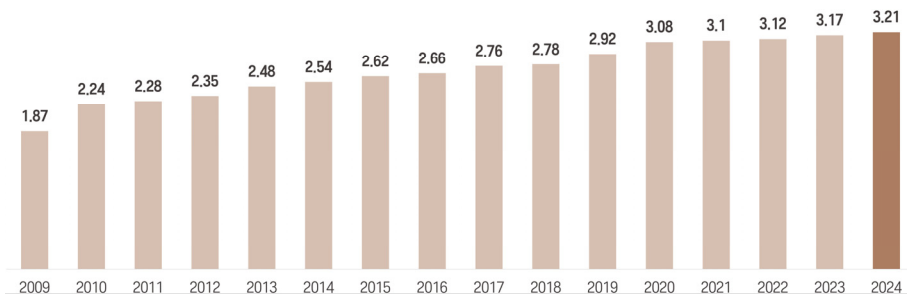
[그림 2-6-4-1]

장애인 의무고용률 - 부문별(2024년)



[그림 2-6-4-2]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별



주: 장애인 의무 고용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4%, 민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3.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함

- 2024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주 평균 취업시간은 32.0시간으로 전체인구의 32.4시간과 비슷하며,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312.8만원인 것에 비해 장애인구는 209.1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66.8%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고용률은 3.21%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한 반면 비공무원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6.12%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4.05%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의무고용률 3.10%에 미치지 못함

1) 경제활동

(1) 경제활동상태

〈표 6-1-1〉 경제활동상태(2024)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 경제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비율	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2,574,398	100.0	925,090	888,214	36,876	1,649,308	35.9	4.0	34.5
남성	1,483,788	57.6	661,117	632,289	28,827	822,671	44.6	4.4	42.6
여성	1,090,610	42.4	263,974	255,925	8,049	826,636	24.2	3.0	23.5
15~29세	125,643	4.9	49,580	44,889	4,690	76,063	39.5	9.5	35.7
30~39세	109,676	4.3	59,995	58,678	1,317	49,681	54.7	2.2	53.5
40~49세	209,775	8.1	109,603	106,892	2,712	100,172	52.2	2.5	51.0
50~59세	397,716	15.4	227,772	223,336	4,436	169,944	57.3	1.9	56.2
60세 이상	1,731,588	67.3	478,140	454,419	23,721	1,253,448	27.6	5.0	26.2
서울	380,215	14.8	129,314	123,130	6,184	250,901	34.0	4.8	32.4
경기도	568,264	22.1	208,904	196,696	12,208	359,360	36.8	5.8	34.6
광역시도	632,938	24.6	215,283	204,100	11,183	417,655	34.0	5.2	32.2
기타 시도	992,981	38.6	371,589	364,288	7,301	621,392	37.4	2.0	36.7
중졸 이하	1,387,938	53.9	333,187	322,821	10,366	1,054,751	24.0	3.1	23.3
고졸	810,546	31.5	360,863	345,376	15,488	449,683	44.5	4.3	42.6
대졸 이상	375,913	14.6	231,040	220,017	11,023	144,874	61.5	4.8	58.5
전체인구	45,607,000	100.0	29,525,000	28,847,000	678,000	16,082,000	64.7	2.3	63.3
남성	22,479,000	49.3	16,381,000	15,982,000	399,000	6,098,000	72.9	2.4	71.1
여성	23,129,000	50.7	13,144,000	12,865,000	279,000	9,985,000	56.8	2.1	55.6
15~29세	8,078,000	17.7	3,900,000	3,685,000	215,000	4,178,000	48.3	5.5	45.6
30~39세	6,816,000	14.9	5,618,000	5,489,000	129,000	1,198,000	82.4	2.3	80.5
40~49세	7,768,000	17.0	6,285,000	6,176,000	110,000	1,483,000	80.9	1.7	79.5
50~59세	8,655,000	19.0	6,838,000	6,722,000	116,000	1,817,000	79.0	1.7	77.7
60세 이상	14,290,000	31.3	6,883,000	6,776,000	108,000	7,407,000	48.2	1.6	47.4
서울	8,467,000	18.6	5,398,000	5,247,000	151,000	3,069,000	63.8	2.8	62.0
경기	12,103,000	26.5	7,998,000	7,812,000	186,000	4,105,000	66.1	2.3	64.5
광역시도	11,233,000	24.6	6,945,000	6,773,000	173,000	4,288,000	61.8	2.5	60.3
기타 시도	13,805,000	30.3	9,186,000	9,017,000	169,000	4,622,000	66.5	1.8	65.3
중졸 이하	9,675,000	21.2	3,583,000	3,524,000	60,000	6,092,000	37.0	1.7	36.4
고졸	16,510,000	36.2	10,635,000	10,378,000	247,000	5,875,000	64.4	2.4	62.9
대졸 이상	19,422,000	42.6	15,307,000	14,945,000	362,000	4,115,000	78.8	2.4	77.0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4)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5) 장애인, 전체인구 2024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12~119, 124.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 2024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9%로 전체인구 64.7% 보다 28.8%p 낮음
- 실업률은 장애인 4.0%로 전체인구 2.3%보다 1.7%p 높으며, 고용률은 장애인 34.5%로 전체인구 63.3% 보다 28.8%p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지역 간, 연령 간 차이보다 성별, 학력에 따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42.6%로 여성 23.5%에 비해 19.1%p 높음
 - 학력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이 58.5%로 가장 높고, 고졸 42.6%, 중졸 이하 23.3% 순임



〈표 6-1-2〉 경제활동상태 - 연도별

(단위: 명,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2021	2022	2023	2024	증감	2021	2022	2023	2024	증감	2021	2022	2023	2024	증감	
전체	37.3	36.0	35.4	35.9	0.5	7.1	4.5	3.9	4.0	0.1	34.6	34.3	34.0	34.5	0.5	
남성	47.0	45.2	44.6	44.6	0.0	6.9	4.3	4.0	4.4	0.4	43.8	43.3	42.9	42.6	-0.3	
여성	24.1	23.4	22.9	24.2	1.3	7.6	5.2	3.7	3.0	-0.7	22.2	22.2	22.0	23.5	1.5	
15~29세	39.6	39.6	35.3	39.5	4.2	8.6	6.5	7.3	9.5	2.2	36.2	37.0	32.7	35.7	3.0	
30~39세	62.7	58.2	50.9	54.7	3.8	10.1	3.5	2.8	2.2	-0.6	56.4	56.2	49.4	53.5	4.1	
40~49세	59.2	56.2	60.9	52.2	-8.7	7.1	5.5	4.1	2.5	-1.6	55.0	53.1	58.4	51.0	-7.4	
50~59세	53.5	55.5	53.4	57.3	3.9	5.9	3.3	3.9	1.9	-2.0	50.3	53.7	51.3	56.2	4.9	
60세 이상	27.4	26.3	26.8	27.6	0.8	7.1	4.9	3.6	5.0	1.4	25.5	25.0	25.8	26.2	0.4	
중증	23.8	23.2	22.3	24.5	2.2	8.2	5.9	4.9	5.5	0.6	21.8	21.8	21.2	23.2	2.0	
경증	43.3	41.6	41.1	40.9	-0.2	6.8	4.2	3.6	3.6	0.0	40.3	39.9	39.6	39.5	-0.1	
신체 외부	지체장애	45.9	45.1	44.4	44.8	0.4	6.6	4.1	3.3	3.5	0.2	42.8	43.3	43.0	43.2	0.2
	지체 외	16.2	15.2	13.8	16.7	2.9	15.6	6.6	8.1	5.8	-2.3	13.7	14.2	12.7	15.8	3.1
감각	시각장애	43.0	42.6	45.2	40.8	-4.4	7.8	5.2	4.2	2.5	-1.7	39.7	40.4	43.3	39.8	-3.5
	시각 외	34.0	30.3	28.6	30.9	2.3	5.5	3.3	4.3	3.9	-0.4	32.2	29.3	27.4	29.7	2.3
정신적	24.4	23.3	23.0	25.5	2.5	8.5	7.6	5.7	7.6	1.9	22.3	21.5	21.7	23.6	1.9	
발달	30.1	27.6	27.2	31.0	3.8	7.1	7.5	3.7	6.7	3.0	28.0	25.5	26.2	28.9	2.7	
신체내부	28.8	28.9	30.0	29.0	-1.0	6.5	5.6	3.4	4.9	1.5	27.0	27.3	29.0	27.6	-1.4	
서울	31.2	35.6	33.7	34.0	0.3	7.0	3.3	3.9	4.8	0.9	29.0	34.4	32.4	32.4	0.0	
경기	38.8	38.4	38.3	36.8	-1.5	9.4	6.1	3.4	5.8	2.4	35.2	36.1	37.0	34.6	-2.4	
광역시도	36.2	32.2	33.1	34.0	0.9	6.4	6.2	5.0	5.2	0.2	33.9	30.2	31.4	32.2	0.8	
기타 시도	39.4	37.1	35.9	37.4	1.5	6.3	3.2	3.5	2.0	-1.5	36.9	35.9	34.6	36.7	2.1	
중졸이하	26.0	23.7	23.3	24.0	0.7	7.1	4.9	4.2	3.1	-1.1	24.2	22.6	22.3	23.3	1.0	
고졸	46.3	45.4	43.8	44.5	0.7	7.2	5.0	3.5	4.3	0.8	43.0	43.2	42.2	42.6	0.4	
대졸이상	63.3	63.7	59.9	61.5	1.6	6.9	3.2	4.0	4.8	0.8	58.9	61.7	57.5	58.5	1.0	

-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4) 경제활동(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5)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6)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7) 2020년, 2021년 자료는 5월 기준,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는 10월 기준임
 8) 증감은 2024년 수치에서 2023년 수치를 뺀 값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5.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2). '2022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3.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3).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22.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17.

- 2023년 대비 2024년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실업률, 고용률 모두 각각 0.5%p, 0.1%p, 0.5%p 증가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용률은 40~49세가 -7.4%p 감소한 반면, 50~59세, 30~39세는 각각 4.9%p, 4.1%p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업률은 발달장애가 3.0%p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은 시각장애가 -3.5%p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증이하의 실업률은 -1.1%p 감소하고, 고용률은 1.0%p 증가함

(2) 취업자 특성

〈표 6-1-3〉 취업자의 인적 구성(2024)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취업자		장애인구 취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28,847,000	100.0	888,214	100.0
성별	남성	15,982,000	55.4	632,289	71.2
	여성	12,865,000	44.6	255,925	28.8
연령별	15-29세	3,685,000	12.8	44,889	5.1
	30-39세	5,489,000	19.0	58,678	6.6
	40-49세	6,176,000	21.4	106,892	12.0
	50-59세	6,722,000	23.3	223,336	25.1
	60세 이상	6,776,000	23.5	454,419	51.2
장애정도별	중증	-	-	181,548	20.4
	경증	-	-	706,666	79.6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	497,295	56.0
		지체 외	-	37,132	4.2
	감각	시각	-	98,307	11.1
		시각 외	-	133,057	15.0
	정신적		-	77,279	8.7
	발달		-	64,775	7.3
	신체내부		-	45,143	5.1
지역별	서울	5,247,000	18.2	123,130	13.9
	경기	7,812,000	27.1	196,696	22.1
	광역시도	6,773,000	23.5	204,100	23.0
	기타 시도	9,017,000	31.3	364,288	41.0
학력별	중졸 이하	3,524,000	12.2	322,821	36.3
	고졸	10,378,000	36.0	345,376	38.9
	대졸 이상	14,945,000	51.8	220,017	24.8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4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3.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 2024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인적구성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취업자의 남녀 성비는 55.4% 대 44.6%이며, 장애인구 취업자의 남녀성비는 71.2% 대 28.8%로 나타나 장애인구의 성별에 따른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취업자는 연령별 분포가 비슷하나, 장애인구 취업자는 60세 이상이 50% 이상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취업자는 대졸이상이 51.8%이며, 장애인구 취업자는 중졸 이하와 고졸이 75.2%로 나타남
-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구 취업자의 장애특성별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가 79.6%로 다수를 차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외부장애가 6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감각장애 26.1%임



〈표 6-1-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2024)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8,214	100.0	28,847,000	100.0
임금근로자				
소계	660,205	74.3	22,178,000	76.9
상용근로자	359,433	40.5	16,332,000	56.6
임시근로자	238,288	26.8	4,930,000	17.1
일용근로자	62,484	7.0	916,000	3.2
비임금근로자				
소계	228,009	25.7	6,669,000	23.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4,009	5.0	1,439,000	5.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9,905	19.1	4,331,000	15.0
무급 가족 종사자	14,096	1.6	900,000	3.1

주: 전체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참조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4. p.6.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4.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 2023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76.9%이며, 장애인구는 74.3%임
•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인구가 56.6%인 반면, 장애인구는 40.5%임

〈표 6-1-5〉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2024) - 종사상 지위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8,214	100.0	660,205	100.0	228,009	100.0	28,847,000	100.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79,118	8.9	5,402	0.8	73,717	32.3	1,598,000	5.5
제조업	121,722	13.7	100,638	15.2	21,085	9.2	4,415,000	15.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36	0.1	636	0.1	-	-	92,000	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5,389	0.6	5,389	0.8	-	-	143,000	0.5
건설업	60,741	6.8	48,819	7.4	11,922	5.2	2,061,000	7.1
도매 및 소매업	72,220	8.1	38,386	5.8	33,834	14.8	3,134,000	10.9
운수 및 창고업	50,350	5.7	24,878	3.8	25,472	11.2	1,716,000	5.9
숙박 및 음식점업	47,654	5.4	30,054	4.6	17,601	7.7	2,329,000	8.1
정보통신업	11,140	1.3	9,693	1.5	1,447	0.6	1,132,000	3.9
금융 및 보험업	9,882	1.1	8,581	1.3	1,301	0.6	782,000	2.7
부동산업	29,673	3.3	24,234	3.7	5,439	2.4	520,000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0,825	2.3	16,388	2.5	4,436	1.9	1,447,000	5.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7,477	7.6	61,889	9.4	5,588	2.5	1,396,000	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7,078	9.8	87,078	13.2	-	-	1,345,000	4.7
교육 서비스업	35,565	4.0	32,841	5.0	2,724	1.2	1,954,000	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0,080	15.8	137,562	20.8	2,518	1.1	3,027,000	1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988	1.3	9,140	1.4	2,848	1.2	507,000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765	3.9	17,633	2.7	17,132	7.5	1,149,000	4.0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1,910	0.2	964	0.1	946	0.4	100,000	0.3

주: 1)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4년 10월 기준임
 2) 기타=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6-137.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 2024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직장(일자리)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제조업'이 15.3%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 10.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5% 순임. 장애인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8%로 가장 높고, '제조업' 1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8% 등의 순임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8%, '제조업' 15.2% 등의 순이고, 비임금근로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32.3%, '도매 및 소매업' 14.8% 등의 순임



〈표 6-1-6〉 취업자의 직업(2024) - 종사상 지위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취업자						전체인구 취업자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		장애인 비 임금 근로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888,214	100.0	660,205	100.0	228,009	100.0	28,915,000	100.0
관리자	5,863	0.7	2,995	0.5	2,868	1.3	435,000	1.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7,164	8.7	60,790	9.2	16,374	7.2	6,513,000	22.6
사무 종사자	150,807	17.0	132,953	20.1	17,854	7.8	5,039,000	17.5
서비스 종사자	63,754	7.2	44,699	6.8	19,055	8.4	3,562,000	12.3
판매 종사자	48,441	5.5	17,998	2.7	30,443	13.4	2,470,000	8.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7,374	8.7	3,309	0.5	74,064	32.5	1,565,000	5.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7,917	7.6	44,010	6.7	23,906	10.5	2,280,000	7.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6,423	10.9	64,711	9.8	31,712	13.9	2,924,000	10.1
단순노무 종사자	298,989	33.7	287,256	43.5	11,732	5.1	4,058,000	14.1
기타 및 모름/응답거절	1,483	0.2	1,483	0.2	0	0.0	-	-

주: 1) 기타에는 군인 등이 포함됨

2)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4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38.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 2024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6%로 가장 높고, '사무종사자' 17.5%, '단순노무 종사자' 14.1% 등의 순임. 장애인구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3.7%로 가장 높고 '사무 종사자' 17.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9% 순임

•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3.5%로 가장 높고, 비임금근로자의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1-7〉 임금근로자 특성(2024) -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정규직여부별

(단위: 명, %, 시간, 만원)

구분	추정 수	취업시간	임금	
전체인구	22,143,000	32.4	312.8	
장애인가	660,205	32.0	209.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59,433	39.2	290.0
	임시근로자	238,288	22.1	94.3
	일용근로자	62,484	28.6	191.1
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5,402	32.1	218.8
	제조업	100,638	39.0	287.9
	건설업	48,819	35.8	274.2
	도소매, 음식 숙박업	68,439	33.2	206.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387,072	28.7	175.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49,177	37.9	255.7
직업	관리자, 전문가	63,785	36.0	318.7
	사무 종사자	132,953	38.7	320.4
	서비스, 판매 종사자	62,697	30.9	167.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309	25.7	214.4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108,721	38.3	263.9
	단순노무 종사자	287,256	25.9	120.7
사업체 규모	1~4인	126,630	29.6	164.4
	5~49인	376,438	31.3	194.3
	50~299인	93,009	35.1	242.1
	300인 이상	53,089	38.2	384.9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429,731	26.7	143.5
	정규직	230,474	42.0	333.9

주: 1) 취업시간은 '지난 주 평균 실제로 일한 시간', 임금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의미함

2) 취업시간과 임금의 임금노동자 추정 수는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취업시간의 추정 수를 표기함

3) 평균 취업시간은 일시 휴직자의 경우 0시간으로 대입하여 산정함

4) 산업, 직업, 사업체 규모에 대해 모름/응답 거절을 제외하고 분석함

5)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서비스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6)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7) '사업체'는 기업체의 하부조직으로 분사·지점·공장·영업소·상점 등을 의미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51.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8월)」

- 2024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 평균 취업시간은 장애인가 32.0시간, 전체인구 32.4시간으로 비슷하며, 월평균임금은 장애인가가 209.1만원으로 전체인구(312.8만원)의 약 66.8% 수준임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이 각각 39.2시간, 290.0만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 보다 높게 나타남
- 산업별로 살펴보면,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은 '제조업'(39.0시간, 287.9만원)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37.9시간, 255.7만원), '건설업'(35.8시간, 274.2만원)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 종사자'의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이 각각 38.7시간, 320.4만원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사업체 규모별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이 높아지는 편임
- 정규직 여부별로는 정규직의 취업시간과 월평균임금이 각각 42.0시간, 333.9만원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각각 1.6배, 2.3배 높은 편임



〈표 6-1-8〉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2024)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단위: %)

구분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전체		65.1	38.2
성별	남성	59.3	30.4
	여성	78.2	47.3
연령	15-29세	79.3	45.2
	30-39세	57.1	22.7
	40-49세	49.7	26.7
	50-59세	42.2	33.7
	60세 이상	81.7	69.7
장애정도	중증	73.9	-
	경증	62.5	-
장애유형	신체외부 지체	59.7	-
	신체외부 지체 외	69.4	-
	시각 시각	57.4	-
	시각 시각 외	76.9	-
	정신적	84.8	-
	발달	83.6	-
	신체내부	57.7	-
지역	서울	68.7	38.3
	경기	62.4	34.9
	광역시도	61.6	39.4
	기타 시도	67.5	40.4
학력	중졸 이하	88.0	77.6
	고졸	64.6	47.3
	대졸 이상	38.9	26.0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함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64.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4년 8월)」

- 2024년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5.1%로 전체인구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8.2%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 모두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장애인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78.2%로 매우 높은 편임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와 장애인에서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69.7%, 81.7%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의 비정규직 비율이 73.9%로 경증장애 62.5%에 비해 더 높고,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장애가 84.8%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장애인과 전체인구 모두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88.0%, 77.6%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이 38.9%와 26.0%로 가장 낮게 나타남

(3) 실업자 특성

〈표 6-1-9〉 실업자의 인적 구성(2024)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학력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36,876	100.0	678,000	100.0
성별	남성		28,827	78.2	399,000	58.8
	여성		8,049	21.8	279,000	41.2
연령별	15-29세		4,690	12.7	215,000	31.7
	30-39세		1,317	3.6	129,000	19.0
	40-49세		2,712	7.4	110,000	16.2
	50-59세		4,436	12.0	116,000	17.1
	60세 이상		23,721	64.3	108,000	15.9
장애정도별	중증		10,581	28.7	-	-
	경증		26,295	71.3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18,169	49.3	-	-
		지체 외	2,266	6.1	-	-
	감각	시각	2,470	6.7	-	-
		시각 외	5,335	14.5	-	-
	정신적		6,335	17.2	-	-
	발달		4,642	12.6	-	-
	신체내부		2,301	6.2	-	-
지역별	서울		6,184	16.8	151,000	22.3
	경기		12,208	33.1	186,000	27.4
	광역시도		11,183	30.3	173,000	25.5
	기타 시도		7,301	19.8	169,000	24.9
학력별	중졸 이하		10,366	28.1	60,000	8.8
	고졸		15,488	42.0	257,000	37.9
	대졸 이상		11,023	29.9	362,000	53.4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4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84.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 2024년 기준으로 실업자의 인적구성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실업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58.8%, 여성 41.2%이며, 장애인구 실업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78.2%, 여성 21.8%임
 - 연령별로는 전체인구 실업자의 경우 15-29세의 비율이 31.7%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구 실업자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64.3%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장애가 71.3%로 중증장애 28.7%보다 높음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외부장애가 55.4%로 장애인구 실업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학력별로는 전체인구의 경우 대졸이상의 비율이 53.4%로 가장 높으며, 장애인구는 고졸이 42.0%로 가장 높음



〈표 6-1-10〉 실업자의 구직활동(2024)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실업자		전체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36,876	100.0	678,000	100.0
구직 기간	3개월 미만	13,573	36.8	411,000	60.6
	6개월 미만	13,566	36.8	169,000	24.9
	모름 / 응답 거절	-	-	-	-
	소계	27,139	73.6	580,000	85.5
	6개월 이상	5,482	14.9	91,000	13.4
	12개월 이상	4,255	11.5	7,000	1.0
	소계	9,737	26.4	98,000	14.5
	소계	36,876	100.0	678,000	100.0
구직 경로	공공 취업알선기관	19,848	53.8	-	-
	민간 취업알선기관	9,431	25.6	-	-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광고 등)	7,305	19.8	-	-
	학교, 학원	434	1.2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14,520	39.4	-	-
	기타	58	0.2	-	-
구직 방법	구직등록, 구직응모(주로 공공, 민간알선기관)	20,852	56.5	-	-
	시험접수, 시험응시	943	2.6	-	-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 제출	11,747	31.9	-	-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711	1.9	-	-
	자영업 준비	359	1.0	-	-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소개 부탁	16,053	43.5	-	-

주: 1) '공공 취업알선기관'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워크투게더 포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 포함),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가 포함됨

2) 구직경로와 구직방법은 두 개까지 응답받음

3) 장애인구, 전체인구 2024년 10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88-189.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 2024년 기준으로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비율은 전체인구 실업자는 14.5%인 반면, 장애인구 실업자는 26.4%를 차지함
-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공공 취업알선기관'이 53.8%로 가장 높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 39.4%, '민간 취업알선기관' 25.6% 등의 순임
- 장애인 실업자의 구직방법은 '구직등록, 구직응모'가 56.5%로 가장 높고, '부모(친척),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소개 부탁' 43.5%,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 제출' 31.9% 순임

〈표 6-1-11〉 실업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2024)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전체		36,876	100.0
희망 고용형태	임금근로	35,961	97.5
	비임금근로	915	2.5
희망산업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283	0.8
	제조업	3,659	9.9
	건설업	4,758	12.9
	도소매, 음식 숙박업	3,327	9.0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	20,405	55.3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4,411	12.0
	모름/응답거절	34	0.1
희망직업	관리자, 전문가	3,228	8.8
	사무 종사자	5,412	14.7
	서비스, 판매 종사자	6,293	17.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4,833	13.1
	단순노무 종사자	17,110	46.4
희망 사업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등)	3,552	9.9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일자리 등)	9,351	26.0
	공무원, 교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1,857	5.2
	그 외 일반사업체	21,201	59.0
희망 근로시간	전일제 근로	20,487	57.0
	시간제 근로	15,473	43.0
희망 월 평균소득	50만원 미만	851	2.3
	50~100만원 미만	3,888	10.5
	100~150만원 미만	6,453	17.5
	150~200만원 미만	3,062	8.3
	200~300만원 미만	17,252	46.8
	300만원 이상	5,369	14.6

주: 1) 희망 사업체, 희망 근로시간은 희망 고용형태를 '임금근로'로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함

2)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및 기타'는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함

3) '관리자, 전문가'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90~192.

- 실업자의 희망고용 형태는 임금근로자가 97.5%로 가장 높고, 희망산업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55.3%로 가장 많으며, 희망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46.4%로 가장 많음
- 희망사업체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일자리보다 일반사업체를 희망하는 실업자가 59.0%로 가장 많음
- 희망 근로시간은 전일제 근로 57.0%, 시간제 근로 43.0%로 전일제 근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 평균 희망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인 46.8%로 가장 많음



(4)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표 6-1-12〉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 및 구직단념자 수(2024)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정 수	비율	추정 수	비율
전체		1,649,308	100.0	16,082,000	100.0
성별	남성	822,671	49.9	6,098,000	37.9
	여성	826,636	50.1	9,985,000	62.1
연령별	15~29세	76,063	4.6	4,178,000	26.0
	30~39세	49,681	3.0	1,198,000	7.4
	40~49세	100,172	6.1	1,483,000	9.2
	50~59세	169,944	10.3	1,817,000	11.3
	60세 이상	1,253,448	76.0	7,407,000	46.1
장애정도별	중증	592,039	35.9	-	-
	경증	1,057,268	64.1	-	-
장애유형별	신체외부 지체	636,354	38.6	-	-
	신체외부 지체 외	196,331	11.9	-	-
	감각 시각	146,333	8.9	-	-
	감각 시각 외	309,943	18.8	-	-
	정신적	244,356	14.8	-	-
	발달	154,356	9.4	-	-
	신체내부	115,991	7.0	-	-
지역별	서울	250,901	15.2	3,069,000	19.1
	경기	359,360	21.8	4,105,000	25.5
	광역시도	417,655	25.3	4,288,000	26.7
	기타 시도	621,392	37.7	4,622,000	28.7
학력별	중졸 이하	1,054,751	64.0	6,092,000	37.9
	고졸	449,683	27.3	5,875,000	36.5
	대졸이상	144,874	8.8	4,115,000	25.6
구직단념자 수	통계청 기준	8,729	0.5	346,000	2.2
	EDI 기준	31,767	1.9		

주: 1)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자폐장애인 3급이 해당

2)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는 뇌병변, 안면, '시각 외 감각장애'는 청각, 언어, '정신적장애'는 지적, 자폐성, 정신,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신체내부장애'는 심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장애를 의미함

3) '광역시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타 시도'는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의미함

2019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서 서울 경기 구분하고, 인천 광역시도에 넣어 통계 집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4). '2024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p.195, 201.

2)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2024년 10월)'

- 2024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인적구성을 전체인구와 장애인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 37.9%, 여성 62.1%이고, 장애인구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 49.9%, 여성 50.1%임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장애인구는 76.0%, 전체인구는 46.1%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경증장애의 비율이 64.1%로 중증장애 35.9%보다 높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38.6%로 가장 높음
-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체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중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각각 37.9%, 64.0%로 가장 높음

※※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2) 의무고용

(1) 장애인 의무고용

〈표 6-2-1〉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연도별, 기관별(정부, 공공, 민간)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체 수(개소)	상시근로자수(명)	장애인수(명)	고용률(%)		
연도	2009	22,209	6,091,555	114,053	1.87	
	2010	23,249	6,511,624	126,416	2.24	
	2011	24,083	6,909,276	133,451	2.28	
	2012	25,688	7,199,417	142,022	2.35	
	2013	27,349	7,499,665	153,955	2.48	
	2014	27,488	7,570,281	158,388	2.54	
	2015	28,218	7,713,036	164,876	2.62	
	2016	28,708	7,852,861	168,614	2.66	
	2017	28,018	7,912,772	175,935	2.76	
	2018	29,018	8,177,401	180,328	2.78	
	2019	29,777	8,389,402	245,184	2.92	
	2020	29,890	8,467,076	260,826	3.08	
	2021	30,478	8,674,826	268,663	3.10	
	2022	31,455	8,936,761	278,823	3.12	
2023	32,316	9,175,615	291,323	3.17		
2024	32,692	9,295,787	298,654	3.21		
국가·지방자치단체	계	320	969,428	27,642	2.85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56	207,985	7,332	3.53
		헌법기관	4	25,171	699	2.78
		지방자치단체	243	316,512	11,650	3.68
		교육청	17	419,760	7,961	1.90
	근로자	계	307	422,329	25,852	6.12
		중앙행정기관	43	76,299	2,216	2.90
		헌법기관	4	3,185	103	3.23
		지방자치단체	243	152,345	16,112	10.58
		교육청	17	190,500	7,421	3.90
공공기관	소계	779	569,341	23,051	4.05	
	공기업	32	151,999	6,137	4.04	
	준정부기관	55	118,338	5,193	4.39	
	기타공공기관	230	156,374	6,002	3.84	
	지방공기업	154	84,432	3,548	4.20	
	출자출연기관	308	58,198	2,171	3.73	
민간기업	31,286	7,334,689	222,109	3.03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

2)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적용함

3) 장애인 근로자수는 순인원임

4)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각 년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통계청 KOSIS에서 자료 인출. (검색일: 2025.5.22.)

-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24, 2025.05.22,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고용률은 3.21%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4.05%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함
-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함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3.2%
 -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4%
 -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6%
 - 2024년 이후: 3.8%
-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2015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2.7%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2.9%
 - 2019년 이후: 3.1%



(2) 장애인 고용부담금

〈표 6-2-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b/a)
합계	153,125	9,651,871	145,473	9,378,394	7,652	273,478	97.2
2024	9,162	916,777	8,792	895,365	370	21,412	97.7
2023	9,282	852,413	8,824	829,580	458	22,833	97.3
2022	9,338	786,072	8,875	763,688	463	22,384	97.2
2021	9,039	789,303	8,591	767,611	448	21,692	97.3
2020	9,250	773,911	8,841	755,756	409	18,155	97.7
2019	9,011	635,393	8,595	619,090	416	16,303	97.4
2018	9,456	567,773	9,031	552,121	425	15,652	97.2
2017	8,439	470,032	7,996	453,236	443	16,796	96.4
2016	8,283	449,178	7,877	434,718	406	14,460	96.8
2015	8,247	428,433	7,945	418,087	302	10,346	97.6
2014	7,662	351,962	7,373	341,958	289	10,004	97.2
2013이전	7,678	326,515	7,403	318,777	275	7,738	97.6

주: 미수납 및 불납결손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2025). 「202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p.650.

-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부과건수가 매년 증가하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다만, 부과금액은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 202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건수는 9,162건, 부과금액은 916,777백만원임
 - 2024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건수는 8,792건, 징수금액은 895,365백만원임
 -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인 징수율은 2024년 97.7%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산실)」 제32조의2. 시행 2017.1.1.)

3) 기업체 장애인 고용

(1) 기업체 장애인 고용

〈표 6-3-1〉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개, %)

구 분		전 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기업체 수	비 율		
전 체		1,765,761	100.0	59,033	100.0	1,706,728	100.0	3.3	
고용비의무 기업체	계	1,731,096	98.0	36,915	62.5	1,694,180	99.3	2.1	
	1~4명	1,229,492	69.6	13,241	22.4	1,216,251	71.3	1.1	
	5~49명	501,603	28.4	23,674	40.1	477,929	28.0	4.7	
고용 의무기업체	계	34,665	2.0	22,118	37.5	12,548	0.7	63.8	
	50~299명	30,243	1.7	17,814	30.2	12,429	0.7	58.9	
	300~999명	3,454	0.2	3,340	5.7	113	0.0	96.7	
	1,000명 이상	969	0.1	964	1.6	5	0.0	99.5	
산 업 별	산업 구분 1	계	1,765,761	100.0	59,033	100.0	1,706,728	100.0	3.3
		제조업	306,238	17.3	15,824	26.8	290,414	17.0	5.2
		서비스업 1	662,986	37.5	9,025	15.3	653,961	38.3	1.4
		서비스업 2	619,506	35.1	28,565	48.4	590,941	34.6	4.6
		기타 산업	177,031	10.0	5,620	9.5	171,411	10.0	3.2
	산업 구분 2	제조업	306,238	17.3	15,824	26.8	290,414	17.0	5.2
		건설업	160,898	9.1	5,004	8.5	155,894	9.1	3.1
		금융 및 보험업	14,241	0.8	1,311	2.2	12,930	0.8	9.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3,893	6.5	3,543	6.0	110,351	6.5	3.1
		사업시설/사업지원	51,882	2.9	4,490	7.6	47,392	2.8	8.7
		보건업	90,081	5.1	5,130	8.7	84,952	5.0	5.7
		협회 및 단체/수리	65,294	3.7	2,254	3.8	63,040	3.7	3.5
		그 외	963,233	54.6	21,477	36.4	941,755	55.2	2.2
	지역별	계	1,765,761	100.0	59,033	100.0	1,706,728	100.0	3.3
수도권		795,584	45.1	28,937	49.0	767,647	45.0	3.6	
광역시권		413,029	23.4	10,363	17.6	402,666	23.6	2.5	
기타 지역		556,148	31.5	19,734	33.4	536,414	31.4	3.5	

주: 1) 산업구분1 :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건설업)
2) 산업구분2 :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사업지원(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4) 장애인고용비율 = (장애인 고용기업체 수 / 전체기업체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24).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p.122-124, 126.

-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장애인 고용 기업비율은 3.3%임
-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고용비의무 기업체의 경우 2.1%인 36,915개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였고, 고용의무기업체인 5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63.8%인 22,118개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함
-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2'는 4.6%로 나타났고, 산업구분 2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이 9.2%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사업지원'이 8.7%, '보건업'이 5.7%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은 '수도권'의 고용기업체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지역'은 3.5%, '광역시권'은 2.5% 순으로 나타남



(2)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표 6-3-2〉 1인 이상 기업체 장애인 근로자 수 - 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단위: 명, %)

구 분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전 체	비 율	장애인	비 율	
전 체		16,030,448	100.0	248,781	100.0	1.6
고용비의무 기업체	계	8,321,899	51.9	62,954	25.3	0.8
	1~4명	2,665,209	16.6	14,853	6.0	0.6
	5~49명	5,656,690	35.3	48,101	19.3	0.9
	계	7,708,550	48.1	185,827	74.7	2.4
고용 의무기업체	50~299명	3,087,527	19.3	68,564	27.6	2.2
	300~999명	1,703,004	10.6	46,114	18.5	2.7
	1,000명 이상	2,918,018	18.2	71,149	28.6	2.4
	계	16,030,448	100.0	248,781	100.0	1.6
산업별	산업 구분 1	제조업	26.3	57,133	23.0	1.4
		서비스업 1	18.6	27,246	11.0	0.9
		서비스업 2	46.6	150,780	60.6	2.0
		기 타	8.6	13,622	5.5	1.0
		계	26.3	57,133	23.0	1.4
	산업 구분 2	건설업	7.7	11,682	4.7	0.9
		금융 및 보험업	2.8	5,964	2.4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5	9,579	3.9	0.9
		사업시설/사업지원	8.4	43,238	17.4	3.2
		보건업	8.0	27,765	11.2	2.2
		협회 및 단체/수리	2.6	19,294	7.8	4.6
		그 외	37.7	74,126	29.8	1.2
		계	37.7	74,126	29.8	1.2
지역별	계	16,030,448	100.0	248,781	100.0	1.6
	수도권	8,771,039	54.7	145,838	58.6	1.7
	광역시권	2,924,774	18.2	39,251	15.8	1.3
	기타 지역	4,334,636	27.0	63,692	25.6	1.5

주: 1) 산업구분1: 제조업, 서비스업 1(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2(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건설업)
2) 산업구분2: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사업지원(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외 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지역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기타 지역(수도권·광역시권 외 지역)
4)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2024).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p.128~130.

- 1인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전체 248,781명으로,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1.6%임
- 고용비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8%(62,954명), 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4%(185,827명)임
 -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서비스업2'의 장애인 고용률이 2.0%로 가장 높고, '제조업' 1.4%, '기타 산업' 1.0% 등의 순임
 -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협회 및 단체/수리'의 장애인 고용률이 4.6%로 가장 높고, '사업시설/사업지원' 3.2%, '보건업' 2.2%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1.7%로 가장 높고, 기타 지역 1.5%, 광역시권 1.3%로 나타남

4)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 수

〈표 6-4-1〉 장애인기업 수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개사, %)

구분		2020		2022		2023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기업 수	비율
전 체		115,347	100.0	164,660	100.0	174,344	100.0
규모별	소상공인	103,794	90.0	148,723	90.3	160,569	92.1
	중소기업	11,553	10.0	15,937	9.7	13,775	7.9
제조업		20,610	17.9	26,104	15.9	27,021	15.5
도매 및 소매업		34,435	29.9	48,891	29.7	51,696	29.7
숙박 및 음식점업		22,490	19.5	24,836	15.1	26,495	15.2
개인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18	0.4	548	0.3	585	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99	2.6	5,512	3.3	5,946	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875	8.6	10,778	6.5	11,502	6.6
업종별	건설업	6,632	5.7	21,978	13.3	23,600	13.5
	정보통신업	896	0.8	2,459	1.5	2,790	1.6
	부동산업	5,022	4.4	7,305	4.4	7,103	4.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68	2.1	5,245	3.2	5,693	3.3
	교육 서비스업	2,432	2.1	2,748	1.7	2,995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2	1.7	2,251	1.4	2,253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058	4.4	6,005	3.6	6,665	3.8
5천만원 미만		-	-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	-
5억원 이상		-	-	-	-	-	-
5억원 이하		94,210	81.7	-	-	-	-
5 ~ 10억원 이하		9,403	8.2	-	-	-	-
10 ~ 50억원 이하		9,226	8.0	-	-	-	-
50 ~ 100억원 이하		1,458	1.3	-	-	-	-
100 ~ 300억원 이하		850	0.7	-	-	-	-
300억원 초과		200	0.2	-	-	-	-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미만	-	-	67,078	40.7	69,692	4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24,308	14.8	26,068	15.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48,358	29.4	51,685	29.6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12,474	7.6	13,553	7.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11,188	6.8	11,996	6.9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068	0.6	1,134	0.7
	100억원 이상	-	-	186	0.1	216	0.1
	5천만원 미만	-	-	67,078	40.7	69,692	4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24,308	14.8	26,068	15.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48,358	29.4	51,685	29.6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12,474	7.6	13,553	7.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11,188	6.8	11,996	6.9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068	0.6	1,134	0.7	
100억원 이상	-	-	186	0.1	216	0.1	



-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기업 수 및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추정 수 및 비율임
3) 2020, 2022년 매출액 규모범주가 다름
-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0),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32.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2),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44.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4),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3-4.
4)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5),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3-4.

-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기업 수는 174,344개로, 2020년 대비 약 58,997개 증가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92.1%, 중소기업 7.9%임.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9.7%로 가장 비율이 높고, 제조업 15.5%, 숙박 및 음식점업 15.2% 등의 순임.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하 40.0%, 1억원이상 5억원 미만 29.4%, 5억원이상 15.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5.0% 순임

※※ 장애인기업이란?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표 6-4-2〉 장애인기업 조직형태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

구분		2020		2022		2023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전 체		86.9	13.1	83.9	16.1	86.3	13.7
규모별	소상공인	92.8	7.2	87.1	12.9	89.7	10.3
	중소기업	34.1	65.9	54.1	45.9	47.3	52.7
업종별	제조업	78.5	21.5	79.6	20.4	80.3	19.7
	도매 및 소매업	89.8	10.2	91.3	8.7	93.3	6.7
	숙박 및 음식점업	99.1	0.9	99.6	0.4	99.0	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3.1	56.9	43.7	56.3	52.3	4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3	25.7	80.3	19.7	77.2	2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7.0	3.0	96.5	3.5	97.7	2.3
	건설업	48.8	51.2	53.8	46.2	64.6	35.4
	정보통신업	49.8	50.2	58.4	41.6	61.0	39.0
	부동산업	91.4	8.6	86.4	13.6	86.9	13.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7.5	42.5	56.4	43.6	67.2	32.8
	교육 서비스업	95.5	4.5	94.7	5.3	90.8	9.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5.6	4.4	97.4	2.6	96.2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8.4	1.6	92.9	7.1	96.3	3.7
	5천만원 미만	-	-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	-
	5억원 이상	-	-	-	-	-	-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억원 이하	94.6	5.4	-	-	-	-
	5 ~ 10억원 이하	75.0	25.0	-	-	-	-
	10 ~ 50억원 이하	41.8	58.2	-	-	-	-
	50 ~ 100억원 이하	11.8	88.2	-	-	-	-
	100 ~ 300억원 이하	5.5	94.5	-	-	-	-
	300억원 초과	2.0	98.0	-	-	-	-
	5천만원 미만	-	-	91.7	8.3	95.3	4.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88.7	11.3	92.0	8.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85.4	14.6	86.9	13.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71.6	28.4	72.7	27.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42.4	57.6	43.3	56.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0.7	89.3	15.1	84.9
	100억원 이상	-	-	3.8	96.2	2.9	97.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기업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비율임

3) 2020, 2022년 매출액 규모범주가 다름

자료: 1) 중소기업청·〈재정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0)〉,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130.

2) 중소기업청·〈재정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2)〉,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13.

3) 중소기업청·〈재정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4)〉,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324-325.

4) 중소기업청·〈재정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5)〉,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49.

- 장애인기업의 조직형태 비율은 개인사업체가 86.3%, 회사법인이 13.7%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모두 증감을 반복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89.7%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52.7%가 회사법인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개인사업체의 비율이 회사법인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원 미만에서 개인사업체 비율이 대다수이고, 10억원 이상에서는 회사법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표 6-4-3〉 장애인기업 사업체 유형 -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

구분		2020		2022		2023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단독 사업체	다수 사업체
전 체		97.6	2.4	96.5	3.5	98.0	2.0
규모별	소상공인	98.2	1.8	96.6	3.4	98.3	1.7
	중소기업	92.1	7.9	95.4	4.6	94.8	5.2
제조업		96.6	3.4	97.2	2.8	97.6	2.4
도매 및 소매업		97.4	2.6	98.2	1.8	98.1	1.9
숙박 및 음식점업		98.6	1.4	97.0	3.0	99.5	0.5
개인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5.2	4.8	92.3	7.7	96.3	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3.8	6.2	91.5	8.5	98.3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9.3	0.7	98.7	1.3	99.5	0.5
	건설업	96.2	3.8	94.1	5.9	95.8	4.2
업종별	정보통신업	92.6	7.4	93.4	6.6	95.4	4.6
	부동산업	98.3	1.7	95.6	4.4	98.0	2.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4.4	5.6	95.7	4.3	98.0	2.0
	교육 서비스업	96.7	3.3	91.0	9.0	96.3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9.3	0.7	99.2	0.8	100.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9.7	0.3	90.8	9.2	99.6	0.4
	5천만원 미만	-	-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	-
5억원 이상		-	-	-	-	-	-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억원 이하	98.3	1.7	-	-	-	-
	5 ~ 10억원 이하	96.4	3.6	-	-	-	-
	10 ~ 50억원 이하	93.2	6.8	-	-	-	-
	50 ~ 100억원 이하	91.1	8.9	-	-	-	-
	100 ~ 300억원 이하	85.3	14.7	-	-	-	-
	300억원 초과	79.3	20.7	-	-	-	-
	5천만원 미만	-	-	96.6	3.4	99.1	0.9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96.4	3.6	97.1	2.9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96.8	3.2	98.2	1.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96.3	3.7	97.4	2.6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95.4	4.6	94.2	5.8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94.5	5.5	93.6	6.4
100억원 이상		-	-	93.1	6.9	90.5	9.5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기업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비율임

3) 2020, 2022년 매출액 규모별주가 다름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0).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131.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2).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14.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4).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21.

4)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5).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51.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단독사업체가 98.0%이며, 다수사업체가 2.0%임

• 장애인기업의 사업체 유형은 규모, 업종 및 전체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체의 비율이 다수사업체 비율보다 높음

(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표 6-4-4〉 장애인기업 근로자 수- 연도별, 규모별, 업종별, 전체 매출액 규모별

(단위: 명, %)

구분		2020			2022			2023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체	장애인 종사자	장애인 종사자 비율	
전 체		402,232	120,683	30.0	544,840	175,581	32.2	578,280	183,861	31.8	
규모별	소상공인	267,726	108,614	40.6	345,576	151,879	43.9	400,389	164,519	41.1	
	중소기업	134,506	12,069	9.0	199,264	23,701	11.9	177,890	19,342	10.9	
제조업		109,654	22,428	20.5	126,628	28,636	22.6	134,542	29,750	22.1	
도매 및 소매업		90,398	35,275	39.0	118,787	51,846	43.6	118,177	52,335	44.3	
숙박 및 음식점업		58,058	23,208	40.0	66,818	24,954	37.3	68,100	26,849	39.4	
개인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392	379	15.8	2,989	603	20.2	3,862	655	1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505	3,029	20.9	20,953	5,642	26.9	24,129	6,264	26.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671	10,928	52.9	23,343	12,710	54.4	24,497	13,134	53.6	
	기타	건설업	47,171	6,689	14.2	99,944	22,544	22.6	110,598	24,505	22.2
업종별		정보통신업	4,542	957	21.1	11,438	2,552	22.3	11,200	2,946	26.3
		부동산업	11,507	5,023	43.6	18,256	7,549	41.4	17,718	7,259	41.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274	2,973	18.3	25,182	5,952	23.6	33,465	6,188	18.5
		교육 서비스업	7,137	2,394	33.5	7,156	2,762	38.6	8,902	3,341	3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913	2,207	22.3	8,763	3,369	38.4	9,462	3,647	3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10	5,193	51.9	14,583	6,462	44.3	13,627	6,987	51.3
		5천만원 미만	-	-	-	-	-	-	-	-	-
전체 매출액 규모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	-	-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	-	-	-	-	
		5억원 이상	-	-	-	-	-	-	-	-	
		5억원 이하	226,280	98,893	43.7	-	-	-	-	-	
		5 ~ 10억원 이하	52,758	10,085	19.1	-	-	-	-	-	
		10 ~ 50억원 이하	100,675	9,989	9.9	-	-	-	-	-	
		50 ~ 100억원 이하	18,533	1,428	7.7	-	-	-	-	-	
		100 ~ 300억원 이하	3,975	284	7.1	-	-	-	-	-	
		300억원 초과	10	3	33.3	-	-	-	-	-	
		5천만원 미만	-	-	-	122,679	70,161	57.2	124,457	70,764	56.9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56,091	25,058	44.7	59,718	27,029	45.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	164,972	51,153	31.0	175,409	54,394	31.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	63,273	13,193	20.9	69,807	14,538	20.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	-	109,153	13,092	12.0	115,304	14,646	12.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	23,406	1,680	7.2	26,565	1,640	6.2
		100억원 이상	-	-	-	5,265	1,243	23.6	7,019	848	12.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종사자 수와 비율은 표본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비율임

3) 2020, 2022년 매출액 규모범주가 다름

자료: 1)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0),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142.

2)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2), 「2021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56.

3)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4),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246.

4) 중소기업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2025),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p.100.

- 장애인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578,280명이며, 그중 장애인 종사자 수는 183,861명으로 31.8%를 차지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장애인 종사자 비율이 41.1%로 거의 절반 가까이 장애인 종사자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10.9%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53.6%로 가장 높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1.3%, 도매 및 소매업 44.3% 등의 순임
- 전체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부터 100억 미만까지는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종사자 비율이 줄어드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장애인 종사자 비율이 12.1%로 높게 나타남



5) 취업 관련 활동 경험

(1) 취업 관련 활동 경험 현황

〈표 6-5-1〉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단위: %)

구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성	여성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1.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5.2	7.1	7.7	7.3	5.5	5.4	5.6	4.5	6.2
2. 신문, 취업정보지 등을 통해 채용, 창업정보 탐색	2.9	3.5	4.3	3.9	2.6	2.9	2.1	1.6	3.4
3. 공공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취업알선	5.1	5.3	8.4	8.4	4.3	3.7	6.2	6.8	3.2
4. 국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근로	4.4	5.6	6.8	4.0	4.4	4.1	5.2	8.3	2.6
5. 민간 취업알선업체 구직등록, 취업알선	3.5	2.6	3.7	3.9	2.5	2.7	1.8	2.2	2.6
6.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	12.5	12.9	15.7	14.5	10.4	9.5	13.1	12.5	9.4
7. 직접 일자리에 채용 문의	4.9	4.7	4.2	4.3	2.4	2.4	2.5	1.1	3.0
8. 다른 일자리에 이력서 제출	1.6	1.5	1.2	1.6	0.8	0.7	1.1	0.5	0.9
9. 다른 일자리의 면접 참여	1.2	1.4	1.2	1.7	0.4	0.4	0.3	0.2	0.4
10. 공공/민간/사업체/학교 직업교육훈련 참여	0.5	0.8	0.5	0.3	0.2	0.1	0.3	0.1	0.2
11. 사설학원 외국어, 자격 취득, 채용시험 등 준비	0.1	0.3	0.3	0.2	0.2	0.1	0.3	0.1	0.2
12. 자격증 취득 준비	1.2	0.7	0.8	0.8	0.8	0.8	1.0	0.7	0.9
13. 일자리에서의 현장실습이나 인턴	0.2	0.5	0.3	0.1	0.2	0.2	0.3	0.1	0.3
14. 채용시험 준비	0.2	0.3	0.7	0.1	0.3	0.1	0.6	0.1	0.4
15. 창업을 위한 활동	0.4	2.1	1.6	1.6	1.8	1.7	2.1	1.9	1.8
16. 장애인 자립, 창업 자금 등 지원, 융자	0.4	0.4	0.4	0.1	0.3	0.3	0.2	0.2	0.3
17. 기타	0.1	0.1	0.0	0.1	0.0	0.0	0.0	0.0	0.0

주: 1) 3, 4, 5, 6, 7, 15는 지난조사 이후 구직경험이 없는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응답 받음

2) 8, 9는 취업자에게 응답 받음

3) '활동 경험 비율'은 모름/응답거절을 포함하여 산출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24),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 p.190, 354.

- 전체 장애인 중 지난조사 이후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은 '주변 지인에게 일자리 정보 제공이나 취업 부탁'이 10.4%로 가장 높으며, '인터넷을 통한 채용, 창업정보 탐색' 5.5%, '국가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근로' 4.4% 등의 순임

(2) 직업교육훈련 경험

〈표 6-5-2〉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현황

(단위: %)

구 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성	여성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험 횟수									
1회	99.4	93.8	97.9	95.0	92.4	90.2	94.0	100.0	86.2
2회 이상	0.6	6.2	2.1	5.0	7.6	9.8	6.0	0.0	13.8
종류									
일반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9.6	13.2	15.8	10.6	5.7	13.1	0.0	0.0	9.8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	48.6	8.3	59.1	13.8	28.6	28.3	28.9	40.2	20.4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4.5	24.2	4.9	24.3	12.2	17.7	8.0	20.7	6.2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	10.6	14.4	8.7	0.0	18.2	4.3	28.9	39.1	3.2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훈련	1.8	1.0	0.7	8.3	0.0	0.0	0.0	0.0	0.0
학교 직업교육훈련	7.8	4.7	3.4	3.1	3.9	8.9	0.0	0.0	6.6
사설학원 교육훈련	9.9	12.7	0.2	37.8	9.4	20.3	1.0	0.0	16.1
기타	0.8	0.1	2.8	0.0	0.0	0.0	0.0	0.0	0.0
모름/응답거절	6.4	21.4	4.3	2.1	21.9	7.4	33.3	0.0	37.6
분야									
농림어업, 광업 분야	1.4	0.0	12.4	0.0	0.0	-	-	-	-
섬유 분야	0.0	0.0	0.0	0.0	0.0	-	-	-	-
기계장비 및 금속 분야	0.8	0.0	0.0	7.5	0.0	-	-	-	-
건설 및 운송 분야	0.0	2.2	0.0	1.4	1.4	-	-	-	-
전기·전자 분야	3.1	2.6	0.0	4.4	4.7	-	-	-	-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	17.1	20.2	9.4	14.2	18.2	-	-	-	-
서비스 분야	27.6	42.1	17.0	34.3	39.2	-	-	-	-
사무, 업무관리 분야	8.8	7.4	6.3	3.8	1.4	-	-	-	-
의료 분야	38.0	16.5	6.9	0.0	4.3	-	-	-	-
산업응용 분야	0.0	0.0	4.9	4.5	10.4	-	-	-	-
공예 분야	0.0	0.6	0.0	0.0	0.0	-	-	-	-
공무원·교원, 일반 입사 준비	0.0	0.4	0.0	0.0	0.0	-	-	-	-
토익, 토플 등 외국어 학습	2.6	1.0	0.0	9.6	0.2	-	-	-	-
기타	0.0	0.0	3.0	17.3	16.8	-	-	-	-
모름/응답거절	0.7	7.0	40.1	3.0	3.2	-	-	-	-

주: 1) *취업 및 취업 유지 관련 활동 경험 및 성과*에서 '공공/민간/사업체/학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사설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응답 받음

2) 경험횟수는 훈련자 수 기준이며, 훈련 종류 및 분야는 훈련 총 수 기준임

자료: 장애인고용공단(2024),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8차조사) p.197-198, 358.

- 지난조사 이후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장애인의 경험횟수 중 1회는 92.4%인 반면, 2회 이상은 7.6%로 현저히 낮음
-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직업교육훈련의 종류를 보면,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이 28.6%로 가장 높고, 모름 21.9%, 장애인 전문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이 18.2%순임
 - 사설학원 교육훈련의 경우 2022년 37.8%에서 2023년 9.4%로 28.4%p 감소하였고, 민간 직업훈련기관 훈련의 경우 2022년 24.3%에서 2023년 12.2%로 12.1%p 감소함. 반면, 장애인 전문 공공 직업훈련기관 훈련의 경우 2022년 13.8%에서 2023년 28.6%로 14.8%p 증가하였음
-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직업교육 분야별 경우 서비스 분야가 39.2%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가 18.2%, 기타분야가 16.8% 등의 순임
- 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2년 34.3%에서 2023년 39.2%로 4.9%p 증가하였고 기타의 경우 17.3%에서 16.8%로 0.5%p 감소한 반면,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4.0% 증가함



6) 직업재활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표 6-6-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 수	종사자 수		이용 장애인 수
		인원	시설 평균	
2015	560	3,133	5.6	16,414
2016	582	3,256	5.6	17,131
2017	625	3,732	6.0	17,841
2018	651	4,024	6.2	18,205
2019	683	4,362	6.4	19,056
2020	720	4,688	6.5	19,734
2021	773	5,021	6.5	20,504
2022	792	5,160	6.7	20,819
2023	811	5,338	6.6	21,225
2024	815	5,595	6.9	21,761
서울	136	957	7.0	4,102
부산	45	245	5.4	1,224
대구	41	220	5.4	1,192
인천	44	284	6.5	1,097
광주	30	246	8.2	905
대전	34	197	5.8	892
울산	17	84	4.9	330
세종	8	50	6.3	208
경기	189	1,514	8.0	4,912
강원	39	225	5.8	806
충북	28	242	8.6	944
충남	31	225	7.3	844
전북	30	166	5.5	693
전남	24	152	6.3	581
경북	46	293	6.4	1,237
경남	61	340	5.6	1,368
제주	12	155	12.9	426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5.

-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815개소, 종사자 5,595명, 이용 장애인 21,761명으로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함
- 시설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89개소로 가장 많으며 서울 136개소, 경남 61개소, 부산 45개소 등의 순임
- 시설 평균 종사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2.9명으로 가장 많으며, 충북 8.6명, 광주 8.2명 등의 순임
- 이용 장애인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912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4,102명, 경남 1,368명, 경북 1,237명 순으로 나타남

〈표 6-6-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지적	자폐성	지체	정신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기타	
2019	계	19,056 (100.0)	14,328 (75.2)	1,317 (6.9)	1,055 (5.5)	945 (5.0)	509 (2.7)	445 (2.3)	324 (1.7)	50 (0.3)	45 (0.2)	38 (0.2)
	근로 장애인	12,088 (100.0)	8,797 (72.8)	807 (6.7)	888 (7.3)	664 (5.5)	242 (2.0)	300 (2.5)	289 (2.4)	37 (0.3)	36 (0.3)	28 (0.2)
	훈련 장애인	6,968 (100.0)	5,531 (79.4)	510 (7.3)	167 (2.4)	281 (4.0)	267 (3.8)	145 (2.1)	35 (0.5)	13 (0.2)	9 (0.1)	10 (0.1)
2020	계	19,734 (100)	14,815 (75.1)	1,073 (5.4)	940 (4.8)	1,427 (7.2)	502 (2.5)	470 (2.4)	365 (1.8)	46 (0.2)	48 (0.2)	48 (0.2)
	근로 장애인	12,712 (100)	9,251 (72.8)	905 (7.1)	682 (5.4)	854 (6.7)	261 (2.1)	320 (2.5)	329 (2.6)	33 (0.3)	40 (0.3)	37 (0.3)
	훈련 장애인	7,022 (100)	5,564 (79.2)	168 (2.4)	258 (3.7)	573 (8.2)	241 (3.4)	150 (2.1)	36 (0.5)	130 (1.9)	8 (0.1)	11 (0.2)
2021	계	20,504 (100)	15,421 (75.2)	1,072 (5.2)	952 (4.6)	1,534 (7.5)	490 (2.4)	489 (2.4)	400 (2)	43 (0.2)	56 (0.3)	47 (0.2)
	근로 장애인	13,600 (100)	9,954 (73.2)	924 (6.8)	686 (5)	962 (7.1)	247 (1.8)	346 (2.5)	363 (2.7)	31 (0.2)	48 (0.4)	39 (0.3)
	훈련 장애인	6,904 (100)	5,467 (79.2)	148 (2.1)	266 (3.9)	572 (8.3)	243 (3.5)	143 (2.1)	37 (0.5)	12 (0.2)	8 (0.1)	8 (0.1)
2022	계	20,819 (100)	15,588 (74.9)	1,023 (4.9)	986 (4.7)	1,615 (7.8)	498 (2.4)	492 (2.4)	397 (1.9)	48 (0.2)	61 (0.3)	116 (0.6)
	근로 장애인	14,228 (100)	10,441 (73.4)	888 (6.2)	712 (5)	1,050 (7.4)	257 (1.8)	352 (2.5)	352 (2.5)	36 (0.3)	51 (0.4)	89 (0.6)
	훈련 장애인	6,591 (100)	5,147 (78.1)	135 (2.0)	274 (4.2)	565 (8.6)	241 (3.7)	140 (2.1)	45 (0.7)	12 (0.2)	10 (0.2)	27 (0.4)
2023	계	21,225 (100.0)	15,998 (75.4)	1,699 (8.0)	910 (4.3)	1,030 (4.9)	511 (2.4)	490 (2.3)	375 (1.8)	66 (0.3)	41 (0.2)	105 (0.5)
	근로 장애인	14,570 (100.0)	10,820 (74.3)	1,122 (7.7)	790 (5.4)	737 (5.1)	255 (1.8)	347 (2.4)	336 (2.3)	54 (0.4)	29 (0.2)	80 (0.5)
	훈련 장애인	6,655 (100.0)	5,178 (77.8)	577 (8.7)	120 (1.8)	293 (4.4)	256 (3.8)	143 (2.1)	39 (0.6)	12 (0.2)	12 (0.2)	25 (0.4)
2024	계	21,761 (100.0)	16,364 (75.2)	1,761 (8.1)	926 (4.3)	1,063 (4.9)	510 (2.3)	518 (2.4)	393 (1.8)	65 (0.3)	47 (0.2)	114 (0.5)
	근로 장애인	15,024 (100.0)	11,110 (73.9)	1,186 (7.9)	803 (5.3)	774 (5.2)	261 (1.7)	365 (2.4)	351 (2.3)	57 (0.4)	36 (0.2)	81 (0.5)
	훈련 장애인	6,737 (100.0)	5,254 (78.0)	575 (8.5)	123 (1.8)	289 (4.3)	249 (3.7)	153 (2.3)	42 (0.6)	8 (0.1)	11 (0.2)	33 (0.5)

주: 장애유형 중 기타에는 신장, 안면, 심장, 정루·요루, 간, 호흡기 장애인이 포함됨
 자료: 1) (2019년~2022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p.4.
 2) (2023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한 장애인의 수는 21,761명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
- 장애유형별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75.2%로 가장 많고, 자폐성장애 8.1%, 정신장애 4.9%, 지체장애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중 근로장애인은 15,024명, 훈련장애인은 6,737명으로 나타남



〈표 6-6-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임금 - 시설유형별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대비증감	
								수치	비율
전체시설	근로장애인임금	617	527	542	648	680	694	14	2.1
	훈련장애인수당	97	104	90	94	106	110	4	3.8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임금	1,160	1,172	1,206	1,255	1,312	1,307	△5	△0.4
	훈련장애인수당	181	166	80	184	184	188	4	2.2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임금	464	456	518	498	531	540	9	1.7
	훈련장애인수당	100	104	92	99	112	117	5	4.5
직업적응훈련시설	훈련장애인수당	13	4	4.9	47	56	56	-	-

주: 1) 월 평균 임금 및 수당 계산 시 임금을 받지 않는 이용장애인 제외

2)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임금 및 수당

자료: 1) (2019년~2022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분석보고서」 p.5.

2) (2023년~)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694천원, 훈련장애인수당은 110천원임. 이는 전년대비 각각 14천원, 4천원 증가한 수치임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1,307천원, 훈련장애인수당은 188천원이고, 보호작업장에서 일한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540천원, 훈련장애인 수당은 117천원임.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일한 훈련장애인의 임금은 56천원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나뉨
- 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
-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임(직업적응훈련시설은 20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시설됨)

(출처) 보건복지부(2019), 「2019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III 권.

(2)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표 6-6-4〉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 일자리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연도	2021	24,773	9,233	13,724	1,816
	2022	30,330	11,250	16,816	2,264
	2023	32,446	12,166	17,890	2,390
	2024	34,762	12,349	19,701	2,712
		(110.2)	(106.3)	(113.9)	(102.8)
성별	남	19,602	6,801	11,153	1,648
	여	15,160	5,548	8,548	1,064
연령별	29세 이하	6,323	1,813	3,658	852
	39세 이하	4,037	1,702	1,894	441
	49세 이하	4,017	1,942	1,822	253
	59세 이하	4,953	2,583	2,091	279
	65세 미만	3,377	1,774	1,350	253
	65세 이상	12,055	2,535	8,886	634
장애유형	지체장애	11,532	5,224	6,308	-
	뇌병변장애	2,843	1,311	1,532	-
	시각장애	3,618	917	1,359	1,342
	청각장애	2,882	919	1,963	-
	언어장애	246	101	145	-
	지적장애	9,365	2,220	5,843	1,302
	정신장애	2,094	674	1,420	-
	자해성장애	746	205	473	68
	신장장애	859	486	373	-
	심장장애	70	48	22	-
	호흡기장애	93	41	52	-
	간장애	90	57	33	-
	안면장애	32	21	11	-
	장루·요루장애	117	54	63	-
	뇌전증장애	136	71	65	-
등급외	39	-	39	-	
장애정도	심한	22,010	7,223	12,263	2,524
	심하지 않은	12,713	5,126	7,399	188
	등급 외	39	-	39	-
지역	서울	4,729	1,943	2,421	365
	부산	2,154	974	990	190
	대구	1,494	541	765	188
	인천	1,111	544	367	200
	광주	1,430	535	710	185
	대전	1,211	320	642	249
	울산	804	291	397	116
	세종	186	86	98	2
	경기	5,370	2,087	3,031	252
	강원	1,613	610	916	87
	충북	1,641	482	1,035	124
	충남	1,813	809	894	110
	전북	1,997	634	1,196	167
	전남	2,692	598	1,961	133
	경북	2,812	827	1,911	74
	경남	2,456	937	1,297	222
	제주	1,249	131	1,070	48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는 참여율(배정인원 대비 참여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은 34,762명으로 참여율은 110.2%임. 일자리 유형별로는 '복지일자리'의 참여인원이 19,701명 (참여율 113.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형일자리' 12,349명, '특화형일자리' 2,712명 순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는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참여자 수는 19,602명으로 여성 15,160명 보다 더 많으며, 모든 일자리 유형에서 남성의 참여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참여자 수가 12,055명으로 가장 많고, 29세 이하 6,323명, 59세 이하 4,953명 순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의 참여자 수는 11,532명으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 9,365명, 시각장애 3,618명 등의 순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의 참여자 수는 22,010명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2,713명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37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29명, 경북 2,812명, 전남 2,692명 등의 순임

※※ 장애인일자리사업은?(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일자리 사업 유형
 - 일반형일자리: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실무 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해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직무형태로는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이 있음
 - 복지일자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가 있음
 - 특화형일자리: 미취업 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직무형태로는 시각 장애인인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가 있음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및 지원자 수

〈표 6-6-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연도	계	직업 재활센터	직업 평가센터	장애인 단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직업재활 프로그램 수행기관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보호 작업시설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연도	2019	161	33	6	30	73	1	5	13
	2020	166	33	6	30	73	1	5	18
	2021	171	33	6	30	71	3	5	23
	2022	167	31	6	30	71	3	4	22
	2023	171	33	6	30	73	1	5	23
	2024	163	31	6	26	68	1	5	26
지역	서울	42	10	1	11	18	-	-	2
	부산	10	2	1	2	4	-	-	1
	대구	10	1	1	2	4	-	1	1
	인천	7	-	-	1	4	-	-	2
	광주	10	1	1	-	4	-	2	2
	대전	7	1	-	1	2	-	-	3
	울산	3	1	-	1	1	-	-	-
	세종	1	1	-	-	-	-	-	-
	경기	23	4	1	3	9	1	1	4
	강원	4	1	-	-	3	-	-	-
	충북	6	2	-	-	4	-	-	-
	충남	5	1	-	1	1	-	-	2
	전북	5	2	-	1	2	-	-	-
	전남	8	2	-	-	1	-	-	5
	경북	12	1	1	1	8	-	-	1
	경남	9	-	-	2	3	-	1	3
	제주	1	1	-	-	-	-	-	-

주: 1) 각 연도 12월 말 기준

2) 2018년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추가됨

3) 2019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지원고용의 고용노동부 이관으로 인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전체 수행기관 수는 163개소이며, 기관유형별로는 보호작업시설 68개소, 직업재활센터 31개소, 장애인단체 및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각 26개소 등의 순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까지 전체 수행기관 수는 증감을 반복하며, 2024년은 전년도에 비해 8개소 감소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행기관 수는 서울이 42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23개소, 경북 12개소, 부산, 대구, 광주 각 10개소 등의 순임



〈표 6-6-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의 사업별 지원자 수 - 연도별, 사업별

(단위: 명)

구분		계	구인등록	구직상담	직업평가	취업알선	취업확정	적응지도	적응훈련		
									계	수료	취업
연도	2019	82,911	11,864	25,662	14,270	9,179	7,236	10,294	4,406	350	822
	2020	57,509	9,281	17,166	7,897	6,788	4,925	8,095	3,357	116	311
	2021	59,954	9,676	17,469	8,547	6,926	5,073	8,134	4,129	205	388
	2022	55,870	9,162	16,361	7,385	6,782	5,268	6,718	4,194	247	311
	2023	56,153	9,400	17,160	5,726	7,180	5,560	7,176	3,951	1,292	191
	2024	66,037	16,724	17,530	7,403	6,985	6,042	7,784	3,569	3,366	203
지역	서울	17,178	4,713	4,982	1,805	2,166	234	2,714	564	524	40
	부산	3,825	1,047	1,121	519	366	201	418	153	145	8
	대구	4,034	1,154	1,148	697	349	178	374	134	100	34
	인천	1,534	275	362	158	106	384	157	92	87	5
	광주	3,479	1,092	938	679	210	131	257	172	167	5
	대전	2,408	780	533	166	278	231	305	115	105	10
	울산	1,467	424	360	46	239	121	240	37	30	7
	세종	860	160	226	55	138	162	107	12	9	3
	경기	8,026	1,878	2,531	908	954	356	726	673	652	21
	강원	1,884	368	308	85	187	146	229	561	554	7
	충북	2,513	536	588	232	369	302	355	131	104	27
	충남	3,927	479	601	329	187	1,947	231	153	153	0
	전북	2,286	511	774	243	259	101	343	55	48	7
	전남	4,925	1,928	853	316	458	740	381	249	239	10
	경북	3,533	560	1,170	688	305	311	259	240	237	3
	경남	2,619	510	700	380	270	223	342	194	186	8
	제주	1,539	309	335	97	144	274	346	34	26	8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지원자 수는 66,03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884명 증가함
- 사업 내용별로 지원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구직상담으로, 2024년 기준 총 17,530명이 구직상담을 지원 받음
- 한편 취업이 확정된 지원자는 2024년 기준 6,04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이란?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출처: 중증 장애인직업재활 통합관리 시스템(<https://vr.koddi.or.kr>))

(4)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표 6-6-7〉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실적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국가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2007	155,702	-	48,158	-	1,153	-	30,454	-	44,513	-	32,577	-
2008	132,016	-	41,950	-	1,927	-	39,063	-	30,119	-	20,884	-
2009	165,811	-	44,153	-	3,576	-	56,113	-	39,545	-	26,000	-
2010	190,179	-	28,018	-	670	-	71,250	-	42,584	-	48,327	-
2011	235,808	0.55	45,780	0.47	1,288	1.06	59,286	0.53	50,672	1.19	80,070	0.46
2012	251,828	0.49	52,437	0.62	979	0.89	52,864	0.40	37,361	0.68	109,166	0.62
2013	295,836	0.72	40,144	0.62	1,563	1.12	84,422	0.71	36,814	0.68	134,456	0.76
2014	352,998	0.91	59,541	1.06	1,729	1.27	90,416	0.83	34,299	0.72	168,742	0.97
2015	464,046	1.02	74,709	1.10	2,569	1.36	97,124	0.80	43,740	0.89	248,473	1.15
2016	531,214	1.13	96,447	1.41	4,384	2.37	111,123	0.90	46,307	0.89	277,337	1.23
2017	538,701	1.01	107,893	1.17	1,822	1.12	87,860	0.76	49,198	0.81	293,750	1.11
2018	575,701	1.07	111,662	1.18	2,370	1.36	105,712	0.85	51,018	0.80	307,308	1.21
2019	641,720	1.14	126,506	1.32	2,695	1.45	131,979	0.92	65,006	0.93	318,229	1.25
2020	702,391	1.12	137,521	1.21	2,521	1.18	150,340	0.92	73,230	1.11	341,300	1.20
2021	704,391	0.99	131,670	0.76	2,506	1.26	164,282	0.98	75,914	1.06	332,525	1.10
2022	700,537	1.01	126,036	0.92	2,660	1.61	155,893	0.89	86,717	0.96	331,891	1.13
2023	761,370	1.07	114,324	0.88	2,717	2.44	175,210	0.91	104,805	1.08	367,031	1.24
2024	789,554	1.09	104,303	0.83	1,939	1.92	184,205	0.93	120,122	1.16	380,924	1.30

주: 1) 각 연도 12월 말 기준

2) 우선구매율은 총 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의 비율을 의미함

3) 2010년 까지는 18개 품목별 우선구매, 2011년부터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0% 이상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함

4) 보건복지부는 본부 구매실적에 한함(소속 및 산하기관 제외)

5) 합계는 보건복지부 구매실적이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액은 789,554백만원이고, 우선구매율은 1.09%로 의무구매비율인 1.0%를 지킨 것으로 나타남. 기관 유형별로 우선구매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교육청', '공기업 등'은 각각 1.92%, 1.16%, 1.30%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구매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우선구매율은 2015년에 1.0%를 초과 달성한 이후 202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의무구매비율인 1.0%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생산물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물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3조)



〈표 6-6-8〉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2022) - 지역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우선 구매액	우선 구매율
연도	2016	87,581	0.83	13,425	0.47	74,157	0.96
	2017	87,860	0.76	13,983	0.50	73,877	0.84
	2018	105,712	0.85	16,328	0.57	89,384	0.93
	2019	131,979	0.92	22,069	0.70	109,910	0.98
	2020	150,340	0.92	25,016	0.69	125,325	0.98
	2021	164,281	0.98	26,473	0.72	137,808	1.05
	2022	155,893	0.89	24,597	0.68	131,296	0.95
	2023	175,210	0.91	29,030	0.74	146,180	0.96
	2024	184,205	0.93	28,648	0.73	155,556	0.98
지역	서울	30,127	1.10	9,859	0.95	20,268	1.20
	부산	3,311	0.50	1,138	0.61	2,173	0.46
	대구	4,471	0.92	855	0.53	3,615	1.12
	인천	11,543	1.44	2,592	1.07	8,951	1.61
	광주	3,053	1.48	432	0.75	2,620	1.77
	대전	1,910	0.55	845	0.51	1,065	0.59
	울산	4,040	1.04	823	0.65	3,217	1.24
	세종	504	0.39	-	-	-	-
	경기	46,419	1.18	1,007	0.28	45,412	1.27
	강원	9,067	0.64	703	0.44	8,364	0.66
	충북	5,688	0.69	461	0.40	5,227	0.74
	충남	23,497	1.63	1,239	0.65	22,258	1.78
	전북	8,929	0.98	1,338	2.11	7,591	0.89
	전남	7,434	0.46	895	0.42	6,538	0.47
	경북	9,351	0.48	1,299	0.50	8,052	0.48
	경남	11,098	0.67	894	0.51	10,204	0.69
	제주	3,763	1.25	-	-	-	-

주: 1)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

2) 우선구매율은 총 구매액 대비 우선구매액의 비율을 의미함

3) 2010년 까지는 18개 품목별 우선구매, 2011년부터 품목에 상관없이 총 구매액의 1.0% 이상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함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p.2.

- 2024년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184,205백만원이고, 우선구매율은 0.93%로 의무구매비율인 1.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구매율이 0.98%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구매율이 0.73%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선구매액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우선구매율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우선구매율을 살펴보면, 충남이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은 0.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제주)은 우선구매비율(1.0%)을 초과 달성하였고, 그 외 지역은 달성하지 못함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 6-6-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근로사업장	보호사업장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연도	2017	544	56	333	149	6
	2018	580	57	375	142	6
	2019	630	57	406	161	6
	2020	674	59	437	171	7
	2021	722	61	469	185	7
	2022	762	63	504	187	8
	2023	790	58	529	195	8
	2024	814	63	550	194	7
지역	서울	118	6	82	27	3
	부산	41	1	20	20	-
	대구	36	5	26	5	-
	인천	46	3	33	9	1
	광주	37	5	20	12	-
	대전	22	3	16	3	-
	울산	14	1	13	-	-
	세종	14	1	7	5	1
	경기	216	15	125	74	2
	강원	37	3	32	2	-
	충북	30	1	25	4	-
	충남	38	1	28	9	-
	전북	36	4	21	11	-
	전남	26	2	19	5	-
	경북	36	2	32	2	-
	경남	56	6	44	6	-
	제주	11	4	7	-	-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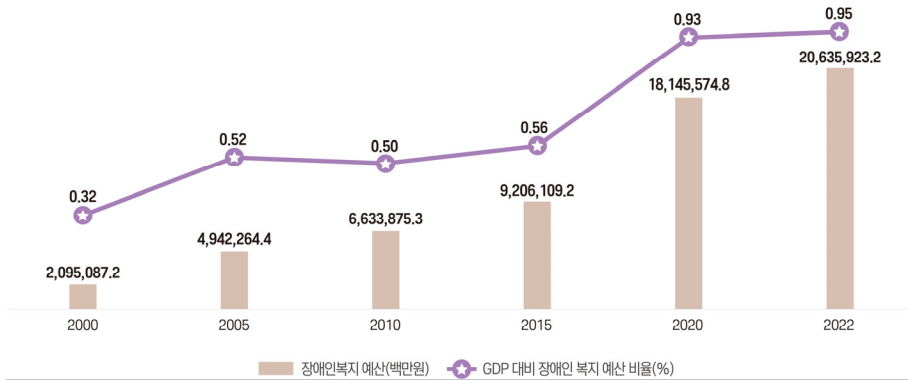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총 814개소로, 시설유형별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이 550개소로 가장 많고, '장애인복지단체' 19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 63개소,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7개소가 있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수는 경기도 216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118개소, 경남 56개소, 인천 46개소 등의 순임



7.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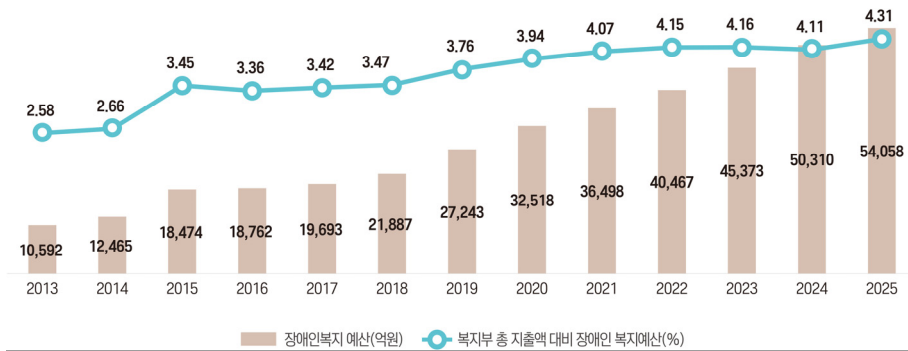
[그림 2-7-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그림 2-7-2]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규모 및 장애인복지예산



- 2022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은 20조 6,359억 2,320만원으로 GDP대비 0.95%임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은 2000년 0.32%에서 2022년 0.95%로 증가함
-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54,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48억원 증가함
-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4.31%로 전년(4.11%) 대비 증가함

1) 재정

(1) 장애인 복지 예산

〈표 7-1-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 연도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백만원)	2,095,087.2	2,509,898.7	2,989,397.7	3,586,354.8	4,485,395.5	4,942,264.4	5,520,371.3	6,009,966.9
비율	0.32	0.36	0.38	0.43	0.49	0.52	0.55	0.55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백만원)	6,672,889.0	7,104,927.1	6,633,875.3	7,245,329.5	7,916,354.9	8,097,000.4	8,314,408.4	9,206,109.2
비율	0.58	0.59	0.50	0.52	0.55	0.54	0.53	0.56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백만원)	9,750,760.6	11,019,111.2	12,168,501.5	13,629,452.3	18,145,574.8	19,399,974.6	20,635,923.2	
비율	0.56	0.60	0.64	0.71	0.93	0.93	0.95	

주: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은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s)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SOCX) Databas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검색일: 2025.6.5.)

- 2022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는 20조 6359억 2320만원으로 GDP 대비 0.95%임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은 2000년 0.32%에서 2009년 0.59%로 증가하였음. 2010년에는 0.50%로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2년 0.95%로 증가함

※※ OECD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SOCX) (출처: SOCX - Country Notes: Korea)

- OECD 사회지출(SOCX)에서 한국의 사회지출은 크게 노령(old age), 유족(survivors),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 related benefits), 보건(health), 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our market programmes), 실업(unemployment), 주거(housing), 기타 사회정책 영역(other social policy areas)로 구분됨
- 지출의 출처(2018년 이후)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제공하는 결산자료임
-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incapacity related benefits)는 장애연금(국민연금), 장애급여(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 휴업급여(산재보험),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됨



〈표 7-1-2〉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규모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 연도별

(단위: 억원,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 (억원)	총 지출액(A)	468,995	534,725	558,436	576,628	631,554	725,148
	예산(B)	294,705	332,300	331,784	339,450	376,546	450,879
	기금	174,290	202,425	226,652	237,178	255,008	274,269
총계(C)		1,246,530	1,847,392	1,876,213	1,969,345	2,188,659	2,724,292
장애인 복지예산 (백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227,238	1,826,750	1,856,284	1,949,184	2,167,865	2,724,292
	장애인재활지원	19,292	20,642	19,929	20,161	20,794	3.76
비율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A)	2.66	3.45	3.36	3.42	3.47	6.04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B)	4.23	5.56	5.65	5.80	5.81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 (억원)	총 지출액(A)	825,269	895,766	974,767	1,091,830	1,223,779	1,254,909
	예산(B)	515,094	559,035	622,729	681,447	741,794	723,680
	기금	310,175	336,731	352,038	410,383	481,986	531,229
총계(C)		3,251,800	3,649,788	4,046,710	4,537,284	5,031,048	5,405,787
장애인 복지예산 (백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재활지원	3,251,800	3,649,788	4,046,710	4,537,284	5,031,048	5,405,787
비율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A)	3.94	4.07	4.15	4.16	4.11	4.31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C/B)	6.31	6.53	6.50	6.66	6.78	7.47

주: 1)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은 내부지출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기준이며,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장애인복지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 규모: 보건복지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3.

2) 장애인복지예산: 대한민국 정부, 2025년도 예산, p.272.

-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액은 5조 4,057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7억 3,900만 원 증가함
 -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지출액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4.31%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함
 -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은 7.47%로 전년 대비 0.69%p 증가함

(2)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표 7-1-3〉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단위: 백만원,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	814,074	937,649	1,026,274	1,271,434	1,881,636
증가액	-	123,575	88,625	245,160	610,202
증가율	-	15.2	9.5	23.9	48.0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1,909,078	2,067,026	2,221,333	2,782,493	3,276,229
증가액	27,442	157,948	154,307	561,160	493,736
증가율	1.5	8.3	7.5	25.3	17.7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3,678,543	4,085,394	4,544,688	5,041,387	5,414,911
증가액	402,314	406,851	459,294	496,699	373,524
증가율	12.3	11.1	11.2	10.9	7.4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감하는 예산 비율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액(안)은 5,414,91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3,524백만원(7.4%) 증가함
•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



〈표 7-1-4〉 장애인정책국 예산 추이 - 연도별, 세부항목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증감액	증감률
합계	4,085,394	4,539,854	5,034,416	5,409,463	375,047	7.4
(일반회계) 계	4,062,222	4,532,630	5,024,272	5,400,579	376,307	7.5
장애수당(기초)	81,633	142,943	150,633	156,715	6,082	4.0
장애수당 (차상위 등)	60,785	72,054	68,518	71,939	3,421	5.0
장애정도심사 제도운영	38,821	42,684	43,805	51,812	8,007	18.3
장애인연금	832,631	878,663	893,157	884,658	△8,499	△1.0
장애인의료비	32,729	28,624	35,868	35,868	-	-
장애인실태조사	-	1,242	-	-	-	-
장애인보조기기지원	4,660	4,885	5,001	5,079	78	1.6
장애인자원관리	889	1,770	986	850	△136	△13.8
장애인자립자금지원	149	108	192	156	△36	△18.8
장애인활동지원	1,740,523	1,991,879	2,284,604	2,532,343	247,739	10.8
장애아동가족지원	149,151	175,706	194,047	232,654	38,607	19.9
여성장애인지원	2,764	2,513	2,544	2,589	45	1.8
발달장애인지원	208,017	256,886	357,738	402,962	45,224	12.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5,476	26,415	28,732	28,655	△77	△0.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22,396	634,600	669,549	690,308	20,759	3.1
한국장애인개발원지원	9,602	10,390	10,995	11,581	586	5.3
장애인단체지원	7,338	7,660	6,843	6,843	-	-
장애인일자리지원	185,315	207,299	222,695	234,510	11,815	5.3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8,918	7,325	9,432	9,565	133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4,367	5,621	4,962	4,626	△336	△6.8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사업	10,579	10,021	10,017	10,442	425	4.2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1,603	626	163	370	207	127.0
장애인 편의증진	-	-	989	1,015	26	2.6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21,428	19,551	19,911	20,352	441	2.2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촉진	2,268	2,405	2,720	2,900	180	6.6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	580	965	1,547	582	60.3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총액)	79	79	94	94	-	-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101	101	101	146	45	44.6
(증진자금) 계	23,172	7,224	10,144	8,884	△1,260	△12.4
재활병원 건립	500	4,000	7,000	5,500	△1,500	△21.4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할	782	684	684	684	-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1,890	2,540	2,460	2,700	240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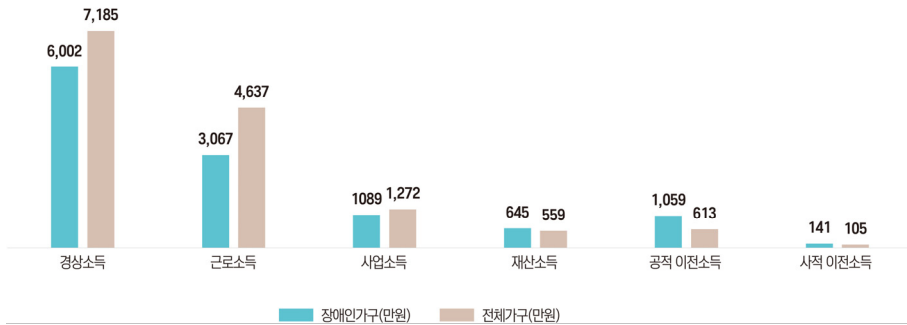
주: 증감액과 증감률은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을 비교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5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세부항목 중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액이 2,532,34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연금' 884,658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90,308백만원 등의 순임
- 2024년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배정된 31개의 항목 중 20개의 항목은 2024년 대비 예산이 증가하였고, 5개 항목은 유지, 6개의 항목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감률을 살펴보면,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127.0%로 가장 높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60.3%, '장애인정책국기본경비(비총액)' 44.6% 등의 순임. 반면 '재활병원 건립'이 △21.4%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자립자금지원'의 감소율이 △18.8%로 높게 나타났다

8. 소득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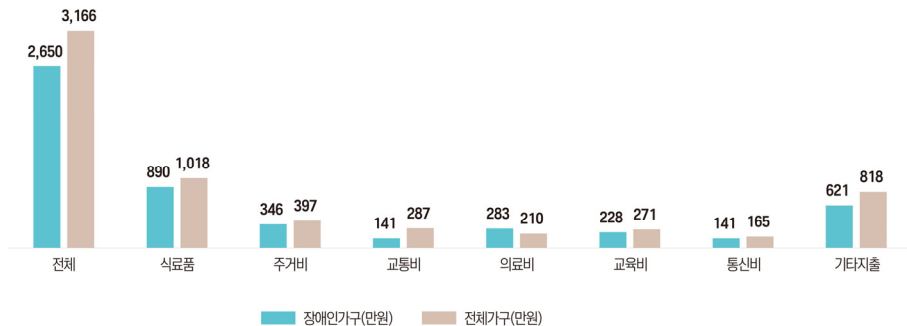
[그림 2-8-1]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전체가구 비교(2023년)



[그림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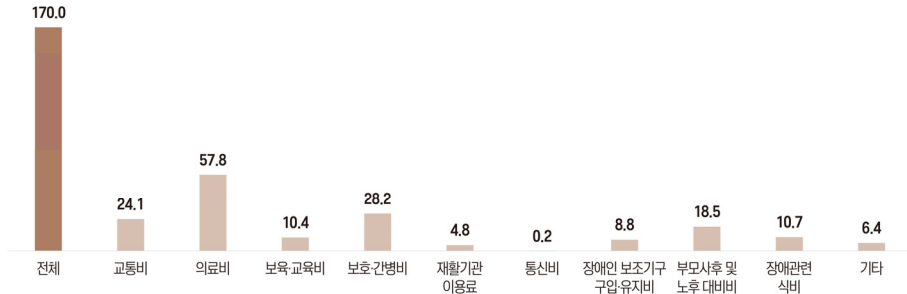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전체가구 비교(2023년)



- 2023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전체가구 7,185만원의 83.5% 수준임
-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51.1%, 공적이전 소득은 17.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가구는 각각 64.5%, 8.5% 수준임
- 2023년 연간 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연평균 2,650만원으로 전체가구 3,166만원의 83.7% 수준임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지출 비율이 약 10.7%로 전체가구 약 6.6%에 비해 약 4.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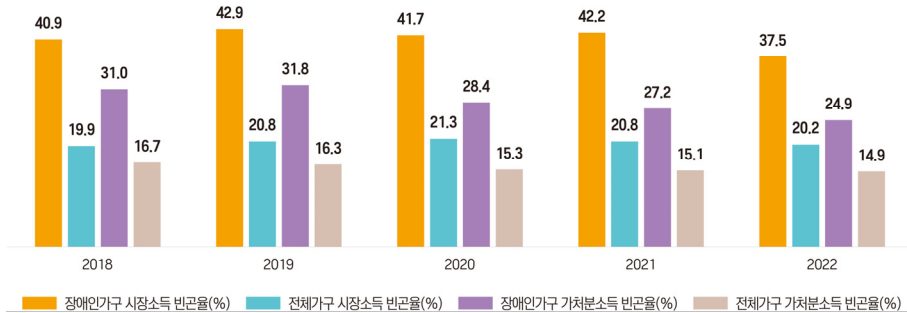
[그림 2-8-3]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 비용(2023년)



[그림 2-8-4]

연도별 빈곤율 - 전체 가구 비교



- 2023년 기준으로 월 평균 장래도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170.0천원으로 나타남
-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7.8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보호·간병비 28.2천원, 교통비 23.1천원 등의 순임
- 2022년 기준 장애인구 빈곤율(처분가득소득 기준)은 35.7%로 전체인구 14.9% 대비 2.4배 높음
- 2021년 대비 장애인구 빈곤율(처분가득소득 기준)은 가장 장애인구 1.2%, 전체인구 0.1%p 증가함

1) 소득

(1) 월평균 가구소득

〈표 8-1-1〉 장애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0	108.2	-	-	-	-	-	-	-	-	-	-	-	-	-	-	-
2005	157.2	-	-	-	-	-	-	-	-	-	-	-	-	-	-	-
2008	181.9	183.0	194.0	182.2	173.7	177.1	189.2	311.2	112.5	207.1	188.5	155.3	275.3	212.3	172.5	141.8
2011	198.2	204.4	179.4	198.2	185.6	227.1	215.8	297.7	148.1	230.2	181.1	208.2	243.7	108.0	128.4	148.0
2014	223.5	218.6	233.1	235.2	213.8	267.7	277.2	349.9	152.1	258.8	246.3	181.3	219.4	251.8	178.9	106.5
2017	242.1	243.2	227.7	239.9	209.2	310.9	294.0	435.6	180.4	251.4	283.4	239.3	376.3	428.3	209.4	304.5
2020	199.0	197.1	185.5	207.0	174.2	212.8	239.8	416.5	141.6	223.3	222.0	175.9	303.2	239.0	209.2	164.7
2023	305.8	310.4	307.3	332.1	244.8	326.5	354.6	527.0	225.6	320.4	364.3	253.1	493.6	340.2	264.7	259.5

주: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조사환경 악화(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를 고려하여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p.13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169.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1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18.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0.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0.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0.
 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19.

- 2023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305.8만원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527.0만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간장애 493.6만원, 심장장애 364.3만원, 지적장애 354.6만원 등의 순임
-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 225.6만원, 청각장애 244.8만원임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8-1-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연평균 가구소득 -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경상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020	4,986	2,469	912	454	1,010	142	6,180	3,855	1,135	432	657	101
2021	5,127	2,589	932	446	1,019	141	6,470	4,125	1,160	426	656	103
2022	5,450	2,784	979	513	1,033	142	6,762	4,390	1,206	436	625	106
2023	6,002	3,067	1089	645	1,059	141	7,185	4,637	1,272	559	613	105

주: 1)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2)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3)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5)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6)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7) 연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의미함

8)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 2023년부터 공적이전 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함(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2020년 자료부터 작성하여 제공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p.65.

-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연간)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임

• 전체가구는 2020년 6,180만원에서 2023년 7,18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

• 2023년 장애인가구 경상소득은 6,002만원으로 전체가구의 83.5% 수준에 불과함

• 2023년 장애인가구의 근로소득은 경상소득의 51.1%, 공적이전 소득은 경상소득의 17.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가구는 각각 64.5%, 8.5%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가가 전체가구에 비해 공적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보여줌

(3) 소득구간별 비중

〈표 8-1-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구간별 비중 - 연도별

(단위: %)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전체	1,000만원 미만	1,000-3,000만원 미만	3,000-5,000만원 미만	5,000-7,000만원 미만	7,000-10,000만원 미만	10,000만원 이상
2020	100.0	9.8	33.5	19.5	13.3	12.4	11.6	100.0	6.0	23.9	21.2	16.5	16.5	15.9
2021	100.0	9.0	32.6	21.6	13.0	12.3	11.5	100.0	5.8	22.8	20.4	16.3	16.6	18.0
2022	100.0	8.6	31.0	19.3	14.7	13.3	13.0	100.0	5.2	21.6	19.8	16.4	17.0	20.0
2023	100.0	6.5	29.7	19.7	14.2	14.2	15.6	100.0	4.6	20.1	19.5	15.9	17.3	22.6

주: 1) 연간 기준임

2)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 2023년부터 공적이전 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함(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2020년 자료부터 작성하여 제공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통계청 KOSIS. (검색일: 2025.05.25);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특성별 소득구간별 가구분포

- 2023년 기준 소득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36.2%가 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분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3,0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는 2023년 장애인 가구의 29.7%(전체가구 20.1%)가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원 미만 구간에 6.5%(전체가구 4.6%)의 분포를 보여 장애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소비

(1) 월평균 가구지출

〈표 8-2-1〉 장애인가구 월평균 가구지출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총계	장애인가구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0	98.9	-	-	-	-	-	-	-	-	-	-	-	-	-	-	-
2005	134.5	-	-	-	-	-	-	-	-	-	-	-	-	-	-	-
2008	155.5	156.3	160.6	158.7	146.7	147.8	166.8	263.8	95.4	179.1	168.4	137.2	248.6	189.0	151.1	125.8
2011	161.8	165.0	156.7	156.2	149.4	200.1	177.8	244.3	121.9	189.0	137.8	171.4	253.3	100.8	118.3	125.2
2014	170.6	165.9	182.1	166.7	164.9	199.3	215.1	310.9	122.0	207.2	198.5	148.0	209.5	212.3	154.2	102.0
2017	190.8	188.4	192.8	158.2	163.6	223.5	232.0	349.7	150.5	217.2	232.9	202.7	295.7	296.1	183.4	238.0
2020	178.5	176.2	181.4	180.4	150.2	188.9	220	338.8	134	207.6	201.3	153.5	239.9	180	176.9	154.8
2023	242.6	245.4	248.5	235.5	199.3	264.9	285.5	466.2	187.6	267.9	292.2	218.4	334.6	259.9	216.2	216.2

주: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 장애인 실태조사」 p.13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169.
 3)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1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18.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0.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0.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0.
 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19.

- 2023년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총 가구지출은 242.6만원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466.2만원으로 월평균 총 가구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간장애 334.6만원, 심장장애 292.2만원, 지적장애 285.5만원 등의 순임

(2) 비목별 소비지출액

〈표 8-2-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소비지출액 -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전체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지출
2016	2,015	594	269	184	228	202	140	397	2,473	709	304	317	162	260	172	550
2017	2,131	647	277	189	227	206	139	445	2,601	757	318	317	167	265	170	607
2018	2,205	670	279	183	236	214	133	491	2,692	793	315	318	177	263	166	660
2019	2,223	698	277	169	243	205	132	499	2,732	820	322	314	184	257	165	671
2020	2,310	721	295	182	260	204	138	510	2,766	868	330	297	186	254	168	663
2021	2,351	756	305	159	250	218	140	524	2,856	908	344	288	202	262	169	682
2022	2,484	826	329	151	257	227	138	556	2,987	969	367	283	199	266	165	738
2023	2,650	890	346	141	283	228	141	621	3,166	1,018	397	287	210	271	165	818

주: 1)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2)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3)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4)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5)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6)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7) 기타 소비지출: 의료, 오락 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8) 연간 기준으로 평균 소비 지출액을 의미함

9)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 통계청 KOSIS. (검색일: 2025.05.25):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특성별 비목별 소비지출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전체 소비지출액은 2016년 2,015만원에서 2023년 2,650만원으로 증가함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전체 소비지출액은 전체가구(3,166만원)의 83.7% 수준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전체 소비지출액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가구는 전체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의 지출 비중이 33.6%로 가장 높고, 기타지출 23.4%, 주거비 13.1%, 의료비 10.7% 등의 순임
 - 장애인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5.3%로 전체가구의 9.1%에 비해 3.7%p 낮은 반면, 의료비는 장애인가구가 10.7%로 전체가구 6.6%에 비해 4.0%p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비목별 비소비지출액

〈표 8-2-3〉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비목별 연평균 비소비지출액 -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전체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이자비용
2016	577	153	191	63	48	123	958	307	307	104	70	171
2017	614	167	197	77	46	127	1,034	343	322	125	66	179
2018	626	172	196	92	49	117	1,098	354	338	151	62	194
2019	659	169	204	99	42	144	1,106	357	353	146	55	195
2020	667	181	229	88	31	139	1,122	368	380	135	46	193
2021	644	178	230	91	26	119	1,185	400	400	137	39	209
2022	885	276	285	113	34	176	1,280	416	433	141	43	247
2023	929	305	293	115	44	173	1,321	430	440	145	46	260

주: 1) 비소비지출: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

2) 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3)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5)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6)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7) 연간 기준으로 평균 비소비지출액을 의미함

8)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 2018년부터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통계는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로 보완하여 공표함(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2016년 자료부터 작성하여 재공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소비지출

- 통계청 KOSIS. (검색일: 2025.05.25):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특성별 비목별 비소비지출

- 장애인가구의 연평균 비소비지출액은 2016년 662만원에서 2023년 929만원으로 증가함
- 전체가구 또한 2016년 958만원에서 2023년 1,321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2023년 장애인가구 전체 비 소비 지출액은 전체가구의 70.3% 수준임

※ 비소비지출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4) 최소 생활비

〈표 8-2-4〉 한 달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만원)

구 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2011년	154.0	157.5	152.2	149.4	139.6	159.2	168.4	270.3	119.1	169.0	145.7	147.6	237.5	99.8	134.9	139.3
2014년	164.9	162.7	173.2	160.3	154.2	178.5	190.1	273.9	133.1	178.6	229.7	146.6	210.6	156.9	144.2	135.6
2017년	187.9	185.6	196.9	177.4	165.5	183.2	219.4	341.7	157.0	204.8	231.3	191.6	264.3	241.1	196.8	181.8
2020년	196.3	192.5	198.7	196.6	171.7	221.5	237.6	352.3	158.2	221.7	223.9	187.7	253.4	188.7	204.2	186.7
2023년	215.4	217.3	224.2	206.7	179.6	234.4	254.5	382.0	171.4	237.2	258.1	201.2	275.0	227.4	193.3	202.6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을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9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03.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7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70.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02.

- 2023년 장애인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215.4만원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성장애가 38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애 275만원, 심장장애 258.1만원, 지적장애 254.5만원, 신장장애 237.2만원, 언어장애 234.4만원 등의 순임
- 반면에 월 평균 최소 생활비가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정신장애가 171.4만원, 청각장애 179.6만원임



(5)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천원)

구 분	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2005년	155.4	120.5	272.8	78.1	55.8	112.0	156.5	323.1
2008년	158.7	127.5	212.9	56.7	243.3	139.8	207.0	354.1
2011년	160.7	141.5	274.2	84.2	119.6	126.4	188.4	503.2
2014년	164.2	137.3	283.1	104.2	120.4	143.7	197.8	418.1
2017년	165.1	121.5	342.2	87.0	83.1	146.9	287.0	608.4
2020년	152.6	117.9	290.2	125.2	87.2	222.3	173.4	455.6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52.6	117.9	290.2	125.2	87.2	222.3	173.4	455.6
2023년								
교통비	170.0	128.4	323.7	97.8	72.6	281.6	284.8	603.2
의료비	24.1	24.5	32.3	16.8	8.4	28.7	33.2	63.3
보육·교육비	57.8	51.3	128.3	21.7	12.8	82.7	30.0	51.3
보호·간병비	10.4	-	7.9	-	1.5	81.3	58.1	230.9
재활기관 이용료	28.2	21.0	80.1	21.4	15.3	34.0	26.0	65.0
통신비	4.8	0.5	8.1	1.2	0.4	6.9	25.9	69.5
보조기구 구입·유지비장애인	0.2	0.1	0.5	0.1	0.3	0.9	0.2	0.3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8.8	3.8	6.3	7.9	25.6	5.3	1.4	0.3
장애관련식비	18.5	12.3	9.4	13.7	5.6	17.5	95.0	97.3
기타	10.7	10.3	27.7	10.0	2.1	15.9	7.0	22.0

주: 1) 월 기준임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239.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34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95.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04.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76.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77.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12.

- 2023년 기준 월 평균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170.0천원임

•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57.8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보호·간병비 28.2천원, 교통비 24.1천원,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18.5천원 등의 순임

〈표 8-2-5〉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연도별(계속)

(단위: 천원)

구 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2005년	106.3	343.9	121.8	237.6	357.0	279.0	283.9	115.0
2008년	64.6	334.0	189.4	192.5	870.6	306.1	126.3	87.3
2011년	73.8	241.6	172.3	255.0	597.0	122.4	263.8	167.8
2014년	103.9	303.3	350.7	254.7	271.5	323.9	269.0	175.4
2017년	85.9	293.6	112.4	176.4	462.2	329.2	234.7	118.9
2020년	99.3	332.3	269.6	148.5	293.0	225.4	212.0	116.6
월 평균 총 추가비용	100.4	294.5	171.5	184.3	251.1	184.6	164.6	130.7
교통비	13.9	53.3	28.4	26.3	24.7	26.6	17.2	28.8
의료비	32.9	190.9	99.8	84.7	188.0	124.6	39.4	59.7
보육·교육비	-	-	0.3	-	0.7	-	0.1	13.5
보호·간병비	14.9	22.6	13.7	26.5	5.8	1.9	31.5	2.9
2023년 재활기관 이용료	5.2	0.1	0.3	1.3	-	-	0.1	2.1
통신비	-	-	0.2	-	0.6	-	-	0.5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0.6	2.7	3.1	17.0	1.0	1.2	59.7	0.0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비	24.1	9.4	14.1	7.9	9.5	16.8	1.1	11.7
장애관련식비	5.2	10.9	7.7	14.4	20.0	2.6	10.3	5.4
기타	3.6	4.6	4.1	6.1	0.9	11.0	5.3	6.2

주: 1) 월 기준임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239.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34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95.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404.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76.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77.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12.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가 603.2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으며, 다음은 뇌병변장애 323.7천원, 신장장애 294.5천원, 지적장애 284.8천원, 언어장애 281.6천원 등의 순임
- 반면에 장애로 인한 월 평균 추가 소요비용이 적은 장애유형으로는 청각장애 72.6천원, 시각장애 97.8천원임



3) 빈곤

(1) 빈곤율

〈표 8-3-1〉 장애인구 및 전체인구 중위소득, 빈곤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기준		차분가능소득 기준	
		중위소득	빈곤율	중위소득	빈곤율
2022	전체인구	3,510	20.7	3,455	14.9
	장애인구	1,725	50.5	2,354	35.7
2021	전체인구	3,207	21.1	3,207	14.8
	장애인구	1,597	50.1	2,186	34.5
2020	전체인구	3,018	21.5	3,038	15.1
	장애인구	1,498	50.2	2,070	35.8
2019	전체인구	2,970	21.4	2,875	16.3
	장애인구	1,175	56.0	1,715	42.2

주: 1) 빈곤율: 빈곤선(중위소득 50%, (22년) 1,727만원) 이하에 속한 인구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2)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회적전소득 - 사회적전지출 (2017년 12월부터 변경)
3) 차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 (2017년 12월부터 변경)
4) 소득은 균등화 소득(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sqrt{\text{가구원수}}$)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함.
5) 본 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공공용(MD)로 작성함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재산소득에 이자비용 차감여부)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24), "2024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p.41

- 2022년 기준 장애인구 빈곤율(차분가능소득 기준)은 35.7%로 전체인구 14.9% 대비 2.4배 높음
• 2021년 대비 장애인구 빈곤율(차분가능소득 기준)은 각각 장애인구 1.2%p, 전체인구 0.1%p 증가함

(2)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표 8-3-2〉 장애인가구 및 전체가구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경상소득) -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전체	분위별 소득					전체	분위별 소득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2020	4,986	1,311	2,956	4,924	7,418	13,607	6,180	1,314	3,002	4,915	7,397	14,269
2021	5,127	1,342	3,114	5,088	7,732	14,948	6,470	1,347	3,133	5,110	7,731	15,026
2022	5,450	1,382	3,285	5,359	8,196	15,732	6,762	1,405	3,309	5,388	8,111	15,598
2023	6,002	1,517	3,542	5,650	8,608	17,130	7,185	1,505	3,512	5,700	8,605	16,602

주: 1) 경상소득 기준임

2)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

3) 연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의미함

4) 행정자료를 보완하여 공표된 자료임(등록장애인명부 연계 기준)

· 2023년부터 공적이전 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함(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2020년 자료부터 작성하여 제공함)

자료: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 통계청 KOSIS. (검색일: 2025.05.25):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 장애인가구의 2023년 1분위소득(연간)은 1,517만원으로 2020년 1,311만원에 비해 206만원 증가함. 5분위소득은 2022년 17,130만원으로 2020년 13,607만원에 비해 3,523만원 증가함

- 장애인가구의 분위별 소득을 전체가구와 비교하면, 5분위소득간의 격차가 다른 분위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5분위 평균소득은 17,130만원으로 전체가구 16,602만원에 비해 528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분위 배율(숫자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해짐)

- 소득 5분위 평균소득/소득 1분위 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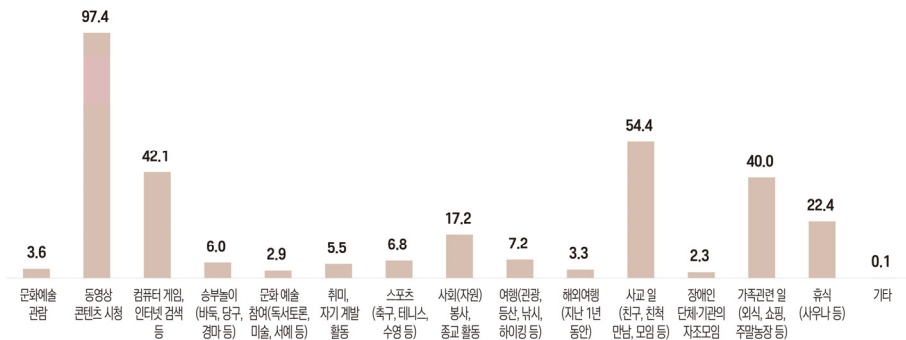
-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함



9. 문화 및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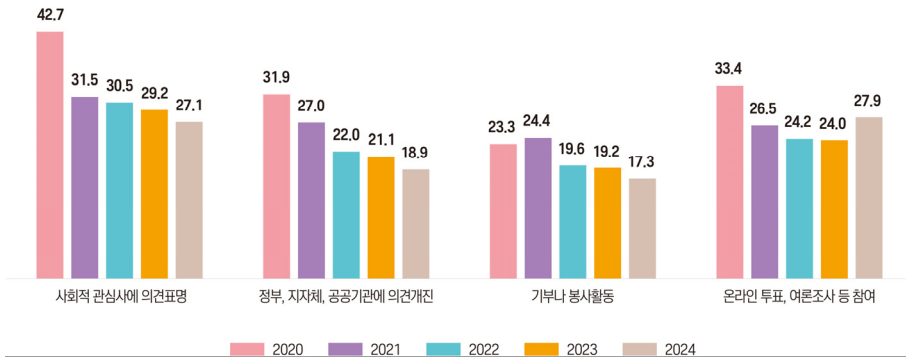
[그림 2-9-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2023년)



[그림 2-9-2]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 지난 1주일 동안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97.4%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54.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32.1% 순으로 나타남
- 2024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율은 2020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임

1) 문화 및 여가활동

(1)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율

〈표 9-1-1〉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비율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문화예술관람	3.6	3.8	2.5	3.6	1.2	5.7	6.1	6.3	2.9	5.8	10.4	3.7	4.0	7.6	6.1	3.1
동영상 콘텐츠 시청	97.4	99.0	93.1	95.3	98.2	97.1	95.1	93.0	97.5	98.6	99.1	98.5	97.6	99.2	96.7	94.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42.1	48.3	34.0	43.5	23.9	42.6	42.3	45.2	40.6	56.8	59.4	43.3	71.0	68.1	34.6	46.0
승부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6.0	7.2	5.8	6.6	5.0	5.4	2.7	3.6	2.3	5.4	5.0	7.7	9.7	3.4	3.9	3.1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 서예 등)	2.9	2.4	2.1	3.1	2.2	5.8	4.0	16.2	3.7	2.7	5.6	2.3	6.0	4.5	4.7	2.9
취미, 자기 계발 활동	5.5	5.8	4.1	6.7	3.9	4.5	6.4	9.6	6.0	5.0	14.6	9.7	4.6	12.0	4.6	6.1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6.8	7.6	3.3	8.0	5.2	8.5	8.4	23.0	3.3	6.1	9.6	3.4	10.1	8.2	2.7	3.9
사회(자원)봉사, 종교 활동	17.2	18.2	12.4	17.5	18.6	12.6	14.1	14.3	19.8	16.0	16.4	12.9	16.1	20.7	20.7	20.5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7.2	8.5	2.8	9.3	4.9	8.2	5.4	13.8	5.0	7.8	9.8	4.1	17.5	10.4	6.3	5.8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3.3	3.7	1.6	5.0	2.5	0.0	3.3	6.0	1.1	3.1	9.2	2.5	6.2	6.5	5.2	2.1
사교 일 (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54.4	62.5	35.8	60.4	58.3	45.3	36.8	38.1	23.4	51.1	56.2	42.9	69.5	61.7	55.6	42.7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2.3	1.2	2.5	3.7	1.5	0.7	7.9	5.7	4.3	0.8	2.3	0.9	1.5	1.3	4.0	2.2
가족관련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40.0	42.4	26.9	42.9	40.1	41.9	37.2	58.5	30.6	42.7	53.2	37.9	61.4	48.8	42.2	35.6
휴식(사우나 등)	22.4	23.3	19.2	26.3	21.9	20.9	19.1	19.9	18.3	25.4	26.8	20.1	22.7	22.0	22.0	11.7
기타	0.1	0.1	0.0	0.1	0.1	0.2	0.1	0.0	0.2	0.4	0.0	0.0	0.0	0.0	0.1	0.0

주: 1) 중략 응답임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68.

-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비율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9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교 일' 54.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이 42.1% 순으로 높음
- 기타를 제외하고 참여율이 가장 낮은 여가활동은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2.3%)으로 나타남



〈표 9-1-2〉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문화·예술관람	3.6	4.0	2.9	9.8	9.1	4.6	1.4	4.2	3.2
동영상 콘텐츠 시청 (TV, 유선방송, 유튜브, OTT)	97.4	97.5	97.3	90.1	97.0	97.6	97.8	95.1	98.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42.1	51.3	29.4	48.1	72.1	67.1	21.0	41.7	42.3
승부놀이 (바둑, 당구, 경마 등)	6.0	8.2	2.8	4.8	5.8	7.0	5.4	4.2	6.9
문화 예술 참여 (독서토론, 미술, 서예 등)	2.9	2.8	3.0	14.4	4.6	3.0	1.8	3.6	2.5
취미/자기 계발 활동	5.5	5.7	5.2	12.6	13.3	6.7	2.8	6.0	5.2
스포츠 (축구, 테니스, 수영 등)	6.8	8.1	5.1	20.8	11.6	7.8	4.5	5.8	7.4
사회(자원)봉사, 종교 활동	17.2	14.3	21.0	9.2	17.8	16.9	17.7	15.4	18.1
여행 (관광, 등산, 낚시, 하이킹 등)	7.2	9.4	4.0	11.8	11.0	10.9	3.9	5.0	8.3
해외여행(지난 1년 동안)	3.3	3.7	2.8	2.6	6.9	4.5	2.0	2.6	3.7
사고 일 (친구, 친척만남, 모임 등)	54.4	55.1	53.5	46.7	48.9	56.8	54.5	40.4	61.9
장애인 단체/기관의 자조모임	2.3	2.7	1.9	4.1	6.3	2.6	1.3	4.7	1.1
가족관련 일 (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40.0	41.4	38.1	57.5	48.8	46.3	33.6	35.8	42.3
휴식(사우나 등)	22.4	23.3	21.2	16.9	24.6	25.2	20.6	19.6	23.9
기타	0.1	0.1	0.1	0.0	0.0	0.2	0.1	0.1	0.1

주: 1) 중복응답임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67.

- '동영상 콘텐츠 시청'은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모든 집단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남
- '동영상 콘텐츠 시청'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은 여가활동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는 '가족관련 일'이 57.5%, 18세-44세와 45세 ~ 64세 이하에서는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이 각각 72.1%와 67.1%로 높고, 65세 이상은 '사고 일'(54.5%)의 비율이 높음

(2) 생활체육

〈표 9-1-3〉 생활체육 실행 유형 - 연도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단위: %)

구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연도	2014	14.1	51.7	20.5
	2015	15.8	54.6	16.5
	2016	17.7	57.1	13.2
	2017	20.1	55.8	12.8
	2018	23.8	52.5	12.3
	2019	24.9	52.1	12.1
	2020	24.2	25.2	35.1
	2021	20.2	19.4	43.7
	2022	26.6	24.6	20.4
	2023	33.9	23.8	19.9
	2024	35.2	24.8	20.3
장애 유형	지체	36.9	26.5	19.4
	시각	41.3	23.9	20.2
	청각·언어	42.1	19.5	23.5
	발달	34.5	22.1	21.1
	뇌병변	21.9	27.4	20.6
	기타	30.6	25.0	20.1
지역	서울	35.7	23.9	22.9
	부산	35.9	20.1	17.0
	대구	36.1	16.5	30.4
	인천	26.9	37.6	16.5
	광주	40.3	25.2	23.5
	대전	23.8	45.9	17.1
	울산	49.1	14.9	24.8
	세종	10.1	65.6	12.0
	경기	38.4	24.0	21.1
	강원	37.0	24.9	17.7
	충북	33.6	22.2	21.6
	충남	26.5	31.8	20.2
	전북	40.5	17.0	21.1
	전남	46.1	26.0	15.3
	경북	32.8	26.9	16.0
	경남	30.4	16.9	20.4
	제주	21.4	35.4	9.8

주: 1) 15개 장애유형을 연구편의상 6개 유형으로 재분류함

2)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개념

구분	최근 1년간 운동 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완전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운동 참여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미실시	-	-	-	-
현재 운동하지 않고 운동 의지가 없는 자	미실시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24),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107-108.

- 장애인 생활체육의 완전실행자의 비율은 2014년 14.1%에서 2024년 35.2%까지 증가하였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비율은 청각·언어장애에서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울산이 49.1%로 가장 높고 세종이 10.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생활체육'이란 재활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집 밖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말함



2) 사회참여

(1) 투표 참여

〈표 9-2-1〉 장애인 투표 참여 비율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1	71.6	80.9	50.5	77.4	82.2	52.9	32.6	8.7	48.4	72.5	70.6	71.2	75.6	58.3	74.1	51.3
2014	74.8	85.1	59.8	78.0	81.4	62.5	32.8	14.9	42.7	75.2	81.3	75.0	93.2	85.0	76.6	64.7
2017	84.1	89.9	64.9	88.3	91.9	88.2	61.3	55.9	66.1	88.3	99.2	81.9	96.0	92.1	82.5	69.1
2020	78.4	86.3	56.4	81.3	85.5	72.7	48.2	42.3	52.0	82.8	85.1	75.5	87.9	85.5	89.4	72.5
2023	82.1	88.6	63.1	84.6	89.4	79.4	55.1	53.7	62.1	84.6	80.1	80.9	90.0	89.6	81.9	75.0

주: 1) 2011년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023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응답임

2) 2011년과 2014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이 포함된 반면, 2017년은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 제외됨

3) 2020년, 2023년은 조사 결과에 비해당(투표권 없음)이 제외됨

4)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321.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19.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366.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359.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76.

- 2023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82.1%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장애의 선거 참여율이 90.0%로 가장 높고, 안면장애 89.6%, 청각장애 89.4% 순으로 참여율이 높음.
반면 자폐성장애는 선거 참여율이 53.7%로 가장 낮음

〈표 9-2-2〉 장애인 투표 참여 비율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자	여자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011	71.6	73.7	68.8	54.6	80.1	76.9	47.4	78.9	71.7
2014	74.8	77.1	71.7	61.8	79.1	80.6	57.9	86.4	75.3
2017	84.1	86.8	80.6	77.0	87.3	83.7	73.0	91.0	84.4
2020	78.4	81.2	74.6	63.6	80.0	81.1	63.4	86.8	78.4
2023	82.1	84.2	79.3	64.7	83.7	84.7	68.2	89.0	82.1

주: 1) 2011년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7년은 제19대 대통령선거,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023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응답임

2) 2011년과 2014년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비례당(투표권 없음)이 포함된 반면, 2017년은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결과에 비례당(투표권 없음) 제외됨

3) 2020년, 2023년은 조사 결과에 비례당(투표권 없음)이 제외됨

4)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을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0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2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2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24.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73.

- 장애인의 선거 투표 참여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84.2%로 여성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79.3%보다 높음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이 8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89.0%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 68.2%보다 높음



〈표 9-2-3〉 투표 미참여 이유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1.5	3.3	0.8	1.3	1.1	-	0.4	-	-	1.7	-	-	-	-	-	-
편의시설 부족	2.0	1.6	2.4	4.5	1.2	5.9	2.3	3.5	0.7	-	-	-	-	-	-	-
몸이 불편해서	42.7	44.9	72.2	40.2	45.0	42.6	13.4	22.7	16.9	53.1	34.8	70.3	22.0	13.4	84.0	34.7
도우미가 없어서	1.9	1.2	1.9	5.1	2.1	-	2.8	-	0.8	-	3.9	-	-	-	-	-
정보 부족	2.1	1.7	-	0.4	2.4	2.3	6.0	8.3	0.9	3.0	-	-	-	15.6	2.0	-
시간이 없어서	2.3	4.5	0.2	1.4	2.5	-	1.9	-	0.1	4.9	9.8	3.8	7.1	11.4	-	5.2
본인이 원치 않아서	44.4	41.6	21.5	43.5	40.7	49.2	64.2	58.4	78.3	33.3	47.3	17.8	71.0	59.6	13.9	60.0
주위의 시선 때문에	1.1	-	0.3	1.4	0.5	-	4.4	3.0	2.3	-	-	-	-	-	-	-
코로나19로 인해서	1.4	1.1	0.4	1.7	3.7	-	1.6	4.0	-	2.8	4.3	8.1	-	-	-	-
기타	0.8	-	0.3	0.5	0.9	-	3.2	-	-	1.2	-	-	-	-	-	-

주: 1) 무응답 제외
 2)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377.

〈표 9-2-4〉 투표 미참여 이유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통 불편	1.5	1.0	1.9	0.7	1.3	2.0	1.2	1.8
편의시설 부족	2.0	2.8	1.2	1.7	1.9	2.2	2.5	1.3
몸이 불편해서	42.7	36.5	49.0	18.4	28.5	62.6	40.6	45.6
도우미가 없어서	1.9	1.5	2.3	2.5	0.8	2.3	2.2	1.4
정보 부족	2.1	2.8	1.4	4.3	2.6	0.8	2.2	1.9
시간이 없어서	2.3	3.4	1.1	3.6	3.7	0.8	1.3	3.6
본인이 원치 않아서	44.4	48.7	39.9	63.1	58.1	27.2	45.9	42.2
주위의 시선 때문에	1.1	0.9	1.4	3.3	1.2	0.1	1.8	0.2
코로나19로 인해서	1.4	1.5	1.2	1.7	1.1	1.4	1.0	1.9
기타	0.8	0.9	0.6	0.8	1.0	0.6	1.2	0.1

주: 1) 무응답 제외
 2)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대한 응답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674.

- 장애인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의 비율이 4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몸이 불편해서'의 비율이 42.7%로 높음
 - '본인이 원치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정신장애 78.3%, 간장애 7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18~44세와 45~64세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의 비율이 각각 63.1%와 58.1%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은 '몸이 불편해서'가 62.6%로 가장 높음

(2) 장애인 공무원

〈표 9-2-5〉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 및 고용률 - 연도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기관수	의무고용 대상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2009	45	171,713	4,037	2.35
2010	45	171,421	4,479	3.01
2011	45	168,146	4,665	3.20
2012	46	169,615	4,805	3.27
2013	47	169,872	4,830	3.29
2014	49	171,828	4,832	3.26
2015	49	170,443	5,000	3.41
2016	49	169,971	5,014	3.44
2017	50	171,995	5,107	3.47
2018	50	176,790	5,184	3.43
2019	50	186,982	5,697	3.56
2020	52	187,439	5,862	3.67
2021	53	193,564	6,034	3.68
2022	53	202,342	6,209	3.66
2023	54	207,070	6,138	3.54
2024	56	207,985	6,111	3.53

주: 1) 의무고용 대상인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의 정원

2) 고용인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 고용한 장애인 수

3) 고용률은 의무고용대상인원 대비 고용인원 비율임.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2배로 산정(2010년부터 시행)

4)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08년까지 2% 이상, '16년까지 3% 이상, '17년~'18년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자료: 인사혁신처(각 연도), 「인사혁신통계연보」 p.32.

- 2024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수는 6,111명, 고용률은 3.53%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률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2022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2-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연도별, 직급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2014	8,633	267	589	592	2,310	1,112	1,888	236	663	976
2015	8,975	284	589	588	2,376	1,200	2,032	214	634	1,058
2016	9,236	296	598	589	2,360	1,193	2,036	239	669	1,256
2017	9,465	288	577	633	2,401	1,130	2,127	251	703	1,355
2018	9,471	304	584	577	2,454	1,105	2,164	269	671	1,343
2019	9,542	327	629	671	2,446	1,070	2,149	250	682	1,318
2020	9,872	367	647	822	2,466	1,021	2,186	259	632	1,472
2021	9,710	361	652	740	2,419	977	2,264	240	652	1,405
2022	9,576	377	681	653	2,496	1,017	2,311	193	511	1,337
2023	9,494	360	682	747	2,400	939	2,205	279	545	1,337
2024	9,470	350	675	716	2,418	939	2,245	245	565	1,317
소계	9,453	344	675	712	2,414	939	2,242	245	565	1,317
일반직	1급	-	-	-	-	-	-	-	-	-
	2급	-	-	-	-	-	-	-	-	-
	3급	7	-	3	4	-	-	-	-	-
	4급	97	4	21	32	19	11	8	1	-
	5급	558	33	81	126	126	61	50	4	36
	6급	2,931	130	225	250	823	378	582	77	235
	7급	3,375	120	238	165	841	321	950	79	159
	8급	1,543	24	66	60	356	98	469	45	84
	9급	762	22	23	32	192	34	175	38	49
	시간선택제	18	-	-	-	15	1	1	-	-
	전문경력관	8	1	-	-	2	1	3	-	1
	전담직위	-	-	-	-	-	-	-	-	-
	일반(전문)임기제	58	4	8	6	17	14	4	1	-
	연구관	19	2	1	16	-	-	-	-	-
	연구사	34	4	7	19	4	-	-	-	-
	지도관	9	-	-	1	3	5	-	-	-
	지도사	35	-	2	1	17	15	-	-	-
특정직	소계	10	6	-	4	-	-	-	-	-
	교육직	10	6	-	4	-	-	-	-	-
	자치경찰	-	-	-	-	-	-	-	-	-
별정직	소계	4	-	-	-	2	-	2	-	-
	5급 상당 이상	-	-	-	-	-	-	-	-	-
	6급 상당 이하	4	-	-	-	2	-	2	-	-
정무직	1	-	-	-	-	-	1	-	-	-

주: 1)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2) 더블 카운트를 적용하지 않음

자료: 1) 행정자치부(2015). 「201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9.
 3) 행정자치부(2017). 「201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7.
 5) 행정안전부(2019). 「20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7.
 7) 행정안전부(2021). 「202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9) 행정안전부(2023). 「202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11)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2) 행정자치부(2016). 「20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9.
 4) 행정안전부(2018). 「2017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7.
 6) 행정안전부(2020). 「2019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8) 행정안전부(2022). 「202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10) 행정안전부(2024). 「202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5.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은 2014년 8,633명부터 2020년 9,872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감소하여 2024년 기준 9,470명임
 • 직급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은 일반직 7급이 3,375명으로 가장 많음

〈표 9-2-7〉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 - 시도별

(단위: 명)

구분	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읍	면	동
전국	9,470	350	675	716	2,418	939	2,245	245	565	1,317
서울	1,887	350	-	-	-	-	1,141	-	-	396
부산	665	-	155	-	-	-	395	6	-	109
대구	423	-	123	-	-	32	176	9	9	74
인천	427	-	135	-	-	16	202	-	5	69
광주	292	-	90	-	-	-	145	-	-	57
대전	215	-	67	-	-	-	124	-	-	24
울산	196	-	70	-	-	21	62	11	5	27
세종	54	-	35	-	-	-	-	3	7	9
경기	1,595	-	-	154	1,063	41	-	47	55	235
강원	413	-	-	71	157	96	-	10	47	32
충북	387	-	-	61	129	112	-	17	45	23
충남	496	-	-	66	202	96	-	18	79	35
전북	454	-	-	65	177	98	-	7	60	47
전남	529	-	-	71	144	173	-	32	84	25
경북	610	-	-	66	240	113	-	47	96	48
경남	683	-	-	87	278	141	-	29	68	80
제주	144	-	-	75	28	-	-	9	5	27

주: 1) 일반직 기준
 2) 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5), 「202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p.36.

- 2024년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수는 서울 1,887명, 경기 1,595명, 경남 683명 순으로 많으며, 세종 54명, 제주 144명 순으로 수가 적음



(3) 온라인 사회참여

〈표 9-2-8〉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사회적 관심사에 의견표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견개진	기부나 봉사활동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 참여	
연도	2017	24.1	11.2	8.8	13.8
	2018	30.2	18.2	13.4	15.8
	2019	30.8	25.4	17.3	20.0
	2020	42.7	31.9	23.3	33.4
	2021	31.5	27.0	24.4	26.5
	2022	30.5	22.0	19.6	24.2
	2023	29.2	21.1	19.2	24.0
	2024	27.1	18.9	17.3	27.9
성별	남성	28.8	20.0	18.6	29.6
	여성	23.3	16.3	14.5	24.1
연령별	20대	46.6	32.3	27.0	42.0
	30대	48.8	35.8	32.4	52.0
	40대	38.1	26.4	22.7	37.3
	50대	31.8	21.4	19.5	30.6
	60대 이상	16.5	11.7	11.5	19.2
장애 유형	지체장애	25.5	17.8	15.9	26.9
	뇌병변장애	29.0	15.9	16.4	27.9
	시각장애	30.0	22.9	18.7	24.8
	청각/언어장애	30.8	23.3	24.5	37.1

주: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여부(기쁨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함

- 표현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
- 행동적 사회참여: 인터넷을 통한 기부 및 봉사활동,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건의, 정책평가, 민원제기 활동을 하는 것
- 인터넷 이용자(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 기준

자료: 1)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289.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19.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0).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6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73.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73.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8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64.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66.

- 2024년 장애인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등 참여'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의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에서 남성 장애인의 참여 비율이 여성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30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음

(4) 사회적 고립도

〈표 9-2-9〉 사회적 고립도(도움 요청 대상) - 연도별

(단위: %, 명)

연도	구분	낙심 우울 등으로 인한 대화상대가 필요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있음	인원(평균)	없음
2017	전체	83.6	3.12	16.4	78.5	2.40	21.5	51.9	2.35	48.1
	장애인	전체	71.4	2.50	28.6	67.8	2.16	32.2	36.6	1.99
		65세 미만	73.1	2.64	26.9	67.6	2.24	32.4	39.0	1.95
		65세 이상	69.1	2.31	30.9	68.0	2.05	32.0	33.6	2.06
	비장애인	전체	84.2	3.15	15.8	79.1	2.41	20.9	52.7	2.36
		65세 미만	85.8	3.27	14.2	79.6	2.47	20.4	55.5	2.40
		65세 이상	74.5	2.35	25.5	75.9	2.09	24.1	36.4	2.02
2019	전체	83.3	2.94	16.7	79.6	2.30	20.4	51.4	2.22	48.6
	장애인	전체	72.3	2.26	27.7	73.4	2.03	26.6	33.8	2.10
		65세 미만	74.7	2.37	25.3	73.6	2.04	26.4	39.2	2.10
		65세 이상	69.9	2.15	30.1	73.2	2.02	26.8	28.2	2.10
	비장애인	전체	83.9	2.97	16.1	79.9	2.31	20.1	52.4	2.22
		65세 미만	85.8	3.09	14.2	80.9	2.36	19.1	55.6	2.25
		65세 이상	73.1	2.22	26.9	74.7	2.04	25.3	34.2	1.91
2021	전체	79.6	2.94	20.4	72.8	2.34	27.2	50.1	2.23	49.9
	장애인	전체	66.0	2.25	34.0	68.5	2.08	31.5	33.0	2.01
		65세 미만	68.9	2.43	31.1	67.2	2.18	32.8	38.2	2.17
		65세 이상	63.4	2.07	36.6	69.7	1.99	30.3	28.2	1.81
	비장애인	전체	80.3	2.97	19.7	73.0	2.35	27.0	51.0	2.24
		65세 미만	82.2	3.10	17.8	73.9	2.41	26.1	54.3	2.28
		65세 이상	71.2	2.24	28.8	69.0	2.03	31.0	34.1	1.90
2023	전체	79.8	2.89	20.2	74.0	2.30	26.0	51.0	2.22	49.0
	장애인	전체	66.7	2.17	33.3	70.0	1.91	30.0	34.4	1.93
		65세 미만	68.0	2.35	32.0	68.8	2.03	31.2	35.7	2.11
		65세 이상	65.4	2.00	34.6	71.1	1.81	28.9	33.3	1.74
	비장애인	전체	80.5	2.92	19.5	74.2	2.32	25.8	51.9	2.23
		65세 미만	82.2	3.04	17.8	74.9	2.40	25.1	55.2	2.28
		65세 이상	72.6	2.29	27.4	71.5	2.01	28.5	36.7	1.88

주: 1) 사회조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함(자료원: 통계청 MDIS, 2024.7.15.)

2)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여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를 장애인으로 분류함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 요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상, 그 외는 만13세 이상 대상임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장애인의 비율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할 경우' 33.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30.0%,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65.6%로 나타남(2023년 기준)
- 특히 '65세 미만' 연령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2023년 기준)
 - 65세 미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고립도 비율 차이는 '낙심, 우울 등으로 대화상대가 필요할 경우' 14.2%p,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6.1%p,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할 경우' 19.5%p로 나타남.

※ 사회적 고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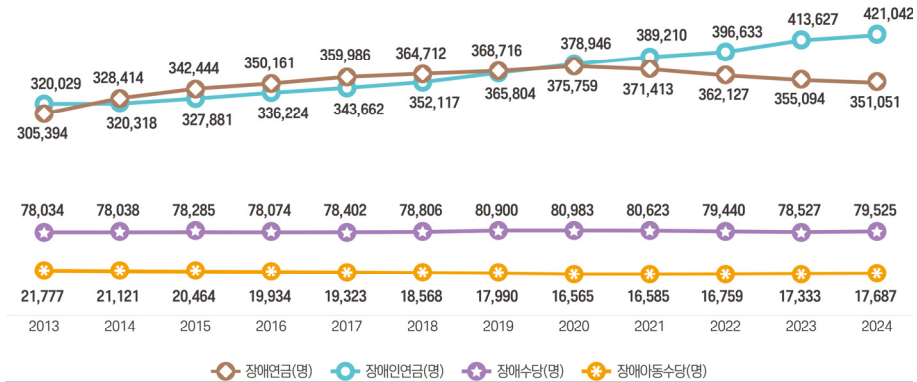
- 위기상황에서 인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출처: e-나라지표)



10. 사회보장

[그림 2-10-1]

장애 관련 급여 수급자 현황 - 연도별



[그림 2-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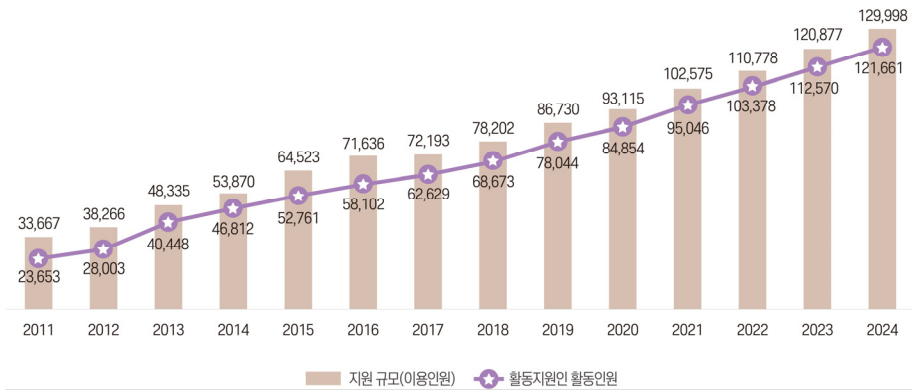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및 월 평균 급여량 - 연도별



-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78,038명에서 2024년 79,525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328,414명에서 2024년 351,051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이)
-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2014년 320,318명에서 2024년 421,042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임
- 장애활동수당 수급자 수는 2014년 21,121명에서 2024년 17,687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24년 22,846억원으로, 월평균 급여량은 2007년 33.2만원에서 2024년 222.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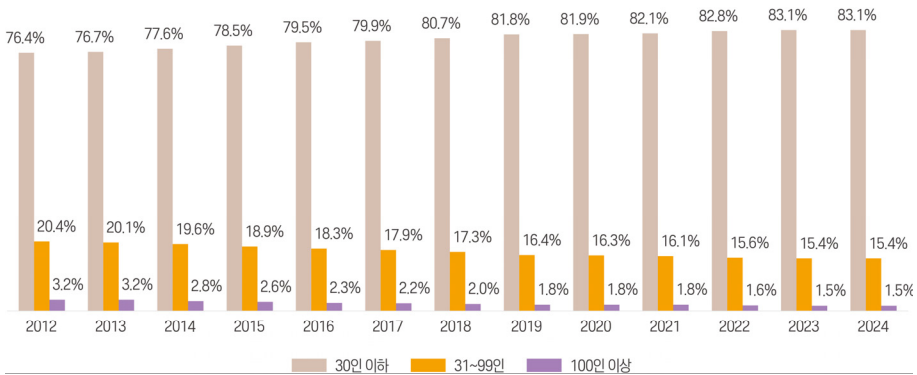
[그림 2-10-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규모 및 활동지원사 활동인원 - 연도별



[그림 2-10-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연도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지원 규모(이용인원)는 2011년 33,667명에서 2024년 129,99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활동지원사의 활동인원은 121,661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의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 소규모시설 비율'의 경우, 정책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12년 76.4% 대비 2024년 83.1%)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

① 가입한 연금 종류

〈표 10-1-1〉 가입한 연금종류 -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개인연금 (사적)	기타
	2005	20.8	0.8	-	0.0	0.1	-	2.1	0.0
	2008	34.4	1.4	0.3	0.5	0.9	-	0.3	-
	2011	32.9	1.4	0.2	0.4	1.9	-	3.2	0.1
	2014	35.0	2.1	0.4	0.3	1.9	-	3.8	0.2
	2017	37.7	2.1	0.4	0.3	1.5	0.0	3.0	-
	2020	33.3	1.7	0.3	0.4	-	0.05	2.4	-
	2023	33.4	0.9	0.2	0.1	-	-	1.9	-
성별	남	37.8	1.0	0.3	0.1	-	-	2.2	-
	여	25.2	0.8	0.0	0.2	-	-	1.4	-
장애정도	심한 장애	25.6	1.1	0.1	0.0	-	-	1.5	-
	심하지 않은 장애	39.1	0.8	0.2	0.2	-	-	2.1	-
장애유형	지체	38.2	1.1	0.1	0.3	-	-	2.3	-
	뇌병변	20.5	1.2	0.3	-	-	-	1.2	-
	시각	46.4	1.4	0.5	-	-	-	3.1	-
	청각	33.5	0.6	0.3	-	-	-	0.8	-
	언어	31.8	-	-	0.5	-	-	2.3	-
	지적	27.0	-	-	-	-	-	0.8	-
	자폐성	28.4	-	-	1.2	-	-	2.1	-
	정신	15.0	0.0	-	-	-	-	1.0	-
	신장	28.6	1.7	0.2	-	-	-	2.3	-
	심장	25.6	4.9	2.2	-	-	-	1.3	-
	호흡기	20.9	1.6	-	-	-	-	2.5	-
	간	38.9	0.6	-	-	-	-	4.6	-
	안면	53.2	3.7	-	-	-	-	1.7	-
	장루·요루	26.6	0.8	-	-	-	-	0.9	-
	뇌전증	18.4	-	-	-	-	-	0.9	-

주: 1) 중복응답임

2) 2020년은 만18세 이상 기준, 2023년은 만18세 이상 70세 이하 기준(개인연금은 전 연령 기준)

3) 2020년, 2023년에는 보훈연금 대신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조사됨

4)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9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344.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558.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94.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722.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705.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503, 766.

- 202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은 33.4%이며, 개인연금 가입률은 1.9%로 나타남

•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금 가입률이 높으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보다 가입률이 높음

② 장애연금 수입

〈표 10-1-2〉 장애연금 수입현황 - 장애연금 등급별, 연도별

(단위: 명, 천원, %)

구분	계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급액	1급		2급		3급		(4급)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수급자	수급액
1998	14,870	38,095,257	2,307	8,043,784	4,396	12,220,064	6,542	11,104,102	1,625	6,727,307
1999	18,850	57,627,148	2,933	10,915,513	5,734	18,284,668	8,239	16,539,589	1,944	11,887,378
2000	24,084	85,897,388	3,873	16,753,668	7,751	27,930,670	10,290	25,413,897	2,170	15,799,154
2001	29,925	101,869,197	4,846	19,587,774	10,028	34,094,337	12,582	29,901,265	2,469	18,285,821
2002	35,070	120,267,604	5,848	24,294,311	12,313	43,283,260	14,715	36,271,443	2,194	16,418,591
2003	42,580	153,898,535	6,744	28,618,060	15,043	55,026,892	17,940	48,275,861	2,853	21,977,723
2004	50,849	192,926,434	7,680	33,496,668	17,607	67,363,536	21,973	62,768,895	3,609	29,297,315
2005	58,614	229,644,551	8,460	38,390,655	19,743	77,718,552	26,264	77,821,758	4,147	35,713,586
2006	66,660	269,846,599	9,199	43,732,985	21,888	88,072,930	30,675	93,801,148	4,898	44,239,536
2007	72,258	294,202,952	9,975	48,598,642	23,005	93,093,869	34,111	104,184,974	5,167	48,325,466
2008	77,068	316,021,060	10,600	52,202,523	24,203	98,918,486	37,363	116,979,543	4,902	47,920,508
2009	78,371	327,956,289	10,783	55,721,797	24,274	102,785,043	39,478	128,509,249	3,836	40,940,200
2010	79,727	333,603,890	11,007	57,972,283	25,145	107,518,566	40,128	130,813,857	3,447	37,299,185
2011	79,375	347,466,360	11,229	61,569,109	25,218	112,288,852	39,448	131,689,477	3,480	41,918,922
2012	78,796	349,116,465	11,307	64,383,918	25,400	116,872,640	39,227	133,206,299	2,862	34,653,608
2013	78,034	364,904,555	11,292	66,879,131	25,302	121,795,089	38,447	137,493,695	2,993	38,736,640
2014	78,038	366,074,576	11,357	68,102,787	25,749	124,895,468	38,281	138,605,095	2,651	34,471,226
2015	78,285	372,089,942	11,393	69,260,983	26,081	127,855,760	38,214	139,450,878	2,597	35,522,321
2016	78,074	373,380,465	11,657	70,885,857	26,820	132,030,529	37,020	134,416,071	2,577	36,048,008
2017	78,402	391,147,481	12,099	76,657,680	27,517	140,482,777	35,870	131,876,219	2,916	42,130,805
2018	78,806	405,867,495	12,863	83,692,092	27,719	144,285,004	35,152	131,221,036	3,072	46,669,363
2019	80,900	427,566,465	13,021	86,120,020	29,109	156,912,842	35,742	135,686,939	3,028	48,846,663
2020	80,983	431,397,074	12,668	84,433,252	29,946	163,410,649	35,465	135,186,814	2,904	48,366,360
2021	80,623	434,689,722	12,147	80,511,745	30,590	169,296,495	34,989	135,135,492	2,897	49,745,990
2022	79,440	441,230,091	11,517	79,007,610	30,808	176,046,206	34,393	136,323,037	2,722	49,853,238
2023	78,527	474,893,599	11,228	81,320,668	30,762	190,555,484	33,626	144,964,374	2,911	58,053,073
2024	79,525	494,690,794	10,950	82,263,659	31,987	207,249,089	33,928	149,895,105	2,660	55,282,941
	(100.0)	(100.0)	(13.8)	(16.6)	(40.2)	(41.9)	(42.7)	(30.3)	(3.3)	(11.2)

주: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

2)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 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음

- 자료: 1) 국민연금관리공단(1999). 「199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174-175. 2) 국민연금관리공단(2000). 「1999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44-245.
3) 국민연금관리공단(2001). 「200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74-275. 4) 국민연금관리공단(2002). 「2001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74-275.
5) 국민연금관리공단(2003). 「200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56-257. 6) 국민연금관리공단(2004). 「2003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2-263.
7) 국민연금관리공단(2005). 「200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6-267. 8) 국민연금관리공단(2006). 「2005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80-281.
9)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200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80-281. 10) 국민연금공단(2008). 「200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74-275.
11) 국민연금공단(2009). 「200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22-223. 12) 국민연금공단(2010). 「2009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22-223.
13) 국민연금공단(2011). 「201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40-241. 14) 국민연금공단(2012).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0-261.
15) 국민연금공단(2013).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0-261. 16) 국민연금공단(2014). 「2013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17) 국민연금공단(2015). 「201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18) 국민연금공단(2016). 「2015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19) 국민연금공단(2017).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20) 국민연금공단(2018). 「201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21) 국민연금공단(2019). 「2018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68-269. 22) 국민연금공단(2020). 「2019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70-271.
23) 국민연금공단(2021). 「202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24) 국민연금공단(2022). 「2021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25) 국민연금공단(2023). 「2022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26) 국민연금공단(2024). 「2023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27) 국민연금공단(2025). 「202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35.

- 2024년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 수는 79,525명, 수급액은 494,690,794천원임

- 장애연금 등급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3급이 33,928명(42.7%)으로 가장 많고, 수급액은 2급이 207,249,089천원(4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10-1-3〉 장애연금 수급현황(2024) - 장애연금 등급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장애일시보상금	
				1급		2급		3급		(4급)	
		수급자	수금액	수급자	수금액	수급자	수금액	수급자	수금액	수급자	수금액
전체		79,525	494,690,794	10,950	82,263,659	31,987	207,249,089	33,928	149,895,105	2,660	55,282,941
성별	남	59,567	382,294,338	8,826	67,988,119	23,066	155,346,322	25,699	115,079,952	1,976	43,879,945
	여	19,958	112,396,456	2,124	14,275,540	8,921	51,902,767	8,229	34,815,153	684	11,402,997
연령별	20~24세	26	161,792	1	2,169	7	35,148	11	41,552	7	82,923
	25~29세	301	1,911,754	53	368,800	74	379,931	122	462,498	52	700,526
	30~34세	946	5,713,183	133	843,248	319	1,704,470	395	1,714,270	99	1,451,195
	35~39세	2,036	12,135,129	279	1,833,883	828	4,645,318	775	3,147,459	154	2,508,469
	40~44세	4,696	28,488,830	669	4,556,055	2,002	12,149,818	1,769	7,241,753	256	4,541,204
	45~49세	7,288	46,893,020	934	6,678,999	3,052	19,817,410	2,956	13,705,383	346	6,691,228
	50~54세	12,091	80,777,629	1,617	12,157,672	5,092	34,608,276	4,861	22,524,235	521	11,487,445
	55~59세	16,408	117,042,607	2,101	17,073,074	6,734	49,540,782	6,829	32,674,838	744	17,753,913
	60~64세	16,408	103,400,116	2,329	18,488,858	6,484	43,320,863	7,118	31,547,406	477	10,042,988
	65~69세	6,643	34,326,058	1,314	9,289,692	2,704	14,826,493	2,621	10,186,871	4	23,001
	70세 이상	12,682	63,840,677	1,520	10,971,209	4,691	26,220,580	6,471	26,648,839	-	49
지역	서울	11,171	76,073,970	1,566	13,050,259	4,618	31,620,466	4,588	22,682,553	399	8,720,693
	부산	5,721	33,946,694	792	6,001,920	2,308	14,632,950	2,446	10,215,180	175	3,096,644
	대구	4,050	23,622,196	559	3,873,327	1,629	9,937,075	1,746	7,539,877	116	2,271,917
	인천	4,967	30,094,151	688	4,821,938	2,037	12,932,390	2,080	8,766,832	162	3,572,992
	광주	2,126	12,502,682	344	2,428,455	841	4,970,330	862	3,670,186	79	1,433,711
	대전	2,059	13,280,912	306	2,162,365	849	5,563,267	815	3,694,399	89	1,860,882
	울산	1,985	13,721,008	251	2,206,080	725	5,329,686	933	4,428,065	76	1,757,178
	세종	415	2,693,169	65	508,692	168	1,068,510	170	827,593	12	288,375
	경기	19,736	129,240,081	2,757	21,098,630	8,153	54,765,082	8,096	37,000,300	730	16,376,070
	강원	2,815	15,899,586	410	2,762,342	1,033	6,288,478	1,297	5,415,847	75	1,432,919
	충북	2,731	16,681,395	344	2,504,820	1,114	7,022,042	1,163	4,939,847	110	2,214,686
	충남	3,532	20,695,991	440	3,172,173	1,403	8,747,658	1,573	6,546,319	116	2,229,840
	전북	3,048	17,231,102	411	3,049,641	1,197	7,129,682	1,358	5,507,537	82	1,544,241
	전남	3,019	17,099,060	429	2,925,547	1,193	7,205,137	1,326	5,574,756	71	1,393,621
경북	4,816	28,160,804	624	4,536,327	1,893	11,864,899	2,156	8,978,547	143	2,781,031	
경남	6,346	37,374,291	830	6,180,229	2,390	15,256,872	2,937	12,270,997	189	3,666,193	
	제주	988	6,373,700	134	980,916	436	2,914,566	382	1,836,271	36	641,948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
 2)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
 3) 장애등급 1-3급은 장애연금 1-3급을 지급받음.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음
 4) 장애일시보상금의 70세 이상 수급자 수가 없으나, 미수령 수급액 지급에 의해 수급액이 발생함
 자료: 국민연금공단(2025), 「2024년 국민연금통계연보」 p.234-243.

- 장애연금 수급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9,567명으로 여성 19,958명의 약 3배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5-59세와 60-64세 수급자 수가 각각 16,4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0세 이상 12,682명, 50-54세 12,091명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연금 수급자는 경기(19,736명)와 서울(11,171명)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장애연금

-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법」 제67조부터 제71조에 의해 운영됨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에 의해 결정된 장애등급(1-4급)*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음(4급의 경우 일시보상금으로 기본연금액의 225%를 받음)

③ 산재보험 수급

〈표 10-1-4〉 장해급여 수급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해등급별, 지역별

(단위: 명, 원)

구 분		수급자	금액	구 분		수급자	금액
연도	2005	55,781	922,185,208,280	장해등급	1급	3,714	181,522,552,160
	2006	61,894	1,067,385,111,250		2급	3,603	148,278,410,700
	2007	67,227	1,170,646,840,950		3급	4,955	187,876,991,200
	2008	70,580	1,265,916,132,330		4급	2,876	94,900,884,610
	2009	74,584	1,291,083,501,960		5급	9,333	251,370,475,560
	2010	88,863	1,397,872,234,060		6급	15,991	388,585,999,010
	2011	91,906	1,509,244,845,760		7급	18,873	382,855,079,420
	2012	95,229	1,712,958,058,080		8급	1,692	104,357,872,600
	2013	93,524	1,629,026,710,510		9급	2,403	102,588,323,620
	2014	93,689	1,667,219,394,800		10급	3,927	152,866,210,790
	2015	93,953	1,710,783,723,310		11급	10,097	256,952,899,440
	2016	93,383	1,772,502,714,970		12급	7,448	146,325,976,540
	2017	93,407	1,832,567,545,940		13급	7,451	122,340,730,900
	2018	96,493	1,998,757,627,330		14급	24,551	178,713,785,550
	2019	101,942	2,157,725,159,300	지역	서울	13,203	308,465,417,610
	2020	103,768	2,257,946,875,660		부산	8,369	184,489,549,560
	2021	108,780	2,434,528,221,210		대구	5,293	109,465,546,150
	2022	112,002	2,544,825,896,820		인천	8,069	186,151,991,060
	2023	115,515	2,699,536,192,100		광주	3,145	71,247,234,870
성별	남	100,802	2,504,524,043,180		대전	3,278	74,683,497,790
	여	14,713	195,012,148,920		울산	4,595	120,559,529,340
연령별	20세미만	73	627,141,870		세종	348	8,812,236,600
	20-29세	2,029	23,649,403,670		경기	24,409	559,427,395,550
	30-39세	4,905	69,280,966,060		강원	8,870	231,866,509,710
	40-49세	12,317	226,800,018,390		충북	4,204	98,782,606,580
	50-59세	26,839	618,949,507,700		충남	5,262	121,851,146,530
	60-69세	40,318	1,019,699,506,270		전북	4,599	108,165,885,250
	70-79세	21,619	555,176,570,590		전남	4,264	102,774,335,010
	80-89세	7,137	178,448,516,770		경북	6,725	162,985,729,270
	90-99세	275	6,815,823,070		경남	9,982	226,316,624,970
	100세~	3	88,737,710		제주	587	14,487,502,970
					미분류	313	9,003,453,280

주: 1) 2022년 12월말 기준

2) 장해등급은 지급일 기준으로 장해등급별 수급자 수는 중복될 수 있음

3)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자료: 1) 고용노동부(2014). 「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16-317.

2) 고용노동부(2015). 「2014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13-314.

3) 고용노동부(2016). 「2015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18-319.

4) 고용노동부(2017).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2-323.

5) 고용노동부(2018). 「2017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4-325.

6) 고용노동부(2019). 「2018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4-325.

7) 고용노동부(2020). 「2019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4-325.

8) 고용노동부(2021). 「2020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26-327.

9) 고용노동부(2022). 「202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32-333, 340-341.

10) 고용노동부(2023). 「2022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34-335, 342-343.

11)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p.350-351, 358-359.

12) 지역별 통계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임



- 2023년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급자 수는 115,515명이며, 총 수급액은 2조 6,995억 3,619만 2,100원임
 - 전년 대비 수급자 수는 3,513명, 수급액은 전년대비 1,547억 1,029만 5,280원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수급자 수는 100,802명으로 여성 14,713명에 비해 약 6.9배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60~69세가 40,3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59세 26,839명, 70~79세 21,619명 순으로 많음
 - 장해등급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14급이 24,55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7급 18,873명, 6급 15,991명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해급여 수급자 수는 경기(24,409명)와 서울(13,203명)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산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임.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됨
 - 단, 장해 1~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함

④ 건강보험 가입현황

〈표 10-1-5〉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입형태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 분		계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타	미가입
연도	2005	100.0	44.8	40.4	9.7	4.8	-	0.3
	2008	100.0	44.9	33.3	15.7	5.6	0.5	-
	2011	100.0	53.1	29.4	14.4	2.7	0.4	-
	2014	100.0	53.6	30.6	14.3	1.4	0.2	-
	2017	100.0	56.9	28.3	13.1	1.6	0.1	-
	2020	100.0	46.2	28.4	18.7	4.9	1.3	0.4
	2023	100.0	53.5	29.7	15.3	1.4	0.0	0.0
성별	남	100.0	53.0	30.3	14.9	1.7	0.0	0.1
	여	100.0	54.3	28.8	15.7	1.1	0.0	0.0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100.0	46.3	25.9	25.8	2.0	0.0	0.0
	심하지 않은 장애	100.0	57.4	31.8	9.6	1.1	0.0	0.0
장애유형별	지체	100.0	56.0	32.6	10.1	1.2	-	0.1
	뇌병변	100.0	48.0	28.9	21.3	1.8	-	-
	시각	100.0	59.0	29.3	10.4	1.2	-	-
	청각	100.0	59.8	28.6	10.7	0.9	-	-
	언어	100.0	55.3	27.7	15.5	1.3	0.3	-
	지적	100.0	46.4	19.2	31.1	3.3	-	-
	자폐성	100.0	72.0	21.1	5.3	1.6	-	-
	정신	100.0	18.4	21.5	56.6	3.5	-	-
	신장	100.0	45.4	35.0	18.8	0.7	-	-
	심장	100.0	57.6	24.2	17.1	1.2	-	-
	호흡기	100.0	50.0	29.4	18.2	2.3	-	-
	간	100.0	54.7	36.9	8.0	0.4	-	-
	안면	100.0	49.7	34.2	16.1	-	-	-
	장루·요루	100.0	47.4	39.2	13.4	-	-	-
	뇌전증	100.0	36.8	17.4	38.2	7.7	-	-

주: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 장애인 실태조사」 p.171.
2)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2008 장애인 실태조사」 p.125.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p.214.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210.
5)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224.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215, 505.
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18, 546.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83.2%이며, 의료급여(1종+2종) 가입률은 16.7%로 나타난다
- 성별로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남성(83.3%)이 여성(83.1%)보다 높고, 의료급여(1종+2종) 가입률은 여성(16.8%)이 남성(16.6%)보다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률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89.2%)이 장애가 심한 장애인(72.2%)보다 높고, 의료급여(1종+2종) 가입률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27.8%)이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10.7%)보다 높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건강보험은 자폐성장애에서 72.0%로 가장 가입률이 높고, 지역건강보험은 장루·요루장애에서 39.2%, 의료급여 1종은 정신장애에서 56.6%, 의료급여 2종은 뇌전증장애에서 7.7%로 가장 가입률이 높음



〈표 10-1-6〉 건강보험 가입현황 - 가입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 분		계	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연도별	2020	2,227,397	1,528,153	699,244
	2021	2,238,646	1,523,686	714,960
	2022	2,226,227	1,467,962	758,265
	2023	2,231,084	1,443,880	787,204
	2024	2,215,214	1,396,485	818,729
성별	남	1,310,272	831,745	478,527
	여	904,942	564,740	340,202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600,854	383,855	216,999
	심하지 않은 장애	1,614,360	1,012,630	601,730
장애유형별	지체	1,020,640	641,480	379,160
	뇌병변	163,119	96,603	66,516
	시각	209,656	134,592	75,064
	청각	414,779	258,646	156,133
	언어	21,394	14,088	7,306
	지적	131,276	92,523	38,753
	자폐성	43,217	34,511	8,706
	정신	33,676	16,040	17,636
	신장	81,405	48,809	32,596
	심장	4,566	3,013	1,553
	호흡기	7,390	4,533	2,857
	간	15,089	9,518	5,571
	안면	2,072	1,406	666
	장루·요루	14,797	8,977	5,820
	뇌전증	5,342	3,228	2,114
	기타	46,796	28,518	18,278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말 기준 건강보험 자격유지자를 의미함

2) 장애등급: 심한(1-3등급), 심하지 않은 (4-6등급)

3) 자료 특성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기타로 표기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인의 전체 건강보험 자격유지자는 2,215,214명임.

• 가입유형별로는 직장 가입자는 1,396,485명, 지역가입자는 818,729명임

• 연도별로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감을 반복함

• 성별로는 남자 1,310,272명, 여자 904,942명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한장애 600,854명, 심하지 않은 장애 1,614,360명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가 1,020,640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 414,779명, 시각 209,656명, 뇌병변 163,119명 등의 순임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표 1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 현황(전체 수급자 비교)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가구, 명, %)

구분		전체수급자		장애인세대 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비율
연도	2002	691,018	1,351,185	104,009	15.05
	2003	717,861	1,374,405	112,987	15.74
	2004	753,681	1,424,088	123,418	16.38
	2005	809,745	1,513,352	136,892	16.91
	2006	831,692	1,534,950	144,747	17.40
	2007	852,420	1,549,848	154,066	18.07
	2008	854,205	1,529,939	162,527	19.03
	2009	882,925	1,568,533	171,330	19.40
	2010	878,799	1,549,820	173,322	19.72
	2011	850,689	1,469,254	173,751	20.42
	2012	821,879	1,394,042	174,112	21.18
	2013	810,544	1,350,891	175,867	21.70
	2014	814,184	1,328,713	178,397	21.91
	2015	1,014,117	1,646,363	191,723	18.91
	2016	1,035,435	1,630,614	193,585	18.70
	2017	1,032,996	1,581,646	197,081	19.08
	2018	1,165,175	1,743,690	211,010	18.11
	2019	1,281,759	1,881,357	219,889	17.16
	2020	1,459,059	2,134,186	229,395	15.72
	2021	1,637,569	2,359,672	236,581	14.45
	2022	1,699,497	2,451,458	233,683	13.75
	2023	1,788,309	2,554,627	232,384	12.99
지역	서울	313,315	427,880	35,544	11.34
	부산	171,576	234,657	19,527	11.38
	대구	108,632	154,802	13,295	12.24
	인천	116,539	174,116	12,500	10.73
	광주	63,415	96,473	9,040	14.26
	대전	52,729	77,554	7,815	14.82
	울산	31,153	43,817	3,471	11.14
	세종	5,361	8,607	631	11.77
	경기	325,304	474,086	37,864	11.64
	강원	61,450	86,667	9,456	15.39
	충북	55,607	81,577	9,001	16.19
	충남	64,884	92,992	10,348	15.95
	전북	88,781	131,557	13,871	15.62
	전남	75,432	107,240	14,055	18.63
	경북	107,369	151,253	15,803	14.72
	경남	124,358	176,280	17,233	13.86
	제주	22,404	35,069	2,930	13.08

주: 1) 전체수급자 가구 수는 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가구 수임. 전체수급자 인원은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한 수치임

2) 비율 = (장애인수급자 가구 수 / 전체수급자 가구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통계청 KOSIS 인출 (검색일: 2025.05.25)

- 2023년 장애인세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수는 23만 2,384가구로 전체 수급자 1,788,309가구의 12.99%를 차지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세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수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다 2022년부터 감소함
- 지역별 전체 수급자 가구 대비 장애인 수급자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 18.63%, 충북 16.19%, 충남 15.95% 순으로 높음



〈표 1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현황 - 급여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연도	2017	15.0	16.2	14.4	1.4
	2020	19.1	25.0	14.7	1.8
	2023	17.4	17.3	20.7	1.2
성별	남	16.9	17.2	19.9	1.2
	여	18.0	17.4	21.9	1.2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28.5	28.3	31.9	2.2
	심하지 않은 장애	11.4	11.4	14.7	0.7
장애유형별	지체	11.9	12.0	15.4	0.8
	뇌병변	24.6	23.9	28.1	0.9
	시각	11.5	11.5	14.9	0.6
	청각	12.8	12.2	15.7	0.6
	언어	18.2	17.9	21.3	4.3
	지적	34.7	35.4	38.5	5.4
	자폐성	8.7	7.3	12.7	3.6
	정신	61.0	61.0	64.1	0.8
	신장	19.3	19.5	22.3	0.9
	심장	17.7	18.5	18.5	1.8
	호흡기	21.0	20.6	26.7	0.7
	간	9.4	8.9	9.6	-
	안면	16.1	16.1	17.3	-
	장루·요루	13.5	13.7	16.3	0.7
	뇌전증	46.6	46.2	50.6	5.6

주: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61-463.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62-463, 700-701.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93-494, 761-762.

- 2023년 기준 급여유형별 수급 비율은 주거급여(20.7%), 생계급여(17.4%), 의료급여(17.3%), 교육급여(1.2%) 순으로 높음
 - 여성이 남성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비율이 높음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비율이 높음
 -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가장 높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
 -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상),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상),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상)

(2) 장애인연금

① 장애인연금 수급

〈표 10-2-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수, 수급자 수, 수급률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률
연도			
2013	511,979	305,394	59.65
2014	509,164	328,414	64.50
2015	508,927	342,444	67.29
2016	512,314	350,161	68.35
2017	518,657	359,986	69.41
2018	521,304	364,712	69.96
2019	521,180	368,716	70.75
2020	520,176	375,759	72.24
2021	518,705	371,413	71.60
2022	515,498	362,127	70.25
2023	508,975	355,094	69.77
2024	499,338	351,051	70.30

주: 1) 각 연도 12월 말 기준임

2) 수급률 = (수급자 수 / 수급권자 수) * 100

자료: 복지포털 통계(<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29&datsClnNo=1043&datsClnCrit=WS>)

(검색일: 2025.5.25.)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49만 9,338명, 수급자는 35만 1,051명이며, 수급률은 70.30%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급자수 및 수급률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2-4〉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2023) -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수급자	
		인원	비율
전체		351,051	(100.0)
성별	남성	197,668	(56.3)
	여성	153,383	(43.7)
연령	18세~64세	215,082	(61.3)
	65세 이상	135,969	(38.7)
장애유형	지체	48,334	(13.8)
	시각	23,433	(6.7)
	청각	28,993	(8.3)
	언어	2,721	(0.8)
	지적	103,097	(29.4)
	뇌병변	51,264	(14.6)
	자폐성	13,770	(3.9)
	정신	25,677	(7.3)
	신장	49,298	(14.0)
	심장	413	(0.1)
	호흡기	2,974	(0.8)
	간	119	(0.0)
	장루·요루	92	(0.0)
	안면	264	(0.1)
	뇌전증	597	(0.2)
	장애유형 미상	5	(0.0)
장애정도	심한장애(중증)	350,650	(99.9)
	기타	401	(0.1)

구분		수급자	
		인원	비율
소득계층	기초생활보장	177,241	(50.5)
	차상위계층	14,015	(4.0)
	차상위초과	132,768	(37.8)
	시설수급자	27,027	(7.7)
지역	서울	49,356	(14.1)
	부산	25,128	(7.2)
	대구	17,955	(5.1)
	인천	18,822	(5.4)
	광주	10,777	(3.1)
	대전	10,535	(3.0)
	울산	6,329	(1.8)
	세종	1,480	(0.4)
	경기	70,501	(20.1)
	강원	13,325	(3.8)
	충북	13,988	(4.0)
	충남	17,952	(5.1)
	전북	18,871	(5.4)
	전남	19,990	(5.7)
	경북	24,872	(7.1)
	경남	26,216	(7.5)
	제주	4,954	(1.4)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유형별 중 '장애유형 미상'은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급취소 등의 사유로 장애정보가 없는 자를 의미함

3) 장애정도별 중 '기타'는 장애정도 심사 결정보류 및 확인불가인 자를 의미함

자료: 복지포털 복지통계(<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frame.do?datsNo=37&datsClno=1045&datsCcrit=WS>)
(검색일: 2025.5.25.)

원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6.3%, 여성이 43.7%로, 남성이 12.6%p 더 많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18~64세 수급자 수는 21만 5,082명(61.3%)이고 65세 이상은 13만 5,969명(38.7%)임
-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이 2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뇌병변장애인 14.6%, 신장장애인 14.0%, 지체장애인 13.8%임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99.9%로 대다수를 차지함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5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차상위초과 37.8%, 시설수급자 7.7%, 차상위계층 4.0%임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경기도 20.1%, 서울에 14.1% 분포함

※ 장애인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임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지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함

②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표 10-2-5〉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연도별	2019	118,377	56,562	12,222	26,227	724	3,492	10,783	52
	2020	124,713	58,442	12,844	29,718	735	3,595	11,054	74
	2021	109,193	49,992	11,187	26,773	644	3,493	9,620	83
	2022	105,273	47,697	10,732	26,672	603	3,456	9,086	102
	2023	106,440	47,516	10,768	27,992	599	3,529	9,073	121
	2024	107,383	47,284	10,913	28,955	564	3,699	9,126	138
성별	남	38,989	14,522	4,482	10,045	343	1,961	4,296	125
	여	68,394	32,762	6,431	18,910	221	1,738	4,830	13
연령대별	18세 미만	-	-	-	-	-	-	-	-
	18~64세	16,916	4,800	1,768	983	145	3,355	1,695	138
	65세 이상	90,467	42,484	9,145	27,972	419	344	7,431	-
지역별	서울	13,617	5,674	1,508	3,275	84	521	1,192	37
	부산	7,689	3,334	841	2,043	40	204	762	10
	대구	5,597	1,993	505	2,142	31	165	428	8
	인천	6,220	2,559	592	1,985	31	199	504	5
	광주	3,194	1,388	336	817	14	123	286	4
	대전	2,659	1,217	305	626	14	91	219	6
	울산	1,800	799	193	461	8	73	163	1
	세종	376	147	41	96	2	17	34	1
	경기	19,822	8,281	1,988	5,097	129	824	1,888	43
	강원	4,977	2,492	557	1,186	23	120	372	5
	충북	3,821	1,798	377	932	18	178	335	3
	충남	4,705	2,128	436	1,316	22	174	363	2
	전북	7,388	3,627	642	2,005	31	178	615	2
	전남	7,831	4,232	843	1,699	39	207	503	2
	경북	8,672	3,577	834	2,973	27	262	629	3
	경남	7,786	3,600	773	1,922	43	296	727	3
	제주	1,229	438	142	380	8	67	106	3

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

2) 연령대별은 주민등록 기준 월말 기준의 만나이 산정

3) 지역별은 수급자가 등록된 관리행정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 연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표 3.6 및 표 3.7).

- 2024년 기준,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총 32,375명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2019년 42,609명에서 2024년 32,375명으로 매년 감소 추이를 보임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중 뇌병변이 9,42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적 8,160명, 지체 6,482명, 신장 5,973명 등의 순임



〈표 10-2-5〉 차상위장애연금 수급권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계속)

(단위: 명)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19	5,120	714	210	384	314	72	1,078	423
	2020	4,928	760	202	383	351	64	1,163	400
	2021	4,413	730	179	335	342	66	991	345
	2022	4,059	734	174	321	325	61	947	304
	2023	3,950	720	171	336	342	73	973	277
	2024	3,846	715	155	298	349	67	999	275
성별	남	1,710	372	82	220	208	29	472	122
	여	2,136	343	73	78	141	38	527	153
연령대별	18세 미만	-	-	-	-	-	-	-	-
	18-64세	2,970	470	50	43	184	19	115	181
	65세 이상	876	245	105	255	165	48	884	94
지역별	서울	843	117	27	71	58	12	150	48
	부산	220	60	19	28	23	6	86	13
	대구	186	49	4	12	19	3	42	10
	인천	181	39	13	11	29	2	59	11
	광주	120	35	5	11	12	3	27	13
	대전	103	23	2	9	11	4	19	10
	울산	49	18	3	6	11	-	12	3
	세종	24	2	-	1	1	-	6	4
	경기	973	155	37	70	74	8	187	68
	강원	111	25	2	8	12	4	51	9
	충북	87	17	9	9	5	3	37	13
	충남	144	33	5	10	10	4	51	7
	전북	154	25	5	7	18	6	56	17
	전남	157	35	6	14	16	3	58	17
	경북	215	30	9	12	23	4	62	12
	경남	234	42	7	13	23	5	83	15
	제주	45	10	2	6	4	0	13	5

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를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

2) 연령대별은 주민등록 기준 월말 기준의 만나이 산정

3) 지역별은 수급자가 등록된 관할행정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 년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표 3.6 및 표 3.7).

-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수급자수는 16,434명, 남자 수급자 수는 15,941명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64세와 65세 이상의 수급자 수는 각각 16,024명, 16,351명으로 비슷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의 수급자 수가 각각 7,625명, 5,600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3) 장애수당

① 장애수당 수급

〈표 10-2-6〉 장애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수급자 수	비율	구분	수급자 수	비율
연도	2011	306,480	-	장애유형별	호흡기 1,415 (0.3)
	2012	318,483	-		간 1,717 (0.4)
	2013	320,029	-		안면 341 (0.1)
	2014	320,318	-		장루·요루 3,212 (0.8)
	2015	327,881	-		뇌전증 3,139 (0.7)
	2016	336,224	-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130,957 (31.1)
	2017	343,662	-		심하지 않은 장애 290,085 (68.9)
	2018	352,117	-	소득계층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95,332 (70.1)
	2019	365,804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271 (3.9)
	2020	378,946	-		시설입소자 109,439 (26.0)
	2021	389,210	-	지역별	서울 62,974 (15.0)
	2022	396,633	-		부산 35,155 (8.3)
	2023	413,627	-		대구 25,103 (6.0)
	2024	421,042	(100.0)		인천 26,996 (6.4)
성별	남성	199,274	(47.3)		광주 12,685 (3.0)
	여성	221,768	(52.7)		대전 12,166 (2.9)
연령별	18세~64세	150,431	(35.7)		울산 6,174 (1.5)
	65세 이상	270,611	(64.3)		세종 1,254 (0.3)
장애유형별	지체	157,018	(37.3)		경기 75,169 (17.9)
	시각	36,089	(8.6)		강원 14,749 (3.5)
	청각	82,483	(19.6)		충북 17,620 (4.2)
	언어	3,280	(0.8)		충남 24,915 (5.9)
	지적	33,206	(7.9)		전북 30,502 (7.2)
	뇌병변	41,339	(9.8)		전남 29,355 (7.0)
	자폐성	397	(0.1)		경북 4,990 (1.2)
	정신	53,218	(12.6)		경남 16,609 (3.9)
	신장	3,543	(0.8)		제주 24,626 (5.8)
	심장	645	(0.2)		

주: 1) 연도별 자료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임

2)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소득계층별/지역별 자료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42만 1,042명으로 전년 대비 7,415명 증가함

- 수급자 중 여성이 52.7%, 65세 이상이 64.3%를 차지함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37.3%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19.6%, 정신장애인 12.6% 순으로 많음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전체 수급자 중 68.9%를 차지함
- 소득계층별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70.1%, 시설입소자가 26.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3.9%를 차지함
- 지역별 장애수당 수급자는 경기도 17.9% 서울에 15.0%, 부산에 8.3% 분포하고 있음

※※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지원함



②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수

〈표 10-2-7〉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연도별	2019	42,609	6,482	4,172	4,474	282	8,160	922
	2020	41,037	5,871	3,823	4,224	292	8,514	1,186
	2021	36,326	4,999	3,258	3,596	258	8,010	1,256
	2022	33,188	4,486	2,932	3,206	253	7,611	1,315
	2023	33,132	4,390	2,929	3,066	264	7,789	1,495
	2024	32,375	4,138	2,741	2,934	268	7,882	1,667
성별	남	15,941	2,052	952	1,072	149	4,504	1,417
	여	16,434	2,086	1,789	1,862	119	3,378	250
연령대별	18세 미만	-	-	-	-	-	-	-
	18~64세	16,024	1,123	530	658	70	7,464	1,667
	65세 이상	16,351	3,015	2,211	2,276	198	4,120	-
지역별	서울	5,600	563	436	362	45	1,627	516
	부산	1,984	260	188	157	21	349	67
	대구	1,377	174	104	122	10	309	47
	인천	1,693	206	126	181	13	379	85
	광주	909	108	85	73	14	224	42
	대전	898	116	68	73	6	218	59
	울산	672	76	62	43	8	170	37
	세종	157	26	8	18	1	36	5
	경기	7,625	889	539	604	62	2,026	502
	강원	1,118	194	120	148	4	237	30
	충북	1,108	154	103	130	7	280	37
	충남	1,270	194	130	134	9	333	27
	전북	1,461	241	158	144	13	335	30
	전남	1,683	272	198	239	10	325	32
	경북	1,969	298	155	257	16	417	43
	경남	2,395	320	213	215	20	499	88
	제주	456	47	48	34	9	118	20

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

2) 연령대별은 주민등록 기준 월말 기준의 만나이 산정

3) 지역별은 수급자가 등록된 관리행정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 년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표 3.8 및 표 3.9).

- 2024년 기준, 차상위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총 107,383명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2019년 118,377명에서 2024년 107,383명으로 감소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중 지체가 56,56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각 26,227명, 시각 12,222명, 뇌병변 10,783명 등의 순임

〈표 10-2-7〉 차상위장애수당 수급권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계속)

(단위: 명)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19	2,103	5,973	81	415	29	23	14	51
	2020	1,914	6,049	75	377	24	22	12	49
	2021	1,660	5,546	69	325	24	20	8	51
	2022	1,448	5,170	57	279	19	17	11	53
	2023	1,349	5,358	55	267	17	18	11	54
	2024	1,228	5,421	58	246	17	13	11	56
성별	남	570	2,810	36	192	6	3	5	28
	여	658	2,611	22	54	11	10	6	28
연령대별	18세 미만	-	-	-	-	-	-	-	-
	18~64세	848	1,970	19	35	5	6	1	53
	65세 이상	380	3,451	39	211	12	7	10	3
지역별	서울	217	904	13	40	2	2	2	17
	부산	91	436	5	15	-	2	-	6
	대구	57	259	2	8	1	1	1	4
	인천	42	343	1	18	-	1	-	1
	광주	31	155	3	12	-	-	-	-
	대전	30	144	4	8	1	-	1	-
	울산	16	118	-	7	-	-	-	2
	세종	12	24	-	3	-	-	-	-
	경기	282	1,295	18	61	8	1	1	14
	강원	33	156	2	7	-	-	-	1
	충북	42	164	-	6	-	-	1	4
	충남	65	187	1	4	1	-	1	-
	전북	50	211	2	9	-	3	1	-
	전남	54	245	1	6	1	1	1	1
	경북	77	296	2	10	-	1	1	2
	경남	108	423	4	25	3	1	-	3
	제주	21	61	-	7	-	-	1	1

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

2) 연령대별은 주민등록 기준 월말 기준의 만나이 산정

3) 지역별은 수급자가 등록된 관할행정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 년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표 3.8 및 표 3.9).

-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수급자 수가 68,394명으로 남자 38,989명 보다 약 29,000명 더 많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수급자 수는 90,467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약 84.2%를 차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서울의 수급자 수가 각각 19,822명, 13,617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4) 장애아동수당

① 장애아동수당 수급

〈표 10-2-8〉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수급자 수	비율	구분	수급자 수	비율
연도			장애유형		
2011	19,466	-	심장	39	(0.2)
2012	18,631	-	호흡기	4	(0.0)
2013	21,777	-	간	39	(0.2)
2014	21,121	-	안면	9	(0.1)
2015	20,464	-	장루·요루	24	(0.1)
2016	19,934	-	뇌전증	40	(0.2)
2017	19,323	-	장애정도		
2018	18,568	-	심한 장애	16,327	(92.3)
2019	17,990	-	심하지 않은 장애	1,360	(7.7)
2020	16,565	-	소득계층		
2021	16,585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290	(52.5)
2022	16,759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298	(35.6)
2023	17,333	-	시설입소자	2,099	(11.9)
2024	17,687	(100.0)	지역별		
성별			서울	2,152	(12.2)
남성	11,410	(64.5)	부산	1,273	(7.2)
여성	6,277	(35.5)	대구	945	(5.3)
연령별			인천	1,155	(6.5)
18세 미만	15,645	(88.5)	광주	804	(4.5)
18~20세	1,740	(9.8)	대전	649	(3.7)
20세 초과	7	(0.0)	울산	311	(1.8)
장애유형			세종	63	(0.4)
지체	345	(2.0)	경기	3,360	(19.0)
시각	244	(1.4)	강원	819	(4.6)
청각	435	(2.5)	충북	769	(4.3)
언어	576	(3.3)	충남	1,024	(5.8)
지적	11,449	(64.7)	전북	1,226	(6.9)
뇌병변	1,302	(7.4)	전남	1,045	(5.9)
자폐성	3,147	(17.8)	경북	400	(2.3)
정신	9	(0.1)	경남	596	(3.4)
신장	25	(0.1)	제주	1,096	(6.2)

주: 1) 연도별 자료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임

2) 성별/연령별/장애유형별/장애정도별/소득계층별/지역별 자료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1만 7,687명으로 전년 대비 354명 증가함
- 장애아동 수급자 중 남성이 64.5%, 18세 미만이 88.5%를 차지함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아동의 비중이 64.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음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가 심한 아동이 전체 수급자 중 92.3%를 차지함
- 소득계층별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52.5%,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5.6%, 시설 입소자는 11.9%를 차지함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경기도에 19.0%, 서울에 12.2%, 부산에 7.2% 분포하고 있음

※※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②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

〈표 10-2-9〉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연도별	2019	5,725	190	150	252	181	3,332	687	836
	2020	5,926	178	157	246	243	3,382	681	946
	2021	5,979	162	141	230	264	3,459	621	1,008
	2022	6,122	165	126	221	254	3,582	570	1,109
	2023	6,134	144	109	212	254	3,551	515	1,254
	2024	6,082	130	106	196	250	3,414	459	1,440
성별	남	4,054	67	54	105	165	2,220	251	1,146
	여	2,028	63	52	91	85	1,194	208	294
연령대별	18세 미만	5,671	117	97	182	245	3,088	444	1,419
	18~64세	409	13	9	14	5	324	15	21
	65세 이상	2	-	-	-	-	2	-	-
지역별	서울	692	12	12	24	14	351	56	203
	부산	361	10	7	14	12	185	25	102
	대구	316	9	4	4	12	199	24	62
	인천	415	13	3	17	20	218	33	105
	광주	214	8	7	7	4	122	19	42
	대전	186	1	4	4	15	106	11	42
	울산	111	4	2	3	3	66	10	22
	세종	33	2	-	-	1	12	4	14
	경기	1,409	28	19	54	58	806	114	314
	강원	168	1	5	6	5	102	16	32
	충북	291	7	2	19	10	176	12	60
	충남	238	1	7	6	3	150	9	60
	전북	334	4	10	18	29	192	18	61
	전남	318	10	10	4	13	189	23	60
	경북	436	12	6	4	29	254	31	96
	경남	435	8	5	10	18	217	45	128
	제주	125	-	3	2	4	69	9	37

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

2) 연령대별은 주민등록 기준 월말 기준의 만나이 산정

3) 지역별은 수급자가 등록된 관리행정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년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표 3.3 및 표 3.4).

- 2024년 기준,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는 총 6,082명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수는 2019년 5,725명에서 2024년 6,082명으로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 중 지적이 3,332명으로 가장 많음



〈표 10-2-9〉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현황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계속)

(단위: 명)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19	4	12	23	4	19	4	9	22
	2020	3	10	19	3	24	1	7	26
	2021	2	10	19	4	24	2	8	25
	2022	2	11	20	4	23	2	8	25
	2023	5	12	21	4	19	2	9	23
	2024	2	11	23	3	14	3	11	20
성별	남	-	8	13	3	5	1	4	12
	여	2	3	10	-	9	2	7	8
연령대별	18세 미만	1	8	21	3	13	3	11	19
	18-64세	1	3	2	-	1	-	-	1
	65세 이상	-	-	-	-	-	-	-	-
지역별	서울	-	5	4	-	5	1	3	2
	부산	-	2	4	-	-	-	-	-
	대구	-	-	-	-	-	-	-	2
	인천	-	-	3	-	-	-	2	1
	광주	-	1	-	-	1	1	2	-
	대전	-	-	1	-	1	-	-	1
	울산	-	1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	2	4	3	1	0	2	3
	강원	-	-	-	-	-	-	-	1
	충북	-	-	3	-	-	-	1	1
	충남	-	-	-	-	-	-	-	2
	전북	-	-	1	-	1	-	-	-
	전남	1	-	2	-	2	1	1	2
	경북	-	-	1	-	1	-	-	2
	경남	-	-	-	-	1	-	-	3
	제주	-	-	-	-	1	-	-	-

주: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차상위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연도말 기준으로 집계

2) 연령대별은 주민등록 기준 월말 기준의 만나이 산정

3) 지역별은 수급자가 등록된 관할행정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집계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각 년도),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표 3.3 및 표 3.4).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수급자 수가 4,054명으로 여자 2,028명 보다 약 2배 많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의 수급자 수는 5,671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약 93.2%를 차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수급자 수가 1,409명으로 가장 많은 편임

(4) 정신질환 의료보장

① 만성 정신질환 급여

〈표 10-2-10〉 만성 정신질환 급여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 일, 백만원)

구분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백만원)	급여비 (백만원)
			인원	비율				
연도	2013	51,448,491	2,679,975	5.2	60,573,044	351,255,548	3,476,993	2,835,071
	2014	51,757,146	2,741,609	5.3	63,965,263	404,192,088	3,848,742	3,122,054
	2015	52,034,424	2,857,828	5.5	67,069,255	429,546,532	4,130,656	3,335,307
	2016	52,272,755	3,039,137	5.8	71,005,336	467,315,609	4,511,888	3,625,008
	2017	52,426,625	3,185,509	6.1	74,146,666	495,101,365	4,834,917	3,859,761
	2018	52,556,653	3,421,605	6.5	77,668,892	542,754,520	5,280,105	4,225,370
	2019	52,880,293	3,643,813	6.9	79,265,873	596,357,805	5,687,080	4,573,192
	2020	52,870,968	3,747,397	7.1	79,684,042	646,772,399	6,029,052	4,864,183
	2021	52,928,662	4,068,632	7.7	81,382,050	712,004,398	6,532,168	5,269,805
	2022	52,932,270	4,308,043	8.1	80,659,222	761,670,166	6,753,600	5,453,014
	2023	52,970,096	4,481,234	8.5	82,081,509	815,551,538	7,197,901	5,804,141
지역	서울	9,726,643	832,153	8.6	10,502,678	147,714,486	1,022,742	806,582
	부산	3,352,406	329,500	9.8	9,146,568	65,230,075	745,664	610,241
	대구	2,414,027	224,180	9.3	4,687,779	40,558,637	396,322	326,906
	인천	3,100,888	238,467	7.7	3,586,786	42,407,763	320,378	259,988
	광주	1,450,225	111,990	7.7	2,849,589	19,846,094	246,499	200,613
	대전	1,471,532	131,958	9.0	2,145,336	23,607,117	174,448	141,183
	울산	1,131,098	81,004	7.2	1,984,197	15,119,337	160,283	127,961
	세종	394,481	29,758	7.5	411,783	5,081,829	36,592	28,729
	경기	14,198,708	1,068,916	7.5	14,249,059	191,147,807	1,330,020	1,053,285
	강원	1,553,457	136,376	8.8	1,981,607	24,795,458	168,968	136,888
	충북	1,652,226	145,884	8.8	2,370,013	26,038,111	199,085	161,440
	충남	2,233,068	199,332	8.9	3,657,459	36,835,714	317,886	254,866
	전북	1,793,348	182,384	10.2	4,460,076	33,469,367	380,439	310,770
	전남	1,848,641	182,092	9.9	5,147,495	33,275,708	448,783	364,371
	경북	2,617,518	243,722	9.3	6,433,162	46,422,644	543,808	445,756
	경남	3,336,999	283,848	8.5	7,725,731	52,923,222	639,090	521,341
	제주	694,831	59,670	8.6	742,191	11,078,169	66,892	53,222

주: 1) 만성질환 중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현황이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 주요 만성질환으로 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

2) 연말 주민등록 실거주지 기준임

3) 수진기준(의료이용은 약국제외, 급여일수,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포함)이며, 의료급여 포함함

4) 진료실인원의 비율은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만성 정신질환 진료실인원의 비율로, 내부연구진에서 산출함

5)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출처: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 진료실인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가입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수

· 내원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급여일수(진료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총 투약일수를 포함한 일수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

· 급여비(공단부담금): 심사결정된 총진료비 중 법이 정한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

자료: 1)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2013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p.44-45.

2) 2014년~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p.50-51.

- 2023년 기준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 실인원은 448만 1,234명(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8.5%)이며, 총 진료비는 7조 1,979억 100만 원, 급여비는 5조 8,041억 4,100만 원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실인원,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비율,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가 전년 대비 증가함 (전년대비 증감률: 진료 실인원(4.0%), 내원일수(1.8%), 급여일수(7.1%), 진료비(6.6%), 급여비(6.4%))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서울의 경우 만성 정신질환의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반면,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 대비 만성 정신질환 진료실인원의 비율은 전북 10.2%, 전남 9.9%, 부산 9.8% 등이 높게 나타남



② 정신질환 의료급여

〈표 10-2-11〉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급여건수	입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금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비	기금부담금	진료비	기금부담금
2013	353,289	3,302,454	22,903,389	1,106,842,965	1,098,006,186	335	332	48	48
2014	362,945	3,459,377	23,628,260	1,159,758,861	1,150,887,083	335	333	49	49
2015	381,137	3,616,648	24,264,510	1,198,994,952	1,189,894,900	332	329	49	49
2016	405,465	3,935,040	25,352,961	1,268,469,767	1,258,487,913	322	320	50	50
2017	415,077	4,374,889	25,756,717	1,303,508,991	1,284,404,519	298	294	51	50
2018	438,490	4,766,890	26,411,105	1,374,792,724	1,350,448,759	288	283	52	51
2019	457,744	5,181,844	26,769,979	1,456,978,718	1,430,783,061	281	276	54	53
2020	470,003	5,489,809	27,025,367	1,563,962,188	1,535,565,267	285	280	58	57
2021	489,271	5,819,567	27,238,927	1,771,572,636	1,718,342,823	304	295	65	63
2022	496,069	5,940,600	26,742,022	1,854,887,842	1,789,295,985	312	301	69	67
2023	529,934	6,386,495	27,536,135	2,009,730,210	1,938,851,625	315	304	72	70
2024	547,273	6,636,551	28,246,466	2,127,455,257	2,055,318,246	321	310	75	73
계	140,485	1,359,331	8,980,092	757,686,804	733,667,005	557	540	84	82
1.치매 (F00-F03)	입원	41,909	311,381	7,936,793	658,416,775	2,115	2,041	83	80
외래	102,848	683,389	678,738	36,463,655	35,428,999	53	52	54	52
약국	65,605	364,561	364,561	62,806,374	62,645,649	172	172	172	172
계	25,755	248,099	2,460,207	170,088,463	162,823,424	686	656	69	66
2.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 (F10)	입원	12,527	95,849	2,306,072	151,785,083	1,656	1,584	69	66
외래	17,406	133,291	135,176	9,874,388	9,588,888	74	72	73	71
약국	3,272	18,959	18,959	1,458,145	1,449,453	77	76	77	76
계	1,705	7,586	16,189	1,873,091	1,808,745	247	238	116	112
3.기타 정신 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1-F19)	입원	478	841	9,465	1,246,100	1,482	1,422	132	126
외래	949	5,239	5,218	432,726	419,048	83	80	83	80
약국	532	1,506	1,506	194,266	193,577	129	129	129	129

주: 1)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감사 등 포함) 기준임

2) 현황 및 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출처: 의료급여 주요통계)

· 진료실인원: 특정기간 동안 진료 받은 환자를 중복 제외하여 집계한 인원 수. 현행의 수급권자가 여러 번 진료 받더라도 진료실인원은 1명으로 집계됨

· 급여건수: 의료급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중, 심사결정 혹은 지급결정 건 수

· 입내원일수: 수급권자가 실제로 의료급여기관에 내원 또는 입원한 일수

· 총진료비(의료급여비용 총액):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기금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 기금부담금: 의료급여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금액

자료: 1) 2013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제3장 상병통계현황 제7표 정신질환상병 의료급여 종별 진료현황(계)

2)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 p.748~749.

3)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7 의료급여통계연보」 p.466~467.

4) 2018년~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 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p.750~751.

5)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의료급여 주요통계」 p.92~93.

6) 2023~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의료급여 주요통계」 p.86~87.

- 2024년 기준 정신질환 진료 실인원은 54만 7,273명이며, 급여건수는 663만 6,551건, 총진료비는 2조 1,274억 5,525만 7천 원, 기금부담금 2조 553억 1,824만 6천 원임. 급여 1건당 진료비는 32만 1천 원, 급여 1건당 기금부담금은 30만 9천 원이며, 내원 1일당 진료비는 7만 5천 원, 내원 1일당 기금부담금은 7만 3천 원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실인원, 급여건수, 입내원일수, 총 진료비, 기금부담금은 증가추이를 보이며, 급여 1건당 진료비와 기금부담금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임

〈표 10-2-11〉 정신질환 상병별 의료급여 현황 - 연도별, 상병별(계속)

(단위: 명, 건, 일, 천원)

구 분		진료 실인원	급여건수	입내원 일수	총 진료비	기금부담금	건당		내원일당	
							진료비	기금부담금	진료비	기금부담금
4.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20-F29)	계	99,015	1,326,331	10,174,415	711,715,959	685,085,612	537	517	70	67
	입원	34,436	325,201	9,063,628	617,848,461	593,168,445	1,900	1,824	68	65
	외래	73,579	910,971	1,020,628	85,854,906	83,945,345	94	92	84	82
	약국	12,000	90,159	90,159	8,012,593	7,971,822	89	88	89	88
5.기분(정동성) 장애 (F30-F39)	계	153,655	1,813,919	2,893,033	201,592,475	195,694,853	111	108	70	68
	입원	8,996	47,328	1,110,513	78,495,543	75,136,047	1,659	1,588	71	68
	외래	145,213	1,522,156	1,538,085	107,728,096	105,329,083	71	69	70	68
	약국	36,349	244,435	244,435	15,368,836	15,229,722	63	62	63	62
6.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40-F48)	계	84,031	686,980	770,797	47,420,024	46,237,897	69	67	62	60
	입원	1,701	4,685	86,228	6,570,598	6,289,632	1,402	1,343	76	73
	외래	78,337	564,316	566,590	34,550,640	33,711,385	61	60	61	59
	약국	26,207	117,979	117,979	6,298,786	6,236,879	53	53	53	53
7.정신지체 (F70-F79)	계	20,532	200,824	1,212,769	83,062,558	79,871,075	414	398	68	66
	입원	4,372	38,075	1,042,170	71,348,300	68,426,342	1,874	1,797	68	66
	외래	16,908	139,530	147,380	9,915,255	9,655,198	71	69	67	66
	약국	3,407	23,219	23,219	1,799,003	1,789,535	77	77	77	77
8.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F04-F09, F50-F69, F80-F99)	계	97,703	720,185	1,177,600	79,303,829	77,066,025	110	107	67	65
	입원	3,409	19,358	478,585	34,221,749	32,768,827	1,768	1,693	72	68
	외래	90,163	521,557	519,745	32,088,639	31,371,037	62	60	62	60
	약국	41,636	179,270	179,270	12,993,442	12,926,162	72	72	72	72
9.뇌전증 (G40-G41)	계	31,599	273,296	561,364	74,712,054	73,063,611	273	267	133	130
	입원	4,122	16,897	310,512	41,985,700	40,726,602	2,485	2,410	135	131
	외래	28,878	169,885	164,338	11,531,563	11,178,439	68	66	70	68
	약국	18,862	86,514	86,514	21,194,790	21,158,570	245	245	245	245

주: 1) 질병현황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시 기재한 상병기호(감사 등 포함) 기준임

2) 현황 및 계는 반올림하여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출처: 의료급여 주요통계)

· 진료실인원: 특정기간 동안 진료 받은 환자를 중복 제외하여 집계한 인원 수, 현명의 수급권자가 여러 번 진료 받더라도 진료실인원은 1명으로 집계됨

· 급여건수: 의료급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중, 심사결정 혹은 지급결정된 건수

· 입내원일수: 수급권자가 실제로 의료급여기관에 내원 또는 입원한 일수

· 총진료비(의료급여비용 총액):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기금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 기금부담금: 의료급여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담한 금액

4) 정신과질환 상병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기호 F00-F99 및 G40-G41

자료: 1) 2013년~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제3장 상병통계현황 제7표 정신질환상병 의료급여 종별 진료현황(계)

2)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7),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 p.748-749.

3)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 「2017 의료급여통계연보」 p.466-467.

4) 2018년~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각 년도), 「의료급여통계연보」 p.750-751.

5)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의료급여 주요통계」 p.92-93.

6) 2023년~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의료급여 주요통계」 p.86-87.

- 상병별 진료실인원은 기분(정동성) 장애가 15만 3,6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치매 14만 485명,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9만 9,015명 순으로 많음
- 급여 1건당 진료비는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장애가 68만 5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치매가 55만 7천 원으로 많음
- 내원 1일당 진료비는 뇌전증이 13만 3천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정신 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가 11만 6천 원으로 많음



③ 정신보건 의료보장 이용

〈표 10-2-12〉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연도	2018	143,156	77,773	64,112	6,949	503
	2019	138,882	74,971	62,710	6,673	440
	2020	122,829	63,844	57,317	5,633	379
	2021	115,121	60,075	53,767	4,681	303
	2022	116,277	62,125	52,554	4,693	264
	2023	119,897	65,826	52,699	5,159	243
기관종류	종합병원 정신과	23,811	19,739	3,721	517	23
	병원 정신과	6,026	2,984	2,912	275	7
	정신병원	92,436	44,850	46,553	4,421	215
	요양병원 정신과	x	-	x	-	-
	한방병원 정신과	359	122	215	32	-
	의원 정신과	1,792	1,063	704	70	-
지역	한의원 정신과	-	-	-	-	-
	서울	13,299	10,182	2,843	516	24
	부산	9,196	4,799	4,192	428	74
	대구	8,926	4,833	3,997	405	x
	인천	10,093	6,666	3,188	561	7
	광주	4,388	2,552	1,728	236	-
지역	대전	2,733	1,465	1,206	136	-
	울산	2,686	1,457	1,179	123	15
	세종	115	34	80	x	-
	경기	26,474	16,672	9,575	968	41
	강원	3,062	1,494	1,519	143	x
	충북	4,609	2,113	2,452	200	16
	충남	5,337	2,583	2,752	150	x
	전북	4,896	2,213	2,591	253	x
	전남	5,881	2,142	3,678	247	x
	경북	10,175	3,628	6,528	436	6
	경남	12,798	5,430	7,264	530	54
	제주	918	586	298	64	x

주: 1)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이며, 만 15세 이상 차제 제외 F코드 전체의 실인원을 의미함

2) 기타에는 보훈, 외국인 근로자, 형려환자 등이 포함됨

3) 시도별 현황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분석함

4) 2회 이상 입원환자는 입원 사정별로 의료보장이 상이할 수 있어, 기관 종류별 또는 시·도별 실인원의 합계는 전체 실인원의 값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5)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5건 미만의 인적 집계정보는 'x'로 표기하였고, 자료 부족(또는 0건)은 '-'로 표기함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p.79.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81.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81.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81.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68.

6)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82.

- 2023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입원한 환자의 실인원은 총 11만 9,897명임. 입원환자의 의료보장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6만 5,826명, 의료급여(1종+2종) 5만 7,858명, 기타 243명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실인원 수는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2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임

• 정신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인원 수는 정신병원인 9만 2,43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정신과 2만 3,811명, 병원 정신과 6,026명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인원 수는 경기도가 2만 6,47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만 3,299명, 경남 1만 2,798명 등의 순으로 많음

〈표 10-2-13〉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연도	2018	9,518	1,171	8,316	22	9
	2019	9,252	1,105	8,124	19	4
	2020	8,828	1,002	7,797	20	9
	2021	8,537	886	7,538	99	14
	2022	8,249	844	7,379	15	11
	2023	7,961	809	7,133	11	8

주: 1)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임

2) 기타에는 보훈, 외국인 근로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됨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p.86.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87.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87.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87.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74.
 6)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88.

- 2023년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7,961명임. 입소자의 의료보장 유형은 의료급여(1종+2종) 7,144명, 건강보험 809명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감소 추이를 보임



〈표 10-2-14〉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의료보장 현황 - 연도별, 기관종류별,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타
				1종	2종	
연도	2018	88,273	48,945	29,998	6,453	2,877
	2019	87,075	46,898	30,806	6,328	3,043
	2020	89,293	48,421	30,805	6,160	3,907
	2021	93,522	52,291	31,330	6,449	3,452
	2022	94,145	53,147	30,809	6,420	3,769
	2023	93,513	56,866	29,077	5,750	1,820
기관종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80,044	50,066	23,451	4,889	1,63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895	3,915	2,222	646	112
	정신재활시설	6,574	2,885	3,404	215	70
지역	서울	11,220	6,224	3,940	917	139
	부산	5,698	2,889	2,193	478	138
	대구	3,540	1,939	1,276	209	116
	인천	6,967	4,002	2,145	562	258
	광주	2,762	1,365	1,097	250	50
	대전	1,915	984	780	132	19
	울산	1,526	996	410	85	35
	세종	376	276	63	10	27
	경기	25,291	17,877	6,008	1,199	207
	강원	5,264	2,899	1,906	363	96
	충북	5,547	4,070	1,076	219	182
	충남	3,894	2,741	919	141	93
	전북	3,222	1,592	1,339	220	71
	전남	3,797	1,837	1,622	267	71
	경북	4,908	2,703	1,731	295	179
	경남	5,713	3,233	2,043	316	121
	제주	1,873	1,239	529	87	18

주: 1)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임

2) 기타에는 보호, 외국인 근로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됨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p.98.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100.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100.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100.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86.
 6)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100.

- 2023년 기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수는 9만 3,513명임. 등록자의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5만 6,866명, 의료급여(1종+2종) 3만 4,827명임
 • 기관종류별로 살펴보면, 등록자 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8만 44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등록자 수는 경기도가 2만 5,29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만 1,220명, 인천 6,967명 등의 순으로 많음

3) 사회서비스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① 개요

〈표 10-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지원규모, 월평균 급여량(지원시간) 현황 - 연도별

(단위: 억원, 명, 만원, 시간)

구분	예산	지원 규모(이용자)	월평균 급여량	월평균 지원시간
2007	296	14,515	33.2	46
2008	750	19,498	44.8	56
2009	1,124	27,818	57.6	72
2010	1,348	29,409	57.6	72
2011	1,928	33,667	57.6	83
2012	3,098	38,266	93.9	83
2013	3,829	48,335	93.9	110
2014	4,285	53,870	103.3	120
2015	4,679	64,523	108.8	123
2016	5,008	71,636	110.9	123
2017	6,061	72,193	113.0	123
2018	7,194	78,202	131.0	122
2019	10,034	86,730	160.3	124
2020	13,057	93,115	170.0	126
2021	15,217	102,575	181.0	129
2022	17,405	110,778	200.0	135
2023	19,919	120,877	212.0	136
2024	22,846	129,998	222.0	138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지자체 예산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예산임

3) 월평균 지원시간은 월평균 급여량을 시간당 단가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예산은 2007년 296억원에서 2024년 22,846억원으로, 지원 규모는 2007년 14,515명에서 2024년 129,99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기준 월평균 급여량은 222.0만원, 월평균 지원시간은 138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만원, 2시간 증가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음(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되며, 심의결과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를 선정함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됨.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됨(활동지원급여:1~15구간,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제)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



〈표 10-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개, 명)

구분		수급자	이용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록인원	활동인원
연도별	2011	46,502	33,667	592	214	125	31,234	23,653
	2012	50,520	38,266	614	223	122	42,467	28,003
	2013	60,435	48,335	689	229	121	67,823	40,448
	2014	64,906	53,870	723	224	110	56,531	46,812
	2015	72,212	64,523	751	227	105	61,366	52,761
	2016	79,926	71,636	756	143	33	64,145	58,102
	2017	86,926	72,193	767	142	26	68,167	62,629
	2018	94,496	78,202	774	138	26	72,981	68,673
	2019	105,569	86,730	802	146	34	82,448	78,044
	2020	115,017	93,115	834	145	29	88,551	84,854
	2021	127,363	102,575	883	152	26	98,873	95,046
	2022	139,509	110,778	912	150	27	109,243	103,378
	2023	151,259	120,877	964	147	25	118,180	112,570
	2024	161,603	129,998	1,009	149	28	126,771	121,661
지역별	서울	27,936	22,717	134	9	3	20,622	22,247
	부산	10,574	9,198	69	1	1	8,495	8,992
	대구	7,621	6,284	45	5	0	5,888	6,005
	인천	8,764	7,142	39	10	2	5,424	6,919
	광주	6,248	5,703	31	3	0	5,631	5,572
	대전	5,643	4,570	27	0	0	4,485	4,554
	울산	2,618	2,114	20	1	3	2,286	1,964
	세종	910	734	8	0	0	1,310	702
	경기	37,987	29,112	230	20	8	37,668	27,148
	강원	4,170	3,062	36	15	2	3,035	2,666
	충북	4,747	3,764	32	7	3	3,513	3,525
	충남	7,751	6,039	48	13	0	5,004	5,085
	전북	6,896	6,555	57	21	1	5,133	4,948
	전남	7,879	5,526	65	13	2	6,011	5,618
	경북	7,970	6,146	64	12	1	6,685	5,469
	경남	11,329	9,349	94	16	1	9,824	8,588
	제주	2,560	1,983	10	3	1	1,962	1,659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활동지원사 중 다수의 지역에 등록된 경우가 있음. 이에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전체(순계 인원)와 시도별 합계 인원이 불일치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11년 46,502명에서 2024년 161,6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수는 2011년 33,667명에서 2024년 129,99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활동지원기관 수는 2024년 기준으로 활동보조 1,009개, 방문목욕 149개, 방문간호 28개임
- 활동지원사 등록인원과 활동인원은 2011년 각각 31,234명, 23,653명에서 2024년 각각 126,771명, 121,66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수급자, 이용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② 수급자 수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계	장애유형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연도별	2011	46,502	10,606	8,383	297	8	12,798	8,775	4,621
	2012	50,520	11,097	9,143	322	5	14,396	9,157	5,344
	2013	60,435	11,648	9,439	361	52	19,651	9,874	7,430
	2014	64,906	11,831	9,716	379	70	21,979	10,205	8,428
	2015	72,212	12,344	10,199	404	141	25,603	11,120	9,574
	2016	79,926	12,823	10,685	438	197	29,645	11,979	10,789
	2017	86,926	13,232	11,044	476	284	33,128	12,744	12,141
	2018	94,496	13,570	11,471	519	344	37,060	13,481	13,553
	2019	105,569	14,857	12,123	612	477	42,090	14,702	15,226
	2020	115,017	16,045	12,461	729	704	45,964	16,248	16,346
	2021	127,363	17,640	12,925	843	1,023	50,764	18,157	18,043
	2022	139,509	18,869	13,443	955	1,385	55,412	19,944	20,190
	2023	151,259	19,818	13,810	1,021	1,608	59,954	21,549	22,997
	2024	161,603	20,583	14,160	1,080	1,769	63,773	22,767	25,956
		(100.0)	(12.7)	(8.8)	(0.7)	(1.1)	(39.5)	(14.1)	(16.1)
성별	남	100,023	12,626	8,379	620	1,185	36,909	13,381	21,180
		(100.0)	(12.6)	(8.4)	(0.6)	(1.2)	(36.9)	(13.4)	(21.2)
	여	61,580	7,957	5,781	460	584	26,864	9,386	4,776
		(100.0)	(12.9)	(9.4)	(0.7)	(0.9)	(43.6)	(15.2)	(7.8)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154,334	18,559	13,407	974	1,138	63,773	19,518	25,956
		(100.0)	(12.0)	(8.7)	(0.6)	(0.7)	(41.3)	(12.6)	(16.8)
	심하지 않은 장애인	7,269	2,024	753	106	631	-	3,249	-
		(100.0)	(27.8)	(10.4)	(1.5)	(8.7)	-	(44.7)	-

주: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성별, 장애정도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2011년 46,502명에서 2024년 161,6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63,773명(39.5%)으로 가장 많으며, 자폐성장애 25,956명(16.1%), 뇌병변장애 22,767명(14.1%), 지체장애 20,583명(12.7%), 시각장애 14,160명(8.8%) 등의 순임



〈표 10-3-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장애유형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계속)

(단위: 명, %)

구분		장애유형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연도별	2011	266	436	17	264	24	7	-	47
	2012	253	455	18	253	19	8	-	50
	2013	641	971	29	225	24	9	1	80
	2014	740	1,191	27	215	23	9	1	92
	2015	1,034	1,347	35	251	23	9	6	122
	2016	1383	1,477	39	280	24	10	5	152
	2017	1,668	1,638	46	297	20	13	14	181
	2018	2,066	1,856	46	276	22	14	18	200
	2019	2,607	2,190	50	295	26	15	28	271
	2020	3,208	2,452	57	335	31	18	43	376
	2021	3,950	2,989	65	374	36	21	68	465
	2022	4,634	3,440	77	423	44	22	99	572
	2023	5,300	3,816	92	426	49	20	114	685
	2024	5,882	4,091	95	446	67	23	127	784
		(3.6)	(2.5)	(0.1)	(0.3)	(0.0)	(0.0)	(0.1)	(0.5)
성별	남	2,621	2,302	43	253	35	11	69	409
		(2.6)	(2.3)	(0.0)	(0.3)	(0.0)	(0.0)	(0.1)	(0.4)
	여	3,261	1,789	52	193	32	12	58	375
		(5.3)	(2.9)	(0.1)	(0.3)	(0.1)	(0.0)	(0.1)	(0.6)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5,819	3,980	86	433	31	23	58	579
		(3.8)	(2.6)	(0.1)	(0.3)	(0.0)	(0.0)	(0.0)	(0.4)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	111	9	13	36	-	69	205
		(0.9)	(1.5)	(0.1)	(0.2)	(0.5)	-	(0.9)	(2.8)

주: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성별, 장애정도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성별로는 남성 수급자 수가 100,023명으로 여성 수급자 61,580명 보다 38,443명 많음
-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54,33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95.5%를 차지함

〈표 10-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연령별, 연도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6-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2011	46,549	907	11,450	8,000	5,771	6,907	8,307	3,226	1,981	
2012	50,520	2,659	12,956	8,222	6,171	7,449	8,584	3,417	1,062	
2013	60,435	4,084	16,614	10,074	6,834	8,194	9,694	3,660	1,281	
2014	64,906	4,519	17,668	11,639	7,026	8,496	10,064	3,877	1,617	
2015	72,212	5,399	18,790	13,619	7,648	9,176	10,983	4,596	2,001	
2016	79,926	4,912	19,966	16,408	8,556	9,464	12,045	5,474	3,101	
2017	92,535	7,961	21,674	18,939	9,883	10,399	14,008	6,572	3,099	
2018	94,496	8,074	21,867	19,426	10,128	10,514	14,385	6,833	3,269	
2019	105,569	8,999	23,072	21,644	11,436	11,848	16,279	8,270	4,021	
2020	115,017	8,846	24,237	23,537	12,636	12,969	18,159	9,841	4,792	
2021	127,363	9,348	26,218	25,003	14,154	14,406	20,236	11,784	6,214	
2022	139,509	9,346	28,569	26,111	15,928	15,436	22,082	13,628	8,409	
2023	151,259	11,182	30,284	26,973	17,490	16,533	24,240	15,023	9,534	
2024	161,603	12,326	32,187	27,282	19,363	17,243	25,755	15,958	11,489	
	(100.0)	(7.6)	(19.9)	(16.9)	(12.0)	(10.7)	(15.9)	(9.9)	(7.1)	
성별	남	100,023	8,768	21,902	17,367	12,036	9,741	14,685	9,214	6,310
		(100.0)	(8.8)	(21.9)	(17.4)	(12.0)	(9.7)	(14.7)	(9.2)	(6.3)
	여	61,580	3,558	10,285	9,915	7,327	7,502	11,070	6,744	5,179
		(100.0)	(5.8)	(16.7)	(16.1)	(11.9)	(12.2)	(18.0)	(11.0)	(8.4)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154,334	11,640	31,586	27,132	19,133	16,532	23,626	13,923	10,762
		(100.0)	(7.5)	(20.5)	(17.6)	(12.4)	(10.7)	(15.3)	(9.0)	(7.0)
	심하지 않은 장애인	7,269	686	601	150	230	711	2,129	2,035	727
		(100.0)	(9.4)	(8.3)	(2.1)	(3.2)	(9.8)	(29.3)	(28.0)	(10.0)

주: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성별, 장애정도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연령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10-19세가 32,187명(19.9%)로 가장 많고 20-29세 27,282명(16.9%), 50-59세 25,755명(15.9%) 등의 순임



〈표 10-3-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수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단위: 명)

구분		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총계		161,603	154,334	7,269
인정 조사 (등급)	소계	831	830	1
	1	113	113	0
	2	175	175	0
	3	255	255	0
	4	288	287	1
종합 조사 (구간)	소계	160,772	153,504	7,268
	1	55	55	0
	2	233	233	0
	3	961	960	1
	4	862	857	5
	5	183	182	1
	6	753	746	7
	7	2,102	2,079	23
	8	1,897	1,893	4
	9	4,398	4,342	56
	10	4,997	4,959	38
	11	8,269	8,193	76
	12	22,814	22,398	416
	13	44,123	42,606	1517
	14	44,210	40,672	3,538
	15	13,644	12,096	1548
산정특례		11,271	11,233	38

주: 1) 2024년 12월 말 기준

2) 2019년 7월 1일부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와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로 구분함

3) 종합조사 결과 15개 구간으로 분류되며, 각 구간별 종합점수는 다음과 같음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종합 점수	465점 이상	464점 ~ 435점	434점 ~ 405점	404점 ~ 375점	374점 ~ 345점	344점 ~ 315점	314점 ~ 285점	284점 ~ 255점	254점 ~ 225점	224점 ~ 195점	194점 ~ 165점	164점 ~ 135점	134점 ~ 105점	104점 ~ 75점	74점 ~ 42점

4) 산정특례는 기존에 인정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변경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받은 후 월 한도액이 감소한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를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급자는 831명이고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로 인해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는 160,772명, 산정특례 11,271명임
- 종합조사 결과를 통해 분류된 15구간별로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14구간이 44,210명으로 가장 많고, 13구간 44,123명, 12구간 22,814명 순임

③ 활동지원급여 이용

〈표 10-3-6〉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급여 이용현황 -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구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소계	일반	심야	공휴	소계	차량 내	가정 내	소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연도별	2011	636,801	607,145	-	29,656	1,067	636	431	345	43	79	223
	2012	616,905	589,922	26,983	29,804	2,127	1,519	608	422	42	165	215
	2013	1,014,725	984,494	30,231	85,260	4,510	3,289	1,221	787	107	307	373
	2014	1,175,466	1,136,746	38,720	85,434	5,426	3,965	1,461	853	64	356	433
	2015	1,341,188	1,292,820	48,368	103,886	6,440	4,839	1,601	958	113	324	521
	2016	1,594,834	1,442,438	54,023	98,373	6,827	5,299	1,533	816	-	-	-
	2017	1,687,877	1,485,285	54,280	148,312	6,823	5,221	1,602	697	79	309	309
	2018	2,082,360	1,828,073	59,574	194,713	7,229	5,626	1,603	778	135	281	362
	2019	2,676,601	2,338,223	72,461	265,917	8,524	6,853	1,671	777	60	314	403
	2020	2,996,563	2,654,297	83,008	259,258	9,773	7,926	1,847	922	112	324	486
	2021	3,453,504	3,053,422	97,615	302,467	11,019	9,253	1,766	1,092	176	379	537
	2022	3,699,083	3,303,727	109,191	286,165	11,392	9,819	1,573	1,268	113	466	689
	2023	3,951,473	3,414,972	115,613	420,888	11,431	10,007	1,424	1,333	115	533	685
	2024	4,299,472	3,700,153	126,056	473,263	13,055	11,374	1,681	1,624	145	708	771
지역별	서울	655,560	550,439	36,852	68,269	818	555	263	81	-	42	39
	부산	317,559	272,896	5,179	39,484	44	42	2	16	-	13	3
	대구	177,341	147,380	5,821	24,140	1,049	1,049	-	-	-	-	-
	인천	247,102	215,926	7,206	23,970	2,517	2,246	271	163	17	66	80
	광주	216,009	185,221	2,545	28,243	157	140	17	-	-	-	-
	대전	176,293	150,737	2,671	22,885	-	-	-	-	-	-	-
	울산	78,485	69,764	824	7,897	96	96	-	183	23	61	99
	세종	25,638	22,166	565	2,907	7	7	-	-	-	-	-
	경기	987,215	840,026	42,221	104,968	1,350	806	544	705	50	289	366
	강원	96,003	82,395	3,486	10,122	904	575	329	8	1	7	-
	충북	129,480	112,642	2,095	14,743	356	329	27	69	22	40	7
	충남	221,756	196,346	3,548	21,862	781	722	59	-	-	-	-
	전북	183,562	158,215	2,891	22,456	2,309	2,253	56	175	-	97	78
	전남	207,843	185,222	2,769	19,852	910	893	17	23	-	16	7
	경북	208,265	184,726	2,542	20,997	536	478	58	157	5	61	91
	경남	311,809	275,922	3,619	32,268	1,008	970	38	31	15	15	1
	제주	59,552	50,130	1,222	8,200	213	213	-	13	12	1	-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급여종류별 급여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활동보조: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서비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로소,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의 이용건수는 2024년 4,229,47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2024년 방문목욕 이용건수는 13,05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624건 증가하고, 방문간호는 1,624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91건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활동보조 이용건수는 수급자가 많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987,215건, 655,560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방문목욕의 이용건수는 인천이 2,517건, 방문간호의 이용건수는 경기도 705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④ 특별지원급여 이용

〈표 10-3-7〉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특별지원급여 이용현황 - 급여종류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구분		계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연도별	2021	245	17	82	146
	2022	296	21	114	161
	2023	396	41	157	198
	2024	409	42	156	211
지역별	서울	107	9	46	52
	부산	16	2	5	9
	대구	32	-	20	12
	인천	15	1	4	10
	광주	13	3	5	5
	대전	7	3	-	4
	울산	11	2	3	6
	세종	6	-	-	6
	경기	91	7	46	38
	강원	9	2	-	7
	충북	17	2	13	2
	충남	7	1	2	4
	전북	14	1	1	12
	전남	14	3	-	11
	경북	18	2	8	8
	경남	29	4	3	22
	제주	3	-	-	3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급여종류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출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유·사산 포함)한 경우

· 자립준비: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

· 보호자 일시부재: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에 대한 부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활동지원제도 특별지원급여 이용건수는 2024년 4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건 증가함
- 급여종류별로는 보호자 일시부재가 211건으로 가장 많고, 자립준비 156건, 출산 42건임
- 지역별로는 서울이 107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1건, 대구 32건, 경남 29건 순임

⑤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현황

〈표 10-3-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긴급지원 및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긴급지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2011	1	7
2012	33	27
2013	50	47
2014	97	67
2015	166	68
2016	258	90
2017	341	100
2018	380	116
2019	489	127
2020	571	81
2021	176	317
2022	422	1,238
2023	182	1,849
2024	102	1,883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긴급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됨
 3)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상황과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긴급지원이용자는 102명이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1,883명임



⑥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표 10-3-9〉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 한도액 대비 급여 사용 현황 - 연도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단위: 명, 원)

구분	계	급여 이용률				1인 평균 생성액	1인 평균 이용액
		미사용	0-50% 미만	50-80% 미만	80-100% 미만	100%	
2014	52,819	440	678	1,543	22,674	27,484	1,060,869
2015	59,428	530	552	1,255	26,705	304	1,088,271
2016	65,368	696	674	1,456	24,217	38,325	1,109,771
2017	70,990	742	668	1,435	37,498	30,647	1,128,602
2018	76,992	800	671	1,554	42,175	31,792	1,307,438
2019	85,474	1,150	955	1,929	42,639	38,801	1,603,572
2020	91,526	1,192	1,037	2,451	27,035	59,811	1,756,044
2021	100,605	1,226	1,172	2,776	51,972	43,459	1,878,372
2022	108,361	1,330	1,210	3,063	46,187	56,571	1,999,703
2023	118,320	1,230	1,230	3,068	63,323	49,469	2,128,561
2024	127,373	1,458	1,193	2,947	59,293	62,482	2,217,047
소계	93	-	-	1	43	49	
인정 조사 (등급)	1	21	-	-	1	9	3,551,743
	2	23	-	-	16	7	1,703,435
	3	26	-	-	9	17	1,386,231
	4	23	-	-	9	14	1,043,522
소계	117,533	1,408	1,125	2,763	54,795	57,442	
종합 조사 (구간)	1	52	2	1	-	17	7,685,692
	2	225	4	1	4	118	7,247,830
	3	891	5	12	24	369	6,765,534
	4	736	13	13	36	261	6,225,112
	5	153	-	-	3	65	5,777,987
	6	655	1	8	36	225	5,308,845
	7	1,828	24	39	134	996	4,826,935
	8	1,705	8	6	69	770	4,316,802
	9	3,817	42	55	176	1,825	3,850,849
	10	4,402	33	39	111	2,191	3,355,116
	11	6,943	45	68	151	2,892	2,872,200
	12	19,477	164	142	380	10,810	2,395,817
	13	35,916	339	326	768	13,484	1,915,563
	14	32,569	517	326	731	17,316	1,444,173
	15	8,164	211	89	140	3,456	962,074
긴급활동지원	3	2	-	-	1	-	1,940,000
산정특례	9,744	48	68	183	4,454	4,991	3,003,394
							2,989,748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활동지원급여의 구간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2019년 7월 1일부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인정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와 종합조사를 통해 선정된 수급자로 구분함

3) 긴급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가족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부재한 경우, 천재지변 및 화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함

4) 산정특례는 기존에 인정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변경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조사를 받은 후 월 한도액이 감소한 경우,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률을 살펴보면, 100%가 62,482명으로 가장 많고, 80-100% 미만 59,293명, 50-80% 미만 2,947명, 0-50% 미만 1,193명 순임. 미사용자는 1,458명임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인 평균 생성액과 이용액은 각각 2,217,047원, 2,210,901원으로 비슷한 수준임

⑦ 본인부담금 수준

〈표 10-3-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원)

구분	전체	면제	2만원	2-4만원	4-6만원	6-8만원	8-10만원	10-12만원	12만원 이상	1인 평균 부담액
2011	40,894	13,856	4,250	4,778	8,102	6,025	3,776	58	49	24,851
2012	50,212	15,751	5,663	6,257	10,127	7,200	5,059	88	67	25,597
2013	60,524	28,738	5,430	2,334	4,875	7,220	10,045	1,147	675	34,887
2014	64,419	28,634	6,005	2,666	5,949	8,239	10,637	1,461	828	36,870
2015	71,707	21,811	7,858	4,315	9,407	11,275	9,918	5,784	1,339	46,731
2016	79,233	24,292	8,121	3,866	10,882	13,006	6,640	10,544	1,882	47,459
2017	86,388	26,476	8,633	4,655	12,453	11,224	8,076	12,376	2,495	48,040
2018	93,823	29,303	8,891	2,481	7,548	16,367	9,421	15,662	4,110	53,065
2019	104,218	33,740	10,104	2,518	7,991	10,882	10,917	19,273	8,793	57,628
2020	113,952	38,863	10,870	2,583	8,590	13,830	13,550	7,229	18,437	56,173
2021	126,175	44,834	11,740	3,627	10,976	15,431	6,899	11,051	21,617	55,354
2022	137,829	50,413	11,938	3,989	12,665	17,176	7,024	11,380	23,244	56,546
2023	150,302	56,480	12,379	3,986	13,368	12,750	13,526	12,053	25,760	59,219
2024	160,343	61,749	12,902	4,369	13,584	14,441	14,175	12,504	26,619	60,233
	(100.0)	(38.5)	(8.0)	(2.7)	(8.5)	(9.0)	(8.8)	(7.8)	(16.6)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인 평균 본인부담액은 60,233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4원 증가함
 • 면제가 61,749건(38.5%)로 가장 많고, 12만원 이상 26,619건(16.6%), 6-8만원 14,441건(9.0%), 8-10만원 14,175건(8.8%), 4-6만원 13,584건(8.5%), 2만원 12,902건(8.0%), 10-12만원 12,504건(7.8%), 2-4만원 4,369건(2.7%) 순임



⑧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표 10-3-11〉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및 교육기관 수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기관									활동 보조인 교육 기관
	계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전체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관	IL센터	지역 자활센터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사회 복지관	기타 사회 복지 시설	기타		
2011	931	592	214	125	590	117	137	83	114	25	35	43	36		39
2012	959	614	223	122	614	128	140	87	110	32	32	47	38		41
2013	1,039	689	229	121	689	138	148	110	106	30	45	54	56		41
2014	1,057	723	224	110	723	157	143	114	108	47	31	59	64		42
2015	1,083	751	227	105	751	164	143	120	104	49	33	59	79		42
2016	945	756	143	33	756	130	125	158	80	20	23	4	216		53
2017	964	767	142	26	798	69	107	125	73	20	25	66	313		51
2018	973	774	138	26	799	69	105	127	70	20	24	66	318		56
2019	982	802	146	34	755	68	98	122	64	20	22	64	297		58
2020	1,008	834	145	29	837	74	110	133	69	22	26	69	334		60
2021	1,061	883	152	26	978	100	111	142	64	24	27	94	416		62
2022	1,089	912	150	27	996	96	114	145	60	25	29	96	431		65
2023	1,136	964	147	25	1,020	102	107	148	55	23	22	98	465		65
2024	1,186	1,009	149	28	1,045	103	101	143	52	21	22	100	503		71
서울	146	134	9	3	181	6	18	52	7	2	3	13	80		10
부산	71	69	1	1	84	11	3	13	3	-	1	16	37		4
대구	50	45	5	-	50	3	4	2	3	-	2	11	25		3
인천	51	39	10	2	54	3	5	7	2	4	-	2	31		2
광주	34	31	3	-	34	4	1	9	-	2	1	1	16		2
대전	27	27	-	-	28	6	3	1	1	-	-	4	13		2
울산	24	20	1	3	21	1	-	1	-	1	-	4	14		3
세종	8	8	-	-	5	-	-	-	-	-	-	-	5		2
경기	258	230	20	8	172	11	19	31	3		4	15	89		16
강원	53	36	15	2	36	3	6	2	6	1	2	-	16		2
충북	42	32	7	3	30	4	6	4	-	-	1	-	15		2
충남	61	48	13	-	58	10	9	7	4	1	-	5	22		3
전북	79	57	21	1	57	9	6	1	4	-	2	5	30		4
전남	80	65	13	2	69	5	7	4	5	6	2	5	35		3
경북	77	64	12	1	65	11	9	1	8	2	2	12	20		7
경남	111	94	16	1	90	14	5	8	6	2	2	4	49		3
제주	14	10	3	1	11	2	-	-	-	-	-	3	6		3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활동지원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기준이며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기관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활동보조기관(유형별)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시스템 내 자료 기준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의 활동지원기관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 등록된 현황 기준

5)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지원기관 합계에는 주간활동이 포함되어 있음(2016년 13개소, 2017년 29개소, 2018년 35개소, 2019년 8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1,186개소, 활동보조기관은 1,045개소,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71개소임

•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활동보조 제공기관이 1,009개소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 제공기관은 149개소, 방문간호 제공기관은 28개소임

• 활동보조기관의 경우 기타가 503개소로 가장 많고, IL센터 143개소, 장애인단체 103개소, 장애인복지관 101개소 등의 순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기관은 각각 서울, 경기, 경남이 많고,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경우 경기와 서울이 10개소 이상 있음

⑨ 활동지원사 현황

〈표 10-3-12〉 활동지원사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근무시간, 월평균보수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단위: 명, 시간, 원)

구분		등록인원	활동인원	월평균근무시간	월평균보수
연도별					
2012		42,467	28,003	112.0	756,795
2013		67,823	40,448	130.0	941,499
2014		56,531	46,812	128.0	916,323
2015		61,366	52,761	125.0	936,221
2016		64,145	58,102	135.0	1,267,490
2017		68,167	62,629	122.0	982,898
2018		72,981	68,673	96.0	1,106,269
2019		82,448	78,044	100.0	1,729,043
2020		88,551	84,854	118.0	1,483,710
2021		98,873	95,046	95.1	1,516,619
2022		109,243	103,378	88.3	1,528,054
2023		118,180	112,570	86.0	1,671,450
2024		126,771	121,661	83.0	1,696,664
성별	남	16,314	15,548		
	여	110,457	106,113		
연령별	20대 미만	36	34		
	20대	1,481	1,394		
	30대	4,296	4,053		
	40대	18,639	17,996		
	50대	46,343	44,591		
	60대	48,604	46,538		
	70대 이상	7,372	7,055		
지역별	서울	20,622	22,247		
	부산	8,495	8,992		
	대구	5,888	6,005		
	인천	5,424	6,919		
	광주	5,631	5,572		
	대전	4,485	4,554		
	울산	2,286	1,964		
	세종	1,310	702		
	경기	37,668	27,148		
	강원	3,035	2,666		
	충북	3,513	3,525		
	충남	5,004	5,085		
	전북	5,133	4,948		
	전남	6,011	5,618		
	경북	6,685	5,469		
	경남	9,824	8,588		
	제주	1,962	1,659		

주: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활동지원사의 활동인원은 121,661명으로 매해 증가 추세임
- 성별로 활동인원을 살펴보면, 여성이 106,113명으로 남성 15,548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
- 연령별로 활동인원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98,184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80.7%를 차지함
- 지역별 활동인원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많은 경기, 서울이 각각 27,148명, 22,247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



(2) 대상별 지원서비스

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실적

〈표 10-3-1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현황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0	42,779	801	3,070	28,313
2011	48,111	996	4,166	35,119
2012	56,111	1,178	4,647	39,486
2013	63,811	1,520	5,166	46,979
2014	62,911	1,570	5,526	50,769
2015	65,192	1,646	5,025	51,609
2016	70,019	1,791	5,358	52,200
2017	69,813	1,882	5,398	52,830
2019	82,970	2,153	5,503	62,361
2020	88,999	2,197	5,380	60,410
2021	94,968	2,327	13,305	84,411
2022	100,037	2,592	13,248	91,044
2023	127,032	2,615	13,458	97,469

주: 연도별 수치는 각 해당 연도 12월 말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재활서비스 예산은 2023년 127,03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995백만원 증가함
- 제공기관은 2023년 2,615개소로 전년도 대비 23개소 증가하였고, 제공인력은 13,458명, 이용자는 97,469명임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중위소득의 18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②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4〉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013	1,930	97	-	1,222
2014	624	140	288	368
2015	1,930	185	389	498
2016	507	194	454	534
2017	507	184	400	510
2018	507	171	340	466
2019	796	166	317	458
2020	796	169	318	413
2021	796	177	309	435
2022	651	165	312	405
2023	651	174	304	400
2024	651	165	306	365
서울	88	22	43	65
부산	10	5	8	8
대구	9	4	7	5
인천	20	7	17	15
광주	87	13	39	38
대전	26	5	15	16
울산	18	7	11	10
세종	3	1	1	1
경기	117	46	63	73
강원	8	2	2	2
충북	33	6	8	16
충남	42	13	23	24
전북	81	10	26	33
전남	25	5	10	13
경북	37	10	20	23
경남	27	10	12	17
제주	21	2	6	7

주: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은 651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 제공기관은 165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9개소 감소하였고, 제공인력은 306명, 이용자는 365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의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수가 많으며,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광주, 전북의 이용자 수가 많음

※※ 언어발달지원사업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함
- 자격기준은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무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양쪽 부모(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받음
-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③ 양육지원사업 지원 실적

〈표 10-3-15〉 양육지원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돌보미		이용자	
			등록	활동	계획	실 인원
2010	1,570	16	509	282	688	714
2011	4,038	17	1,372	994	2,500	3,149
2012	4,038	17	1,485	1,335	2,500	3,259
2013	4,663	18	1,647	1,443	3,000	3,684
2014	7,091	18	1,962	1,836	3,000	3,012
2015	8,043	18	2,205	2,073	3,300	3,331
2016	8,206	18	2,137	2,022	3,300	3,318
2017	8,960	17	2,252	2,013	3,725	3,349
2019	17,186	17	2,800	2,452	4,005	3,711
2020	20,873	17	2,848	2,608	4,005	3,907
2021	21,562	17	3,413	2,979	4,005	4,071
2022	48,163	17	4,468	3,388	6,500	4,290
2023	47,561	17	5,903	4,394	6,500	4,988
2024	54,615	18	5,888	4,539	6,500	5,630
서울	2,922	1	596	500	659	598
부산	3,103	1	283	261	367	329
대구	3,246	1	305	257	328	324
인천	3,660	1	516	321	413	369
광주	2,656	1	252	168	317	219
대전	2,781	1	388	235	315	270
울산	2,603	1	214	212	313	242
세종	602	1	42	44	70	62
경기	7,205	1	978	642	852	733
강원	2,020	1	117	106	228	174
충북	2,933	1	400	262	334	342
충남	2,838	1	225	213	322	258
전북	4,631	1	359	334	522	499
전남	2,326	2	203	146	277	198
경북	3,966	1	320	275	396	355
경남	4,750	1	470	357	503	425
제주	2,374	1	220	206	284	233

주: 연도별 수치는 각 년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54,615백만 원,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 수는 4,539명, 이용자 실 인원은 5,630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예산, 활동 중인 돌보미 수, 실 이용자 인원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등의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임

④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실적

〈표 10-3-16〉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제공기관	사업실적	
			프로그램 수	연 인원
2009	640	16	230	61,786
2010	640	16	300	70,000
2011	640	28	340	63,682
2012	640	30	336	62,542
2013	576	31	307	50,024
2014	893	31	383	50,187
2015	612	35	296	45,782
2016	1,596	48	419	55,196
2017	1,596	42	421	69,888
2018	1,620	42	412	99,930
2019	1,637	42	414	106,850
2020	1,772	42	414	76,000
2021	1,785	43	448	106,000
2022	1,805	43	454	57,861
2023	1,771	42	428	80,599
2024	1,771	42	451	86,431
서울	185	3	28	4,192
부산	92	2	25	4,595
대구	92	2	39	8,278
인천	147	3	35	6,144
광주	92	2	18	2,151
대전	92	3	24	3,731
울산	92	2	28	3,072
세종	37	1	11	617
경기	147	2	19	3,143
강원	93	4	35	5,482
충북	92	3	57	6,556
충남	92	3	37	7,056
전북	92	2	14	2,740
전남	147	3	35	6,224
경북	92	2	24	8,189
경남	92	3	30	6,097
제주	92	2	11	2,657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1,771백만원, 제공기관은 42개소임. 사업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수 451개, 연 이용인원 수 86,431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 이용인원 수는 대구가 8,27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8,189명, 충남 7,056명 순임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실적

〈표 10-3-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예산	결산	집행건수
2012	876	388	579
2013	876	391	587
2014	639	410	610
2015	1,426	779	1,160
2016	1,124	850	1,271
2017	1,222	942	1,404
2018	1,222	812	1,219
2019	1,122	829	1,235
2020	959	737	1,100
2021	959	684	1,006
2022	959	687	1,021
2023	779	620	927
2024	761	660	850
서울	69.6	67.9	115
부산	41.2	39.2	49
대구	39.5	30.2	36
인천	44.5	41.9	51
광주	29.4	24.2	29
대전	30.2	27.7	35
울산	19.3	13.4	16
세종	10.9	7.4	9
경기	185.6	172.9	218
강원	31.1	19	23
충북	31.1	27.7	34
충남	41.2	31.9	40
전북	37.8	30.4	39
전남	38.6	31.8	41
경북	41.2	39.1	49
경남	51.2	39.8	48
제주	18.5	15	18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761백만원, 660백만원이며, 집행건수는 850건임
- 지역별로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의 집행건수가 21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15건, '인천'이 51건 등의 순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경우에 지원함

⑥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실적

〈표 10-3-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건,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양성인원	심판청구 건수	활동인원
2013	646	211	868	27	15
2014	1,158	504	714	290	127
2015	1,023	704	924	177	182
2016	1,501	776	815	119	211
2017	1,176	789	900	366	278
2018	1,176	1,061	721	466	401
2019	1,531	1,531	720	601	540
2020	1,541	1,541	1,536	710	704
2021	1,668	2,075	1,429	763	863
2022	2,360	2,370	1,188	733	1,006
2023	3,505	3,277	827	714	1,113
2024	3,515	3,325	974	814	1,10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2013년 9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3,515백만원, 3,325백만원임. 사업실적 측면에서는 양성인원은 974명, 심판청구 건수는 814건, 활동인원은 1,101명임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음

* 발달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 지방자치단체, 법원에서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도 포함



〈표 10-3-1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결산	제공기관	이용인원
2013	1,279	108	60	367
2014	1,608	360	247	682
2015	1,608	332	162	858
2016	900	335	137	661
2017	900	413	234	673
2018	601	450	287	847
2019	730	730	200	790
2020	730	730	202	783
2021	730	730	203	812
2022	730	730	208	756
2023	1,286	1,286	227	1,050
2024	1,286	1,286	253	1,230
서울	131.0	131.0	37	213
부산	62.5	62.5	8	60
대구	147.5	147.5	12	87
인천	28.0	28.0	13	31
광주	76.9	76.9	14	76
대전	116.5	116.5	11	86
울산	18.8	18.8	6	26
세종	9.0	9.0	2	8
경기	322.4	322.4	78	327
강원	21.7	21.7	5	15
충북	35.0	35.0	6	15
충남	83.4	83.4	14	64
전북	33.0	33.0	4	22
전남	27.0	27.0	8	19
경북	84.3	84.3	15	76
경남	76.0	76.0	16	93
제주	13.0	13.0	4	12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1,286백만원임, 제공기관은 253개소이고, 이용인원은 1,230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은 경기도 각각 322.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공기관과 이용인원 또한 각각 78개소, 32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함
-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지단서)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함

〈표 10-3-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현황 - 연도별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총 인원	발달장애인	가족	도우미
2015	500	386	4,712	1,567	2,261	884
2016	1,000	905	9,028	2,816	4,592	1,620
2017	1,000	989	8,993	3,308	4,360	1,896
2018	1,210	1,104	10,556	2,979	6,025	1,552
2019	1,478	1,478	12,312	3,566	5,677	3,069
2020	1,478	1,478	12,312	3,566	5,677	3,069
2021	1,478	1,416	12,352		11,803	549
2022	1,478	1,478	15,846		14,845	1,001
2023	1,876	1,876	14,566		13,694	872
2024	1,876	1,876	14,217		13,190	1,027
서울	179	179	1,507		1,463	44
부산	84	84	542		437	105
대구	72	72	442		420	22
인천	122	122	661		617	44
광주	83	83	738		657	81
대전	83	83	477		458	19
울산	48	48	412		401	11
세종	21	21	198		182	16
경기	426	426	3,369		3,332	37
강원	92	92	670		637	33
충북	95	95	780		660	120
충남	111	111	914		851	63
전북	107	107	500		432	68
전남	111	111	959		880	79
경북	97	97	674		558	116
경남	92	92	886		792	94
제주	53	53	488		413	75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2015년 8월부터 시행됨
 3) 기존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 및 결산액은 각각 1,876백만원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인원은 14,217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은 경기도 각각 42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 또한 3,36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함. 또한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임



〈표 10-3-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제공기관	지원인원
2019	19,103	17,823	183	2,506
2020	43,417	43,417	284	4,335
2021	91,304	76,319	366	6,366
2022	140,786	128,295	492	9,211
2023	173,504	173,504	626	12,676
2024	202,108	189,854	713	11,580
서울	12,135	11,169	64	949
부산	16,000	15,612	76	875
대구	10,261	10,258	38	639
인천	9,252	8,457	24	557
광주	7,064	7,064	23	371
대전	6,317	6,187	30	320
울산	6,173	6,007	24	361
세종	1,691	1,476	4	90
경기	42,544	40,444	146	2,371
강원	10,810	9,836	37	648
충북	6,892	6,424	19	440
충남	10,227	9,294	29	556
전북	12,567	12,349	35	702
전남	9,249	8,065	28	493
경북	10,572	9,212	44	592
경남	27,822	25,947	82	1,483
제주	2,532	2,053	10	133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2024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202,108백만원, 189,854백만원임. 사업실적 측면에서 제공기관은 713개소, 지원인원은 11,580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은 경기도 각각 42,544백만원, 40,444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공기관과 지원인원 또한 각각 146개소, 2,37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함
-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으로,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표 10-3-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예산	결산	사업실적	
			제공기관	지원인원
2019	9,169	6,146	212	2,015
2020	19,406	19,406	273	4,123
2021	44,637	35,710	297	6,241
2022	47,136	41,671	361	8,933
2023	53,703	53,050	429	11,961
2024	56,491	48,717	478	8,838
서울	6,552	5,835	52	1,314
부산	3,677	3,287	40	573
대구	3,429	3,293	22	542
인천	3,048	2,828	21	564
광주	1,660	1,550	13	246
대전	1,552	1,385	20	266
울산	1,466	1,296	17	222
세종	336	217	3	70
경기	17,946	16,567	132	2,902
강원	1,728	1,617	16	280
충북	1,556	1,226	14	241
충남	2,234	1,550	12	272
전북	2,368	1,942	23	324
전남	1,677	555	13	113
경북	1,825	1,067	16	212
경남	4,348	3,597	53	529
제주	1,089	905	11	168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2024년 예산액 및 결산액은 각각 56,491백만원, 48,717백만원임. 사업실적 측면에서 제공기관은 478개소, 지원인원은 8,838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은 경기도 각각 17,946백만원, 16,56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공기관과 지원인원 또한 각각 132개소, 2,9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서비스 대상은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임. 다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3) 복지시설

① 장애인 거주시설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397	26,912	23,243	38	2,697	2,230	14	1,096	760	11	792	519	172	10,733	9,539
2010	452	28,571	24,294	40	2,640	2,055	14	1,092	744	10	732	462	196	11,463	10,178
2011	490	29,419	25,345	39	2,594	2,102	15	1,122	787	9	552	361	226	12,161	10,788
2012	1,348	35,545	30,640	40	2,563	2,057	16	1,151	786	8	519	335	278	13,366	11,748
2013	1,397	35,813	31,152	39	2,468	1,978	16	1,151	770	8	482	320	293	13,422	12,001
2014	1,457	35,860	31,406	44	2,627	2,208	15	991	632	7	373	270	309	13,562	12,136
2015	1,484	35,746	31,222	39	1,933	1,668	16	970	628	7	373	255	321	13,971	12,369
2016	1,505	35,232	30,980	40	2,178	1,766	17	1,010	711	7	373	228	317	13,450	12,112
2017	1,517	34,855	30,693	39	2,047	1,690	17	1,011	700	7	363	232	313	13,394	12,008
2018	1,527	34,345	30,152	33	1,754	1,418	16	907	662	7	363	223	320	13,319	11,865
2019	1,557	33,954	29,662	33	1,600	1,304	15	866	615	7	373	216	313	12,858	11,485
2020	1,539	33,071	29,086	28	1,367	1,121	16	798	579	7	373	205	317	12,713	11,349
2021	1,535	32,969	28,565	28	1,415	1,055	15	790	569	7	363	196	310	12,691	11,205
2022	1,532	32,658	27,946	26	1,154	882	15	770	562	7	363	177	307	12,491	10,859
2023	1,529	32,229	27,352	25	1,092	849	15	770	557	7	363	172	308	12,324	10,689
2024	1,524	31,229	26,987	25	1,002	843	15	750	550	7	336	164	307	11,957	10,586
서울	248	3,485	2,920	2	80	69	3	142	98	1	35	23	14	652	546
부산	63	1,351	1,192	3	129	108	-	-	-	-	-	-	14	648	565
대구	52	1,681	1,313	-	-	-	-	-	-	-	-	-	9	729	593
인천	69	1,054	904	2	77	70	1	50	42	1	50	16	6	176	170
광주	80	1,002	927	3	60	56	1	30	27	-	-	-	15	459	428
대전	81	1,396	1,187	1	70	53	1	70	41	-	-	-	8	409	366
울산	28	725	638	-	-	-	-	-	-	1	55	15	1	50	48
세종	7	166	159	-	-	-	-	-	-	-	-	-	3	102	98
경기	317	6,223	5,367	5	97	74	4	118	78	2	86	52	76	2,537	2,223
강원	69	1,655	1,425	-	-	-	1	80	57	-	-	-	18	653	587
충북	88	1,878	1,666	1	68	57	2	110	77	1	85	43	19	664	605
충남	55	1,802	1,624	-	-	-	-	-	-	-	-	-	18	1,004	889
전북	68	1,792	1,548	3	108	96	1	50	41	-	-	-	30	1,027	917
전남	71	1,568	1,318	2	100	58	1	100	89	1	25	15	28	882	762
경북	91	2,810	2,449	1	97	87	-	-	-	-	-	-	26	1,030	926
경남	96	1,987	1,794	2	116	115	-	-	-	-	-	-	15	714	666
제주	41	654	556	-	-	-	-	-	-	-	-	-	7	221	197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자료: 1) 2009년: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5. 2) 2010~2011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3.
 3) 2012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7. 4) 2013~2024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3.

- 2024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 시설수는 1,524개소,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현원)는 26,987명임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설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742개소로 가장 많고,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현원)는 지적장애 인 거주시설이 10,586명으로 가장 많음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수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며,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장애인 수(현원)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시설수와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수(현원)는 경기도 각각 317개소, 5,36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각각 248개소, 2,920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0-3-23〉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2009	153	11,042	9,728	9	552	467	-	-	-	-	-	-
2010	182	12,052	10,364	10	592	491	-	-	-	-	-	-
2011	191	12,404	10,798	10	586	509	-	-	-	-	-	-
2012	201	12,536	11,006	10	592	510	128	1,683	1,438	667	3,140	2,760
2013	216	12,904	11,412	9	528	473	131	1,724	1,432	685	3,134	2,766
2014	223	12,802	11,344	9	539	466	137	1,766	1,495	713	3,200	2,855
2015	233	12,762	11,314	10	622	541	141	1,783	1,548	717	3,276	2,862
2016	233	12,514	11,192	9	522	452	146	1,902	1,616	736	3,283	2,903
2017	233	12,256	10,996	9	522	429	147	1,948	1,697	752	3,314	2,939
2018	239	12,221	10,995	9	522	398	150	1,975	1,671	753	3,284	2,920
2019	251	12,335	10,978	9	522	382	159	2,064	1,733	770	3,336	2,949
2020	251	12,069	10,866	9	514	361	157	2,002	1,733	754	3,235	2,872
2021	249	11,843	10,568	9	507	357	164	2,126	1,792	753	3,234	2,823
2022	252	11,978	10,450	9	461	332	165	2,219	1,871	751	3,222	2,813
2023	252	11,796	10,220	9	461	324	167	2,232	1,735	746	3,191	2,806
2024	251	11,537	10,057	9	427	310	168	2,101	1,719	742	3,119	2,758
서울	23	1,385	1,130	2	95	61	40	430	390	163	666	603
부산	8	330	317	2	76	53	3	36	30	33	132	119
대구	10	732	541	1	50	39	2	26	23	30	144	117
인천	11	451	394	1	31	31	5	55	45	42	164	136
광주	5	181	156	-	-	-	5	72	65	51	200	195
대전	11	447	381	-	-	-	20	237	202	40	163	144
울산	9	473	449	-	-	-	7	107	89	10	40	37
세종	1	52	50	-	-	-	-	-	-	3	12	11
경기	52	2,293	2,064	1	100	64	29	332	239	148	660	573
강원	15	691	602	-	-	-	9	114	77	26	117	102
충북	13	678	643	-	-	-	6	85	76	46	188	165
충남	16	643	611	-	-	-	7	95	75	14	60	49
전북	12	463	366	1	35	32	2	25	25	19	84	71
전남	8	300	271	-	-	-	5	57	30	26	104	93
경북	35	1,438	1,222	-	-	-	10	167	143	19	78	71
경남	15	721	630	1	40	30	10	165	146	53	231	207
제주	7	259	230	-	-	-	8	98	64	19	76	65

주: 1)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2)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시설은 기존에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4.4.10., 일부개정)
 자료: 1) 2009년: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5. 2) 2010~2011년: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3.
 3) 2012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7. 4) 2013~2024년: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3.

※※ 장애인 거주시설별 종류 및 기능(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화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표 10-3-24〉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현황 - 규모별, 연도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현황			
	시설 규모별			계	시설 규모별			계
	30인 이하	31인~99인	100인 이상		30인 이하	31인~99인	100인 이상	
2012	1,030 (76.4)	275 (20.4)	43 (3.2)	1,348 (100.0)	9,091 (29.7)	14,936 (48.7)	6,613 (21.6)	30,640 (100.0)
2013	1,071 (76.7)	281 (20.1)	45 (3.2)	1,397 (100.0)	9,579 (30.7)	14,901 (47.8)	6,672 (21.4)	31,152 (100.0)
2014	1,130 (77.6)	286 (19.6)	41 (2.8)	1,457 (100.0)	10,337 (32.9)	14,991 (47.7)	6,078 (19.4)	31,406 (100.0)
2015	1,165 (78.5)	280 (18.9)	39 (2.6)	1,484 (100.0)	10,913 (35.0)	14,575 (46.7)	5,734 (18.4)	31,222 (100.0)
2016	1,196 (79.5)	275 (18.3)	34 (2.3)	1,505 (100.0)	11,597 (37.4)	14,316 (46.2)	5,067 (16.4)	30,980 (100.0)
2017	1,212 (79.9)	272 (17.9)	33 (2.2)	1,517 (100.0)	11,918 (38.8)	13,941 (45.4)	4,834 (15.7)	30,693 (100.0)
2018	1,232 (80.7)	264 (17.3)	31 (2.0)	1,527 (100.0)	12,256 (40.6)	13,393 (44.4)	4,503 (14.9)	30,152 (100.0)
2019	1,274 (81.8)	255 (16.4)	28 (1.8)	1,557 (100.0)	12,791 (43.1)	12,846 (43.3)	4,018 (13.5)	29,655 (100.0)
2020	1,261 (81.9)	251 (16.3)	27 (1.8)	1,539 (100.0)	12,820 (44.1)	12,457 (42.8)	3,809 (13.1)	29,086 (100.0)
2021	1,261 (82.1)	247 (16.1)	27 (1.8)	1,535 (100.0)	12,855 (45.0)	12,031 (42.1)	3,680 (12.9)	28,566 (100.0)
2022	1268 (82.8)	239 (15.6)	25 (1.6)	1532 (100.0)	13027 (46.6)	11587 (41.5)	3332 (11.9)	27946 (100.0)
2023	1,271 (83.1)	235 (15.4)	23 (1.5)	1,529 (100.0)	13,088 (47.9)	11,260 (41.2)	3,004 (11.0)	27,352 (100.0)
2024	1,266 (83.1)	235 (15.4)	23 (1.5)	1,524 (100.0)	12,991 (48.1)	11,052 (41.0)	2,944 (10.9)	26,987 (100.0)

주: 1) 각 연도 12월 말 기준임

2) '장애인 거주시설'은 자체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포함

3) '시설규모' 구분 기준은 '시설소규모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초기 성과목표 구분기준인 '100인 이상 대규모시설을 축소'와 변경된 '30인 이하 시설 비율 확대'의 기준을 따라 '30인 이하', '30~99인', '100인 이상'으로 재범주화 함(김성희 외(2017),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 수립방안 연구」 (2017). 참고)

4)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내부 연구진이 재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2024년 기준 30인 이하 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1,266개소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의 83.1%를 차지함. 또한, 30인 이하 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12,991명으로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48.1%를 차지함
- 장애인 거주시설 중 30인 이하 규모 시설의 비율은 2012년 76.4%에서 2024년 83.1%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30인 이하 규모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2년 29.7%에서 2024년 48.1%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사업

- 장애인거주시설을 30인 이하 규모로 소규모화 하고 체험홀 등 시설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및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제고를 목적으로, 30인 초과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시설로 단계적으로 전환 또는 분리하거나, 공동생활가정 설치율 권장하여 전체 시설에서 소규모시설의 비율이 80%가 되도록 연차별로 확대함
- 장애인거주시설의 소규모화를 살펴보면 장애유형별시설의 경우 30인 이하 규모가 54.9%,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항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③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표 10-3-2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시도별

(단위: 시설 수)

구분	지역사회 재활시설										의료재활 시설
	합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수어 통역센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점자 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실 출판시설	수련시설	장애인 재활 치료시설	
2012	1,140	205	526	28	191	156	30	4	-	-	18
2013	1,184	219	558	29	199	155	23	1	-	-	18
2014	1,213	223	592	29	193	156	19	1	-	-	18
2015	1,248	224	625	30	193	156	19	1	-	-	18
2016	1,303	231	663	34	194	159	20	2	-	-	20
2017	1,333	237	690	33	194	157	20	1	1	-	19
2018	1,373	241	724	33	195	159	19	1	1	-	19
2019	1,468	254	769	28	197	164	21	2	1	32	18
2020	1,519	258	797	28	199	164	19	1	1	52	18
2021	1,568	261	818	31	202	165	22	2	1	66	18
2022	1,601	263	840	31	204	165	22	2	1	73	18
2023	1,621	266	849	30	206	165	19	1	-	66	19
2024	1,628	262	855	30	206	167	19	1	-	69	19
서울	226	52	134	7	26	1	-	-	-	-	6
부산	98	17	67	1	7	1	1	-	-	3	1
대구	71	6	53	2	6	2	1	-	-	-	1
인천	58	11	42	-	1	1	1	-	-	-	2
광주	51	7	39	1	-	1	1	-	-	2	-
대전	75	8	48	2	5	1	1	-	-	8	2
울산	56	5	42	2	3	1	1	-	-	2	-
세종	10	1	3	-	1	1	1	-	-	3	-
경기	290	39	159	5	32	31	5	-	-	18	1
강원	71	11	20	-	19	19	1	-	-	-	1
충북	70	12	27	1	12	11	1	-	-	5	1
충남	65	16	19	-	15	15	-	-	-	-	-
전북	98	14	34	5	15	15	1	-	-	14	-
전남	91	18	29	-	21	22	1	-	-	-	-
경북	125	21	55	2	22	23	1	-	-	-	1
경남	120	18	52	2	20	21	1	1	-	3	2
제주	53	6	32	-	1	1	1	-	-	11	1

주: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자료: 1) 2012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8, 217-219.

2) 2013-2024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4.



- 2024년 기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1,628개소, 의료재활시설 수는 19개소임
- 시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855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262개소, 수어통역센터 206개소,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167개소 등의 순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며, 의료재활시설 수는 2023년과 동일하게 19개소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경기도 290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226개소, 경북 125개소, 경남 120개소 등의 순임
- 의료재활시설은 서울이 6개소로 가장 많고,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인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로 나타남
-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지역은 광주이며, 점자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서울, 충남임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경남에만 설치됨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점자·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어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표 10-3-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 시설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시설 수, 명)

구분	시설 수	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종사자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시설 수	근로 장애인	정원	현원
2010	422	11,932	45	1,817	377	10,115	-	-	2,203	2,052
2011	456	12,870	53	2,190	403	10,680	-	-	2,504	2,260
2012	478	13,758	56	2,384	422	11,374	-	-	2,763	2,488
2013	511	14,739	64	2,653	447	12,086	-	-	3,187	2,820
2014	539	15,641	64	2,721	475	12,920	-	-	3,551	3,158
2015	560	16,414	64	2,798	496	13,616	-	-	3,590	3,133
2016	582	17,131	63	2,762	516	14,335	-	-	4,115	3,256
2017	625	17,841	62	2,724	553	14,960	-	-	4,534	3,732
2018	651	18,205	63	2,690	573	15,262	15	253	4,770	4,024
2019	683	19,056	65	2,823	593	15,796	25	437	5,139	4,362
2020	720	19,734	67	2,875	619	16,147	34	712	5,360	4,688
2021	773	20,504	68	2,923	667	16,791	38	790	5,709	5,021
2022	792	20,819	70	2,951	682	17,017	40	851	5,759	5,160
2023	811	21,225	69	2,910	704	17,437	38	878	5,900	5,338
2024	815	21,761	76	3,131	701	17,747	38	883	5,946	5,595
서울	136	4,102	11	594	116	3,303	9	205	1,041	957
부산	45	1,224	1	31	43	1,164	1	29	316	245
대구	41	1,192	5	210	36	982	-	-	268	220
인천	44	1,097	3	142	41	955	-	-	298	284
광주	30	905	5	196	25	709	-	-	257	246
대전	34	892	4	171	25	615	5	106	260	197
울산	17	330	1	32	15	275	1	23	99	84
세종	8	208	1	31	7	177	-	-	54	50
경기	189	4,912	16	716	158	3,840	15	356	1,342	1,514
강원	39	806	3	88	35	701	1	17	246	225
충북	28	944	1	66	24	785	3	93	253	242
충남	31	844	2	37	29	807	-	-	253	225
전북	30	693	4	103	23	536	3	54	201	166
전남	24	581	5	171	19	410	-	-	173	152
경북	46	1,237	2	97	44	1,140	-	-	327	293
경남	61	1,368	8	253	53	1,115	-	-	402	340
제주	12	426	4	193	8	233	-	-	156	155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수는 훈련장애인수 포함임

자료: 1) 2010~2011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4. 2) 2012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9.
3) 2013~2024년: 보건복지부(각 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p.5.

- 2024년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815개소, 근로장애인 수 21,761명, 종사자 수(현원 기준) 5,595명임
- 시설유형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보호작업장 시설수는 701개소로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약 86.0%를 차지함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설 수, 근로장애인 수, 종사자 수 모두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325개소(약 39.9%)가 서울·경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서울·경기에 24개소가 있는 반면, 대구, 인천, 광주,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직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④ 정신건강 관련 기관

〈표 10-3-2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정신건강증진시설									
		계	정신의료기관							정신 재활 시설	정신 요양 시설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병원	요양병원 정신과	한방병원 정신과	의원 정신과	한의원 정신과		
2018	2,415	2,077	202	176	144	-	-	1,148	-	348	59
2019	2,562	2,247	200	256	84	-	-	1,299	-	349	59
2020	2,661	2,345	215	195	123	-	-	1,403	-	350	59
2021	2,759	2,443	218	70	247	3	4	1,494	2	346	59
2022	2,844	2,519	219	42	257	3	4	1,583	1	351	59
2023	2,949	2,620	215	43	252	4	4	1,682	2	359	59
서울	786	755	41	7	12	1	1	588	2	100	3
부산	226	206	22	-	22	-	-	141	-	18	3
대구	143	131	9	1	16	-	-	83	-	19	3
인천	130	112	11	1	17	1	-	66	-	14	2
광주	89	78	6	3	9	-	-	45	-	11	4
대전	135	124	9	1	7	-	-	72	-	31	4
울산	45	37	5	-	6	-	-	22	-	3	1
세종	21	19	1	-	1	-	-	13	-	3	1
경기	599	548	42	15	49	2	3	363	-	68	6
강원	70	47	11	-	8	-	-	25	-	3	-
충북	88	71	8	3	11	-	-	34	-	11	4
충남	114	94	5	2	17	-	-	39	-	21	10
전북	116	97	7	-	10	-	-	52	-	24	4
전남	90	64	14	7	10	-	-	26	-	3	4
경북	120	93	12	1	26	-	-	31	-	18	5
경남	133	106	9	-	29	-	-	58	-	6	4
제주	44	38	3	2	2	-	-	24	-	6	1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정신의료기관의 기관유형은 의료기관개설허가서 기준임

3) 지역사회재활기관 중 자살예방센터는 독립 자살예방센터만 포함됨(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미포함)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p.58.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58.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58.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60-61.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46-47, 57.

6)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60-61, 71.

- 2023년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2,949개소로, 정신건강증진시설 2,620개소, 지역사회재활기관 329개소임

•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는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전년도 대비 105개소 증가)

•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의원 정신과가 1,682개소(6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사회재활기관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6개소(7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지역별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786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599개소, 부산 226개소 등의 순임

〈표 10-3-2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 기관유형별, 연도별, 지역별(계속)

(단위: 개소)

구분	지역사회재활기관					
	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광역	기초	기본		
2018	309	16	235	8	50	-
2019	315	16	241	2	49	7
2020	316	16	244	-	50	6
2021	316	16	244	-	50	6
2022	325	17	244	-	58	6
2023	329	17	246	-	60	6
서울	31	1	25	-	3	2
부산	20	1	16	-	3	-
대구	12	1	9	-	2	-
인천	18	1	11	-	5	1
광주	11	1	5	-	5	-
대전	11	1	5	-	5	-
울산	8	1	5	-	2	-
세종	2	1	1	-	-	-
경기	51	1	37	-	10	3
강원	23	1	18	-	4	-
충북	17	1	14	-	2	-
충남	20	1	17	-	2	-
전북	19	1	14	-	4	-
전남	26	1	23	-	2	-
경북	27	1	24	-	2	-
경남	27	1	20	-	6	-
제주	6	1	2	-	3	-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임

2) 정신의료기관의 기관유형은 의료기관개설허가서 기준임

3) 지역사회재활기관 중 자살예방센터는 독립 자살예방센터만 포함됨(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미포함)

-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 p.58.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58.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58.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60-61.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46-47, 57.
 6)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60-61, 71.

※※ 정신건강 관련 기관 종류 및 기능(출처: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main/index.do>))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생활지도 등 제공하는 기관
- 정신요양시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제공하는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광역, 기초로 구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
- 자살예방센터: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 의료시설

① 장애인화 보건의료기관

〈표 10-3-28〉 장애인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인화 산부인과
2021	7	-
2022	11	1
2023	15	8
2024	21	10
서울	2	3
부산	4	1
대구	-	-
인천	1	-
광주	-	1
대전	1	-
울산	-	1
세종	-	-
경기	2	1
강원	1	-
충북	1	1
충남	-	-
전북	-	1
전남	1	-
경북	2	1
경남	4	-
제주	2	-

주: 연도별 수치는 각 연도별 12월 말 기준이고, 지역별 수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인화 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 검진기관은 21개소, 장애인화 산부인과는 10개소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부산과 경남이 4개소로 가장 많고, 장애인화 산부인과는 서울이 3개소로 가장 많음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북이고, 장애인화 산부인과의 없는 지역은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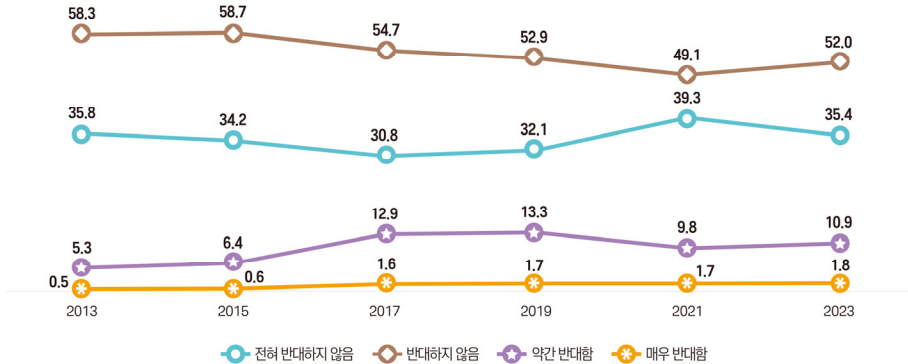
※※ 장애인화 보건의료기관 종류 및 개요(출처: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 (목적) 장애인의 건강검진기관 접근성을 보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위험 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을 도와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내용)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시설장비비 및 안전편의관리비 지원)
- 장애인화 산부인과 사업
 - (목적) 고위험 임신출산, 접근성 부족 등의 어려움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및 여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사업내용)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 운영기관 지정

11. 인권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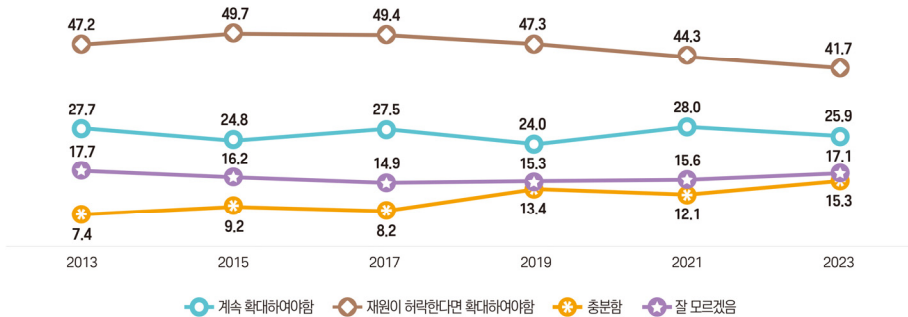
[그림 2-11-1]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그림 2-11-2]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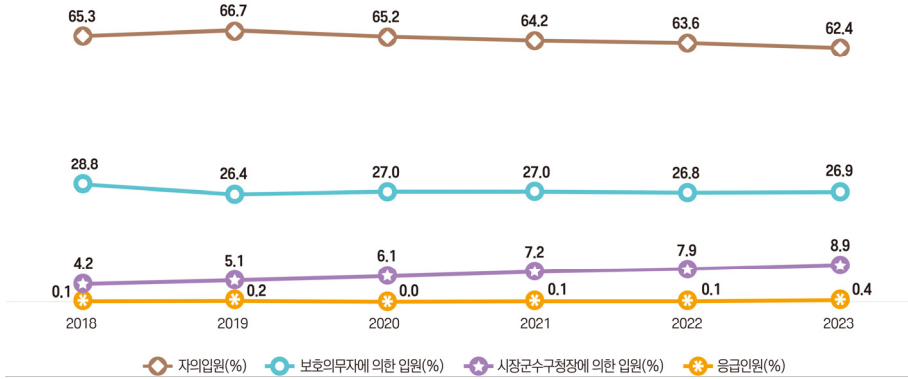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 비율은 87.4%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12.7%로 2021년 11.5%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41.7%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2013년 27.7%에서 2023년 25.9%로 감소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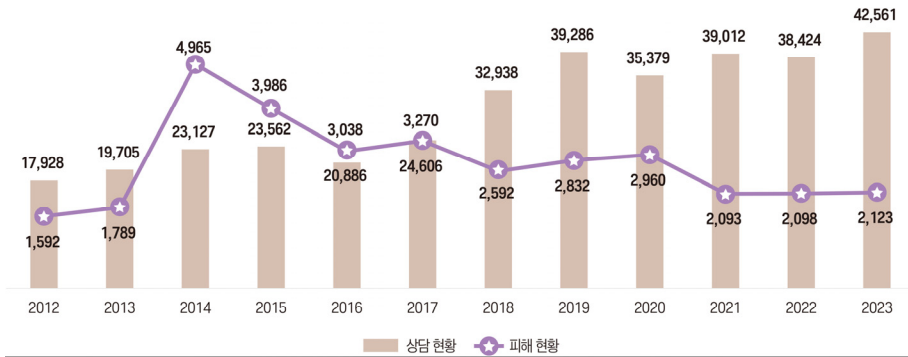
[그림 2-11-3]

정신의료기관 입원 유형 - 연도별



[그림 2-11-4]

장애인 성폭력 현황 - 연도별



- 2023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자 중 자의입원 비율은 62.4%이고, 비자의적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비율은 36.2%임
- 2023년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42,561건으로 2010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건수는 2,123건으로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1) 사회적 차별

(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자폐성
입학 및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32.4	10.1	39.0	34.3	22.7	15.2	35.2
	초등학교	34.3	25.3	39.5	31.6	27.6	30.8	36.3
	중학교	31.6	21.4	45.7	28.8	26.8	39.5	32.3
	고등학교	25.8	15.5	41.5	12.9	18.2	34.7	27.1
	대학교	14.5	9.2	20.0	10.4	26.9	34.6	15.7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21.0	14.0	20.8	13.5	15.2	12.8	24.3
	또래 학생으로부터	53.3	43.0	53.4	37.0	41.4	39.7	62.2
	학부모로부터	14.8	11.2	14.0	7.8	11.2	11.1	17.1
결혼		15.7	14.0	35.0	9.8	13.1	15.0	32.1
자녀 양육교육		14.1	10.1	18.0	14.7	24.7	46.5	58.5
취업		28.3	25.8	42.9	23.6	23.9	49.5	45.8
직장 생활	소득(임금)	14.5	13.9	23.6	11.6	8.0	18.4	30.9
	동료와의 관계	15.2	12.8	19.9	9.2	18.5	36.8	31.3
	승진	10.2	9.7	17.5	6.9	8.5	21.1	15.4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8.9	6.4	6.2	17.2	10.3	15.6	38.9
보험제도상(계약 시)		31.7	25.9	52.3	27.6	24.8	27.5	41.7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시		2.0	1.0	3.7	2.1	2.2	1.7	4.3
의료기관 이용 시		2.8	1.6	4.6	2.2	2.3	8.5	5.5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2	0.3	0.2	3.1	3.6	2.1	0.5
대중교통 이용 시		8.3	7.3	19.4	7.4	2.9	9.8	15.0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6.8	4.1	11.5	5.1	5.3	11.8	19.1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18.

- 2023년 기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53.3%, 초등학교 입학·전학 34.3%,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32.4%의 순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4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보험제도상(계약 시) 25.9%, 취업과정에서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뇌병변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와 보험제도상(계약 시)에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각각 53.4%, 52.3%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시각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와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각각 37.0%, 34.3%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청각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41.4%,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27.6%, 언어장애인은 취업과정에서 49.5%, 자녀 양육·교육 시 46.5%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지적장애인의 경우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62.2%, 자녀 양육·교육 시 58.5%,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51.8%, 보험제도상(계약 시) 50.0%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1-1〉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

구분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 ·요루	뇌전증
입학 및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37.1	34.4	0.0	11.9	0.0	0.0	0.0	63.5
	초등학교	39.8	33.0	34.1	7.8	0.0	0.0	39.0	0.0
	중학교	41.4	21.1	30.9	0.0	77.9	0.0	40.7	0.0
	고등학교	38.3	29.8	15.2	9.7	54.9	0.0	22.3	0.0
	대학교	18.4	28.5	8.9	15.0	0.0	0.0	0.0	0.0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29.6	21.3	6.6	0.0	0.0	19.0	6.8	31.9
	또래 학생으로부터	51.8	73.3	13.0	27.9	63.0	24.6	58.8	38.4
	학부모로부터	21.3	10.7	13.8	0.0	0.0	0.0	9.6	0.0
결혼		-	34.4	26.0	2.1	14.9	6.6	19.8	5.2
자녀 양육교육		-	35.9	3.8	4.3	5.9	5.3	27.8	1.9
취업		28.0	47.8	31.2	17.5	27.7	14.7	47.0	15.6
직장 생활	소득(임금)	19.6	29.0	10.6	5.9	17.1	6.1	9.4	5.7
	동료와의 관계	21.2	39.3	7.0	6.1	2.0	2.2	24.3	2.4
	승진	3.9	20.5	8.4	2.2	7.5	5.6	10.8	2.7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33.8	20.8	2.4	9.5	0.0	2.3	1.8	7.6
보험제도상(계약 시)		50.0	58.7	48.3	55.1	44.3	34.7	18.3	33.2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시		6.7	3.6	0.8	0.0	0.9	0.6	0.5	0.0
의료기관 이용 시		13.5	4.6	2.7	1.9	0.3	1.0	4.2	1.6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2.0	0.5	0.4	0.0	1.0	0.0	0.0	0.0
대중교통 이용 시		23.3	6.6	3.3	1.4	1.2	0.4	13.5	4.6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27.6	11.3	1.2	0.0	2.5	0.1	15.1	2.8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18.

- 정신장애인의 경우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73.3%, 보험제도상(계약 시) 58.7%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심장장애인은 보험제도상(계약 시)와 초등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각각 48.3%, 34.1%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심장장애인은 보험제도상(계약 시) 55.1%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호흡기 장애인은 중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경우가 7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63.0%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간 장애인은 보험제도상(계약 시) 34.7%, 안전장애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58.8%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장루·요루장애인은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시 63.5%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뇌전증장애인의 경우 보험제도상(계약 시) 62.7%,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으로부터 57.0%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1-2〉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입학 및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32.4	35.3	26.2	32.2	33.9	30.4	4.6	35.0
	초등학교	34.3	35.6	32.0	29.7	37.7	32.3	33.7	36.0
	중학교	31.6	34.5	26.3	22.4	34.2	24.5	51.1	33.1
	고등학교	25.8	28.1	21.5	14.5	28.3	16.5	39.4	27.3
	대학교	14.5	12.5	18.1	-	16.2	12.2	0.0	18.6
학교 생활	교사로부터	21.0	23.4	16.5	16.1	22.0	23.1	22.3	22.8
	또래학생으로부터	53.3	53.1	53.7	43.7	56.9	53.0	57.7	57.0
	학부모로부터	14.8	17.0	10.9	12.4	13.8	15.8	28.8	16.1
	결혼	15.7	15.7	15.7	-	18.1	18.8	10.4	25.0
	자녀 양육·교육	14.1	10.5	21.3	-	12.2	14.8	13.4	27.2
	취업	28.3	30.7	23.3	0.0	32.4	32.6	22.5	42.3
직장 생활	소득(임금)	14.5	15.9	11.1	0.0	17.8	17.3	10.7	23.4
	동료와의 관계	15.2	15.9	13.6	0.0	20.3	17.0	11.6	26.4
	승진	10.2	12.2	5.6	-	10.8	12.8	7.3	17.1
	운전면허 제도상(취득 시)	8.9	8.2	11.2	-	10.6	8.9	8.2	14.9
	보험제도상(계약 시)	31.7	30.5	34.0	32.8	39.9	30.7	29.1	44.3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시	2.0	2.0	2.0	3.1	3.5	2.4	1.4	4.1
	의료기관 이용 시	2.8	2.5	3.0	8.1	4.4	2.8	2.1	5.3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2	1.2	1.1	0.5	1.1	1.4	1.1	1.5
	대중교통 이용 시	8.3	8.0	8.7	12.4	12.2	8.7	7.1	15.2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6.8	7.0	6.4	17.7	13.4	7.1	4.7	14.2

주: 1)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711-716.

-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입학 및 전학,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높아지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중학교 입학·전학 과정에서 17세 이하의 차별 경험 비율은 22.4%이고, 65세 이상은 51.1%로 다른 영역에 비해 연령별 비율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 시, 취업, 보험제도상(계약 시), 자녀 양육·교육,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의 경우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각각 20.1%p, 19.9%p, 19.4%p, 19.0%p, 18.4%p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개인)

〈표 11-1-3〉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4	항상 느낀다	6.2	3.7	10.1	6.0	6.0	5.3	16.1	10.1	12.8	3.3	8.3	3.4	4.8	0.0	5.8	4.3
	가끔 느낀다	31.6	23.0	40.0	32.6	40.3	43.3	52.9	67.6	50.3	20.4	29.1	38.3	23.3	66.1	34.6	43.8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6.8	37.8	41.2	40.5	39.4	24.5	15.3	26.4	48.1	51.2	27.6	36.7	31.8	42.9	31.2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6.4	12.0	20.2	13.2	12.1	6.4	6.9	10.5	28.2	11.4	30.8	35.2	2.1	16.7	20.7
2017	항상 느낀다	7.6	4.5	13.7	4.5	7.8	11.1	16.6	27.2	13.3	7.4	4.6	4.2	4.9	18.4	1.2	13.2
	가끔 느낀다	27.2	21.6	34.8	25.2	34	41.5	39.5	59.4	38.5	16.9	24.7	23.2	9.3	19.1	26.6	36.6
	별로 느끼지 않는다	45.5	48.2	39.1	47.8	46.4	42.3	35.1	11.2	43.6	53.5	46.7	50.0	51.0	26.0	46.1	35.0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25.6	12.3	22.5	11.8	5.1	8.8	2.3	4.7	22.2	24.1	22.7	34.7	36.5	26.0	15.3
2020	항상 느낀다	1.7	1.0	1.1	0.8	1.0	2.4	7.2	7.0	2.8	0.6	1.2	0.7	0.7	2.8	1.0	1.8
	가끔 느낀다	27.6	21.5	39.0	26.7	25.5	38.7	45.1	42.9	48.0	19.8	16.0	23.0	14.4	45.5	21.8	39.5
	별로 느끼지 않는다	55.4	58.8	49.4	54.0	59.5	49.9	41.6	43.8	43.0	62.6	63.1	63.1	58.4	45.7	63.3	48.0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3	18.6	10.6	18.4	13.9	9.0	6.1	6.3	6.1	17.0	19.6	13.2	26.5	6.1	13.9	10.6
2023	항상 느낀다	3.3	2.3	5.9	2.5	2.1	6.2	8.3	13.5	5.1	0.6	1.4	2.1	0.1	15.9	2.2	8.4
	가끔 느낀다	26.1	20.8	38.2	21.0	20.2	46.5	54.0	47.5	40.6	14.9	21.3	17.1	7.8	46.6	16.6	49.5
	별로 느끼지 않는다	51.0	51.7	47.8	55.6	59.4	38.0	31.0	32.5	46.7	59.2	48.4	54.0	53.4	28.8	47.8	32.7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6	25.1	8.2	21.0	18.3	9.3	6.6	6.5	7.6	25.3	28.9	26.8	38.7	8.7	33.4	9.4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0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35.

- 2023년 기준 장애 때문에 본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항상 또는 가끔 느낀다고 인식한 장애인의 비율은 29.4%이며, 별로 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70.6%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안면장애 중 62.5%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낀다(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포함)고 하였고, 지적장애 62.3%, 자폐성장애 61.0% 뇌전증장애 57.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1-4〉 장애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014	항상 느낀다	6.2	6.9	5.2	14.3	11.0	7.2	3.0	11.6	2.9
	가끔 느낀다	31.6	31.5	31.7	53.7	41.0	32.1	26.1	43.9	23.3
	별로 느끼지 않는다	41.7	40.8	43.0	21.8	30.6	40.1	48.6	33.9	46.6
	전혀 느끼지 않는다	20.5	20.8	20.1	10.2	17.4	20.6	22.3	10.6	27.2
2017	항상 느낀다	7.6	8.2	6.7	20.5	13.2	8.2	4.4	13.9	3.5
	가끔 느낀다	27.2	28.4	25.6	40.0	33.0	28.2	23.9	37.2	20.7
	별로 느끼지 않는다	45.5	43.5	48.2	28.6	37.1	43.2	51.0	38.2	50.5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19.8	19.5	10.9	16.7	20.4	20.6	10.7	25.2
2020	항상 느낀다	1.7	1.6	1.8	4.6	6.3	1.4	0.5	3.6	0.5
	가끔 느낀다	27.6	28.1	26.9	43.3	37.1	30.4	22.3	39.7	20.4
	별로 느끼지 않는다	55.4	55.1	55.8	42.4	44.4	53.6	60.3	47.4	60.2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3	15.2	15.5	9.6	12.2	14.7	16.9	9.3	18.9
2023	항상 느낀다	3.3	3.6	2.9	6.7	8.9	4.1	1.6	6.9	1.4
	가끔 느낀다	26.1	27.4	24.4	50.8	41.0	28.8	20.1	41.9	17.6
	별로 느끼지 않는다	51.0	49.1	53.5	35.5	35.2	48.3	56.7	41.5	56.1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6	19.8	19.2	7.1	15.0	18.8	21.7	9.6	24.9

주: 1) 무응답 제외

2)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3) 장애정도는 각 연도 별로 2014년과 2017년은 중증(1-3급), 경증(4-6급), 2020년과 2023년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59.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7.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716.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별 경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17세 이하는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을 느낀다(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 포함)는 비율이 57.5%로 다른 연령에 비해 사회적 차별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을 인식한 비율은 심한장애가 48.8%, 심하지 않은 장애가 19.0%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3) 사회적 차별 인식 정도(사회)

〈표 11-1-5〉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014	전혀 없다	1.0	1.2	0.8	0.2	0.4	0.0	0.6	0.7	3.6	0.0	9.4	0.0	0.0	2.4	0.0
	별로 없다	26.4	30.4	20.5	28.5	24.7	28.2	9.8	14.1	19.9	28.0	15.3	26.4	23.4	33.2	31.7
	약간 많다	46.2	46.0	46.5	43.9	51.4	41.7	43.5	53.9	40.0	37.5	41.7	54.4	29.3	40.8	37.9
	매우 많다	26.4	22.4	32.1	27.4	23.5	30.1	46.2	42.8	25.4	28.4	41.5	33.7	19.2	47.2	30.4
2017	전혀 없다	1.8	2.1	2.2	1.3	2.0	1.6	1.0	1.6	0.6	0.0	0.0	0.9	0.0	1.2	0.8
	별로 없다	18.3	20.8	15.3	19.2	18.5	14.0	7.1	0.0	16.6	21.6	26.6	25.3	17.0	27.7	14.8
	약간 많다	46.0	46.2	44.8	48.9	50.7	42.2	41.6	24.0	40.5	44.9	45.6	48.6	55.9	19.1	53.2
	매우 많다	33.9	30.9	37.7	30.6	28.8	42.2	50.4	76.0	41.3	32.9	27.9	26.0	26.1	53.2	30.8
2020	전혀 없다	3.6	4.2	1.7	5.2	3.7	2.2	1.5	2.1	1.0	4.5	4.9	4.6	3.9	-	2.9
	별로 없다	32.9	34.9	27.0	35.5	36.4	27.9	24.1	20.5	25.3	33.1	34.7	34.8	35.0	32.5	34.8
	약간 많다	53.8	52.7	61.3	49.5	52.6	54.8	54.0	53.4	61.5	53.6	55.9	49.9	58.0	58	57.1
	매우 많다	9.8	8.2	10.0	9.8	7.4	15.1	20.4	24.0	12.2	8.9	4.4	10.7	3.1	9.5	5.2
2023	전혀 없다	1.6	2.3	0.5	1.1	1.3	0.3	0.8	0.3	0.9	1.6	1.7	2.8	1.9	1.4	0.0
	별로 없다	18.4	18.7	16.8	19.7	23.9	11.4	9.8	2.8	12.0	22.5	18.3	15.0	18.5	5.8	26.3
	약간 많다	61.7	61.8	60.9	61.6	63.5	64.7	59.8	52.1	63.9	61.1	54.4	63.9	60.4	56.7	57.3
	매우 많다	18.4	17.2	21.8	17.6	11.3	23.6	29.6	44.9	23.2	14.8	25.7	18.3	19.3	36.1	16.4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2017년 조사부터 응답값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로 변경됨(기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4.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6.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09.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36.

- 2023년 기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은 '약간 많다'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별로 없다'와 '매우 많다'가 모두 18.4%로 나타남
- 장애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매우 많다'가 18.4%로 나타났으며, '약간 많다'의 경우 61.7%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80.1%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의 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폐성장애가 4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면장애 36.1%, 지적장애 29.6%, 뇌전증장애 28.7% 등의 순임

〈표 11-1-6〉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2014	전혀 없다	1.0	0.8	1.3	0.4	0.3	0.4	1.9	1.1	0.9
	별로 없다	26.4	23.7	30.0	8.9	13.5	24.3	34.1	18.4	31.7
	약간 많다	46.2	47.0	45.2	44.9	47.1	45.1	47.0	46.2	45.6
	매우 많다	26.4	28.5	23.4	45.7	39.1	30.2	17.0	34.4	21.8
2017	전혀 없다	1.8	2.0	1.6	1.3	1.2	1.6	2.2	1.3	2.2
	별로 없다	18.3	17.4	19.5	7.1	10.8	14.9	24.0	13.6	21.4
	약간 많다	46.0	45.7	46.4	31.4	43.5	44.1	49.2	42.3	48.4
	매우 많다	33.9	34.9	32.5	60.2	44.5	39.4	24.6	42.8	28.1
2020	전혀 없다	3.6	3.6	3.6	2.2	1.8	3.5	4.2	2.2	4.5
	별로 없다	32.9	32.3	33.6	26.2	23.2	28.9	38.5	26.3	36.8
	약간 많다	53.8	54.6	52.6	51.0	56.6	56.8	51.1	57.0	51.8
	매우 많다	9.8	9.5	10.2	20.6	18.4	10.8	6.2	14.5	6.9
2023	전혀 없다	1.6	1.4	1.8	0.6	0.5	1.3	2.0	0.7	2.0
	별로 없다	18.4	15.6	22.1	6.3	10.3	12.9	23.9	13.1	21.2
	약간 많다	61.7	63.1	59.7	58.1	58.8	62.2	62.2	60.5	62.3
	매우 많다	18.4	19.9	16.3	35.0	30.3	23.6	11.9	25.7	14.5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을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각 연도 별로 2011년 중증(1-2급), 경증(3-6급), 2014년과 2017년은 중증(1-3급), 경증(4-6급), 2020년과 2023년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

3) 2017년 조사부터 응답값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로 변경됨(기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6.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60.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8.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717.

- 2023년 기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는 '매우 많다'의 비율이 35.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반면, 65세 이상은 '매우 많다'의 비율이 11.9%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심한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매우 많다'의 비율이 11.2%p 정도 높게 나타남



(4)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표 11-1-7〉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 -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계	전혀 반대하지 않음	반대하지 않음	약간 반대함	매우 반대함
2009	100	37.9	55.4	6.2	0.5
2011	100	35.9	57.9	5.7	0.5
2013	100	35.8	58.3	5.3	0.5
2015	100	34.2	58.7	6.4	0.6
2017	100	30.8	54.7	12.9	1.6
2019	100	32.1	52.9	13.3	1.7
2021	100	39.3	49.1	9.8	1.7
2023	100	35.4	52	10.9	1.8
도시(동부)	100	35.5	48.9	9.9	1.8
농어촌(읍면부)	100	34.8	50.2	9.5	1.5
남자	100	36.0	52.0	10.1	1.9
여자	100	34.7	52.0	11.6	1.7
장애인	100	43.8	46.0	8.8	1.4
비장애인	100	34.9	52.3	11.0	1.8
13 - 19세	100	40.9	47.1	10.6	1.4
20 - 29세	100	38.0	49.7	10.0	2.2
30 - 39세	100	34.8	51.5	11.4	2.2
40 - 49세	100	38.3	49.3	10.9	1.6
50 - 59세	100	35.9	52.7	10.0	1.4
60세 이상	100	30.9	55.7	11.6	1.8
65세 이상	100	29.8	56.7	11.7	1.8
초졸 이하	100	34.0	53.5	10.4	2.2
중졸	100	34.8	53.2	10.4	1.6
고졸	100	36.8	51.6	10.0	1.7
대졸 이상	100	34.7	51.6	11.8	1.8
전문 관리	100	37.8	49.8	10.5	1.9
사무	100	33.9	51.7	12.8	1.6
서비스판매	100	35.8	51.9	10.7	1.6
농어업	100	24.9	61.1	11.8	2.3
기능노무	100	38.2	51.1	8.8	1.9
100만원 미만	100	35.0	53.6	9.8	1.6
100-200만원 미만	100	34.0	54.8	9.7	1.5
200-300만원 미만	100	37.2	51.9	9.4	1.5
300-400만원 미만	100	36.3	51.9	10.4	1.5
400-500만원 미만	100	34.8	53.0	10.6	1.7
500-600만원 미만	100	37.0	50.6	10.6	1.7
600만원 이상	100	33.9	50.3	13.3	2.5

주: 1)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2) 2015년 사회조사까지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문항에서 시설의 예시를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으로 명시한 반면, 2017년 사회조사에는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함

자료: 1)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34. 2)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40.
 3)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38. 4) 통계청(2015). 「2015년 사회조사보고서」 p122.
 5)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 p122. 6)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p122.
 7)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보고서」 p122. 8) 통계청(2023).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p130.

- 2023년 기준 집 근처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전혀 반대하지 않음+반대하지 않음) 비율은 87.4%로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12.7%로 2021년 11.5%에 비해 소폭 증가함
- 장애여부별로 살펴보면, 반대하지 않는 비율은 장애인이 89.8%로 비장애인 87.2%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반대(약간 반대함+매우 반대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10.0% 이상이 반대하는 가운데 65세 이상이 14.5%, 60세 이상이 13.4%로 연령층이 높은 집단이 장애인 관련 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표 11-1-8〉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연도별, 동·읍면부별, 성별, 장애여부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단위: %)

구분	계	계속 확대하여야함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함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07	100.0	36.6	47.4	2.2	13.8
2009	100.0	34.7	44.5	3.5	17.3
2011	100.0	33.6	45.2	5.7	15.5
2013	100.0	27.7	47.2	7.4	17.7
2015	100.0	24.8	49.7	9.2	16.2
2017	100.0	27.5	49.4	8.2	14.9
2019	100.0	24.0	47.3	13.4	15.3
2021	100.0	28.0	44.3	12.1	15.6
2023	100.0	25.9	41.7	15.3	17.1
도시(동부)	100.0	26.3	42.4	14.1	17.2
농어촌(읍면부)	100.0	23.8	38.2	21.1	16.9
남자	100.0	25.5	42.4	15.7	16.4
여자	100.0	26.2	41	15	17.8
장애인	100.0	32.7	35.2	16.9	15.3
비장애인	100.0	25.5	42	15.2	17.2
13 - 19세	100.0	28.8	38	10.2	23
20 - 29세	100.0	26.5	40.3	13.1	20.1
30 - 39세	100.0	26.7	44.2	12.6	16.4
40 - 49세	100.0	31.8	43.2	11.4	13.6
50 - 59세	100.0	29.1	43.4	13.6	14
60세 이상	100.0	21	43.1	19.7	16.2
65세 이상	100.0	16.9	37.6	25.9	19.6
초졸 이하	100.0	14.8	33.3	25.8	26
중졸	100.0	19.6	33.8	23.1	23.4
고졸	100.0	22.1	38.7	18.4	20.9
대졸 이상	100.0	25.7	41.7	15.6	17.1
전문 관리	100.0	28.7	44.6	12.2	14.5
사무	100.0	31.4	45.9	10.2	12.5
서비스판매	100.0	28.5	46.6	11.5	13.5
농어업	100.0	26.4	43.2	15.3	15.1
기능노무	100.0	16.9	36.7	29.5	16.9
100만원 미만	100.0	24.3	40.9	17.2	17.5
100 - 200만원 미만	100.0	19.8	33.2	24.6	22.3
200 - 300만원 미만	100.0	22.4	38.7	20.5	18.4
300 - 400만원 미만	100.0	24	41.2	16.7	18.1
400 - 500만원 미만	100.0	25.1	42.3	15.2	17.5
500 - 600만원 미만	100.0	26.4	42.7	14.5	16.4
600만원 이상	100.0	29.5	42.3	12.6	15.6

주: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자료: 1)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35. 2) 통계청(2011). 「2011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41.
3) 통계청(2013). 「2013년 사회조사 주요결과」 p39. 4) 통계청(2015). 「2015년 사회조사보고서」 p124.
5)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 p124. 6)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p124.
7)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보고서」 p124. 8) 통계청(2023). 「2023년 사회조사보고서」 p132.

- 2023년 기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하여야 함'이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연도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2021년 25.9%로 2021년 28.0%에 비해 하락함
- 장애여부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장애인이 32.7%로 비장애인 25.5%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계속 확대하여야 함'의 비율은 50대를 기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6)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표 11-1-9〉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장애유형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알고 있다	8.3	8.9	7.3	7.4	5.3	2.5	10.4	28.9	4.2	9.0	18.4	11.7	15.1	15.5	8.5	4.8
들어본 적 있으나 2014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4.0	23.7	24.5	18.1	19.0	21.1	40.2	20.7	26.5	13.0	7.9	27.1	46.8	13.4	33.6
알지 못한다	68.7	67.2	68.9	68.1	76.6	78.4	68.4	30.9	75.1	64.5	68.6	80.4	57.8	37.7	78.1	61.6
알고 있다	13.9	13.6	15.9	13.1	10.5	20.4	15.5	43.8	7.1	20.2	13.0	9.2	29.2	23.4	11.8	19.3
들어본 적 있으나 2017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3	26.1	26.0	22.3	21.0	27.2	25.1	35.8	27.3	28.0	31.0	30.9	37.0	44.1	25.8	17.9
모른다	60.7	60.4	58.1	64.6	68.5	52.4	59.4	20.3	65.6	51.8	56.0	59.9	33.8	32.5	62.5	62.8
알고 있다	10.5	11.2	9.7	11.3	7.6	8.4	11.0	20.0	6.6	15.0	19.4	8.6	12.4	12.4	7.7	17.2
들어본 적 있으나 2020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9	27.5	23.6	28.2	21.7	32.0	20.7	23.3	20.5	36.3	32.2	35.1	36.8	35.2	28.7	25.6
모른다	63.6	61.4	66.7	60.5	70.7	59.5	68.3	56.7	72.8	48.8	48.4	56.2	50.7	52.5	63.6	57.2
알고 있다	14.9	16.5	16.1	16.9	7.7	13.0	15.1	28.2	8.2	18.4	21.8	15.7	25.1	22.3	13.9	16.0
들어본 적 있으나 2023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2	24.0	19.0	24.9	12.5	21.8	18.2	20.3	16.2	29.4	27.9	33.0	30.6	28.1	19.8	25.3
모른다	63.9	59.5	64.9	58.2	79.8	65.2	66.7	51.5	75.6	52.2	50.3	51.2	44.3	49.6	66.3	58.8

주: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진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을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365.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417.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410.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36.

- 2023년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가 63.9%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다'는 14.9%에 불과함
- 장애유형별로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청각장애가 79.8%로 가장 많고, 정신장애 75.6%, 지적장애 66.7%, 장루·요루장애 66.3%, 언어장애 6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해 제정(2008년 4월 11일 시행)

〈표 11-1-10〉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지 여부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연도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2014	알고 있다	8.3	10.0	6.0	18.6	12.7	10.9	3.6	10.5	7.2	8.5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3.1	26.4	18.5	35.6	33.9	26.6	15.1	23.9	23.3	23.6
	알지 못한다	68.7	63.6	75.5	45.8	53.4	62.5	81.2	65.7	69.5	68.0
2017	알고 있다	13.9	16.7	10.2	28.9	22.9	18.0	7.1	17.5	12.0	14.1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3	29.0	20.3	34.8	29.4	30.7	19.2	26.0	25.0	25.4
	모른다	60.7	54.2	69.5	36.3	47.7	51.2	73.7	56.5	62.9	60.4
2020	알고 있다	10.5	13.0	7.2	18.0	20.0	13.8	5.4	12.6	9.3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5.9	29.0	21.7	25.1	29.4	31.5	21.2	24.1	27.0	-
	모른다	63.6	58.0	71.1	56.9	50.6	54.7	73.4	63.3	63.7	-
2023	알고 있다	14.9	19.4	8.7	19.5	27.6	22.4	7.7	18.0	13.2	-
	들어본 적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21.2	25.3	15.7	26.5	25.8	29.3	15.3	20.8	21.4	-
	모른다	63.9	55.3	75.6	54.0	46.6	48.3	77.0	61.2	65.3	-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장애정도는 각 연도 별로 2014년과 2017년은 중증(1-3급), 경증(4-6급), 2020년과 2023년은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p557.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장애인 실태조사: p660.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p658.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717.

- 2023년 기준 성별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75.6%로 남성 55.3%에 비해 높음
- 연령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5% 이상이 장차법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장차법을 모르는 경우가 77.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에 따라 장차법을 모르는 비율을 살펴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 65.3%, 심한 장애 61.2%로 심하지 않은 장애가 더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인 인권보호

(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및 수용

〈표 11-2-1〉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 의견제출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합계	184	70	111	3
2023	9	3	6	-
2022	14	4	10	-
2021	19	4	15	-
2020	27	3	24	-
2019	17	2	15	-
2018	12	6	6	-
2017	12	7	5	-
2016	14	11	3	-
2015	9	3	5	1
2014	7	3	3	1
2013	7	6	1	-
2012	5	4	1	-
2011	6	3	3	-
2010	6	-	6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4).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36.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장애인 관련 인권정책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총 누계 건수는 184건으로, 70건이 권고, 111건이 의견표명, 3건이 의견제출로 나타남
- 2023년도 현황은 권고 3건, 의견표명 6건으로 총 9건임

〈표 11-2-2〉 장애인 인권정책 권고 수용현황 - 연도별

(단위: 건, %)

구 분	권고건수	권고 수용 여부				검토 중	권고 수용률
		합 계	수 용	일부 수용	불수용		
합계	70.0	65.0	30.0	32.0	3.0	5.0	95.4
2023	3.0	-	-	-	-	3.0	-
2022	4.0	2.0	1.0	1.0	-	2.0	100.0
2021	4.0	4.0	2.0	2.0	-	-	100.0
2020	3.0	3.0	-	3.0	-	-	100.0
2019	2.0	2.0	2.0	-	-	-	100.0
2018	6.0	6.0	2.0	4.0	-	-	100.0
2017	7.0	7.0	3.0	4.0	-	-	100.0
2016	11.0	11.0	7.0	4.0	-	-	100.0
2015	3.0	3.0	1.0	2.0	-	-	100.0
2014	3.0	3.0	2.0	1.0	-	-	100.0
2013	6.0	6.0	3.0	3.0	-	-	100.0
2012	4.0	4.0	1.0	2.0	1.0	-	75.0
2011	3.0	3.0	1.0	2.0	-	-	1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4).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37.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2023년까지의 누적 권고건수 총 70건 중 수용은 30건, 일부 수용은 32건, 불수용 3건, 검토 중은 5건인 것으로 나타남
- 2022년에는 총 3건이 권고되어 3건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2)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표 11-2-3〉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연도별, 장애유형별, 차별영역별

(단위: 건)

구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18,092	1,340	1,313	1,138	1,148	1,512	1,434	1,139	1,216	1,051	754	740	763
장애 유형별	지체	5,472	494	382	403	333	628	424	313	315	417	194	187
	시각	4,500	192	299	290	440	329	579	430	296	352	240	91
	뇌병변	1,203	85	70	91	93	102	98	94	60	48	29	73
	청각	1,676	140	251	112	101	93	98	80	77	95	67	60
	지적(발달)	1,864	231	115	104	102	247	103	128	97	50	67	67
	언어	118	13	7	13	5	7	12	14	5	6	4	3
	정신장애	642	47	50	55	31	61	54	20	47	24	29	26
	기타	2,617	138	139	70	43	45	66	60	319	59	124	258
차별 영역별	고용	1,154	82	75	94	67	56	79	55	80	78	72	79
	교육	1,685	97	45	67	55	536	92	61	72	86	91	126
	재화·용역	10,969	807	708	678	734	644	1,001	788	735	805	503	497
	사법행정	453	36	30	42	38	46	26	20	28	-	-	-
	참정권	182	57	41	19	-	16	3	14	1	-	-	-
	괴롭힘 등	1,859	113	305	121	123	89	94	113	201	82	88	43
	기타	1,790	148	109	117	131	125	139	88	99	-	-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4.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합계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의 누계를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4),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134-135.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16건, 2020년 1,051건, 2021년 754건, 2022년 740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3년에 763건으로 202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으로 장애유형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가 258건, 지체장애가 187건으로 많이 나타남
- 2023년 기준으로 차별영역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506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사법행정, 참정권은 0건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3)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간접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 계	17,261	1,314	7	6	810	12	10	10	459	15,937	9,521	61	6,343	12	10		
2008	455	35	-	1	22	-	-	-	12	420	254	1	164	1	-		
2009	721	57	-	-	10	-	-	-	47	664	353	6	301	4	-		
2010	1,101	85	-	1	25	3	-	-	56	1,016	663	15	332	6	-		
2011	952	156	1	-	119	4	-	-	32	796	381	4	410	1	-		
2012	1,508	137	1	-	115	-	-	-	21	1,370	615	1	754	-	1		
2013	1,563	108	-	-	27	1	1	-	79	1,455	755	1	699	-	-		
2014	1,096	79	-	1	15	2	-	-	61	1,014	560	5	449	-	3		
2015	1,085	36	-	-	14	-	3	-	19	1,049	663	6	380	-	-		
2016	1,641	51	-	3	19	-	-	-	29	1,590	1,199	7	384	-	-		
2017	1,090	92	-	-	68	1	2	-	21	999	634	4	360	-	-		
2018	1,326	39	2	-	23	-	2	1	11	1,286	780	1	505	-	1		
2019	900	82	2	-	65	-	-	1	14	818	564	1	253	-	-		
2020	1,341	203	-	-	175	-	2	8	18	1,137	762	-	375	-	1		
2021	835	67	1	-	49	-	-	-	17	768	466	4	298	-	-		
2022	830	58	-	-	49	-	-	-	9	772	419	5	348	-	-		
2023	817	29	-	-	15	1	-	-	13	784	453	-	331	-	4		
고 용	소계	84	1	-	-	1	-	-	-	81	55	-	26	-	2		
	모집·채용	23	-	-	-	-	-	-	-	21	14	-	7	-	2		
	임금·복지후생	8	-	-	-	-	-	-	-	8	3	-	5	-	-		
	배치	13	-	-	-	-	-	-	-	13	8	-	5	-	-		
	승진	4	-	-	-	-	-	-	-	4	3	-	1	-	-		
	직무관련	14	-	-	-	-	-	-	-	14	13	-	1	-	-		
	퇴직·해고	3	-	-	-	-	-	-	-	3	3	-	-	-	-		
	교육	11	-	-	-	-	-	-	-	11	7	-	4	-	-		
기타	8	1	-	-	1	-	-	-	7	4	-	3	-	-			

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4.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4),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43, 246.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1,341건, 2021년 835건, 2022년 830건, 2023년 81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에 있음
- 2023년 기준 전체 차별 진정건수는 817건으로 그중 인용된 사건은 29건, 진정접수 후 각하, 이송, 기각 등의 사유로 미인용된 사건은 784건으로 전체 96.0% 수준임



〈표 11-2-4〉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 연도별, 영역별(계속)

(단위: 건)

구 분	합 계	인 용								미 인 용						조사 중지
		소계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교육·연구·인사	합 계	154	3	-	-	1	1	-	-	1	151	91	-	60	-	-
	전·입학 거부	5	-	-	-	-	-	-	-	-	5	3	-	2	-	-
	시설물 접근·이용	105	1	-	-	1	-	-	-	-	104	70	-	34	-	-
	수업·시험 편의제공	16	1	-	-	-	1	-	-	-	15	6	-	9	-	-
	수업 등교 내 활동배제	1	-	-	-	-	-	-	-	-	1	-	-	1	-	-
	특수학급설치	6	-	-	-	-	-	-	-	-	6	1	-	5	-	-
	괴롭힘	10	1	-	-	-	-	-	-	1	9	5	-	4	-	-
	기타	11	-	-	-	-	-	-	-	-	11	6	-	5	-	-
재 화 · 교 육 의 영역	소계	518	22	-	-	11	-	-	-	11	494	273	-	221	-	2
	재화·용역	147	9	-	-	1	-	-	-	8	138	87	-	51	-	-
	보험·금융	19	-	-	-	-	-	-	-	-	18	13	-	5	-	1
	시설물 접근	167	1	-	-	-	-	-	-	1	166	100	-	66	-	-
	이동교통수단	70	5	-	-	5	-	-	-	-	65	28	-	37	-	-
	정보접근·의사소통	62	2	-	-	2	-	-	-	-	59	12	-	47	-	1
	문화·예술·체육	13	2	-	-	2	-	-	-	-	11	7	-	4	-	-
	기타	40	3	-	-	1	-	-	-	2	37	26	-	11	-	-
안전·법률	소계	61	3	-	2	-	-	-	-	1	58	34	-	24	-	-
	따돌림	5	-	-	-	-	-	-	-	-	5	1	-	4	-	-
	유기·방치	1	-	-	-	-	-	-	-	-	1	1	-	-	-	-
	폭행·학대	5	-	-	-	-	-	-	-	-	5	4	-	1	-	-
	금전착취	2	-	-	-	-	-	-	-	-	2	2	-	-	-	-
	모욕·비하	33	3	-	2	-	-	-	-	1	30	16	-	14	-	-
	기타	15	-	-	-	-	-	-	-	-	15	10	-	5	-	-

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2) 누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합을 의미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4),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43, 246.

- 차별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이 518건으로 가장 많고, 교육 154건, 고용 84건, 괴롭힘 등 61건 순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 진정건수 대비 미인용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고용 96.4%, 교육 98.1%, 재화·용역 95.4%, 괴롭힘 등 95.1% 수준으로 나타남

〈표 11-2-5〉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 - 영역별, 연도별

(단위: 건)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합 계	1,314	96	101	879	42	18	129	49
2023	29	1	3	22	-	-	3	-
2022	58	9	4	43	-	-	2	-
2021	67	10	4	40	1	-	11	1
2020	203	8	14	160	1	1	15	4
2019	82	3	3	58	1	4	8	5
2018	39	7	10	15	1	-	5	1
2017	92	5	11	34	24	-	12	6
2016	51	3	2	39	-	-	6	1
2015	36	7	2	18	-	-	8	1
2014	79	8	10	33	1	8	12	7
2013	108	4	6	78	2	-	9	9
2012	137	2	4	117	3	1	3	7
2011	156	8	1	126	4	-	14	3
2010	85	14	11	44	2	-	12	2
2009	57	5	5	37	1	-	8	1
2008	35	2	11	15	1	4	1	1

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4.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4),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45.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인용 현황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재화·용역이 87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괴롭힘 등이 129건, 교육 101건, 고용 96건, 기타 49건, 사법·행정 42건, 참정권 18건 순으로 나타남



〈표 11-2-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 - 각하·기각 사유별

(단위: 건)

구 분	합 계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법 제32조 제3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소계		제1호	제2호	제3호	
합 계	15,864	9,521	1,382	46	169	111	195	12	130	7,328	118	6	24	6,343	1,008	1,819	3,516	
2023	784	453	67	2	5	6	8	-	3	356	3	-	3	331	64	140	127	
2022	767	419	48	-	6	7	4	-	8	341	1	-	4	348	73	96	179	
2021	764	466	62	1	4	5	12	-	26	345	8	-	3	298	55	111	132	
2020	1,137	762	46	1	14	5	4	1	10	675	5	-	1	375	68	133	174	
2019	817	564	58	10	6	5	15	1	7	458	3	-	1	253	68	94	91	
2018	1,285	780	127	1	13	4	6	-	8	614	5	-	2	505	70	129	306	
2017	994	634	60	1	11	7	13	1	5	529	6	-	1	360	81	113	166	
2016	1,583	1,199	101	12	11	4	16	-	3	1,048	3	-	1	384	67	119	198	
2015	1,043	663	49	1	8	7	14	1	12	561	8	-	2	380	62	139	179	
2014	1,009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449	85	123	241	
2013	1,454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699	62	102	535	
2012	1,369	615	62	3	14	9	16	4	9	494	3	-	1	754	74	115	565	
2011	791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410	59	146	205	
2010	995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332	61	94	177	
2009	654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301	39	107	155	
2008	418	254	58	1	6	11	3	1	8	161	5	-	-	164	20	58	86	

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4.11.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에 한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4), 「2023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44.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결과 중 미인용 현황을 기각·각하 사유별로 살펴보면(누계 기준), 각하는 9,521건으로 사유별로는 제32조 제8호가 7,328건으로 가장 많고, 제1호 1,382건 등의 순임. 기각은 6,343건으로 사유별로는 제39조 제3호가 3,516건으로 가장 많음

(4)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유형 현황

〈표 11-2-7〉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 입원유형별, 연도별, 기관유형별, 권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A+B)	자의입원			비자의적 입원			응급 입원	기타	비자의 입원율 B/(A+B)
		계(A)	자의 입원	동의 입원	계(B)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2019	65,436 (100.0)	43,665 (66.7)	29,792 (45.5)	13,873 (21.2)	20,616 (31.5)	17,298 (26.4)	3,318 (5.1)	107 (0.2)	1,048 (1.6)	32.1
2020	62,702 (100.0)	40,873 (65.2)	27,430 (43.7)	13,443 (21.4)	20,710 (33.0)	16,912 (27.0)	3,798 (6.1)	25 (0.0)	1,094 (1.7)	33.6
2021	59,412 (100.0)	38,115 (64.2)	25,689 (43.2)	12,426 (20.9)	20,299 (34.2)	16,026 (27.0)	4,273 (7.2)	66 (0.1)	932 (1.6)	34.8
2022	56,785 (100.0)	36,171 (63.6)	24,396 (42.9)	11,775 (20.7)	19,693 (34.6)	15,210 (26.8)	4,483 (7.9)	83 (0.1)	838 (1.5)	35.3
2023	56,705 (100.0)	35,359 (62.4)	23,646 (41.7)	11,713 (20.7)	20,312 (35.8)	15,273 (26.9)	5,039 (8.9)	225 (0.4)	809 (1.4)	36.5
종합병원 정신과	3,025 (100.0)	2,193 (72.5)	1,445 (47.8)	748 (24.7)	824 (27.2)	-	-	-	-	27.3
병원정신과	2,589 (100.0)	1,818 (70.2)	1,324 (51.1)	494 (19.1)	761 (29.4)	-	-	-	-	29.5
정신병원	50,036 (100.0)	30,344 (60.6)	20,231 (40.4)	10,113 (20.2)	18,676 (37.3)	-	-	-	-	38.1
한방병원 정신과	226 (100.0)	209 (92.5)	94 (41.6)	115 (50.9)	17 (7.5)	-	-	-	-	7.5
정신과의원	829 (100.0)	795 (95.9)	552 (66.6)	243 (29.3)	34 (4.1)	-	-	-	-	4.1
수도권	17,399 (100.0)	11,763 (67.6)	6,916 (39.7)	4,847 (27.9)	5,582 (32.1)	4,204 (24.2)	1,378 (7.9)	44 (0.3)	10 (0.1)	32.2
전라권	7,749 (100.0)	5,527 (71.3)	3,654 (47.2)	1,873 (24.2)	2,189 (28.2)	1,714 (22.1)	475 (6.1)	26 (0.3)	7 (0.1)	28.4
경상권	23,060 (100.0)	13,048 (56.6)	9,862 (42.8)	3,186 (13.8)	9,876 (42.8)	7,396 (32.1)	2,480 (10.8)	136 (0.6)	-	43.1
강원권	1,487 (100.0)	1,260 (84.7)	939 (63.1)	321 (21.6)	226 (15.2)	143 (9.6)	83 (5.6)	X -	-	15.2
충청권	7,010 (100.0)	3,761 (53.7)	2,275 (32.5)	1,486 (21.2)	2,439 (34.8)	1,816 (25.9)	623 (8.9)	18 (0.3)	792 (11.3)	39.3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개인 식별 문제로 인하여 일부 값은 비공개 처리함

3)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입원유형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응급입원'으로 분류함

4) 비자의 입원율은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자의적비자의적 입원자 중 비자의 입원의 형태로 입원한 대상자의 비율임. 이때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기타(치료감호소, 법원의 명령) 미포함

· 비자의 입원율(%) = (해당시점 비자의적 입원환자수 / 해당시점 자의적·비자의적 입원환자 수)×100.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35.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35.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37.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23.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37.

- 2023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자 수는 56,705명이고, 비자의 입원율은 36.5% 수준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입원자 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고, 비자의 입원율은 2019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임

· 기관유형별로는 '정신병원'의 입원자 수가 50,036명으로 약 88.2%를 차지하고, 비자의 입원율 또한 38.1%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

· 권역별로는 '경상권'의 입원자 수가 23,060명으로 가장 많고, 비자의 입원율 또한 43.1%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은 편임



〈표 11-2-8〉 정신요양시설 입소 현황 - 입소유형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자의적 유형			비자의적 유형
		계(A)	자의입소	동의입소	
2019	9,252 (100.0)	7,744 (83.7)	5,521 (59.7)	2,223 (24.0)	1,508 (16.3)
2020	8,828 (100.0)	7,499 (84.9)	5,307 (60.1)	2,192 (24.8)	1,329 (15.1)
2021	8,537 (100.0)	7,363 (86.2)	5,257 (61.6)	2,106 (24.7)	1,174 (13.8)
2022	8,249 (100.0)	7,179 (87)	5,170 (63)	2,009 (24)	1,070 (13.0)
2023	7,961 (100.0)	7,100 (89.2)	5,142 (64.6)	1,958 (24.6)	861 (10.8)
서울	484 (100.0)	484 (100.0)	423 (87.4)	61 (12.6)	-
부산	384 (100.0)	355 (92.4)	268 (69.8)	87 (22.7)	29 (7.6)
대구	235 (100.0)	195 (83.0)	153 (65.1)	42 (17.9)	40 (17.0)
인천	171 (100.0)	167 (97.7)	121 (70.8)	46 (26.9)	X
광주	514 (100.0)	514 (100.0)	505 (98.2)	9 (1.8)	-
대전	382 (100.0)	362 (94.8)	224 (58.6)	138 (36.1)	20 (5.2)
울산	88 (100.0)	40 (45.5)	27 (30.7)	13 (14.8)	48 (54.5)
세종	134 (100.0)	104 (77.6)	92 (68.7)	12 (9.0)	30 (22.4)
경기	1,181 (100.0)	1,107 (93.7)	860 (72.8)	247 (20.9)	74 (6.3)
강원	-	-	-	-	-
충북	692 (100.0)	663 (95.8)	477 (68.9)	186 (26.9)	29 (4.2)
충남	980 (100.0)	634 (64.7)	349 (35.6)	285 (29.1)	346 (35.3)
전북	621 (100.0)	606 (97.6)	444 (71.5)	162 (26.1)	15 (2.4)
전남	640 (100.0)	574 (89.7)	425 (66.4)	149 (23.3)	66 (10.3)
경북	754 (100.0)	641 (85.0)	403 (53.4)	238 (31.6)	113 (15.0)
경남	532 (100.0)	485 (91.2)	280 (52.6)	205 (38.5)	47 (8.8)
제주	169 (100.0)	169 (100.0)	91 (53.8)	78 (46.2)	-

주: 각 연도 12월 말 기준

- 자료: 1)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 p89.
 2)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0」 p89.
 3)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p89.
 4)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 p76.
 5)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p90.

- 2023년 기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7,961명이고, 자의적 유형 입소는 7,100명(89.2%), 비자의적 유형입소는 861명(10.8%)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입소자 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고, 비자의적 유형입소 또한 감소 추이를 보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입소자 수는 '경기'가 1,181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980명, '경북' 754명, 등의 순임, '울산'과 '충남'은 비자의적 유형의 비율이 각각 54.5%, 35.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3) 학대·폭력 경험

(1) 학대·폭력 경험

〈표 11-3-1〉 정서적 학대 경험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학대·폭력 정도	자주 있음	3.4	2.2	2.9	3.2	2.0	4.3	13.2	9.4	6.3	0.9	2.1	2.3	0.0	12.5	0.5	6.7
	가끔 있음	12.8	7.8	12.8	9.2	11.2	28.1	41.2	34.4	29.3	4.4	6.4	7.7	2.5	28.4	2.4	22.6
	없음	83.8	90.0	84.3	87.6	86.7	67.6	45.7	56.1	64.5	94.7	91.5	90.0	97.5	59.1	97.1	70.7
주 가해자	동거 가족	17.0	15.6	23.3	15.5	17.5	2.1	13.3	7.4	28.2	47.9	13.9	26.6	43.6	1.8	29.2	23.4
	비동거 가족	4.4	3.2	9.2	5.7	5.6	1.7	3.2	3.2	5.7	0.0	0.0	8.4	0.0	2.3	0.0	5.1
	친척	2.2	2.9	1.6	2.6	0.4	2.3	1.7	0.0	3.6	7.5	0.0	16.6	0.0	2.5	17.1	4.2
	이웃, 지인	17.0	18.2	11.1	19.5	24.6	13.9	11.6	6.9	29.0	7.7	18.7	8.5	50.9	20.1	17.6	16.7
	학교·학원 관계자	6.2	3.6	9.2	7.7	2.4	8.5	9.3	20.0	1.4	0.0	0.0	0.0	0.0	0.0	0.0	8.1
	친구	29.9	28.2	15.3	33.4	24.7	35.5	41.5	45.1	15.9	13.5	67.4	10.7	0.0	49.9	30.7	31.3
	종교인	0.1	0.0	0.0	0.0	0.0	0.0	0.0	0.0	1.3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 제공자	0.9	0.0	2.2	0.0	0.6	0.0	1.5	1.6	1.7	3.4	0.0	0.0	0.0	0.0	0.0	0.0
	직장상사 및 동료	7.1	10.4	2.4	4.1	13.0	8.9	5.5	0.0	4.7	3.6	0.0	0.0	0.0	0.0	5.3	0.0
	채팅 상대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모르는 사람	14.8	17.8	25.7	11.4	10.2	21.0	12.4	15.9	8.4	16.4	0.0	29.2	5.5	23.4	0.0	11.2
	기타	0.2	0.0	0.0	0.0	0.9	6.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처 방법	무시하거나 참음	66.2	72.9	67.5	63.0	71.7	65.2	61.3	53.1	56.5	83.4	60.0	60.6	94.5	63.3	64.4	60.5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4.6	10.0	12.9	12.1	9.1	19.5	22.7	16.8	16.1	5.6	21.1	35.8	0.0	17.4	5.3	23.1
	절차를 물라 넘어감	2.8	0.5	1.9	6.2	1.9	1.7	4.2	6.1	4.6	0.0	0.0	0.0	0.0	2.3	0.0	4.1
	자리에서 항의	12.7	15.3	11.1	16.6	13.3	3.9	6.3	15.1	21.7	11.0	18.9	3.6	5.5	17.0	30.2	5.9
	가족, 친구에게 도움 요청	3.0	1.0	5.1	2.2	3.9	3.6	4.7	5.2	1.2	0.0	0.0	0.0	0.0	0.0	0.0	2.2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0.1	0.0	0.8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4.2
	진정, 고발 등의 조치	0.4	0.3	0.8	0.0	0.0	6.1	0.2	2.7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0.2	0.0	0.0	0.0	0.0	0.0	0.6	1.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 '주가해자', '대처 방법'에 대한 문항은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자주있음, 가끔있음)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16, 418, 422.

- 2023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83.8%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2%는 자주 또는 가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친구가 29.9%로 가장 높았으며, 이웃 및 지인과 동거 가족이 1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처 방법은 무시하거나 참음,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 각각 66.2%, 14.6%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자주 있음, 가끔 있음 포함)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54.4%, 자폐성장애인 43.8%, 안면장애인 40.9%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심장장애의 경우 친구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67.4%로 나타났으며, 간장애의 경우 이웃 및 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50.9%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3-2〉 신체적 학대 경험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학대·폭력 정도	자주 있음	0.9	0.3	0.4	0.6	0.3	1.8	5.0	2.6	2.3	0.5	1.4	0.7	0.0	1.3	0.0	18.0
	가끔 있음	4.2	1.7	3.2	2.8	2.2	9.7	22.7	15.6	9.9	0.0	0.6	0.9	0.0	9.3	0.5	10.5
	없음	95.0	98.0	96.4	96.6	97.5	88.4	72.3	81.8	87.8	99.5	98.0	98.4	100.0	89.4	99.5	87.7
주 가해자	동거 가족	15.3	6.9	22.1	15.8	23.5	2.7	12.8	10.1	31.7	62.3	31.7	43.6	-	21.6	100.0	22.3
	비동거 가족	4.3	4.6	3.8	5.5	8.0	4.7	3.3	7.6	3.3	0.0	0.0	0.0	-	0.0	0.0	4.0
	친척	1.5	1.6	0.0	0.0	0.0	0.0	2.3	0.0	2.4	0.0	0.0	0.0	-	0.0	0.0	0.0
	이웃, 지인	9.1	16.5	5.4	10.3	11.9	9.5	5.4	2.1	15.1	0.0	0.0	0.0	-	0.0	0.0	13.8
	학교·학원 관계자	9.0	7.1	16.2	9.1	7.5	7.2	9.5	19.4	1.4	0.0	0.0	0.0	-	0.0	0.0	5.6
	친구	44.5	46.0	32.2	40.7	36.6	47.8	52.6	51.2	19.6	37.7	68.3	0.0	-	78.4	0.0	50.3
	종교인	0.2	0.0	0.0	0.0	0.0	0.0	0.0	0.0	1.7	0.0	0.0	0.0	-	0.0	0.0	0.0
	서비스 제공자	2.6	0.0	3.3	0.0	0.0	17.0	3.9	0.0	4.2	0.0	0.0	0.0	-	0.0	0.0	0.0
	직장상사 및 동료	2.6	4.3	0.0	3.8	2.7	0.0	1.2	0.0	8.6	0.0	0.0	0.0	-	0.0	0.0	3.9
	채팅 상대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모르는 사람	10.7	13.0	17.0	11.5	10.0	11.0	8.8	9.6	12.0	0.0	0.0	56.4	-	0.0	0.0	0.0
	기타	0.2	0.0	0.0	3.3	0.0	0.0	0.0	0.0	0.0	0.0	0.0	0.0	-	0.0	0.0	0.0
대처 방법	무시하거나 참음	45.1	49.4	41.1	48.6	49.5	41.5	42.3	34.7	52.1	76.4	68.3	56.4	-	46.0	0.0	41.8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27.3	16.5	27.8	29.1	32.3	37.6	31.2	26.7	22.2	0.0	31.7	43.6	-	0.0	100.0	37.6
	절차를 물라 넘어감	3.6	5.6	0.0	0.0	1.9	0.0	4.2	0.0	6.6	23.6	0.0	0.0	-	0.0	0.0	0.0
	자리에서 항의	11.9	20.4	10.2	8.9	4.9	0.0	8.9	22.5	15.5	0.0	0.0	0.0	-	54.0	0.0	2.4
	가족, 친구에게 도움 요청	9.0	5.3	11.2	11.3	11.5	3.9	11.2	9.5	1.9	0.0	0.0	0.0	-	0.0	0.0	11.4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1.7	1.5	2.6	2.1	0.0	0.0	2.1	0.0	1.7	0.0	0.0	0.0	-	0.0	0.0	6.8
	진정, 고발 등의 조치	1.4	1.2	7.0	0.0	0.0	17.0	0.0	6.6	0.0	0.0	0.0	0.0	-	0.0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 '주가해자', '대처 방법'에 대한 문항은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자주있음, 가끔있음)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16, 418, 422.

- 2023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는 자주 또는 가끔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친구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거 가족 15.3%, 모르는 사람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처 방법은 무시하거나 참음,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 각각 45.1%, 27.3%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자주 있음, 가끔 있음 포함)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전증장애인 28.5%, 지적장애인 2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3-3〉 경제적 착취 경험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학대·폭력 정도	자주 있음	0.2	0.1	0.2	0.2	0.2	0.0	0.8	0.6	0.5	0.0	0.0	0.0	0.0	0.0	1.4
	가끔 있음	1.5	0.7	1.1	0.7	0.7	2.7	8.8	2.9	3.3	0.2	0.0	0.0	0.0	5.3	4.4
	없음	98.3	99.3	98.7	99.1	99.1	97.3	90.4	96.5	96.2	99.8	100.0	100.0	100.0	94.7	94.2
주 가해자	동거 가족	11.4	3.8	19.0	38.2	22.1	0.0	4.0	0.0	36.1	0.0	-	-	-	23.7	30.2
	비동거 가족	7.6	5.6	3.1	15.3	20.5	0.0	6.9	0.0	7.9	0.0	-	-	-	0.0	0.0
	친척	3.5	0.0	9.3	0.0	9.4	0.0	2.4	0.0	5.3	100.0	-	-	-	0.0	0.0
	이웃, 지인	13.7	32.3	13.0	0.0	19.1	22.7	9.7	0.0	0.7	0.0	-	-	-	0.0	26.0
	학교·학원 관계자	3.4	0.0	0.0	7.6	0.0	0.0	6.1	9.9	0.0	0.0	-	-	-	0.0	0.0
	친구	40.2	38.2	25.2	10.9	28.9	36.1	52.3	72.6	18.5	0.0	-	-	-	25.2	35.5
	종교인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0.0	0.0
	서비스 제공자	1.9	0.0	6.3	0.0	0.0	0.0	3.3	0.0	0.0	0.0	-	-	-	0.0	0.0
	직장상사 및 동료	10.1	15.6	3.1	21.3	0.0	0.0	7.5	4.8	23.3	0.0	-	-	-	51.1	8.3
	채팅 상대자	0.4	0.0	0.0	0.0	0.0	0.0	0.0	12.7	0.0	0.0	-	-	-	0.0	0.0
	모르는 사람	7.7	4.4	20.9	6.6	0.0	41.2	8.0	0.0	8.3	0.0	-	-	-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0.0	0.0
대처 방법	무시하거나 참음	41.0	52.4	29.0	33.5	45.4	41.2	36.5	14.1	58.3	0.0	-	-	-	39.1	62.4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2.7	15.0	11.3	21.5	12.4	0.0	11.4	13.5	12.0	0.0	-	-	-	0.0	32.6
	절차를 몰라 넘어감	17.5	4.4	25.0	27.9	14.1	22.7	21.2	17.5	19.3	0.0	-	-	-	0.0	5.0
	자리에서 항의	8.7	18.2	15.6	10.9	10.4	14.4	1.2	25.1	3.8	100.0	-	-	-	60.9	0.0
	가족, 친구에게 도움 요청	18.5	6.1	15.5	0.0	17.7	21.7	29.0	29.8	6.6	0.0	-	-	-	0.0	0.0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0.0	0.0
	진정, 고발 등의 조치	1.7	3.9	3.7	6.1	0.0	0.0	0.7	0.0	0.0	0.0	-	-	-	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0.0	0.0

주: 1) '주가해자', '대처 방법'에 대한 문항은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자주있음, 가끔있음)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16, 419, 423.

- 2023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착취를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98.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는 자주 또는 가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착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친구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웃 및 지인 13.7%, 동거 가족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처 방법은 무시하거나 참음, 가족, 친구에게 도움 요청이 각각 41.0%, 18.5%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착취를 경험한 경우(자주 있음, 가끔 있음 포함)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9.6%, 뇌전증장애인 5.8%, 안면장애인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자폐성장애의 경우 친구로부터의 경제적 착취 경험이 72.6%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면장애의 경우 직장 상사 및 동료로부터의 경제적 착취 경험이 51.1%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3-4〉 방임 및 유기 경험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학대·폭력 정도	자주 있음	0.2	0.1	0.3	0.2	0.0	0.0	0.7	0.5	1.4	0.0	0.0	0.7	0.0	0.0	0.0	0.0
	가끔 있음	0.8	0.4	0.9	0.3	0.7	1.9	3.3	2.8	2.0	0.0	0.0	0.0	0.0	3.3	0.0	1.0
	없음	99.0	99.6	98.7	99.6	99.3	98.1	96.0	96.7	96.6	100.0	100.0	99.3	100.0	96.7	100.0	99.0
주 가해자	동거 가족	37.9	35.9	13.0	54.2	45.8	21.5	46.1	30.3	34.6	-	-	100.0	-	100.0	-	39.4
	비동거 가족	31.5	25.0	74.1	31.1	41.1	20.0	16.6	0.0	43.3	-	-	0.0	-	0.0	-	0.0
	친척	8.4	32.6	0.0	0.0	9.2	0.0	0.0	0.0	7.7	-	-	0.0	-	0.0	-	0.0
	이웃, 지인	1.1	0.0	0.0	0.0	0.0	0.0	3.6	0.0	0.0	-	-	0.0	-	0.0	-	0.0
	학교·학원 관계자	10.2	0.0	13.0	14.7	0.0	0.0	15.8	57.8	0.0	-	-	0.0	-	0.0	-	60.6
	친구	4.8	0.0	0.0	0.0	4.0	0.0	10.1	12.0	4.0	-	-	0.0	-	0.0	-	0.0
	종교인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0.0	-	0.0	-	0.0
	서비스 제공자	3.7	6.5	0.0	0.0	0.0	0.0	7.8	0.0	0.0	-	-	0.0	-	0.0	-	0.0
	직장상사 및 동료	1.4	0.0	0.0	0.0	0.0	0.0	0.0	0.0	10.4	-	-	0.0	-	0.0	-	0.0
	채팅 상대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0.0	-	0.0	-	0.0
	모르는 사람	1.0	0.0	0.0	0.0	0.0	58.5	0.0	0.0	0.0	-	-	0.0	-	0.0	-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100.0	-	100.0	-	100.0
대처 방법	무시하거나 참음	78.7	85.5	87.0	68.9	91.4	100.0	80.3	42.4	59.0	-	-	100.0	-	100.0	-	100.0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0.8	0.0	0.0	0.0	0.0	0.0	0.0	0.0	5.9	-	-	0.0	-	0.0	-	0.0
	절차를 몰라 넘어감	6.5	0.0	0.0	0.0	4.6	0.0	4.2	42.5	19.3	-	-	0.0	-	0.0	-	0.0
	자리에서 항의	10.0	14.5	13.0	17.7	4.0	0.0	7.7	15.2	8.9	-	-	0.0	-	0.0	-	0.0
	가족, 친구에게 도움 요청	3.9	0.0	0.0	13.4	0.0	0.0	7.8	0.0	6.9	-	-	0.0	-	0.0	-	0.0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0.0	-	0.0	-	0.0
	진정, 고발 등의 조치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0.0	-	0.0	-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0.0	-	0.0	-	0.0

주: 1) '주가해자', '대처 방법'에 대한 문항은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자주있음, 가끔있음)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16, 419, 423.

- 2023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방임 및 유기를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99.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동거 가족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비동거 가족 31.5%, 학교·학원 관계자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처 방법은 무시하거나 참음, 자리에서 항의가 각각 78.7%, 10.0%로 높은 비율을 보임

(2) 가정폭력 관련 시설

〈표 11-3-5〉 가정폭력 관련 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상담소	124	12	11	3	6	4	3	3	20	9	5	7	8	8	9	13	3	-
	(28)	(1)	(5)	(2)	(2)	(1)	(1)	(1)	(4)	(3)	(1)	(2)	(1)	(1)	(2)	-	(1)	-
계	65	12	3	3	1	4	1	1	10	5	3	4	4	4	1	6	2	-
보호 시설	일반시설	42	8	2	2	1	2	1	10	4	1	1	2	2	1	3	-	-
	가족보호시설	23	4	1	1	-	2	-	-	1	2	3	2	2	-	3	2	-

주: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2) ()는 통합상담소 개소 수, 통합상담소는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개소 수에 포함

3) 장애인 상담소 4개소: 일반 1개소(광주), 통합 3개소(부산, 대구, 제주)

자료: 여성가족부. (2024). 「2023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p1, 8.

-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는 124개소이며, 그 중 장애인 상담소는 4개소로 일반상담소에 비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임
- 전국의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65개소로 그 중 장애인보호시설은 2(서울, 광주)개소에 불과함



4) 성폭력

(1) 장애인 성폭력

〈표 11-4-1〉 성적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경험 여부																
자주있음	0.1	0.0	0.0	0.1	0.1	0.0	0.5	0.5	0.0	0.0	0.0	0.0	0.0	0.0	0.0	0.0
가끔있음	0.7	0.2	0.3	0.6	0.1	1.4	5.4	2.0	1.6	0.0	0.0	0.0	0.0	1.3	0.0	1.6
없음	99.2	99.8	99.7	99.3	99.8	98.6	94.0	97.5	98.4	100.0	100.0	100.0	100.0	98.7	100.0	98.4
주 가해자																
동거 가족	5.1	0.0	0.0	0.0	35.0	0.0	5.5	0.0	7.7	-	-	-	-	0.0	-	0.0
비동거 가족	1.8	0.0	0.0	0.0	0.0	0.0	0.0	30.2	5.0	-	-	-	-	0.0	-	0.0
친척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	0.0	-	0.0
이웃, 지인	28.4	79.1	12.5	32.5	11.3	30.8	20.5	6.5	34.3	-	-	-	-	0.0	-	100.0
학교·학원 관계자	3.2	0.0	0.0	0.0	0.0	0.0	2.6	37.6	0.0	-	-	-	-	0.0	-	0.0
친구	20.9	0.0	50.9	0.0	15.9	13.7	29.7	6.5	6.1	-	-	-	-	0.0	-	0.0
종교인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	0.0	-	0.0
서비스 제공자	3.2	0.0	0.0	0.0	0.0	0.0	5.5	0.0	0.0	-	-	-	-	0.0	-	0.0
직장 상사 및 동료	10.9	19.1	0.0	18.7	37.8	0.0	10.1	0.0	0.0	-	-	-	-	0.0	-	0.0
채팅 상대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	0.0	-	0.0
모르는 사람	24.5	1.9	36.6	48.8	0.0	55.5	22.5	19.2	46.9	-	-	-	-	100.0	-	0.0
기타	2.1	0.0	0.0	0.0	0.0	0.0	3.6	0.0	0.0	-	-	-	-	0.0	-	0.0
대처 방법																
무시하거나 참음	37.1	51.3	0.0	64.6	37.8	29.0	34.8	56.0	14.8	-	-	-	-	100.0	-	0.0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5.1	6.5	12.5	18.7	15.9	26.5	17.1	19.1	5.0	-	-	-	-	0.0	-	22.1
질책을 물라 넘어감	5.0	23.5	0.0	0.0	0.0	0.0	3.5	6.5	0.0	-	-	-	-	0.0	-	0.0
자리에서 항의	7.2	18.6	0.0	0.0	0.0	30.8	4.9	18.3	7.2	-	-	-	-	0.0	-	77.9
가족, 친구에게 도움 요청	13.1	0.0	0.0	16.7	11.3	13.7	16.5	0.0	18.7	-	-	-	-	0.0	-	0.0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13.9	0.0	0.0	0.0	35.0	0.0	15.3	0.0	45.8	-	-	-	-	0.0	-	0.0
진정·고발 등의 조치	8.7	0.0	87.5	0.0	0.0	0.0	7.8	0.0	8.5	-	-	-	-	0.0	-	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	-	0.0	-	0.0

주: 1) '주가해자', '대처방법'에 대한 문항은 성적 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자주 있음, 가끔 있음)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417, 420, 424.

- 2023년 성적 학대 경험 여부는 없음이 99.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0.8%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 가해자는 이웃, 지인이 28.4%로 가장 많으며, 모르는 사람 24.5%, 친구 20.9% 등의 순임. 대처방법으로는 무시하거나 참음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5.1%,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적 학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각각 5.9%, 2.5%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성적 학대의 주 가해자를 살펴보면, 뇌전증장애의 경우 이웃, 지인이 100.0%, 안면장애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100.0%로 나타남

〈표 11-4-2〉 성적 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현황)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경험 여부	자주있음	0.1	0.0	0.1	0.0	0.2	0.1	0.0	0.0
	가끔있음	0.7	0.2	1.4	1.5	3.3	0.8	0.1	0.1
	없음	99.2	99.7	98.5	98.5	96.5	99.1	99.9	99.9
주 가 해 자	동거 가족	5.1	0.0	6.4	0.0	0.0	14.3	0.0	5.7
	비동거 가족	1.8	0.0	2.2	13.0	1.2	1.1	0.0	2.0
	친척	-	-	-	-	-	-	-	-
	이웃, 지인	28.4	13.1	32.3	41.7	17.4	28.1	85.0	24.6
	학교·학원 관계자	3.2	8.2	1.9	0.0	6.4	0.0	0.0	3.6
	친구	20.9	62.0	10.1	45.3	28.6	10.9	0.0	23.3
	종교인	-	-	-	-	-	-	-	-
	서비스 제공자	3.2	0.0	4.0	0.0	2.9	4.9	0.0	3.6
	직장 상사 및 동료	11.0	0.0	13.8	0.0	11.8	14.2	0.0	10.6
	채팅 상대자	-	-	-	-	-	-	-	-
	모르는 사람	24.5	16.7	26.5	0.0	27.5	26.6	15.0	24.3
	기타	2.1	0.0	2.7	0.0	4.2	0.0	0.0	2.4
대처 방법	무시하거나 참음	37.1	62.2	30.5	91.3	24.1	38.4	70.0	36.8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5.1	0.0	19.0	0.0	15.2	21.0	0.0	14.2
	절차를 몰라 넘어감	5.0	4.4	5.1	5.0	2.9	9.0	0.0	3.6
	자리에서 항의	7.2	8.2	7.0	0.0	4.2	7.2	30.0	7.1
	가족, 친구에게 도움 요청	13.1	4.3	15.4	3.7	14.6	15.8	0.0	14.6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13.9	11.3	14.5	0.0	21.7	8.4	0.0	15.6
	진정·고발 등의 조치	8.7	9.7	8.4	0.0	17.3	0.0	0.0	8.0
	기타	-	-	-	-	-	-	-	-

주: 1) '주가해자', '대처방법'에 대한 문항은 성적 학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자주 있음, 가끔 있음)로 한정하여 질문함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703, 706, 709.

- 성별로 성적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1.5%로 남성 0.2%에 비해 성적 학대 피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주 가해자는 남성의 경우 친구가 62.0%, 모르는 사람이 16.7%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이웃, 지인 32.3%, 모르는 사람 26.5%로 나타남
 - 대처방법은 남성의 경우 무시하거나 참음이 62.2%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무시하거나 참음 30.5%,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19.0%로 나타남
- 연령별로 성적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18~44세 이하의 피해경험 비율이 3.5%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주 가해자는 18~44세 이하는 친구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45~64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이웃, 지인이 각각 28.1%, 8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무시하거나 참음이 대처방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성적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심한장애의 피해경험 비율이 2.0%로 심하지 않은 장애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성폭력 상담소

〈표 11-4-3〉 성폭력 상담소 수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	171	21	6	4	4	12	5	4	2	35	8	8	16	8	9	11	15	3
	(25)	(4)	(1)	(1)	(2)	(1)	(2)	(1)	-	(3)	-	(1)	(2)	(2)	(1)	(2)	(1)	(1)
2019	168	20	7	4	4	8	5	4	2	34	9	9	16	7	9	11	15	4
	(25)	(4)	(1)	(1)	(2)	(1)	(2)	(1)	-	(3)	-	(1)	(2)	(2)	(1)	(2)	(1)	(1)
2020	167	22	7	4	5	7	4	4	2	31	10	8	17	7	9	11	15	4
	(27)	(4)	(1)	(1)	(2)	(1)	(2)	(1)	-	(3)	(2)	(1)	(2)	(2)	(1)	(2)	(1)	(1)
2022	166	20	6	4	5	7	5	4	2	31	9	8	19	7	9	11	15	4
	(27)	(4)	(1)	(1)	(2)	(1)	(2)	(1)	-	(4)	(1)	(1)	(2)	(2)	(1)	(2)	(1)	(1)
2023	165	19	6	4	5	7	5	4	2	31	9	8	20	7	9	10	15	4
	(28)	(4)	(1)	(1)	(2)	(1)	(2)	(1)	-	(5)	(1)	(1)	(2)	(2)	(1)	(2)	(1)	(1)
2024	173	18	7	4	7	7	5	5	2	32	8	8	24	7	9	11	15	4
	(28)	(4)	(1)	(1)	(2)	(1)	(2)	(1)	-	(5)	(1)	(1)	(2)	(2)	(1)	(2)	(1)	(1)
2025	173	18	6	4	7	7	6	2	2	35	10	8	21	6	9	11	17	4
	(27)	(4)	(1)	(1)	(2)	(1)	(2)	(1)	-	(4)	(1)	(1)	(2)	(2)	(1)	(2)	(1)	(1)

주: 1) ()는 장애인 상담소 수임

2) 각 년도별로 기준은 2018년 4월, 2019년 4월, 2020년 12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6월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성폭력 피해 상담소 현황" (2025.5.22. 검색)

- 전국 성폭력 상담소의 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173개소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그 수가 유지됨
- 장애인 상담소는 2018년 25개소에서 2024년 28개소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다시 27개소로 감소하였음
 - 2025년 각 시도별로 성폭력 상담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총 173개 상담소 중 경기도가 35개소로 가장 많으며, 충남 21개소, 서울 18개소 등의 순임
 - 한편, 장애인 상담소는 전국에 총 27개소가 있으며,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1~4개소가 있음

(3) 장애인 성폭력 상담

〈표 11-4-4〉 장애인 성폭력 상담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11	17,455	12,457	4,998	1,140	288	22	58	844	340	-	2,306
	100.0	71.4	28.6	22.8	5.8	0.4	1.2	16.9	6.8	-	46.1
2012	24,671	17,928	6,743	1,355	336	95	43	1,018	760	243	2,891
	100.0	72.7	27.3	5.5	1.4	0.4	0.2	4.1	3.1	1.0	11.7
2013	26,065	19,705	6,360	1,242	172	43	71	1,350	762	10	2,711
	100.0	75.6	24.4	4.8	0.7	0.2	0.3	5.2	2.9	0.0	10.4
2014	29,135	23,127	6,008	1,020	144	91	124	1,771	721	12	2,125
	100.0	79.4	20.6	3.5	0.5	0.3	0.4	6.1	2.5	0.1	6.9
2015	30,196	23,562	6,634	1,048	103	120	66	2,136	1,239	24	1,898
	100.0	78.0	22.0	3.5	0.3	0.4	0.2	7.1	4.1	0.1	6.3
2016	28,203	20,886	7,317	1,090	113	86	234	2,241	496	7	3,050
	100.0	74.1	25.9	14.9	1.5	1.2	3.2	30.6	6.8	0.1	41.7
2017	34,418	24,606	9,812	1,774	195	25	77	2,793	651	95	4,202
	100.0	71.5	28.5	5.2	0.6	0.1	0.2	8.1	1.9	0.3	12.2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가족 문제	성상담	학교폭력
2018	44,030	32,938	11,092	1,822	347	71	1,044	3,344	52
	100.0	74.8	25.2	4.1	0.8	0.2	2.4	7.6	0.1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데이트 폭력	스토킹
2019	48,683	39,286	9,397	3,423	172	69	64	2,017	584	5	53	5
	100.0	80.7	19.3	7.1	0.4	0.1	0.1	4.2	1.2	0.0	0.1	0.0

구분	전체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족 문제	성상담	학교폭력	기타
2020	46,785	35,379	11,406	3,678	149	131	2	974	1,906	62	4,504
	100.0	75.6	24.4	7.9	0.3	0.3	0.0	2.1	4.1	0.1	9.6
2021	52,543	39,012	13,531	5,331	417	80	97	1,117	2,222	103	4,164
	100.0	74.2	25.8	10.2	0.8	0.2	0.2	2.1	4.2	0.2	7.9
2022	53,208	38,424	14,784	4,875	499	193	28	1,299	2,697	164	5,029
	100.0	72.2	27.8	9.2	0.9	0.4	0.1	2.4	5.1	0.3	9.5
2023	60,702	42,561	18,141	6,620	358	242	199	1,560	2,737	167	6,258
	100.0	70.1	29.9	10.9	0.6	0.4	0.3	2.6	4.5	0.3	10.3

주: 1)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상담 중 가족문제는 부부갈등, 이혼 등 가족 간 발생한 문제를 의미함
 2) 2020년, 2021년 기준, 기타상담 중 기타에는 중독 등이 포함됨
 자료: 1) 2011~2017년: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4.
 2) 2018년: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2.
 3)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2.
 4) 2020~2023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2.

- 2023년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42,561건으로 2022년 38,424건에 비해 증가함
- 2023년 장애인 전체 상담 중 성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70.1%로 2022년 72.2%보다 감소함
- 기타 상담에서는 가정폭력이 10.9%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가 10.3%, 성상담 4.5% 등의 순임



(4) 장애인 성폭력 피해

〈표 11-4-5〉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 연도별, 피해자 장애유형별, 피해유형별

(단위: 명,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피해자 장애 유형	계	2,832 (100.0)	2,960 (100.0)	2,093 (100.0)	2,098 (100.0)	2,123 (100.0)
	지체	118 (4.2)	90 (3.0)	86 (4.1)	78 (3.7)	72 (3.4)
	뇌병변	64 (2.3)	109 (3.7)	55 (2.6)	54 (2.6)	57 (2.7)
	시각	28 (1.0)	50 (1.7)	36 (1.7)	33 (1.6)	59 (2.8)
	청각, 언어	53 (1.8)	67 (2.3)	71 (3.4)	64 (3.1)	56 (2.6)
	정신 지체 (발달)	2,217 (78.3)	2,195 (74.2)	1,534 (73.3)	1,633 (77.8)	1,603 (75.5)
	정신 장애	252 (8.9)	340 (11.5)	169 (8.1)	129 (6.1)	186 (8.8)
	기타장애	24 (0.8)	29 (1.0)	80 (3.8)	36 (1.7)	22 (1.0)
	중복장애	76 (2.7)	80 (2.7)	62 (3.0)	71 (3.4)	68 (3.2)
	계	39,316 (100.0)	22,085 (100.0)	39,012 (100.0)	38,424 (100.0)	42,561 (100.0)
	강간 및 유사강간	23,375 (59.4)	22,085 (62.4)	22,964 (58.9)	22,531 (58.6)	22,945 (53.9)
	강제추행	11,293 (28.7)	9,550 (27.0)	10,666 (27.3)	10,748 (28.0)	16,595 (31.9)
피해 유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420 (1.1)	704 (2.0)	1,074 (2.8)	1,066 (2.8)	1,507 (3.5)
	통신매체 이용음란	1,793 (4.6)	1,772 (5.0)	2,923 (7.5)	1,843 (4.8)	2,169 (5.1)
	성희롱	400 (1.0)	443 (1.3)	699 (1.8)	776 (2.0)	918 (2.2)
	기타	2,035 (5.2)	825 (2.3)	686 (1.8)	1,460 (3.8)	1,427 (3.4)

주: 장애유형 중 기타장애에는 내부 장기 장애 등이 포함됨

자료: 1)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3.

2) 2020~2023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3.

- 2023년 기준 성폭력 피해 장애인 수는 2,123명으로 2022년 2,098명 보다 소폭 증가함
 -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가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23년 기준 장애인 성폭력 피해건수는 42,561건으로 2022년 38,424건 보다 4,137건 증가함
 - 피해유형으로 '강간 및 유사강간'이 53.9%로 가장 높고, '강제추행' 31.9% 순으로 나타남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표 11-4-6〉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 - 지역별, 시설유형별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5	2	3	1	2	3	2	1	-	4	1	3	1	2	2	2	3	3
일반	17	2	1	1	1	1	-	1	-	3	1	1	-	2	1	-	-	2
장애인	8	-	1	-	-	1	1	-	-	-	-	1	1	-	1	-	1	1
특별지원 (친족피해 청소년)	4	-	-	-	-	-	1	-	-	1	-	-	-	-	-	1	1	-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3	-	-	-	1	-	-	-	-	-	-	-	-	-	-	1	1	-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3	-	1	-	-	1	-	-	-	-	-	1	-	-	-	-	-	-

주: 1) 2025년 5월 기준

2) 35개소 모두 국비 지원 시설임

3) 「성폭력방지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는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이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5개소 중 장애인 보호시설은 8개소이며,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지역에만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 9개 지역에는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부산, 광주, 충북 3곳에 설치되어 있음



〈표 11-4-7〉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연도 중 입소인원	연도 중 퇴소인원	연말 현원
2009	전체	312	299	142
	장애인	90	69	66
2010	전체	282	230	187
	장애인	90	62	88
2011	전체	226	226	181
	장애인	64	64	87
2012	전체	236	209	184
	장애인	78	78	105
2013	전체	238	230	218
	장애인	103	79	83
2014	전체	258	222	285
	장애인	113	92	167
2015	전체	277	262	286
	장애인	110	107	165
2016	전체	201	193	295
	장애인	84	70	180
2017	전체	201	203	285
	장애인	91	97	173
2018	전체	180	181	284
	장애인	79	92	164
2019	전체	190	185	287
	장애인	94	90	168
2020	전체	159	153	295
	장애인	62	68	166
2021	전체	147	184	256
	장애인	61	83	145
2022	전체	118	136	237
	장애인	48	55	138
2023	전체	150	143	243
	장애인	73	57	153

자료: 1) 2009~2017년: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0.

2) 2018년: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6.

3)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4.

4) 2020~2023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퇴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장애인의 연도 중 입소인원은 73명으로 전체인원의 48.7%를 차지함
 - 장애인의 연도 중 퇴소인원은 57명으로 전체인원 143명의 39.9% 수준임
 - 보호시설에 남아있는 인원은 전체 243명이며 그 중 장애인은 153명(63.0%)으로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4-8〉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계	5세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4	전체	285 (100.0)	2 (0.7)	19 (6.7)	141 (49.5)	59 (20.7)	63 (22.1)	1 (0.4)
	장애인	167 (100.0)	-	4 (2.4)	66 (39.5)	42 (25.1)	54 (32.3)	1 (0.6)
2015	전체	286 (100.0)	4 (1.4)	20 (7.0)	132 (46.2)	77 (26.9)	53 (18.5)	-
	장애인	165 (100.0)	-	4 (2.4)	62 (37.6)	54 (32.7)	45 (27.3)	-
2016	전체	295 (100.0)	1 (0.3)	13 (4.4)	117 (39.7)	95 (32.2)	68 (23.1)	1 (0.3)
	장애인	180 (100.0)	-	2 (1.1)	54 (30.0)	69 (38.3)	55 (30.6)	-
2017	전체	285 (100.0)	1 (0.4)	15 (5.3)	123 (43.2)	77 (27.0)	69 (24.2)	-
	장애인	173 (100.0)	-	3 (1.7)	54 (31.2)	60 (34.7)	56 (32.4)	-
2018	전체	284 (100.0)	2 (0.7)	14 (4.9)	123 (43.3)	71 (25.0)	73 (25.7)	1 (0.4)
	장애인	164 (100.0)	-	4 (2.4)	48 (29.3)	51 (31.1)	60 (36.6)	1 (0.6)
2019	전체	287 (100.0)	1 (0.3)	15 (5.2)	125 (43.6)	71 (24.8)	74 (25.8)	1 (0.3)
	장애인	168 (100.0)	-	6 (3.6)	47 (28.0)	52 (31.0)	60 (35.6)	3 (1.8)
2020	전체	295 (100.0)	1 (0.3)	16 (5.4)	114 (38.6)	88 (29.8)	66 (22.4)	10 (3.4)
	장애인	166 (100.0)	-	4 (2.4)	46 (27.7)	48 (28.9)	59 (35.5)	9 (5.4)
2021	전체	256 (100.0)	-	14 (5.5)	99 (38.7)	73 (28.5)	70 (27.3)	-
	장애인	145 (100.0)	-	5 (3.4)	39 (26.9)	41 (28.3)	60 (41.4)	-
2022	전체	237 (100.0)	-	11 (4.6)	86 (36.3)	66 (27.9)	73 (30.8)	1 (0.4)
	장애인	138 (100.0)	-	4 (2.9)	31 (22.5)	38 (27.5)	65 (47.1)	-
2023	전체	243 (100.0)	-	14 (5.8)	72 (29.6)	70 (28.8)	82 (33.7)	5 (2.1)
	장애인	153 (100.0)	-	4 (2.6)	36 (23.5)	41 (26.8)	67 (43.8)	5 (3.3)

주: 2023년 12월 말 기준 현원 기준

자료: 1) 2014-2017년: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1.
2) 2018년: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7.
3)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4.
4) 2020-2023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 2023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입소자와 장애인 모두 25-64세 이하의 비율이 각각 33.7%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1-4-9〉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 - 연도별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1개월 이하	2~6개월 이하	7개월~ 1년 이하	1년~2년 이하	2년~3년 이하	3년 초과
2014년	전체	222 (100.0)	62 (28.0)	77 (34.7)	31 (14.0)	31 (14.0)	10 (4.5)	11 (5.0)
	장애인	92 (100.0)	14 (15.2)	38 (41.3)	16 (17.4)	14 (15.2)	6 (6.5)	4 (4.3)
2015년	전체	262 (100.0)	70 (26.7)	95 (36.3)	33 (12.6)	33 (12.6)	11 (4.2)	20 (7.6)
	장애인	107 (100.0)	21 (19.6)	33 (30.8)	15 (14.0)	17 (15.9)	8 (7.5)	13 (12.1)
2016년	전체	193 (100.0)	43 (22.3)	48 (24.9)	33 (17.1)	37 (19.2)	14 (7.3)	18 (9.3)
	장애인	70 (100.0)	9 (12.9)	21 (30.0)	13 (18.6)	13 (18.6)	7 (10.0)	7 (10.0)
2017년	전체	203 (100.0)	43 (21.2)	54 (26.6)	36 (17.7)	26 (12.8)	23 (11.3)	21 (10.3)
	장애인	97 (100.0)	15 (15.5)	23 (23.7)	15 (14.4)	15 (15.5)	18 (18.6)	12 (12.4)
2018년	전체	181 (100.0)	28 (15.5)	51 (28.2)	30 (16.6)	26 (14.4)	14 (7.7)	32 (17.7)
	장애인	92 (100.0)	11 (12.0)	26 (28.3)	14 (15.2)	9 (9.8)	9 (9.8)	23 (25.0)
2019년	전체	185 (100.0)	25 (13.5)	64 (34.6)	18 (9.7)	27 (14.6)	17 (9.2)	34 (18.4)
	장애인	90 (100.0)	8 (8.9)	30 (33.3)	5 (5.6)	11 (12.2)	10 (11.1)	26 (28.9)
2020	전체	153 (100.0)	23 (15.0)	38 (24.8)	32 (20.9)	21 (13.7)	18 (11.8)	21 (13.7)
	장애인	68 (100.0)	11 (16.2)	18 (26.5)	10 (14.7)	9 (13.2)	8 (11.8)	12 (17.6)
2021	전체	184 (100.0)	27 (14.7)	41 (22.3)	27 (14.7)	29 (15.8)	20 (10.9)	40 (21.6)
	장애인	83 (100.0)	10 (12.1)	9 (10.8)	14 (16.9)	8 (9.6)	15 (18.1)	27 (32.5)
2022	전체	136 (100.0)	28 (20.6)	30 (22.1)	17 (12.5)	21 (15.4)	15 (11)	25 (18.4)
	장애인	55 (100.0)	11 (20)	8 (14.5)	7 (12.7)	7 (12.7)	5 (9.1)	17 (30.9)
2023	전체	143 (100.0)	26 (18.2)	42 (29.4)	16 (11.2)	18 (12.5)	14 (9.8)	27 (18.9)
	장애인	57 (100.0)	7 (12.3)	13 (22.8)	6 (10.5)	8 (14.0)	4 (7.0)	19 (33.4)

주: 연도중 퇴소인원 대상 보호기간

- 자료: 1) 2014~2017년: 여성가족부(2018).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3.
 2) 2018년: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8.
 3) 2019년: 여성가족부(2020). 「2019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p5.
 4) 2020~2023년: 여성가족부(각 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5.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전체입소자 중 2~6개월 이하의 비율이 29.4%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의 경우 3년 초과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체입소자에 비하여 장애인의 보호기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음

5) 학대피해 현황

〈표 11-5-1〉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

구분	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연도별	2018	3,658	100.0	1,835	50.2	1,823	49.8
	2019	4,376	100.0	1,923	43.9	2,453	56.1
	2020	4,208	100.0	2,069	49.2	2,139	50.8
	2021	4,957	100.0	2,461	49.6	2,496	50.4
	2022	4,958	100.0	2,641	53.3	2,317	46.7
	2023	5,497	100.0	2,969	54.0	2,528	46.0
지역별	서울	892	100.0	195	21.9	697	78.1
	부산	382	100.0	196	51.3	186	48.7
	대구	275	100.0	124	45.1	151	54.9
	인천	222	100.0	105	47.3	117	52.7
	광주	146	100.0	85	58.2	61	41.8
	대전	223	100.0	126	56.5	97	43.5
	울산	176	100.0	124	70.5	52	29.5
	세종	118	100.0	74	62.7	44	37.3
	경기	1,253	100.0	768	61.3	485	38.7
	강원	207	100.0	109	52.7	98	47.3
	충북	343	100.0	217	63.3	126	36.7
	충남	237	100.0	157	66.2	80	33.8
	전북	201	100.0	103	51.2	98	48.8
	전남	210	100.0	156	74.3	54	25.7
	경북	159	100.0	135	84.9	24	15.1
	경남	300	100.0	209	69.7	91	30.3
제주	153	100.0	86	56.2	67	43.8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학대의심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말함

3) 일반사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를 말함

-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58.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62.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62.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62, 64.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62.
 6)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54.

- 2023년 기준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이고, 그 중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2,969건(54.0%), 일반사례는 2,528건(46.0%)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고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23년 5,497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신고건수는 539건,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328건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신고건수는 경기도가 1,25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892건, 부산 382건, 충북 343건 등의 순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경기도가 768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 217건, 경남 209건 등의 순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업무와 예방업무를 수행



〈표 11-5-2〉 장애인학대의심 사례판정 결과 - 사례별,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

구분	계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인 사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연도별	2018	1,835	100.0	889	48.4	796	43.4	150	8.2	-	-
	2019	1,923	100.0	945	49.1	783	40.7	195	10.1	-	-
	2020	2,069	100.0	1,008	48.7	683	33.0	218	10.5	160	7.7
	2021	2,461	100.0	1,124	45.7	933	37.9	307	12.5	97	3.9
	2022	2,641	100.0	1,186	44.9	1,070	40.5	230	8.7	155	5.9
	2023	2,969	100.0	1,418	47.8	1,054	35.5	282	9.5	215	7.2
지역별	서울	195	100.0	88	45.1	79	40.5	28	14.4	-	-
	부산	196	100.0	104	53.1	54	27.6	27	13.8	11	5.6
	대구	124	100.0	54	43.5	44	35.5	25	20.2	1	0.8
	인천	105	100.0	59	56.2	32	30.5	10	9.5	4	3.8
	광주	85	100.0	51	60.0	26	30.6	8	9.4	-	-
	대전	126	100.0	45	35.7	50	39.7	10	7.9	21	16.7
	울산	124	100.0	58	46.8	59	47.6	7	5.6	-	-
	세종	74	100.0	33	44.6	31	41.9	8	10.8	2	2.7
	경기	768	100.0	361	47.0	348	45.3	33	4.3	26	3.4
	강원	109	100.0	52	47.7	48	44.0	8	7.3	1	0.9
	충북	217	100.0	142	65.4	56	25.8	14	6.5	5	2.3
	충남	157	100.0	71	45.2	52	33.1	33	21.0	1	0.6
	전북	103	100.0	26	25.2	40	38.8	25	24.3	12	11.7
	전남	156	100.0	37	23.7	18	11.5	14	9.0	87	55.8
	경북	135	100.0	34	25.2	61	45.2	1	0.7	39	28.9
	경남	209	100.0	145	69.4	37	17.7	23	11.0	4	1.9
	제주	86	100.0	58	67.4	19	22.1	8	9.3	1	1.2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에 대해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로 분류함

· 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함

· 비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함

· 잠재위험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함

· 조사 중인 사례는 학대조사가 끝나지 않아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함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75.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79.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6.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6, 97.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87.

6)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72.

- 2023년 기준 학대의심사례 2,969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47.8%), 비학대사례 1,054건(35.5%), 잠재위험사례 282건(9.5%), 조사 중인 사례 215건(7.2%)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학대사례 건수는 2018년 889건에서 2023년 1,4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례 중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23년 47.8%로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학대사례 건수는 경기도가 361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5건, 충북 142건 등의 순임. 장애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비율은 경남이 69.4%로 가장 높고, 제주 67.4%, 충북 6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1-5-3〉 장애인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구분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횟수	사례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
연도	2018	1,835	15,885
	2019	2,310	24,785
	2020	2,438	20,215
	2021	3,082	22,874
	2022	3,363	22,726
	2023	3,688	30,340
지역	서울	242	2,347
	부산	247	1,230
	대구	155	1,324
	인천	131	1,086
	광주	104	1,385
	대전	148	1,002
	울산	146	1,506
	세종	95	878
	경기	875	7,961
	강원	163	1,814
	충북	229	1,965
	충남	203	963
	전북	126	1,240
	전남	226	1,504
	경북	161	525
	경남	330	1,977
	제주	107	1,633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당해년도에 접수된 사례와 전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의 상담 및 지원을 당해년도에 함께 실시함

3) 2019년에는 접수된 년도의 구분 없이 당해년도에 지원한 상담 및 지원의 총 횟수를 합하여 통계를 제공하였으나 2020년부터 당해년도와 이전년도에 접수 된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횟수를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77.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81.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9.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9, 100.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0.

6)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75.

- 2023년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와 전년도에 종결되지 않은 학대의심사례는 총 3,688건이며, 학대의심사례 1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 횟수는 8.2회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학대의심사례는 2022년 3,363건에서 2023년 3,68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담 및 지원횟수 또한 22,726건에서 30,340건으로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지원 횟수는 경기도가 7,96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2,347건, 경남 1,977건 등의 순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제주가 15.3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13.3건, 강원 11.1건, 울산 10.3건 등의 순임



〈표 11-5-4〉 장애인학대 피해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단위: 명, %)

구분		수	비율
연도	2018년	889	100.0
	2019년	945	100.0
	2020년	1,008	100.0
	2021년	1,124	100.0
	2022년	1,186	100
	2023년	1,418	100
성별	남성	648	45.7
	여성	770	54.3
연령	17세 이하	263	18.5
	18~19세	51	3.6
	20대(20~29세)	343	24.2
	30대(30~39세)	228	16.1
	40대(40~49세)	201	14.2
	50대(50~59세)	193	13.6
	60~64세	81	5.7
	65세 이상	58	4.1
장애유형	지체장애	84	5.9
	뇌병변장애	66	4.7
	시각장애	33	2.3
	청각장애	35	2.5
	언어장애	11	0.8
	지적장애	955	67.3
	자폐성장애	93	6.6
	정신장애	63	4.4
	신장장애	2	0.1
	안면장애	1	0.1
	뇌전증장애	3	0.2
장애정도	미등록	72	5.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1,286	9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60	4.5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한 피해자 현황임

3) 2023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1,418건의 사례 중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1,346건(94.9%),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72건(5.1%)임. 이에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현황의 합은 1,346건임

4)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기준 1~3등급의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기준 4~6등급의 장애인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85.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89.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7.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7~111.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9~103.

6)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83~87.

- 2023년 기준 학대피해장애인은 1,418명으로, 2022년 1,186건 대비 232건 증가함

• 성별로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중 남성은 648명(45.7%), 여성은 770명(54.3%)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343명(24.2%)으로 가장 많고 17세 이하 263명(18.5%), 30대 228명(16.1%), 40대 201명(14.2%) 등의 순임

•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가 955건(67.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장애정도별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1,286건(95.5%)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11-5-5〉 장애인학대 유형 - 학대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

(단위: 건,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연도별	2018년	1,234 (100.0)	339 (27.5)	221 (17.9)	111 (9.0)	302 (24.5)	32 (2.6)	229 (18.6)		
	2019년	1,258 (100.0)	415 (33.0)	253 (20.1)	119 (9.5)	328 (26.1)	15 (1.2)	128 (10.2)		
	2020년	1,264 (100.0)	378 (29.9)	311 (24.6)	134 (10.6)	321 (25.4)	-	120 (9.5)		
	2021년	1,400 (100.0)	482 (34.4)	289 (20.6)	149 (10.6)	366 (26.1)	-	114 (8.1)		
	2022년	1,567 (100.0)	538 (34.3)	401 (25.6)	219 (14.0)	273 (17.4)	3 (0.2)	133 (8.5)		
	2023년	1,855 (100.0)	572 (30.8)	460 (24.8)	261 (14.1)	443 (23.9)	-	119 (6.4)		
	피해자 성별	남성	844 (100.0)	283 (33.5)	199 (23.6)	38 (4.5)	252 (29.9)	-	72 (8.5)	
		여성	1,011 (100.0)	289 (28.6)	261 (25.8)	223 (22.1)	191 (18.9)	-	47 (4.6)	
		피해자 연령	17세 이하	337 (100.0)	130 (38.6)	118 (35.0)	54 (16.0)	13 (3.9)	-	22 (6.5)
			18~19세	71 (100.0)	17 (23.9)	16 (22.5)	20 (28.2)	14 (19.7)	-	4 (5.6)
20대(20~29세)	451 (100.0)		122 (27.1)	96 (21.3)	75 (16.6)	136 (30.2)	-	22 (4.9)		
30대(30~39세)	288 (100.0)		84 (29.2)	62 (21.5)	42 (14.6)	78 (27.1)	-	22 (7.6)		
40대(40~49세)	272 (100.0)		85 (31.3)	67 (24.6)	30 (11.0)	76 (27.9)	-	14 (5.1)		
50대(50~59세)	260 (100.0)		81 (31.2)	61 (23.5)	25 (9.6)	76 (29.2)	-	17 (6.5)		
60~64세	108 (100.0)		31 (28.7)	25 (23.1)	6 (5.6)	36 (33.3)	-	10 (9.3)		
65세 이상	68 (100.0)		22 (32.4)	15 (22.1)	9 (13.2)	14 (20.6)	-	8 (11.8)		

주: 1)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기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됨

2) 중복 학대를 개별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임(중복 학대 미분류)

3)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0.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8.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23.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24~127.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16~119.

6)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9~102.



〈표 11-5-5〉 장애인학대 유형 - 학대유형별, 연도별, 성별, 연령별, 장애유형별(계속)

(단위: 건, %)

구분	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피해자 장애유형	111	37	38	12	15	-	9
	(100.0)	(33.3)	(34.2)	(10.8)	(13.5)	-	(8.1)
	83	32	27	5	11	-	8
	(100.0)	(38.6)	(32.5)	(6.0)	(13.3)	-	(9.6)
	45	19	14	3	5	-	4
	(100.0)	(42.2)	(31.1)	(6.7)	(11.1)	-	(8.9)
	41	17	5	9	7	-	3
	(100.0)	(41.5)	(12.2)	(22.0)	(17.1)	-	(7.3)
	13	4	6	-	2	-	1
	(100.0)	(30.8)	(46.2)	-	(15.4)	-	(7.7)
	1,246	347	284	191	348	-	76
	(100.0)	(27.8)	(22.8)	(15.3)	(27.9)	-	(6.1)
	129	64	38	2	13	-	12
	(100.0)	(49.6)	(29.5)	(1.6)	(10.1)	-	(9.3)
	87	28	16	17	24	-	2
	(100.0)	(32.2)	(18.4)	(19.5)	(27.6)	-	(2.3)
	2	1	1	-	-	-	-
	(100.0)	(50.0)	(50.0)	-	-	-	-
	1	-	1	-	-	-	-
	(100.0)	-	(100.0)	-	-	-	-
	4	1	1	1	1	-	-
	(100.0)	(25.0)	(25.0)	(25.0)	(25.0)	-	-
	93	22	29	21	17	-	4
	(100.0)	(23.7)	(31.2)	(22.6)	(18.3)	-	(4.3)

주: 1)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됨

2) 중독 학대를 개별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임(중독 학대 미분류)

3)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임

자료: 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9).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0.

2)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0).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08.

3)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23.

4)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2).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24-127.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3).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116-119.

6)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p99-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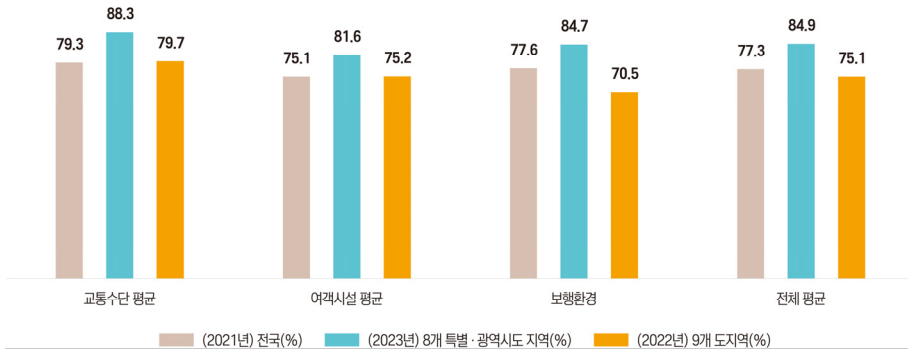
- 2023년 전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1,418건을 학대유형별로 세분화하면 총 1,855건임(중복학대 359건 미분류)
-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572건(30.8%), 정서적 학대 460건(24.8%), 경제적 착취 443건(2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자 성별에 따른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은 신체적 학대 283건(33.5%), 경제적 착취 252건(29.9%), 여성은 신체적 학대 289건(28.6%), 정서적 학대 261건(2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경제적 착취가, 30대부터 50대까지는 신체적 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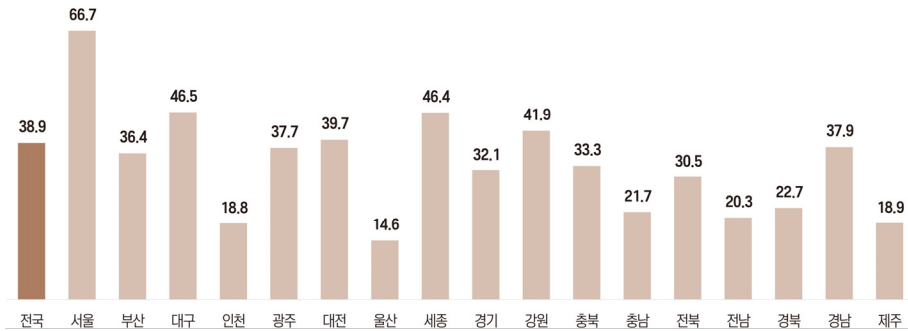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욕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12. 접근성

[그림 2-12-1]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2021년)



[그림 2-12-2] 저상버스 도입률(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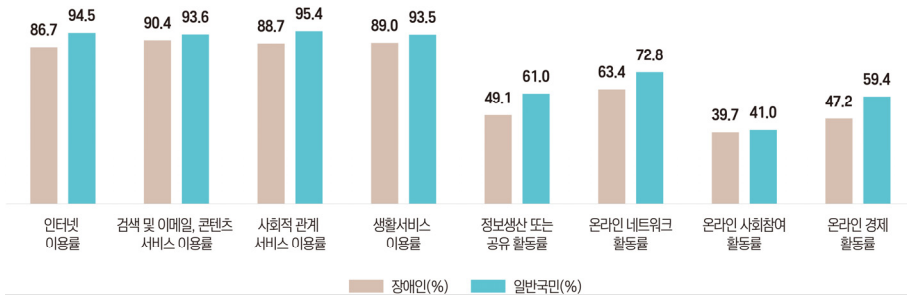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전국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평균 기준 적합률은 77.3%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수단 평균 기준 적합률은 79.3%, 여객시설 평균 기준 적합률은 75.1%, 보행환경 기준 적합률은 77.6%임
 - 기준 8개 특별·광역시도 지역(2023년 기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은 9개 도지역(2022년 기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3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8.9%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66.7%로 가장 높았고 대구 46.5%, 세종 46.4% 순임. 반면 울산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이 14.6%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12-3]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전체가구 비교(2024년)



- 2024년 기준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0.4%, 생활서비스 이용률 89.0%,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88.7%, 인터넷 이용률 86.7% 등의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이용률이 일반국민에 비해 낮은 편임. 특히 온라인 경제 활동률은 장애인이 47.2%로 일반국민 59.4%에 비해 12.2%p 낮은 편임

1) 물리적 접근성

(1)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및 소지 여부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및 소지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상지의지	1.4	1.2	시각장애	점자정보 단말기	2.0	1.3
	하지의지	1.3	1.0		시각장애인용 시계	4.7	1.6
	척추보조기	4.8	5.0		장애인 보조견	0.6	0.1
	상지보조기	0.6	0.5		점자프린터	0.5	0.1
	하지보조기	2.8	2.6		화면해설수신기	4.0	1.3
	맞춤형 교정용신발	3.0	2.3		음향신호기 리모콘	3.6	1.3
	지팡이	23.4	25.1		광학 문자 판독기	0.9	0.2
	목발	2.2	3.4		점자라벨기	0.8	0.4
	보행차	10.7	9.8		휴대용 독서기기 (데이지 플레이어)	2.3	0.5
	전동휠체어	4.5	2.6		기타	0.6	0.4
	수동휠체어	8.6	7.6	청각장애	보청기	18.0	16.8
	전동스쿠터	4.1	2.4		확성전화기	1.6	0.6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	0.6	0.4		골도전화기	0.8	0.2
	자세보조용구	2.2	1.3		헤드폰(청취증폭기)	1.8	0.3
	상하지운동기기	1.7	0.4		인공와우	3.4	2.9
	팔받침대	1.2	0.6		음성자막 실시간 변환 기기	1.3	0.6
	자세 지지용 의자	2.0	0.5		자막수신기	3.7	2.3
	기타	2.8	2.9		신호표시기(시각, 음향)	2.1	0.3
시각장애	안경/콘택트렌즈	56.4	56.4		진동시계	2.5	0.6
	확대경, 독서확대기	14.3	10.7		기타	0.1	0.1
	흰 지팡이	7.9	7.3				
	의안	11.2	10.7				
	스크린 리더	1.6	0.6				
	화면 확대기	2.7	1.0				

주: 1) 2020년,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2)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이전 조사 대비 일부 보조기기 항목이 추가되고 명칭이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95-299.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관련 보조기기의 필요여부는 지팡이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행차 10.7%, 수동휠체어 8.6% 등의 순이며, 소지여부는 지팡이 25.1%, 보행차 9.8%, 수동휠체어 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각장애 관련 보조기기의 필요여부는 안경/콘택트렌즈가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확대경, 독서확대기가 14.3%, 의안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지하고 있는 보조기기는 안경/콘택트렌즈 56.4, 확대경, 독서확대기 10.7%, 의안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각장애 관련 보조기기 필요여부는 보청기가 18.0%로 가장 높았으며, 소지여부도 보청기가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2-1-1〉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및 소지여부(계속)

(단위: %)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구분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	필요여부	소지여부
언어장애	체외용 인공후두	1.3	1.2	전체	기저귀매트	3.0	2.3
	음성증폭기	1.6	0.7		목욕의자 및 이동욕조	9.3	7.3
	기타	1.0	0.9		이동변기	4.0	3.6
지적 및 자폐성장애	의사소통 보조기기	0.8	0.2		특수 키보드	0.1	0.1
	교육과목훈련용 보조기기	3.8	0.3		특수 마우스	0.1	0.1
	터치모니터	4.1	0.5		각종 스위치	0.6	0.1
	기타	0.2	0.2		음성인식장치	0.4	0.1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기	5.5	5.7		터치스크린, 스크린 키보드	0.2	0.1
	기타	0.5	0.5		환경제어장치	0.5	0.0
호흡기장애	산소발생기	49.3	43.0		이동식 전동리프트	0.5	0.1
	인공호흡기	14.5	12.4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2.4	1.6
	호흡근육훈련기	23.3	13.3		주택개조	2.7	0.4
	기타	21.0	21.1		승강용보조기기	0.1	0.0
					장애인용 의복	0.1	0.0
안면장애	압박용 의복	0.5	-		자동차개조/운전보조장치	0.5	0.4
	기타	-	-		경보 시스템	4.7	1.0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86.8	86.8		고용/직업훈련용 보조기기	0.2	0.1
	피부보호판	85.1	84.3		레크레이션용 보조기기	0.3	0.0
	기타	22.8	22.8		배회 감지기	1.4	0.1
전체	욕창예방매트리스	3.1	2.0		안전 손잡이	13.6	6.2
	욕창예방방석	2.2	1.5		음식 섭취 보조기기	1.6	1.0
	침대(전동 및 수동)	5.7	3.2		약 알림통, 낙상 알림기	3.5	0.1
	기립보조기기	1.4	0.5		기타	0.7	0.6
					호흡 보조기	0.3	0.2
					산소발생기	0.1	0.1
					인공호흡기		

주: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 DB를 모집단으로 진행하였으며, 2017년 등 이전 조사 방식(전국 조사구 중 표집하여 조사하는 출현율 제시 방식)과 차이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 「2023 장애인 실태조사」, p295-299.

- 언어장애 관련 보조기기의 필요도는 음성증폭기가 1.6%로 가장 높았으며, 지적, 자폐성장애 관련 보조기기의 필요도는 터치모니터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장장애 관련 보조기기는 필요여부와 소지여부 모두 복막투석기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 관련 보조기기 또한 필요여부와 소지여부 모두 산소발생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체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안전손잡이의 필요도가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목욕의자 및 이동 욕조의 필요도가 9.3%, 침대(전동 및 수동)이 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운영 현황

〈표 12-1-2〉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실적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

구 분		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탐상시계	시각 신호 표시기	자세보조용구	기타
연도	2005	11,508	5,741	3,289	1,423	393	662
	2006	9,044	4,635	2,530	1,021	372	480
	2007	9,269	4,866	2,368	1,004	253	778
	2008	9,002	4,248	2,117	558	203	1,876
	2009	9,056	3,964	2,222	585	162	2,123
	2010	7,178	3,297	1,407	371	153	1,950
	2011	7,011	2,724	1,236	275	733	2,043
	2012	6,711	2,687	1,199	257	508	2,060
	2013	7,114	2,998	1,305	148	381	2,282
	2014	6,810	2,707	1,084	115	-	2,904
	2015	6,036	1,557	785	90	-	3,604
	2016	5,689	37	785	77	-	4,790
	2017	5,566	24	687	104	-	4,751
	2018	5,257	15	510	86	-	4,646
	2019	4,671	3	424	71	-	4,173
	2020	3,687	4	313	61	-	3,309
	2021	3,548	1	268	84	-	3,195
	2022	3,480	7	204	48	-	3,221
	2023	3,983	7	188	49	-	3,739
지역	서울	543	1	23	6	-	513
	부산	274	-	8	2	-	264
	대구	227	-	12	1	-	214
	인천	259	-	13	6	-	240
	광주	130	-	2	1	-	127
	대전	291	-	22	2	-	267
	울산	104	-	-	2	-	102
	세종	13	-	-	1	-	12
	경기	653	2	31	11	-	609
	강원	142	1	18	2	-	121
	충북	267	2	21	1	-	243
	충남	139	-	6	-	-	133
	전북	245	-	3	8	-	234
	전남	164	1	1	3	-	159
	경북	150	-	8	1	-	141
	경남	158	-	3	1	-	154
	제주	224	-	17	1	-	206



- 주: 1)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2) '기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품목 외에 시·도에서 발굴 추진한 보조기기도 포함됨
 3) 2014년부터 교부품목 중 자세보조용구는 제외됨
 4) 2016년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육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육창예방 보조기구'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여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자료: 1) 보건복지부(2010),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p236. 2) 보건복지부(2011),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p240.
 3)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p256. 4) 보건복지부(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p259.
 5) 보건복지부(2014),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p276. 6) 보건복지부(2015),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p282.
 7) 보건복지부(2016),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290. 8)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p310.
 9) 보건복지부(2018),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 p302. 10) 보건복지부(2019),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p302.
 11) 보건복지부(2020),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p312. 12) 보건복지부(2021),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p320.
 13) 보건복지부(2022),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p312. 14) 보건복지부(2023),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 p300.
 15) 보건복지부(2024), 「2024 보건복지통계연보」 p300.

-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제공된 보조기기는 총 3,983개임. 보조기기 종류별로는 '기타'가 3,739개로 가장 많았고, '음향신호기 리모콘 및 음성탐상시계' 188개, '시각 신호 표시기' 49개, '와상용 육창예방보조기기' 7개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제공된 보조기기 수는 2022년 3,480개에서 2023년 3,983개로 소폭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받은 지역으로 '경기'(653개), '서울'(543개), '대전'(291개), '부산'(274개) 등이 있음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출처: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 보조기기 38종 품목 지원
- 교부제한
 -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 받거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 동일한 품목을 지자체 또는 타 교부사업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행복e음 신청 등록)

〈표 12-1-3〉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1,564	110,539	105,599	85,230	115,969	88,607	124,110	91,920	134,075	93,217	147,348	100,360
전동휠체어		2,525	4,782	1,611	3,046	1,346	2,548	1,969	3,734	1,745	3,335	1,804	3,815
전동스쿠터		8,200	12,372	6,450	9,725	6,107	9,226	6,270	9,475	5,340	8,190	6,243	10,765
자세보조용구		814	1,001	769	926	835	1,022	773	955	821	1,008	862	1112
수동 휠체어	소계	15,581	7,257	10,999	5,283	10,708	5,134	9,909	4,785	9,597	4,650	9,725	4,736
	일반형	14,072	6,092	9,478	4,110	9,239	4,010	8,502	3,695	8,197	3,563	8,216	3,566
	활동형	416	375	401	362	341	308	412	371	411	371	436	394
	틸팅형	456	330	391	284	408	295	416	302	408	296	395	286
	리클라이닝형	637	460	729	526	720	521	579	417	581	420	678	490
다리의지		2,809	4,372	2,596	4,023	2,759	5,175	2,622	5,162	2,663	5,280	2,714	5,369
팔의지		1,014	438	843	368	905	483	871	483	848	463	782	428
다리보조기		9,708	3,841	8,612	3,482	8,885	3,632	8,126	3,263	8,061	3,089	8,608	3,131
팔보조기		704	90	619	84	733	97	639	91	686	105	662	108
척추보조기		888	278	867	276	736	232	628	199	539	190	540	199
굴반보조기		99	11	50	5	64	7	84	9	35	5	23	3
소켓 및 라이너		-	-	-	-	1,607	765	1,377	661	1,297	622	1,470	693
맞춤형교정용신발		12,436	2,807	10,066	2,274	9,715	2,194	8,548	1,932	8,112	1,833	7,509	7,696
지팡이		1,675	30	1,097	20	1,009	18	834	15	744	13	697	12
목발		79	1	45	1	59	1	52	1	49	1	46	1
전방보행차		149	7	126	6	66	3	61	3	63	3	66	3
후방보행차		199	54	185	49	186	51	166	45	131	35	121	33
이동식전동리프트		719	1,633	747	1,560	548	898	562	986	547	1,010	533	994
욕창예방매트리스		2,096	748	1,639	585	1,255	426	959	281	961	286	848	260
욕창예방방석		3,273	740	2,607	589	1,965	425	1,383	261	1,547	312	1,513	307
의안		2,651	1,535	2,217	1,284	2,279	1,314	2,375	1,370	2,426	1,391	2,220	1,308
저시력안경		739	66	823	73	622	55	534	48	651	58	619	60
돋보기		234	20	217	19	205	18	209	18	214	19	217	19
콘택트렌즈		51	4	58	4	51	4	43	3	48	3	58	4
망원경		13	1	9	1	8	1	7	1	16	1	21	2
현지팡이		110	2	305	6	302	6	252	5	255	5	272	6
보청기		57,119	67,304	45,265	50,529	55,543	53,893	57,924	56,668	61,377	59,485	64,075	62,845
(보청기)후가적합관리		-	-	-	-	1,372	62	10,192	460	18,883	852	28,458	1,284
음성증폭기		105	47	100	45	114	51	97	44	86	39	89	39
전동보조기기전지		7,574	1,098	6,677	967	5,975	866	6,644	963	6,333	934	6,553	1,128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수동휠체어는 유형세분화 이전 건은 일반형으로 분류함

· 2018년 7월부터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포함됨(「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시행 2018.7.1.), [보건복지부령 제582호, 2018. 6. 29., 일부개정])

3) 다리의지 소켓 및 라이너를 2021년 3월부터 신규 급여로 포함함

4) 검수절차개정으로 2019년 보청기 급여실적은 11개월분 급여비만 해당됨

5) 2020년 7월 구입한 보청기부터 제품 검수확인 후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나누어 지급됨

· (종전) 단일금액 지급 → (변경) 보청기 제품 급여, 초기 적합관리 급여, 후기 적합관리 급여

· 초기 적합관리 급여는 검수확인10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현황" (2025.05.22. 검색)

-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47,348건, 지급액은 100,360백만원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감소하였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하였음
- 지급품목별로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보청기'가 64,075건으로 가장 많고, '(보청기)후기적합관리' 28,458건, '수동휠체어(소켓)' 9,725건, '다리보조기' 8,608건, '맞춤형교정용신발' 7,509건 등의 순임
- 지급품목별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보청기'가 62,845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동스쿠터' 10,765백만원, '맞춤형교정용신발' 7,696백만원, '다리의지' 5,369백만원 등의 순임

※※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제도(출처: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내용: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가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 차상위분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표 12-1-4〉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건)

구 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가군	나군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연도별	2018	2,783	-	8,193	15,434	88	147	247
	2019	2,525	-	8,200	14,072	416	456	637
	2020	1,611	-	6,450	9,478	401	391	729
	2021	1,346	-	6,107	9,239	341	408	720
	2022	1,969	-	6,270	8,502	412	416	579
	2023	1,745	-	5,340	8,197	411	408	581
	2024	1,715	89	6,243	8,216	436	395	678
지역별	서울	314	12	510	1,197	68	77	108
	부산	88	4	207	502	21	21	34
	대구	94	4	280	411	22	35	29
	인천	117	3	161	325	19	6	28
	광주	52	5	105	235	10	19	18
	대전	57	3	160	312	13	12	31
	울산	23	1	44	187	10	7	22
	세종	13	-	19	62	8	6	7
	경기	465	20	763	1,755	126	91	196
	강원	49	1	124	200	15	7	15
	충북	38	4	194	253	17	18	18
	충남	65	5	383	442	17	18	33
	전북	83	5	888	564	14	11	25
	전남	65	9	979	500	16	18	19
	경북	71	5	894	606	21	17	35
	경남	106	8	505	567	28	27	47
	제주	15	-	27	98	11	5	13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2023년 11월부터 전동휠체어 나군이 신규급여로 포함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현황" (2025.05.22. 검색)

- 2024년 기준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가군) 1,715건, 전동휠체어(나군) 89건, 전동스쿠터 6,243건, 수동휠체어(일반형) 8,216건, 수동휠체어(활동형) 436건, 수동휠체어(틸팅형) 395건, 수동휠체어(리클라이닝형) 678건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2024년에는 소폭 증가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지급건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임. '전남', '경북' '전북'은 '전동스쿠터' 지급건수가 각각 979건, 894건, 888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표 12-1-5〉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7,569	32,885	33,180	27,530	33,692	26,665	33,125	25,946	35,126	26,580	38,302	31,232
팔의지	어깨가슴의지 등 8종	265	178	198	119	208	146	186	130	202	146	197	140
다리의지	골반의지 등 7종	1,152	2,066	1,200	2,134	1,154	2,487	1,078	2,418	1,152	2,616	1,119	2,562
팔보조기	어깨보조기 등 4종	269	47	224	40	230	39	182	32	190	36	202	39
척추보조기	목보조기 등 5종	306	98	242	79	267	90	174	56	194	71	214	82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13	2	8	1	10	1	9	1	4	0.6	7	1
다리보조기	무릎보조기 등 4종	2,591	1,048	2,264	929	2,169	907	1,977	804	2,045	768	1,998	752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신발	3,284	821	2,896	724	2,911	728	2,462	617	2,720	681	2,270	568
그 밖의 보조기기	수동휠체어	4,796	2,497	4,067	2,161	3,933	2,082	3,720	1,971	3,678	1,934	4,236	2,236
	지팡이	462	9	322	6	303	6	238	5	268	5	259	5
	목발	72	1	48	1	64	1	55	0.8	55	0.8	48	1
	의안	343	237	244	163	242	162	225	154	268	180	247	169
	저시력 보조안경	268	26	289	29	220	22	201	20	223	22	214	22
	콘택트렌즈	12	1	16	1	9	0.7	10	0.8	7	0.6	13	1
	돌보기	58	5	69	7	56	5	46	4	53	5	50	5
	망원경	5	0	2	0	1	0.1	3	0.2	1	0.1	1	0
	흰지팡이	82	1	129	3	155	4	97	2	118	3	158	4
	보청기	8,161	10,684	6,278	7,754	8,182	8,733	9,389	8,908	11,148	9,447	12,740	10,090
	개인용 음성 증폭기	14	7	24	12	21	11	11	6	14	7	14	7
	전동휠체어	2,220	4,625	1,809	3,770	1,419	2,955	1,628	3,398	1,274	2,682	1,989	4,649
	전동스쿠터	3,747	6,243	3,355	5,596	3,007	5,016	2,662	4,439	2,814	4,873	3,471	6,570
	자세보조용구	281	368	265	356	309	414	276	378	316	428	323	434
	육창예방방석	1,808	451	1,696	423	1,234	299	1,044	232	1,083	251	1,118	255
	육창예방매트리스	983	386	982	388	799	307	604	209	613	213	619	217
	이동식전동리프트	887	2,215	824	1,926	529	1,020	483	914	523	1,009	528	1,014
소모품	전·후방 보행차	99	8	113	11	60	6	64	6	51	6	58	7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1세트)	5,391	861	5,616	898	5,617	898	5,708	913	5,533	894	5,573	1,056
의지 소모품 8종		-	-	-	-	583	325	593	327	579	301	636	345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2023년 하반기부터 '전동 스쿠터'는 '의료용 스쿠터'로 명칭이 변경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급 건수는 38,302건, 지급액은 31,23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76건, 4,652백만원 증가함
- 지급품목별로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보청기'가 12,74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5,573건, '수동휠체어' 4,236건, '의료용 스쿠터' 3,471건, '맞춤형 교정용신발' 2,270건 등의 순임
- 지급품목별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보청기'가 10,090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료용 스쿠터' 6,570백만원, '전동휠체어' 4,649백만원 등의 순임

※※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제도(출처: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표 12-1-6〉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 현황 - 연도별, 분류별

(단위: 건,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30,145	7,697,183	30,161	7,775,244	31,685	8,527,277	31,652	7,814,924	32,554	8,075,526	30,278	8,186,883	
의지·보조기	팔의지	1,404	683,594	1,276	549,031	1,184	636,870	1,510	669,192	1,169	686,852	1,523	579,727
	다리의지	437	580,370	517	715,320	490	767,967	474	828,804	489	916,800	585	1,025,362
	팔보조기	2,852	395,441	2,936	405,561	3,212	452,112	3,057	422,045	3,224	454,405	3,241	437,711
	척추보조기	5,324	1,377,578	5,171	1,328,790	5,248	1,371,461	4,805	1,238,899	4,999	1,391,844	4,737	1,282,348
	골반보조기	59	6,344	57	6,223	48	5,182	48	5,438	82	11,651	75	10,452
	다리보조기	3,762	862,124	3,591	828,414	3,534	816,939	3,588	807,493	3,741	879,038	3,693	795,531
	교정용신발류	145	34,218	141	33,060	134	33,091	142	35,155	129	32,165	114	26,440
	기타	11,838	2,677,622	12,290	2,897,497	13,484	3,301,697	13,326	2,594,210	14,285	2,546,481	10,533	2,908,023
	소모품	211	236,269	200	211,432	200	218,749	223	262,094	193	189,808	200	171,263
수리료	팔의지	735	200,357	682	187,189	686	209,683	643	189,426	683	250,497	738	230,759
	다리의지	1,885	591,006	1,899	567,875	2,070	667,760	2,410	717,441	2,149	671,890	2,335	678,360
	보조기	21	1,245	10	697	14	838	14	635	9	704	7	555
	휠체어	1,458	50,105	1,379	43,574	1,369	44,242	1,396	42,979	1,387	42,490	2,437	38,484
	전동스쿠터	11	768	6	296	11	638	12	924	11	718	22	1,234
	기타	3	143	6	286	1	48	4	190	4	183	38	633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2) 재활보조기구 분류는 '보형급여 대상 보조기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2023.9.11.기준)(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하였고, 각 분류별 재활보조기구 유형은 다음과 같음
(의지·보조기: 102품목)

- 팔 의지: 어깨가슴/어깨관절/위팔/팔꿈치관절/아래팔/손목관절/손/손가락 의지, 아주 짧은 아래팔/짧은 아래팔/표준 아래팔/손목관절 고정전동외수
- 다리 의지: 골반/엉덩이관절/넓적다리/무릎관절/종아리/발목/발 의지
- 팔 보조기: 어깨/팔꿈치-손목-손/손목-손/손가락/짧은팔 보조기
- 척추 보조기: 목/등-허리/허리-엉치/등-허리-엉치/허리/목배/등-허리배 보조기
-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 다리 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무릎-발목-발/무릎-발목-발/무릎관절 보조기
-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 기타: 수동휠체어, 지팡이, 목발, 의안, 자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현자평이, 보청기, 개인용 음성 증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제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설치형 전동리프트, 보행자, 가발, 집뇨기,
-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의지 소켓, 무릎관절 의지 소켓, 종아리 의지 소켓, 발목 의지 소켓,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라이너, 종아리 의지 실리콘라이너, 발목 의지 실리콘라이너

(수리료: 126품목)

- 팔 의지: 위팔 의지 소켓/관절장치 교환,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흑근 교환, 케이블 교환, 어깨패드 교환, 실리콘 의수 교환, 팔꿈치관절 의지 장치 교환, 아래팔 의지 장치 교환, 고정전동외수 소켓/배터리/변속기부/모터부/기어부/굴격부/센서부/제어부/외파/내파/손목격압장치 교환, 위팔의지 폼카바/스타키넷트 교환, 상완대 교환
- 다리 의지: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무릎관절장치/발목장치/폼카바/스타키넷트/스타키넷트카바 교환,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치 교환, 발목장치 교환, 족부외피 교환, 흡인 벨트 교환, 종아리 의지 폼카바/스타키넷트/스타키넷트카바/장치/물셋밴드/실리콘 슬리브 교환, 다리 의지 파이프어댑터 교환, 회전테이블 교환, 엉덩이관절 의지 장치/소켓 교환,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댑터 교환, 다마실 교환, 디지털 캡 교환
- 보조기: 엉덩-무릎-발목-발 보조기 장치 교환, 듀랄루민 커브 교환, 발목장치 교환,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무릎띠 교환, 크렌자크식 발목-발 보조기 장치 교환, 다리보조기용 속신/정형용 구두 교환
- 휠체어: 시트 교환, 등받이 교환, 뒷바퀴/앞바퀴 교환, 발받침 교환, 발판 교환, 핸드림 교환, 브레이크 교환, 옆받이 교환, 요크 교환, 팔걸이 교환, 발걸이 교환
- 전동스쿠터: 10인치/11인치/12인치 앞바퀴 전제/뒷바퀴 전제/타이어/튜브 교환
- 기타: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벨크로 교환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 2024년 기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급건수는 30,278건, 지급액은 8,186,883천원임

- 지급품목별로 지급건수를 살펴보면, '기타'가 10,53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척추보조기' 4,737건, '다리보조기' 3,693건, '팔보조기' 3,241건 등의 순임
- 지급품목별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기타'가 2,908,02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척추보조기' 1,282,348천원, '다리의지' 1,025,362천원 등의 순임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지급대상: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규정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 및 수리비 지원



〈표 12-1-7〉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현황 - 연도별, 품목별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3,295	3,351	3,450	3,369	4,842	6,603
시각	화면낭독SW	115	108	108	127	83	108
	독서확대기	111	85	81	80	179	212
	점자단말기	82	69	29	54	148	158
	음성출력기	372	267	332	307	41	117
	화면확대S/W	3	-	-	1	-	1
	광학문자판독기	-	-	-	-	427	497
	모바일제어	-	-	-	-	34	-
	인터페이스	-	-	-	-	132	131
	점자출력기	-	-	-	-	2	8
	점자디스플레이	-	-	-	-	1	-
기타		88	69	40	90	11	32
지체 · 뇌병변	입력보조기	102	63	58	45	-	-
	특수마우스	46	50	19	15	24	34
	특수키보드	15	11	7	4	2	3
	스위치	-	-	-	-	1	17
	터치모니터	-	-	-	-	58	48
	독서보조기	-	-	-	-	1	-
청각 · 언어	영상전화기	246	72	54	168	201	224
	의사소통보조기	1,087	1,472	1,227	1,297	1,942	2,570
	음성증폭기	75	61	95	102	101	57
	무선신호기	41	114	267	192	210	149
	골도음향기기	12	14	14	7	8	-
	언어훈련S/W	895	896	1,119	880	1,236	2,237
	기타	3	-	-	-	-	-

주: 각 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내부자료

- 2023년 기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건수는 6,603건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건수는 매년 증가 추이를 보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의사소통보조기'와 '언어훈련S/W'의 지급건수가 각각 2,570건, 2,237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중 72.8%를 차지함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출처: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s://www.at4u.or.kr/index.asp>))

- 관련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군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 보급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실적

〈표 12-1-8〉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현황 - 장애정도별,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건)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2014	650,542	81,352	104,946	107,331	96,178	187,506	73,138	91
2015	638,285	81,227	105,256	105,014	96,905	186,465	63,399	19
2016	498,164	66,161	88,891	85,064	76,646	146,446	34,946	10
2017	502,777	71,224	94,147	88,085	80,861	152,329	16,126	5
2018	517,458	73,438	99,064	90,027	83,931	156,763	14,232	3

구분	소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기타
2019	514,636	261,916	252,717	3
2020	513,361	262,102	251,259	-
2021	507,031	260,040	246,991	-
2022	513,115	264,001	249,114	-
2023	516,479	267,013	249,466	-

지체	지체(전환대상)	75	44	31	-
	지체(상지절단)	1,647	909	738	-
	지체(하지절단)	9,910	5,958	3,952	-
	지체(상지관절)	2,361	427	1,934	-
	지체(하지관절)	81,551	5,712	75,839	-
	지체(상지기능)	6,844	4,697	2,147	-
	지체(하지기능)	98,566	54,630	43,936	-
	지체(척추)	97,558	13,569	83,989	-
	지체(변형)	909	84	825	-
시각		79,772	64,044	15,728	-
청각	청각(전환대상)	29,102	16,871	12,231	-
	청각(청력)	2	2	-	-
	청각(평형기능)	5,880	1,895	3,985	-
언어		268	59	209	-
지적장애		2,189	1,496	693	-
뇌병변장애		23,052	23,052	-	-
자폐성장애		26,833	26,833	-	-
정신		913	903	10	-
신장		44,388	41,912	2,476	-
심장		537	487	50	-
호흡기		2,876	2,801	75	-
간		374	190	184	-
안면		91	46	45	-
장루·요루		435	127	308	-
뇌전증		346	265	81	-
기타		-	-	-	-

주: 1) 장애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시행)로 인해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은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됨

2) 2023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23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516,47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364건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하지기능)장애가 98,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척추)장애 97,558건, 지체(하지관절)장애 81,551건, 뇌 병변장애 79,772건 등의 순임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4) 편의시설 설치

〈표 12-1-9〉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 연도별

(단위: 개, %)

편의시설 종류	2013년도					2018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매개시설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3,791,947	3,116,303	82.2	2,950,482	77.8
내부시설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3,299,282	2,762,138	83.7	2,560,854	77.6
위생시설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1,489,298	1,055,077	70.8	959,091	64.4
안내시설	195,730	82,643	42.2	70,711	36.1	295,558	197,551	66.8	181,197	61.3
기타시설	200,514	163,868	81.7	147,789	8.0	124,179	93,540	75.3	84,392	68.0
비치용품	-	-	-	-	-	34,626	18,685	54.0	18,685	54.0

편의시설 종류	2023년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6,440,413	5,743,896	89.2	5,099,250	79.2
매개시설	2,153,933	2,011,613	93.4	1,812,782	84.2
내부시설	2,858,498	2,549,814	89.2	2,273,371	79.5
위생시설	1,109,576	942,438	84.9	817,632	73.7
안내시설	212,829	156,938	73.7	121,658	57.2
기타시설	80,304	69,730	86.8	60,444	75.3
비치용품	25,273	13,363	52.9	13,363	52.9

주: 1) 설치기준 항목 수: 건물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
 2)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31.
 2)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238.
 3)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06.

- 2018년도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이었으나, 2023년도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증가함
 • 2023년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은 매개시설이 9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치용품이 52.9%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2-1-10〉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3년)

(단위: 개, %)

구분		2013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41,573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시도별	서울	18,529	698,539	469,537	67.2	423,987	60.7	
	부산	9,672	445,606	318,466	71.5	293,709	65.9	
	대구	7,002	236,084	170,423	72.2	152,237	64.5	
	인천	10,450	415,069	277,264	66.8	247,923	59.7	
	광주	5,052	229,268	161,775	70.6	140,738	61.4	
	대전	3,535	109,913	78,329	71.3	70,351	64.0	
	울산	3,606	173,880	122,601	70.5	116,142	66.8	
	세종	-	-	-	-	-	-	
	경기	29,541	1,326,389	923,628	69.6	827,777	62.4	
	강원	4,467	157,822	112,669	71.4	101,542	64.3	
	충북	4,927	252,523	152,183	60.3	133,251	52.8	
	충남	7,538	367,452	237,977	64.8	201,350	54.8	
	전북	7,159	333,595	227,433	68.2	202,147	60.6	
	전남	7,553	404,951	260,484	64.3	209,999	51.9	
	경북	10,270	515,110	334,029	64.8	286,019	55.5	
	경남	9,351	493,597	333,975	67.7	293,858	59.5	
	제주	2,921	145,576	102,906	70.7	94,118	64.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1,973	733,461	539,767	73.6	456,772	62.3
		민간시설	129,600	5,571,913	3,743,912	67.2	3,338,376	59.9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27,050	1,001,853	701,339	70.0	612,251	61.1	
	2종 근린생활시설	10,190	301,604	199,605	66.2	181,666	60.2	
	문화·집회시설	1,563	98,369	74,073	75.3	65,840	66.9	
	종교시설	4,669	142,909	100,510	70.3	89,431	62.6	
	판매시설	1,526	79,737	58,500	73.4	52,750	66.2	
	의료시설	2,537	179,940	134,855	74.9	118,955	66.1	
	교육연구시설	14,765	925,477	653,449	70.6	573,285	61.9	
	노유자 시설	19,698	1,158,246	691,116	59.7	606,439	52.4	
	수련시설	424	32,997	24,256	73.5	20,930	63.4	
	운동시설	1,317	46,605	32,880	70.6	29,982	64.3	
	업무시설	9,706	563,796	404,033	71.7	355,133	63.0	
	숙박시설	4,335	212,873	149,000	70.0	132,230	62.1	
	공장	5,483	263,260	138,490	52.6	124,925	47.5	
	자동차관련시설	1,501	35,931	25,087	69.8	22,541	62.7	
	방송통신시설	205	9,763	7,246	74.2	6,373	65.3	
	교정시설	36	1,998	1,559	78.0	1,303	65.2	
	모지관련시설	98	4,199	2,731	65.0	2,426	57.8	
	관광휴게시설	235	10,289	8,310	80.8	7,492	72.8	
	장례식장	298	19,869	13,500	67.9	11,468	57.7	
	공원	1,418	27,656	15,307	55.3	13,557	49.0	
	공동주택	34,099	1,161,272	830,279	71.5	750,881	64.7	
	기숙사	420	26,731	17,554	65.7	15,290	57.2	

주: 2013년도 조사에서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조사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60, 99, 105.

- 2013년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7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부산 71.5%, 강원 7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울산이 66.8%로 가장 높았고, 부산 65.9%, 제주 6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설주체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공공이 민간보다 6.4%p 높으며, 적정설치율은 공공이 민간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이 80.8%로 가장 높았고, 교정시설 78.0%, 문화·집회시설 75.3% 등의 순임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이 72.8%로 가장 높았고 문화·집회시설 66.9%, 판매시설 66.2% 등의 순임



〈표 12-1-1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18년)

(단위: 개, %)

구분		2018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185,947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시도별	서울	27,856	1,281,950	1,126,201	87.9	1,084,340	84.6
	부산	11,542	556,144	450,345	81.0	412,842	74.2
	대구	8,206	426,993	344,582	80.7	322,959	75.6
	인천	12,260	539,621	429,301	79.6	394,810	73.2
	광주	7,065	352,632	289,910	82.2	282,980	80.2
	대전	3,881	210,210	174,163	82.9	161,341	76.8
	울산	3,887	191,761	163,218	85.1	157,194	82.0
	세종	919	49,855	44,316	88.9	42,248	84.7
	경기	38,247	1,760,119	1,446,055	82.2	1,366,155	77.6
	강원	5,794	318,419	250,496	78.7	231,362	72.7
	충북	8,632	446,844	316,577	70.8	279,507	62.6
	충남	8,016	416,073	324,729	78.0	296,256	71.2
	전북	11,317	551,305	425,521	77.2	392,363	71.2
	전남	10,440	517,090	378,530	73.2	338,328	65.4
	경북	11,842	605,288	450,702	74.5	412,590	68.2
	경남	12,466	639,345	495,402	77.5	454,976	71.2
	제주	3,577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13,352	916,007	734,622	80.2	663,373	72.4
	민간시설	172,595	8,118,883	6,508,672	80.2	6,091,328	75.0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33,656	1,485,132	1,177,667	79.3	1,088,170	73.3
	2종 근린생활시설	13,760	422,324	319,236	75.6	302,960	71.7
	문화·집회시설	2,101	160,677	135,851	84.5	126,715	78.9
	종교시설	5,449	188,172	147,054	78.1	136,018	72.3
	판매시설	1,824	120,309	102,656	85.3	96,985	80.6
	의료시설	3,830	320,052	267,648	83.6	251,111	78.5
	교육연구시설	19,243	1,422,689	1,190,633	83.7	1,105,823	77.7
	노유자시설	23,950	1,324,789	966,538	73.0	884,849	66.8
	수련시설	518	39,212	31,932	81.4	29,142	74.3
	운동시설	1,653	60,604	49,979	82.5	47,096	77.7
	업무시설	12,323	861,319	720,108	83.6	671,801	78.0
	숙박시설	3,623	204,736	162,601	79.4	152,955	74.7
	공장	7,027	327,578	224,206	68.4	210,509	64.3
	자동차관련시설	1,546	38,250	32,241	84.3	30,840	80.6
	방송통신시설	208	12,818	10,420	81.3	9,561	74.6
	교정시설	47	2,829	2,299	81.3	2,074	73.3
	묘지관련시설	138	6,589	5,023	76.2	4,603	69.9
	관광휴게시설	297	14,724	12,704	86.3	11,893	80.8
	장례식장	338	25,305	20,589	81.4	18,787	74.2
	공원	1,949	66,393	43,989	66.3	41,474	62.5
	공동주택	51,753	1,888,072	1,587,369	84.1	1,501,216	79.5
	기숙사	714	42,317	32,551	76.9	30,119	71.2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34, 198, 221.

- 2018년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8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87.9%, 울산 8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세종이 84.7%로 가장 높았고 서울 84.6%, 울산 8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은 공공과 민간 모두 80.2%로 동일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은 민간이 공공보다 2.6%p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86.3%로 가장 높았고, 판매시설 85.3%, 문화·집회시설 84.5%, 자동차관련시설 8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0.8%로 가장 높았고, 판매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80.6%, 공동주택 7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2-1-1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 시도별,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2023년)

(단위: 개, %)

구분	2023년도						
	대상 건물 수	대상 편의 시설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217,188	6,440,413	5,743,869	89.2	5,099,250	79.2	
시도별	서울	34,440	812,487	747,930	92.1	682,738	84
	부산	16,320	440,244	396,768	90.1	349,422	79.4
	대구	8,018	263,653	237,186	90	214,106	81.2
	인천	12,555	358,048	323,222	90.3	282,107	78.8
	광주	7,711	227,541	203,779	89.6	178,692	78.5
	대전	3,945	134,611	121,277	90.1	109,774	81.6
	울산	2,686	92,885	84,107	90.6	76,757	82.6
	세종	1421	57,530	53,897	93.7	49,854	86.7
	경기	44,352	1,286,189	1,172,564	91.2	1,063,908	82.7
	강원	8,930	288,648	245,749	85.1	213,159	73.9
	충북	8,028	231,005	203,961	88.3	179,874	77.9
	충남	11,208	343,658	303,847	88.4	269,117	78.3
	전북	11,212	391,752	341,557	87.2	294,994	75.3
	전남	10,722	361,499	305,110	84.4	258,609	71.5
	경북	14,782	468,721	406,321	86.7	359,225	76.6
	경남	15,111	523,647	456,515	87.2	393,964	75.2
	제주	5,747	158,295	140,106	88.5	122,950	77.7
시설 주체별	공공시설	9,891	594,430	506,879	85.3	436,863	73.5
	민간시설	181,100	5,845,933	5,237,017	89.6	4,662,387	79.8
건물 유형별	1종 근린생활시설	39,490	1,093,733	940,527	86	828,618	75.8
	2종 근린생활시설	16,910	318,018	280,497	88.2	253,430	79.7
	문화·집회시설	1,669	108,993	98,602	90.5	88,470	81.2
	종교시설	4,586	123,996	111,862	90.2	99,826	80.5
	판매시설	1,504	75,857	68,584	90.4	61,358	80.9
	의료시설	2,619	202,971	187,048	92.2	168,367	83
	교육연구시설	13,240	849,633	772,834	91	685,629	80.7
	노유자 시설	17,968	837,708	727,696	86.9	637,968	76.2
	수련시설	588	38,143	33,966	89	29,938	78.5
	운동시설	1,075	31,072	28,904	93	26,983	86.8
	업무시설	13,987	760,783	687,850	90.4	609,636	80.1
	숙박시설	2,170	105,803	94,988	89.8	84,444	79.8
	공장	4,850	193,409	171,360	88.6	156,740	81
	자동차관련시설	3,353	30,590	28,632	93.6	26,124	85.4
	방송통신시설	76	4,576	4,071	89	3,578	78.2
	교정시설	10	535	485	90.7	422	78.9
	묘지관련시설	135	4,644	4,166	89.7	3,787	81.5
	관광휴게시설	191	8,409	7,980	94.9	7,339	87.3
	장례식장	292	19,031	16,716	87.8	14,702	77.3
	공원	2,488	53,777	42,298	78.7	37,955	70.6
	공동주택	63,194	1,548,422	1,407,681	90.9	1,250,048	80.7
	기숙사	596	30,310	27,149	89.6	23,888	78.8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자재장애인협회(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153, 154, 531, 537.

- 2023년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9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92.1%, 울산 9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세종이 86.7%로 가장 높았고 서울 84.0%, 울산 8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주체별로 살펴보면, 설치율은 민간시설이 89.6%로 공공시설보다 4.3%p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설치율도 민간이 공공보다 6.3%p 높게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관광휴게시설이 94.9%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관련시설 93.6%, 운동시설 93.0%, 의료시설 9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관광휴게시설 87.3%로 가장 높았고, 운동시설 86.8, 자동차관련시설 8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5) 이동 편의시설 설치

〈표 12-1-13〉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p)

구분		전국	8개 특별·광역시도 지역						9개 도지역				
		2021	2016	2017	2019	2021	2023	증감	2018	2020	2021	2022	증감
교통수단	버스차량	90.0	89.1	90.7	94.1	95.1	95.9	0.8	86.7	88.4	86.6	87.0	0.4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	96.0	91.7	94.2	95.4	96.0	97.3	1.3	79.6	86.6	93.1	97.2	4.1
	철도차량	98.9	93.8	93.3	98.6	98.9	99.4	0.5	98.6	98.6	98.9	99.1	0.2
	항공기	73.7	98.7	79.9	72.6	73.7	73.9	0.2	69.7	73.7	73.7	73.9	0.2
	여객선	37.8	17.6	52.0	30.5	37.8	74.9	37.1	34.3	35.4	38.4	41.2	2.8
	평균	79.3	78.2	82.0	78.3	80.3	88.3	8.0	73.8	76.5	78.1	79.7	1.6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64.0	56.6	59.7	66.0	69.2	69.9	0.7	63.3	67.1	62.5	68.3	5.8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	89.9	83.6	88.5	90.9	90.9	90.9	-	85.8	87.4	87.6	90.7	3.1
	철도역사	82.5	78.8	81.1	86.5	88.4	83.8	△4.6	84.1	85.2	81.2	83.4	2.2
	공항여객터미널	86.8	82.9	80.0	83.1	86.0	93.7	7.7	84.3	88.3	88.2	90.2	2.0
	여객선터미널	82.2	71.3	87.4	87.8	88.3	89.5	1.2	81.8	81.2	80.6	82.2	1.6
	버스정류장	45.4	44.4	52.6	56.9	57.1	61.7	4.6	32.8	34.6	34.9	36.2	1.3
	평균	75.1	69.3	74.9	78.5	88.0	81.6	△6.4	72.0	74.0	72.5	75.2	2.7
보행 환경		77.6	72.0	78.0	81.3	84.1	84.7	0.6	64.2	65.9	69.9	70.5	0.6
전체 평균		77.3	73.1	78.3	79.4	81.5	84.9	3.4	70.0	72.1	73.5	75.1	1.6

- 주: 1) 2016년(전국)의 기준적합설치율은 2019년(8개 특별·광역시) 조사범위와 동일하게 재산정한 수치임
 2) 2018년의 기준적합설치율은 "교통약자 이용정보 편의서비스 제공" 수치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수치임
 3) 2019년(8개 특별·광역시), 2020년(9개도지역)
 4) 2021년(8개 특별·광역시 및 9개 도지역)
 5) 2022년(9개 도지역), 2023년(8개 특별·광역시)
 6) 2023년의 기준적합설치율은 이동편의시설 유형에 따라 조사범위가 상이하
 · 8개 특별·광역시 내 표본조사: 버스차량, 버스정류장, 보행환경
 · 8개 특별·광역시 내 전수조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
 · 전국 전수조사: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도시 및 광역철도 역사, 철도역사

- 자료: 1) 국토교통부(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89.
 2) 국토교통부(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91.
 3)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54.
 4) 국토교통부(2023).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54.
 5) 국토교통부(2024).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59.

- 2023년 8개 특별·광역시도 기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은 84.9%임
 · 8개 특별·광역시도 기준 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88.3%이며, 철도차량 99.4%,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차량 97.3% 등의 순임
 · 8개 특별·광역시도 기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은 81.6%이며, 공항여객터미널 93.7%,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가 90.9% 등의 순임

〈표 12-1-14〉 교통약자 이용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단위: %)

구분		버스	걸어서 (또는 휠체어이용)	지하철	자가용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탑승가능특 정차)	교통약자 지원차량	일반택시	기타	무료 셔틀버스
지역 내	전체	36.1	28.4	19.5	8.8	4.2	1.5	1.1	0.3	0.1
	비교통약자	44.7	25.1	17.6	11.3	0.0	0.0	0.7	0.4	0.2
	교통약자	전체	32.4	29.8	20.3	7.7	6.0	2.2	1.3	0.2
		장애인	24.3	18.1	24.5	11.0	15.0	5.5	1.0	0.5
		지체	24.9	14.9	27.6	16.3	14.9	0.5	0.5	0.5
		시각	13.9	28.7	11.1	3.7	21.3	17.6	1.9	0.9
		청각	35.6	13.3	33.3	6.7	6.7	3.3	1.1	0.0
		복합	0.0	0.0	0.0	0.0	100.0	0.0	0.0	0.0
		임산부	33.3	29.5	21.0	12.9	0.0	0.0	3.3	0.0
		고령자	40.0	41.7	15.7	1.9	0.0	0.7	0.0	0.0

구분		승용차	기차 (KTX, 새마을호)	고속(시외) 버스	장애인 콜택시	기타	교통약자 지원차량	일반택시	비행기
지역 간	전체	64.5	14.8	14.0	3.3	2.4	0.8	0.2	0.1
	비교통약자	68.3	13.1	14.7	0.0	3.7	0.0	0.0	0.2
	교통약자	전체	62.8	15.5	13.6	4.7	1.8	1.2	0.3
		장애인	45.9	23.7	10.6	12.1	3.9	3.1	0.8
		지체	47.4	20.2	14.6	14.1	3.3	0.0	0.5
		시각	46.8	21.3	6.4	13.8	1.1	9.6	1.1
		청각	40.0	36.3	5.0	5.0	8.8	3.8	1.3
		복합	100.0	0.0	0.0	0.0	0.0	0.0	0.0
		임산부	91.7	6.9	1.5	0.0	0.0	0.0	0.0
		고령자	64.4	12.1	22.7	0.0	0.7	0.0	0.0

주: 1) '지역 내'는 전체 응답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질문함
 2) '지역 간'은 타 지역 밖으로 외출 경험이 응답자 1,433명에 한하여 질문함
 3) 교통약자 지원차량에는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등이 포함됨
 4)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된 결과임

자료: 국토교통부(2024).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부록」 p218, 227.

- 지역 내 이동 시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의 비율이 32.4%로 가장 높고, 걸어서(또는 휠체어 이용)와 지하철이 각각 29.8%, 20.3% 등의 순임
 - 장애인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 24.5%로 가장 높았으며, 버스 24.3%, 걸어서(또는 휠체어 이용) 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지하철을(27.6%), 시각장애인은 걸어서(또는 휠체어 이용, 28.7%), 청각장애인은 버스를(35.6%), 복합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100%)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간 이동 시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62.8%로 가장 높았고, 기차 15.5%, 고속(시외)버스 13.6% 등의 순임
 - 장애인 또한 승용차의 이용비율이 45.9%로 가장 높고, 기차 23.7%, 장애인 콜택시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시각, 청각, 복합장애 모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1-15〉 저상버스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대,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보급률
전국	8,038	23.4	9,016	26.2	9,840	27.8	10,828	30.6	11,838	34.0	13,600	38.9
서울	3,332	45.0	3,945	53.3	4,272	57.8	4,412	59.7	4,711	63.7	4,926	66.7
부산	557	22.1	638	25.3	687	27.3	728	28.9	785	31.2	917	36.4
대구	526	34.6	546	33.8	565	34.9	608	37.5	642	41.1	728	46.5
인천	423	17.9	469	19.9	528	22.7	580	26.3	352	16.0	412	18.8
광주	213	20.5	215	20.6	261	25.0	297	29.7	325	31.1	394	37.7
대전	279	27.5	289	28.4	318	31.3	339	33.4	385	37.1	412	39.7
울산	96	11.6	101	12.1	104	12.3	103	12.1	104	11.9	127	14.6
세종	54	23.0	66	23.2	68	27.9	100	37.3	95	37.4	123	46.4
경기	1,343	12.7	1,422	13.4	1,608	14.1	2,112	19.2	2,728	25.7	3,442	32.1
강원	193	34.8	187	34.3	187	36.1	203	39.7	186	38.4	204	41.9
충북	122	20.8	131	20.6	128	20.1	137	21.5	163	25.5	217	33.3
충남	61	7.0	74	9.2	88	10.0	89	9.9	118	13.1	196	21.7
전북	182	22.0	186	22.4	195	23.5	187	22.9	205	24.4	259	30.5
전남	87	12.1	97	13.4	101	11.5	124	16.8	134	18.6	137	20.3
경북	164	13.9	177	15.0	196	16.2	222	17.3	253	20.8	277	22.7
경남	318	18.7	370	21.6	406	23.6	439	25.2	496	28.8	672	37.9
제주	88	22.6	103	26.5	128	32.9	148	17.8	156	18.8	157	18.9

주: 1) 각 연도 12월 기준임

2) 저상버스 보급률은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시내버스 대수로 나누어 산정함

3) 실제 운행 중인 저상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1) 국토교통부(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3.

2) 국토교통부(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6.

3)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269.

4) 국토교통부(2023).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211.

5) 국토교통부(2024).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59.

- 2023년 저상버스는 총 13,600대로 2022년 대비 1,762대가 증가하였으며, 보급률 또한 2022년 34.0%에서 2023년 38.9%로 향상됨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66.7%로 가장 높았고, 대구 46.5%, 세종 46.4%, 강원 41.9% 등의 순임

〈표 12-1-16〉 특별 교통수단 도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대, %)

구분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운행대수	보급률
2014	2,692	2,298	85.4
2015	2,726	2,601	95.4
2016	2,731	2,820	103.3
2017	2,327	2,932	126.0
2018	2,699	3,187	118.1
2019	4,697	3,457	73.6
2020	4,694	3,914	83.4
2021	4,738	4,074	86.0
2022	4,587	4,268	93.0
2023	4,535	4,600	101.4
서울	558	699	125.3
부산	312	201	64.4
대구	214	199	93.0
인천	256	215	84.0
광주	127	127	100.0
대전	131	101	77.1
울산	90	90	100.0
세종	24	27	112.5
경기	1,035	1,209	116.8
강원	189	218	115.3
충북	179	173	96.6
충남	235	204	86.8
전북	229	233	101.7
전남	242	207	85.5
경북	305	238	78.0
경남	342	391	114.3
제주	67	68	101.5

주: 1) 2023년 12월 기준임

2)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법정기준대수

- 법정기준대수 산정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의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산정하였음
- 제5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①항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정의)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자료: 1) 국토교통부(2015).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58.
 2) 국토교통부(2016).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65.
 3) 국토교통부(2017). 「2016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68.
 4) 국토교통부(2018).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77.
 5) 국토교통부(2019).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78.
 6) 국토교통부(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7.
 7) 국토교통부(2021).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99.
 8) 국토교통부(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276.
 9) 국토교통부(2023).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217.
 10) 국토교통부(2024).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p166.

- 2023년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4,600대로 법정대수 4,535대 대비 101.4%의 보급률을 나타남
- 8개 특별·광역시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96.9%(1,659대)로 서울이 125.3%로 가장 높고, 세종 112.5%, 광주와 울산이 100%로 법정 기준대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부산은 64.4%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9개 도의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04.2%(2,941대)로 경기도가 116.8%, 강원 115.3%, 경남 114.3%, 전북 101.7%, 제주 10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정보 접근성

(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 수준

〈표 12-2-1〉 장애인 디지털정보화수준 현황 - 연도별

(단위: %)

구분	디지털정보화수준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
2014	60.2	79.9	45.0	59.7
2015	62.5	83.5	47.0	62.4
2016	65.4	88.1	49.8	64.6
2017	70.0	91.6	57.7	71.5
2018	74.6	92.0	66.9	73.6
2019	75.2	92.6	67.8	74.0
2020	81.3	95.4	74.2	81.4
2021	81.7	95.6	74.9	81.5
2022	82.2	96.7	75.2	82.0
2023	82.8	98.0	75.6	82.5
2024	83.5	98.1	76.1	83.7

주: 1)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수준(종합) = 디지털정보화접근 수준(0.2) + 디지털정보화역량 수준(0.4) +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0.4)

2)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3)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4)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화활용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8). 「2017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6-4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9).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6-42.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8-44.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2-48.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2-48.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38-44.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1.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3.

-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2014년 이후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수준(100)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2024년 기준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하였을 때 격차가 가장 적은 부문은 디지털정보화접근수준으로 98.1%이며, 디지털정보화역량수준은 76.1%로 가장 격차가 크게 나타남

〈표 12-2-2〉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 - 연도별

(단위: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 국민	장애인	차이 (%p)	일반 국민	장애인	차이 (%p)	일반 국민	장애인	차이 (%p)	일반 국민	장애인	차이 (%p)	일반 국민	장애인	차이 (%p)
인터넷 이용률	91.9	80.3	▽11.6	93.0	82.9	▽10.1	93.0	85.5	▽7.5	94.0	86.0	▽8.0	94.5	86.7	▽7.8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1.9	92.2	0.3	89.7	86.3	▽3.4	91.4	85.3	▽6.1	90.8	87.5	▽3.3	93.6	90.4	▽3.2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91.2	91.2	-	89.0	85.3	▽3.7	91.8	87.4	▽4.4	87.6	90.9	▽3.3	95.4	88.7	▽6.7
생활서비스 이용률	90.3	87.5	▽2.8	88.3	81.8	▽6.5	89.3	84.4	▽4.9	90.6	85.9	▽4.7	93.5	89.0	▽4.5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66.3	53.9	▽12.4	61.8	46.6	▽15.2	59.2	46.5	▽12.7	58.4	44.3	▽14.1	61.0	49.1	▽11.9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	75.9	67.9	▽8.0	73.3	61.1	▽12.2	72.4	63.7	▽8.7	71.3	61.3	▽10.0	72.8	63.4	▽9.4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	45.5	50.4	4.9	44.2	43.2	▽1.0	38.9	38.7	▽0.2	42.4	36.3	▽6.1	41.0	39.7	▽1.3
온라인 경제활동률	54.3	46.5	▽7.8	63.3	48.6	▽14.7	62.8	48.6	▽14.2	62.5	52.0	▽10.5	59.4	47.2	▽12.2

주: 1) 이용할 수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2) 모바일 스마트 기기(스마트폰/스마트패드/타주변기기 중 하나) 보유율
 3) 본 조사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자'로 규정
 4)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은 정보 및 뉴스 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콘텐츠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5)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및 예약/예매, 금융거래, 행정서비스,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다소 이용하는 편 + 자주 이용)로 측정
 6)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은 직접 만든 정보나 타인이 만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7)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8)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인적관계 유지 및 확장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9) 온라인 사회참여 활동률은 인터넷을 통한 표현적 및 행동적 사회참여 활동 여부(가끔 이용 + 자주 이용)로 측정
 10) 온라인 경제 활동률은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가끔 이용 +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로 측정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66-8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53-5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49-5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50-65.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p52-65.

- 2024년 장애인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률 90.4%, 생활서비스 이용률 89.0%,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 88.7%, 인터넷 이용률 86.7% 등의 순임
 • 일반국민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활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생활서비스 이용률, 온라인 경제활동률 영역에서 2023년에 비해 격차가 커짐
 • 영역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경제활동률 12.2%, 정보생산 또는 공유 활동률 11.9% 등의 순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정보 접근성

〈표 12-2-3〉 웹 접근성 현황 - 연도별, 산업분야별

(단위: 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년 대비 2024년 증감
전체	53.7	60.7	60.8	60.9	65.8	66.7	0.9
도매 및 소매업	57.9	55.3	58.8	57.7	66.1	63.3	△2.8
숙박 및 음식점업	59.2	53.6	63.4	61.1	65.1	62.3	△2.8
정보통신업	51.8	63.0	60.2	60.4	66.0	69.5	3.5
금융 및 보험업	60.7	71.5	69.5	70.2	73.1	70.8	△2.3
부동산업	58.7	60.8	52.6	55.7	58.2	60.5	2.3
교육서비스업	58.2	62.9	64.4	66.2	70.2	76.9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6	59.3	57.5	66.0	62.2	65.7	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2	61.1	68.2	67.2	69.4	73.9	4.5

주: 1)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최신 전국 산업체 조사 산업 분류(대분류 8개) 및 종사자 규모(9개 구간) 기반 모집단 구성
 2) 웹사이트 1000개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조사가이드에 따라 2개 전문가 그룹이 교차 평가
 3) 웹 접근성 국가표준의 24개 항목 준수 조사
 4) 2018년도와 동일기준 미적용(2019년 이전 연도와 기준 차이가 있어 비교불가)
 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19 웹 접근성 실태조사」 p26, 28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0 웹 접근성 실태조사」 p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 웹 접근성 실태조사」 p3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 「2022 웹 접근성 실태조사」 p31-3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2023 웹 접근성 실태조사」 p25.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웹 접근성 실태조사」 p25.

-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 8개 분야와 종사자 규모(9개 구간)를 고려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총 1,0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2024년 평균 66.7점으로 2023년에 비해 평균 0.9점 증가하였음
-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서비스업이 7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73.9점, 금융 및 보험업 70.8점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년도에 비하여 점수가 낮아진 분야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점, 금융 및 보험업 -2.3점으로 나타남

※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

- 웹 및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따라 2015년부터는 모든 기관·기업의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을 반드시 적용해야 함

3) 사법 접근성

(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표 12-3-1〉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96.10.1.－ '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민사	건	32,409	2,692	4,728	5,706	6,007	5,571	5,561	5,761	3,926	1,968
	금액	6,706	645	1,072	1,143	1,101	1,009	1,062	1,084	841	430
형사	건	4,872	317	461	384	359	362	393	343	279	187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민사	건	2,233	1,951	1,979	1,179	1,223	1,268	1,571	1,326	87,059
	금액	547	524	488	316	347	405	634	385	18,739
형사	건	166	80	64	10	7	6	8	3	8,301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자료

-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실적 중 민사소송 건수는 1,326건(금액 385억원), 형사소송 건수는 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장애인 무료법률구조 전체 실적은 민사소송 87,059건(금액 18,739억원), 형사소송 8,301건임

※※ 장애인 무료법률구조(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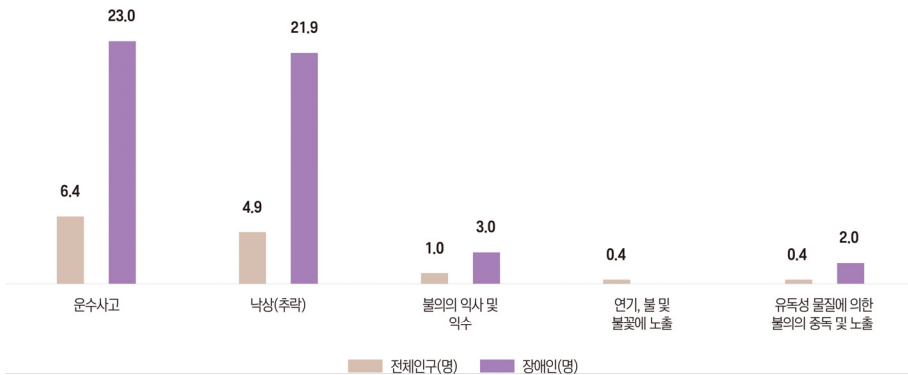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장애인
- 지원내용: 무료로 민·가사 사건의 소송대리 지원(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은 본인부담)



13. 재난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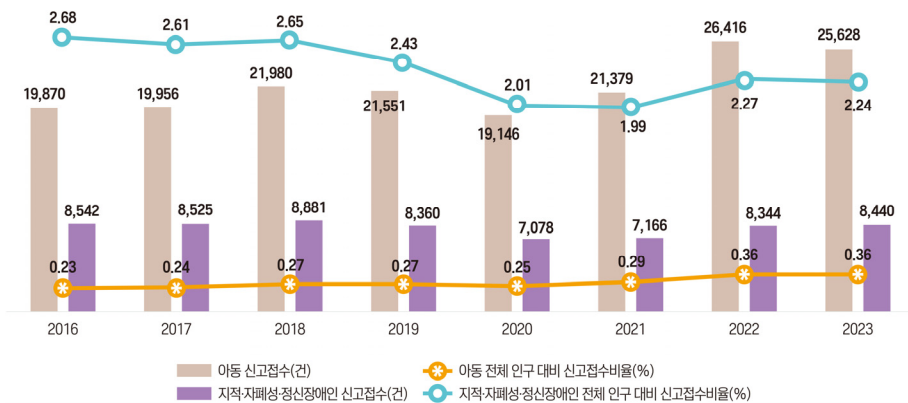
[그림 2-13-1]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2023년) - 전체인구, 장애인구



[그림 2-13-2]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현황 - 연도별



1) 사망원인별 사망률

〈표 13-1-1〉 비의도적 손상 사망 현황(전체인구 비교) - 연도별, 사망원인별

(단위: 10만 명당)

구분	2016		2017		2018		2019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운수사고	10.1	32.5	9.8	30.8	9.1	27.7	8.2	26.4
낙상(추락)	5.1	20.8	5.2	21.2	5.2	21.1	5.2	22.5
불의의 익사 및 익수	1.3	3.9	1.1	3.3	1.1	3.2	0.9	2.6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0.6	1.6	0.6	1.1	0.6	1.5	0.5	2.1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0.6	2.2	0.6	1.9	0.6	2.7	0.4	1.0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전체인구	장애인
운수사고	7.7	25.3	7.1	24.1	6.8	23.1	6.4	23.0
낙상(추락)	5.2	23.7	5.3	24.0	5.3	23.4	4.9	21.9
불의의 익사 및 익수	1.0	2.7	0.9	2.7	0.9	2.6	1.0	3.0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0.5	2.3	0.5	1.2	0.5	2.1	0.4	원자료에서 미산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0.5	1.6	0.5	2.2	0.5	1.3	0.4	2.0

주: 1) 기준년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자료에서 사망 및 말소자, 중요 변수 누락자를 제외(출처: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 p687)
 2) '비의도적 손상'은 교통사고, 추락, 화재, 익사, 중독, 자연 재해 등 불의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을 의미함. 의도적 손상은 자살, 타살, 폭력 등임. (출처: 통계개발원, (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p289)
 3)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순위는 57개 사인(일반사망선택분류표) 중 사망률 순위에 따라 선정되어 작성됨 (출처: 통계청(2024). 202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p53) - 비의도적 손상에 의한 사망: '운수 사고(V01-V99)', '낙상(추락)(W00-W19)', '불의의 익사 및 익수(W65-W74)',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X00-X09)',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X40-X49)'
 4) 사망원인별 사망률(Cause-specific death rate) =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연앙인구 × 100,000. 특정 사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한 지표임. (출처) 통계청(2024). 202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p54.

자료: <전체인구>

- 통계청(2021).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43.
- 통계청(2022).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45.
- 통계청(2023).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45.
- 통계청(2024).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45.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8). 「2016년도 장애인 건강 통계」 p448.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19). 「2017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 p420.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0).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 p386.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1). 「2019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 p576.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2).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 p588, 626.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3).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 p664.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4). 「2022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 p690.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2025). 「2023년도 장애인 건강보건의통계」 p687.

- 2023년 기준 장애인의 비의도적 사망 원인별 조사망률을 살펴보면, '운수사고' 23.0명, '낙상(추락)' 21.9명, '불의의 익사 및 익수' 3.0명,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2.0명으로 나타남
 (※ 2023년 장애인의 사망원인 중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은 30위 밖인 관계로 원자료에서 조사망률을 제공하지 않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운수사고', '낙상(추락)'은 2022년 대비 2023년 감소한 반면,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은 증가함
 • 전체인구와 장애인의 비의도적 사망 원인별 조사망률 격차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인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낙상(추락)'과 '운수사고'의 격차는 각각 17.0명, 16.6명으로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장애인 안전시설

〈표 13-2-1〉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연도별, 시설유형별

(단위: 개, %)

구분	2008년도					2013년도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유도 및 안내 설비	5,612	1,389	24.8	896	16.0	16,237	8,523	52.5	7,720	47.5
경보 및 피난 설비	5,612	3,824	68.1	1,339	23.9	32,564	25,522	78.4	19,840	60.9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	17,770	9,137	51.4	5,263	29.6	28,508	9,032	31.7	7,459	26.2
승강기	173,763	152,065	87.5	138,852	79.9	73,350	70,813	96.5	68,211	93.0

구분	2018년도					2023년도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유도 및 안내 설비	116,670	67,068	57.5	63,334	54.3	40,960	39,666	96.8	36,688	89.6
경보 및 피난 설비	97,673	79,105	81.0	70,247	71.9	95,312	78,244	82.1	49,973	52.4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	81,215	51,378	63.3	47,616	58.6	76,557	39,082	51	34,997	45.7
승강기	86,054	80,734	93.8	77,148	89.7	500,148	481,740	96.3	459,706	91.9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p127, 130.

2)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p115, 325.

3)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 p114, 163.

- 2023년 기준 장애인 안전시설 유형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유도 및 안내설비' 96.8%, '경보 및 피난설비' 82.1%,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블록' 51.0%, '승강기' 96.3%임

• 연도별로 살펴보면, '주출입구 접근로 점자 블록'을 제외한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율이 2018년 대비 202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안전시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2.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안전시설 종류로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았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

(단위: 개, %)

구분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40,960	39,666	96.8	36,688	89.6	95,312	78,244	82.1	49,973	52.4
시설주체										
공공시설	8,753	8,510	97.2	8,020	91.6	14,124	12,074	85.5	7,858	55.6
민간시설	32,207	31,156	96.7	28,668	89.0	81,188	66,170	81.5	42,115	51.9
계	43,339	38,111	87.9	37,689	87.0	93,679	76,796	82.0	49,274	52.6
건물유형										
1층 근린생활시설	-	-	-	-	-	4,420	3,117	70.5	2,053	46.5
2층 근린생활시설	56	52	92.9	49	88	176	120	68.2	54	30.7
문화 및 집회시설	3,498	2,224	63.6	2,031	58.1	1,119	1,082	96.7	1,030	92.1
종교시설	-	-	-	-	-	4,040	3,695	91.5	2,349	58.1
판매시설	-	-	-	-	-	2,672	2,456	91.9	1,614	60.4
의료시설	6,176	5,979	96.8	5,589	90.5	6,492	6,300	97.0	4,352	67.0
교육연구시설	17,709	17,178	97.0	15,458	87.3	21,504	20,083	93.4	12,721	59.2
노유자시설	4,162	4,029	96.8	3,764	90.4	4,516	4,001	88.6	2,696	59.7
수련시설	-	-	-	-	-	800	660	82.5	462	57.8
운동시설	-	-	-	-	-	-	-	-	-	-
업무시설	8,753	5,810	97.2	8,020	91.6	9,804	9,037	92.2	5,863	59.8
숙박시설	-	-	-	-	-	3,048	2,879	94.5	1,900	62.3
공장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56	53	94.6	32	57.1
교정	-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장례식장	-	-	-	-	-	272	260	95.6	176	64.7
공원	2,985	2,839	95.1	2,778	93.1	-	-	-	-	-
공동주택	-	-	-	-	-	34,412	22,730	66.1	13,764	40.0
가속사	-	-	-	-	-	348	323	92.8	208	59.8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2,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안전시설 종류로 턱받이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407-524, 397-395.

- 2023년 기준 유도 및 안내설비와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은 공공시설보다 민간시설에서 높게 나타났다
- 유도 및 안내설비의 설치율은 업무시설 97.2%, 교육연구시설 97.0%,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96.8% 등의 순으로 높음
-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은 의료시설 97.0%, 문화 및 집회시설 96.7%, 장례식장 95.6% 등의 순으로 높음



〈표 13-2-2〉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현황 - 시설주체별, 건물유형별(계속)

(단위: 개, %)

구분		점자블록					승강기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 설치율
계		76,557	39,028	51.0	34,997	45.7	500,148	481,740	96.3	459,706	91.9
시설 주체	공공시설	29,394	14,922	50.8	13,090	44.5	22,248	21,976	98.8	21,264	95.6
	민간시설	47,163	24,106	51.1	21,907	46.5	477,900	459,764	96.2	438,442	91.7
계		75,811	39,334	51.9	34,695	45.8	500,130	481,649	96.3	459,706	91.9
건물 유형	1종 근린생활시설	31,647	12,682	40.1	10,910	34.5	33,624	32,831	97.6	31,629	94.1
	2종 근린생활시설	114	5	4.4	4	3.5	135	118	77.1	107	69.9
	문화 및 집회시설	2,752	2,530	91.9	1,729	62.8	10,467	10,215	97.6	9,828	93.9
	종교시설	-	-	-	-	-	-	-	-	-	-
	판매시설	-	-	-	-	-	9,126	8,836	96.8	8,516	93.3
	의료시설	7,857	5,138	65.4	4,719	60.1	22,752	22,269	97.9	21,401	94.1
	교육연구시설	12,465	8,374	67.2	7,678	61.6	81,972	79,774	97.3	76,342	93.1
	노유자시설	3,390	2,141	63.2	1,935	57.1	52,245	50,744	97.1	48,555	92.9
	수련시설	-	-	-	-	-	2,925	2,848	97.4	2,764	94.5
	운동시설	-	-	-	-	-	-	-	-	-	-
	업무시설	7,353	5,566	75.7	5,067	68.9	106,110	101,565	95.8	96,882	91.3
	숙박시설	2,268	1,326	58.5	1,232	54.3	6,570	6,376	97.1	6,103	92.9
	공장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27	27	100.0	27	100.0
	방송통신시설	-	-	-	-	-	414	399	96.4	378	91.3
	교정	-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장례식장	501	236	47.1	217	43.3	1,548	1,508	97.4	1,442	93.2
	공원	7,464	1,336	17.9	1,204	16.1	-	-	-	-	-
	공동주택	-	-	-	-	-	172,215	164,139	95.3	155,732	90.4
	기숙사	-	-	-	-	-	-	-	-	-	-

주: 1) 설치율 = 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2) 적정설치율 = (적정설치 수 / 설치기준 항목 수) * 100

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2, 행정안전부)에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안전시설 종류로 턱받이기, 연석경사로,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전과 관련이 있는 승강기, 유도 및 안전설비, 경보 및 파난설비, 점자블록을 안전시설로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3). 「202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p407-524, 397-395.

- 점자블록의 설치율은 문화 및 집회시설 79.4%, 업무시설 75.7%, 교육연구시설 67.2% 등의 순으로 높음
- 승강기의 설치율은 자동차관련시설 100%, 의료시설 97.9%, 1층 근린생활시설 97.6% 등의 순으로 높음

3) 장애인 보호구역

〈표 13-3-1〉 보호구역 지정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2012	15,730	15,136	566	28
2013	16,105	15,444	626	35
2014	16,537	15,799	697	41
2015	16,995	16,085	859	51
2016	17,531	16,355	1,107	69
2017	17,939	16,555	1,299	85
2018	18,494	16,765	1,639	90
2019	18,941	16,912	1,932	97
2020	19,269	16,896	2,287	86
2021	19,551	16,759	2,673	119
2022	19,954	16,641	3,194	119
2023	20,304	16,490	3,679	135
서울	1,898	1,700	184	14
부산	931	846	83	2
대구	822	750	66	6
인천	915	669	238	8
광주	490	421	58	11
대전	601	458	139	4
울산	460	326	132	2
세종	137	128	9	-
경기	4,372	3,830	505	37
강원	960	756	201	3
충북	1,174	721	447	6
충남	1,865	1,058	799	8
전북	1,040	984	55	1
전남	1,166	1,048	114	4
경북	1,585	1,236	347	2
경남	1,396	1,222	170	4
제주	492	337	132	23

주: 1) 2023년 12월 말 기준

2) 보호구역은 어린이(1995년), 노인(2008년), 장애인(2012년) 순으로 지정됨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14.11.19.)'에 의하면,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복지시설)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2024),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p252-253.

- 2023년 기준 지정된 보호구역은 총 20,304개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보호구역별로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이 16,490개소로 가장 많고 장애인 보호구역이 135개소로 가장 적음
- 장애인 보호구역은 경기도가 37개소로 가장 많고, 제주 23개소, 서울 14개소 순인 반면, 세종은 한 개도 지정되지 않음



4)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표 13-4-1〉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연도별

(단위: 명, 건, %)

구분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체 인구수	신고접수	미해제	전체 인구 대비 신고접수 비율	전체 인구수	신고접수	미해제	전체 인구 대비 신고접수 비율
2016	8,736,051	19,870	4	0.23	318,205	8,542	3	2.68
2017	8,480,447	19,956	4	0.24	326,776	8,525	2	2.61
2018	8,176,335	21,980	4	0.27	335,760	8,881	7	2.65
2019	7,928,907	21,551	8	0.27	344,594	8,360	15	2.43
2020	7,710,946	19,146	13	0.25	351,435	7,078	10	2.01
2021	7,483,944	21,379	79	0.29	359,421	7,166	33	1.99
2022	7,271,460	26,416	58	0.36	367,538	8,344	29	2.27
2023	7,077,206	25,628	72	0.36	376,721	8,440	42	2.24

주: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 아동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연령불문)를 포함함

2) 전체 인원수는 해당연도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총 인구수를 의미함

3) 신고접수는 발생년도와 무관하며, 과거 발생건에 대한 당해연도 접수건을 포함함

4) 미해제는 계속해서 추적·수사중인 사건을 의미하며, 접수연도와 관계없이 실종발생 당해연도 기준으로 산출함. 이에 최근 연도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음

5) 미해제 현황은 2022년 12월 말 기준임

6) 전체 인구 대비 신고접수 비율은 내부연구진에서 산출함

자료: 경찰청(2024), 『2023 경찰통계연보』 p102.

- 2023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접수 건수는 8,440건으로 2022년에 비해 96건 증가함

• 2023년 기준 실종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미해제 건수는 42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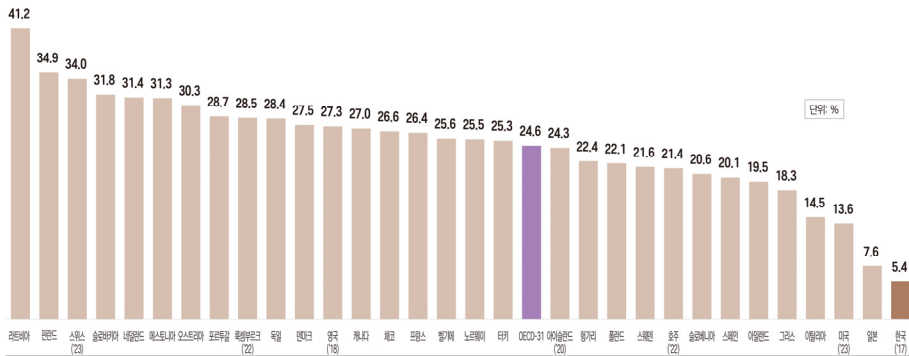
• 전체 인구 대비 실종 신고접수 비율을 살펴보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2022년 2.24%로 아동 0.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Ⅲ 국외통계

1. OECD 회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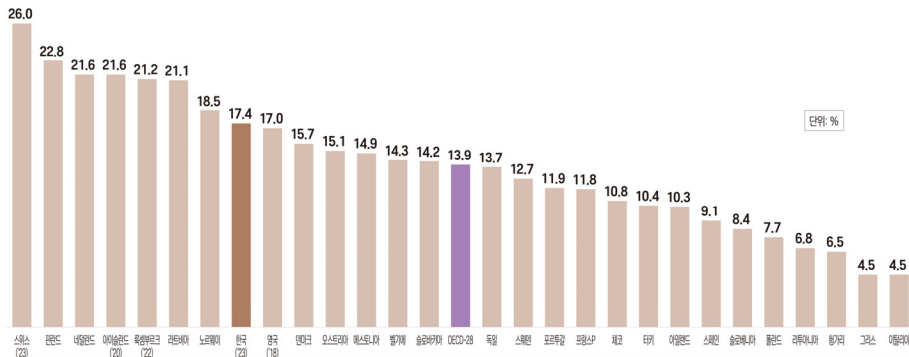
[그림 3-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2024년)



[그림 3-1-2]

OECD 국가 장애인 교육수준 - 고등교육 비율(16-64세,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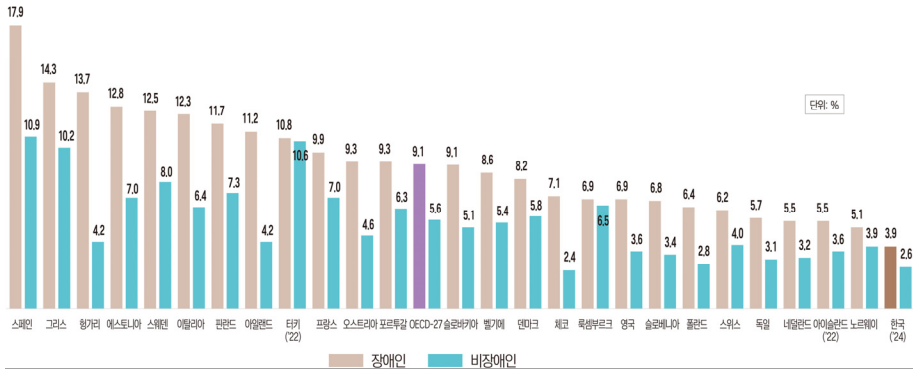


- 2024년 OECD 국가(31개 국가)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24.6%이며,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2017년 기준)은 5.39%임
-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장애인 출현율을 보이는 반면, 한국(5.4%), 일본(7.6%)은 출현율이 낮은 편임
- 2022년 OECD 국가의 장애인 고등교육 비율은 13.9%이며, 한국은 17.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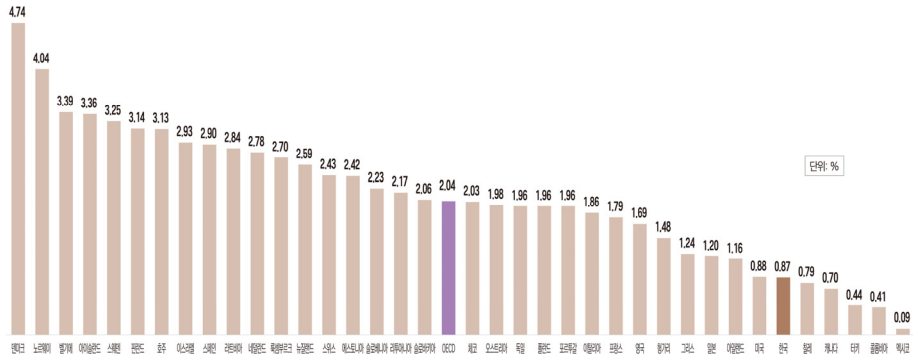
[그림 3-1-3]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24년)



[그림 3-1-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2021년)



- 2024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실업률은 9.1%로 비장애인 5.6%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3.9%으로 비장애인 2.6% 보다 1.3%p 높음(2024년 기준)
- 2021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2.04%로 한국의 0.87%에 비해 약 2.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장애인복지지출은 유럽 주요국은 물론 일본의 장애인복지지출 1.20%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국가들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1) 장애인구

(1) 장애출현율

〈표 14-1-1〉 OECD 국가 장애인 출현율 (2024)

(단위: %)

구 분	전체(16세이상)	16-64세 이하		16-64세 이하	16-64세 이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벨기에	25.6	23.4	27.7	21.1	19.4	22.8
체코	26.6	24.3	28.6	16.9	16.5	17.3
덴마크	27.5	24.8	30.1	22.9	19.6	26.2
독일	28.4	26.4	30.4	19.4	18.4	20.4
에스토니아	31.3	28.9	33.4	22.1	22.9	21.2
아일랜드	19.5	18.6	20.4	15.3	14.5	16
그리스	18.3	16.6	19.8	6.6	6.3	6.9
스페인	20.1	17.6	22.5	14.2	13	15.4
프랑스 ^p	26.4	23.9	28.7	19.7	17.4	21.9
이탈리아	14.5	12.5	16.5	5.9	5.5	6.2
라트비아	41.2	37.6	44.1	28.9	28.9	28.9
룩셈부르크('22)	28.5	26.5	30.5	24.9	22.8	27.1
헝가리	22.4	19.5	25	12.5	11.9	13
네덜란드	31.4	28	34.9	25.5	22.3	28.8
오스트리아	30.3	28.9	31.7	24.2	23.8	24.7
폴란드	22.1	19.9	23.9	13.4	13.1	13.7
포르투갈	28.7	23.8	33.1	18.2	15.2	21
슬로베니아	20.6	19.6	21.6	14.6	14.7	14.6
슬로바키아	31.8	29.7	33.7	21.7	21.2	22.3
핀란드	34.9	31.5	38.3	28.8	26.1	31.6
스웨덴	21.6	18.5	24.7	18.3	15.7	21.1
아이슬란드('20)	24.3	18	30.8	21.9	14.9	29.4
노르웨이	25.5	20.3	30.8	23.3	18	28.8
스위스('23)	34.0	30.5	37.4	29.7	26.8	32.6
영국('18)	27.3	25	29.5	21.8	19.7	23.8
터키	25.3	21.3	29.1	19.4	16.7	22.2
미국('23)	13.6(전 연령)	13.3 ^{㉔3)}	13.8 ^{㉔3)}	11.1(18-64세)	11.0 ^{㉔3)}	11.2 ^{㉔3)}
캐나다('22)	27.0(15세 이상)	23.9	29.9	23.4(15-64세)	20.2	26.6
한국('17)	5.39(전 연령)	6.0 ^{㉔6)}	4.44 ^{㉔6)}	-	-	-
일본	7.6	-	-	23.6 ^{㉔7)}	-	-
호주('22)	21.4(전연령)	21.0	21.8	16.1(15-64세)	15.3	16.9
OECD-31	24.6	22.7	27.6	19.6	17.7	21.3



주: 1) OECD평균은 31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거나 심각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 입기(옷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호주 : 활동 및 핵심활동제한(의사소통, 이동, 자기관리) 및 참여제한(학교 또는 고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이 있는 사람
- 미국 : 듣기, 보기, 집중 및 기억/의사결정(인지), 걷거나 계단 오르기(보행), 옷 입거나 목욕하기(자기관리), 병원 및 쇼핑(자립생활)의 어려움 등에 한 가지 이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한국 : 신체나 정신상에 이상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등록 장애인과 15개 법정장애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추가등록이 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함), 사실 및 재가 장애인을 포함
- 캐나다 :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보기, 듣기, 걷거나 계단 사용(이동)/손 및 손가락 사용, 허리 굽히기 및 물건잡기 등, 학습, 발달, 인지, 기억, 통증, 정서적/정신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예상되어야 함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빈도가 '때때로', '자주', '항상' 있으며, 일상생활의 제한의 난이도 정도가 '어려움', '할 수 없음'과 결합되어야 함)
- 일본 : 신체장애인(재가, 사실 포함-고령자 시설입소자 제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뇌전증과 알츠하이머 포함)을 의미함

3) 각 나라별로 출현을 측정 기준년도는 다음과 같음

- 유럽국가 : 2024년 기준 (자료인출일: 2025.08.13.)
- * 룩셈부르크: 2022년 자료, 아이슬란드: 2020년 자료, 스위스: 2023년 자료, 영국: 2018년 자료 (2025.08.13.인출).
- 미국: 전 연령 및 18-64세 2023년 (자료인출일: 2025.08.13.).
- 한국: 전 연령 2017년
- 호주: 전 연령 및 15-64세, 2018년 자료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3,
- 캐나다: 15세 이상,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4) 장애출현율 = 장애인 인구/전체 인구 * 100

5) 캐나다, 한국, 호주의 경우 연령별 공표 단위가 상이하여 별도 기재함

6) 한국의 경우, 성별 장애출현율은 사실 거주 장애인은 제외함, 재가 장애인임.

- 2020,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을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추정수를 제시하지 않음 (장애인실태조사, 2023). 2017년 이후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은 제시되지 않음.

7) 일본: 18세 이상-65세 미만

8) p: 잠정치

자료: 1)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 다운로드일: 2025-08-13)

2)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2

3)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2023

4) 한국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2017.

5) 미국 - U.S. Census Bureau, "Disability Characteristics,"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1-Year Estimates Subject Tables, Table S1810, C18101, 2023. <https://data.census.gov/table/ACST1Y2023.S1810?q=disability+by+sex>. 다운로드일: 2025-08-14

6) 일본 - 내각부, 「2024 障害者白書」, 2024.

- 2024년 OECD 국가(31개 국가) 장애인 출현율은 평균 24.6%이며,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2017년 기준)은 5.39%임
- * 한국(5.39%)과 일본(7.6%)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율을 보임

※※ 한국의 2017년 장애인 출현율

- 한국의 2017년 장애인 출현율(재가+시설 장애인 포함)은 5.39%, 2014년 5.6%, 2011년 5.6%에 비해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전체 연령 기준).
- * 인구 증가폭보다 장애인 증가율이 낮으며, 의료기술의 발달이나 교통사고의 감소 등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에 따라 감소 추이를 보임(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성별 장애인 출현율은(재가 장애인 기준) 남성 6.0%, 여성 4.44%임
- * 2020,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는 등록장애인을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추정수를 제시하지 않음 (장애인실태조사, 2023). 2017년 이후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은 제시되지 않음.

※※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 비교 시 주의사항

- 장애인 출현율은 국가별 장애정의 및 조사된 장애측면(손상 중심 또는 활동 및 참여제한 중심 등),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목적, 자연재해, 건강상태 및 만성질환의 추세, 전쟁 및 폭력 사태, 인구학적 노인 증가, 경제 및 빈곤, 접근 가능한 환경 부재, 교육 및 건강상의 기회 부족, 문화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별 장애출현율 단순 비교 시 유의해야 함(WHO & World Bank, 2011; Al Ju'beh, 2017; Thompson, 2017).

〈표 14-1-2〉 OECD 국가 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2024)

(단위: %)

구 분	65세 이상	16-24	25-34	35-44	45-64	65-74	75세 이상
벨기에	40.1	8.6	12.5	19.2	30.8	32.1	49.8
체코	55.2	5.7	9.6	12	26.1	45.3	68.2
덴마크	41.2	11.6	17.9	21.1	30.8	36.9	46.2
독일	55.5	7.5	10.5	13.9	29.9	46.6	65.6
에스토니아	58.5	13.2	13.4	15.9	32.6	50.8	67.7
아일랜드	37.9	8.7	14.2	12.7	20.3	32.4	45.4
그리스	49.6	1.3	3	4.9	10.2	32.2	67.1
스페인	39.8	5.5	8	11.9	20.4	29.6	50.7
프랑스 ^o	45.4	9	12	16.6	28.7	37	55.1
이탈리아	37	2.3	3.4	3.6	8.6	22.2	50.8
라트비아	75.7	13.1	13.5	20.7	42.6	66.5	86.3
룩셈부르크('22)	47.6	13.3	17.7	23.7	33.2	43.6	56.4
헝가리	53.3	4.8	4.8	8.8	18.8	45.8	64.4
네덜란드	50	14	19.9	23.3	34.1	45.2	55.9
오스트리아	52.3	11	14.1	20.3	34.5	45.1	61.5
폴란드	46	5.7	7.1	10.9	19.3	36.4	62
포르투갈	55.7	6.5	9.2	12.9	27.5	45	66.9
슬로베니아	39.2	5.1	6.6	11.1	22.8	34.4	46.8
슬로바키아	68.3	6.1	11.2	13.1	36.2	61.2	83.5
핀란드	50.7	20.8	24.2	25.5	36	42.7	59.6
스웨덴	31.1	15	17.7	16.8	20.9	23.5	38.4
아이슬란드('20)	35.6	13.2	17.3	20	30.3	32.4	40.3
노르웨이	32.9	14.6	18.2	20.3	31.4	31.3	34.7
스위스('23)	49.2	23.5	24.1	26.4	36.1	43.5	55.6
영국('18)	45.5	16.1	16.2	17.8	28.5	37.5	55.3
터키	61.9	6.7	8.9	16.6	34.5	55.4	73.5
미국('23)	32.6	8.6(18-34세) ^{주4)}			12.6	23.9	45.3
캐나다('22)	40.4	20.1 ^{주5)}	20.5		27.7	35.0	47.8
호주('22)	52.5	13.9(15-24세)		10.3	11.5	23.5	42.5
OECD-29(27 ^{주2)})	48.4	10.1	12.8	16.0	27.7	40.6	58.2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 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평균은 29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세부 연령별 평균은 미국, 캐나다는 제외한 27개국 단순 평균함

3) (P)는 잠정치를 의미함

4)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다운로드일: 2025-08-14)

<https://data.census.gov/table?q=disability: ACS 1-Year Supplemental Estimates Subject Tables>

5) 캐나다: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2023

호주: 15-24세-2022년 자료(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3), (자료인출일: 2025-08-14)

유럽국가 : 2024년 기준 (자료인출일: 2025-08-14)

• 룩셈부르크: 2022년 자료, 스위스, 미국: 2023년 자료, 아이슬란드: 2020년자료, 호주: 2022년 자료, 영국: 2018년 자료 (다운로드일: 2025-08-14)

4) 장애출현율 = 장애인 인구/전체 인구 * 100

5) 캐나다, 미국의 경우 연령별 공표 단위가 상이하여 별도 표시하였음

자료: 1)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다운로드일 2025-08-14)

2)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3

3)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2023

4) 미국 - U.S. Census Bureau, "Disability Characteristics."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1-Year Estimates Subject Tables, Table S1810,

- OECD 국가(27개 국가)의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16-24세 10.1%, 25-34세 12.8%, 35-44세 16.0%, 45-64세 27.7%, 65-74세 40.6%, 75세 이상 58.2%로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출현율이 높음

※※ 미국, 캐나다, 호주 연령별 장애출현율

- 미국은 2023년 18-34세 8.6%, 35-64세 12.6%, 65-74세 35.0%, 75세 이상 47.8% 임

캐나다는 2022년 15-24세 20.1%, 25-44세 20.5%, 45-64세 27.7%, 65세-74세 35.0%, 75세 이상 47.8% 임

호주는 2022년 15-24세 13.9%, 25-34세 10.3%, 35-44세 11.5%, 45-64세 23.5%, 65-74세 42.5%, 75세 이상 64.4% 임

※ 참고자료

- 미국 :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 캐나다 : Statistics Canada, 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2022, 2023

호주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People with disability in Australia, 2023

2) 교육

(1)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표 14-2-1〉 OECD 국가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2024): 16-64세

(단위: %)

구 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벨기에	33.7	23.4	14.3
체코	17.0	19.4	10.8
덴마크	30.6	26.7	15.7
독일	22.6	21.5	13.7
에스토니아	26.0	25.5	14.9
아일랜드	28.8	15.8	10.3
그리스	11.5	5.7	4.5
스페인	20.0	13.0	9.1
프랑스P	27.9	21.5	11.8
이탈리아	8.7	4.5	4.5
라트비아	28.9	35.2	21.1
리투아니아	18.1	17.1	6.8
룩셈부르크('22)	33.1	25.2	21.2
헝가리	21.3	12.4	6.5
네덜란드	32.7	26.9	21.6
오스트리아	30.3	27.5	15.1
폴란드	22.0	15.1	7.7
포르투갈	27.1	13.3	11.9
슬로베니아	20.8	17.6	8.4
슬로바키아	23.8	24.6	14.2
핀란드	31.6	31.9	22.8
스웨덴	22.6	21.2	12.7
아이슬란드('20)	29.4	18.4	21.6
노르웨이	29.8	25.0	18.5
스위스('23)	36.5	31.0	26.0
영국('18)	34.8	22.4	17.0
터키	26.2	13.6	10.4
구분	무학초등이하	중고등	대학이상
한국('23, 전 연령)	35.3	47.3	17.4
OECD-28(평균)	26.1	21.5	13.9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 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 평균은 28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는 각 학력수준별 졸업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임

4) 룩셈부르크: 2022년 자료, 아이슬란드: 2020년 자료, 스위스: 2023년 자료, 영국: 2018년 자료

5) 한국: 2023년 자료(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24), 전체 장애 인구 기준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HLTH_SILC_07 (다운로드일 2025-08-14))

- OECD 국가의 2024년 근로가능연령대(16-64세) 학력 수준별 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ISCED 0-2) 졸업 인구 중 26.1%, 중등 교육(ISCED levels 3-4)은 21.5%, 고등교육(ISCED levels 5-8)은 중 13.9%로 나타남
 -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장애인의 비율은 낮아지는 편임

※※ OECD국가는 학력수준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연결할 수 있음



(2) 청년장애인(16-29세) 교육수준별 인구

〈표 14-2-2〉 OECD 국가 청년장애인 교육수준별 인구(2024년): 16-29세 이하

(단위: %)

구 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
벨기에	14.1	9.7	8.9
체코	7.2	7.3	8.9
덴마크	17.0	15.7	10.7
독일	9.8	8.5	7.4
에스토니아	14.6	14.6	10.6
아일랜드	15.5	10.0	9.7
그리스	3.3	1.2	1.8
스페인	9.0	5.3	3.2
프랑스P	12.1	9.7	6.1
이탈리아	4.3	2.2	1.0
라트비아	14.2	13.9	12.0
리투아니아	7.2	5.9	4.7
룩셈부르크('22)	21.3	10.0	15.0
헝가리	8.7	3.2	1.1
네덜란드	17.5	14.8	13.3
오스트리아	12.8	13.6	7.7
폴란드	8.6	5.9	2.8
포르투갈	8.4	7.0	4.9
슬로베니아	6.0	6.2	2.9
슬로바키아	7.6	8.1	7.1
핀란드	24.3	26.5	21.7
스웨덴	15.5	18.5	11.1
아이슬란드('20)	20.5	13.7	10.0
노르웨이	18.0	17.5	14.0
스위스('23)	29.9	23.4	20.3
영국('18)	25.4	16.3	12.9
터키	9.5	6.6	4.6
OECD-27	13.4	10.9	8.7

주: 1)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 입기(물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2) OECD 평균은 27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3)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는 각 학력수준별 졸업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임

4) 룩셈부르크: 2022년 자료, 아이슬란드: 2020년 자료, 스위스: 2023년 자료, 영국: 2018년 자료

자료: Eurostat, EU-SILC(<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HLTH_SILC_07 (다운로드일 2025-08-14))

- OECD 국가의 2024년 16-29세 이하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초등 졸업 이하(ISCED levels 0-2)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13.4%, 중등 교육 10.9%, 고등교육 8.7%임

•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장애인 비율이 낮아지는 편임

※※ OECD국가는 학력수준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연결할 수 있음

3) 고용

(1) 고용률

〈표 14-3-1〉 OECD 국가 장애인 고용률(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벨기에	40.7	45.0	36.6	66.4	71.7	61.0
체코	38.6	43.3	34.2	68.5	77.1	59.6
덴마크	46.7	49.5	44.5	78.1	79.8	76.3
독일	51.5	55.3	47.4	72.1	77.7	66.7
에스토니아	49.5	45.7	52.5	68.6	71.8	65.6
아일랜드	29.8	31.8	27.7	60.9	64.6	57.1
그리스	35.5	44.1	28.6	58.5	69.3	47.5
스페인	44.3	50.8	39.3	60.5	66.3	54.5
프랑스	56.2	60.8	52.7	66.1	71.1	60.9
이탈리아	45.6	54.7	38.1	58.9	69.6	48.2
룩셈부르크	62.5	69.7	56.5	64.9	72.1	57.0
헝가리	23.7	24.0	23.4	61.1	66.9	55.3
네덜란드	42.7	47.0	39.6	80.1	84.3	75.7
오스트리아	60.3	65.8	54.9	75.6	81.2	70.1
폴란드	33.9	36.8	31.3	63.9	71.1	56.6
포르투갈	51.0	54.6	48.3	67.8	70.9	64.5
슬로베니아	47.0	49.9	44.3	68.4	71.4	65.3
슬로바키아	31.9	34.5	29.5	62.6	69.6	55.5
핀란드	60.8	59.9	61.6	73.2	75.4	70.9
스웨덴	66.2	69.0	64.3	75.7	77.4	73.8
영국	47.6	50.5	45.1	75.4	80.4	70.3
아이슬란드	66.9	69.5	65.0	84.0	83.7	84.3
스위스	69.0	74.4	64.9	81.6	87.3	75.4
터키	41.1	61.3	26.5	51.0	71.2	29.5
한국 ^{주4)}	34.0	42.9	22.0	-	-	-
OECD-25	47.7	52.2	43.6	68.5	74.2	62.6

주: 1)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LFS(2011) 및 한국의 연령 기준은 15-64세임

3) 각 국가별 조사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측정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 유럽국가: 2011년에 조사된 LFS(2011)자료로 장애정의는 기본적인 활동들의 어려움 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기본적인 활동에는 보가(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어려움, 듣기(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는데 어려움), 걷거나 계단 오르기, 앉거나 서기, 기억하고/집중하기, 의사소통(남의 말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짐), 손을 내밀거나 받는 것, 구부리는 것, 물건을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잡고/쥐고/돌리는 것 등임

- 한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이며, 동 조사에서의 장애는 2023년 5월 15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의미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4),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5)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 중 장애인 취업자 비율임

자료: 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4.7.22.)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4),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7.7%로 비장애인 68.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34.0%이며, 남성 42.9%, 여성 22.0%임(2023년 기준)

-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인 국가들은 스위스 69.0%, 아이슬란드 66.9%, 스웨덴 66.2% 등임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3)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15-64세 이하)은 69.2%, 남성 76.9%, 여성 61.4% 임



(2)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표 14-3-2〉 OECD 국가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벨기에	65.2	34.8	76.0	24.0
체코	86.4	13.6	96.0	4.0
덴마크	62.7	37.3	75.6	24.4
독일	68.5	31.5	75.0	25.0
에스토니아	88.2	11.8	91.3	8.7
아일랜드	69.3	30.7	77.3	22.7
그리스	92.2	7.8	93.9	6.1
스페인	83.2	16.8	85.6	14.4
프랑스	75.6	24.4	83.7	16.3
이탈리아	81.3	18.7	84.8	15.2
룩셈부르크	76.7	22.6	83.1	16.7
헝가리	74.1	25.9	94.7	5.3
네덜란드	39.3	60.7	52.6	47.4
오스트리아	77.0	23.0	77.0	23.0
폴란드	83.8	16.2	93.5	6.5
포르투갈	82.0	18.0	91.5	8.5
슬로베니아	85.1	14.9	91.8	8.2
슬로바키아	87.3	12.7	96.4	3.6
핀란드	83.0	16.9	86.7	13.2
스웨덴	65.0	35.0	77.2	22.8
영국	68.4	31.2	75.4	24.4
아이슬란드	74.9	24.8	82.3	17.7
스위스	58.6	40.8	69.6	30.1
터키	79.9	20.1	89.9	10.1
한국 ^{주4)}	57.8	42.2	-	-
OECD-24	75.2	24.7	83.4	16.6

주: 1) 24개국의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며, OECD-24 평균은 24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의 평균으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본 자료는 '2011 EU Labour Force Survey'의 원자료 수치를 가공한 것임. 원자료 수치는 무응답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3) LFS(2011) 연령 기준은 15-64세임

4) 한국의 근로형태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전일제, 주36 시간미만 근무의 경우 시간제로 구분함

자료: 1)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4.7.22.)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4),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비율은 평균 75.3%로 비장애인 83.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OECD국가는 취업 장애인 중 100명중 24.6명이, 비장애인은 100명 중 약 16.6명이 평균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함
- 2023년 한국 임금근로 장애인(15-64세) 중 전일제 근로는 57.8%, 시간제 근로는 42.2%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4)

〈표 14-3-3〉 OECD 국가 성별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15-64세, 2011년)

(단위: %)

구 분	남성		여성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벨기에	82.6	17.4	44.5	55.5
체코	92.2	7.8	79.4	20.6
덴마크	77.8	22.2	50.0	50.0
독일	84.8	15.2	48.5	51.5
에스토니아	95.0	-	83.4	16.6
아일랜드	81.0	19.0	55.5	44.5
그리스	95.5	4.5	88.1	11.9
스페인	94.4	5.6	72.1	27.9
프랑스	90.8	9.2	62.5	37.5
이탈리아	91.1	8.9	69.9	30.1
룩셈부르크	94.5	5.0	58.5	40.7
헝가리	77.0	23.0	71.5	28.5
네덜란드	63.8	36.2	17.5	82.5
오스트리아	92.3	7.7	59.1	40.9
폴란드	85.5	14.5	82.1	17.9
포르투갈	87.0	13.0	77.7	22.3
슬로베니아	89.4	10.6	80.6	19.4
슬로바키아	90.6	9.4	84.0	16.0
핀란드	87.4	12.5	79.4	20.5
스웨덴	82.0	18.0	52.6	47.4
영국	83.6	15.9	53.9	45.7
아이슬란드	91.1	-	62.4	37.6
스위스	83.0	16.6	36.8	62.4
터키	89.8	10.2	63.3	36.7
OECD-24	86.8	13.7	63.9	36.0

주: 1) 24개국의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며, OECD-24 평균은 24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본 자료는 '2011 EU Labour Force Survey'의 원자료 수치를 가공한 것임. 원자료 수치는 무응답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3) LFS(2011) 연령 기준은 15-64세임

자료: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검색일: 2024.7.22.)

- OECD 국가 2011년 남성 장애인 취업자 중 전일제 비율은 평균 86.8%, 여성 장애인인 63.9%로 여성장애인의 전일제 비율이 낮음
- OECD 국가의 남성 장애인 취업자 중 시간제 비율은 평균 13.7%, 여성 장애인인 36.0%로 여성장애인의 시간제 비율이 높음



(3) 실업률

〈표 14-3-4〉 OECD 국가 장애인 실업률(15-64세, 2024)

(단위: %)

구 분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벨기에	8.6	10.1	7.4	5.4	5.8	5.0
체코	7.1	6.0	8.2	2.4	2.1	2.7
덴마크	8.2	8.4	8.0	5.8	5.5	6.1
독일	5.7	6.5	4.8	3.1	3.3	2.9
에스토니아	12.8	12.8	12.8	7.0	7.0	6.9
아일랜드	11.2	13.6	8.8	4.2	4.2	4.2
그리스	14.3	-	17.4	10.2	8.0	12.8
스페인	17.9	17.7	18.1	10.9	9.6	12.3
프랑스	9.9	10.8	9.3	7.0	7.2	6.9
이탈리아	12.3	12.2	12.5	6.4	5.8	7.3
룩셈부르크	6.9	8.4	-	6.5	6.5	6.5
헝가리	13.7	12.4	15.3	4.2	4.4	4.1
네덜란드	5.5	5.8	5.2	3.2	3.0	3.4
오스트리아	9.3	9.6	9.0	4.6	5.0	4.1
폴란드	6.4	7.5	5.2	2.8	2.6	3.1
포르투갈	9.3	9.4	9.3	6.3	5.9	6.7
슬로베니아	6.8	8.6	5.0	3.4	3.0	3.8
슬로바키아	9.1	8.3	9.9	5.1	4.6	5.7
핀란드	11.7	14.4	9.6	7.3	8.0	6.5
스웨덴	12.5	14.0	11.4	8.0	7.8	8.2
영국(16-64세) ^{주2)}	6.9	-	-	3.6		
아이슬란드('22)	5.5	6.9	4.3	3.6	3.9	3.3
노르웨이	5.1	7.1	3.8	3.9	3.9	3.9
스위스	6.2	6.4	6.1	4.0	3.7	4.2
터키('22)	10.8	11.3	10.1	10.6	9.0	13.9
한국('24) ^{주3)}	3.9	3.9	3.9	2.6	2.4	2.5
OECD-27	9.14	9.67	8.98	5.58	5.41	6.02

주: 1) 25개국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OECD평균은 25개국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수치로 본 연구자가 단순 평균함

2) 영국: 2024년 2분기 (16-64세)

3) 한국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p.119, p.125」 결과임

4) 장애인 실업률 = (실업자 수/15-64세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1) Eurostat, 'Unemployment rates by level of disability (activity limitation)', lfsa_urgaeadd, 다운로드일: 2025-08-18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5),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2024년 OECD 국가의 장애인 평균 실업률은 9.14%로 비장애인 5.58%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2024년 한국의 장애인 실업률은 3.9%이며, 남성 3.9%, 여성 3.9%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5)
- OECD 국가들 중 장애인 실업률은 스페인 17.9%, 헝가리 13.7% 등 순임
 - ※ 한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4)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15-64세 이하)은 2.5%, 남성 2.6%, 여성 2.4% 임.

4) 재정

(1)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표 14-4-1〉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1.73	2.36	2.55	2.26	2.33	2.39	2.43	2.50	2.56	2.54	2.35	2.25	2.03	2.87	3.12	3.13	3.14	-
오스트리아	2.15	2.45	2.42	2.23	2.27	2.27	2.27	2.29	2.27	2.20	2.12	2.06	2.01	1.99	2.09	1.98	-	-
벨기에	2.62	2.94	2.02	2.11	2.52	2.56	2.67	2.76	2.83	2.90	2.93	3.00	3.10	3.19	3.48	3.39	-	-
캐나다	1.14	1.13	0.94	0.90	0.88	0.84	0.82	0.79	0.77	0.76	0.74	0.73	0.72	0.74	0.75	0.70	0.63	-
칠레	0.87	0.88	0.80	0.71	0.81	0.77	0.74	0.72	0.70	0.74	0.75	0.75	0.74	0.76	1.01	0.79	0.57	0.55
콜롬비아	-	-	-	-	0.05	0.05	0.05	0.05	0.06	0.05	0.07	0.08	0.09	0.08	0.10	0.09	0.09	0.09
코스타리카	-	-	-	-	-	0.05	0.06	0.06	0.06	0.07	0.07	0.33	0.34	0.44	0.44	0.44	0.78	-
체코	2.14	2.20	2.40	2.20	1.96	1.89	1.81	1.82	1.74	1.72	1.72	1.68	1.74	1.83	2.39	2.03	-	-
덴마크	3.67	4.12	3.81	4.42	5.89	5.82	5.82	5.57	5.41	5.22	4.95	4.86	4.58	4.65	4.85	4.74	-	-
에스토니아	-	-	1.54	1.75	2.29	2.16	2.10	2.13	2.11	2.21	2.27	2.23	2.25	2.28	2.59	2.42	-	-
핀란드	4.15	4.94	3.69	3.66	3.88	3.77	3.82	3.83	3.80	3.61	3.44	3.22	3.19	3.18	3.25	3.14	-	-
프랑스	2.06	2.06	1.69	1.80	1.62	1.63	1.66	1.66	1.67	1.68	1.69	1.70	1.71	1.71	1.94	1.79	1.84	-
독일	1.95	2.13	1.88	1.71	1.68	1.64	1.67	1.70	1.70	1.71	1.72	1.76	1.78	1.83	1.99	1.96	-	-
그리스	1.21	0.81	1.48	1.45	1.85	2.01	2.02	1.90	1.90	1.33	1.35	1.27	1.22	1.26	1.34	1.24	-	-
헝가리	-	-	2.61	2.80	2.36	2.12	2.02	1.92	1.91	1.84	1.73	1.63	1.54	1.49	1.53	1.48	-	-
아이슬란드	1.28	1.79	2.16	2.58	2.41	2.55	2.67	2.72	2.83	2.68	2.65	2.87	2.93	3.14	3.52	3.36	-	-
아일랜드	1.72	1.89	1.15	1.45	2.37	2.20	2.09	2.06	1.86	1.42	1.45	1.38	1.35	1.31	1.36	1.16	-	-
이스라엘	-	1.75	2.06	2.39	2.47	2.44	2.46	2.45	2.50	2.52	2.56	2.61	2.76	2.78	3.14	2.93	2.89	3.18
이탈리아	1.88	1.46	1.33	1.47	1.67	1.59	1.73	1.79	1.80	1.78	1.75	1.72	1.72	1.74	1.94	1.86	-	-
일본	0.54	0.63	0.68	0.66	0.89	0.93	0.96	0.97	0.97	1.02	1.04	1.06	1.09	1.12	1.21	1.20	1.23	-
한국	0.23	0.29	0.31	0.50	0.48	0.50	0.53	0.52	0.51	0.53	0.53	0.57	0.61	0.67	0.88	0.87	0.89	-
라트비아	-	0.00	1.58	1.40	2.11	1.94	1.79	1.87	1.94	2.14	2.22	2.22	2.22	2.34	2.57	2.84	-	-
리투아니아	-	-	1.87	1.77	2.27	1.96	1.91	1.82	1.83	2.00	2.04	2.06	2.12	2.10	2.36	2.17	-	-
룩셈부르크	2.88	3.07	3.00	3.32	2.90	2.98	2.94	2.92	2.84	2.75	2.62	2.69	2.68	2.76	3.06	2.70	-	-
멕시코	0.02	0.05	0.06	0.05	0.05	0.04	0.04	0.04	0.03	0.03	0.03	0.05	0.05	0.08	0.09	0.08	0.08	0.08
네덜란드	6.34	3.85	2.80	2.78	2.79	2.73	2.71	2.61	2.52	2.93	2.89	2.84	2.84	2.82	3.01	2.78	-	-
뉴질랜드	2.79	2.60	2.61	2.77	2.52	2.42	2.40	2.51	2.49	2.42	2.37	2.33	2.35	2.37	2.64	2.59	3.20	-
노르웨이	4.63	4.56	4.66	4.29	4.16	3.78	3.69	3.71	3.81	4.30	4.49	4.37	4.25	4.48	4.83	4.04	-	-
폴란드	3.26	5.52	3.43	2.89	2.47	2.40	2.37	2.43	2.35	2.34	2.33	2.22	2.04	1.86	2.03	1.96	-	-
포르투갈	2.30	2.31	2.24	2.11	1.93	1.94	1.79	1.89	1.81	1.78	1.73	1.70	1.68	1.74	2.00	1.96	-	-
슬로바키아	-	1.96	2.21	1.44	1.80	1.81	1.86	1.87	1.86	1.82	1.86	1.92	1.83	1.87	2.10	2.06	-	-
슬로베니아	-	-	2.61	2.39	2.28	2.21	2.14	2.10	2.01	1.97	1.90	1.79	1.83	1.92	2.27	2.23	-	-
스페인	2.22	2.41	2.21	2.35	2.50	2.47	2.40	2.41	2.42	2.39	2.39	2.39	2.35	2.53	3.07	2.90	-	-
스웨덴	5.18	4.69	4.93	5.23	4.11	4.00	3.86	3.95	3.90	3.83	3.70	3.60	3.54	3.38	3.92	3.25	-	-
스위스	2.09	2.46	2.43	2.70	2.39	2.46	2.35	2.45	2.28	2.33	2.34	2.41	2.35	2.39	2.69	2.43	-	-
터키	0.17	0.18	0.24	0.28	0.43	0.46	0.51	0.52	0.50	0.48	0.51	0.48	0.45	0.48	0.50	0.41	-	-
영국	2.00	2.51	2.19	2.08	1.97	1.98	1.97	1.93	1.81	1.83	1.82	1.85	1.72	1.73	1.79	1.69	1.68	-
미국	0.97	0.97	0.89	1.01	1.20	1.20	1.22	1.21	1.17	1.13	1.10	1.05	1.01	0.98	0.97	0.88	0.82	0.81
OECD	2.16	2.17	1.98	2.00	2.07	2.02	2.01	2.01	1.99	1.97	1.95	1.94	1.92	1.97	2.18	2.04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표 14-4-2)와 현물급여(benefits in kind)(표 14-4-3)를 합한 수치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4)

- 2021년 OECD 국가의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규모는 GDP 대비 2.04%로 한국의 0.87%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준임
- 국가별로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4.74%), 노르웨이(4.04%)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2배 수준인 반면, 멕시코(0.08%), 콜롬비아(0.09%)는 매우 낮은 편임

※※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복지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장애인관련 지출은 근로무능력 항목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됨. 현금급여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되며, 현물급여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가 포함됨



(2)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표 14-4-2〉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1.71	2.00	2.05	1.82	1.94	1.99	2.02	2.07	2.11	2.07	1.95	1.90	1.85	1.95	1.94	1.77	1.71	-
오스트리아	1.94	2.21	2.15	1.90	1.82	1.82	1.82	1.82	1.78	1.71	1.64	1.58	1.53	1.49	1.54	1.44	-	-
벨기에	2.57	2.14	1.68	1.71	2.05	2.08	2.15	2.25	2.32	2.35	2.37	2.45	2.56	2.60	2.89	2.82	-	-
캐나다	1.14	1.13	0.94	0.90	0.88	0.84	0.82	0.79	0.77	0.76	0.74	0.73	0.72	0.74	0.75	0.70	0.63	-
칠레	0.70	0.69	0.79	0.70	0.81	0.76	0.74	0.71	0.69	0.73	0.74	0.75	0.74	0.75	1.00	0.78	0.56	0.54
콜롬비아	-	-	-	-	0.05	0.05	0.05	0.05	0.06	0.05	0.07	0.08	0.09	0.08	0.10	0.09	0.09	0.09
코스타리카	-	-	-	-	0.05	0.05	0.06	0.06	0.07	0.07	0.33	0.34	0.44	0.44	0.44	0.44	0.78	-
체코	2.14	2.06	2.22	2.04	1.86	1.80	1.72	1.72	1.64	1.64	1.63	1.59	1.64	1.73	2.28	1.91	-	-
덴마크	2.96	3.23	2.77	3.18	3.59	3.50	3.45	3.29	3.16	3.03	2.82	2.75	2.68	2.73	2.92	2.87	-	-
에스토니아	-	-	1.39	1.61	1.96	1.86	1.83	1.86	1.83	1.91	1.94	1.93	1.95	1.95	2.23	2.06	-	-
핀란드	3.75	4.21	2.96	2.80	2.83	2.67	2.64	2.60	2.52	2.39	2.23	2.08	2.01	1.95	1.98	1.90	-	-
프랑스	1.68	1.63	1.54	1.63	1.54	1.55	1.58	1.58	1.59	1.59	1.61	1.62	1.62	1.62	1.85	1.71	1.75	-
독일	1.60	1.65	1.48	1.29	1.25	1.22	1.25	1.28	1.28	1.29	1.30	1.32	1.34	1.37	1.51	1.46	-	-
그리스	1.17	0.78	1.46	1.43	1.84	2.00	2.00	1.86	1.86	1.28	1.30	1.22	1.14	1.22	1.30	1.20	-	-
헝가리	-	-	2.37	2.57	2.15	1.92	1.81	1.71	1.60	1.61	1.55	1.46	1.37	1.32	1.35	1.32	-	-
아이슬란드	0.76	1.14	1.32	1.59	1.71	1.85	1.87	1.89	1.93	1.82	1.92	2.06	2.07	2.20	2.48	2.34	-	-
아일랜드	1.68	1.83	1.12	1.41	2.30	2.13	2.03	2.00	1.81	1.38	1.41	1.35	1.32	1.28	1.32	1.13	-	-
이스라엘	-	1.34	1.63	1.90	2.05	2.01	2.03	2.00	2.05	2.04	2.07	2.09	2.20	2.21	2.42	2.28	2.23	2.48
이탈리아	1.85	1.41	1.25	1.40	1.57	1.50	1.65	1.70	1.72	1.70	1.68	1.66	1.66	1.67	1.87	1.78	-	-
일본	0.48	0.52	0.53	0.54	0.62	0.63	0.63	0.62	0.61	0.61	0.61	0.61	0.62	0.64	0.66	0.66	0.67	-
한국	0.21	0.23	0.22	0.33	0.32	0.32	0.32	0.33	0.32	0.33	0.32	0.34	0.37	0.46	0.45	0.45	-	-
라트비아	-	0.00	1.26	1.17	1.83	1.63	1.50	1.57	1.61	1.76	1.83	1.85	1.85	1.95	2.19	2.45	-	-
리투아니아	-	-	1.48	1.51	2.00	1.71	1.68	1.60	1.57	1.73	1.78	1.80	1.87	1.85	2.17	1.89	-	-
룩셈부르크	2.68	2.84	2.44	2.35	1.75	1.81	1.77	1.74	1.67	1.61	1.56	1.53	1.49	1.56	1.79	1.46	-	-
멕시코	0.02	0.04	0.06	0.05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5	0.05	0.08	0.09	0.08	0.08	0.08
네덜란드	6.34	3.69	2.60	2.61	2.43	2.38	2.38	2.31	2.19	2.12	2.10	2.06	2.04	1.98	2.11	1.99	-	-
뉴질랜드	2.70	2.60	2.61	2.76	2.47	2.37	2.35	2.46	2.45	2.42	2.37	2.32	2.35	2.37	2.64	2.58	2.68	-
노르웨이	3.93	3.55	3.71	3.53	3.61	3.27	3.20	3.18	3.27	3.73	3.89	3.77	3.68	3.88	4.20	3.50	-	-
폴란드	3.05	5.24	3.40	2.70	2.29	2.22	2.18	2.24	2.16	2.14	2.14	2.08	1.94	1.78	1.95	1.89	-	-
포르투갈	2.25	2.26	2.20	2.06	1.88	1.92	1.77	1.88	1.79	1.77	1.71	1.69	1.66	1.72	1.97	1.94	-	-
슬로바키아	-	1.84	2.05	1.27	1.60	1.61	1.66	1.66	1.64	1.61	1.64	1.68	1.61	1.65	1.87	1.82	-	-
슬로베니아	-	-	2.37	2.18	2.03	1.95	1.85	1.80	1.70	1.68	1.63	1.52	1.55	1.59	1.82	1.70	-	-
스페인	2.17	2.35	2.10	2.17	2.24	2.21	2.15	2.17	2.18	2.16	2.18	2.17	2.12	2.29	2.79	2.64	-	-
스웨덴	4.76	3.45	3.38	3.47	2.23	2.06	2.07	2.08	2.06	2.01	1.95	1.83	1.73	1.63	2.16	1.57	-	-
스위스	1.92	2.18	2.14	2.37	2.14	2.20	2.08	2.18	2.01	2.05	2.05	2.13	2.07	2.11	2.40	2.14	-	-
터키	0.12	0.12	0.23	0.27	0.28	0.27	0.28	0.29	0.27	0.27	0.28	0.26	0.23	0.25	0.28	0.22	-	-
영국	1.81	2.26	1.94	1.73	1.52	1.50	1.49	1.46	1.50	1.51	1.51	1.54	1.40	1.35	1.35	1.29	1.28	-
미국	0.97	0.97	0.89	1.01	1.20	1.20	1.22	1.21	1.17	1.13	1.10	1.05	1.01	0.98	0.97	0.88	0.82	0.81
OECD	2.02	1.89	1.71	1.69	1.70	1.66	1.64	1.63	1.60	1.58	1.57	1.56	1.54	1.56	1.74	1.61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향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 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4))

- OECD 국가의 경우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비율은 1990년대 2.0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 1.61%로 나타남

- 한국은 2021년 0.45% 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1.61%의 약 1/4 수준임
- 한국은 1990년 0.21%에서 2005년에 약 0.34%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1년 0.45% 수준임

(3)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지출 비율

〈표 14-4-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호주	0.02	0.36	0.50	0.44	0.39	0.40	0.42	0.43	0.45	0.48	0.40	0.34	0.19	0.92	1.18	1.36	1.43	-
오스트리아	0.21	0.23	0.27	0.33	0.45	0.45	0.45	0.47	0.49	0.49	0.48	0.49	0.49	0.51	0.55	0.55	-	-
벨기에	0.05	0.80	0.34	0.40	0.48	0.48	0.52	0.51	0.52	0.55	0.56	0.55	0.55	0.59	0.59	0.57	-	-
캐나다	-	-	-	-	-	-	-	-	-	-	-	-	-	-	-	-	-	-
칠레	0.17	0.19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콜롬비아	-	-	-	-	-	-	-	-	-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	-	0.00	-
체코	-	0.15	0.18	0.16	0.10	0.09	0.10	0.10	0.10	0.09	0.09	0.09	0.10	0.10	0.12	0.12	-	-
덴마크	0.71	0.89	1.04	1.24	2.30	2.32	2.37	2.28	2.25	2.19	2.13	2.11	1.90	1.92	1.94	1.86	-	-
에스토니아	-	-	0.15	0.15	0.33	0.29	0.27	0.28	0.28	0.30	0.33	0.31	0.30	0.33	0.37	0.36	-	-
핀란드	0.40	0.73	0.73	0.86	1.06	1.10	1.18	1.23	1.29	1.23	1.21	1.14	1.18	1.23	1.28	1.25	-	-
프랑스	0.38	0.44	0.15	0.17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9	0.09	0.09	-
독일	0.35	0.47	0.40	0.42	0.43	0.42	0.42	0.42	0.42	0.42	0.42	0.43	0.45	0.45	0.49	0.50	-	-
그리스	0.04	0.02	0.02	0.02	0.02	0.02	0.02	0.04	0.04	0.06	0.04	0.05	0.08	0.05	0.04	0.04	-	-
헝가리	-	-	0.24	0.23	0.22	0.20	0.21	0.31	0.23	0.18	0.17	0.18	0.17	0.18	0.16	-	-	-
아일랜드	0.51	0.65	0.84	0.99	0.70	0.70	0.80	0.83	0.90	0.85	0.73	0.81	0.86	0.94	1.04	1.02	-	-
아일랜드	0.04	0.06	0.03	0.04	0.07	0.07	0.06	0.05	0.05	0.03	0.04	0.03	0.03	0.03	0.04	0.03	-	-
이스라엘	-	0.41	0.42	0.48	0.43	0.42	0.44	0.45	0.46	0.48	0.49	0.52	0.56	0.57	0.72	0.64	0.66	0.70
이탈리아	0.03	0.06	0.07	0.07	0.10	0.09	0.09	0.09	0.08	0.08	0.07	0.07	0.07	0.07	0.07	0.08	-	-
일본	0.06	0.11	0.15	0.12	0.27	0.30	0.33	0.35	0.36	0.41	0.43	0.45	0.47	0.49	0.55	0.54	0.56	-
한국	0.02	0.06	0.09	0.17	0.16	0.18	0.20	0.19	0.18	0.20	0.22	0.26	0.26	0.30	0.42	0.42	0.44	-
라트비아	-	-	0.32	0.23	0.28	0.30	0.29	0.30	0.34	0.37	0.38	0.36	0.38	0.38	0.38	0.39	-	-
리투아니아	-	-	0.39	0.27	0.27	0.25	0.23	0.22	0.26	0.27	0.26	0.25	0.25	0.25	0.19	0.27	-	-
룩셈부르크	0.20	0.23	0.56	0.97	1.15	1.17	1.16	1.18	1.18	1.14	1.06	1.16	1.19	1.20	1.27	1.24	-	-
멕시코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네덜란드	-	0.16	0.20	0.16	0.36	0.35	0.34	0.31	0.33	0.81	0.79	0.78	0.80	0.84	0.90	0.78	-	-
뉴질랜드	0.08	0.00	0.00	0.01	0.05	0.05	0.05	0.05	0.04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52	-
노르웨이	0.70	1.01	0.85	0.76	0.54	0.50	0.49	0.53	0.54	0.57	0.60	0.60	0.58	0.61	0.64	0.54	-	-
폴란드	0.21	0.27	0.03	0.19	0.19	0.18	0.19	0.19	0.20	0.19	0.19	0.14	0.11	0.08	0.08	0.07	-	-
포르투갈	0.05	0.05	0.04	0.05	0.05	0.02	0.02	0.02	0.02	0.01	0.02	0.02	0.02	0.02	0.02	0.02	-	-
슬로바키아	-	0.12	0.16	0.18	0.19	0.20	0.20	0.21	0.22	0.21	0.22	0.24	0.23	0.22	0.23	0.24	-	-
슬로베니아	-	-	0.24	0.21	0.25	0.25	0.29	0.30	0.31	0.29	0.27	0.28	0.27	0.33	0.45	0.53	-	-
스페인	0.04	0.06	0.11	0.17	0.25	0.26	0.24	0.23	0.24	0.23	0.22	0.22	0.23	0.24	0.28	0.26	-	-
스웨덴	0.42	1.24	1.55	1.76	1.88	1.93	1.79	1.87	1.84	1.82	1.75	1.78	1.81	1.75	1.76	1.68	-	-
스위스	0.17	0.28	0.29	0.33	0.25	0.26	0.27	0.27	0.27	0.28	0.28	0.28	0.28	0.28	0.30	0.29	-	-
터키	0.05	0.07	0.01	0.01	0.15	0.20	0.23	0.23	0.23	0.22	0.23	0.22	0.22	0.23	0.23	0.18	-	-
영국	0.19	0.25	0.25	0.36	0.45	0.48	0.48	0.47	0.31	0.31	0.31	0.31	0.32	0.39	0.44	0.41	0.40	-
미국	-	-	-	-	-	-	-	-	-	-	-	-	-	-	-	-	-	-
OECD	0.18	0.30	0.30	0.34	0.40	0.40	0.41	0.41	0.42	0.43	0.41	0.42	0.41	0.46	0.50	0.49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4))

-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비율은 2021년 0.49%로 2011년 0.40%에 비해 0.09%p 감소하였으며, 한국은 2021년 0.42%로 OECD 평균(0.49%)에 비하여 약 2/3배 수준임
- 한국의 경우 현물급여 수준은 2010년 0.16% 2015년 0.20%로 약 0.04%p 증가하였으며, 2021년 0.42%로 증가함

※※ 한국은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정책 대상자는 2급(13) → 3급(15)으로 점진적인 확대가 있었음



(4)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

〈표 14-4-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0년)

(단위: %)

구분	2010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호주	1.94	1.41	-	0.53	-	0.01	0.39	-	0.00
오스트리아	1.81	1.29	0.13	-	0.21	0.19	0.45	0.30	0.05
벨기에	2.05	1.43	-	0.03	0.57	0.02	0.48	0.42	0.03
캐나다	0.88	0.38	0.43	-	0.06	-	-	-	-
칠레	0.81	0.54	0.01	0.01	0.25	0.00	0.01	0.00	0.01
콜롬비아	0.05	-	-	0.05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체코	1.88	1.23	0.01	0.08	0.47	0.11	0.1	0.07	0.00
덴마크	3.59	2.22	-	0.20	1.02	0.16	2.3	1.01	0.80
에스토니아	1.96	1.19	-	-	0.26	0.50	0.33	0.28	0.05
핀란드	2.83	1.95	0.15	0.08	0.47	0.18	1.06	0.36	0.29
프랑스	1.54	0.91	0.00	-	0.50	0.13	0.08	0.01	0.00
독일	1.24	0.03	0.07	0.02	0.30	0.82	0.74	0.50	0.22
그리스	1.83	1.27	-	-	0.21	0.34	0.02	-	0.01
헝가리	2.14	1.08	-	-	0.51	0.56	0.22	0.12	0.05
아이슬란드	1.71	1.67	-	-	0.03	0.01	0.7	0.46	0.01
아일랜드	2.3	1.10	-	-	0.81	0.38	0.07	-	-
이스라엘	2.03	1.45	0.28	-	-	0.30	0.43	0.01	0.16
이탈리아	1.57	0.55	-	-	0.17	0.86	0.1	0.04	0.00
일본	0.62	0.38	0.09	0.02	0.07	0.06	0.27	0.23	0.00
한국	0.33	0.11	0.12	0.06	-	0.04	0.17	0.01	0.00
라트비아	1.79	0.93	-	-	0.53	0.34	0.27	0.18	0.02
리투아니아	1.97	1.28	0.15	0.04	0.39	0.12	0.27	0.11	0.03
룩셈부르크	1.66	0.95	0.24	-	0.27	0.20	1.03	1.03	-
멕시코	0.05	0.01	0.03	-	-	0.00	0.01	-	-
네덜란드	2.9	1.86	-	-	0.81	0.23	0.34	-	0.34
뉴질랜드	2.47	0.07	-	-	-	2.40	0.05	0.00	0.00
노르웨이	3.63	2.13	0.00	-	1.33	0.17	0.55	0.19	0.26
폴란드	2.28	1.15	0.04	-	0.71	0.38	0.19	0.17	0.02
포르투갈	1.88	1.56	-	-	0.30	0.02	0.05	0.00	0.04
슬로바키아	1.61	0.98	-	-	0.39	0.24	0.2	0.19	0.00
슬로베니아	2.01	0.77	0.00	0.00	0.97	0.27	0.25	0.19	0.06
스페인	2.25	1.24	-	0.90	0.00	0.12	0.25	0.15	0.08
스웨덴	2.21	1.51	0.10	0.00	0.61	0.00	1.87	1.41	0.16
스위스	2.18	1.00	0.20	0.26	0.61	0.11	0.58	0.47	0.08
터키	0.28	0.21	0.03	-	0.04	0.01	0.15	0.00	0.14
영국	1.51	1.35	0.00	-	0.13	0.03	0.45	0.24	0.02
미국	1.2	0.83	0.05	-	0.03	0.29	-	-	-
OECD-Total	1.71	1.03	0.10	0.15	0.42	0.27	0.41	0.28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향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8.20.)

- 2010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71%로 장애연금 1.03% 기타상병보조금 0.42%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1%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8%의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1%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7%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 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5〉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1년)

(단위: %)

구분	2011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9	1.45	-	0.52	-	0.02	0.4	-	0.00
오스트리아	1.81	1.29	0.12	-	0.21	0.19	0.45	0.30	0.05
벨기에	2.09	1.46	-	0.02	0.60	0.02	0.49	0.43	0.03
캐나다	0.84	0.37	0.41	-	0.06	-	-	-	-
칠레	0.76	0.50	0.01	0.01	0.24	0.00	0.01	0.00	0.01
콜롬비아	0.05	-	-	0.05	-	-	-	-	-
코스타리카	0.05	0.03	-	-	-	0.02	0	-	0.00
체코	1.81	1.20	0.01	0.08	0.42	0.11	0.09	0.06	0.00
덴마크	3.5	2.25	-	0.12	0.99	0.14	2.32	0.97	0.87
에스토니아	1.87	1.13	-	-	0.27	0.47	0.29	0.24	0.05
핀란드	2.67	1.82	0.14	0.08	0.46	0.16	1.1	0.37	0.30
프랑스	1.55	0.93	0.00	-	0.50	0.12	0.08	0.01	-
독일	1.21	0.03	0.06	0.02	0.31	0.79	0.72	0.49	0.22
그리스	2	1.39	-	-	0.21	0.40	0.02	-	0.01
헝가리	1.92	0.97	-	-	0.41	0.54	0.2	0.10	0.06
아이슬란드	1.85	1.80	-	-	0.03	0.01	0.7	0.60	0.01
아일랜드	2.15	1.04	-	-	0.73	0.38	0.07	-	-
이스라엘	2.01	1.42	0.28	-	-	0.31	0.42	0.01	0.16
이탈리아	1.51	0.51	-	-	0.17	0.83	0.09	0.04	0.01
일본	0.63	0.39	0.09	0.02	0.07	0.06	0.3	0.25	0.00
한국	0.33	0.11	0.13	0.05	-	0.04	0.19	0.02	0.01
라트비아	1.58	0.84	-	-	0.38	0.36	0.29	0.19	0.02
리투아니아	1.69	1.06	0.13	0.04	0.37	0.09	0.25	0.10	0.03
룩셈부르크	1.62	0.90	0.24	-	0.28	0.21	1.05	1.05	-
멕시코	0.05	0.01	0.03	-	-	0.00	0	-	-
네덜란드	2.86	1.83	-	-	0.81	0.22	0.33	-	0.32
뉴질랜드	2.37	0.06	-	-	-	2.31	0.05	0.00	0.00
노르웨이	3.29	2.03	0.00	-	1.11	0.16	0.51	0.19	0.22
폴란드	2.22	1.08	0.03	-	0.69	0.42	0.18	0.16	0.02
포르투갈	1.92	1.59	-	-	0.31	0.02	0.02	0.00	0.01
슬로바키아	1.62	0.99	-	-	0.39	0.24	0.2	0.20	0.00
슬로베니아	1.94	0.74	0.00	0.00	0.93	0.27	0.25	0.19	0.06
스페인	2.22	1.27	-	0.84	0.00	0.11	0.26	0.15	0.08
스웨덴	2.05	1.30	0.09	0.00	0.66	0.00	1.92	1.45	0.16
스위스	2.23	0.99	0.19	0.26	0.68	0.11	0.59	0.47	0.08
터키	0.27	0.20	0.02	-	0.04	0.01	0.2	0.19	0.00
영국	1.49	1.27	0.00	-	0.18	0.04	0.48	0.23	0.01
미국	1.2	0.83	0.05	-	0.04	0.29	-	-	-
OECD-Total	1.66	1.00	0.10	0.14	0.40	0.26	0.42	0.29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향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8.20.)

- 2011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6%로 장애연금 1.00%, 기타상병보조금 0.40%가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2%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9%의 가장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3%, 장애연금 0.1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로 기타 현물급여 0.17%,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2%로 나타남



〈표 14-4-6〉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2년)

(단위: %)

구분	2012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호주	2.02	1.48	-	0.52	-	0.02	0.42	-	0.00
오스트리아	1.81	1.27	0.12	-	0.21	0.20	0.45	0.30	0.05
벨기에	2.16	1.52	-	0.02	0.61	0.02	0.53	0.46	0.03
캐나다	0.82	0.36	0.40	-	0.07	-	-	-	-
칠레	0.74	0.48	0.01	0.01	0.23	0.00	0.01	0.00	0.01
콜롬비아	0.05	-	-	0.05	-	-	-	-	-
코스타리카	0.05	0.03	-	-	-	0.02	0.00	-	-
체코	1.73	1.17	0.01	0.08	0.40	0.06	0.10	0.07	0.00
덴마크	3.45	2.23	-	0.16	0.94	0.13	2.36	0.99	0.86
에스토니아	1.84	1.13	-	-	0.25	0.46	0.27	0.23	0.05
핀란드	2.63	1.79	0.15	0.08	0.46	0.16	1.17	0.40	0.30
프랑스	1.57	0.98	0.00	-	0.49	0.11	0.08	0.01	-
독일	1.23	0.03	0.06	0.02	0.33	0.80	0.75	0.51	0.22
그리스	1.98	1.35	-	-	0.19	0.43	0.02	-	0.01
헝가리	1.81	1.17	-	-	0.38	0.26	0.21	0.11	0.06
아이슬란드	1.87	1.82	-	-	0.04	0.01	0.80	0.65	0.01
아일랜드	2.05	1.02	-	-	0.66	0.37	0.06	-	-
이스라엘	2.02	1.44	0.29	-	-	0.29	0.43	0.01	0.17
이탈리아	1.66	0.65	-	-	0.17	0.85	0.09	0.04	0.01
일본	0.63	0.39	0.09	0.02	0.07	0.06	0.33	0.29	0.00
한국	0.34	0.11	0.14	0.05	-	0.04	0.21	0.01	0.01
라트비아	1.45	0.77	-	-	0.33	0.35	0.28	0.18	0.02
리투아니아	1.68	1.04	0.13	0.03	0.38	0.09	0.23	0.10	0.03
룩셈부르크	1.65	0.89	0.23	-	0.32	0.21	1.06	1.06	-
멕시코	0.04	0.01	0.03	-	-	0.00	0.00	-	-
네덜란드	2.88	1.81	-	-	0.85	0.22	0.31	-	0.31
뉴질랜드	2.35	0.06	-	-	-	2.29	0.05	0.00	0.00
노르웨이	3.22	2.03	0.00	-	1.04	0.16	0.49	0.19	0.21
폴란드	2.18	1.08	0.02	-	0.69	0.39	0.19	0.17	0.02
포르투갈	1.77	1.45	-	-	0.30	0.03	0.02	0.00	0.01
슬로바키아	1.67	1.02	-	-	0.41	0.24	0.20	0.20	0.00
슬로베니아	1.83	0.62	0.00	0.00	0.96	0.26	0.29	0.21	0.08
스페인	2.16	1.34	-	0.72	0.00	0.10	0.25	0.14	0.08
스웨덴	2.06	1.24	0.08	0.00	0.74	0.00	1.78	1.35	0.16
스위스	2.11	0.96	0.18	0.27	0.60	0.10	0.59	0.47	0.09
터키	0.28	0.21	0.03	-	0.04	0.01	0.23	0.22	0.00
영국	1.48	1.19	0.00	-	0.26	0.03	0.47	0.23	0.01
미국	1.22	0.85	0.05	-	0.04	0.29	-	-	-
OECD-Total	1.64	1.00	0.10	0.14	0.40	0.25	0.42	0.30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 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8.20.)

- 2012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4%로 장애연금 1.00%, 기타상병보조금 0.40%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2%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0%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4%, 장애연금 0.1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1%로 기타현물급여 0.19%,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7〉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3년)

(단위: %)

구분	2013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08	1.54	-	0.52	-	0.02	0.43	-	0.00
오스트리아	1.8	1.26	0.12	-	0.22	0.19	0.47	0.31	0.05
벨기에	2.26	1.58	-	0.02	0.64	0.02	0.51	0.45	0.03
캐나다	0.79	0.35	0.38	-	0.07	-	-	-	-
칠레	0.71	0.47	0.01	0.01	0.22	0.00	0.01	0.00	0.01
콜롬비아	0.05	-	-	0.05	-	-	-	-	-
코스타리카	0.06	0.03	-	-	-	0.02	0.00	-	0.00
체코	1.73	1.16	0.01	0.08	0.43	0.06	0.10	0.07	0.00
덴마크	3.3	2.22	-	0.11	0.86	0.11	2.29	0.91	0.84
에스토니아	1.88	1.15	-	-	0.26	0.47	0.28	0.23	0.06
핀란드	2.59	1.77	0.15	0.08	0.45	0.15	1.23	0.42	0.31
프랑스	1.58	0.99	0.00	-	0.48	0.11	0.08	0.00	-
독일	1.26	0.03	0.06	0.02	0.34	0.82	0.78	0.54	0.21
그리스	1.84	1.25	-	-	0.17	0.41	0.02	-	0.01
헝가리	1.7	1.13	-	-	0.37	0.21	0.21	0.11	0.06
아이슬란드	1.89	1.83	-	-	0.04	0.01	0.83	0.70	0.01
아일랜드	2.05	1.08	-	-	0.57	0.39	0.06	-	-
이스라엘	1.99	1.40	0.30	-	-	0.29	0.44	0.01	0.16
이탈리아	1.71	0.66	-	-	0.16	0.88	0.09	0.04	0.00
일본	0.62	0.38	0.09	0.02	0.07	0.07	0.35	0.31	0.00
한국	0.34	0.12	0.13	0.05	-	0.04	0.20	0.01	0.01
라트비아	1.51	0.76	-	-	0.36	0.39	0.29	0.18	0.03
리투아니아	1.6	0.95	0.12	0.02	0.43	0.08	0.21	0.08	0.02
룩셈부르크	1.61	0.85	0.22	-	0.32	0.22	1.08	1.08	-
멕시코	0.04	0.00	0.03	-	-	0.00	0.00	-	-
네덜란드	2.79	1.84	-	-	0.80	0.16	0.27	-	0.27
뉴질랜드	2.46	0.05	-	-	-	2.41	0.05	0.00	0.00
노르웨이	3.2	1.98	0.00	-	1.06	0.16	0.53	0.19	0.24
폴란드	2.23	1.08	0.02	-	0.74	0.39	0.19	0.17	0.02
포르투갈	1.88	1.57	-	-	0.28	0.03	0.02	0.00	0.01
슬로바키아	1.67	1.04	-	-	0.37	0.25	0.21	0.21	0.00
슬로베니아	1.78	0.59	0.00	0.00	0.96	0.24	0.29	0.21	0.08
스페인	2.19	1.40	-	0.69	0.00	0.10	0.24	0.14	0.08
스웨덴	2.07	1.17	0.08	0.00	0.82	0.00	1.86	1.41	0.17
스위스	2.21	0.94	0.18	0.26	0.74	0.10	0.59	0.46	0.09
터키	0.29	0.21	0.03	-	0.05	0.01	0.23	0.22	0.00
영국	1.45	1.04	0.00	-	0.38	0.03	0.46	0.22	0.02
미국	1.21	0.84	0.04	-	0.04	0.29	-	-	-
OECD-Total	1.64	0.99	0.09	0.13	0.41	0.25	0.43	0.30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 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8.20.)

- 2013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4%로 장애연금 0.99% 기타상병보조금 0.4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20%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3%,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0%로 기타 현물급여 0.19%,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8〉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4년)

(단위: %)

구분	2014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11	1.57	-	0.52	-	0.02	0.45	-	0.00
오스트리아	1.77	1.20	0.12	-	0.23	0.22	0.48	0.33	0.05
벨기에	2.33	1.62	-	0.02	0.67	0.02	0.52	0.47	0.01
캐나다	0.77	0.33	0.37	-	0.07	-	-	-	-
칠레	0.69	0.43	0.01	0.01	0.25	0.00	0.01	0.00	0.01
콜롬비아	0.06	-	-	0.06	-	-	-	-	-
코스타리카	0.06	0.04	-	-	-	0.03	0.00	-	-
체코	1.65	1.09	0.01	0.08	0.42	0.06	0.10	0.07	0.00
덴마크	3.16	2.12	-	0.11	0.82	0.11	2.25	0.90	0.79
에스토니아	1.86	1.15	-	-	0.27	0.44	0.28	0.23	0.05
핀란드	2.5	1.70	0.15	0.07	0.44	0.14	1.28	0.43	0.31
프랑스	1.59	1.00	0.00	-	0.49	0.11	0.08	0.00	-
독일	1.26	0.03	0.06	0.02	0.35	0.80	0.78	0.55	0.21
그리스	1.84	1.23	-	-	0.18	0.44	0.02	-	0.01
헝가리	1.6	1.02	-	-	0.41	0.17	0.31	0.18	0.09
아이슬란드	1.93	1.88	-	-	0.04	0.02	0.90	0.76	0.00
아일랜드	1.87	1.02	-	-	0.49	0.37	0.05	-	-
이스라엘	2.03	1.40	0.30	-	-	0.33	0.45	0.01	0.16
이탈리아	1.73	0.67	-	-	0.16	0.90	0.08	0.04	0.01
일본	0.61	0.37	0.08	0.02	0.07	0.06	0.36	0.32	0.00
한국	0.34	0.12	0.12	0.05	-	0.05	0.19	0.01	0.00
라트비아	1.55	0.78	-	-	0.36	0.40	0.33	0.21	0.02
리투아니아	1.56	0.90	0.12	0.02	0.44	0.09	0.25	0.11	0.02
룩셈부르크	1.53	0.78	0.21	-	0.30	0.24	1.08	1.08	-
멕시코	0.04	0.00	0.03	-	-	0.00	0.00	-	-
네덜란드	2.63	1.80	-	-	0.70	0.13	0.32	-	0.32
뉴질랜드	2.45	0.02	-	-	-	2.43	0.04	0.00	0.00
노르웨이	3.29	2.03	0.00	-	1.09	0.18	0.55	0.20	0.25
폴란드	2.16	1.04	0.02	-	0.69	0.41	0.19	0.18	0.02
포르투갈	1.79	1.47	-	-	0.29	0.03	0.02	0.00	0.00
슬로바키아	1.65	1.04	-	-	0.35	0.26	0.22	0.22	0.00
슬로베니아	1.68	0.52	0.00	0.00	0.94	0.23	0.31	0.23	0.08
스페인	2.2	1.37	-	0.72	0.00	0.11	0.24	0.14	0.08
스웨덴	2.04	1.10	0.07	0.00	0.88	0.00	1.83	1.40	0.16
스위스	2.04	0.91	0.17	0.27	0.59	0.10	0.58	0.45	0.10
터키	0.27	0.21	0.00	-	0.05	0.01	0.23	0.22	0.00
영국	1.49	1.19	0.00	-	0.27	0.02	0.31	0.09	0.01
미국	1.17	0.82	0.04	-	0.03	0.28	-	-	-
OECD-Total	1.61	0.97	0.09	0.13	0.40	0.26	0.43	0.31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4.8.20.)

- 2014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61%로 장애연금 0.97% 기타상병보조금 0.40%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3%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1%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로 기타 현물급여 0.18%,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로 나타남

〈표 14-4-9〉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5년)

(단위: %)

구분	2015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2.07	1.55	-	0.50	-	0.02	0.48	-	0.00	0.48
오스트리아	1.71	1.10	0.12	-	0.23	0.27	0.49	0.33	0.05	0.11
벨기에	2.35	1.65	-	0.02	0.66	0.02	0.55	0.48	0.02	0.05
캐나다	0.76	0.32	0.36	-	0.07	-	-	-	-	-
칠레	0.73	0.42	0.01	0.01	0.29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5	-	-	0.05	-	-	-	-	-	-
코스타리카	0.07	0.04	-	-	-	0.03	0.00	-	-	0.00
체코	1.64	1.05	0.01	0.07	0.44	0.06	0.09	0.06	0.00	0.02
덴마크	3.03	2.03	-	0.13	0.77	0.10	2.19	0.88	0.73	0.58
에스토니아	1.91	1.17	-	-	0.29	0.46	0.30	0.25	0.05	0.00
핀란드	2.39	1.61	0.15	0.07	0.44	0.12	1.23	0.82	0.34	0.08
프랑스	1.59	1.00	0.00	-	0.49	0.10	0.08	0.00	-	0.08
독일	1.29	0.02	0.05	0.02	0.35	0.84	0.42	0.19	0.20	0.02
그리스	1.28	0.67	-	-	0.19	0.42	0.06	-	0.05	0.01
헝가리	1.61	0.91	-	-	0.41	0.29	0.23	0.10	0.10	0.03
아이슬란드	1.82	1.76	-	-	0.03	0.03	0.85	0.73	0.00	0.12
아일랜드	1.38	0.74	-	-	0.36	0.29	0.03	-	-	0.03
이스라엘	2.04	1.38	0.31	-	-	0.36	0.48	0.01	0.17	0.29
이탈리아	1.70	0.66	-	-	0.15	0.89	0.08	0.04	0.00	0.03
일본	0.61	0.37	0.08	0.02	0.07	0.08	0.41	0.35	0.00	0.06
한국	0.33	0.11	0.11	0.05	-	0.06	0.20	0.04	0.00	0.16
라트비아	1.76	0.80	-	-	0.49	0.47	0.37	0.25	0.02	0.11
리투아니아	1.73	0.88	0.12	0.02	0.61	0.09	0.27	0.11	0.02	0.14
룩셈부르크	1.61	0.89	0.21	-	0.29	0.23	1.14	1.09	0.05	0.00
멕시코	0.03	0.01	0.03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12	1.70	-	-	0.32	0.11	0.81	-	0.81	0.00
뉴질랜드	2.42	0.00	-	-	-	2.42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3.73	2.45	0.00	-	1.13	0.16	0.57	0.21	0.26	0.10
폴란드	2.14	0.96	0.01	-	0.76	0.40	0.19	0.18	0.02	0.00
포르투갈	1.77	1.41	-	-	0.32	0.03	0.01	0.00	0.00	0.01
슬로바키아	1.61	1.00	-	-	0.37	0.25	0.21	0.21	0.00	0.00
슬로베니아	1.68	0.47	0.00	0.00	0.98	0.22	0.29	0.21	0.08	0.00
스페인	2.16	1.32	-	0.76	-	0.08	0.23	0.14	0.07	0.02
스웨덴	2.01	1.02	0.06	0.00	0.93	0.00	1.82	1.39	0.16	0.27
스위스	2.05	0.92	0.11	0.28	0.64	0.10	0.28	0.14	0.10	0.04
터키	0.27	0.20	0.00	-	0.05	0.01	0.22	0.21	0.00	0.01
영국	1.51	1.27	0.00	-	0.23	0.02	0.31	0.09	0.01	0.22
미국	1.13	0.79	0.04	-	0.03	0.27	-	-	-	-
OECD-Total	1.58	0.94	0.08	0.13	0.41	0.26	0.43	0.29	0.11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5.8.19.)

- 2015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8%로 장애연금 0.94% 기타상병보조금 0.4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3%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9%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3%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2%, 장애연금 0.11% 등이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0%로 기타 현물급여 0.16%,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4%로 나타남
- 한국의 2014년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4%로 동일한 반면에, GDP 대비 현물급여는 0.19%에서 0.21%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가 2014년 0.01%에서 2015년 0.04%로 증가함



〈표 14-4-10〉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6년)

(단위: %)

구분	2016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개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5	1.47	-	0.47	-	0.01	0.40	-	0.00
오스트리아	1.64	1.02	0.12	-	0.22	0.28	0.48	0.33	0.05
벨기에	2.37	1.71	-	0.01	0.63	0.02	0.56	0.49	0.03
캐나다	0.74	0.32	0.35	-	0.08	-	-	-	-
칠레	0.74	0.41	0.01	0.01	0.32	0.00	0.01	0.00	0.01
콜롬비아	0.07	-	-	0.07	-	-	-	-	-
코스타리카	0.07	0.04	-	-	-	0.03	0.00	-	0.00
체코	1.63	1.01	0.02	0.08	0.46	0.07	0.09	0.06	0.00
덴마크	2.82	1.93	-	0.08	0.71	0.09	2.13	0.86	0.67
에스토니아	1.94	1.18	-	-	0.30	0.46	0.33	0.28	0.05
핀란드	2.23	1.51	0.14	0.06	0.40	0.12	1.21	0.77	0.33
프랑스	1.61	1.01	0.00	-	0.51	0.10	0.08	0.00	-
독일	1.30	0.02	0.05	0.02	0.35	0.85	0.42	0.20	0.20
그리스	1.30	0.68	-	-	0.20	0.42	0.04	-	0.03
헝가리	1.55	0.85	-	-	0.41	0.29	0.18	0.09	0.07
아이슬란드	1.92	1.88	-	-	0.03	0.01	0.73	0.57	0.00
아일랜드	1.41	0.76	-	-	0.35	0.30	0.04	-	0.04
이스라엘	2.07	1.36	0.32	-	-	0.39	0.49	0.01	0.17
이탈리아	1.68	0.65	-	-	0.15	0.89	0.07	0.04	0.00
일본	0.61	0.37	0.08	0.02	0.07	0.08	0.43	0.37	0.00
한국	0.32	0.11	0.11	0.05	-	0.06	0.22	0.05	0.00
라트비아	1.83	0.77	-	-	0.57	0.50	0.38	0.24	0.02
리투아니아	1.78	0.87	0.12	0.02	0.68	0.09	0.26	0.11	0.02
룩셈부르크	1.56	0.88	0.19	-	0.27	0.22	1.06	1.01	0.05
멕시코	0.03	0.01	0.03	-	-	0.00	0.00	-	-
네덜란드	2.10	1.68	-	-	0.32	0.10	0.79	-	0.79
뉴질랜드	2.37	0.00	-	-	-	2.37	0.00	0.00	0.00
노르웨이	3.89	2.57	0.00	-	1.17	0.15	0.60	0.22	0.28
폴란드	2.14	0.88	0.01	-	0.83	0.42	0.19	0.13	0.06
포르투갈	1.71	1.34	-	-	0.34	0.03	0.02	0.00	0.01
슬로바키아	1.64	1.00	-	-	0.40	0.24	0.22	0.22	0.00
슬로베니아	1.63	0.43	0.00	0.00	0.99	0.21	0.27	0.20	0.07
스페인	2.18	1.29	-	0.82	-	0.07	0.22	0.13	0.07
스웨덴	1.95	0.95	0.05	0.00	0.95	0.00	1.75	1.33	0.16
스위스	2.05	0.91	0.11	0.28	0.65	0.10	0.28	0.14	0.10
터키	0.28	0.22	0.00	-	0.06	0.01	0.23	0.22	0.00
영국	1.51	1.30	0.00	-	0.19	0.02	0.31	0.08	0.01
미국	1.10	0.76	0.04	-	0.03	0.26	-	-	-
OECD-Total	1.57	0.92	0.08	0.13	0.42	0.26	0.41	0.28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포함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검색일: 2025.8.19.)

- 2016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7%로 장애연금 0.92% 기타상병보조금 0.4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1%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8%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2%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1%, 장애연금 0.11%가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2%로 기타 현물급여 0.16%,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5%로 나타남

〈표 14-4-11〉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7년)

(단위: %)

구분	2017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0	1.43	-	0.46	-	0.01	0.34	-	0.00	0.34
오스트리아	1.58	0.96	0.11	-	0.23	0.28	0.49	0.33	0.05	0.11
벨기에	2.45	1.76	-	0.04	0.62	0.04	0.55	0.49	0.01	0.05
캐나다	0.73	0.30	0.35	-	0.08	-	-	-	-	-
칠레	0.75	0.41	0.01	0.01	0.33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8	-	-	0.08	-	-	-	-	-	-
코스타리카	0.33	0.04	-	-	-	0.29	0.00	-	-	0.00
체코	1.59	0.95	0.02	0.07	0.48	0.07	0.09	0.07	0.00	0.02
덴마크	2.75	1.84	-	0.13	0.70	0.09	2.11	0.83	0.66	0.62
에스토니아	1.93	1.18	-	-	0.31	0.44	0.31	0.26	0.05	0.00
핀란드	2.08	1.39	0.14	0.06	0.38	0.11	1.14	0.76	0.26	0.13
프랑스	1.62	1.01	0.00	-	0.51	0.10	0.08	0.00	-	0.08
독일	1.32	0.02	0.05	0.02	0.35	0.88	0.43	0.21	0.21	0.02
그리스	1.22	0.63	-	-	0.17	0.42	0.05	-	0.04	0.01
헝가리	1.46	0.76	-	-	0.42	0.28	0.17	0.09	0.06	0.02
아이슬란드	2.06	2.01	-	-	0.04	0.02	0.81	0.60	0.04	0.17
아일랜드	1.35	0.72	-	-	0.32	0.30	0.03	-	-	0.03
이스라엘	2.09	1.40	0.31	-	-	0.38	0.52	0.02	0.18	0.33
이탈리아	1.66	0.62	-	-	0.16	0.87	0.07	0.03	0.00	0.03
일본	0.61	0.37	0.08	0.02	0.07	0.07	0.45	0.39	0.00	0.06
한국	0.32	0.11	0.11	0.05	-	0.06	0.26	0.10	0.01	0.15
라트비아	1.85	0.76	-	-	0.58	0.52	0.36	0.23	0.03	0.11
리투아니아	1.80	0.87	0.12	0.02	0.71	0.09	0.25	0.10	0.02	0.14
룩셈부르크	1.53	0.86	0.19	-	0.27	0.21	1.16	1.10	0.05	0.00
멕시코	0.05	0.00	0.04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06	1.66	-	-	0.31	0.10	0.78	-	0.78	0.00
뉴질랜드	2.32	0.00	-	-	-	2.32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3.77	2.50	0.00	-	1.13	0.14	0.60	0.22	0.28	0.10
폴란드	2.08	0.83	0.01	-	0.84	0.41	0.14	0.09	0.05	0.01
포르투갈	1.69	1.29	-	-	0.36	0.04	0.02	0.00	0.01	0.01
슬로바키아	1.68	0.98	-	-	0.44	0.27	0.24	0.23	0.00	0.00
슬로베니아	1.52	0.31	0.00	0.00	1.00	0.21	0.28	0.20	0.07	0.00
스페인	2.17	1.26	-	0.86	-	0.06	0.22	0.13	0.07	0.02
스웨덴	1.83	0.89	0.05	0.00	0.89	0.00	1.78	1.37	0.14	0.27
스위스	2.13	0.91	0.10	0.29	0.73	0.11	0.28	0.14	0.10	0.04
터키	0.26	0.20	0.00	-	0.06	0.01	0.22	0.21	0.00	0.01
영국	1.54	1.34	0.00	-	0.18	0.02	0.31	0.09	0.01	0.21
미국	1.05	0.74	0.04	-	0.03	0.25	-	-	-	-
OECD-Total	1.56	0.90	0.08	0.14	0.42	0.26	0.42	0.29	0.10	0.09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9)

- 2017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6%로 장애연금 0.90% 기타상병보조금 0.42%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2%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29%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2%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1%, 장애연금 0.11%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6%로 2016년에 비해 0.03%p 증가하였으며, 기타 현물급여 0.15%,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1%로 나타남



〈표 14-4-12〉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8년)

(단위: %)

구분	2018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85	1.38	-	0.46	-	0.01	0.19	-	0.00
오스트리아	1.53	0.90	0.11	-	0.23	0.28	0.49	0.33	0.05
벨기에	2.56	1.84	-	0.04	0.63	0.05	0.55	0.49	0.01
캐나다	0.72	0.28	0.35	-	0.08	-	-	-	-
칠레	0.74	0.39	0.01	0.01	0.33	0.00	0.01	0.00	0.00
콜롬비아	0.09	-	-	0.09	-	-	-	-	-
코스타리카	0.34	0.04	-	-	-	0.30	0.00	-	0.00
체코	1.64	0.93	0.02	0.07	0.56	0.08	0.10	0.08	0.00
덴마크	2.68	1.79	-	0.12	0.68	0.08	1.90	0.91	0.67
에스토니아	1.95	1.20	-	-	0.32	0.42	0.30	0.26	0.04
핀란드	2.01	1.32	0.14	0.06	0.38	0.11	1.18	0.77	0.28
프랑스	1.62	1.01	0.00	-	0.52	0.09	0.08	0.00	-
독일	1.34	0.02	0.05	0.02	0.36	0.88	0.45	0.22	0.21
그리스	1.14	0.55	-	-	0.17	0.42	0.08	-	0.06
헝가리	1.37	0.66	-	-	0.45	0.27	0.18	0.09	0.06
아이슬란드	2.07	2.02	-	-	0.03	0.02	0.86	0.65	0.04
아일랜드	1.32	0.71	-	-	0.31	0.31	0.03	-	0.03
이스라엘	2.20	1.52	0.30	-	-	0.38	0.56	0.02	0.19
이탈리아	1.66	0.62	-	-	0.16	0.88	0.07	0.03	0.00
일본	0.62	0.38	0.07	0.02	0.07	0.08	0.47	0.41	0.00
한국	0.34	0.12	0.11	0.06	-	0.06	0.26	0.10	0.01
라트비아	1.85	0.74	-	-	0.59	0.52	0.38	0.24	0.03
리투아니아	1.87	0.89	0.12	0.02	0.76	0.08	0.25	0.09	0.02
룩셈부르크	1.49	0.84	0.19	-	0.29	0.17	1.19	1.13	0.06
멕시코	0.05	0.00	0.04	-	-	0.00	0.00	-	-
네덜란드	2.04	1.62	-	-	0.32	0.10	0.80	-	0.80
뉴질랜드	2.35	0.00	-	-	-	2.35	0.00	0.00	0.00
노르웨이	3.68	2.46	0.00	-	1.08	0.13	0.58	0.22	0.27
폴란드	1.94	0.75	0.00	-	0.79	0.40	0.11	0.05	0.05
포르투갈	1.66	1.14	-	-	0.38	0.15	0.02	0.00	0.01
슬로바키아	1.61	0.94	-	-	0.43	0.24	0.23	0.22	0.00
슬로베니아	1.55	0.28	0.00	0.00	1.08	0.19	0.27	0.20	0.07
스페인	2.12	1.24	-	0.83	-	0.06	0.23	0.14	0.07
스웨덴	1.73	0.82	0.04	0.00	0.86	0.00	1.81	1.40	0.15
스위스	2.07	0.88	0.10	0.29	0.70	0.11	0.28	0.14	0.10
터키	0.23	0.17	0.00	-	0.06	0.01	0.22	0.21	0.00
영국	1.40	1.22	0.00	-	0.16	0.02	0.32	0.09	0.02
미국	1.01	0.70	0.03	-	0.03	0.24	-	-	-
OECD-Total	1.54	0.88	0.08	0.14	0.43	0.26	0.41	0.29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9)

- 2018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3%로 장애연금 0.87% 기타상병보조금 0.41%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3%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2%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6%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1%, 장애연금 0.12%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28%로 2017년에 비해 0.03%p 증가하였으며,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p 증감함

〈표 14-4-13〉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19년)

(단위: %)

구분	2019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5	1.44	-	0.50	-	0.01	0.92	-	0.00	0.92
오스트리아	1.49	0.86	0.11	-	0.25	0.28	0.51	0.35	0.05	0.11
벨기에	2.60	1.87	-	0.04	0.64	0.05	0.59	0.52	0.03	0.04
캐나다	0.74	0.29	0.37	-	0.08	-	-	-	-	-
칠레	0.75	0.39	0.01	0.01	0.34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8	-	-	0.08	-	-	-	-	-	-
코스타리카	0.44	0.04	-	-	-	0.40	-	-	-	-
체코	1.73	0.93	0.01	0.07	0.64	0.08	0.10	0.08	0.00	0.02
덴마크	2.73	1.82	-	0.13	0.69	0.08	1.92	0.91	0.68	0.33
에스토니아	1.95	1.23	-	-	0.33	0.39	0.33	0.29	0.04	0.00
핀란드	1.95	1.27	0.13	0.06	0.39	0.11	1.23	0.78	0.30	0.15
프랑스	1.62	1.01	0.00	-	0.53	0.09	0.08	0.00	-	0.08
독일	1.37	0.02	0.05	0.03	0.38	0.90	0.45	0.22	0.21	0.02
그리스	1.22	0.52	-	-	0.20	0.50	0.05	-	0.04	0.01
헝가리	1.32	0.59	-	-	0.45	0.28	0.17	0.10	0.06	0.02
아이슬란드	2.20	2.15	-	-	0.04	0.02	0.94	0.76	0.04	0.15
아일랜드	1.28	0.69	-	-	0.28	0.31	0.03	-	-	0.03
이스라엘	2.21	1.49	0.35	-	-	0.36	0.57	0.02	0.20	0.36
이탈리아	1.67	0.62	-	-	0.16	0.89	0.07	0.03	0.00	0.03
일본	0.64	0.38	0.08	0.02	0.08	0.08	0.49	0.43	0.00	0.06
한국	0.37	0.12	0.12	0.07	-	0.07	0.30	0.12	0.01	0.17
라트비아	1.95	0.74	-	-	0.68	0.54	0.38	0.25	0.02	0.11
리투아니아	1.85	0.89	0.12	0.02	0.73	0.09	0.25	0.08	0.01	0.16
룩셈부르크	1.56	0.86	0.18	-	0.36	0.16	1.20	1.14	0.07	0.00
멕시코	0.08	0.04	0.04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1.98	1.59	-	-	0.30	0.09	0.84	-	0.83	0.01
뉴질랜드	2.37	0.00	-	-	-	2.37	0.00	0.00	0.00	0.00
노르웨이	3.88	2.64	0.00	-	1.11	0.13	0.61	0.23	0.28	0.10
폴란드	1.78	0.71	0.00	-	0.83	0.24	0.08	0.04	0.04	0.00
포르투갈	1.72	1.14	-	-	0.40	0.18	0.02	0.00	0.02	0.00
슬로바키아	1.65	0.92	-	-	0.49	0.24	0.22	0.21	0.00	0.00
슬로베니아	1.59	0.25	0.00	0.00	1.11	0.23	0.33	0.25	0.07	0.00
스페인	2.29	1.23	-	1.00	-	0.06	0.24	0.15	0.07	0.02
스웨덴	1.63	0.76	0.04	0.00	0.83	0.00	1.75	1.35	0.15	0.26
스위스	2.11	0.88	0.09	0.29	0.73	0.12	0.28	0.14	0.11	0.04
터키	0.25	0.18	0.00	-	0.06	0.01	0.23	0.23	0.00	0.01
영국	1.35	1.27	-	-	0.07	-	0.39	0.11	0.02	0.26
미국	0.98	0.68	0.03	-	0.03	0.23	-	-	-	-
OECD-Total	1.56	0.88	0.09	0.15	0.44	0.27	0.46	0.30	0.11	0.10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업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9)

- 2019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현금급여의 경우, OECD 국가는 평균 1.56%로 장애연금 0.87% 기타상병보조금 0.43% 등의 순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현물급여는 평균 0.47%로,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34%의 높은 지출을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현금 급여는 0.39%로 산재보험(산업재해) 0.13%, 장애연금 0.13% 지출되고 있으며, GDP 대비 현물급여는 0.32%로 2018년에 비해 0.04%p 증가하였으며, 기타현물급여 0.02%p,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가 0.01%p 증감함



〈표 14-4-14〉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0년)

(단위: %)

구분	2020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94	1.42	-	0.52	-	0.00	1.18	-	0.00	1.18
오스트리아	1.54	0.88	0.11	-	0.26	0.30	0.55	0.36	0.05	0.14
벨기에	2.89	2.06	-	0.05	0.72	0.05	0.59	0.53	0.03	0.03
캐나다	0.75	0.29	0.38	-	0.09	-	-	-	-	-
칠레	1.00	0.41	0.01	0.01	0.57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10	-	-	0.10	-	-	-	-	-	-
코스타리카	0.44	0.05	-	-	-	0.39	-	-	-	-
체코	2.28	1.03	0.01	0.07	1.08	0.09	0.12	0.10	0.00	0.01
덴마크	2.92	1.93	-	0.14	0.77	0.09	1.94	0.93	0.68	0.33
에스토니아	2.23	1.38	-	-	0.42	0.43	0.37	0.31	0.05	0.00
핀란드	1.98	1.28	0.12	0.05	0.40	0.11	1.28	0.80	0.34	0.13
프랑스	1.85	1.09	0.00	-	0.67	0.10	0.09	0.01	-	0.09
독일	1.51	0.02	0.05	0.03	0.43	0.98	0.49	0.26	0.21	0.02
그리스	1.30	0.59	-	-	0.21	0.50	0.04	-	0.04	0.00
헝가리	1.35	0.57	-	-	0.50	0.29	0.18	0.10	0.06	0.01
아이슬란드	2.48	2.42	-	-	0.04	0.02	1.04	0.80	0.05	0.19
아일랜드	1.32	0.70	-	-	0.32	0.31	0.04	-	-	0.04
이스라엘	2.42	1.66	0.39	-	-	0.37	0.72	0.03	0.26	0.43
이탈리아	1.87	0.69	-	-	0.23	0.96	0.07	0.04	0.00	0.04
일본	0.66	0.40	0.07	0.02	0.09	0.08	0.55	0.46	0.00	0.09
한국	0.46	0.12	0.12	0.07	-	0.15	0.42	0.23	0.02	0.18
라트비아	2.19	0.82	-	-	0.83	0.54	0.38	0.27	0.03	0.09
리투아니아	2.17	0.91	0.13	0.02	1.02	0.09	0.19	0.08	0.01	0.10
룩셈부르크	1.79	0.90	0.18	-	0.57	0.14	1.27	1.20	0.07	0.00
멕시코	0.09	0.05	0.04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2.11	1.69	-	-	0.33	0.08	0.90	-	0.90	0.01
뉴질랜드	2.64	0.00	-	-	-	2.64	0.01	0.00	0.00	0.01
노르웨이	4.20	2.87	0.00	-	1.19	0.13	0.64	0.24	0.29	0.11
폴란드	1.95	0.68	0.00	-	0.95	0.32	0.08	0.04	0.04	0.00
포르투갈	1.97	1.20	-	-	0.56	0.22	0.02	0.00	0.02	0.01
슬로바키아	1.87	0.95	-	-	0.62	0.30	0.23	0.23	0.00	0.00
슬로베니아	1.82	0.25	0.00	0.00	1.31	0.25	0.45	0.37	0.08	0.00
스페인	2.79	1.37	-	1.36	-	0.06	0.28	0.16	0.09	0.03
스웨덴	2.16	0.74	0.04	0.00	1.37	0.00	1.76	1.37	0.14	0.25
스위스	2.40	0.92	0.09	0.30	0.97	0.12	0.30	0.14	0.11	0.04
터키	0.28	0.17	0.00	-	0.10	0.01	0.23	0.22	0.00	0.01
영국	1.35	1.30	-	-	0.06	-	0.44	0.12	0.02	0.30
미국	0.97	0.67	0.03	-	0.03	0.24	-	-	-	-
OECD-Total	1.74	0.93	0.09	0.15	0.44	0.27	0.50	0.32	0.12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업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가사 돌봄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9)

〈표 14-4-15〉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1년)

(단위: %)

구분	2021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77	1.27	-	0.50	-	0.00	1.36	-	0.00	1.36
오스트리아	1.44	0.81	0.10	-	0.25	0.28	0.55	0.37	0.05	0.13
벨기에	2.82	2.00	-	0.05	0.72	0.05	0.57	0.51	0.03	0.03
캐나다	0.70	0.25	0.35	-	0.10	-	-	-	-	-
칠레	0.78	0.37	0.01	0.01	0.38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9	-	-	0.09	-	-	-	-	-	-
코스타리카	0.44	0.05	-	-	-	0.40	-	-	-	-
체코	1.91	0.95	0.01	0.07	0.78	0.10	0.12	0.11	0.00	0.01
덴마크	2.87	1.90	-	0.11	0.78	0.08	1.86	0.89	0.66	0.31
에스토니아	2.06	1.24	-	-	0.45	0.36	0.36	0.30	0.06	0.00
핀란드	1.90	1.20	0.12	0.05	0.43	0.10	1.25	0.82	0.32	0.11
프랑스	1.71	1.01	0.00	-	0.60	0.09	0.09	0.00	-	0.08
독일	1.46	0.02	0.05	0.03	0.42	0.95	0.50	0.26	0.21	0.02
그리스	1.20	0.51	-	-	0.21	0.48	0.04	-	0.04	0.00
헝가리	1.32	0.55	-	-	0.49	0.28	0.16	0.10	0.05	0.01
아이슬란드	2.34	2.30	-	-	0.03	0.01	1.02	0.77	0.04	0.20
아일랜드	1.13	0.59	-	-	0.28	0.27	0.03	-	-	0.03
이스라엘	2.28	1.59	0.37	-	-	0.32	0.64	0.03	0.25	0.36
이탈리아	1.78	0.64	-	-	0.24	0.90	0.08	0.04	0.00	0.04
일본	0.66	0.40	0.07	0.02	0.10	0.08	0.54	0.48	0.00	0.06
한국	0.45	0.12	0.12	0.07	-	0.14	0.42	0.24	0.02	0.17
라트비아	2.45	0.89	-	-	0.97	0.60	0.39	0.28	0.02	0.08
리투아니아	1.89	0.84	0.12	0.02	0.83	0.09	0.27	0.11	0.01	0.15
룩셈부르크	1.46	0.81	0.16	-	0.38	0.11	1.24	1.18	0.07	0.00
멕시코	0.08	0.07	0.02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1.99	1.58	-	-	0.34	0.07	0.78	-	0.78	0.01
뉴질랜드	2.58	0.00	-	-	-	2.58	0.01	0.00	0.00	0.01
노르웨이	3.50	2.41	0.00	-	0.98	0.11	0.54	0.20	0.25	0.09
폴란드	1.89	0.68	0.00	-	0.91	0.30	0.07	0.03	0.04	0.00
포르투갈	1.94	1.12	-	-	0.56	0.26	0.02	0.00	0.02	0.01
슬로바키아	1.82	0.87	-	-	0.77	0.19	0.24	0.23	0.00	0.01
슬로베니아	1.70	0.22	0.00	0.00	1.24	0.23	0.53	0.43	0.09	0.01
스페인	2.64	1.28	-	1.30	-	0.06	0.26	0.15	0.09	0.02
스웨덴	1.57	0.66	0.03	0.00	0.88	0.01	1.68	1.30	0.14	0.24
스위스	2.14	0.88	0.08	0.28	0.78	0.12	0.29	0.13	0.12	0.04
터키	0.22	0.14	0.00	-	0.08	0.01	0.18	0.18	0.00	0.00
영국	1.29	1.24	-	-	0.05	-	0.41	0.11	0.02	0.28
미국	0.88	0.61	0.03	-	0.03	0.22	-	-	-	-
OECD-Total	1.74	0.93	0.09	0.18	0.56	0.30	0.49	0.32	0.11	0.11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이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9)



〈표 14-4-16〉 OECD 국가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유형별 지출 비율(2022년)

(단위: %)

구분	2022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소계	장애 연금	산재 보험 (산재)	상병 급여 (산재)	기타 상병 보조금	기타 현금 급여	소계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 보조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호주	1.71	1.22	-	0.48	-	0.00	1.43	-	0.00	1.43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0.63	0.22	0.33	-	0.07	-	-	-	-	-
칠레	0.56	0.38	0.01	0.01	0.15	0.00	0.01	0.00	0.01	0.00
콜롬비아	0.09	-	-	0.09	-	-	-	-	-	-
코스타리카	0.78	0.05	0.35	-	-	0.38	0.00	-	-	0.00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1.75	1.00	0.00	-	0.66	0.09	0.09	0.00	-	0.08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2.23	1.58	0.35	-	-	0.29	0.66	0.03	0.26	0.37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0.67	0.40	0.07	0.02	0.11	0.08	0.56	0.49	0.00	0.07
한국	0.45	0.12	0.12	0.07	-	0.14	0.44	0.26	0.02	0.17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0.08	0.07	0.02	-	-	0.00	0.00	-	-	0.00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2.68	0.00	-	-	-	2.68	0.52	0.00	0.00	0.52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1.28	1.25	-	-	0.04	-	0.40	0.11	0.02	0.27
미국	0.82	0.57	0.03	-	0.03	0.20	-	-	-	-
OECD-Total	1.61	0.87	0.08	0.17	0.50	0.28	-	-	-	--

주: 1) 공적 지출(public expenditure)만을 합한 수치임

2) 현금급여(cash benefits)에는 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입재해), 상병급여(산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가 포함됨

3) 현물급여(benefits in kind)에는 거주 돌봄 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현물급여가 포함됨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다운로드일 2025-08-19)

5) 정신건강

(1) 정신질환관련 병상 수

〈표 14-5-1〉 OECD 국가 인구 천 명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단위: 수/인구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호주	0.39	0.39	0.4	0.41	0.41	0.41	0.42	-	-	-	-	-	-	-	-
오스트리아	0.71	0.71	0.74	0.75	0.74	0.75	0.75	0.75	0.73	0.69	0.69	0.72	0.72	0.71	-
벨기에	1.47	1.45	1.44	1.41	1.4	1.4	1.38	1.36	1.35	1.41	1.41	1.41	1.41	1.4	1.4
캐나다	0.36	0.36	0.37	0.37	0.35	0.35	0.35	0.34	0.37	0.36	0.37	0.37	0.36	0.34	-
칠레	0.17	0.14	0.1	0.1	0.1	0.1	0.1	0.1	0.15	0.14	0.14	0.14	0.14	0.13	0.13
콜롬비아	0.01	0.01	0.02	0.03	0.04	0.02	0.03	0.04	0.06	0.08	0.09	0.18	0.18	0.17	0.17
코스타리카	0.21	0.2	0.19	0.19	0.19	0.18	0.18	0.17	0.15	0.15	0.13	0.06	0.09	-	-
체코	1.01	0.99	0.98	0.96	0.95	0.96	0.95	0.94	0.92	0.92	0.88	0.91	0.89	0.87	-
덴마크	0.57	0.53	-	0.54	-	-	0.4	0.47	0.48	0.52	0.52	0.52	0.53	0.52	0.52
에스토니아	0.53	0.54	0.54	0.52	0.52	0.52	0.51	0.51	0.52	0.51	0.49	0.5	0.46	0.47	-
핀란드	0.75	0.71	0.69	0.64	0.61	0.62	0.58	0.53	0.54	0.54	0.35	0.33	0.3	0.35	-
프랑스	0.88	0.87	0.88	0.88	0.87	0.86	0.85	0.83	0.82	0.81	0.8	0.79	0.77	0.75	-
독일	1.18	1.23	1.25	1.26	1.27	1.27	1.28	1.28	1.3	1.31	1.3	1.31	1.32	1.33	-
그리스	0.75	0.73	0.77	0.7	0.72	0.73	0.71	0.74	0.74	0.69	0.68	0.68	0.67	0.65	-
헝가리	0.89	0.9	0.9	0.9	0.87	0.88	0.87	0.88	0.85	0.85	0.75	0.78	0.76	0.72	-
아이슬란드	0.48	0.48	0.47	0.46	0.44	0.44	0.43	0.38	0.37	0.36	0.36	0.35	0.32	0.32	-
아일랜드	0.39	0.35	0.35	0.35	0.35	0.35	0.34	0.34	0.33	0.32	0.32	0.32	0.32	0.31	-
이스라엘	0.45	0.45	0.44	0.42	0.43	0.42	0.42	0.4	0.39	0.39	0.39	0.38	0.37	0.37	0.36
이탈리아	0.1	0.1	0.09	0.1	0.09	0.09	0.09	0.09	0.09	0.08	0.08	0.08	0.08	0.08	-
일본	2.71	2.69	2.68	2.67	2.66	2.65	2.63	2.61	2.6	2.58	2.57	2.58	2.58	2.56	-
한국	-	-	-	-	-	-	-	-	-	-	-	1.28	1.3	1.26	1.31
라트비아	1.28	1.29	1.29	1.25	1.26	1.26	1.28	1.25	1.22	1.19	1.12	1.11	1.08	1.05	-
리투아니아	1.07	1.11	1.11	1.1	1.08	1.03	1	0.99	0.97	0.97	0.86	0.87	0.83	0.76	-
룩셈부르크	-	-	-	-	-	0.79	0.78	0.76	0.74	0.81	0.8	0.8	0.79	0.78	-
멕시코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3	0.03	0.03	0.03	0.03	0.03	-
네덜란드	-	-	-	-	-	0.99	0.97	0.94	0.86	0.8	0.79	1.12	0.79	0.72	-
뉴질랜드	0.22	0.2	0.2	0.17	0.23	0.24	0.3	0.3	0.3	0.32	0.32	0.36	0.34	0.32	0.35
노르웨이	1.34	1.3	1.21	1.16	1.16	1.13	1.1	1.07	1.05	1.03	1.02	1.01	1.00	0.98	-
폴란드	0.63	0.64	0.64	0.64	0.65	0.65	0.66	0.65	0.62	0.63	0.62	0.62	0.62	-	-
포르투갈	0.65	0.64	0.63	0.65	0.63	0.64	0.64	0.64	0.63	0.63	0.63	0.63	0.63	0.6	-
슬로바키아	0.8	0.77	0.78	0.82	0.82	0.81	0.81	0.81	0.81	0.81	0.8	0.8	0.8	0.8	-
슬로베니아	0.65	0.65	0.67	0.66	0.66	0.67	0.66	0.66	0.66	0.65	0.64	0.64	0.62	0.62	-
스페인	0.4	0.38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6	0.35	0.36	0.36	0.35	-
스웨덴	0.48	0.47	0.46	0.46	0.45	0.44	0.43	0.43	0.41	0.41	0.4	0.4	0.4	0.39	-
스위스	1.01	0.97	0.97	0.96	0.92	0.93	0.93	0.94	0.93	0.93	0.94	0.95	0.99	0.98	-
터키	0.06	0.06	0.06	0.06	0.06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4	-
영국	0.54	0.52	0.5	0.48	0.46	0.42	0.4	0.39	0.37	0.36	0.34	0.34	0.35	0.34	-
미국	-	-	-	-	-	-	-	0.31	0.31	0.31	0.35	0.35	0.35	-	-
OECD평균	0.68	0.67	0.67	0.66	0.66	0.67	0.66	0.65	0.64	0.64	0.62	0.65	0.64	0.65	-

주 : 1)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2) OECD 평균은 당해년도(혹은 인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연구진이 평균한 값임

3) 일부 국가의 값이 추가되어 OECD 평균이 이전 보고서와 다를 수 있음 (다운로드일: 2025-08-18)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 2023년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는 1.26으로, OECD 국가 평균 0.65에 비해 높은 수준임



(2)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표 14-5-2〉 OECD 국가 인구 10만 명당 (공공)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단위: 개)

구 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2011	2020
멕시코	0.01	0.32
한국	0.01	0.51
폴란드	0.03	1.04
미국	0.06	-
포르투갈	0.07	0.62
일본	0.30	0.89
호주	0.67	0.71
독일	1.57	3.04
프랑스	4.73	-
아이슬란드	16.67	10.91
아일랜드	17.89	5.98
OECD	3.18	2.67

자료: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원자료: OECD Mental Health Questionnaire 2012; WHO Mental Health Atlas 2011, 2020

-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는 2010년 0.01개소에서 2020년 0.51개소로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의 2020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시설 수 평균 2.67개소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임

※※ OECD 국가들은 과거 정신질환 관련 지원을 치료적 접근에 우선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서는 치료적 접근보다는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변경하고 있음

(3)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

〈표 14-5-3〉 OECD 국가 의료공급기관별 정신건강 총 의료비 지출

(단위: 1인당 USD, %)

구분	독일		한국		네덜란드		체코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1인당 USD	%
병의원	146.7	33.0	71.7	66.4	294.6	45.4	36	69.4
장기요양	117.2	26.3	11.4	10.6	237.4	36.6	2.3	4.4
외래진료	78.1	17.5	14.7	13.6	48.4	7.5	11.7	22.6
조제약	55	12.4	6.9	6.4	33.7	5.2	0.1	0.2
기타 공급원	48.1	10.8	3.3	3.0	34.3	5.3	1.8	3.4
총지출	445	100.0	108.1	100.0	648.4	100.0	51.9	100.0

주: 1) 네덜란드: 병원지출의 89%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2) 체코: 병원지출의 75%는 정신건강 및 중독물질남용 병원에 대한 지출임

자료: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표 14-5-4〉 주요 OECD 국가 국민 1인당 정신건강 지출

(단위: 1인당 USD)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미국 (17)
USD	244.6	61.8	9.1	4.6	200.5	393.3	580.8	16.7	71.5	103	4.47	0.9	21.2	343.8
	373.0 [AUD]	84.9 [CDN]	8588.6 [Chilean pesos]	19074.4 [Pesos colombianos]	183.4 [€]	359.5 [€]	531.3 [€]	6065.2 [HUF]	65.3 [€]	15043.3 [JPY]	6155.2 [KRW]	17.0 [Pesos mexicanos]	83.8 [PLN]	343.8 [USD]

주: 원자료에서 제시된 자국 화폐기준 금액을 USD로 변환한 수치임 (기준일: 2024.08.20, 해나은행 기준)

원자료: Mental Health Atlas 2020 Country Profile.

미국: Mental Health Atlas 2017 Country Profile.

- 주요 국가 및 의료공급기관 별 정신건강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과 체코의 경우 비교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에 비해 낮은 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총 의료비는 국민 1인당 108.1\$로 대부분의 비용이 병원에 집중되어 있음(OECD, 2014)
-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정신건강에의 지출 금액은 4.47\$로 미국(343.8\$), 독일(580.8\$), 프랑스(393.3\$), 호주(244.6\$), 일본(103\$) 등의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 정신건강에 대한 지출은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을 의미함.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표 14-5-5〉 OECD 국가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	-	-	-	-	-	0.0	1.2	1.4	1.3	1.1	1.6	1.1	1.2	-	-	-
칠레	남	-	-	-	-	-	0.0	1.3	1.5	1.2	1.0	1.8	1.1	1.2	-	-	-
여	-	-	-	-	-	-	0.0	0.9	1.2	1.4	1.3	1.4	1.2	1.3	-	-	-
체코	전체	-	-	1.9	2.1	2.4	2.3	2.0	2.2	2.1	2.4	2.6	2.5	2.3	2.4	2.6	2.4
남	-	-	1.7	1.8	2.5	2.2	1.8	1.9	1.9	2.2	2.4	2.3	2.1	2.1	2.6	2.1	-
여	-	-	2.4	2.6	2.3	2.5	2.5	2.8	2.5	2.7	3.0	2.7	2.7	3.0	2.7	2.8	-
덴마크	전체	3.6	2.9	3.2	3.3	3.3	3.0	3.0	3.1	2.9	2.9	2.8	3.1	2.8	2.5	3.2	2.6
남	3.5	2.9	3.3	3.1	3.3	3.0	2.8	2.8	2.8	2.8	3.1	2.9	2.8	2.5	2.4	3.2	2.2
여	3.8	3.0	3.0	3.5	3.2	3.2	3.3	3.4	3.1	2.9	2.7	2.7	3.4	3.2	2.8	3.1	3.1
핀란드	전체	-	2.6	2.4	2.4	2.4	2.2	2.3	2.2	2.2	2.6	2.4	2.4	2.5	2.1	2.4	2.4
남	-	2.5	2.2	2.3	2.4	2.1	2.2	2.0	2.1	2.5	2.3	2.4	2.5	1.9	2.2	2.5	-
여	-	2.7	2.9	2.7	2.5	2.4	2.6	2.4	2.3	2.8	2.4	2.3	2.4	2.3	2.6	2.1	-
아이슬란드	전체	-	-	-	-	-	-	2.5	-	2.0	2.5	2.2	2.2	2.0	2.6	2.9	3.3
남	-	-	-	-	-	-	-	2.0	1.8	1.8	2.3	1.8	1.4	1.0	3.0	3.5	2.7
여	-	-	-	-	-	-	-	3.1	-	2.4	2.8	2.9	3.4	3.3	2.1	2.0	4.0
이스라엘	전체	2.8	3.2	3.2	2.7	3.2	3.2	2.7	3.0	3.4	3.6	3.8	3.5	3.4	3.5	3.7	3.6
남	2.5	3.2	2.9	2.6	3.1	2.8	2.7	2.9	3.3	3.0	3.5	3.2	3.1	3.2	3.6	3.4	3.1
여	3.3	3.3	3.7	3.0	3.1	3.9	2.6	3.1	3.5	4.4	4.3	3.8	3.8	4.0	3.7	3.5	4.5
한국	전체	3.2	3.4	3.5	3.6	3.8	3.9	4.0	4.1	4.1	4.1	4.3	4.4	4.4	4.3	4.4	4.3
남	2.9	3.1	3.3	3.4	3.6	3.8	3.9	4.0	4.1	4.1	4.2	4.3	4.2	4.1	4.3	4.2	-
여	3.7	4.2	4.0	4.2	4.2	4.2	4.1	4.4	4.3	4.3	4.6	4.6	4.7	4.5	4.4	4.4	-
라트비아	전체	-	-	2.2	1.3	1.6	2.5	3.1	0.4	2.7	2.5	2.1	1.1	2.9	2.5	2.2	2.6
남	-	-	2.2	1.5	1.4	1.5	2.9	0.3	2.4	2.4	2.5	1.0	2.4	2.6	1.9	2.0	-
여	-	-	2.0	0.8	2.2	4.8	3.8	0.8	3.4	2.8	1.3	1.3	4.1	2.5	3.0	3.9	-
리투아니아	전체	1.1	1.6	1.4	1.3	1.6	1.2	1.5	1.4	1.2	1.4	1.6	1.2	1.2	1.4	1.4	-
남	0.9	1.5	1.2	1.0	1.5	1.1	1.4	1.5	1.1	1.2	1.3	1.1	1.3	1.4	1.2	1.3	-
여	1.4	1.8	1.8	2.0	1.9	1.5	1.5	1.3	1.4	2.1	2.3	1.2	1.1	1.4	1.8	1.8	-
네덜란드	전체	-	-	-	-	-	-	-	2.6	2.9	3.0	2.8	-	-	-	-	-
남	-	-	-	-	-	-	-	-	2.5	2.7	3.0	2.8	-	-	-	-	-
여	-	-	-	-	-	-	-	-	2.7	3.2	3.1	2.7	-	-	-	-	-
뉴질랜드	전체	1.4	2.7	2.6	2.4	3.4	3.2	5.6	3.2	-	-	-	-	-	-	-	-
남	1.1	3.2	2.9	2.4	3.2	2.9	6.1	2.4	-	-	-	-	-	-	-	-	-
여	1.7	2.0	1.9	2.3	3.5	3.7	4.7	4.2	-	-	-	-	-	-	-	-	-
노르웨이	전체	-	-	-	-	3.2	2.8	4.2	5.1	3.9	4.6	3.1	3.4	3.2	2.7	2.7	2.9
남	-	-	-	-	3.3	2.5	3.9	5.6	3.1	4.5	3.7	2.9	3.4	2.7	2.5	2.9	-
여	-	-	-	-	3.2	3.2	4.6	4.3	5.2	4.8	2.4	4.2	2.9	2.7	2.8	2.7	-
스웨덴	전체	2.7	2.7	3.0	2.9	2.9	2.8	3.1	2.9	3.0	2.6	2.6	2.6	2.7	2.5	2.5	-
남	2.5	2.8	3.1	2.8	3.0	2.7	3.1	2.8	3.2	2.7	2.4	2.7	2.7	2.2	2.6	2.5	-
여	2.9	2.5	2.9	2.9	2.7	2.9	3.0	3.0	2.6	2.5	2.9	2.5	2.7	2.9	2.5	2.4	-

주: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Mental healthcare, Excess mortality for patients diagnosed with bipolar disorder. (다운로드일: 2025-08-18)

- OECD 인구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일생에 걸쳐 1번은 정신질환을 앓는 등 정신질환의 부담이 상당히 큼(OECD, 2014a).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는 입원진료와 지역사회연계, 환자관리에 초점을 둔 지표임
-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높음. 1 보다 높은 '초과사망비'는 정신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높음을 의미함
- 한국의 2023년 조울증의 초과사망비는 4.3로 노르웨이 2.9 핀란드 2.4, 리투아니아 1.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으로 나타남

〈표 14-5-6〉 OECD 국가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캐나다	전체 3.8	3.8	3.7	3.7	3.7	3.8	3.8	4.0	4.0	-	-	-	-	-	-	-	-
남	3.7	3.6	3.7	3.4	3.6	3.6	3.6	3.8	3.9	-	-	-	-	-	4.5	-	-
여	3.9	3.9	3.8	4.0	3.8	4.1	4.0	4.3	4.1	-	-	-	-	-	-	-	-
칠레	전체 2.7	3.3	2.7	2.4	3.1	3.3	2.7	3.5	3.2	2.9	2.7	3.2	2.7	2.8	2.8	-	-
남	2.2	4.2	3.0	2.2	3.6	3.3	3.0	3.3	2.9	2.7	2.8	3.3	2.4	2.6	2.6	-	-
여	3.4	1.7	2.2	2.6	2.4	3.2	2.2	3.8	3.8	3.3	2.5	3.2	3.1	3.1	3.1	-	-
체코	전체 -	-	2.7	3.1	3.1	3.3	2.9	3.2	3.1	3.2	3.4	3.3	3.4	3.4	3.4	3.5	-
남	-	-	2.6	2.9	3.0	2.9	2.7	2.8	2.8	2.9	3.3	3.1	3.0	3.0	3.1	3.3	-
여	-	-	2.9	3.4	3.4	4.0	3.3	4.0	3.5	3.8	3.7	3.7	4.0	4.1	3.8	3.8	-
덴마크	전체 4.1	4.3	4.0	4.3	4.4	4.3	4.8	4.5	4.3	4.9	4.6	4.5	4.4	4.7	5.0	4.8	5.1
남	4.2	4.6	3.8	4.2	4.2	4.4	4.7	4.1	4.3	4.5	4.4	4.6	4.5	4.8	4.9	4.8	5.0
여	3.9	3.9	4.2	4.3	4.5	4.2	4.8	5.0	4.4	5.5	4.9	4.3	4.1	4.6	5.2	4.8	5.2
핀란드	전체 -	2.9	2.9	2.8	2.9	2.9	3.1	2.8	3.1	3.0	3.3	3.2	3.0	3.2	3.6	3.5	-
남	-	2.7	2.6	2.4	2.6	2.8	2.5	2.4	2.9	2.8	2.9	3.0	2.8	2.9	3.2	3.1	-
여	-	3.5	3.5	3.7	3.3	3.0	4.2	3.6	3.4	3.5	3.9	3.5	3.3	3.8	4.2	4.2	-
아이슬란드	전체 -	-	-	-	-	-	-	2.9	-	3.5	2.9	4.3	4.3	5.2	5.0	6.3	6.0
남	-	-	-	-	-	-	-	1.8	3.1	3.6	2.9	4.7	3.3	4.9	4.3	6.1	6.5
여	-	-	-	-	-	-	-	4.1	-	3.3	2.8	3.9	5.6	5.7	5.8	6.5	5.3
이스라엘	전체 3.3	3.4	3.3	3.4	3.3	3.5	3.3	3.3	3.6	3.7	3.7	4.1	4.0	3.9	4.1	3.8	4.2
남	3.1	3.4	3.0	3.2	3.2	3.2	3.3	3.2	3.4	3.5	3.3	3.9	3.6	3.6	4.0	3.4	3.6
여	3.5	3.3	3.8	3.6	3.4	3.9	3.1	3.4	3.8	4.0	4.2	4.5	4.5	4.3	4.3	4.3	5.2
한국	전체 4.0	4.2	4.3	4.3	4.4	4.3	4.3	4.3	4.4	4.4	4.5	4.5	4.7	4.6	4.9	4.9	-
남	3.7	3.8	4.0	3.9	4.0	4.0	3.9	3.9	4.1	4.1	4.2	4.1	4.3	4.2	4.6	4.6	-
여	4.8	5.1	4.9	5.1	5.1	5.2	5.3	5.1	5.1	5.0	5.3	5.3	5.4	5.6	5.6	5.5	-
라트비아	전체 -	-	2.1	2.1	2.0	2.0	2.1	1.9	1.9	2.0	2.1	2.1	2.3	2.1	2.2	2.2	-
남	-	-	2.0	1.6	1.9	1.8	1.8	1.7	1.4	1.7	2.0	1.8	2.0	1.8	1.9	1.9	-
여	-	-	2.3	3.4	2.3	2.4	2.7	2.3	2.9	2.8	2.3	2.8	3.0	2.9	2.6	2.9	-
리투아니아	전체 1.7	1.8	1.7	1.7	1.7	1.8	1.9	1.8	1.7	2.0	1.9	2.0	2.1	2.0	2.0	2.1	-
남	1.5	1.5	1.5	1.6	1.4	1.6	1.6	1.7	1.5	1.7	1.5	1.7	1.9	1.8	1.7	1.9	-
여	2.3	2.5	2.5	2.3	2.5	2.3	2.5	2.1	2.4	2.6	2.7	2.5	2.7	2.5	2.6	2.8	-
네덜란드	전체 -	-	-	-	-	-	-	-	3.0	3.7	3.8	3.8	-	-	-	-	-
남	-	-	-	-	-	-	-	-	3.1	3.7	3.9	3.8	-	-	-	-	-
여	-	-	-	-	-	-	-	-	2.9	3.7	3.7	3.7	-	-	-	-	-
뉴질랜드	전체 4.4	4.6	3.5	5.2	5.1	4.7	4.9	4.4	-	-	-	-	-	-	-	-	-
남	6.2	3.5	4.1	3.5	4.8	3.3	4.2	3.0	-	-	-	-	-	-	-	-	-
여	2.1	6.1	2.7	7.2	5.7	6.6	5.9	6.3	-	-	-	-	-	-	-	-	-
노르웨이	전체 -	-	-	-	4.5	4.9	6.3	5.6	5.7	6.6	5.2	3.3	6.3	5.6	5.7	6.5	-
남	-	-	-	-	4.6	4.4	6.4	4.8	5.4	6.9	5.8	4.0	5.6	5.3	5.0	6.7	-
여	-	-	-	-	4.3	5.5	6.1	6.7	6.0	6.2	4.3	2.3	7.2	6.0	6.7	6.1	-
스웨덴	전체 4.0	4.2	4.0	4.0	4.9	4.7	4.6	4.8	4.9	4.6	5.0	4.8	4.5	4.3	4.8	5.0	-
남	3.8	3.9	3.9	3.8	4.6	4.1	4.5	4.2	4.6	4.2	4.5	4.1	4.5	4.0	4.2	4.6	-
여	4.1	4.6	3.9	4.2	5.1	5.5	4.7	5.6	5.4	5.1	5.6	5.8	4.6	4.7	5.7	5.4	-

주: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Mental healthcare, Excess mortality for patients diagnosed with schizophrenia. (다운로드일: 2025-08-18)

• 2022년 한국의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는 4.9로, 노르웨이의 5.7 등과 함께 다른 OECD국가 대비 다소 높은 편임



(5)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표 14-5-7) OECD 국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로 인한 평균 입원일수

(단위: 일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호주	24.9	25.5	22.8	23.4	23	31.3	41.3	24	25.4	26.5	28.2	29.8	29.2	-	-
오스트리아	31.5	31	31.1	29.4	35.2	34.5	28.8	34.7	32.1	36.5	38.7	36.6	35.3	-	-
벨기에	11.2	11.7	11.8	11.9	11.7	-	9.9	9.9	10.1	9.6	10.2	10.3	9.9	11.4	-
캐나다	23.7	23.4	23.9	42	41.9	44.3	42.6	40.4	38.2	37.9	32.2	35.9	37.7	36.6	-
칠레	108.1	88	76.3	70.5	57.8	87	94.6	64.9	61.6	75.9	65.1	59.1	65.7	58.3	48.1
코스타리카	90.9	36	41.4	66.9	69.2	96.6	91.9	40.2	53.6	27.1	22	15.3	16.5	17.7	-
체코	72.5	70.1	73.3	71.1	69.5	69.1	71	73.1	72.6	68.8	75.7	75.7	67	-	-
덴마크	35.6	36.3	34.6	29.7	28.7	27.9	29.3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26.8	34.5	-
핀란드	58.9	51.7	56.3	59.4	57.8	52.1	57.7	50.9	40.4	-	47.1	41.5	41.9	39.3	-
프랑스	4.7	4.5	4.6	4.5	4.4	4.3	36.5	37.2	37.1	37.9	43.2	41.5	39	38.2	-
독일	33.9	33.3	32.2	32	32.8	33.3	34.3	35.2	35.9	36.3	36.1	35.9	-	-	-
그리스	358.2	219	190	163	143	109	142.7	102.5	-	-	-	-	-	-	-
헝가리	37.9	39.9	41	37.6	38.2	41.5	40.4	42.5	42.6	39	42.1	32.7	31.7	36.7	-
아이슬란드	-	16	17.6	18	16.2	-	19.1	17.2	-	17.2	-	-	18.3	17.2	-
아일랜드	27.8	26.6	32	23.1	21.2	30.8	27.4	23.6	25.6	24.2	20.6	21	26.6	27.7	-
이스라엘	70.5	64.9	63.7	68.4	59.6	70.1	70.7	61.5	58.9	68.9	63.9	57.9	58	63.6	-
이탈리아	16.3	16.5	16.1	16.1	15.9	15.9	16	15.9	15.1	15	15.9	15.3	15.3	15.5	-
한국	204	199.7	196.2	207.2	201.2	251.9	223.3	237.8	234.3	216.1	242.3	194.7	247.5	229.8	-
라트비아	-	-	-	32.7	32.9	33.6	34.5	33.1	46.6	47.1	47.4	49.1	40.1	40.3	-
리투아니아	-	-	30.9	29.3	29.4	29	28	27.3	28	34.7	34.4	32.5	34.3	38.5	-
룩셈부르크	47.9	46.8	42.8	46.2	46.5	45.7	49.4	-	-	-	-	-	-	-	-
멕시코	46.5	44.9	48.7	55.1	54.6	70.5	65.1	46	64.8	48.5	72.8	58.1	46.6	51.3	-
네덜란드	28.5	25.7	27.8	31	27.9	27.8	31.2	29.4	27.4	27.7	26.8	27.8	28.9	-	-
뉴질랜드	46.2	53.7	49.6	45.6	43.8	47.9	40.9	43.4	38.8	38.4	40	40.5	40.1	-	-
노르웨이	3	29	26.5	26.4	25.1	25.7	23.3	21.6	21.1	21.7	21.6	22.5	22.1	22.4	-
폴란드	61.6	57.6	43.6	42.8	43.2	59.5	60.5	61.7	57.8	58.4	57.3	59.5	38.6	38.6	-
포르투갈	21.5	21.5	20.8	21.5	20.9	21.7	-	-	22.5	23.9	25.4	25.3	25.9	28.8	28.4
슬로바키아	36.5	34.6	35.8	-	34.6	35.4	35.7	36.2	35.6	36.1	36.7	37.1	39.5	40.2	-
슬로베니아	53.9	52.5	55.4	52	54.9	53.2	55.1	50.8	49.4	47.4	39.2	37	36.6	39.8	-
스페인	33.7	30.8	31.2	32.1	30.5	31.6	34.7	56.6	87	83.5	97.2	81	80	88.9	-
스웨덴	35.3	-	-	38.5	33.9	47.1	48.2	48.8	46.9	46.8	43.1	49.2	51.3	45.2	-
스위스	53.9	50	42.9	42.5	38.7	36.7	36.5	34.5	36	36.8	37.3	36	35.2	36.9	-
터키	-	24.8	16.3	22.6	29.1	14.3	15	14.5	15.8	-	-	-	-	-	-
영국	106.3	104.5	106.1	109.4	98.2	98	100.4	-	94.8	66.3	61.5	68.2	68	64.3	-
미국	10.1	-	-	-	-	-	-	-	-	-	-	-	-	-	-
OECD-평균	57.9	50.7	48.2	48.5	46.2	52.4	52.6	47.2	48.5	46.7	49.1	45.8	45.1	4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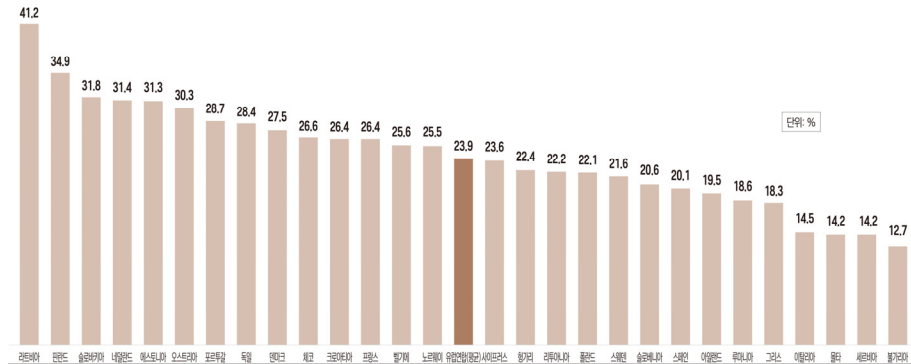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다운로드일: 2025-08-14)2, EU

• 2022년 한국의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Schizophrenia, schizotypal and delusional disorders) 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247.5일로 OECD 평균 45.1일의 약 5.4배 수준임

2.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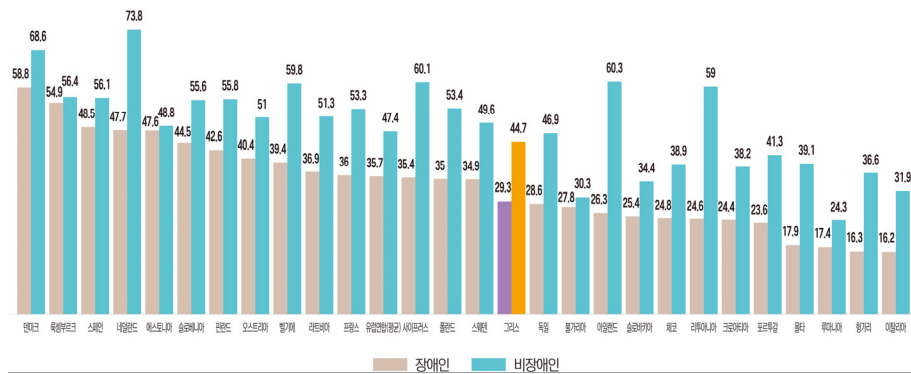
[그림 3-2-1]

EU 국가의 장애인 출현율 - 장애정도별(2024년)



[그림 3-2-2]

EU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18-24세) - 장애유무별(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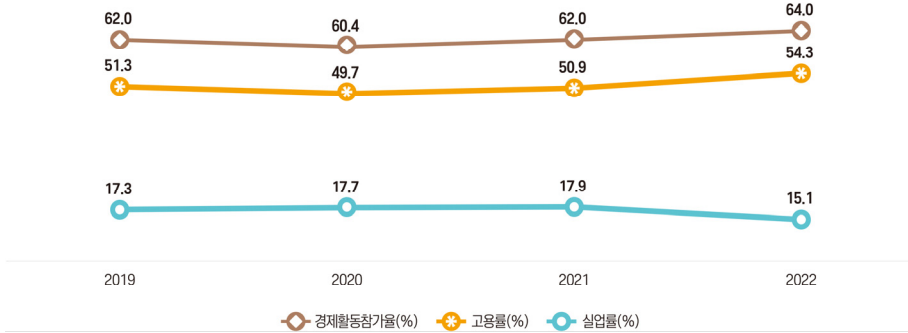


- 2024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출현율은 23.9%로, 2023년(26.8%)에 비해 2.9%p 감소함
- 2024년 국가별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라트비아(41.2%), 핀란드(34.9%)는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출현율을 보인 반면, 불가리아(12.7%), 몰타, 세르비아(각 14.2%)는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출현율을 보임.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35.7%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7.4%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1.7%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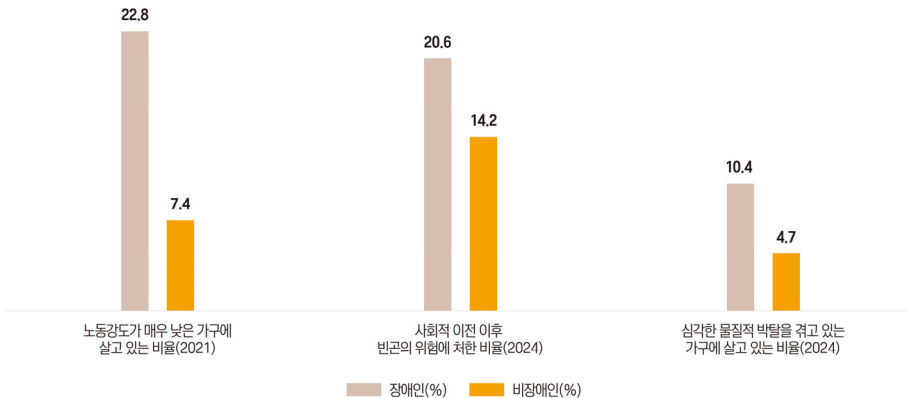
[그림 3-2-3]

EU 국가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연도별



[그림 3-2-4]

EU 국가의 빈곤 현황 - 장애유무별(2024년)



-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최근 4년간(2019~2022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62.0% 대비 2022년 64.0%로 증가함
 - 고용률은 2019년 51.3% 대비 2022년 54.3%로 증가함
 - 실업률은 2019년 17.3% 대비 2022년 15.1%로 감소함
-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이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22.8%로 비장애인의 7.4%에 비해 15.4%p 높음
 - 장애인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은 2024년 기준 20.6%로 비장애인의 14.2%에 비해 6.4%p 높음
 - 장애인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2024년 기준 10.4%로 비장애인의 4.7%에 비해 5.7%p 높음

1) 장애인구

(1) 장애출현율

〈표 15-1-1〉 EU 국가 장애출현율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럽연합(평균)	27.4	25.4	24.2	24.6	25.0	24.5e	24.9	25.2	27.0	26.8	23.9
오스트리아	33.0	33.1	34.2	34.2	34.1	33.9	31.9	27.5	28.9	29.7	30.3
벨기에	24.0	23.6	24.7	24.8	25.2	27.2b	25.0	24.4	25.6	25.4	25.6
불가리아	18.0	19.3	16.2	18.8	16.6	16.1	16.2	17.7	14.6	13.6	12.7
크로아티아	28.9	35.1	32.3	32.9	33.4	34.4	32.6	31.9	30.8	28.9b	26.4
사이프러스	18.3	20.8	16.0	19.8	24.0	24.4	23.1	19.8	20.6	22.0	23.6
체코	23.6	24.9	25.2	28.1	28.0	28.6	29.4	24.7	26.6	26.8	26.6
덴마크	28.2	30.5	28.7	30.2	29.0	31.1	33.0	35.2	36.1	36.7	27.5b
에스토니아	34.1	35.0	32.3	34.4	39.5	35.0	32.6	33.4	30.5	32.5	31.3
핀란드	32.6	33.1	32.6	33.5	34.2	35.5	35.0	28.2	33.9	34.8	34.9
프랑스	24.8	25.2	25.7	25.4	25.2	25.0	25.1b	22.7	25.3b	26.8	26.4
독일	36.2	21.2b	21.3	22.1	22.3	21.8	24.5b	24.5	30.4	28.2e	28.4
그리스	24.0	24.8	24.7	24.3	23.8	23.1	23.5	23.3	22.2	23.1	18.3
헝가리	26.4	27.7	26.9	26.1	25.4	24.8	22.8	21.5	23.0	22.3	22.4
아일랜드	17.6	17.6	16.4	17.0	15.8	16.1b	19.4b	18.3	20.4	20.5	19.5
이탈리아	29.0	29.0	22.3	23.9	23.7	22.1	22.4	22.2	22.7	20.6	14.5b
라트비아	37.4	38.4	37.4	41.3	40.0	39.5	39.7	37.1	38.5	40.7	41.2
리투아니아	25.8	30.7	29.3	30.1	30.6	31.7	32.6	31.2	27.9	27.4	22.2p
룩셈부르크	23.8	25.7	27.0	28.3	27.2	25.5	24.7b	25.5b	28.5b	-	-
몰타	10.0	9.8	12.9	11.8	11.9	11.8	14.1	16.7	15.1	13.8	14.2
네덜란드	28.4	30.7	29.5	30.4	31.2	29.3	28.6	29.9	32.3	32.4	31.4
폴란드	24.2	24.4	22.8	24.0	24.0	24.4	24.4	23.0	24.2	24.4	22.1
포르투갈	35.2b	36.1	33.0	33.3	33.5	33.0	32.1	34.9	34.0	33.4	28.7b
루마니아	26.4	26.1	26.1	27.6	26.5	25.4	25.9	29.4	28.7	30.6	18.6
슬로바키아	32.0	31.5	29.4	31.9	31.2	31.4	32.1	30.5	30.6	30.5	31.8
슬로베니아	29.8	31.5	31.2	36.3	35.4	28.5	22.1	21.4	20.9	21.6	20.6
스페인	23.6	24.8	22.4	18.6	20.6	18.4	22.8	28.0	30.4	29.6	20.1
스웨덴	12.8b	12.9	12.6	13.1	13.0	13.1	12.9	19.4	21.7	22.6	21.6
영국	23.0	23.4	24.2	25.2b	27.3	-	-	-	-	-	-
스위스	31.6	29.9	31.3	29.8	30.4	30.2	28.7	29.5	31.7	34.0	-
아이슬란드	17.9	18.2	20.2	25.6	26.0	27.7	24.3	-	-	-	-
노르웨이	15.7	15.9	16.9	16.3	16.9	19.6	20.0	19.0b	20.9	25.4b	25.5
세르비아	16.2	17.3	15.9	18.7	13.4	14.5	13.2	12.2	12.6	11.0	14.2

주: 1)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사계절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SILC_12 / 검색일: 2025.8.5.)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4년 EU 국가의 장애출현율은 23.9%로, 2023년(26.8%)에 비해 2.9%p 감소함

• 2024년 국가별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라트비아(41.2%), 핀란드(34.9%)는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출현율을 보인 반면, 불가리아(12.7%), 몰타, 세르비아(각 14.2%)는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출현율을 보임.

※ EU SILC 장애 개념

- EU SILC 문항 중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제한됨', '제한됨'에 응답한 사람을 장애가 있다고 정의함



〈표 15-1-2〉 EU 국가 장애출현율(2024)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정도	
		남성	여성	16-64세	65세 이상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23.9	21.5	26.2	16.1	47.3	6.7	17.2
오스트리아	30.3	28.9	31.7	24.2	52.3	8.5	21.8
벨기에	25.6	23.4	27.7	21.1	40.1	8.4	17.2
불가리아	12.7	10.6	14.5	6.6	28.2	2.2	10.4
크로아티아	26.4	24.1	28.5	14.1	60.5	7.1	19.3
사이프러스	23.6	23.1	24.0	14.6	57.2	8.4	15.1
체코	26.6	24.3	28.6	16.9	55.2	7.2	19.4
덴마크	27.5b	24.8b	30.1b	22.9b	41.2b	4.5b	23.0b
에스토니아	31.3	28.9	33.4	22.1	58.5	10.6	20.8
핀란드	34.9	31.5	38.3	28.8	50.7	7.0	27.9
프랑스	26.4	23.9	28.7	19.7	45.4	10.1	16.3
독일	28.4	26.4	30.4	19.4	55.5	8.6	19.8
그리스	18.3	16.6	19.8	6.6	49.6	8.7	9.6
헝가리	22.4	19.5	25.0	12.5	53.3	6.0	16.4
아일랜드	19.5	18.6	20.4	15.3	37.9	4.9	14.6
이탈리아	14.5b	12.5b	16.5b	5.9b	37.0b	4.3b	10.2b
라트비아	41.2	37.6	44.1	28.9	75.7	11.1	30.1
리투아니아	22.2p	19.9p	24.1p	12.9p	50.6p	5.5p	16.6p
룩셈부르크 ^{주1)}	28.5b	26.5b	30.5b	24.9b	47.6b	5.8b	22.7b
몰타	14.2	11.6	17.1	8.5	36.2	3.5	10.6
네덜란드	31.4	28.0	34.9	25.5	50.	4.5	27.0
폴란드	22.1	19.9	23.9	13.4	46.	6.5	15.6
포르투갈	28.7b	23.8b	33.1b	18.2b	55.7b	5.5b	23.2b
루마니아	18.6	15.3	21.6	6.9	56.8	3.2	15.4
슬로바키아	31.8	29.7	33.7	21.7	68.3	9.3	22.5
슬로베니아	20.6	19.6	21.6	14.6	39.2	6.0	14.6
스페인	20.1	17.6	22.5	14.2	39.8	3.9	16.3
스웨덴	21.6	18.5	24.7	18.3	31.1	4.7	16.9
영국	-	-	-	-	-	-	-
스위스 ^{주1)}	34.0	30.5	37.4	29.7	49.2	5.9	28.1
아이슬란드	-	-	-	-	-	-	-
노르웨이	25.5	20.3	30.8	23.3	32.9	7.7	17.8
세르비아	14.2	12.3	15.9	7.6	32.3	5.8	8.4

주: 1)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스위스 2023년, 룩셈부르크 2022년 기준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SILC_12 / 검색일: 2025.8.5.)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4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출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여성 장애출현율은 26.2%로 남성 21.5%에 비해 4.7%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65세 이상 장애출현율은 47.3%로 16-64세 16.1%에 비해 높음.
특히 라트비아(75.7%), 슬로바키아(68.3%), 크로아티아(60.5%)는 65세 이상 장애출현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경증 장애출현율은 17.2%로 중증 6.7%에 비해 10.5%p 높음.
특히, 라트비아(11.1%), 에스토니아(10.6%), 프랑스(10.1%)는 중증 장애출현율이 10% 이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2) 건강

(1) 만성질환자 비율

〈표 15-2-1〉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럽연합(평균)	82.8e	85.9e	85.6e	84.6e	85.2e	85.9e	82.8u	82.6u	81.6	82.7	86.5
오스트리아	78.9	79.3	80.3	82.3	78.8	81.0	81.8	85.2	85.0	85.4	85.8
벨기에	78.9	79.8	80.5	78.4	77.5	77.6b	80.2	80.2	83.3	84.0	83.9
불가리아	74.9	72.9	84.4	86.0	86.9	85.5	83.6	76.6	82.3	85.5	83.8
크로아티아	80.4	79.7	85.3	87.5	84	84.7	83.6	79.1	81.2	82.3b	85.4
사이프러스	92.8	94.9	94.0	94.5	97.4	97.4	98.3	98.9	97.6	98.3	99.5
체코	95.3u	95.7u	95.2u	93u	94.3u	93.9u	94.3u	97.2	97.1	97.8	97.4
덴마크	70.2	68.3	71.7	70.7	71.8	71.6	72.0	72.8	71.1	73.1	80.0b
에스토니아	95.0	94.5	93.3	92.4	87.7	86.6	87.9	90.7	96.3	94.4	94.7
핀란드	83.0	83	84.9	84.7	84.6	83.5	82.2	93.1	90.7	90.3	91.2
프랑스	86.9	85.5	87.2	86.7	86	85.7	86.3b	88.5	88.1p	86.5	87.9
독일	79.4	98.8	98.5	98.8	98.4	98.6	-	-	88.8u	90.5e	82.2
그리스	87.3	78.2	80.1	80.8	84.4	87.0	88.5	95.8	93.8	94.8	96.3
헝가리	95.9	96.4	94.0	93.5	94.0	96.8	97.8	98.0	97.5	96.9	97.3
아일랜드	91.7	90.8	91.5	90.7	88.7	89.9	87b	91.9	91.4	92.1	88.9
이탈리아	69.8	70.1	57.1	50.2	55.2	56.5	63.5	64.1	60.4	60.0	83.2b
라트비아	92.2	91.9	90.7	87.1	86.1	90.2	88.4	87.0	88.2	88.7	88.1
리투아니아	87.9	86.5	88.7	86.4	87.6	84.4	84.5	83.6	88.6	91.1	95.1b
룩셈부르크	60.7	59.7	66.6	64.6	65.2	68.7	69.6b	65.5b	56.1b	-	-
몰타	82.8	88.8	87.5	84.3	82.9	85.9	84.9	82.4	85.5	86.2	87.1
네덜란드	80.5	78.5	78.2	77.8	74.8	79.9	79.2	80.4	79.4	80.8	80.6
폴란드	89.4	90.3	94.1	94.3	94.0	94.0	93.4	93.1	93.1	95.0	97.0
포르투갈	80.8	80.9	80.8	82.1	80.9	81.6	83.0	77.0	79.0	80.5	84.6b
루마니아	70.0	71.2	68.0	69.2	68.9	68.4	70.6	64.9	64.4	65.8	84.0
슬로바키아	82.7	84.3	83.8	80.7	82.4	85.2	88.9	93.4	93.2	91.5	93.3
슬로베니아	78.2	77.7	80.5	79.6	80.8	76.1	90.1	87.1	89.2	91.0	89.3
스페인	82.6	86.9	86.1	85.5	88.8	87.5	82.4	78.1	76.7	75.2	87.1
스웨덴	90.6	90.6	90.4	90.6	90.0	91.9	89.3	88.3	86.3	86.0	86.8
영국	100.0	100	100.0	100.0b	100.0	-	-	-	-	-	-
스위스	75.5	73.9	75.1	73.8	73.3	74.7	73.5	74.8	76.0	73.3	-
아이슬란드	100.0	100.0	100.0	74.4	72.6	72.8	75.0	-	-	-	-
노르웨이	91.3	91.4	90.7	90.1	93.7	91.4	92.2	-	100.0	100.0	100.0
세르비아	76.7	81.0	83.0	83.8	81.9	80.8	82.2	86.0	85.1	-	84.1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 유무를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020 / 검색일: 2025.8.5.)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4년 EU국가의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은 86.5%로, 2023년(82.7%)에 비해 3.8%p 증가함

• 2024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이프러스(99.5%), 헝가리(97.3%), 폴란드(97.0%)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덴마크(80.0%), 네덜란드(80.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15-2-2〉 EU 국가 장애인의 만성질환자 비율 (2024) -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장애정도	
		남성	여성	16~64세	65세 이상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86.5	86.1	86.9	85.1	87.9	95.1	83.2
오스트리아	85.8	84.4	87.0	86.2	85.1	96.2	81.7
벨기에	83.9	83.2	84.5	86.0	80.4	93.7	79.2
불가리아	83.8	83.7	83.9	79.3	86.5	92.1	82.0
크로아티아	85.4	85.0	85.6	84.1	86.2	97.7	80.8
사이프러스	99.5	99.6	99.4	99.3	99.6	99.5	99.4
체코	97.4	97.5	97.4	97.8	97.1	99.6	96.7
덴마크	80.0b	75.9b	83.2b	80.8b	78.7b	94.9b	77.1b
에스토니아	94.7	94.6	94.8	94.6	94.8	97.7	93.2
핀란드	91.2	90.5	91.8	89.2	94.2	97.2	89.8
프랑스	87.9	87.8	88.0	86.2	90.0	93.9	84.2
독일	82.2	81.9	82.5	80.7	83.8	92.7	77.7
그리스	96.3	95.9	96.6	93.5	97.3	100.0	93.0
헝가리	97.3	97.1	97.4	96.6	97.8	99.2	96.6
아일랜드	88.9	87.9	89.8	90.5	86.2	98.0	85.8
이탈리아	83.2b	83.9b	82.8b	81.6b	83.9b	95.4b	78.1b
라트비아	88.1	87.1	88.8	83.3	93.2	99.3	84.0
리투아니아	95.1b	93.2p	96.5p	92.5p	97.2p	98.7p	94p
룩셈부르크 ^{주1)}	56.1b	52.8b	59.2b	53.5b	63.5b	78.1b	50.4b
몰타	87.1	88.9	85.6	82.2	91.5	86.4	87.3
네덜란드	80.6	80.7	80.5	80.1	81.4	96.1	78.0
폴란드	97.0	97.2	96.8	96.9	97.0	98.9	96.1
포르투갈	84.6b	83.9b	85.1b	83.4b	85.6b	95.8b	81.9b
루마니아	84.0	81.9	85.4	77.9	86.5	97.5	81.3
슬로바키아	93.3	92.5	94.0	92.9	93.8	98.1	91.3
슬로베니아	89.3	88.3	90.2	88.3	90.5	94.8	87.0
스페인	87.1	86.4	87.7	84.7	90.0	94.6	85.4
스웨덴	86.8	85.6	87.7	85.3	89.3	95.5	84.3
영국	-	-	-	-	-	-	-
스위스 ^{주1)}	73.3	70.9	75.2	70.7	78.7	79.6	72.0
아이슬란드	-	-	-	-	-	-	-
노르웨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르비아	84.1	83.4	84.6	78.2	88.0	86.8	82.3

주: 1) 16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스위스 2023년, 룩셈부르크 2022년 기준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020 / 검색일: 2025.8.5.)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4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여성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은 86.9%로 남성 86.1%에 비해 0.8%p 높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65세 이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은 87.9%로 16~64세 85.1%에 비해 2.8%p 높음.

특히 노르웨이, 사이프러스, 헝가리, 그리스, 리투아니아, 체코, 폴란드는 65세 이상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중증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은 95.1%로 경증 83.2%에 비해 11.9%p 높음.

특히 노르웨이, 그리스, 체코,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헝가리는 중증 장애인 만성질환자 비율이 9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3) 주거

(1) 주거박탈률

〈표 15-3-1〉 EU 국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3
유럽연합(평균)	4.5	4.4	4.1	3.7	3.8	3.8e	4.4e	-
오스트리아	3.7	3.9	4.6	4.4	4.1	3.5	2.9	-
벨기에	0.7	0.9	1.5b	1.8	1.9	1.7b	2.0	-
불가리아	12.5	10.8	9.1	8.5	7.9	6.1	6.7	-
크로아티아	8.2	7.7	7.3	7.1	6.4	5.9	5.2	3.3b
사이프라스	1.4	0.6	0.7	1.3	0.8	1.8	0.3	1.9
체코	3.7	2.9	2.9	1.5	1.9	1.9	2.2	2.3
덴마크	1.7	2.9	2.2	2.8	3.0	2.3	2.9	2.1
에스토니아	3.9	2.7	4.0	3.5	2.4	3.3	2.8	-
핀란드	1.4	1.0	1.0	0.8	0.8	1.0	0.9	-
프랑스	1.8	1.8	2.2	1.7	2.5	2.1	3.0b	3.7
독일	1.7	1.3	1.4	1.5	1.7	1.8	1.9b	-
그리스	6.8	6.6	6.3	5.9	5.4	5.7	5.9	-
헝가리	14.6	13.8	14.7	14.3	6.1	5.9	6.1	-
아일랜드	0.7	1.4	0.8	0.6	1.2	0.9b	1.2b	1.6
이탈리아	9.1	7.8	6.1	4.4	5.7	5.2	6.2	-
라트비아	16.1	14.9	13.9	14.4	13.9	12.5	11.3	-
리투아니아	6.9	8.3	6.5	6.4	6.1	6.8	4.7	4.4
룩셈부르크	1.4	1.6	1.7	2.0	2.0	2.6	2.5b	-
몰타	0.5	1.0	0.8	0.9	1.7	2.0	0.7	-
네덜란드	0.7	0.4	1.4	0.9	1.1	1.1	1.4	0.4
폴란드	9.2	11.1	11.5	10.3	10.5	9.2	-	-
포르투갈	4.3	4.2	4.6	3.5	3.4	3.4	3.1	5.3
루마니아	16.9	15.0	13.5	12.6	12.5	10.8	10.7	-
슬로바키아	3.1	3.7	3.9	5.5	4.0	4.0	3.6	-
슬로베니아	6.7	5.8	4.2	4.1	4.4	3.0	4.2	-
스페인	1.2	1.0	1.5	0.7	1.8	1.8	3.5	-
스웨덴	3.4	3.6	4.9	4.5	4.9	3.0	1.9	-
영국	1.6	1.4	1.3	1.0b	1.6	-	-	-
스위스	1.3	1.2	1.9	1.1	1.3	1.4	1.2	1.3
아이슬란드	2.5	2.1	2.0	1.2	1.3	4.7	1.5	-
노르웨이	1.2	1.6	1.1	1.3	1.2	0.7	0.7	-
세르비아	18.8	20.2	19.4	20.8	15.7	16.7	12.4	11.2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심각한 주거박탈률을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C030 / 검색일: 2025.8.5.)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0년 유럽연합 국가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은 4.4%로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함

• 2020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의 심각한 주거박탈률을 살펴보면, 세르비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라트비아(11.3%), 루마니아(1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EU SILC 주거박탈의 정의

- EU SILC에서 주거박탈은 주거 내 거주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열악함을 의미함(내용 출처-EUROSTAT statistics explained)



(2) 주거비 부담률

〈표 15-3-2〉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 - 연도별, 국가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럽연합(평균)	13.1	12.5	12.5	12.5	12.4	12.1e	8.9	8.5	10.6	11.1	10.4
오스트리아	7.1	6.6	7.5	7.3	7.2	7.6	7.5	8.0	8.5	8.0	7.8
벨기에	15.7	15.0	15.9	14.4	15.0	12.9b	13.5	13.3	13.8	14.3	12.0
불가리아	15.0	21.6	27.2	29.0	25.0	22.4	22.0	16.8	24.2	15.3	10.1
크로아티아	10.4	10.2	9.8	8.9	8.3	7.9	7.6	8.0	7.3	7.8b	6.0
사이프러스	4.8	2.5	2.4	2.7	1.3	1.6	2.2	2.5	2.8	3.2	2.0
체코	16.1	16.8	15.1	15.8	-	12.5	11.6	8.8	10.7	13.0	11.3
덴마크	20.9	20.3	20.7	22.1	21.9	21.0	19.1	19.6	20.8	21.0	21.2b
에스토니아	8.7	6.9	5.6	5.3	5.5	5.1	4.8	4.8	7.1	9.4	11.2
핀란드	6.3	7.1	4.4	5.1	-	5.2b	6.1	4.8	7.0	7.1	6.5
프랑스	5.5	7.3	5.9	6.0	5.4	7.0	7.2b	-	8.4b	8.0	9.5
독일	20.6	21.6	22.6	20.8	19.2	17.7	10.2b	13.5	15.1	16.2e	15.2
그리스	39.9	39.7	34.1	34.9	34.5	33.7	29.4	24.9	28.4	31.5	33.0
헝가리	13.6	9.6	10.6	12.2	-	4.5	3.7	2.7	11.5	9.8	13.2
아일랜드	6.0	4.7	5.6	4.6	3.2	5.2	3.3b	2.3	3.3	4.3	2.9
이탈리아	8.0	7.8	9.0	7.4	8.3	8.9	6.9	6.5	7.1	6.3	5.4b
라트비아	11.6	9.6	9.4	8.8	-	7.3	6.0	6.3	7.5	9.1	8.9
리투아니아	9.9	12.9	11.8	8.9	7.2	6.3	3.3	3.2	5.0	6.4	9.2p
룩셈부르크	8.3	8.0	8.5	7.4	12.3	12.2	10.7b	7.0b	9.7b	-	-
몰타	1.6	1.4	3.0	1.8	1.3	2.4	3.1	3.0	3.4	6.4	5.6
네덜란드	19.4	18.0	15.5	14.2	13.4	14.8	11.5	13.1	16.0	13.4	7.1
폴란드	11.3	9.9	9.3	9.0	8.7	7.9	7.8b	9.3	8.4	8.9	6.8
포르투갈	8.3	8.2	6.8	6.9	5.9	5.6	3.7	5.9	5.1	4.3	6.1b
루마니아	17.0	16.5	15.4	13.8	-	11.1	8.9	8.4	10.2	10.7	4.7
슬로바키아	9.6	8.9	9.1	12.2	5.3	5.0	4.7	6.6	3.0	5.4	6.0
슬로베니아	7.5	7.0	6.7	6.1	6.6	5.1	6.3	6.2	5.0	5.5	5.5
스페인	9.2	8.4	8.1	8.1	7.8	7.1	8.0	9.5	8.9	7.5	7.5
스웨덴	13.2	11.0	11.7	15.1	14.7	17.1	13.6	14.8	17.2	18.2	17.5
영국	11.7	11.8	12.1	14.6b	18.5	-	-	-	-	-	-
스위스	17.5	17.2	18.6	18.1	19.5	21.6	20.6	20.7	19.6	19.3	-
아이슬란드	9.2	9.8	6.2	10.2	8.2	18.1	16.4	-	-	-	-
노르웨이	8.5	14.5	12.6	11.4	12.0	18.5	12.7	14.0b	15.2	15.6	17.7
세르비아	34.6	36.4	-	38.7	36.0	26.1	26.4	20.1	19.3	22.3	17.7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과다부담률을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C060 / 검색일: 2025.8.5.)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4년 유럽연합 국가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10.4%로 2023년에 비하여 0.7%p 감소함

• 2024년 기준으로 국가별 장애인의 주거비 과다부담률을 살펴보면, 그리스가 3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덴마크(21.2%), 노르웨이, 세르비아(각 1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사이프러스(2.0%), 아일랜드(2.9%)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과다부담률이 낮게 나타남

※ EU SILC 주거비 과다부담률의 정의

-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전체 가구 중 주거비가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여기서 주거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주거유지비,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포함함(내용출처-EUROSTAT(2019) Disability statistics-/housing conditions)

(3) 주거지 내 환경 문제

〈표 15-3-3〉 EU 국가 장애인의 주거지 내 환경 문제 - 연도별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붕이 새거나, 벽, 바닥 등은 젖었거나, 창문 틀 및 바닥이 부패된 주거지에 살고 있음	19.3	19.1	18.8	17.2e	17.8e	16.9e	18.6	18.6e	-	18.9e	-
목욕 및 샤워시설이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3.1	3.0	2.9	3.0e	2.6e	2.5e	2.6	-	-	-	-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3.1	3.0	3.1	3.3e	2.8e	2.7e	2.7	-	-	-	-
너무 어두운 주거지에 살고 있음	7.4	7.2	7.1	6.8e	7.3e	7.1e	8.3u	-	-	8.3e	-
이웃 또는 거리에서 소음이 심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	21.6	21.5	20.9	21.1e	21.6e	21.0e	20.9e	-	-	22.5e	-
오염, 얼룩 또는 다른 환경적 문제가 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3.0	13.3	13.2	13.0e	13.8e	14.1e	12.8e	-	-	11.2e	-
지역 내 범죄, 폭력 또는 공공기를 파손이 발생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6.7	16.6	13.3	15.0e	15.2e	14.9e	13.4e	-	-	13.0e	-
적절하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없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4.0	13.6	13.4	11.4	11.0	10.3e	10.7	11.3	13.8	15.1	13.2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내 환경 문제를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HC070 ~ HLTH_DHC140 / 검색일: 2025.8.7.)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3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주거 내 환경 문제를 살펴보면, '이웃 또는 거리에서 소음이 심한 주거지에 살고 있음'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붕이 새거나, 벽, 바닥 등은 젖었거나, 창문 틀 및 바닥이 부패된 주거지에 살고 있음' 18.9%, '지역 내 범죄, 폭력 또는 공공기를 파손이 발생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3.0%, '오염, 얼룩 또는 다른 환경적 문제가 있는 주거지에 살고 있음' 11.2% 순으로 나타남



4) 교육

(1) 학업중단율

〈표 15-4-1〉 EU 국가의 학업중단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유럽연합(평균)	20.3	21.8	22.9	16.4	19.2	8.6	10.2
오스트리아	23.5	15.4	19.1	19.1	12.4	6.6	7.2
벨기에	15.3	13.7	21.6	17.3	10.2	5.2	6.1
불가리아	(24.9)	(16.3)	(38.2)	(6.9)	(a)	16.6	16.8
크로아티아	21.7	18.4	19.3	16.4	23.1	1.9	3.0
사이프러스	17.2	8.0	(25.1)	(24.6)	(13.4)	2.7	3.3
체코	a	(8.2)	(1.9)	9.9	18.4	8.0	8.8
덴마크	11.5	18.0	18.2	8.9	10.3	5.1	6.8
에스토니아	16.2	20.3	26.0	15.6	24.7	7.2	9.3
핀란드	16.4	20.3	12.8	19.2	16.8	3.6	6.9
프랑스	19.7	19.2	28.0	17.9	21.3	6.0	7.5
독일	23.7	30.0	29.4	19.0	26.1	9.8	12.4
그리스	18.5	(7.8)	(8.2)	(3.9)	(10.3)	2.9	3.0
헝가리	23.2	17.1	(40.4)	(15.2)	(47.2)	11.0	12.4
아일랜드	10.7	(28.3)	16.5	13.5	11.7	3.1	4.0
이탈리아	32.4	27.0	26.2	18.4	36.3	15.3	16.5
라트비아	17.2	16.6	29.1	10.4	(22.0)	6.8	7.9
리투아니아	17.9	15.9	(10.2)	(25.4)	(26.1)	3.0	5.2
룩셈부르크	18.6	17.0	12.7	1.6	24.4	3.8	5.8
몰타	a	a	(28.3)	(34.3)	(31.8)	11.1	11.7
네덜란드	7.7	15.4	14.0	7.5	11.0	3.1	6.3
폴란드	13.7	10.5	16.2	9.4	9.5	3.6	3.9
포르투갈	21.9	23.2	22.1	20.0	21.4	5.9	7.5
루마니아	(29.8)	41.4	28.9	(39.0)	(38.9)	14.0	14.6
슬로바키아	15.5	18.3	22.1	22.2	14.4	8.1	8.4
슬로베니아	5.8	5.7	(3.6)	(2.9)	(1.9)	2.1	3.6
스페인	30.4	32.4	24.0	17.5	20.0	10.9	11.9
스웨덴	a	(6.5)	(11.1)	22.4	10.5	7.4	8.8

주: 1) 18세~2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 수치는 관측치가 20~49명 수준으로 해석시 주의해야 함. a는 관측치가 20명 미만을 의미함

자료: 1)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0. p50.

2) EUROPEAN COMMISSION. (2023).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1. p56-57.

3) EUROPEAN COMMISSION. (2024).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2. p51-52.

- 2024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학업중단율은 19.2%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은 8.6%로 장애인의 학업중단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0.6%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2) 고등교육 이수율

〈표 15-4-2〉 EU 국가의 고등교육 이수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유럽연합(평균)	29.4	32.5	33.5	34.3	35.7	47.4	46.1
오스트리아	42.1	34.7	39.1	36.3	40.4	51	49.6
벨기에	35.3	30.4	31.7	33.4	39.4	59.8	57.3
불가리아	(7.6)	(6.4)	(17.3)	(65.7)	(27.8)	30.3	30.2
크로아티아	17.3	28.7	19.2	34.6	(24.4)	38.2	37.1
사이프러스	43.1	42.7	31.4	(32.8)	(35.4)	60.1	58.2
체코	35.7	27.1	29.2	20.1	24.8	38.9	37.6
덴마크	(45.5)	49.5	49.7	52.7	58.8	68.6	65.9
에스토니아	43.4	44.0	32.3	42.4	47.6	48.8	48.6
핀란드	42.4	40.1	45.9	38.8	42.6	55.8	53
프랑스	28.9	42.5	37.1	30.9	36.0	53.3	51.3
독일	17.0	25.1	25.9	26.7	28.6	46.9	44.8
그리스	33.8	20.2	24.3	(28.7)	(29.3)	44.7	44
헝가리	23.1	33.7	(17.0)	(27.1)	(16.3)	36.6	35.6
아일랜드	(39.9)	(30.4)	(42.3)	(29.6)	(26.3)	60.3	57.1
이탈리아	23.8	16.6	16.7	26.9	16.2	31.9	30.7
라트비아	42.9	32.1	30.7	43.0	36.9	51.3	49.5
리투아니아	(46.9)	54.1	55.6	59.2	(24.6)	59	55.3
룩셈부르크	35.9	46.8	(41.9)	57.4	54.9	56.4	56.1
몰타	a	(40.2)	(41.9)	(37.9)	(17.9)	39.1	38.2
네덜란드	49.2	41.7	44.8	49.4	47.7	73.8	69.4
폴란드	32.2	33.1	30.5	29.1	35.0	53.4	51.9
포르투갈	30.6	24.0	28.4	24.7	23.6	41.3	38.4
루마니아	18.0	22.6	(23.4)	23.3	(17.4)	24.3	23.9
슬로바키아	29.7	34.6	32.2	32.2	25.4	34.4	33.4
슬로베니아	38.9	34.4	(27.1)	(39.5)	(44.5)	55.6	54.6
스페인	31.7	36.1	42.7	39.9	48.5	56.1	54.9
스웨덴	(27.0)	(21.8)	(21.9)	37.3	34.9	49.6	47.1

주: 1) 18세~2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 수치는 관측치가 20~49명 수준으로 해석시 주의해야 함. a는 관측치가 20명 미만을 의미함

자료: 1)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0. p63.

2) EUROPEAN COMMISSION. (2023).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1. p73.

3) EUROPEAN COMMISSION. (2024).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2. p67-68.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35.7%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7.4%로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1.7%p 낮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OECD국가는 학력수준을 low(ISCED levels 0~2), medium(ISCED levels 3~4), high(ISCED levels 5~8)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본 데이터는 ISCED levels 5~8 이수 이상을 조사한 결과임



5) 고용

(1) 고용률

〈표 15-5-1〉 EU 국가의 고용률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유럽연합(평균)	51.3	49.7	50.9	54.3	76.3	72.1
오스트리아	54.6	53.9	50.7	53.2	77.6	71.8
벨기에	44.1	41.6	41.6	44.0	79.0	71.6
불가리아	40.2	43.6	51.2	44.5	77.4	74.8
크로아티아	37.0	36.9	40.9	36.1	74.1	67.3
사이프러스	52.4	52.3	48.6	50.6	77.7	74.6
체코	55.2	55.5	53.9	58.9	83.1	78.9
덴마크	60.1	59.5	54.2	60.0	81.0	73.9
에스토니아	64.9	61.0	61.1	58.9	85.0	79.3
핀란드	56.9	59.6	53.9	59.4	77.5	72.6
프랑스	56.9	50.8	49.4	54.0	76.0	71.8
독일	53.3	45.2	(47.7)	54.3	77.5	72.4
그리스	32.6	33.9	38.1	40.0	66.8	64.1
헝가리	50.2	47.8	48.3	45.8	79.6	74.9
아일랜드	32.6	34.8	34.7	43.2	80.4	74.1
이탈리아	51.6	49.9	54.4	54.4	69.6	67.7
라트비아	60.8	62.2	62.4	60.0	83.1	76.8
리투아니아	53.9	57.5	56.3	47.7	84.0	77.2
룩셈부르크	51.5	51.7	59.1	66.2	76.0	73.6
몰타	47.1	46.1	48.8	53.5	82.7	80.2
네덜란드	56.3	59.5	55.7	60.6	85.0	78.4
폴란드	43.3	44.8	43.8	49.1	80.1	75.2
포르투갈	59.8	58.7	63.0	65.0	79.7	76.1
루마니아	46.3	46.8	45.3	46.8	77.2	72.6
슬로바키아	56.3	56.7	56.7	58.4	82.1	77.0
슬로베니아	55.0	53.3	53.2	56.6	78.0	74.6
스페인	39.0	46.4	53.5	57.8	72.2	68.7
스웨덴	58.4	53.9	56.9	54.5	82.7	77.5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 수치는 관측치가 20~49명 수준으로 해석시 주의해야 함. a는 관측치가 20명 미만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2. p92-95.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용률은 54.3%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76.3%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2.0%p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51.3% 대비 2022년 54.3%로 증가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룩셈부르크(66.2%), 포르투갈(65.0%) 등은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크로아티아(36.1%), 그리스(40.0%) 등은 낮은 편임

〈표 15-5-2〉 EU 국가의 장애인 고용률(2022)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54.3	51.0	58.1	30.7	61.7
오스트리아	53.2	52.1	54.3	29.5	60.6
벨기에	44.0	44.3	43.6	19.8	54.9
불가리아	44.5	45.6	43.5	17.0	49.7
크로아티아	36.1	36.0	36.2	18.9	40.9
사이프러스	50.6	46.0	55.4	32.1	58.8
체코	58.9	54.6	63.9	35.5	66.9
덴마크	60.0	54.4	67.0	37.3	65.8
에스토니아	58.9	63.1	54.8	36.7	68.4
핀란드	59.4	59.3	59.6	28.0	66.6
프랑스	54.0	52.8	55.4	37.6	63.1
독일	54.3	52.5	56.3	27.4	64.9
그리스	40.0	34.8	45.5	26.9	49.3
헝가리	45.8	38.6	54.0	18.6	55.6
아일랜드	43.2	41.3	45.2	10.8	52.9
이탈리아	54.4	47.2	61.8	27.9	61.6
라트비아	60.0	61.0	58.7	26.3	67.2
리투아니아	47.7	49.2	46.0	15.6	54.6
룩셈부르크	66.2	64.4	68.2	46.4	71.4
몰타	53.5	41.1	67.1	41.9	57.3
네덜란드	60.6	55.1	67.4	22.0	67.2
폴란드	49.1	43.4	55.6	26.4	56.5
포르투갈	65.0	65.0	65.0	46.1	69.2
루마니아	46.8	36.9	59.4	3.9	52.4
슬로바키아	58.4	55.2	61.8	34.1	65.5
슬로베니아	56.6	54.4	58.8	49.8	59.3
스페인	57.8	54.1	62.0	37.5	61.4
스웨덴	54.5	53.8	55.5	33.1	60.1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4).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2. p92.

- 2022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58.1%로 남성 51.0%에 비해 7.1%p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중증 장애인 고용률은 30.7%로 경증 61.7%에 비해 31.0%p 낮음

특히 슬로베니아(49.8%), 룩셈부르크(46.4%), 포르투갈(46.1%)는 중증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반면, 루마니아는 3.9%로 가장 낮게 나타남



(2) 실업률

〈표 15-5-3〉 EU 국가의 실업률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유럽연합(평균)	17.3	17.7	17.9	15.1	7.6	8.7
오스트리아	18.3	18.8	20.7	19.3	4.8	7.7
벨기에	16.4	16.5	17.0	12.9	4.9	6
불가리아	16.2	18.2	13.6	15.3	11.4	11.6
크로아티아	27.9	28.7	24.6	25.3	11.1	12.7
사이프러스	20.7	19.6	21.2	16.1	7.1	7.9
체코	12.6	13.4	14.8	11.9	3.2	4.4
덴마크	12.7	11.8	17.0	11.7	4	6.2
에스토니아	8.7	10.9	12.8	11.8	4.5	5.8
핀란드	18.0	15.7	21.2	15.7	6.5	8.7
프랑스	16.9	17.2	21.5	17.5	9.5	10.7
독일	20.1	22.6	19.1	14.6	3.2	5.3
그리스	31.1	28.6	27.4	22.9	15.6	16.1
헝가리	12.4	11.6	13.5	17.2	5.5	6.6
아일랜드	20.1	20.1	20.1	9.4	4.6	5.1
이탈리아	16.8	17.7	13.9	13.2	9.8	10.2
라트비아	15.2	14.7	12.5	12.1	6.2	7.6
리투아니아	16.4	17.3	19.7	21.6	8.4	10.1
룩셈부르크	13.4	15.1	5.7	4.2	2.9	3.2
몰타	3.7	9.7	8.2	6.1	1.8	2
네덜란드	7.2	6.5	11.1	8.2	2.6	3.8
폴란드	13.4	11.8	11.8	9.6	4.5	5.1
포르투갈	17.6	20.3	17.1	14.7	9.1	10.3
루마니아	2.5	2.1	4.2	2.2	1.5	1.6
슬로바키아	13.2	12.5	12.5	10.0	6.2	6.8
슬로베니아	20.5	20.1	20.8	19.3	7	8.6
스페인	30.0	28.4	24.3	20.9	14.1	15.6
스웨덴	16.6	22.4	15.7	15.7	4.8	6.3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 수치는 관측치가 20~49명 수준으로 해석시 주의해야 함. a는 관측치가 20명 미만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2).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2. p115~117.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실업률은 15.1%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7.6%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7.5%p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실업률은 2019년 17.3% 대비 2022년 15.1%로 감소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크로아티아(25.3%), 그리스(22.9%), 리투아니아(21.6%) 등은 장애인 실업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반면, 루마니아(2.2%)는 가장 낮게 나타남

〈표 15-5-4〉 EU 국가의 장애인 실업률(2022)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15.1	15.1	15.2	26.4	13.1
오스트리아	19.3	18.1	20.5	39.4	15.0
벨기에	12.9	10.8	15.4	17.2	12.2
불가리아	15.3	15.6	15.0	27.5	14.4
크로아티아	25.3	24.2	26.3	37.3	23.3
사이프러스	16.1	17.0	15.4	13.6	16.7
체코	11.9	13.3	10.5	21.9	9.8
덴마크	11.7	12.3	11.0	24.8	9.3
에스토니아	11.8	9.7	14.2	19.2	10.0
핀란드	15.7	14.9	16.7	43.6	11.5
프랑스	17.5	16.7	18.4	23.4	15.3
독일	14.6	12.0	17.0	33.3	10.4
그리스	22.9	24.2	21.8	28.0	20.6
헝가리	17.2	21.6	13.2	32.7	14.8
아일랜드	9.4	11.4	7.6	37.6	6.9
이탈리아	13.2	12.1	14.1	22.0	12.0
라트비아	12.1	10.7	13.8	21.5	11.2
리투아니아	21.6	20.8	22.5	34.0	20.7
룩셈부르크	4.2	5.0	3.4	10.9	3.0
몰타	6.1	7.3	5.3	10.6	5.0
네덜란드	8.2	6.1	10.3	22.6	7.2
폴란드	9.6	11.6	7.8	15.0	8.7
포르투갈	14.7	15.4	13.7	23.0	13.3
루마니아	2.2	0.9	3.2	29.7	1.8
슬로바키아	10.0	10.1	9.9	11.6	9.7
슬로베니아	19.3	23.2	15.5	19.6	19.2
스페인	20.9	23.5	18.1	30.6	19.7
스웨덴	15.7	12.1	19.9	26.5	13.9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4).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2. p115.

- 2022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여성 장애인 실업률은 15.2%로 남성 15.1%에 비해 0.1%p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중증 장애인 실업률은 26.4%로 경증 13.1%에 비해 13.3%p 높음.

특히 핀란드(43.6%), 오스트리아(39.4%), 아일랜드(37.6%), 크로아티아(37.3%)는 중증 장애인 실업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반면, 몰타(10.6%), 룩셈부르크(10.9%)는 낮은 편임



(3) 경제활동참가율

〈표 15-5-5〉 EU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전체
유럽연합(평균)	62.0	60.4	62.0	64.0	82.5	78.7
오스트리아	66.8	66.4	64.0	65.9	81.5	77.5
벨기에	52.7	49.8	50.1	50.5	83.0	76.4
불가리아	48.0	53.3	59.2	52.6	87.4	84.9
크로아티아	51.3	51.8	54.3	48.3	83.4	76.5
사이프러스	66.1	65.0	61.6	60.3	83.6	82.1
체코	63.1	64.0	63.2	66.9	85.8	81.4
덴마크	68.8	67.4	65.3	67.9	84.4	77.8
에스토니아	71.0	68.4	70.0	66.8	89.0	83.6
핀란드	69.4	70.8	68.4	70.5	82.9	80.0
프랑스	68.4	61.3	62.9	65.4	83.9	79.5
독일	66.7	58.4	58.9	63.6	80.0	76.5
그리스	47.4	47.5	52.5	51.8	79.1	75.6
헝가리	57.3	54.1	55.8	55.3	84.2	79.7
아일랜드	40.8	43.6	43.3	47.7	84.3	76.6
이탈리아	62.0	60.6	63.2	62.7	77.2	75.7
라트비아	71.7	72.9	71.3	68.2	88.6	83.7
리투아니아	64.5	69.5	70.2	60.8	91.7	85.9
룩셈부르크	59.4	60.9	62.7	69.1	78.3	74.8
몰타	49.0	51.1	53.2	57.0	84.2	78.4
네덜란드	60.6	63.6	62.7	66.0	87.2	80.7
폴란드	50.0	50.8	49.6	54.3	83.9	78.7
포르투갈	72.5	73.5	75.9	76.1	87.7	84.6
루마니아	47.5	47.8	47.3	47.8	78.4	72.8
슬로바키아	64.9	64.8	64.8	64.9	87.5	81.9
슬로베니아	69.2	66.7	67.1	70.1	83.8	81.0
스페인	55.7	64.8	70.7	73.0	84.1	81.1
스웨덴	70.1	69.5	67.5	64.7	86.9	82.7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4).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2. p131-134.

- 2022년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4.0%로 나타남
-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5%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8.5%p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럽연합 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62.0% 대비 2022년 64.0%로 증가함
- 국가별로 살펴보면, 포르투갈(76.1%), 스페인(73.0%), 핀란드(70.5%), 슬로베니아(70.1%)는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반면, 아일랜드(47.7%), 루마니아(47.8%), 크로아티아(48.3%)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15-5-6〉 EU 국가의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2022) - 국가별, 성별, 장애정도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장애정도	
		남성	여성	중증	경증
유럽연합(평균)	64.0	60.1	68.5	41.7	70.9
오스트리아	65.9	63.6	68.2	48.6	71.3
벨기에	50.5	49.7	51.5	23.9	62.5
불가리아	52.6	54.0	51.2	23.5	58.1
크로아티아	48.3	47.4	49.1	30.1	53.4
사이프러스	60.3	55.4	65.5	37.1	70.6
체코	66.9	62.9	71.4	45.4	74.2
덴마크	67.9	62.0	75.2	49.6	72.6
에스토니아	66.8	69.8	63.9	45.3	76.0
핀란드	70.5	69.6	71.6	49.6	75.3
프랑스	65.4	63.4	67.9	49.1	74.5
독일	63.6	59.6	67.9	41.0	72.4
그리스	51.8	45.9	58.1	37.3	62.1
헝가리	55.3	49.2	62.2	27.6	65.3
아일랜드	47.7	46.5	48.9	17.3	56.8
이탈리아	62.7	53.7	71.9	35.8	70.0
라트비아	68.2	68.3	68.1	33.6	75.6
리투아니아	60.8	62.1	59.3	23.6	68.8
룩셈부르크	69.1	67.8	70.5	52.1	73.5
몰타	57.0	44.3	70.8	46.8	60.3
네덜란드	66.0	58.7	75.1	28.4	72.5
폴란드	54.3	49.1	60.3	31.0	62.0
포르투갈	76.1	76.8	75.3	59.8	79.8
루마니아	47.8	37.2	61.3	5.5	53.4
슬로바키아	64.9	61.4	68.6	38.6	72.5
슬로베니아	70.1	70.8	69.5	62.0	73.4
스페인	73.0	70.7	75.8	54.0	76.5
스웨덴	64.7	61.2	69.2	44.9	69.8

주: 1) 20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24).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fair working conditions,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health analysis and trends : data 2022. p131.

- 2022년 EU국가(27개 국가 평균)의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여성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은 68.5%로 남성 60.1%에 비해 8.4%p 높음
- 장애정도별로 살펴보면, EU국가의 중증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은 41.7%로 경증 70.9%에 비해 29.2%p 낮음.

특히 슬로베니아(62.0%), 포르투갈(59.8%)는 중증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반면, 루마니아는 5.5%로 가장 낮게 나타남



6) 빈곤

(1)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

〈표 15-6-1〉 EU국가 내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유럽연합(평균)	25.4	25.7	23.8	22.7	22.8e	22.6	22.8
오스트리아	17.2	16.6	16.7	16.1	17.8	17.3	20.7
벨기에	40.2	39.1	33.6	31.5	31.8b	33.5	34.3
불가리아	22.9	27.6	26.3	25.3	24.1	22.7	20.8
크로아티아	29.8	27.7	27.3	26.4	24.4	24.6	22.7
사이프러스	24.5	23.4	26.4	19.1	18.8	17.5	22.7
체코	23.1	22.3	20.1	16.6	18.7	19.6	18.3
덴마크	23.3	26.3	24.1	20.6	18.4	18.9	18.3
에스토니아	18.8	19.3	18.3	15.1	16.4	15.5	13.4
핀란드	22.3	22.7	20.0	20.8	19.5	19.1	19.6
프랑스	20.4	17.4	17.7	17.6	19.3	24.6b	26.9
독일	29.4	30.2	28.9	28.2	25.7	29.1b	28.9
그리스	30.1	33.8	32.4	35.2	39.6	34.0	31.9
헝가리	25.2	23.8	20.6	20.8	19.3	16.6	20.6
아일랜드	45.1	47.4	39.7	34.5	38.8	31.5b	38.2
이탈리아	20.4	22.1	21.2	22.1	23.0	22.3	23.6p
라트비아	16.2	16.2	15.2	16.3	16.4	15.5	15.1
리투아니아	27.3	29.9	26.2	21.5	18.2	18.2	22.2
룩셈부르크	15.5	15.5	14.5	19.3	19.4	21.5b	17.4b
몰타	34.6	34.5	28.3	21.4	15.1	19.9	16.0
네덜란드	25.3	24.0	24.1	19.8	25.1	25.0	24.0
폴란드	21.6	21.8	19.4	21.5	17.9	17.5	18.2p
포르투갈	21.2	19.8	16.3	15.8	14.3	11.0	11.2
루마니아	20.1	18.3	17.7	17.9	15.0	15.6	17.8
슬로바키아	13.2	11.8	9.8	10.4	12.0	12.1	-
슬로베니아	13.9	15.0	13.4	12.4	12.8	16.9	18.2
스페인	30.6	32.9	31.4	28.7	34.0	24.0	21.4
스웨덴	27.3	27.3	24.4	26.3	21.9	24.6	19.4
영국	31.6	31.5	26.7b	22.9	-	-	-
스위스	11.8	13.4	13.5	13.6	14.6	12.7	-
아이슬란드	19.2	16.4	11.9	11.2	-	-	-
노르웨이	27.7	27.6	27.3	28.8	32.5	25.4	-
세르비아	36.6	41.7	36.1	34.6	39.2	39.3	-

주: 1) 16세-59세 장애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5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PE040 / 검색일: 2025.8.7.)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1년 유럽연합 국가 내 장애인 중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22.8%로 전년대비 증가함
- 국가별로 장애인 중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아일랜드(38.2%), 벨기에(34.3%), 그리스(31.9%)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포르투갈(11.2%), 에스토니아(13.4%), 라트비아(15.1%) 등은 낮은 편임

※ Europe 2020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

- Europe 2020은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인구'의 구성요소로 낮은 노동 강도를 포함시켰으며,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전에 의존하고 공통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기에 사회적 배제와 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봄
- 낮은 노동 강도는 지난 1년 동안 총 근로가능한 날 중 20% 미만만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는 가구 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이 이론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간의 2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2) 사회적 이전(social transfers) 이후 빈곤 위험

〈표 15-6-2〉 EU 국가 내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장애인의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럽연합(평균)	20.0	20.2	20.5	21.3	21.5e	21.0	21.1	20.5	20.1	20.6
오스트리아	16.6	16.1	15.7	16.3	16.5	16.5	17.9	17.3	17.2	17.7
벨기에	22.2	22.4	20.9	23.5	20.3b	21.2	18.8	21.1	17.9	13.8
불가리아	30.3	30.8	35.5	31.2	34.5	37.5	31.6	37.0	24.2	28.0
크로아티아	28.5	27.7	29.0	29.5	30.0	31.4	31.8	32.7	34.9b	37.8
사이프러스	21.8	22.3	22.6	22.8	23.3	22.3	21.6	23.2	24.2	26.6
체코	13.7	14.1	16.2	19.1	20.2	19.0	12.4	17.5	14.9	11.6
덴마크	13.9	14.3	14.6	15.6	12.9	13.9	14.6	15.1	14.7	15.3b
에스토니아	32.8	35.0	34.8	38.5	35.7	35.9	34.0	44.4	37.9	35.5
핀란드	16.7	15.4	14.2	15.4	15.5	15.8	13.5	17.6	16.6	17.5
프랑스	16.0	13.6	13.2	13.7	15.6	16.3b	18.5	18.4p	18.3	20.5
독일	26.0	26.4	26.3	26.2	24.2	23.1b	22.4	19.2	20.3e	22.2
그리스	19.8	18.9	18.9	16.6	17.7	17.7	18.0	19.7	20.0	21.8
헝가리	14.4	14.9	15.3	16.6	18.3	19.7	21.1	20.4	20.4	28.0
아일랜드	22.3	26.6	24.5	28.4	20.2b	22.6b	24.3	24.2	18.7	21.6
이탈리아	18.8	19.6	18.6	20.0	21.1	20.5	19.2	20.1	21.4	20.9b
라트비아	30.3	33.6	32.8	37.3	36.7	33.7	37.5	36.0	34.1	34.8
리투아니아	30.6	31.8	35.1	35.0	31.3	32.0	32.6	37.7	36.6	38.2p
룩셈부르크	16.5	17.8	18.3	20.3	20.2	19.9b	19.2b	18.7b	20.9	-
몰타	23.9	25.7	23.2	23.6	26.1	26.1	27.1	29.0	24.8	27.4
네덜란드	12.7	15.0	15.3	15.5	17.1	17.9	21.4	21.6	21.5	13.7
폴란드	19.0	20.7	20.3	22.1	22.5	22.6	22.0	19.1	19.8	18.2
포르투갈	22.4	23.5	22.4	22.2	22.4	20.3	23.0	20.0	21.1	22.2b
루마니아	21.6	21.7	22.2	25.4	26.4	26.1	26.1	23.5	20.4	22.2
슬로바키아	10.9	10.2	11.4	11.4	11.1	13.0	12.8	13.6	12.4	12.6
슬로베니아	17.8	17.8	17.6	18.7	18.9	21.7	19.7	20.0	21.4	22.0
스페인	20.5	21.9	22.4	23.4	23.6	24.4	23.1	21.3	21.0	22.0
스웨덴	23.0	24.6	26.0	25.5	23.5	24.5	22.6	24.5	23.5	22.9
영국	21.0	19.8	22.9b	23.9	-	-	-	-	-	-
스위스	20.5	18.3	19.6	19.0	20.8	19.1	19.4	21.9	19.7	-
아이슬란드	9.1	9.2	12.0	9.6	12.2	8.9	-	-	-	-
노르웨이	18.8	16.6	14.9	16.4	20.1	17.6	13.5b	14.9	13.9	13.2
세르비아	30.4	30.2	32.8	31.3	29.6	33.1	33.7	29.9	31.6	30.8

주: 1) 16세 이상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4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영국까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오스트리아부터 스웨덴까지)의 평균을 의미함

3)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사회적 이전 이후 소득이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60%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4)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PE020 / 검색일: 2025.8.7.)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4년 유럽연합 국가 내 장애인 중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은 20.6%로 전년대비 증가함

• 국가별로 장애인 중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비율을 살펴보면, 리투아니아(38.2%), 크로아티아(37.8%), 에스토니아(35.5%), 라트비아(34.8%) 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체코(11.6%), 슬로바키아(12.6%) 등은 낮은 편임



(3) 물질적 박탈

〈표 15-6-3〉 EU 국가 내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
- 국가별, 연도별, 장애유무별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럽연합(평균)	13.5	12.8	11.8	11.2	11.5e	11.3	10.9	10.4	11.0	10.4
오스트리아	4.7	5.4	5.5	5.2	4.9	4.4	3.7	5.5	6.7	6.5
벨기에	13.0	14.2	12.4	11.6	12.4b	13.5	12.4	11.2	11.4	10.7
불가리아	46.7	46.2	43.0	36.6	34.4	34.6	28.4	28.9	28.1	27.1
크로아티아	13.8	13.3	13.8	11.4	9.7	9.8	7.8	8.1	6.9b	5.8
사이프러스	11.1	9.0	10.7	6.5	4.6	4.6	3.9	5.2	4.3	3.3
체코	8.3	7.0	7.2	5.4	4.6	3.9	2.9	3.6	4.3	3.9
덴마크	6.5	6.7	6.8	6.6	7.4	6.8	6.4	7.3	8.6	8.3b
에스토니아	7.4	5.3	8.4	6.9	6.0	5.4	4.0	7.0	4.9	6.4
핀란드	1.8	3.1	3.7	4.4	3.4	3.5	2.2	3.9	5.5	7.1
프랑스	10.4	9.9	9.6	10.9	13.5	11.9b	11.2	12.0b	10.9e	11.2
독일	12.3	10.5	9.4	8.4	7.7	9.4b	9.1	10.0	10.9	10.5
그리스	16.4	17.7	18.5	17.5	17.9	15.7	15.0	15.0	16.7	18.5
헝가리	29.9	26.6	22.2	17.5	17.2	16.1	17.7	16.3	17.9	17.4
아일랜드	17.0u	14.9u	13.7u	12.0u	14.0u	12.1bu	11.8	10.4	12.1	8.5
이탈리아	14.6	12.5	9.3	8.9	10.5	8.7	8.3	6.2	6.9	6.9b
라트비아	22.7	19.4	19.6	16.9	13.3	11.6	8.7	14.1	10.7	10.2
리투아니아	22.6	23.2	24.0	20.6	17.3	14.0	10.9	12.7	10.8	12.4p
룩셈부르크	4.3	4.2	3.6	3.6	3.3	3.2b	3.8b	3.6b	-	-
몰타	16.1	12.4	9.9	11.3	13.4	10.0	9.2	10.8	10.4	10.3
네덜란드	8.4	6.5	6.1	6.3	6.8	5.5	5.2	5.5	5.2	5.6
폴란드	12.2	9.5	10.1	9.8	7.2	5.4	6.3	6.3	6.6	5.5
포르투갈	14.5	13.3	13.3	11.2	10.2	10.0	10.8	9.8	9.1	8.7b
루마니아	41.0	41.0	37.9	35.7	33.3	33.5	31.5	31.6	28.4	26.7
슬로바키아	11.0	9.8	8.7	7.3	8.0	7.6	8.2	8.1	8.8	10.0
슬로베니아	8.9	7.8	9.2	6.7	5.8	7.4	5.6	3.2	4.7	4.5
스페인	10.2	13.0	14.1	16.6	13.0	14.0	13.0	10.9	13.3	13.1
스웨덴	3.9	3.6	2.9	4.3	3.3	5.0	4.0	6.1	6.7	7.8
영국	9.8	10.1	7.7b	7.2	-	-	-	-	-	-
스위스	3.7	2.8	2.7	3.2	4.7	3.1	3.3	4.4	4.2	-
아이슬란드	5.0	2.6	2.0	1.4	1.6	3.0	-	-	-	-
노르웨이	5.3	4.8	5.8	4.6	7.9	6.3	4.5b	5.6	6.5	5.6
세르비아	44.5	32.2	43.3	35.7	29.5	31.4	32.6	31.1	30.1	28.1

주: 1) 16세-64세 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2015년-2019년 유럽연합 평균은 28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하며, 2020년 이후 유럽연합 평균은 27개 국가의 평균을 의미함
 3) 일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관계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b(시계열 중단), e(추정된 수치), u(낮은 신뢰도), se(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준오차가 높음), p(잠정적 수치)
 자료: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data code: HLTH_DM010 / 검색일: 2025.8.7.)
 원자료: The European Statistics of Income and Living Condition(EU-SILC)

- 2024년 기준 유럽국가 내 장애인 중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은 10.4%로 전년 대비 감소함
- 국가별로 장애인 중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에 살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세르비아(28.1%), 불가리아(27.1%), 루마니아(26.7%) 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이프러스(3.3%), 체코(3.9%) 등은 낮은 편임

※※ Europe 2020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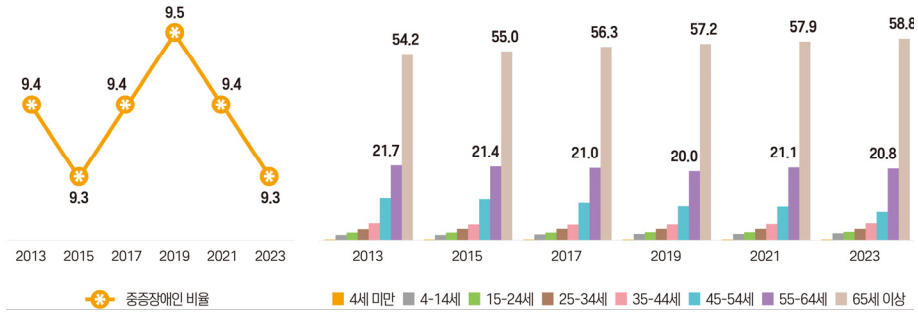
-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는 '경제적 긴장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물질적 박탈 항목 9개 중 최소 4개가 강제로 부족함 가구 비율을 나타낸다.
- 1. 대출금, 임대료, 공공금 등 체납
- 2. 1주일간 집을 떠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
- 3. 2일마다 고기, 닭고기, 생선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
- 4. 예기치 못한 재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 5. 가구는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살 수 없음
- 6. 가구는 컬러 TV를 살 여유가 없음
- 7. 가구는 세탁기를 살 여유가 없음
- 8. 가구는 차를 살 여유가 없음
- 9. 가정 내 적절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3.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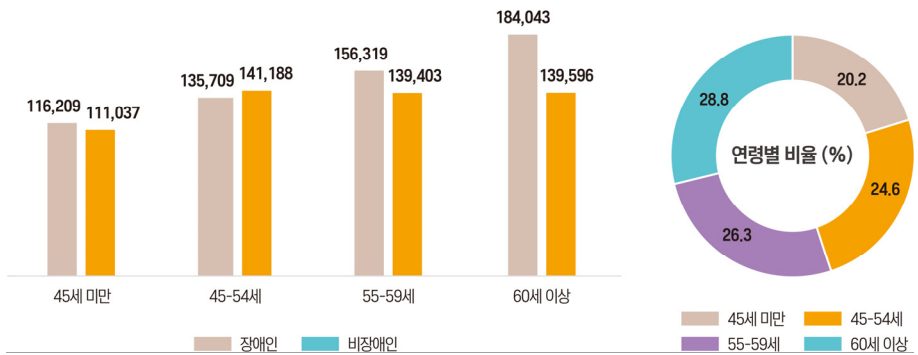
[그림 3-3-1]

독일: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연령별



[그림 3-3-2]

독일: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성별, 연령별(2023년)



※ 중증장애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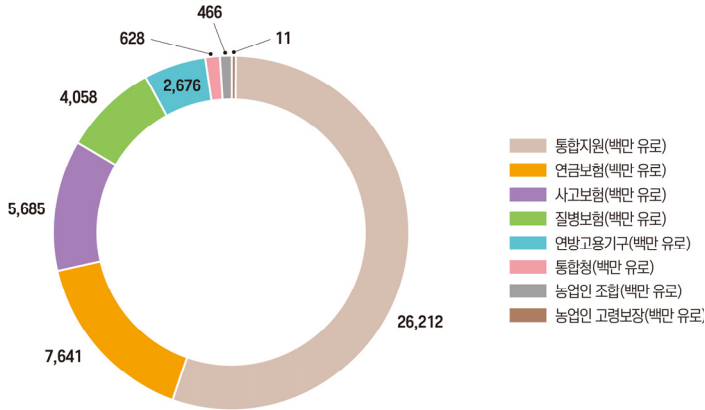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독일 중증장애인은 7,862,325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함
- 연령별 비율은 65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았고, 55세~64세가 20.8%로 그 뒤를 이음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독일 중증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뚜렷함.

※ 중증장애인 고용

- 2023년 기준 1,123,504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됨
-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55.1%로 과반을 넘고, 45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은 79.8%에 이룸
- 2023년 기준 남성장애인 고용비율은 52.7%로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인 47.3%를 상회함
- 여성장애인 고용비율은 2012년 43.7%에서 2023년 47.3%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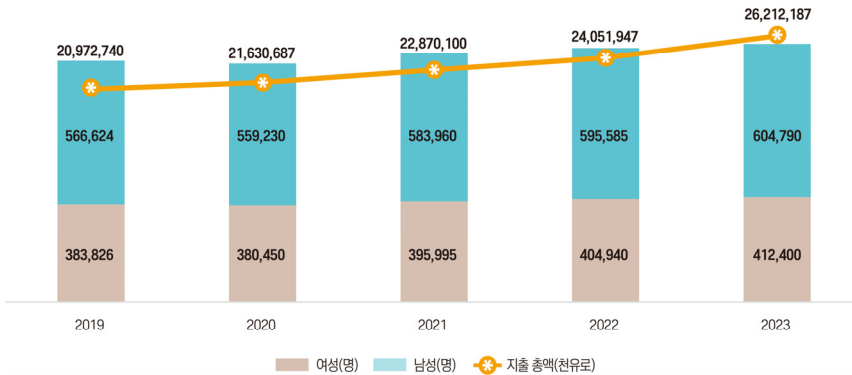
[그림 3-3-3]

독일: 재할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2023년)



[그림 3-3-4]

독일: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 연도별



2023년 독일 장애인 재할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

- 총 지출액은 47,377백만 유로로, 전년도(43,592백만 유로) 대비 8.7% 증가함
- 이 중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급여는 26,212백만 유로로 전체 지출액의 55.3%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연금보험에서 지급된 재할 및 참여급여는 총 7,641백만 유로로, 전체 급여의 16.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임
 - 연금보험의 재할 및 참여급여 중 의료재할급여는 5,273백만 유로로 전체 재할 및 참여급여의 11.1%를 차지함
 - 연금보험에서 지급된 의료재할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제공된 의료재할급여 총 4,058백만 유로(8.6%)를 초과한 수치임

독일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 2023년 통합지원급여 지출 총액은 26,212,187천 유로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통합지원급여 전체 수급자는 1,017,190명으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체 통합급여 수급자의 약 60%가 남성, 약 40%가 여성으로, 성별 비율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



1) 장애인구

(1) 중증장애인

〈표 16-1-1〉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전체 인구(A)		80,767,463	82,175,700	82,521,653	83,166,711	83,237,124	84,669,000
중증장애인(B)		7,548,965	7,615,560	7,766,573	7,902,960	7,795,340	7,862,325
비율(B/A)		(9.4)	(9.3)	(9.4)	(9.5)	(9.4)	(9.3)
성별	남성	3,851,568 (51.0)	3,866,994 (50.8)	3 928 519 (50.6)	3,983,749 (50.4)	3,917,360 (50.3)	3,937,005 (50.1)
	여성	3,697,397 (49.0)	3,748,566 (49.2)	3 838 054 (49.4)	3,919,211 (49.6)	3,878,025 (49.7)	3,925,320 (49.9)
연령별	4세 미만	13,928 (0.2)	14,703 (0.2)	15,495 (0.2)	17,008 (0.2)	15,995 (0.2)	15,820 (0.2)
	4-14세	113,956 (1.5)	116,119 (1.5)	121,972 (1.6)	131,235 (1.7)	135,730 (1.7)	149,310 (1.9)
	15-24세	161,857 (2.1)	161,688 (2.1)	166,216 (2.1)	173,157 (2.2)	175,385 (2.2)	178,915 (2.3)
	25-34세	236,602 (3.1)	245,741 (3.2)	251,261 (3.2)	255,356 (3.2)	251,065 (3.2)	249,175 (3.2)
	35-44세	363,342 (4.8)	345,138 (4.5)	342,298 (4.4)	353,716 (4.5)	360,280 (4.6)	373,675 (4.8)
	45-54세	931,886 (12.3)	910,665 (12.0)	860,586 (11.0)	790,371 (10.0)	700,760 (9.9)	639,595 (8.1)
	55-64세	1,635,787 (21.7)	1,629,214 (21.4)	1,634,544 (21.0)	1,664,445 (20.0)	1,643,550 (21.1)	1,636,045 (20.8)
	65세 이상	4,091,607 (54.2)	4,192,292 (55.0)	4,374,201 (56.3)	4,517,672 (57.2)	4,512,565 (57.9)	4,619,790 (58.8)

주: 원호청(Versorgungsamt) 발급 증명서를 소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통계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am Jahresende)」

※※ 중증장애인구

- 2023년 독일의 중증장애인은 7,862,325명으로 2021년에 비해 약 67,000명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인구 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은 9.3%로 2021년에 비해 소폭 감소함
- 성별
 - 남성은 약 50.1%, 여성은 약 49.9%로 남성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1년에 비해 남성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여성의 비율은 증가함.
 - 여성 중증장애인 비율을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연령
 - 65세 이상이 58.8%로 가장 높았고, 55세-64세가 20.8%로 그 뒤를 이음
 - 5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79.6%에 이르고,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비율 또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중증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뚜렷함

※※ 독일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개념

- 장애인은 인식과 환경 관련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동등한 사회 참여를 높은 개인성으로 6개월 이상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1항에 따른 손상은 신체와 건강상태가 연령 전형적인 상태에서 일탈한 경우에 존재한다. 장애의 위험은 1항에 따른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존재한다(사회법 제9권 제2조)
-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이라는 용어는 독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지적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로 여전히 '정신적 장애'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독일적 상황을 반영함. 현행 독일의 장애개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일 장애개념 상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손상'이 의미하는 바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손상'임
-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GdB)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나, 장애정도 30 이상인 경우에도 준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장애판정은 주정부 산하 원호청에서, 준중증장애인 인정은 연방고용기구에서 담당함

〈표 16-1-2〉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정도(GdB)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계		7,548,965 (100.0)	7,615,560 (100.0)	7,766,573 (100)	7,902,960 (100)	7,795,340 (100)	7,862,325 (100)
장애 정도 (GdB)	50	2,410,406 (31.9)	2,479,064 (32.6)	2,556,693 (32.9)	2,632,239 (33.3)	2,677,655 (34.3)	2,766,475 (35.2)
	60	1,202,750 (15.9)	1,203,371 (15.8)	1,217,048 (15.7)	1,217,037 (15.4)	1,194,030 (15.3)	1,193,305 (15.2)
	70	830,074 (11.0)	833,863 (10.9)	847,880 (10.9)	858,322 (10.9)	841,845 (10.8)	845,730 (10.8)
	80	904,636 (12.0)	915,363 (12.0)	935,474 (12.0)	962,219 (12.2)	949,255 (12.2)	964,905 (12.3)
	90	358,292 (4.7)	386,687 (5.1)	391,097 (5.0)	396,678 (5.0)	380,195 (4.9)	375,170 (4.8)
	100	1,815,807 (24.1)	1,797,212 (23.4)	1,818,381 (23.4)	1,836,465 (23.2)	1,752,355 (22.5)	1,716,745 (21.8)
장애 유형	사지 일부 또는 전체 상실	62,390 (0.8)	59,625 (0.8)	55,766 (0.7)	52,778 (0.7)	49,895 (0.6)	49,030 (0.6)
	사지의 기능제한	985,086 (13.0)	959,762 (12.6)	912,339 (11.7)	885,014 (11.2)	838,860 (10.8)	810,110 (10.3)
	척추, 몸통의 기능 제한, 흉부 변형	906,221 (12.0)	886,920 (11.6)	852,252 (10.9)	824,598 (10.4)	795,155 (10.2)	766,670 (9.8)
	전맹 및 시각장애	357,018 (4.7)	354,569 (4.7)	350,822 (4.5)	349,036 (4.4)	334,600 (4.3)	328,680 (4.2)
	언어 또는 말장애, 전농, 난청, 균형 장애	315,799 (4.2)	319,351 (4.2)	317,748 (4.1)	321,627 (4.1)	318,880 (4.1)	323,960 (4.1)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변형 및 기타	180,697 (2.4)	179,436 (2.4)	178,313 (2.3)	181,968 (2.3)	182,620 (2.3)	187,910 (2.4)
	내부기관 및 기관계 기능손상	1,870,556 (24.8)	1,899,752 (24.9)	1,935,064 (24.9)	2,003,278 (25.3)	2,003,250 (25.7)	2,066,655 (26.3)
	척수 마비, 뇌병변 장애, 정신적·심리적 장애, 중독질환	1,539,007 (20.4)	1,598,275 (21.0)	1,661,143 (21.4)	1,756,976 (22.2)	1,786,335 (22.9)	1,854,055 (23.6)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332,191 (17.6)	1,357,870 (17.8)	1,503,126 (19.4)	1,527,685 (19.3)	1,485,740 (19.1)	1,473,255 (18.7)

자료: 1)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am Jahresende)」

2)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 표 2023(Tabellen Schwerbehinderte 2023)

※※ 2023년 기준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에 따른 중증장애인 현황

- 전체 중증장애인 중 장애정도(GdB) 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2,766,475명(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장애정도 100인 장애인은 1,716,745명(21.8%)으로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장애정도는 90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의 4.8%를 차지함
- 전체 중증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장애정도 50~60을 판정받았으며, 장애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장애인(GdB 100)은 전체 중증장애인 5명 중 1명의 비율로 나타남
- 2011년 이후 장애정도별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GdB 50을 판정받은 중증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GdB 60과 GdB100을 인정받은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현황

- 내부기관 및 기관계 기능손상이 2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척수 마비, 뇌병변 장애, 정신적·심리적(지적·정신) 장애, 중독장애가 22.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3년 이후 상기 두 유형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표 16-1-3〉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dB)·장애유형(2023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장애정도(GdB)					
		50	60	70	80	90	100
계	7,862,325 (100)	2,766,475 (35.2)	1,193,305 (15.2)	845,730 (10.8)	964,905 (12.3)	375,170 (4.8)	1,716,745 (21.8)
사지 일부 또는 전체 상실	49,030 (100)	9,910 (20.2)	5,575 (11.4)	7,385 (15.1)	7,790 (15.9)	4,325 (8.8)	14,035 (28.6)
사지의 기능제한	810,110 (100)	304,075 (37.5)	155,655 (19.2)	108,225 (13.4)	89,060 (11.0)	43,335 (5.3)	109,760 (13.5)
척추, 몸통의 기능 제한, 흉부 변형	768,670 (100)	364,375 (47.4)	143,310 (18.6)	92,435 (12.0)	66,730 (8.7)	31,220 (4.1)	70,660 (9.2)
전맹 및 시각장애	328,680 (100)	54,475 (16.6)	29,980 (9.1)	30,480 (9.3)	28,890 (8.9)	23,120 (7.0)	161,735 (49.2)
언어 또는 말장애, 전농, 난청, 균형장애	323,960 (100)	90,415 (27.9)	48,865 (15.0)	44,905 (13.9)	43,020 (13.3)	20,035 (6.2)	76,720 (23.7)
한쪽 또는 양쪽 유방손실, 변형 및 기타	187,910 (100)	81,810 (43.5)	39,730 (21.1)	15,355 (8.2)	21,380 (11.4)	5,965 (3.2)	23,665 (12.6)
내부기관 및 기관계 기능 손상	2,066,655 (100)	694,475 (33.6)	320,515 (15.5)	196,025 (9.5)	290,825 (14.1)	100,490 (4.9)	464,320 (22.5)
척수 마비, 뇌병변 장애, 정신적·심리적 장애, 중독장애	1,854,055 (100)	644,660 (34.8)	235,430 (12.7)	193,905 (10.5)	238,725 (12.9)	75,750 (4.1)	465,595 (25.1)
기타 및 불분명한 장애	1,473,255 (100)	522,280 (35.5)	214,240 (14.5)	157,015 (10.7)	178,480 (12.1)	70,930 (4.8)	330,310 (22.4)

자료: 1)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am Jahresende)」

2)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 표 2023(Tabellen Schwerbehinderte 2023)

※ 2023년 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정도(GdB) 현황

- 장애정도 50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
 - 주로 기능이 일부 제한되거나 신체구조가 일부 상실된 경우에 해당
 - ‘사지의 기능제한(37.5%)’, ‘척추, 몸통의 기능제한 및 흉부 변형(47.4%)’, ‘언어 및 말장애, 전농, 난청, 균형 장애(27.9%)’, ‘한쪽 또는 양쪽 유방상실, 변형 및 기타(43.5%)’, ‘내부기관 및 기관계 기능손상(33.6%)’, ‘척수마비, 뇌병변 장애, 정신적·심리적(지적·정신) 장애, 중독장애(34.8%)’
- 장애정도 100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
 - 기능과 신체구조 전체가 상실된 경우에 해당
 - ‘전맹 및 시각장애(49.2%)’와 ‘사지 일부 또는 전체 상실(28.6%)’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가장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됨

〈표 16-1-4〉 중증장애인 수 - 연도별, 장애원인별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
계	7,548,965 (100)	7,615,560 (100)	7,766,573 (100)	7,902,960 (100)	7,795,340 (100)	7,862,325 (100)
선천적 장애	298,308 (4.0)	290,248 (3.8)	258,517 (3.3)	257,541 (3.3)	253,450 (3.3)	250,575 (3.2)
산업재해	67,190 (0.9)	63,585 (0.8)	57,994 (0.7)	55,774 (0.7)	53,000 (0.7)	
교통사고	38,172 (0.5)	36,594 (0.5)	30,818 (0.4)	30,031 (0.4)	28,985 (0.4)	102,640 (1.3)
가정 내 사고	7,205 (0.1)	6,870 (0.1)	6,051 (0.1)	5,785 (0.1)	5,545 (0.1)	
그 외의 사고	24,731 (0.3)	23,688 (0.3)	20,942 (0.3)	20,315 (0.3)	19,455 (0.2)	
전쟁, 군복무 및 대체복무 상해	34,171 (0.5)	24,425 (0.3)	17,106 (0.2)	13,192 (0.2)	10,565 (0.1)	8,755 (0.1)
일반 질병	6,416,813 (85.0)	6,583,463 (86.4)	6,855,042 (88.3)	7,062,264 (89.4)	7,013,055 (90.0)	7,118,075 (90.5)
기타	662,375 (8.8)	586,687 (7.7)	520,103 (6.7)	458,058 (5.8)	411,285 (5.3)	382,285 (4.9)

주: 1) 2021년 이후 통계 자료는 비밀유지절차(Geheimhaltungsverfahren)에 의해 5의 배수로 반올림하여 표기

2) 연방통계청의 2023년 산업재해 및 사고 통계는 통합 자료로 제공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중증장애인(Schwerbehinderte Menschen am Jahresende)」

중증장애의 주요 원인

- 2023년 기준 일반 질병(예방접종 부작용 포함)이 전체 중증장애 원인의 약 90%를 차지함
 - 독일의 장애개념은 사회참여제약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질병으로 인한 기능제약은 사회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손상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장애 인정 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대다수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중증장애의 주요 원인으로서 일반 질병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더욱 두드러짐
- 2018년에 제정된 연방참여법에서는 인식과 환경 관련 장벽과의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요소가 중증장애 주요 원인의 비중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선천적 장애와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는 각각 3.2%와 1.3%로 일반 질병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함. 일반 질병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선천적 장애의 비중은 점차 감소함



2) 교육

(1) 특수교육

〈표 16-2-1〉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의 통합교육비율 - 연도별

(단위: %)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2024
장애학생 비율	계	7.4	7.6	7.7	7.7	7.5	7.5
	특수학교 재학비율	4.2	4.2	4.2	4.3	4.2	4.2
	일반학교 재학비율	3.2	3.4	3.5	3.4	3.3	3.3
통합교육비율		42.3	43.9	43.7	44.5	44.1	44.1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allgemeinen Schulen 2023/ 2024)」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비율

- 2023/2024학년도 기준,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장애학생)의 비율은 7.5%로 전년도와 동일
- 이 비율은 2015/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22/2023학년도부터 감소세로 전환

※※ 학교 유형별 장애학생 비율

- 전체 학생 중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2016/2017학년도 이후 4.2~4.3%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
- 2023/2024학년도 기준, 전체 학생 중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3.3%로 전년도와 동일
- 2018년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 BTHG) 제정 전후로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이 3%를 초과하기 시작

※※ 통합교육 비율

- 2023/2024학년도 기준, 전체 장애학생 대비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통합교육 비율)은 44.1%로 전년도와 동일
- 해당 비율은 2013/2014학년도 31.4%에서 10년 간 12.7% 포인트 상승, 통합교육의 빠른 확대 반영
- CRPD 이행과정에서 제정된 BTHG의 영향으로, 통합교육 비율은 2017/2018학년도 이후 40%를 이상 수준을 유지

〈표 16-2-2〉 학교유형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연도별

(단위: 명, %)

년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특수교육적 지원 총 수치		학교별			
			특수학교		일반학교(통합교육)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2015/16	517,384	100.0	322,518	62.3	194,866	37.7
2016/17	523,796	100.0	317,985	60.7	205,811	39.3
2017/18	539,965	100.0	317,480	58.8	222,485	41.2
2018/19	556,317	100.0	320,992	57.7	235,325	42.3
2019/20	571,671	100.0	325,368	56.1	246,303	43.9
2020/21	581,991	100.0	327,526	56.3	254,465	43.7
2021/22	590,116	100.0	332,150	55.5	257,966	44.5
2022/23	595,696	100.0	337,663	55.9	258,033	44.1
2023/24	608,097	100.0	344,363	55.9	263,734	44.1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allgemeinen Schulen 2023/ 2024)

※※ 학교유형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

- 2023/2024학년도 장애학생 수는 608,097명으로, 2015/2016학년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이 중 특수학교 재학 학생은 344,363명(55.9%), 일반학교 재학 학생은 263,734명(44.1%)
- 2015/2016학년도 이후 통합교육 비율은 꾸준히 상승
- 이는 각 주정부가 2015년 유엔 국가보고서 권고를 수용,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 가능



〈표 16-2-3〉 지원 영역별 특수교육적 지원 요구를 가진 학생(장애학생) 현황
(2022/2023 대비 2023/2024)

(단위: 명)

구분	2022/2023			2023/2024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전체 수	595,696			608,097		
특수교육적 지원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합계
학습	111,278	121,727	233,005	112,584	123,166	235,750
시각	4,800	4,730	9,530	4,638	4,891	9,529
청각	9,892	10,864	20,756	9,961	10,814	20,775
언어	30,451	29,708	60,159	30,872	30,929	61,801
신체 및 운동발달	25,381	14,281	39,662	25,648	14,261	39,909
정신적(지적) 발달	93,141	14,133	107,274	97,018	14,544	111,562
정서 및 사회적 발달	44,858	59,920	104,778	45,719	62,089	107,808
복합적 지원 및 미분류	5,191	2,476	7,667	5,219	2,645	7,864
학습, 언어, 정서 및 사회적 발달	1,842	-	1,842	1,722	-	1,722
질병	10,829	194	11,023	10,985	395	11,380
합계	337,663	258,033	595,696	344,363	263,734	608,097

주: 특수교육적 지원은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미분류)의 10가지 영역으로 세분되며, 이 영역들은 특수학교(정식 명칭: 촉진학교) 유형의 기준이 됨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allgemeinen Schulen 2023/ 2024)」

※※ 지원영역별 장애학생 현황

- 2023/24년 기준, 장애학생 수는 608,097명으로, 전년 대비 12,401명 증가
- 학습, 언어, 신체 및 운동발달,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정신적(지적) 발달 영역의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증가
- 특히, 학습 영역 학생 수는 235,750명으로, 전년도 대비 2,745명 증가
- 학습 영역 학생 수는 전체 장애학생의 38.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 그 뒤를 이어 '정신적(지적) 발달 111,562명(18.3%), '정서 및 사회적 발달 107,808명(17.76%)' 순

※※ 지원영역별 통합교육 현황

- 학습 영역의 경우, 특수학교 재학 112,584명(47.7%), 일반학교 재학 123,166명(52.3%)으로, 통합교육 비율이 50%를 초과
- 정서 및 사회적 발달(57.6%)과 청각(52.0%), 시각(51.3%), 언어(50.1%) 영역 또한 통합교육 비율이 더 높음
- 신체 및 운동발달(64.3%), 복합지원 및 미분류(66.7%), 정신적(지적) 발달(86.9%) 영역은 특수학교 재학 비율이 월등히 높음
- 특히, 정신적(지적) 발달 영역은 CRPD 이행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 비율이 13%에 불과
- 학습, 언어, 정서 및 사회 발달 영역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학생은 전원 특수학교 재학
- 질병으로 인한 특수교육적 지원 학생 또한 96.5%가 특수학교 재학

〈표 16-2-4〉 특수학교 현황 - 연도별

(단위: 개소, 명)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학교 수	2,865	2,835	2,819	2,806	2,792	2,795	2,798
소계	33,305	33,483	33,811	34,487	34,911	35,388	35,535
학급 수							
학습영역 학급 수	8,270	8,118	8,057	10,007	10,072	10,296	10,237
기타 영역 학급 수	24,029	24,347	24,657	23,343	23,755	24,046	25,298
질병 영역 학급 수	1,005	1,019	1,096	1,137	1,083	1,147	-
학급당 학생 수	9.5	9.6	9.6	9.5	9.5	9.5	9.7
교사 수	60,501	60,279	60,265	61,808	62,277	63,751	65,021
교사 1인당 학생 수	5.2	5.3	5.4	5.3	5.3	5.3	5.3

주: 기타 영역은 특수교육적 지원 영역 중 '학습'과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영역을 제외한,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정신적(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청각', '시각', '학습, 언어, 정서 및 사회적 발달', '복합적 지원(또는 미분류)' 영역을 의미
 자료: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Kultusministerkonferenz),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촉진(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allgemeinen Schulen 2023/ 2024)」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2023/2024학년도 기준 독일의 특수학교는 2,798개소로, 전년도(2,795개소) 대비 3개소 증가
- 2012/13학년도(3,258개소)와 비교하면 460개소 감소, CRPD 이행 노력의 영향으로 해석 가능
- 특수학급 수는 총 35,535개로, 전년도(35,388) 대비 147개 증가
- 2016/17학년도 이후 통합교육 확대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 지속적 증가
- 학습 영역 특수학급 수는 10,237개로, 전년도(10,296개) 대비 59개 감소
- 학습 영역 특수학급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21학년도부터 반등한 이후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
- 2023/24학년도 질병 영역 학급 수는 기타 영역에 합산하여 계산

※※ 특수교사

- 2023/24학년도 기준 특수교사 수는 65,021명으로, 전년도 대비 1,270명 증가
- 특수교사의 수는 2016/17학년도 이후 감소하다가 2020/21학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이러한 증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 및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 결과로 해석 가능

※※ 학급당 학생 수 및 특수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 2023/24학년도 특수학교 재학생 수는 344,363명, 특수학급 수는 35,535개
- 이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는 약 9.7명으로, 전년도(9.5명) 대비 소폭 증가
- 특수교사 수는 65,021명으로, 이에 따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약 5.3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유지
-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교육 질 관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



3) 고용

(1) 중증장애인 고용현황

〈표 16-3-1〉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일자리 - 연도별

(단위: 명, 개,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장	168,693	171,599	173,326	174,919	178,690	180,359
일자리 현황						
전체 일자리	29,048,664	29,585,005	29,384,128	29,755,176	30,626,037	31,042,311
집계 대상 일자리	-	-	24,705,206	25,049,929	25,720,072	26,067,525
고용의무 일자리	1,178,857	1,199,025	1,191,886	1,208,842	1,241,611	1,258,656
고용의무 이행	1,128,771	1,146,459	1,139,503	1,135,018	1,142,638	926,152
고용률						
전체 고용률	4.6	4.6	4.6	4.8	4.7	4.7
민간부문 고용률	4.1	4.1	4.1	4.3	4.2	4.2
공공부문 고용률	6.5	6.5	6.4	6.3	6.2	6.1

주: 집계 대상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 수에서 직업훈련 및 기타 직책을 제외한 것으로 고용률 산정 시 사용되는 지표
 자료: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 독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2023년 고용의무 일자리 수는 역대 최고치(1,258,656개)를 기록, 고용의무 대상 사업장 수(180,359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 반면, 이행률은 전년 대비 감소, 고용미이행 일자리 수가 다시 30만 개를 초과
- 특히 이행 일자리 수는 코로나19 직후였던 2021년(1,135,018) 보다도 낮은 수치로, 이는 고용환경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 시사
- 공공부문 고용률은 여전히 법정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장애인 고용의무제(사회법 제9권 제154조1항)

- 월평균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한 민간 및 공공부문 사업장은 전체 일자리의 5% 이상 (준)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 월평균 40개 미만의 일자리를 보유한 사업장은 1명의 장애인, 60개 미만인 사업장은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 공공부문 고용의무: 최고연방기관 및 하위 부서, 연방 대통령실, 연방 상원 및 하원, 연방 헌법재판소, 연방 최고법원, 연방법원, 연방철도차산관리, 각 주정부 기관 및 하위 부서, 주 의회, 감사원, 주 헌법재판기관, 기타 주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에 따른 법인, 기관 및 재단 등에 해당
-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직업훈련생 및 준중증장애인(GdB 30~40) 포함됨. 여성 중증장애인은 특별 고려 대상
- 특례(사회법 제9권 제155조1항)
 - 사업자는 고용의무 이행 시 일반노동시장에서 장애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는 장애인을 적절한 비율로 고용해야 함
 - 장애로 인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현저히 낮은 업무 성과를 보이거나, 비정상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나 발작 장애로 장애정도가 최소 50이거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50세 이상인 장애인 대상
- 중복계산제도(사회법 제9권 제159조)
 - 3개 일자리에서 이행된 것으로 간주: 직업참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생, 장애인 작업장 근무 후 일반노동시장에 고용된 장애인 1인 고용
 - 2개 일자리에서 이행된 것으로 간주: 직업훈련생, 직업훈련 수료후 고용된 장애인(첫 1년 한정), 근로예산 수급 장애인(첫 2년 한정) 1인 고용

〈표 16-3-2〉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2023년)

(단위: 명, %)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전체			1,123,516	592,281(52.7)	531,228(47.3)
연령	45세 미만		227,248	116,209(51.1)	111,037(48.9)
	45~54세		276,899	135,709(49.0)	141,188(51.0)
	55~59세		295,723	156,319(52.9)	139,403(47.1)
	60세 이상		323,640	184,043(56.9)	139,596(43.1)
고용 대상	정규고용	중증장애인	912,592	479,217(52.5)	433,369(47.5)
		준중증장애인	202,091	107,758(53.3)	94,332(46.7)
	직업훈련	중증장애인	8,073	4,793(59.4)	3,280(40.6)
		준중증장애인	760	514(67.6)	247(32.4)
산업 부문	농업, 임업, 어업		2,066	1,390	676
	광업, 에너지 및 수도 공급, 폐기물 처리 산업		24,736	19,622	5,114
	제조업		255,518	195,412	60,106
	건축업		22,948	19,892	3,057
	상업, 자동차 판매, 유지보수 및 수리		96,292	48,757	47,535
	교통 및 물류		67,507	48,221	19,286
	요식 및 숙박업		12,391	5,391	7,000
	정보 및 통신		28,741	18,364	10,377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6,913	15,187	21,726
	부동산, 학문 및 기술 서비스(자유업)		66,901	32,753	34,145
	기타 경제 서비스		41,853	23,231	18,621
	임시 고용		8,394	5,613	2,78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험		219,794	91,528	128,265
	교육 및 교습업		42,041	13,347	28,695
	보건		83,132	19,487	63,645
	시설 및 사회복지		85,513	22,567	62,945
	기타 서비스 및 가게		28,508	11,370	17,137
	미분류		268	149	119

주: 1) 중복지산제도로 고용의무가 이행된 일자리 수와 실제 고용된 중증장애인 수는 불일치함

2) 현재 독일의 모든 공식 고용 및 노동시장 통계는 "경제분야분류, 2008판(WZ 2008)"에 근거

3) 기타 경제 서비스는 자동차 임대나 경제활동에 자주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임대 등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

4) 기타 서비스는 특정 집단, 즉 고용주, 자영업자, 근로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특정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단체의 활동을 포함

자료: 1)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 2023년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 전체 고용 규모 및 성별 구성

- 2023년 기준 고용된 중증장애인 수는 총 1,123,516명으로 전년(1,118,070명) 대비 5,446명 증가
- 이 중 남성은 592,281명(52.7%), 여성은 531,228명(47.3%)으로, 성별 간 비율은 전년(남 53.0%, 여 47.0%)과 유사
- 여성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은 2012년 43.7%에서 2023년 47.3%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은 수준

- 연령별 고용 분포

-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전체의 54.0%
- 4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80.0%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
-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8.8%로, 전년(27.1%) 대비 1.7%포인트 증가

- 산업 부문별 고용 현황

- 제조업 종사자가 255,518명(22.7%)으로, 산업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는 독일의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반영함
- 공공부문은 약 20%를 차지, 이는 의무고용 이행률이 높은 공공부문 특성을 반영
- 보건(76.6%), 사회복지(73.6%), 교육(68.3%) 부문은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2)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표 16-3-3〉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고용률 (2023년)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장	전체 일자리	집계 대상 일자리	고용의무 일자리	고용의무 이행	미이행	고용의무 초과이행	고용률
전체	180,359	31,042,311	26,067,525	1,258,656	926,152	332,504	222,987	
민간부문	167,960	24,252,648	20,306,494	969,222	662,541	306,681	136,300	
공공부문	12,399	6,789,664	5,761,031	289,434	263,611	25,823	86,687	
일자리 20~39 사업장	82,235	3,084,676	2,335,577	82,235	43,387	38,848	23,762	
민간부문	78,725	2,941,619	2,234,161	78,725	41,010	37,715	21,750	
공공부문	3,510	143,057	101,416	3,510	2,377	1,133	2,012	
일자리 40~59 사업장	31,469	1,955,893	1,539,889	62,938	36,373	26,565	12,567	
민간부문	29,679	1,835,876	1,451,774	59,358	33,668	25,690	11,055	
공공부문	1,790	120,017	88,115	3,580	2,706	874	1,512	
일자리 60 이상 사업장	66,655	26,001,742	22,192,059	1,113,483	846,391	267,092	186,658	4.7
민간부문	59,556	19,475,153	16,620,560	831,139	587,863	243,276	103,495	4.2
공공부문	7,099	6,526,590	5,571,500	282,344	258,528	23,816	83,163	6.1

자료: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 독일 장애인 고용률 산정

- 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가장 비중이 높은 일자리 60개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정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실제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수의 비율이 아니라, 집계 대상 일자리 대비 고용의무가 이행된 일자리의 비율로 산정
- 집계 대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에서 직업훈련이나 기타 직책을 제외한 일자리를 지칭
- 2023년 기준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일자리 60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고용이 이행된 846,391개 일자리와 초과 이행된 186,658개 일자리의 합이 집계 대상 일자리 22,192,059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값으로 약 4.7%에 이릅니다

〈표 16-3-4〉 사업장별 고용의무 이행 현황 (2023년)

(단위: 개, %)

구분	사업장	고용의무이행	고용의무이행 중 초과이행	고용의무 부분이행	고용의무 미이행
전체 사업장	180,359	69,610(38.6)	43,754(24.3)	63,924(35.4)	46,825(26.0)
민간부문	167,960	62,473(37.2)	37,910(22.6)	59,938(35.7)	45,549(27.1)
공공부문	12,399	7,137(57.6)	5,844(47.1)	3,986(32.1)	1,276(10.3)
일자리 20~39 사업장	82,235	39,275(47.8)	18,192(22.1)	7,866(9.6)	35,094(42.7)
민간부문	78,725	37,040(47.0)	16,929(21.5)	7,594(9.6)	34,091(43.3)
공공부문	3,510	2,235(63.7)	1,263(36.0)	272(7.7)	1,003(28.6)
일자리 40~59 사업장	31,469	11,842(37.6)	7,683(24.4)	12,173(38.7)	7,454(23.7)
민간부문	29,679	10,794(36.4)	6,892(23.2)	11,620(39.2)	7,265(24.5)
공공부문	1,790	1,048(58.5)	791(44.2)	553(30.9)	189(10.6)
일자리 60 이상 사업장	66,655	18,493(27.7)	17,879(26.8)	43,885(65.8)	4,277(6.4)
민간부문	59,556	14,639(24.6)	14,089(23.7)	40,724(68.4)	4,193(7.0)
공공부문	7,099	3,854(54.3)	3,790(53.4)	3,161(44.5)	84(1.2)

주: 독일 연방노동기구는 2021년 이후 조정금 유형에 따른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사업장의 고용의무 이행을 유형별로 즉, 초과이행, 부분이행, 불이행으로 세분해 자료 제공

자료: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중증장애인 고용(Schwerbehinderte Menschen in Beschäftigung)」

※※ 독일의 조정금 제도

- 고용주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시 납부
- 2023년 기준 조정금 유형
 - 조정금 1: 연평균 고용률 3%이상 5%미만 - 매 결원 당 125유로
 - 조정금 2: 연평균 고용률 2%이상 3%미만 - 매 결원 당 220유로
 - 조정금 3: 연평균 고용률 2%미만 - 매 결원 당 320유로
 - 단, 일자리 40개 미만 사업장에서 연평균 장애인 고용이 1명 미만인 경우 125유로, 60개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평균 장애인 고용이 1명 미만인 경우 220유로, 두 명 미만인 경우 125유로의 조정금 부과
- 2024년 이후 조정금
 - 연평균 고용률 3%이상 5% 미만 - 매 결원 당 140유로
 - 연평균 고용률 2%이상 3% 미만 - 매 결원 당 245유로
 - 연평균 고용률 0%이상 2% 미만 - 매 결원 당 360유로
 - 연평균 고용률 0% - 매 결원 당 720유로
 - 단, 일자리 40개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평균 장애인 고용이 1명 미만인 경우 140유로, 0명인 경우 210유로, 일자리 60개 미만인 사업장에서 연평균 장애인 고용이 2명 미만인 경우 140유로, 1명 미만인 경우 245유로, 0명인 경우 410유로의 조정금 부과



(3) 고용 관련 지출

〈표 16-3-5〉 통합청(Integrationsämter) 지출 현황(2019/2020년)

(단위: 백만 유로, 건)

구분		2019년		2020년	
		지출액	사례/대상	지출액	사례/대상
중증장애인 및 준중증장애인 대상 급여	근로지원(보조공학)	5.37	1,849	5.42	1,810
	통근(이동지원)	4.35	909	4.25	693
	경제적 자립	0.46	112	0.52	78
	장애에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0.47	130	0.32	95
	직업적 지식과 기능의 유지 및 확장	5.04	2,167	3.88	1,863
	특수상황지원	2.25	1,149	2.13	964
	근로보조인	38.14	3,938	38.83	3,577
	지원고용	1.32	388	1.24	338
합계		57.40	10,642	56.59	9,418
사용자 대상 급여 (통합기업제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12.53	1,716	10.54	1,469
	장애에 적합한 훈련 및 근무 환경 조성	26.57	8,399	27.53	8,234
	현저한 부담에 대한 지원	177.95	45,311	173.51	41,584
	직업훈련 수당 및 보조금	0.92	425	0.87	419
	사업장 내 통합관리	0.06	-	0.08	-
	합계	218.03	55,851	212.53	51,706
통합기업 대상 급여		102.01	13,550	118.34	13,590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		50.28	-	42.08	-
통합전문가 대상 급여		94.29	62,400	100.07	60,000
기관 지원		37.56	336	30.72	190
교육 및 홍보		6.78	34,143	5.68	8,000
모델 및 연구계획		17.98	-	13.48	-
기타 급여		1.88	-	3.00	-
포괄적 개인예산		0.44	-	0.23	-
합계		586.53	-	583	-

주: 1) 사용자 대상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대한 지원"에서 현저한 부담 상황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발생하거나 고용된 장애인이 지나치게 낮은 성과를 보이거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 또는 발작 장애를 가진 경우 등을 지칭함. 이 급여는 중증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급여로, 주로 지속적인 임금비용 보조 형태로 제공됨

2) "사업장 내 통합관리"는 장기적인 근무 불능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가능한 한 조속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장 차원의 제도

3) "기관지원"은 장애인직업장과 같은 장애인고용기관의 지원을 의미

자료: 통합청 및 사회적 보상기구 연방연합(BI+), 「BIH 연례보고(BIH-Jahresbericht)」

※※ 통합청(Integrationsamt)

-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조정금(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자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 직접적인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미 고용된 장애인의 고용유지에 중점
- 통합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준)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 2020년 통합청(Integrationsämter)의 수입 및 지출 현황

- 수입
 - 조정금 수입은 2016년 금액 인상 이후 증가 추세, 2024년 조정금 유형이 4분되고 액수가 재 인상된 이후 더 증가할 전망
 - 2020년 조정금 수입 중 약 20%를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조정금 기금(Ausgleichsfonds)에 납부 후 627백만 유로의 예산 배정
- 지출
 - 2020년 통합청의 총 지출은 약 583백만 유로로, 2019년 대비 0.4% 감소
 - 사용자 대상 급여(36.5%) > 통합기업 지원(20.3%) > 통합전문가 대상 급여(17.2%)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사용자 대상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대한 지원은 173백만 유로로, 통합청 지출 개별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중증장애인 대상 급여는 약 56백만 유로로 전체 통합청 지출의 약 10%를 차지, 이 중 근로보조인 지원이 약 39백만 유로로 중증장애인 대상 급여 중 약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19년 대비 2020년 통합청의 지출 중 기관지원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지난 5년 간 꾸준히 이어진 감소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장애인 직업장 내 보호고용이 감소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이 강화된 데서 기인함

(4)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표 16-3-6〉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현황(연도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자 수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장애정도 50이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비율
2016년	2,690,975	170,508	148,391	6.3
2017년	2,532,837	162,373	140,359	6.4
2018년	2,340,082	156,621	134,129	6.7
2019년	2,266,720	154,696	132,009	6.8
2020년	2,695,444	169,691	143,453	6.3
2021년	2,613,489	172,484	145,026	6.6
2022년	2,418,133	163,507	144,407	6.8
2023년	2,608,672	165,725	140,513	6.4
2024년	2,787,112	175,236	141,269	6.3

자료: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표 16-3-7〉 (준)중증장애인 실업 현황-성별, 연령별, 국적별(2024년)

(단위: 명, %)

구분		전체 실업 현황	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비율	전년도 대비 중증장애인 실업 증감비율
전체		2,787,112	175,236	100	5.7
성별	남성	1,530,065	103,668	59.2	5.4
	여성	1,257,047	71,568	40.8	6.2
연령	25세 미만	253,611	6,911	3.9	9.9
	25~54세	1,852,061	83,114	47.4	4.5
	55세 이상	681,206	85,210	48.6	6.7
국적	독일	1,746,195	145,573	83.1	4.4
	외국	1,040,907	29,664	16.9	12.6

자료: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 2024년 (준)중증장애인 실업 현황

- 연도별 추이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체 실업자 수(2,695,444명) 및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169,691명) 모두 급증
- 2021년에 장애인 실업자는 감소한 반면, (준)중증장애인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여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도 상승
- 2022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실업자가 동반 감소했으나,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비율은 6.8%로 팬데믹 이전 최고 수준 도달
- 2023년에는 전체 실업자 수가 다시 증가(2,608,672명)하면서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도 165,725명으로 소폭 증가
- 2024년 현재, 전체 실업자 수는 2,787,112명, (준)중증장애인 실업자는 175,236명이며, 전체 실업자 대비 (준)중증장애인 비율은 6.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

- 성별

- 전체 실업자 중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2024년에도 유지
- 중증장애인 남성 실업자의 비율은 59.2%로 전체 남성 실업자(54.3%)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

- 2024년 전체 실업자 중 25-54세 청년층은 약 67%이고, 55세 이상 고령자는 약 24% 수준 유지
- 반면, 중증장애인 실업자 중 25-54세는 47.4%, 5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48.6%로, 고령자 비율이 전체 실업자 집단보다 높음. 이는 고령 중증장애인의 고용 진입 및 유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
- 5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통합청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대상 급여 중 '현저한 부담에 대한 지원'의 중점 대상군이기도 함



〈표 16-3-8〉 (준)중증장애인 장기 실업 현황(2024년 평균)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업자			172,484	163,507	165,725	175,236
장기실업자			80,248	75,796	73,910	77,815
실업자속기간 (비율)	12개월 이하		92,236	87,712	91,815	97,421
	12개월 이상	12개월~23개월	39,666	32,698	32,249	34,876
		24개월 이상	40,478	43,027	41,420	42,929
		진술 없음	105	70	242	10

자료: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ür Arbeit), 「노동시장 분석-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Analyse Arbeitsmarkt-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 2024년 (준)중증장애인 장기실업 현황

- 12개월 이상 장기실업
 - (준)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175,236명으로, 전년(165,725명) 대비 약 9,500명 증가
 - 이 중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77,815명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
- 24개월 이상 장기 실업
 - 2024년 기준 24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42,929명으로, 전체 (준)중증장애인 실업자의 24.5%를 차지
 - 전년도 대비 장기실업자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장기실업자 수는 증가

4) 재정

(1)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표 16-4-1〉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2023년)

(단위: 백만 유로, %)

담당기관에 따른 급여항목	2021	2022	2023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질병보험	3,369	3,695	4,058	9.8
입소 후속 재활 총괄	1,900	1,990	2,071	4.0
입소 재활 총괄	449	558	668	19.6
부모 재활	6	5	5	-7.2
외래 재활 총괄	134	149	167	12.3
재활인 사고보험 기여금 (대납)	91	79	83	5.7
재활스포츠/기능훈련	126	211	264	25.1
기타 보충 급여	107	111	119	7.0
사회소아센터 내 급여	287	308	330	7.1
업무부담 테스트 및 작업치료	0.58	0.42	0.44	5.1
조기진단 및 촉진 급여	183	196	213	9.1
보충적 재활 급여(DMP)	11	12	11	-5.5
개인예산	75	76	126	66.5
연금보험	7,112	6,963	7,641	9.7
의료 재활 급여	4,930	4,723	5,273	11.6
근로생활참여 급여(LTA)	1,230	1,237	1,204	-2.6
예방, 아동재활, 후속조치, 기타 급여	549	608	743	22.3
사회보험 기여금 (대납)	403	396	420	6.2
개인예산	0.55	0.50	0.62	24.4
농업인 고령보장	9	10	11	12.3
사고보험	5,069	5,292	5,685	7.4
외래치료 및 의치	1,748	1,804	1,957	8.5
입원 치료 및 재가 간병	1,203	1,254	1,351	7.7
부상자수당 및 특별 지원	865	925	981	6.0
기타 치료비	1,094	1,168	1,265	8.3
근로생활참여 급여(LTA)	159	141	131	-6.9
농업인 조합	421	415	466	12.3
개인예산	1.97	1.82	2.05	12.6
연방노동기구	2,595	2,588	2,676	3.4
근로생활참여 의무급여	2,474	2,471	2,560	3.6
근로생활참여 심사급여	106	102	101	-0.2
개인예산	14	15	15	1.1
통합청	555	575	628	9.2
근로생활 동행지원	450	467	513	9.8
노동시장프로그램	42	52	60	16.0
기타급여:	64	56	55	-2.3
(그 중) 개인예산	0.32	0.58	0.62	5.8
통합지원	22,870	24,053	26,212	9.0
의료 재활 급여	84	106	131	23.2
근로생활참여 급여:	5,111	5,221	5,707	9.3
(그 중) 장애인작업장(WfbM) 취업 급여	5,064	5,165	5,628	9.0
교육 참여 급여	2,003	2,302	2,583	12.2
사회 참여 급여:	15,268	16,001	17,252	7.8
(그 중) (활동)지원 급여	11,777	12,190	13,110	7.6
기타 급여	404	423	539	27.5
지출 전체	42,001	43,591	47,378	8.7

주: Eingliederungshilfe는 국내에 '편입부조'로 번역되어 왔으나, 'Eingliederung'은 본래 Integration의 순독일어 표현으로, 이에 따라 '통합지원'으로 번역함. 2018년 연방참여법 제정 이후 해당 급여는 사회법 제9권으로 통합·재편되며 더 이상 사회부조가 아니라 재활 및 참여급여로 체계화되었음. 기존의 '부조'라는 명칭은 이러한 제도적 전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함.

자료: 재활기구 연방연합(Bundesarbeitsgemeinschaft für Rehabilitation e. V.: BAR), 「재활정보(Reha-Info)」



※※ 2023년 독일의 장애인 재활 및 참여급여 지출 현황

- 총 지출 규모 및 증가율
 - 2023년 재활 및 참여급여 총 지출액은 47,378백만 유로로, 전년도(43,592백만 유로) 대비 8.7% 증가
 - 이는 2021년(3.9%), 2022년(3.8%)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로, 참여 중심 복지지출의 확대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음을 보여줌
-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급여
 - 총 지출액은 26,212백만 유로로, 전체 재활 및 참여 급여 중 가장 큰 비중(55.3%) 차지
 - 2020년(53.5%), 2021년(54.5%), 2022년(55.2%)에 이어 증가세 지속
 - 사회 참여급여는 17,252백만 유로로 전체 재활 및 참여급여의 36.4%에 해당
 - 그 중 (활동)지원 급여가 13,110백만 유로로, 사회참여 급여 중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
 - 근로생활 참여급여는 장애인 작업장 취업 급여 중심으로, 총 지출액이 5,707백만 유로
 - 해당 급여의 규모는 연금보험, 사고보험, 연방노동기구에서 제공하는 근로생활 참여급여 총합 4,509백만 유로를 초과함
 - 이 수치는 근로생활 참여급여가 일반 노동시장 참여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작업장의 비중이 큼을 보여줌
- 연금보험 재활 및 참여급여
 - 총 지출액은 7,641백만 유로, 전체의 약 16.1%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 그 중 의료재활급여가 5,273백만 유로로 전체 재활 및 참여급여의 11.1% 차지
 - 연금보험 의료재활급여는 건강보험 의료재활급여 총 4,058백만 유로(8.6%)보다 여전히 큰 규모
 - 연금보험의 의료재활급여는 근로생활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신청에 한정됨
- 주요 개별 급여

※※ 독일의 장애인 재활 및 참여급여

- 재활 및 참여급여 체계
 - 의료재활급여
 - 근로생활 참여급여
 -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급여
 - 의료재활급여
 - 근로생활 참여급여
 - 교육 참여급여
 - 사회 참여급여
- 독일 장애인 재활 및 참여급여의 재편
 - 2018년 연방참여법(BTHG) 제정 이후 기존의 사회법 제12권의 통합지원급여는 사회법 제9권으로 통합됨
 - 장애인의 참여 강화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직업재활은 근로생활 참여급여로, 교육지원은 교육 참여급여로 명칭 변경
 -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급여의 하위 급여인 의료재활급여와 근로생활 참여급여는 재원을 담당할 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거나, 장애인 작업장 관련 사안 등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료재활급여 및 근로생활 참여급여와 구분됨
- 재활 및 참여급여 주관기관(각각 사안에 따라 재원 담당)
 - 의료재활급여: 건강보험, 연금보험, 사고보험, 통합지원 담당기관
 - 근로생활 참여급여: 연금보험, 사고보험, 연방노동기구, 통합청, 통합지원 담당기관
 - 교육 참여와 사회 참여급여: 통합지원 담당기관

5) 복지

(1) 장애인 통합지원

〈표 16-5-1〉 장애인 통합지원 현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단위: 천유로,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출 총액		20,972,740	21,630,687	22,870,100	24,051,947	26,212,187
전체 수급자 수		950,450	939,680	979,955	1,000,525	1,017,190
성별	남성	566.624	559,230	583,960	595,585	604,790
	여성	383.826	380,450	395,995	404,940	412,400
연령	18세 미만	278,974	274,095	295,530	309,020	321,170
	18-39세	270,908	267,450	272,555	271,905	270,990
	40-64세	341,964	338,210	347,340	350,770	352,050
	65세 이상	58,604	59,930	64,530	68,830	72,985

주: 장애인 통합지원 수급자 통계는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합지원급여를 수급한 모든 사람을 포함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Empfänger von Eingliederungshilfe: Deutschland, Jahre, Geschlecht, Altersgruppen, Leistungsarten

※※ 2023년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현황

- 연도별 추이
 - 2023년 통합지원급여 전체 수급자는 1,017,190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
 - 증가율은 2022년(2.1%)보다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증가세 유지
 - 2023년 총 지출액은 26,212,187천 유로로, 전년 대비 9.0% 증가
 - 지출 증가폭(9.0%)이 수급자 수 증가율(1.7%)을 크게 상회
- 성별 현황
 - 전체 통합급여 수급자의 약 60%가 남성, 약 40%가 여성으로, 성별 비율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
- 연령별 현황
 - 18세 미만 수급자는 약 31.6%로 높은 비율 차지
 - 40-64세의 중장년층이 전체 수급자의 3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율은 7.2%로 전년(6.9%)에 비해 소폭 증가

※※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 법적 근거: 사회법 제9권 제9조
 - 장애로 인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거나 그러한 상당한 장애의 위험을 받는 장애인에게 사회생활참여(Teilhabe am gesellschaftlichen Leben)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
 - 즉, 신청자에게 상당한 사회생활 참여 제약이 존재하고, 이것이 해당 급여를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수급권 인정
- 연방참여법(BTHG) 제정 이후 변경 사항
 - 2019년까지 사회법 제12권에 근거하여 사회부조의 일환으로 제공
 - 2020년 이후 BTHG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사회법 제9권 2부로 통합되어 재활 및 참여급여로 재편됨
 - 재활 및 참여관련 사안에 한정해서 제공되고, 기존 통합지원급여에 포함되었던 생계보장급여는 사회부조를 담당하는 사회청 소관으로 전 존함
 - 통합지원은 급여 분류를 통해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재편성됨



〈표 16-5-2〉 장애인 통합지원 항목별 수급자 및 지출액(2023년)

(단위: 명, 천유로)

통합지원 항목	이용자	지출액
통합지원 합계	1,017,190	26,212,187
의료재활 급여	35,135	130,920
근로생활참여 급여	283,705	5,706,744
장애인작업장(WfbM) 취업 급여	280,775	5,627,808
WfbM 외 작업장 취업 급여	1,105	17,423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급여	2,470	61,513
교육참여 급여	102,340	2,583,142
사회참여 급여	764,675	17,251,885
주거급여	32,015	163,137
자가 급여(성인 동거인 부재)	1,475	13,813
특별한 주거형태에서의 주거 급여	30,150	143,666
부부, 생활동반자, 주거공동체에서의 주거 급여	430	5,470
(활동)지원 급여	517,935	13,110,435
치료교육 급여	204,470	1,901,235
실용 지식 및 기능의 습득 및 유지 급여	97,695	1,966,633
의사소통 촉진급여	1,280	12,076
차량지원 급여	1,230	8,866
이동지원	27,110	65,028
보조기기	2,885	8,479
방문보조금	11,845	15,994
기타 통합지원	30,330	539,496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 Bruttoausgaben der Eingliederungshilfe

※※ 2023년 통합지원급여 지출 현황

- 총 지출: 1,017,190명의 장애인에게 26,212,187천 유로 지급(대면 서비스, 현물, 정액, 개인 예산 형태)
- 2023년에도 사회참여 급여와 근로생활참여 급여가 전체 지출의 약 87.6%를 차지, 통합지원의 핵심 영역으로 기능
- 사회 참여급여
 - 통합지원급여 중 가장 비중이 큰 하위 급여로 764,675명에게 17,251,885천 유로가 지급되어 총 지출액의 65.8%를 차지
 - 사회 참여급여 중 (활동)지원 급여가 13,110,435천 유로로 76% 차지
- 근로생활 참여급여
 - 283,705명에게 5,706,744천 유로 지급
 - 통합지원급여 총 지출액의 21.8%로 두 번째로 큰 비중 차지
 - 이 중 98.9%는 장애인작업장(WfbM) 취업 급여로 지급됨

6) 정신건강

(1)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표 16-6-1〉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수급자 현황(2021년)

(단위: 명)

구분	시작된 급여	끝난 급여	12월 31일 시점의 급여
합계	45,804	36,270	106,615
성별	남성	31,634	24,913
	여성	14,170	11,357
연령별	6세 이하	1,847	388
	6~8세	11,540	3,161
	9~11세	14,300	9,410
	12~14세	8,315	9,781
	15~17세	5,355	6,873
	18세 이상	4,447	6,657
장소별	외래/부분입원	38,338	29,193
	돌봄지원인	340	303
	생활시설	7,126	6,774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아동 및 청소년 지원 통계(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 2021년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수급자 현황

- 통합지원급여 수급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 106,615명, 전년 대비 7.9% 증가
- 통합지원 수급 개시자: 45,804명, 전년 대비 13.1% 증가
- 통합지원 수급 완료자: 36,270명, 전년 대비 10.7% 증가
- 성별 비중: 2021년 12월 31일 기준, 남성이 약 72%로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음
- 연령대 비중
 - 9~11세: 전체 수급자의 32.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12~14세: 전체 수급자의 26.8%
 - 두 연령대가 전체 수급자의 약 60%를 차지
- 통합지원의 형태: 외래 및 부분입원이 84.3%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 목적: 정서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대상
 - 정서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ADHD, 난독증, 난산증, 섭식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및 조울증, 조현병, 성격장애, 중독질환 등
 - 참여장애: 특정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평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한 가지 생활영역에서만 참여가 저해되어도 수급 가능
- 주관기관
 - 청소년청
 - 정신적(지적), 신체적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담당기관에서 제공
 - 2028년 이후 청소년청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모든 유형의 통합지원을 전담할 예정
- 급여 구성: 의료재활급여, 근로생활 참여급여, 생계유지 및 기타 보충급여, 교육참여급여, 사회참여급여
- 구체적 지원 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아동의 초기교육, 치료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학교동행(통합보조), 사립학교 및 기숙학교 또는 개별수업 비용지원, 여가활동보조, 일상생활보조, 직업훈련지원, 사회적 훈련, 보호주거, 위탁가정, 시설입주, 상담, 코칭 등



(2) 정신질환 관련 병원

〈표 16-6-2〉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현황(2022년)

(단위: 개)

병원 수					
구분			2021	2022	2023
전체			1,887	1,893	1,874
일반병원			1,534	1,526	1,505
기타 병원	기타병원 전체		353	367	369
	정신과, 심리치료, 신경과, 노인의학 중점 병원	전체	290	301	303
		100 병상 미만	129	138	138
		100~199 병상	74	74	75
		200~499 병상	79	80	83
		500 병상 이상	8	9	7
	순수 주간 또는 야간 병동		63	66	66
국군병원			4	5	5
병상 수					
전체			483,606	480,382	476,924
일반병원의 병상			437,021	432,848	428,791
기타 병원	정신과, 심리치료, 신경과, 노인의학 중점 병원	전체	46,585	47,534	48,133
		100 병상 미만	5,942	6,305	6,329
		100~199 병상	10,177	10,195	10,479
		200~499 병상	25,402	25,644	27,008
		500 병상 이상	5,064	5,390	4,317
	순수 주간 및 야간 병동		-	-	-
군병원의 병상			928	1,017	1,017

주: 집계 대상 병상은 입원 병동에 위치한 병상으로 부분입원, 외래치료, 연구 및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병상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병원 기본데이터(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 2022년 독일 정신질환 관련 병원 및 병상 현황

- 독일 병원 현황

- 2023년 전체 병원 수는 총 1,874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일반 병원: 1,526개소로 전년 대비 21개소 감소
- 기타 병원(정신과, 심리치료, 신경과, 노인의학): 369개소, 전년 대비 증가

- 병상 규모

- 전체 병상 수는 476,924개로 전년(480,382개) 대비 감소
- 일반 병원 병상은 428,791개로, 4년 연속 감소 추세
- 정신과 병원 병상(48,133개)은 전체 병상의 10.1%로 전년(47,534개) 대비 증가
- 기타 병원 중 병상 100개 미만 병원은 138개소(45.5%), 병상 500개 이상 병원은 7개소(2.3%)로 소규모 병원 비중이 높음
- 2020년 이후 전체 병원 수와 일반 병원 병상 수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정신과 병원의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표 16-6-3〉 정신질환 관련 환자 현황 수(2023년)

(단위: 명)

구분	환자입원			환자퇴원						평균 치료 기간
	입원 병동 치료	그 중		입원병동으로 부터 퇴원	그 중				사망	
		다른 병원으로부 터 입원	동일병원의 일시입원으 로부터 입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	예방 및 재활기관으 로의 이송	돌봄기관 으로의 이송	동일 병원의 부분입원 병동으로 이송		
병원 전체	17,185,193	633,042	9,717	16,774,651	632,292	297,343	450,220	12,016	444,417	7.2
일반 병원	16,618,679	579,129	8,961	16,214,198	607,141	288,742	429,223	8,017	441,877	6.5
정신 의학과 전체	566,514	53,913	7560	560,453	25,151	8,601	20,997	3,999	2,540	27.7
군인병원	44,042	954	-	43,127	1,826	439	523	-	998	5.7

주: 입원환자 중 부분입원환자, 휴가 등의 이유로 일시 퇴원하였다가 재입원한 환자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
 자료: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병원 기본데이터(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 2023년 독일 정신질환 관련환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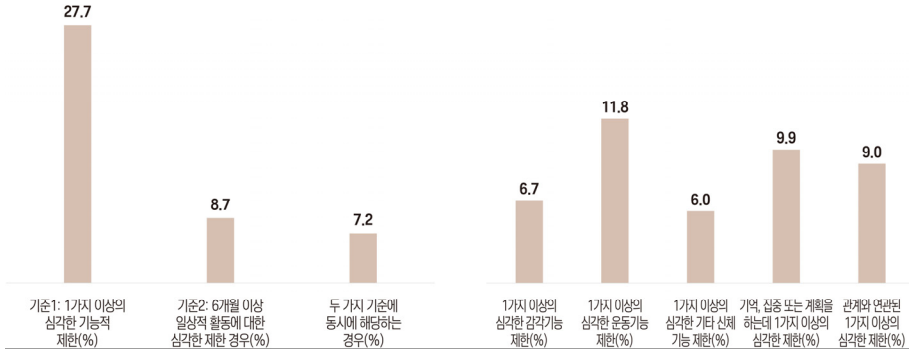
- 입원 환자 현황
 - 전체 입원 환자: 17,185,193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 일반병원 입원환자: 16,618,679명
 - 정신의학과 입원환자: 566,514명으로, 전체 입원환자의 약 3.3%를 차지
 - 정신의학과 입원 환자 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퇴원 환자 현황
 - 정신과 병원 퇴원환자는 560,453명
 - 퇴원환자 중 약 9.76%는 타 병원(25,151명), 예방 및 재활기관(8,601명), 돌봄 기관(20,997명), 동일 병원 내 부분입원 병동(3,999명)으로 이송되어 치료 및 재활 지속
- 평균 입원 기간
 - 독일 전체 병원: 7.2일
 - 일반병원: 6.5일
 - 정신과 병원: 27.7일로, 일반병원 대비 4배 초과



4.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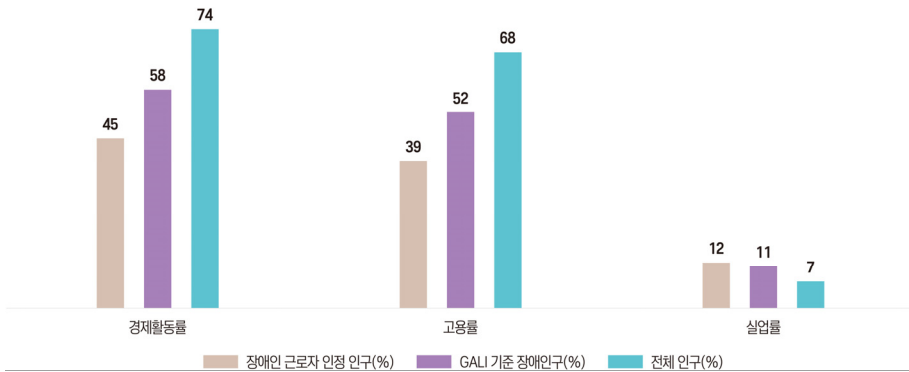
[그림 3-4-1]

프랑스: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성인장애인구 비율(2022년)



[그림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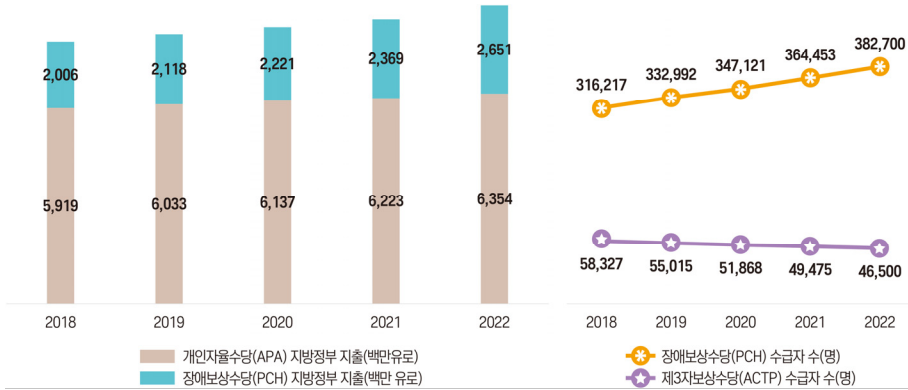
프랑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2023년)



- 2022년 기준 프랑스의 15세 이상 인구 중 '1가지 이상의 심각한 기능 제한(기준1)'에 해당되는 경우는 27.7%, '6개월 이상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기준2)'에 해당하는 경우는 8.7%임
 - 기준1과 기준2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15세 이상의 경우 7.2%에 해당
- 2022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인정 인구와 GALI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열악함
 - 행정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장애인 근로자 인정 인구의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45.0%, 39.0%, 12.0%임
 - GALI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58.0%, 52.0%, 1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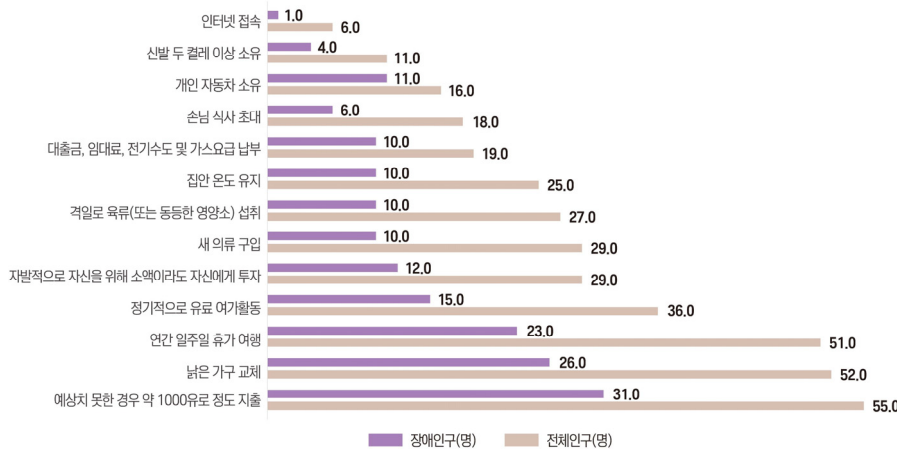
[그림 3-4-3]

프랑스: 돌봄 지원 유형별 지출 및 수급자 현황



[그림 3-4-4]

프랑스: 경제적 박탈 상황 -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비교(2022년)



- 2022년 기준 개인자율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의 지방정부 지출은 각각 5,354백만 유로, 2,651백만 유로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자율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의 지방정부 지출은 매년 증가추이를 보임
- 2022년 기준 장애보상수당(PCH)과 제3자보상수당(ACP) 수급자 수는 각각 382,700명, 46,500명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보상수당(PCH)의 수급자 수는 증가추이를, 제3자보상수당(ACP)의 수급자 수는 감소추이를 보임
- 장애인구의 경제적 박탈 상황 비율은 전체 인구 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 장애인구가 경제적 이유로 '예산치 못한 경우 약 1,000유로 정도 지출', '낡은 가구 교체', '연간 일주일 휴가 여행의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는 각각 55.0%, 52.0%, 51.0%로 높게 나타남



1) 장애인구

(1) 일반가구 거주 장애인구

〈표 17-1-1〉 2022년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연령별 성인장애인구 비율

	인구 비율 (%)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심각한 기능적 제한(중복가능) (1)	17.9	19.9	29.6	44.2	27.7
감각적 제한(중복가능)	2.2	3.0	6.3	15.7	6.7
운동제한(중복가능)	2.0	4.5	12.5	28.8	11.8
기타신체적제한(중복가능)	0.9	2.0	5.7	15.6	6.0
기억, 집중, 계획기능제한(중복가능)	10.2	9.3	10.5	9.8	9.9
관계제한(중복가능)	9.3	7.8	9.3	10.1	9.0
일상적 필수활동 심각한 제한(중복가능) (2)	4.0	4.3	8.5	25.1	10.3
이동과 관련된 활동 제한(중복가능)	2.0	1.9	3.2	12.9	4.9
개인관리와 관련된 활동 제한(중복가능)	2.2	1.5	2.0	8.3	3.4
집안일과 관련된 활동 제한(중복가능)	2.8	3.6	7.5	23.5	9.2
6개월 이상 일상적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한 (GALI) (3)	2.9	4.8	10.6	16.9	8.7
(1) + (2) 또는 (3)	19.7	21.6	32.8	49.0	30.6

대상: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및 DROM 인구 중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DREES, enquête Vie quotidienne et santé, 2022

※※ 프랑스 장애 개념의 광범위성

- 프랑스 통계청(INSEE)에 의하면, 프랑스의 장애 개념은 광범위하여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장애인구수를 조사하는데 용이하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구 관련 프랑스 공공 보고서에서는 장애개념을 한 가지 기준으로 설정하여 조사·연구를 꾸준히 하지 않고 매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음
(<https://blog.insee.fr/handicap-et-autonomie-des-enjeux-dinclusion-y-compris-dans-les-statistiques>)
- 프랑스 연대부 통계연구소인 DREES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통계에서는 GALI(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icator)의 장애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문의 프랑스 장애인구 개념은 한 가지 이상 심각한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기준1)과 GALI(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icator)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이 있는 경우(기준2)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함.
- 2022년 17가지 이상의 심각한 기능제한의 경우 15세 이상에서 27.7%, 6개월 이상 건강문제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의 경우 8.7%를 차지함
 - 기준1과 기준2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15세 이상의 경우 7.2%에 해당
 - 기준 1에만 해당되는 경우 20.5%, 기준 2에만 해당되는 경우 1.5%임

〈표 17-1-2〉 2022년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성인장애인가 비율

	내용	15-64세(%)	15세 이상(%)
구분	심각한 기능적 제한 (중복 가능)*	22.4	27.7
	6개월 이상 일상적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한 (GALI) (중복가능)**	6.1	8.7
장애 기준	두 가지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4.7	7.2
	심각한 기능적 제한에만 해당하는 경우	17.7	20.5
	6개월 이상 일상적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만 해당하는 경우	1.4	1.5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모든 경우	23.8	29.2

주: *기준2가 포함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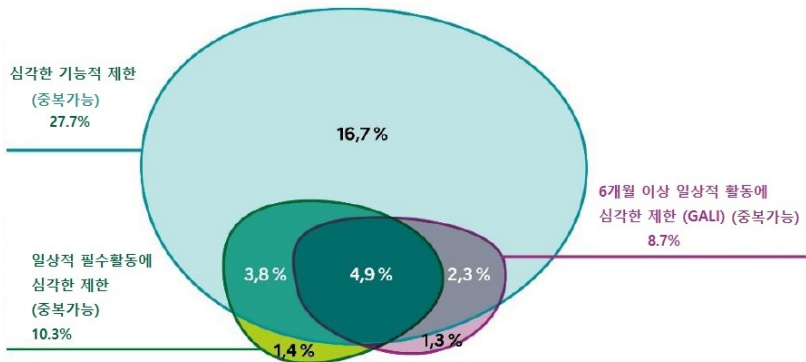
** 기준1이 포함될 수 있음

대상: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및 DROM 인구 중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DREES, enquête Vie quotidienne et santé, 2022

〈표 17-1-3〉 2022년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15세 이상 인구 비율



대상: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및 DROM 인구 중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DREES, enquête Vie quotidienne et santé, 2022

- 기능적 제한을 겪는 인구에서 다른 항목과 중복된 비율은 27.7%, 단독인 경우 16.7%로 다른 장애인가개념에 비해 제일 많음.
- GALI 기준 장애인구의 경우 다른 항목과 중복된 비율은 8.7%, 단독의 경우 1.3%를 차지함.
- 심각한 기능적 제한인가 및 GALI 기준 장애인구 모두 고연령층에서 비율이 높게 차지함을 알 수 있음.



〈표 17-1-4〉 2022년 기능제한에 대한 연령별 성인장애인구 비율

	내용	15-64세(%)	15세 이상(%)
	1가지 이상의 심각한 감각기능 제한	3.9	6.7
기능제한 내용	가까이 보기	1.0	1.8
	멀리 보기 (4미터 이상)	0.9	1.5
	옆 보기	0.8	1.3
	어두운 곳에서 보기	1.1	2.1
	여러 사람 대화 듣기	1.9	3.8
	조용한 공간에서 상대방의 대화 듣기	0.5	1.0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적 소리 듣기	0.6	1.0
	1가지 이상의 심각한 운동기능 제한	6.4	11.8
	평지에서 500미터 걷기	1.8	4.4
	한 층 계단으로 오르기 및 내려가기	1.9	4.4
	머리위로 팔 올리기	1.3	2.2
	손 및 손가락 사용	0.7	1.3
	자세 낮추기 또는 무릎 꿇기	3.5	8.0
	5kg 가방 들고 10 미터 이동하기	3.2	6.3
	1가지 이상의 심각한 기타 신체 기능 제한	2.9	6.0
	대소변 가리기	0.6	1.4
	딱딱한 음식 씹거나 뜯기	2.4	5.1
	기억, 집중 또는 계획을 하는데 1가지 이상의 심각한 제한	9.9	9.9
	하루 중 현재 시점을 모름	0.7	0.9
	자주 기억이 잘 안남	2.2	2.8
	10분 이상 집중이 어려움	2.1	2.1
	일상적 활동을 하거나 기억을 하기 위해 외부적 자극이 자주 필요함	5.7	5.4
	일상생활에 적합한 결정에 어려움	1.5	1.9
	관계와 연관된 1가지 이상의 심각한 제한	8.7	9.0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자주 어려움	1.0	1.2
	본인 행동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자주 처함	0.8	0.8
	지인으로부터 공격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음	1.3	1.3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	1.8	1.9
	도움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움	4.7	5.1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3.1	3.0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및 DROM 인구 중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DREES, enquête Vie quotidienne et santé, 2022

- 감각기능, 운동기능, 기타신체기능, 기억·집중·계획, 관계형성의 제한 중 운동기능제한과 기억·집중·계획에서의 제한에서 비율이 높음
 - 15세 이상에서 심각한 운동기능제한의 경우가 11.8% 이고 기억·집중·계획에서의 제한의 경우가 9.9%임
- 감각기능제한 및 운동기능제한의 경우 15-64세의 경우보다 고령장애인이 포함되어있는 15세 이상에서 눈에 띄게 높음
 - 감각기능제한에서 15-64세의 경우 3.9%, 15세 이상의 경우 6.7%임
 - 운동기능제한에서 15-64세의 경우 6.4%, 15세 이상의 경우 11.8%임.

〈표 17-1-5〉 장애기준유형에 따른 고령장애인구 비율

구분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구분	심각한 기능적 제한 (중복가능)	44.2	33.1	58.4
	6개월 이상 일상적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한 (GALI) (중복가능)	16.9	9.7	26.1
장애 기준	두 가지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15.2	8.3	24.0
	심각한 기능적 제한에만 해당하는 경우	29.0	24.8	34.4
	6개월 이상 일상적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한에만 해당하는 경우	1.7	1.4	2.1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모든 경우	45.9	34.5	60.5
기능제한 내용	심각한 감각기능제한 (중복가능)	15.7	8.3	25.2
	심각한 운동기능제한 (중복가능)	28.8	16.7	44.3
	심각한 기타 신체 기능 제한 (중복가능)	15.6	9.6	23.5
	기억, 집중 또는 계획을 하는데 심각한 제한 (중복가능)	9.8	7.3	13.0
	관계와 연관된 심각한 제한 (중복가능)	10.1	8.0	12.7
일상생활 제약 내용	일상생활 필수적 활동에 제한 (중복가능)	25.1	11.6	42.5
	집안일과 관련된 활동에 제약	23.5	10.5	40.2
	이동과 관련된 활동에 제약	12.9	4.8	23.4
	인간관계와 관련된 활동에 제약	8.3	2.9	15.2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및 DROM 인구 중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DREES, enquête Vie quotidienne et santé, 2022

〈표 17-1-6〉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인구 특성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여성 인구 수 비율 (%)	58.7	55.9
	평균 연령 (세)	79.2	74.9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 응답 결과 (%)	매우 좋음	12.4	55.6
	그럭저럭 좋음	38.5	31.5
	나쁨-매우 나쁨	49.1	12.9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및 DROM 인구 중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DREES, enquête Vie quotidienne et santé, 2022

-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기능제한 및 일상에서 심각한 제한의 경우가 증가함
 - 심각한 기능제한에서 65~74세의 경우 33.1%인데 비해 75세 이상의 경우 58.4%임.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의 경우 65~74세의 경우 9.7%인데 비해 75세 이상의 경우 26.1%임.
- 일상생활제약의 경우 75세 이상부터 제약이 증가함
 - 집안일과 관련된 활동에서 65세~74세의 경우 10.5%가 제약을 받는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40.2%로 높음
 - 이동과 관련된 활동에서 65~74세의 경우 4.8%가 제약을 받는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23.4%로 높음
 - 인간관계와 관련된 활동에서 65~74세의 경우 2.9%가 제약을 받는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15.2%로 높음
- 65세 이상 고령장애인구에서 여성이 58.7%로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 55.9%에 비해 높은 편임
- 평균연령으로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서는 79.2세로 65세 이상 전체노인인구 74.9세보다 높은 편임



(2) 시설 거주 장애인구

〈표 17-1-7〉 장애인 시설(서비스) 입소(이용)자 수

(단위: 개소, 명, %)

시설유형	2022			2006년 대비 2022년 증감률		
	시설 수	정원 수	입소(이용)자 수	시설 수	정원 수	입소(이용)자 수
전체 성인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기관	8,270	355,600	321,530	+35.6	+32.4	+37.0
성인 장애인 시설	6,700	294,250	295,170	+24.5	+21.8	+22.9
장애인 보호 작업장	1,490	120,470	125,960	+3.5	+11.6	+15.4
직업교육센터	170	11,620	9,660	+41.7	+10.8	+13.5
비의료 생활거주시설(EANM)	3,120	96,060	94,260	+15.1	+12.2	+11.0
특수거주시설 (MAS)	740	31,380	30,420	+54.2	+59.9	+57.1
의료거주시설 (EAM)	1,070	32,360	32,210	+127.7	+137.6	+137.7
시험시설 및 임시거주생활시설	110	2,360	2,660	-31.3	-43.5	-42.8
성인 장애인 서비스 기관	1,570	61,350	69,510	+118.1	+126.2	+157.7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및 프랑스령 해외영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DREES, enquête ES-Handicap 2006 et 2022.

- 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서비스 이용자 수는 355,600명으로 나타남.

- 자립 수준이 낮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특수거주시설과 의료거주시설의 거주자 수는 각각 31,380명, 32,360명으로 나타남. 이는 2006년과 비교하면 입소자 수가 특수거주시설의 경우 +59.9%, 의료거주시설의 경우 +137.6% 증가한 것임. 이는 시설 수의 증가율(각각 +54.2%, +127.7%)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장애인 시설 유형

- 특수 거주 시설 (Maisons d'accueil spécialisées (MAS)) : 일상 생활에서의 자립 수준이 낮은 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 영구 거주, 단기 거주, 데이케어, 긴급 거주 가능.
- 의료 거주 시설 (Établissements d'accueil médicalisés, EAM) 및 장애인 전체 또는 부분 의료 시설 établissements d'accueil médicalisé en tout ou partie pour personnes handicapées, EAM) : 일상 생활의 필수 행위를 수행하는데 자립성에 제한이 있고 규칙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 지원 거주 시설임. 특수거주시설(MAS) 거주자에 비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음. 영구 거주, 단기 거주, 데이케어, 긴급거주 가능
- 장애인을 위한 생활 주택 (Foyer de vie ou foyer de vie occupationnel) : 보호작업장이나 거주시설(MAS 또는 FAM)에 거주하지 않고 자립성이 어느 정도 있는 장애인이 반나절 학습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지역에 따라 거주 시설도 포함된 경우가 있음.
- 비의료 생활거주시설 (Foyers d'accueil polyvalent pour adultes handicapés et établissements d'accueil non médicalisés pour personnes handicapées, EANM) :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사회부조 장애인 거주 또는 일반 기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맞춤형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거주 시설로 비의료지원 다목적 주택, 또는 보호작업장이나 의료거주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자립성이 어느 정도 있는 장애인이 반나절 학습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지역에 따라 거주 시설도 포함된 경우가 있음.
- 성인장애인 시험시설, 성인장애인 임시거주 생활시설 (Établissements expérimentaux pour adultes handicapés, établissements d'accueil temporaire d'adultes handicapés et lieux de vie et d'accueil, LVA) : 모든 연령의 장애인 또는 사회적, 가족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비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또는 의료사회 서비스 지원 임시거주시설.

〈표 17-1-8〉 장애인 시설(서비스) 입소(이용) 고령자

(단위: %)

구분	60세 이상		65세 이상	
	2022	2006	2022	2006
장애인 보호 작업장	2.7	0.3	0.1	0.0
직업교육센터	1.5	0.1	0.0	0.0
비의료 생활거주시설(EANM)	12.3	3.9	5.5	1.6
특수거주시설(MAS)	19.7	5.0	9.5	1.8
의료거주시설(EAM)	23.7	6.6	13.1	2.7
시범시설 및 임시거주생활시설	16.2	5.5	8.8	2.3
장애인생활서비스지원 기관	14.7	3.9	6.0	1.5
청년 및 성인 장애인 서비스 시범기관	11.4	-	6.0	-
합 계	11.6	2.6	5.1	1.0

주: 1) 2018년 합계의 경우 중복되는 경우 제외하고 계산됨
 2)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및 프랑스령 해외영토(DROM) 시설 및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DREES, enquête ES-Handicap 2006 et 2022.

- 2022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중 장애인 시설(서비스)에 입소(이용)한 비율은 11.6%로, 2006년에 비해 9%p 증가함
- 2022년 60세 이상 장애인의 보호작업장 이용자 비율은 2.7%, 직업교육센터 이용자 비율은 1.5%로 2006년에 비해 각각 2.4%p, 1.4%p 증가함
- 중증장애인의 대표적인 거주시설인 특수거주시설(MAS)과 의료거주시설(EAM)의 경우 눈에 띄는 고령화를 볼 수 있는데 MAS의 경우 60세 이상이 2006년 5.0%, 65세 이상이 1.8%였지만 2022년 각각 19.7%, 9.5%로 증가함. EAM의 경우 60세 이상이 2006년 6.6%, 65세 이상이 2.7%이었지만 2018년 각각 23.7%, 13.1%로 증가함



2) 교육

(1) 일반가구 거주 장애인의 가구 상황 및 교육 수준

〈표 17-2-1〉 2022년 일반가구 거주 장애인 가구 상황 및 교육 수준

(단위: %)

구분	장애인	전체
혼인 여부	미혼	34.7
	자유커플	11.1
	법적 사실혼	8.8
	기혼	37.5
	이혼	6.7
	미망인	1.2
자녀 여부	무자녀	38.9
	다자녀	61.1
	자녀 한 명	15.4
	자녀 두 명	27.6
	자녀 세 명 이상	18.1
가구 구성	1인 가구	16.3
	부부가구	67.5
	무자녀	18.7
	자녀와 함께	48.8
	한부모가족	11.7
	기타 유형 가구	4.5
거주 상황	주인	60.3
	세입자, 전차인	18.2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임대	19.2
	무료 거주	2.4
교육 수준	대학원 이상	24.1
	대학교 졸업	13.2
	고등학교 졸업	21.5
	직업고등학교 졸업	20.0
	중학교 졸업	8.3
	초등학교 이하	12.8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16~64세 일반 가구 거주 장애인 대상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Insee, enquête Statistiques sur les ressources et les conditions de vie 2022.

- 장애인구에서 1인가구가 23.4%로 전체인구 16.3%에 비해 높음
- 2022년 일반 가구에 거주 중인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전체 인구에 비해 다양하게 분포되지 않음.
 - 초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29.6%를 차지하였고 두 번째로 직업고등학교 졸업이 27.3%로 나타남.

(2) 구직자 교육 수준

〈표 17-2-2〉 연도별 구직자 교육수준

(단위: %)

구분	2015		2017		2019		2021		2022		2023		2024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교육 무경험 (수료증 없음) (노동자, 인부)	39.0	30.0	38.0	30.0	37.0	28.0	38.0	30.0	39.0	30.0	39.0	30.0	38.0	29.0
고등학교 수료 이하	27.0	18.0	25.0	17.0	19.0	14.0	19.0	15.0	21.0	16.0	21.0	16.0	21.0	16.0
고등학교 졸업 이상	25.0	45.0	27.0	46.0	37.0	54.0	37.0	53.0	37.0	53.0	38.0	54.0	38.0	53.0

주: 1)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대상
3) 무응답의 비율은 동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자료: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 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2024년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장애인구 중 고등학교 수료 이하의 비율은 21.0%로 전체 인구 16.0% 보다 높음
- 장애인 구직자의 교육수준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고등학교졸업 이상인 자가 25%였다면 2023년부터 38%를 기록함.



3) 고용

(1) 경제활동

〈표 17-3-1〉 2023년 유형별 장애인구의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

	장애인 근로자 인정 인구			GALI 기준 장애인구			전체 인구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경제활동률(%)	44	46	45	59	58	58	77	71	74
고용률 (%)	38	41	39	51	52	52	71	66	68
실업률 (%)	13	11	12	12	10	11	7	7	7
장기실업 (%)	6	4	5	4	4	4	2	2	2
인원 수(천 명)	1,540	1,529	3,069	3,079	3,712	6,792	20,087	20,844	40,931

주: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Insee, 2023년 고용 조사

-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에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인구에서 고용률이 68%인데 비해 장애인 근로자 인정 인구에서는 39%로 장애인근로자인구가 1.5배 이상 낮음
- 2023년 행정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근로자 인구에서 경제활동률, 고용률, 실업률이 GALI 기준 장애인구에 비해서 열악함
 - 장애인 인정 인구에서 경제활동률이 45%이고 고용률이 39%, 장기실업률을 5%인데 반해 GALI 기준 장애인구의 경우 각각 58%, 52%, 4%로 GALI 기준 장애인구에서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덜 겪음.
 - 장애인구에서 남성의 실업률(장기실업률 포함)이 여성보다 더 높음.

(2) 고용

〈표 17-3-2〉 2023년 장애개념에 따른 취업 장애인구의 사회학적 특성

(단위: 천 명, %)

	장애인근로자인정	기능제한인구	GALI 기준 심각한 활동제한 인구	경제활동 중인 전체인구	
전체 (천 명)	1,205	3,524	994	28,012	
성별	남성	49	45	44	51
	여성	51	55	56	49
연령	15~24세	4	5	5	10
	25~39세	19	22	20	34
	40~49세	27	25	24	25
	50~64세	50	48	51	31
가족 사항	1인가구	27	23	21	20
	한부모가구	11	12	12	10
	무자녀가구	21	23	24	21
	자녀가구	38	39	40	47
	기타유형가구	3	3	3	3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또는 교육 무경험	22	20	20	12
	중학교 졸업	30	27	31	20
	고등학교졸업	20	21	20	21
	대학교 이상	29	32	29	47
직업 분류	농공업, 장인, 기업 수장	6	8	7	8
	고위 간부직	11	13	12	22
	중간 관리자직	23	24	23	25
	사무직	33	32	33	25
	노동직	27	23	25	19

주: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Insee, 2023년 고용 조사

- 장애개념에 따른 취업한 장애인구 중 기능제한이 있는 인구에서 고용률이 높음.
 - GALI 기준 장애인구가 994,000명으로 제일 낮고 장애인근로자인정인구가 1,205,000명, 기능제한이 있는 인구가 3,524,000명으로 제일 높음
- 세 가지 유형의 장애인구 모두 50~64세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높음



〈표 17-3-4〉2023년 장애 개념에 따른 장애인 급여생활자 직업 특성

(단위: 천 명, %)

	장애인근로자인정인구	기능제한인구	GALI 기준 심각한 활동제한 인구	경제활동 중인 전체인구
전체 (천 명)	1,107	3,146	902	24,558
기관유형	공공기관	25	27	26
	사기업	75	73	74
계약 유형	정규직	85	87	87
	계약직	11	10	10
	임시직, 인턴	4	4	3
노동시간	전일제	67	73	67
	시간제	33	27	33

주: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대상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원자료: Insee, 2023년 고용 조사

〈표 17-3-5〉고용의무 기업체와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현황

(단위: %)

구분	2021	2022(p)	2023(p)
전체 기업 수	110,100	112,300	112,300
전일제 직원 전체 수	12,304,700	12,437,000	12,459,400
고용의무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 수	684,300	691,100	692,600
고용의무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 비중	5.6	5.6	5.6

주: 2022년, 2023년 임시통계자료임 (p)
자료: DARES, 2024, 「2023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원자료: DARES, DSN-SISMMO.

- 급여생활 장애인구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음
 - 장애인근로자인정인구에서 정규직이 85%이고 두 가지 유형의 장애인구에서 각 87%로 나타남. 이는 경제활동 중인 전체인구 85%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더 높음.
- 장애인구에서 전일제 보다는 시간제 비율이 더 높음.
 - 시간제 비율의 경우 전체인구(17%)에 비해 장애인근로자에서 33%, 기능제한인구에서 27%, GALI 인구에서 33%로 나타남.
- 2021년부터 2023년까지고용의무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비중에는 변함이 없음.
 - 고용의무 기업체는 2023년 112,300개이고 고용의무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 수는 총 692,600명으로 전체직원의 5.6%를 차지함

〈표 17-3-6〉 고용의무 기업체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의무 달성률

(단위: %)

구분		2021	2022(p)	2023(p)
전체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률		81	82	84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 정도별 비율	0%	31	30	30
	1~24%	9	9	8
	25~49%	10	10	10
	50~74%	11	11	11
	75~99%	10	10	10
	100% 이상	29	30	31

주: 2022년, 2023년 임시통계자료임 (p)
자료: DARES, 2024, 「2023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원자료: DARES, DSN-SISMMO.

〈표 17-3-7〉 2023년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의무 직접고용 달성 정도별 비율

(단위: %)

구분		직접고용 달성률	장애인 고용의무 직접고용 달성 정도별 비율			
			0%	1~49%	50~99%	100% 이상
기업 규모	20~49인	79	41	12	15	32
	50~99인	79	16	27	27	30
	100~249인	78	6	33	33	28
	250~499인	80	2	31	39	28
	500~2,499인	80	1	29	42	28
	2,500인 이상	100	0	15	50	35
	전체	84	30	18	21	31
기업 분야	산업, 공업	98	18	15	24	43
	건설업	68	34	16	19	31
	상업, 교통, 숙박업, 식당업	82	32	18	21	29
	정보·커뮤니케이션업	54	47	26	15	12
	회계, 보험, 부동산업	87	34	20	21	25
	기업 서비스업	67	38	21	19	22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109	18	16	23	43
	전체	84	30	18	21	31

주: 1) 2021년 임시통계자료임
2) 상공업 분야의 공공 및 민간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 Mayotte를 제외한 프랑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함
자료: DARES, 2024, 「2023년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
원자료: DARES, DSN-SISMMO.

- 전체 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률은 연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2021년 81%에서 2023년 84%로 나타남.
- 규모가 큰 기업에서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달성률이 높음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직접고용 달성 비율이 100% 이상의 비율은 2,500인 이상인 기업이 35.0%로 가장 높은 반면, 20~49인 규모의 기업은 0%의 비율이 41.0%로 가장 높은 편임
 - 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원조 분야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직접고용 달성률은 109%로 목표 대비 초과달성함

※※ 기여금(패널티)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패널티)을 납부해야함.
- 이 법은 2005년 장애인 개정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SMIC)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이를 수 있음.



(2) 실업 및 구직

〈표 17-3-8〉 장애인구의 구직률 - 연도별

(단위: 명, %)

구분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구직자	5,607,511	5,989,614	5,781,100	6,074,698	5,816,139	5,314,892	5,202,733	5,272,005
장애인 구직자 (비율)	461,924 (8.2)	513,505 (8.6)	495,676 (8.6)	476,853 (7.8)	482,373 (8.3)	460,131 (8.7)	456,803 (8.8)	487,132 (9.2)
성별	남성	54.0	53.0	51.0	51.0	50.0	50.0	49.0
	여성	46.0	47.0	49.0	49.0	50.0	50.0	51.0
연령별	50세 미만	54.0	51.0	50.0	49.0	49.0	48.0	48.0
	50세 이상	46.0	49.0	51.0	51.0	51.0	52.0	53.0

주: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의무자격인구 카테고리 A, B, C 대상
자료: AGEFIPH, 2015~2022,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 (Pôle emploi), Insee

〈표 17-3-9〉 구직 기간

(단위: %)

구분	2017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장애인	전체	장애	전체	장애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	전체
1년 이상	57.0	48.0	59.0	48.0	64.0	50.0	63.0	51.0	59.0	48.0	56.0	45.0	55.0	44.0
2년 이상	35.0	25.0	-	-	-	-	-	-	-	-	-	-	-	-
3년 이상	24.0	16.0	-	-	27.0	18.0	28.0	19.0	28.0	19.0	25.0	18.0	22.0	16.0
평균 구직기간	804일	602일	853일	650일	908일	673일	919일	706일	910일	703일	851일	667일	815일	650일

주: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고용의무자격인구 카테고리 A, B, C 대상
자료: AGEFIPH, 2017~2022,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전체 구직자 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며, 장애인 구직자 수도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감소하다가 2024년에 다시 상승함.
 - 2015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점점 남성 비율이 감소하고 여성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여 2024년에는 남성이 48.0%, 여성이 52.0%를 차지하여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을 추월함.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구직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50세 미만은 감소하고 있음
- 구직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보다 장애인구의 구직 기간이 더 길게 소요되며, 장애인구에서 구직기간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24년 구직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전체인구가 16%, 장애인구는 22%임
 - 2024년 장애인구 실업기간은 평균 815일로 2017년 804일에 비해 11일 증가함. 전체인구에서는 650일로 나타나 장애인구와는 154일 차이가 남

〈표 17-3-10〉 고용의무자격 구직자의 주요 신청 (종사)업종군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9	2020	2022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구	장애인구	전체인구
인적 및 지역사회 서비스	24.0	21.0	24.0	21.0	25.0	24.0	24.0	25.0	21.0
기업 지원	15.0	12.0	15.0	12.0	15.0	16.0	16.0	18.0	13.0
상업, 판매 및 배급	11.0	15.0	11.0	15.0	11.0	11.0	11.0	12.0	14.0
교통 지원	11.0	9.0	11.0	9.0	11.0	-	-	-	-

주: 1) 인적 및 지역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 및 유지 역할
2) 기업 지원: 회계 및 구매 지원
3) 교통 지원: 운전, 배달, 운반
4) 범위: 프랑스 구직센터 등록 인구

자료: AGEFIPH, 2014~2022,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표 17-3-11〉 카테고리별 구직자 수

(단위: 명, %)

구분	2021년(6월)		2022년(6월)	
	인구 수	작년 대비 변화율(%)	인구 수	작년 대비 변화율(%)
A. 완전 실업 상태	360,616	-8.0	330,757	-8.0
B. 월 78시간 이하 시간제 고용	45,408	+9.0	47,272	+4.0
C. 월 78시간 이상 시간제 고용	76,349	+29.0	82,102	+8.0
D. 실습, 직업훈련, 질병 등 인한 실업	27,590	+26.0	31,400	+14.0
E. 고용된 상태	15,100	-1.0	16,604	+10.0

주: 프랑스 구직센터에 등록된 장애인근로자신청인구 대상

자료: AGEFIPH, 2016~2021,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구직자의 신청 업종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와 장애인구 모두 인적 및 지역사회 서비스분야에 대하여 매년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임
 - 인적 및 지역사회 서비스분야에 장애인구에서 25%, 전체인구에서 21.0%임
 - 기업지원분야의 경우 2016년까지 15.0%이던 것이 2019년 16.0%, 2022년 18.0%까지 증가함
- 구직인구를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완전 실업상태가 가장 높아 2022년 330,757명임



4) 재정

(1) 장애인복지 지출

〈표 17-4-1〉 돌봄 지원 유형에 따른 연 지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지원유형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APA 지방정부 지출	5,692	5,839	5,919	6,033	6,137	6,223	6,354
그 중 CNSA 보조금	2,032	2,266	2,325	2,419	2,480	2,454	2,638
CNSA 보조금 비율	35.7%	38.8%	39.3%	40.1%	40.4%	39.4%	41.5%
APA 지출 연간 변화율	2.9%	2.6%	1.4%	1.9%	1.7%	1.4%	2.1%
PCH 지방정부 지출	1,810	1,901	2,006	2,118	2,221	2,369	2,651
그 중 CNSA 보조금	565	590	605	616	636	637	885
CNSA 보조금 비율	31.2%	31.0%	30.1%	29.1%	28.6%	26.9%	33.4%
PCH 지출 연간 변화율	6.6%	5.0%	5.5%	5.6%	4.9%	6.7%	11.9%

주: CNSA: 프랑스 노인과 장애인의 자율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
 자료: Gouvernement, 2025. 2024 사회보장정책 평가보고서

- APA와 PCH의 지방정부 지출 및 CNSA 재정예산은 점진 증가하는 추세임
 - 2022년 APA 지방정부의 지출은 6,354,000,000유로이고 그 중에 CNSA 보조금은 2,638,000,000유로를 차지함.
 - 2022년 PCH 지방정부의 지출은 2,651,000,000유로이고 그 중에 CNSA 보조금은 885,000,000유로를 차지함
- ※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을 의미하며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제3자보상수당(ACTP)은 2006년 1월부터 장애보상수당(PCH)으로 이름이 바뀌어 내용이 보완되어 대체됨
 - 장애보상수당(PCH)의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른 보조금 액수 변동에 대한 혼란과 불평으로 인해 기존 ACTP 수혜자들에 한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ACTP를 유지하거나 PCH로 변경할 수 있음
 - ACTP나 PCH를 수급 받는 도중 60세가 되면 APA로 서비스 수급이 변경되지만, 수급자가 원할 시 기존에 받고 있던 ACTP나 PCH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 가능함
- ※ 개인자율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 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이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을 받지 않을 시 계속해서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
- ※ 프랑스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국연대기금(CNSA)
 - 2004년 6월 30일 법에 의거하여 2005년 5월에 창설되었으며 주요 미션은 다음과 같음
 - 자립성 상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 및 건강보험 예산 관리 및 지출: 노인 및 장애인 개인 자립 수당, MDPH, 의료사회 기관 및 재가지원서비스 교육 재정
 - 관련 전문가 및 지역장애인센터(MDPH) 기관에 정보 전달 및 회의 주최
 - 노인 및 장애인 활동지원 연구 재정 지원
 - 22억 유로 공공예산 관리: MDPH 지원 및 MDPH 업무 경영에 사용됨
 - 다양한 기관(각종 협회, 사용자 연맹단체 및 행정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재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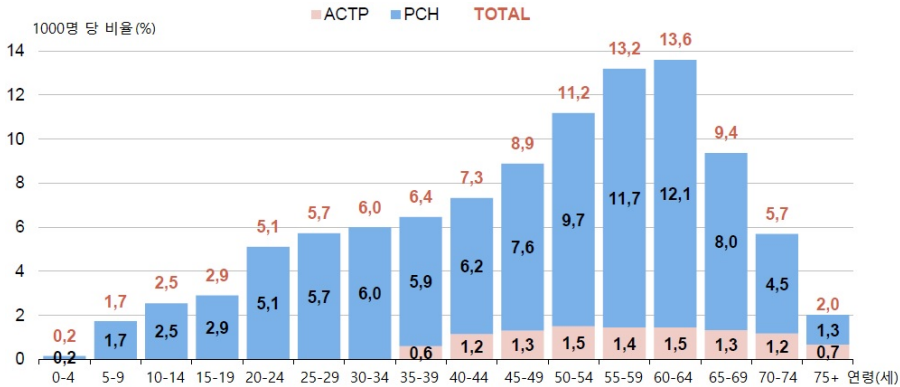
〈표 17-4-2〉 장애보상수당(PCH), 제3자보상수당(CTP) 수급자 수 변화

(단위: 명)

구분	2008	2010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PCH	80,484	154,480	273,370	316,217	332,992	347,121	364,453	382,700
CTP	109,957	91,593	68,574	58,327	55,015	51,868	49,475	46,500

주: 프랑스 전체(Mayotte 제외) 대상
자료: DREES, 2022. 「2021년 사회적 복지수당 지출 보고서」; Gouvernement, 2025. 2024 사회보장정책 평가보고서

〈표 17-4-3〉 2022년 전체인구 연령별 PCH 및 CTP 수급자 분포 비율



주: 프랑스 전체(Mayotte 제외) 대상
자료: DREES, 2024.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수당

- PCH의 경우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며 ACTP는 감소함
 - 2022년 PCH 수급자의 경우 382,700명으로 2008년 80,484명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PCH, ACTP 수급자는 연령별로 다양하지만 특정 패턴을 보임
 - 은퇴연령인 60-64세에서 PCH 수급자율 13.6%를 보이다가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 추세로 75세 이상에서는 1.3%임.
- ※ 프랑스의 제5대보험 '자립'
- 2020년 8월 7일 '사회적 빛과 자립에 대한 법' (LOI organique n° 2020-991 du 7 août 2020 relative à la dette sociale et à l'autonomie)에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자립' 분야를 제 5대 위험으로 공표함. 이로써 CNSA는 자립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기관으로 지정되었음. 현재 사회보장법전의 세부적인 규칙을 개정 중이며 2025년까지 완료 예정임.



〈표 17-4-4〉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

(단위: 유로)

유형 구분	서비스형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21
1	인적도움(월)	857	841	841	837	856	758	796	951
2	기술·전문적 도움(일시)	769	773	791	835	875	835	884	982
3	집안개조(일시)	3125	2,921	2,999	3,007	3,083	2,861	2,894	3,458
	자동차 개조(일시)	2532	2,679	2,758	2,481	2,612	2,541	2,569	2,582
	교통수단 보조수당(월)	142	130	136	133	146	135	154	153
	교통수단 보조수당(일시적)	-	-	-	3453	3,069	4,069	384	2,582
4	특수·예외수당(일시+월)	294	338	543	587	658	698	726	916
5	안내·보호견(월)	69	47	51	49	52	51	45	49

주: 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2) 월별 수량: 인적도움, 교통수단 보조수당, 안내 및 보호견 등임

3) 일시적 수량: 기술 및 전문적 도움, 집안개조, 자동차 개조, 교통수단 보조수당, 특수 및 예외수당 등임

자료: CNSA, 2013-2022, 「자립에 대한 지원 통계」

원자료: Enquete mensuelle PCH, CNSA

- PCH는 2006년 처음 시행될 당시 폭발적 증가를 보인 후 점차 안정적 증가세를 보였음. ACTP의 경우 기존에 ACTP 수급자가 PCH 수급자로 변경되면서 급작스런 감소세를 보이다가 마찬가지로 안정적 감소세를 보임
 - 2021년 PCH 수급자 수는 364,453명, ACTP 수급자 수는 49,475명임
- 장애보상수당(PCH) 서비스 유형별 개인 평균 금액 현황은 각 유형별로 특정한 경향을 찾을 수 없음
 - 2021년 월 단위로 수당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인적도움의 평균 금액이 951유로로 가장 높음
 - 일시적 수당을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자동차개조가 3,458유로로 가장 높으며 집안개조가 2,582유로로 두 번째로 높음
 - 특수·예외수당의 경우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2021년에는 916유로임
 - 장애보상수당(PCH) 중 안내·보호견 수당 금액이 가장 낮으며, 2021년 49유로임
- 장애보상수당(PCH)은 공식기관을 통한 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일대일 직접 고용에도 지급됨. 즉, 전문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자에 게도 해당됨. 인적도움 지급금액은 지역장애인센터(MDPH)의 다학제팀에 의하여 개인장애보상계획 시 책정됨

5) 복지

(1) 장애인구 빈곤율

〈표 17-5-1〉 1999년~2022년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전체인구의 빈곤율 지표

(단위: %, 유로)

구분	1999	2004	2009	2014	2019	2021	2022
빈곤율	13.4	12.4	13.4	13.7	14.3	14.5	14.4
빈곤선	1,018	1,082	1,164	1,148	1,200	1,218	1,216
빈곤인구 월 중위소득	823	874	928	913	960	972	981
빈곤인구수	7,572	7,211	7,991	8,420	8,921	9,117	9,145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소득 신고 의무 일반 가구 거주 인구(학생 제외)

자료: Insee, 2024, 「살, 소득수준」

원자료: Insee-DGFIP-Cnaf-Cnav-CCMSA, enquête Revenus fiscaux et sociaux 2015-2019, modèle Ines 2020 (ERFS 2019 actualisé)

〈표 17-5-2〉 2021년 인구 특성별 빈곤 정도

(단위: %)

구분	재분배 후 빈곤율(%)	재분배 효과 수준(소수점)	상대적 재분배 효과(%)	재분배 후 빈곤 강도(%)	재분배 효과 수준(소수점)	상대적 재분배 효과(%)
자녀1인 한부모 가정	22.6	-11.6	-34	22.2	-22.2	-50
자녀2인 이상 한부모 가정	38.7	-20.2	-34	21.5	-33.0	-61
자녀 3인 이상 부부	19.3	-12.1	-39	19.2	-17.1	-47
자녀 4인 이상 부부	39.6	-23.8	-38	19.9	-27.3	-58
20세 미만	20.5	-11.6	-36	21.0	-22.6	-52
실업자	35.1	-11.8	-25	27.7	-24.5	-47
18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은퇴인구 제외)	33.2	-13.0	-28	25.1	-33.3	-57
15세 이상 장애 인구1) (노인 포함)	20.4	-9.8	-32	18.6	-23.2	-56
전체 인구	14.5	-6.9	-32	20.2	18.4	-48

주: 1) 15세 이상 장애인구: 최근 6개월 이상 전부터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자

대상: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인구

자료: DREES, 2024, 「사회기초수당조사」

원자료: Insee-DGFIP-CNAF-CNAV-CMSA, enquête Revenus fiscaux et sociaux (ERFS) 2019.

- 2021년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14.5%임.
- 2021년 기준 사회수당 재분배 후 빈곤율은 장애인구가 20.4%로 전체인구 14.5%에 비해 높음



〈표 17-5-3〉 2022년 심각한 제약 유형에 따른 인구의 월 소득수준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16-64세 일반가정 거주인구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Insee, 2023. 삶, 소득수준
원자료: Insee, enquête Statistiques sur les ressources et conditions de vie 2022, traitements DREES.

- 심각한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음
 - 기능제한 유형 중 감각제한의 경우 월 중위소득이 1,630유로로 가장 높으며 기타신체제한의 경우 1,470유로로 제일 낮음.
- 심각한 제약이 나타날수록 소득수준이 낮음.
 - 심각한 제약이 없는 경우 월 중위소득이 2,040유로이며 심각한 제약 1개인 경우 1,590유로, 2개 이상인 경우 1,540유로임.

〈표 17-5-4〉 2022년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박탈 상황에 대한 장애인구와 전체인구 비율

(단위: %)

항목	장애인구	전체인구
물질적 사회적 박탈 상황	39	14
경제적 이유로 다음 사항이 불가능함 :		
예상치 못한 경우 약 1000유로 정도 지출	55	31
낡은 가구 교체	52	26
연간 일주일 휴가 여행	51	23
정기적으로 유료 여가활동	36	15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 소액이라도 자신에게 투자	29	12
새 의류 구입	29	10
격일로 육류(또는 동등한 영양소) 섭취	27	10
집안 온도 유지	25	10
대출금, 임대료, 전기수도 및 가스요금 납부	19	10
손님 식사 초대	18	6
개인 자동차 소유	16	11
신발 두 켤레 이상 소유	11	4
인터넷 접속	6	1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소득 신고 의무 일반 가구 거주 인구(학생 제외)
 자료: Drees, 2024. 통계로 보는 장애; Insee, 2023. 삶, 소득수준
 원자료: Insee, enquête Statistiques sur les ressources et conditions de vie 2022, traitements DREES.

- 물질적 사회적 박탈 상황에 전체인구에서 14%인데 비해서 장애인구는 39%를 차지하여 현저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1000유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 전체인구에서 31%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구에서는 55%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 지출이 필요한 여행 및 여가활동의 경우 장애인구에서 각각 51%, 36%로 전체인구 각각 23%, 15%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음
 - 신발 두 켤레 이상을 소유한 경우 및 인터넷 사용의 경우 각각 11%, 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2) 성인장애수당(AAH)

〈표 17-5-5〉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특성 및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장애율 50~79%	장애율 80% 이상	수급자 전체	전체 인구	장애율 50~79%	장애율 80% 이상	수급자 전체	전체 인구
합계	615,400	636,300	1,252,300	49,892,400	646,600	647,700	1,294,700	50,367,500
성별	남	51	53	52	47	51	53	52
	여	49	47	48	53	49	47	48
연령	20~29	15	11	13	15	16	11	13
	30~39	18	15	17	16	18	15	16
	40~49	24	21	22	17	24	20	22
	50~59	34	31	33	17	35	30	33
	60세이상	8	22	15	35	7	24	16
가족상황	미혼/자녀없음	68	77	73	24	68	78	73
	편부모	8	3	6	8	8	3	6
	무자녀부부	12	13	13	32	12	13	13
	유자녀부부	11	6	9	36	11	6	9
수당수급	완전수당	60	60	60	-	61	60	60
	부분수당	40	40	40	-	39	40	40
AAH 보충수당	MVA	해당없음	26	13	-	해당없음	26	13
	CPR	해당없음	8	4	-	해당없음	8	4
구직자등록	18	5	12	-	17	5	11	-

주: 1)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2) 장애인정률 80% 이상인 경우 중증에 해당함

자료: DREES, 202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수당」

원자료: CNAF et MSA pour les effectifs, CNAF pour les réparations (97% des allocataires de l'AAH relèvent des CAF); INSEE, enquête Emploi 2017, 2018 pour les caractéristiques de l'ensemble de la population, DREES, ENIACRAMS, pour le taux d'inscription à Pôle emploi.

- 2022년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총 1,294,700명으로 2021년 1,252,300명에 비해 증가함
 - AAH수급자인구에서 남녀 성비는 각각 47.0%, 53.0%로 비교적 비슷하나 여성 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별로는 50대가 33.0%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50세 이상은 48.0%를 차지함
- 장애율이 50~79%인 인구보다, 80% 이상인 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2022년에는 장애율 50~79% 인구 수가 증가하여 비슷해짐.

※※ 성인장애수당(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 장애인의 최저 소득을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 함
 -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 20세 이상 공식적인 은퇴 연령까지(60~62세), 소득기준(아래 표 참고), 장애 정도가 최소 80%의 불능상태 혹은 50~79%의 불능상태로 장애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제한이 있는 자

(성인장애보조금(AAH) 수혜대상 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가족 상황	부양 의무 자녀 없음	부양 의무 자녀 있음
1인	€1,033.32	€1,033.32 + 6,199.92(자녀 한 명 당)

〈표 17-5-6〉 고용의무자격 구직자 중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3월)		2016(12월)		2022년 (6월)		2023년 (6월)		2024년 (3월)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고용 의무자격자 구직자 수	고용의무 자격구직자 중 비율
AAH 수혜자	94,526	22.0	111,321	23.0	126,345	27.0	120,724	26.0	128,908	26.0
AAH만 수혜	27,115	6.0	33,924	7.0	-	-	-	-	-	-
AAH 외 다른 보조금 동시 수혜	67,411	16.0	77,397	16.0	-	-	-	-	-	-

주: 범위: 프랑스 구직센터 등록 인구
자료: 프랑스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각 년도), 「장애인 고용과 실업 통계」
원자료: 프랑스 구직센터(Pôle emploi)

- 2014~2024년 3월 사이 고용의무자격인정을 받은 인구 중 성인장애수당(AAH)을 수급하는 총 인구는 2014년 3월 94,526명에서 2022년까지 126,345명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120,724명으로 살짝 감소추세를 보임. 그러나 2024년 다시 128,90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임.
-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용의무자격을 받아 구직신청 중인 인구 가운데 26.0%가 성인장애수당(AAH)을 수급 중인 것으로 2014년에 비해 4%p 증가하였고 2023년에 비해서는 변화없음.



6) 정신건강

(1) 정신건강관련

〈표 17-6-1〉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

(단위: 개, 일)

구분	2019				2020				
	국립 시설	사립시설		합계	국립 시설	사립 시설		합계	
		비영리	영리			비영리	영리		
전일제 돌봄, 치료	입원치료시설 (일수)	31,652 (10,100,647)	6,523 (2,021,676)	14,153 (4,962,059)	52,328 (17,084,382)	30,870 (9,569,505)	6,461 (1,882,136)	14,124 (4,635,447)	51,455 (16,087,088)
	홈스테이 치료시설 (일수)	2,309 (562,602)	183 (41,607)	-	2,492 (604,209)	2,219 (541,055)	169 (38,326)	-	2,388 (579,381)
	사회복지 재적응치료시설 (일수)	581 (144,703)	658 (159,331)	307 (106,884)	1,546 (410,918)	581 (156,030)	658 (162,577)	450 (147,483)	1,689 (466,090)
	거주시설 (일수)	831 (195,689)	221 (53,184)	-	1,052 (248,873)	813 (186,048)	215 (52,313)	-	1,028 (238,361)
	재가입원시설 (일수)	327 (65,328)	42 (10,217)	15 (5,536)	384 (81,081)	339 (7,135)	42 (7,422)	15 (5,049)	396 (84,006)
	긴급시설센터 (일수)	428 (117,271)	34 (8,498)	40 (21,018)	502 (146,787)	496 (113,903)	34 (7,503)	40 (12,031)	570 (133,437)
	시간제 돌봄, 치료	주간병원 (일수)	13,598 (2,224,987)	3,467 (589,379)	1,852 (603,292)	18,917 (3,417,658)	13,470 (1,259,821)	3,428 (355,399)	1,926 (507,041)
야간병원 (일수)		631 (52,260)	193 (41,005)	181 (24,451)	1,005 (118,716)	588 (34,671)	188 (37,500)	176 (16,333)	952 (88,504)
시간제 치료센터 (CATTP)		181	14	1	196	173	13	2	188
치료훈련시설 (일수)		(124,312)	(26,151)	(344)	(150,807)	(82,112)	(22,078)	(2,225)	(106,415)
통원 치료	정신질환 진찰치료센터 수 (일수)	1,511 (7,899,896)	214 (983,983)	-	1,725 (8,883,879)	1,517 (8,219,129)	208 (1,020,151)	-	1,725 (9,239,280)

주: 1) 소아·아동 대상 제외한 성인만(16세 이상) 일반 정신질환시설 자료임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각 년도)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원자료: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2019, 2020,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프랑스 정신질환관련시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시간제 돌봄·치료시설과 통원치료센터로 나뉨

-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 입원치료시설: 다루기 힘든 심각한 증상으로 격리되어 계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돌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용
- 홈스테이치료시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가정에서 맡겨져 돌봄을 받는 경우로 중·장기적으로 다른 돌봄치료와 함께 이용 가능
- 사회복지 재적응치료시설: 심각한 증상으로서의 입원치료 후 자치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재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 치료 연장의 경우 이용
- 거주시설: 병원을 벗어난 주거돌봄치료시설. 제한된 기간 내, 계속적으로 돌봄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 사회적 재진입을 목적으로 함
- 재가입원시설(HAD): 환자의 가정과 공동거주시설도 포함. 제한된 기간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재진단, 기간갱신 가능. 재가치료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 등)들의 협력하에 방문치료가 이루어짐
- 긴급시설센터: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각한 증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내내 운영. 단기간 강화된 돌봄 제공

- 시간제 돌봄·치료시설

- 주간병원: 주간 특정한 시간에 개인별로 강화되어 복합적인 돌봄치료 제공
- 야간병원: 야간 돌봄치료. 주간 동안 어느 정도의 자치능력이 있지만 밤과 주말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 시간제 치료센터 주간병원 수준의 강화된 돌봄이 아닌, 사회적 재적응과 자치적인 삶을 재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약화된 돌봄제공
- 치료재활시설: 사회 혹은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을 목적. 수공품, 예술품, 스포츠활동 등을 통한 작업요법 사용.

〈표 17-6-1〉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계속)

(단위: 개, 일)

구분		2021				2022			
		국립 시설	사립 시설		합계	국립 시설	사립 시설		합계
			비영리	영리			비영리	영리	
전일제 돌봄, 치료	입원치료시설 (일수)	30,273 (9,233,207)	6,257 (1,827,966)	14,277 (4,739,871)	50,807 (15,801,044)	29,199 (8,997,392)	6,153 (1,737,087)	14,498 (4,827,119)	49,850 (15,561,119)
	홈스테이 치료시설 (일수)	2,135 (495,497)	168 (37,462)	-	2,303 (532,959)	2,061 (459,611)	154 (34,146)	-	2,215 (493,757)
	사회복지 재적응치료시설 (일수)	584 (141,689)	605 (157,920)	488 (147,258)	1,677 (446,867)	542 (126,307)	541 (146,086)	454 (121,036)	1,537 (393,429)
	거주시설 (일수)	784 (187,830)	201 (47,705)	-	985 (235,535)	773 (167,248)	202 (44,362)	-	975 (211,610)
	재가지원시설 (일수)	214 (52,123)	46 (6,109)	15 (4,008)	275 (62,240)	206 (51,111)	48 (5,106)	15 (2,993)	269 (59,210)
	긴급시설센터 (일수)	471 (115,922)	35 (8,284)	99 (34,570)	605 (158,776)	452 (110,276)	35 (8,184)	134 (60,294)	621 (178,754)
시간제 돌봄, 치료	주간병원 (일수)	13,429 (1,466,697)	3,409 (436,591)	2,098 (564,408)	18,936 (2,467,696)	13,362 (1,509,546)	3,449 (475,618)	2,298 (673,854)	19,109 (2,659,018)
	야간병원 (일수)	551 (31,058)	186 (38,134)	191 (25,334)	928 (94,526)	512 (28,169)	164 (26,588)	174 (25,835)	850 (80,592)
	시간제 치료센터 (CATTP) 치료훈련시설 (일수)	175 (87,446)	14 (31,274)	2 (1,824)	191 (120,544)	169 (96,134)	17 (42,193)	5 (1,955)	191 (140,282)
통원 치료	정신질환 진찰치료센터 (일수)	1,462 (8,101,749)	210 (1,040,858)	-	1,672 (9,142,607)	1,473 (6,937,998)	212 (921,014)	-	1,685 (7,859,012)

주: 1) 소아·아동 대상 제외된 성인(만16세 이상) 일반 정신질환시설 자료임

2) 범위: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DOM 대상,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

자료: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각 년도),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원자료: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2021, 2022,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정신질환관련시설 수용 병상 수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임.
- 2019년도 입원치료시설은 52,328일에서 점점 감소하여 2022년 49,850일에 달함.
- 긴급시설의 경우 2019년 502개소에서 2022년 621개소로 증가함.
- 시간제 돌봄치료시설에서 주간병원 일수는 2021년 18,936일에서 2022년 19,109일로 증가함
- 2021년에 비교해서 국립시설은 전체적으로 2022년에 감소함.



〈표 17-6-2〉 정신질환시설 치료환자 현황

(단위: 명, %, 일, 회)

구분	2021년			2022년			
	정신질환 아동 및 청소년 (≤만16세)	정신질환 성인 (≥만16세)	총	정신질환 아동 및 청소년 (≤만16세)	정신질환 성인 (≥만16세)	총	
입원 치료	환자 수(명)	397,866	45,966	353,309	402,442	47,151	356,831
	비율(%)	50.0	60.0	49.0	49.0	56.5	47.9
	입원일 수	21,069,437	1,588,152	19,481,285	20,857,794	1,484,915	19,372,880
	부분적 입원일 비율(%)	17.0	60.0	13.0	17.7	58.4	14.6
	평균 입원 기간	56.2	35.7	57.3	55.1	33.2	56.4
통원 치료	환자 수(명)	2,117,089	467,607	1,661,989	2,139,067	467,265	1,685,754
	비율(%)	50.0	58.0	47.0	49.3	57.3	46.9
	통원치료 횟수	22,605,633	5,783,645	16,821,988	22,215,048	5,706,217	16,508,831
	정신의학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	63.0	72.0	60.0	63.9	71.6	61.5
	평균 통원치료 일 수	10.7	12.4	10.1	10.4	12.2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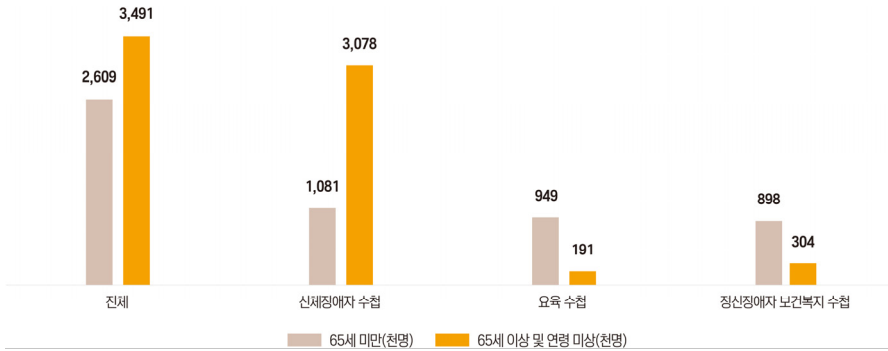
주: 프랑스 메트로폴리탄, Mayotte를 제외한 DROM 대상
 자료: DREES, 2024. 「2022년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원자료: 프랑스 건강관련시설 연간통계(SAE), 2021, 2022.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2021년도에 비해 2022년 입원치료 환자수와 통원치료 환자수, 입원일수와 통원치료횟수 모두 증가함
- 2022년 정신질환시설의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 환자 수가 높음
 - 1,685,754명의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356,831명이 정신질환시설에서 입원하여 치료 받음
 - 그러나 환자 수에 비하여 입원치료일수가 19,372,880일, 통원치료횟수가 16,508,831일로 2021년에 각각 19,481,285일, 16,821,988일로 감소하였음.
 - 1인당 평균 입원 기간 일수에서도 2022년에 56.4일, 통원치료일수에서 9.8일로 2021년 각각 57.3일, 10.1일에 비하면 감소하였음

5.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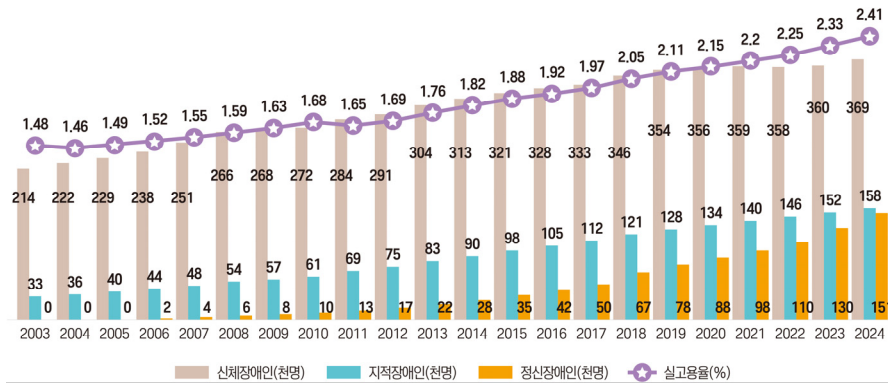
[그림 3-5-1]

일본: 장애수첩 소지자 수 (2021년)



[그림 3-5-2]

일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상황 - 장애별,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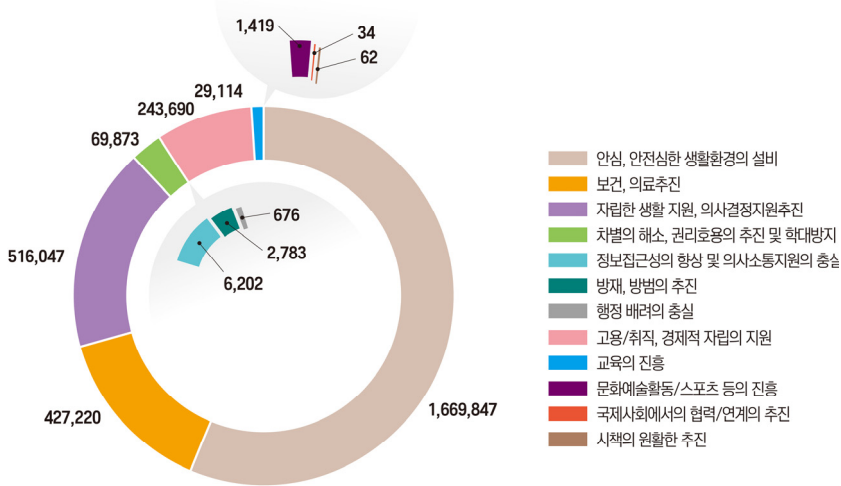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장애수첩 소지자 수는 65세 미만의 경우 2,609천명, 65세 이상 및 연령 미상은 3,491천명임
- 연령별 및 장애수첩 종류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및 연령 미상은 신체장애자 수첩을 소지한 자가 3,078천명으로 약 88%를 차지함. 반면, 65세 미만의 신체장애자 수첩 소지자 수는 1,081천명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요육 수첩과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소지자 수는 65세 이상 및 연령 미상 보다 많음
- 2023년 기준 민간기업(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 고용 된 장애인의 수는 677,461.5이며, 실고용률은 2.41%임
- 실고용률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 장애유형별로 고용된 장애인 수는 신체장애인 369천명, 지적장애인 158천명, 정신장애인 151천명임



[그림 3-5-3]

일본: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개요 (2025년)



- 2025년 기준 일본 장애인 시책 관련 예산 총 금액은 2,966,967백만 엔으로 안심, 안전한 생활환경의 설비 예산이 1,669,847백만 엔으로 전체 예산 중 56.3%를 차지하고, 자립한 생활 지원, 의사결정 지원 추진 예산(516,047백만 엔) 17.4%, 보건 의료 추진 예산(427,220백만 엔) 14.4% 순임

1) 장애인구

〈표 18-1-1〉 장애자수첩 소지자 수 - 성별, 장애유형별

(단위: 천 명)

구분	성	전체	장애자수첩 소지자	장애자수첩 종류 (복수회답가능)			수첩비소지 및 자립지원 등을 받는 자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65세 미만	전체	3,357	2,609	1,081	949	898	748
	남성	1,890	1,508	618	611	468	383
	여성	1,461	1,097	463	337	427	364
	미상	5	4	1	1	4	2
65세 이상 및 연령 미상	전체	5,411	3,491	3,078	191	304	1920
	남성	2,406	1,708	1,530	101	140	698
	여성	2,869	1,681	1,473	73	145	1188
	미상	136	103	75	16	19	33

자료: 후생노동성(2022).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2〉 일본 장애인 수 - 장애유형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전체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신체장애인	18세 미만	7.2	9.6	0.4
	18세 이상	419.4	394.7	7.0
	연령미상	9.3	11.6	-
	전체	436	415.9	7.3
지적장애인	18세 미만	22.5	74.6	1.1
	18세 이상	85.1	33.4	12.2
	연령미상	1.8	6.0	-
	전체	109.4	114.0	13.2
		전체	외래환자	입원환자
정신장애인	20세 미만	59.9	59.5	0.4
	20세 이상	554.6	526.3	28.4
	연령미상	0.3	0.3	0
	전체	614.8	586.1	28.8

주: 1) 정신장애인은 지적장애를 제외한 수에 뇌전증과 알츠하이머환자의 수를 더한 환자 수임

2) 신체장애인 수에는 고령자 시설 입소자는 포함하지 않음

3) 반올림이 된 관계로 각 항목의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이하 동일)

자료: 「신체/지적장애인」

- 재가장애인 : 후생노동성(2022).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 시설장애인 : 후생노동성(2018).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정신장애인」

- 외래환자 : 후생노동성(2020). 「환자조사」

- 입원환자 : 후생노동성(2020). 「환자조사」.



〈표 18-1-3〉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87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전체	1,408	1,977	2,506	2,803	3,015	3,327	3,576	3,864	4,287	4,159
0~17세	94	-	93	81	82	82	93	73	68	96
18세~64세	872	1,150	1,346	1,333	1,246	1,218	1,237	1,111	1,013	985
65세~	442	826	1,068	1,330	1,587	2,004	2,211	2,655	3,112	2,962
미상	-	-	-	58	99	22	35	25	93	116

주: 1980년에는 신체장애인 (0~17세)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자료: 1) 후생노동성(2006).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2022)「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4〉 일본 신체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천 명)

구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전체	2,803	3,015	3,327	3,576	3,864	4,287	4,159
시각장애	357	311	306	315	316	312	273
청각/언어장애	369	366	361	360	324	341	379
지체부자유	1,602	1,698	1,797	1,810	1,709	1,931	1,581
내부장애	476	639	863	1,091	930	1,241	1,365
미상	-	-	-	-	585	462	562

자료: 1) 후생노동성(2006).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2022)「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5〉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1년	2016년	2021년
전체	297	329	419	622	962	1,140
0~17세	86	94	117	152	214	282
18세~64세	188	212	274	408	580	669
65세~	8	14	12	58	149	166
미상	16	14	12	4	18	24

자료: 1) 후생노동성(2005). 「신체장애(아)자 실태조사」

2) 후생노동성(2011,2016,2022)「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6〉 일본 지적장애인 (재택환자) 수 - 장애정도별

(단위: 천 명)

구분	전체	중 증	그 외	미 상
2021년	1,140	420	587	134
2016년	962	373	555	34
2011년	622	242	303	77
2005년	419	165	204	50
2001년	329	138	151	40
1996년	297	128	159	10
1991년	284	124	146	14

주: 재가장애인에 한함

자료: 후생노동성(2016,2022). 「생활하기 어려움에 관한 실태조사」

〈표 18-1-7〉 일본 정신장애인 (외래환자) 수 - 연도별, 연령별

(단위: 만 명)

구분	1992년	1995년	199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전체	223.9	267.5	290.0	287.8	361.1	389.1	586.1	244.6
0-24세	22.8	27.2	27.7	27.9	36.3	38.5	79.0	37.0
25세-34세	34.9	39.5	35.8	33.7	36.2	36.2	54.2	24.2
35-44세	34.2	46.2	50.0	50.4	58.5	58.2	78.3	33.3
45-54세	36.8	37.7	41.6	40.2	52.4	63.9	98.0	47.0
55-64세	33.8	39.7	43.3	37.8	45.5	47.7	71.4	36.7
65-74세	32.0	36.0	39.9	33.3	47.8	51.4	69.4	28.3
75세-	28.9	40.6	51.4	64.2	84.9	93.3	136.2	37.9
미상	0.5	0.5	0.6	1.0	1.0	0.7	0.3	0.1

주: 2014년도의 조사에서는 미야기(宮城)현의 일부와 후쿠시마(福島)현을 제외함
자료: 후생노동성(2024), 「환자조사」

〈표 18-1-8〉 일본 정신장애인 수 - 성별, 연령별

(단위: 천 명)

구분	20세 미만	20세 이상
남성	379(62.2%)	1,775(41.3%)
여성	228(37.4%)	2,521(58.7%)
소계	609(100%)	4,293(100%)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남성	1,703(47.5%)	449(34.2%)
여성	1,882(52.5%)	864(65.8%)
소계	3,586(100%)	1,313(100%)

주: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후생노동성(2024), 「환자조사」

- 2021년 기준, 재택 신체장애인 415만 9천명의 연령계층별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9만 6천명,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98만 5천명, 65세 이상 296만 2천명으로 조사됨
- 일본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고령화율)은 조사 시점인 2021년 기준 28.9%에 달함(총무성, 「인구추계」, 2021년 12월 기준 확정치)
- 재택 신체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 재택 신체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1970년에는 약 31.4% 정도였던 것이 2021년에는 약 71.2% 정도까지 상승함
- 2021년 기준, 재택 지적장애인 114만 명의 연령별 내역을 보면 18세 미만이 28만 2천명,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66만 9천명, 65세 이상이 16만 6천명임. 18세 미만의 비율이 신체장애인에 비해 높은 반면, 65세 이상의 비율은 낮은 점에 특징이 있음
- 재택 지적장애에 인구는 2016년과 비교하여 약 18만 명 증가함. 지적장애는 보통 발달기에 나타나며, 이후에 새롭게 지적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신체장애인의 경우에서처럼 고령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 과거에 비해 지적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요육수첩(지적장애아의 치료교육에 관한 기록장) 보유자의 증가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됨
- 2023년 기준 연령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성비를 보면 20세 미만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62.2%로 여성 37.4%에 비해 높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65.8%로 남성34.2%에 비해 더 높음
- 2021년 기준, 신체장애자 수(장애인 수첩 소지자 수)를 성별로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 61만 8천명 대비 여성이 46만 3천명, 65세 이상에서는 남성 153만명 대비 여성이 147만 3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음
- 지적장애자 수(요육수첩 소지자 수)를 성별로 보면 65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61만 1천명 대비 여성이 33만 7천명, 65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10만 1천명 대비 여성이 7만 3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음
- 정신장애인의 남녀별 수에 대해 2022년에는 20세 미만에서는 남성 38만 3천명 대비 여성 21만 7천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더 많은 반면, 20세 이상에서는 남성 225만 9천명 대비 여성 328만 6천명으로 여성의 비중이 더 많음



2) 교육

〈표 18-2-1〉 특별지원교육관련 연도별 예산 개요

(단위: 백만 엔)

항목	연도별 예산금액				
	2019	2020	2021	2022	2023
특별교육지원의 충실 등	2,487	2,454	3,546	3,467	4,114
특별지원교육 취학장려비 부담 등	12,164	12,397	12,413	13,649	13,516
특별지원교육설비정비비 등 보조	3	4	6	6	7
의무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111,624	113,071	113,229	-	-
공립학교 시설설비	-	-	-	-	-
사립고등학교 경상비 조성비 등 보조	7,776	7,820	8,000	8,428	8,735
독립행정법인,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 운영비 등	1,083	1,103	1,101	1,084	1,058
합계	135,138	136,848	138,295	26,634	27,430

주: 특별지원교육관계예산으로 특정화할 수 없는 것은 「-」로 표시함
 자료: 문부과학성(2023).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2〉 특별지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생 전체	1,686,293	6,151,398	3,254,373	2,999,958	14,092,022
특별지원학교	1,189 (0.07%)	51,118 (0.83%)	33,410 (1.03%)	65,645 (2.19%)	151,362 (1.07%)
특별지원학급	-	265,746 (4.32%)	107,049 (3.29%)	-	372,795 (2.65%)
합계	1,189 (0.07%)	316,864 (5.15%)	140,459 (4.32%)	65,645 (2.19%)	524,157 (3.72%)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학생 전체	1,745,909	6,246,268	3,277,892	3,037,863	14,307,932
통급지도를 받는 학생	-	164,735	31,553	2,055	198,343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 전체 학생 14,092,022명 중, 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151,362명(전체의 1.07%), 특별지원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은 372,795명(전체의 2.65%),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198,343명(전체의 1.39%)임

※※ 일본의 특별지원교육

- 장애를 가진 아동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학습 욕구와 장애 상태를 반영하여, 특별지원학교 및 초·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의 특별 교육과정, 소규모 학급, 특별히 배려된 교과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직원, 장애를 고려한 시설 및 설비 등을 활용하여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각장애인: 양쪽 눈의 시력이 대략 0.3미만 또는 시력 이외의 시각기능장애가 발생한 사람들 중, 돋보기 등을 사용해도 일반 문자, 도형 등의 시각적 인지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
 - 청각장애인: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이 대략 60데시벨 이상인 사람들 중 보청기 등을 사용해도 정상적인 말소리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것
 - 지적장애인
 - 지적 발달의 지체가 있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자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애
 - 지적 발달의 지체 정도가 위의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 중, 사회생활에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
 - 지체부자유자
 - 보장구를 사용해도 도보, 필기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의 부자유
 - 지체부자유 상태가 위의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중 상시 의학적 관찰지도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부자유
 - 병약자
 - 만성 호흡기 질환, 신장질환 및 신경질환, 악성 신생물, 기타 질환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질병 보유자
 - 신체 허약 상태가 계속해서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수준

〈표 18-2-3〉 특별지원학교의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합계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교실 수	학생 수
지적장애	22,609	113,573	10,194	48,671	403	1,792	33,206	164,036
지체부자유	2,256	3,232	852	1,133	38	54	3,146	4,419
병약·신체하약	1,944	2,848	867	1,312	30	40	2,841	4,200
약시	374	425	151	158	7	9	532	592
난청	911	1,270	430	552	13	15	1,354	1,837
언어장애	514	1,007	128	186	7	16	649	1,209
자폐증·정서장애	26,035	140,726	10,768	53,754	433	2,022	37,236	196,502
총 합계	54,643	263,081	23,390	105,766	931	3,948	78,964	372,795
담임 교원 수(명)	58,050		25,613		1,001		84,664	
설치학교 수(개)	16,402		7,974		181		24,557	

주: 국립, 공립,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한 결과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4〉 특별지원학교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장애 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1991년	960	70	107	193	193	97
1996년	975	71	107	511	191	95
2001년	996	71	107	525	198	95
2006년	1,006	71	104	543	197	91
2011년	1,049	86	118	673	314	138
2012년	1,059	87	120	681	324	139
2013년	1,080	85	120	706	334	143
2014년	1,096	85	118	725	340	145
2015년	1,114	83	118	745	345	145
2016년	1,125	84	120	761	349	149
2017년	1,135	82	116	776	350	149
2018년	1,141	81	117	781	350	152
2019년	1,146	82	118	786	352	151
2020년	1,149	86	119	790	352	158
2021년	1,160	84	119	801	354	154
2022년	1,171	82	118	814	357	153
2023년	1,178	82	120	823	351	156

주: 2006년까지는 학교별로 집계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복수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각각의 장애유형별로 중복해서 집계 함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 2023년 기준 초·중학교 중 특별지원학교가 설치되어있는 학교는 총 24,557개이고, 교실의 수는 총 78,964개소임.
또한 담임교원의 수는 84,664명, 학생 수는 총 372,795명임
- 특별지원학교는 1991년에 960개였지만, 2023년에는 1,178개로 해마다 증가해 왔음.
특히,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1991년에는 193곳이었으나, 2022년에는 823개소로 가장 크게 증가함



〈표 18-2-5〉 특별지원학교 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국립	공립	사립	전체
전임교원수	1,513	86,042	314	87,869
겸임교원수	230	6,590	82	6,902
전임직원수	174	13,683	109	13,966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6〉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 - 연도별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998년	1,685	1,000	473	3,158
2003년	1,447	803	1,038	3,288
2008년	1,399	768	957	3,124
2013년	1,443	832	940	3,215
2017년	1,240	782	806	2,828
2018년	1,242	769	869	2,880
2019년	1,247	754	822	2,823
2020년	1,187	719	784	2,690
2021년	1,217	729	794	2,740
2022년	1,224	714	764	2,702
2023년	1,153	684	622	2,459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 특별지원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전임교원 수는 87,869명, 겸임교원 수는 6,902명, 전임직원 수는 13,966명임
-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더욱 요구되고는 가운데, 특별지원교사의 전문 면허증 보유 비율 향상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특별지원학교 교사면허증 등의 보유 비율을 높이기 교사의 채용, 교육, 배치시 면허증의 보유 여부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특별지원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도도부현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노력중임
- 방문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방문교육 : 심신의 장애가 중증이거나 중복(복수의 중증장애)되어 특별지원학교 등에 다니며 교육을 받기 곤란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학생들이 거주하는 가정·병원·시설 등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함. 1969년 치바, 카나가와 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974년 전 도도부현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이 방문지도원의 경비를 보조하기 시작함

〈표 18-2-7〉 통급(通級) 지도를 받는 학생 수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장애 유형									합계
	언어장애	자폐증	정서장애	약시	난청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다동성 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신체하약	
초등학교	47,693	33,004	19,155	206	1,701	28,141	34,678	118	39	164,735
중학교	915	8,198	5,394	46	422	8,659	7,828	46	45	31,553
고등학교	20	879	322	3	18	247	544	6	16	2,055
합계	48,628	42,081	24,871	255	2,141	37,047	43,050	170	100	198,343

주: 1) 자교통급(自校通級)·타교통급(他校通級)·순회교육(巡回指導)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은 해당하는 모든 방법을 합산함
2) 위 표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 전 사전과정의 합계를 나타냄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8〉 통급(通級) 지도를 받는 학생 수의 추이

(단위: 명)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언어장애	27,718	29,860	33,606	38,754	39,691	43,630	47,175	48,628
자폐증	-	7,047	12,308	24,175	25,635	32,347	36,760	42,081
정서장애	4,184	3,589	8,613	16,072	19,155	21,837	24,554	24,871
약시	162	153	179	214	222	237	239	255
난청	1,581	1,915	2,044	2,122	2,207	1,956	2,099	2,141
학습장애	-	3,682	10,769	20,293	22,389	30,612	34,135	7,047
주의력결핍, 다동성장애	-	3,406	10,324	21,300	24,709	33,827	38,656	43,050
지체부자유	1	14	26	134	124	159	159	170
병약/신체하약	6	19	13	31	53	92	102	100
합계	33,652	49,685	77,882	123,095	134,185	164,697	183,879	198,433

주: 1) 2006년부터 “주의력결핍다동성장애” 또는 “학습장애”, 그리고 “자폐증”이 통급지도 대상으로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새롭게 규정
(2006년도 이전에는 주로 “정서장애”의 통급지도교실로서 대응)
2) 본교통급, 타교통급, 순회지도 중 복수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 학생은 해당되는 모든 방법에 중복 합산함
3)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 전 사전교육과정 포함
자료: 1)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2) 초중등교육국특별지원교육과(2020) 「통급에 의한 지도실시 상황 조사결과에 대해서」

- 2003년에는 초·중·고를 모두 합쳐서 33,652명이던 통급 지도를 받는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 기준 198,433명임

※※ 통급(通級)

- 초·중학교 일반학급에 재적중인 학생 중, 언어 장애, 자폐증, 정서장애, 약시, 난청, 학습장애(L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각 교과 등의 지도는 일반 학급에서 실시하고, 장애에 따른 학습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개선·극복하기 위한 특별지도는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형태
- 장애아동에게는 특별지원학교 및 초·중학교의 특별지원학급, 통급에 의한 지도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중 통급에 의한 지도내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초·중학교 등과 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특별 지원 교육의 추진에 관한 조사 연구 협력자 회의에서 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의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 2016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된 후, 2018년부터 시행됨
- 또한 2018년 3월에 고등학교 표준 시행령을 개정해 공립 고등학교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를 위한 가배(加配) 정수조치(학생 수에 따른 교원의 수 배정제도)를 가능하게 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은 학습지도요령 등에 따라 개별 지도 계획 또는 개별 교육 지원 계획을 작성하는 등, 개별 아동 학생의 장애 상태에 맞춘 지도 내용 및 방법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함
- 자교통급(自校通級):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통급 지도 교실이 설치되어 있어, 그 교실에서 지도를 받는 형태
타교통급(他校通級):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통급 지도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다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통급 지도 교실에 방문하여 지도를 받는 형태
순회교육(巡回指導): 통급 지도 담당 교원이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학교를 순회하여) 지도를 실시하는 형태



〈표 18-2-9〉 특별지원학교 중등부 졸업 후의 상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교육훈련기관등	취직	사회복지 시설 입소/통소	기타
시각장애	130	129 99.2	- -	- -	1 0.8	- -
청각장애	347	243 98.6	2 0.6	1 0.3	- -	2 0.6
지적장애	8,215	8,097 98.6	16 0.2	2 0.02	30 0.4	70 0.9
지체부자유	1,522	1,494 98.2	- -	- -	18 1.2	10 0.7
병약/신체허약	276	264 95.7	1 0.4	1 0.4	2 0.7	8 2.9
합계	10,490	10,326 98.4	19 0.2	4 0.04	51 0.5	90 0.9

주: 1) 표는 2023년 3월 졸업자의 통계결과임
2) 국립, 공립,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한 결과
3)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경쟁시설, 실업자 구직시설, 의료기관 등을 포함함
4) 중학교 특별지원학교 졸업자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통소자들을 포함함
5)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각 구분의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10〉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교육훈련기관등	취직	사회복지 시설 입소/통소	기타
시각장애	242	74 30.6	5 2.1	29 12.0	111 45.9	22 9.1
청각장애	410	147 36.3	43 10.5	135 32.9	64 15.6	19 4.6
지적장애	18,471	80 0.4	257 1.4	5,858 31/7	11,466 62.1	787 4.3
지체부자유	1,559	34 2.2	20 1.3	71 4.6	1,327 85.1	107 6.9
병약/신체허약	341	23 6.7	27 7.9	46 13.5	214 62.8	29 8.5
합계	21,023	360 1.7	352 1.7	6,139 29.2	13,182 62.7	964 4.6

주: 1) 표는 2023년 3월 졸업자의 통계결과임
2) 국립, 공립,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한 결과
3)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경쟁시설, 실업자 구직시설, 의료기관 등을 포함함
4) 중학교 특별지원학교 졸업자 이외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통소자들을 포함함
5)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각 구분의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음에 유의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표 18-2-11〉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 후의 상황 - 졸업자의 취직 직업별

(단위: 명)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부자유			병약/신체하약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전문직/기술직	9	2	11	-	-	-	11	18	19	1	-	1	-	-	-	21	10	31
사무	3	2	5	8	16	24	253	107	360	18	14	32	-	1	1	282	140	422
판매	2	1	3	2	-	2	283	181	464	1	2	3	2	-	2	290	184	474
서비스	2	2	4	4	8	12	419	286	705	5	1	6	8	-	8	438	297	735
보안	-	-	-	-	-	-	6	1	7	-	-	-	2	-	2	8	1	9
농업	-	1	1	-	-	-	84	22	106	3	-	3	1	-	1	88	23	111
어업	-	-	-	-	-	-	5	3	8	-	-	-	-	-	-	5	3	8
생산공정	1	-	1	52	23	75	825	216	1,041	7	-	7	6	4	10	891	243	1,134
운송/기계운전	-	-	-	3	-	3	39	6	45	-	-	-	1	-	1	43	6	49
건설	-	-	-	-	-	-	52	-	52	1	-	1	-	-	-	53	-	53
운반/청소	1	1	2	1	2	3	716	188	904	3	1	4	3	1	4	724	193	917
기타	-	1	1	1	3	4	124	50	174	3	-	3	4	-	4	132	54	186
합계	18	10	28	71	52	123	2,817	1,068	3,885	42	18	60	27	6	33	2,975	1,154	4,129

자료: 문부과학성(2025). 「특별지원교육자료」

- 중등부 졸업생의 98.4%는 진학하고, 고등부 졸업생은 62.7%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29.2%가 취업을 하고 있음
- 장애인인 평생 자립하여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과 직업적인 자립이 중요함. 그러나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졸업자 중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는 비율이 약 62.7%에 달하는 반면, 취업자의 비율은 약 29.2%에 불과해 직업 자립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3) 고용

〈표 18-3-1〉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상황

(단위: 명, 개, %)

구분	고용 현황			기업 현황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달성기관 수	기업 수	달성비율
2024년	28,162,399.0	677,461.5	2.41	53,875	117,239	46.0
2023년	27,523,661.0	642,178.0	2.33	54,239	108,202	50.1
2022년	27,281,606.5	613,958.0	2.25	52,007	107,691	48.3
2021년	27,156,780.5	597,786.0	2.20	50,306	106,924	47.0
2020년	26,866,997.0	578,292.0	2.15	49,956	102,698	48.6
2019년	26,585,858.0	560,608.5	2.11	48,898	101,889	48.0

자료 :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2〉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연도별

(단위: 천명, %)

구분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전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2003년	247	214	33	-	1.48
2004년	258	222	36	-	1.46
2005년	269	229	40	-	1.49
2006년	284	238	44	2	1.52
2007년	303	251	48	4	1.55
2008년	326	266	54	6	1.59
2009년	333	268	57	8	1.63
2010년	343	272	61	10	1.68
2011년	366	284	69	13	1.65
2012년	383	291	75	17	1.69
2013년	409	304	83	22	1.76
2014년	431	313	90	28	1.82
2015년	454	321	98	35	1.88
2016년	475	328	105	42	1.92
2017년	495	333	112	50	1.97
2018년	534	346	121	67	2.05
2019년	560	354	128	78	2.11
2020년	578	356	134	88	2.15
2021년	598	359	140	98	2.20
2022년	614	358	146	110	2.25
2023년	642	360	152	130	2.33
2024년	677	369	158	151	2.41

- 주: 1) 민간기업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1년 4월 1일부터 2.3%이며, 고용의무 대상은 45.5명 이상 규모의 기업임 (이전은 2.0%, 50명 이상)
- 2) 장애인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를 말함
- 1993년~2006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중증 신체·지적장애인 단시간근로자
 - 2006년~2010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 2011년~ : 신체·지적장애인(중증장애인 이중계산),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중증 이의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0.5로 계산)
- 3) 각 연도 6월 1일 기준.
-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일본의 장애인 고용 제도

-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전체 직원 중 장애인(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의 비율을 “법정 고용률”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장애인고용촉진법 43조 제 1항)
 - 직원을 45.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해야함
- 45.5명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에 고용 된 장애인의 수는 677,461.50이며, 실고용률은 2.41%로 전년보다 0.08%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장애인은 369천명, 지적장애인은 158천명, 정신장애인은 151천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증가 폭이 컸음
 - 실제 고용률은 사상 최대치 2.41%(전년 2.33%)를 기록하였으며, 법정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46.0%(전년 50.2%)임
 -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고용된 장애인 수는 40~100명 미만의 규모 기업에서 78,280.0명, 100~300인 미만 규모 기업에서 124,638.0명, 300~500인 미만의 기업은 57,178.5명, 500~1000명 미만의 기업은 76,515.5명, 1,000명 이상 기업은 340,850.5명으로 모든 기업 규모의 장애인 고용수가 전년보다 증가함
 - 민간기업 전체 실고용률(2.41%)과 비교해 500~1,000인 미만과 1,00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실고용률이 높게 나타남
 - 모든 규모의 민간기업에서 전체 법정고용률 달성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전체 기업 평균 법정고용률인 46.0%와 비교해 100~300인 규모(49.1%), 1,000인 이상 규모(54.7%)기업의 법정고용률 달성이 높게 나타남



〈표 18-3-3〉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기업규모별

(단위: 명, 개, %)

구분	기업 현황			고용 현황		
	기업 수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률
규모 합계	117,239	53,875	46.0	28,162,399.0	677,461.5	2.41
40~100명 미만	64,840	28,747	44.3	3,994,359.5	78,280.0	1.96
100~300명 미만	36,946	18,138	49.1	5,678,380.5	124,638.0	2.19
300~500명 미만	7,077	2,909	41.1	2,501,456.5	57,178.5	2.29
500~1000명 미만	4,808	2,129	44.3	3,089,940.5	76,515.5	2.48
1000명이상	3,568	1,952	54.7	12,898,262.0	340,850.5	2.64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4〉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산업별

(단위: 명, 개, %)

구분	기업 현황			고용 현황		
	기업 수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률
산업 합계	117,239	53,875	46.0	28,162,399.0	677,461.5	2.41
농·임·어업	488	257	52.7	46,319	1,089.0	2.35
광업, 채석업, 자갈채취업	75	40	53.3	10,645.5	242.0	2.27
건설업	5,579	2,652	47.5	891,418.5	18,970.5	2.13
제조업	27,328	14,183	51.9	7,120,821.5	168,789.0	2.37
전기가스열 공급수도업	284	118	41.5	209,207.5	5,162.5	2.47
정보통신업	7,063	1,893	26.8	1,839,544.5	36,394.0	1.98
운수업, 우편업	8,164	4,294	52.6	1,616,259.0	39,580.0	2.45
도소매업	17,718	6,500	36.7	4,408,787.5	100,590.5	2.28
금융보험업	1,493	516	34.6	1,106,385.0	26,113.5	2.36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2,318	730	31.5	523,376.5	10,438.0	1.99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4,389	1,432	32.6	1,438,895.0	32,926.5	2.29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3,545	1,585	44.7	825,715.0	19,144.5	2.32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	3,224	1,315	40.8	5503,833.0	12,88.0	2.50
교육, 학습지원업	2,556	849	33.2	535,617.5	10,099.5	1.89
의료, 복지	19,950	11,624	58.3	3,236,935.5	103,339.5	3.19
복합서비스사업	890	362	40.7	287,957.5	6,988.5	2.43
서비스업	12,175	5,525	45.4	3,560,681.0	85,006.0	2.39

주: 2024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5〉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상황 - 제조업별

(단위: 명, 개, %)

구분	기업 현황			고용 현황		
	기업 수	달성기업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장애인 수	실고용율
제조업 합계	27,328	14,183	51.9	7,120,821.5	168,789.0	2.37
식료품, 담배	4,344	2,641	60.8	914,210.5	23,666.0	2.59
섬유, 의복	1,021	607	59.5	136,982.0	3,410.0	2.49
목재 가구	604	347	57.5	82,040.5	1,945.5	2.37
펄프, 종이, 인쇄	2,049	1,022	49.9	348,322.5	7,759.0	2.23
화학 공업	2,897	1,361	47.0	873,355.5	20,592.0	2.36
요업·토석	807	407	50.4	159,011.0	3,472.0	2.18
철강	573	310	54.1	172,014.0	4,132.0	2.40
비철금속	504	266	52.8	142,328.5	3,363.0	2.36
금속 제품	3,084	1,574	51.0	394,105.0	8,497.5	2.16
전기 기계	2,738	1,400	51.1	1,131,548.0	27,456.5	2.43
기타 기계	6,069	2,980	49.1	2,054,776.5	47,970.0	2.33
기타	2,638	1,268	48.1	712,127.5	16,525.5	2.32

주: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산업별로 봤을 때, 모든 산업에서 고용된 장애인 수의 총 합은 전년보다 증가함 (산업 전체 실고용율 2.33% → 2.41%)
 - 의료·복지(3.19%),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2.50%),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2.47%) 등이 법정 고용률(2.3%)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학습지원업(1.89%), 정보통신업(1.98%), 부동산업, 물품임대업(1.99%)등은 법정고용률을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제조업별로 봤을 때, 모든 산업에서 고용된 장애인 수의 총 합은 전년보다 증가함 (제조업 전체 실고용율 2.32 → 2.37%)
 - 식료품, 담배(2.59%), 섬유·의복(2.49%) 전기 기계(2.43%)등이 법정 고용률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속제품(2.16%), 요업·토석(2.18%), 펄프·종이·인쇄(2.23%)등이 법정 고용률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표 18-3-6〉 일본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 수 - 기업규모별

(단위: 개, %)

구분		전체	40.5~100미만	100~300미만	300~500미만	500~1000미만	1000명 이상
미달성 기업 수		63,364	36,093	18,808	4,168	2,679	1,616
부족인원 별	0.5명 또는 1명	40,624	32,030	7,046	885	489	174
	1.5명 또는 2명	12,820	4,063	7,143	886	496	232
	2.5명 또는 3명	4,710	-	3,103	883	502	222
	3.5명 또는 4명	2,600	-	1,147	800	446	207
	4.5명 이상 9명 이하	2,281	-	369	708	700	504
	9.5명 이상 20명 이하	268	-	-	6	46	216
	20.5명 이상 50명 이하	51	-	-	-	-	51
	50.5명 이상	10	-	-	-	-	10
고용장애인이 0명인 기업 수		36,485	32,466	3,976	38	4	1

주: 1) 부족인원이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를 말함

2)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7〉 일본 특례자회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업 수	전체 근로자 수	장애인 근로자 수				
			㉠ 중도신체장애인 중도지적장애인	㉡ 중도신체/지적 장애인 단시간	㉢중도이외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중도이외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노동자	㉠㉡㉢㉣ 합계
특례자회사	614	51,958.0	11,673	257	25,940	257	50,290.5

주: 1) 근로자 수는 고용의무 장애인 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 수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수에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 30시간미만)를 포함하되, 0.5명으로 산정함

2) 장애인 수 산정에 있어 중증 신체·지적장애인은 2명, 중증 이의 신체·지적장애인 및 정신 장애인은 1명, 중증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1명, 중증 이의 신체·지적 단시간근로자 및 정신장애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각각 산정함

3) 2024년 6월 1일 기준 현황.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2024년 법정 고용률 미달성 기업은 총 63,364개사이며, 그 중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36,485개사로 전체 미달성 기업 중 57.6%를 차지함

- 2024년 특례 자회사는 614개사(전년대비 16개사 증가), 고용 장애인은 50290.5명(전년대비 3,442.5명 증가)임

※※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란?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고용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례자회사 인증 요구사항

- 모회사는 해당 자회사의 의사결정기관(주주총회 등)을 지배(자회사의 의견권 과반수를 가지는 것 등)
- 자회사의 요건
 - ① 모회사와의 인적관계가 긴밀할 것(구체적으로는 모회사에서의 임원 파견 등)
 - ② 고용 된 장애인이 5명 이상이며, 전체 직원을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함. 또한 고용된 장애인이 차지하는 중증신체장애인, 지적 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③ 장애인의 고용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전임 지도원의 배치 등)
 - ④ 기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이 확실하게 달성 될 것으로 인정될 것

〈표 18-3-8〉 전년도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기관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국가기관	44	43	97.7	339,750.0	10,428.0	3.07
도도부현기관	168	150	89.3	361,319.0	11,030.5	3.05
시정촌기관	2,488	1,769	71.1	1,363,140.5	37,433.5	2.75
도도부현등 교육위원회	93	50	53.8	728,083.5	17,719.0	2.43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9〉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기관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근로자 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전체	44	43	97.7	339,750.0	10,428.0	3.07
행정기관	38	37	97.4	310,275.5	9,561.5	3.08
입법기관	5	5	100	3,995.5	118.0	2.95
사법기관	1	1	100	25,479.0	748.5	2.94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의무 고용률은 2.8%임

2)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0〉 일본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0,428.0	6,151.5	326.5	3,950.0
행정기관	9,561.5	5,549.0	314.5	3,698.0
입법기관	118.0	65.0	9.0	44.0
사법기관	748.5	537.5	3.0	208.0

주: 1) 국가기관의 법정 의무 고용률은 2.8%임

2)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2024년 기준 일본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장애인 고용수와 실제 고용 비율은 모두 이전 조사보다 상승
- 국가: 고용 장애인 수 10,428.0명(전년도 9,940.0명), 실고용률 3.07%(전년도 2.92%)
- 도도부현: 고용 장애인 수 11,030.5명(전년도 10,627.5명), 실고용률 3.05%(전년도 2.96%)
- 시정촌: 고용 장애인 수 37,433.5명(전년도 35,611.5명), 실고용률 2.75%(전년도 2.63%)
- 교육위원회: 고용 장애인 수 17,719.0명(전년도 16,999.0명), 실고용률 2.43%(전년도 2.34%)



〈표 18-3-11〉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기관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전체	168	150	89.3	361,319.0	11,030.5	3.05
도도부현 지사부국	47	45	95.7	280,855.5	8,597.0	3.06
기타 도도부현 기관	121	105	86.8	80,463.5	2,433.5	3.02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됨

2) 일본 도도부현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8%임

3)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2〉 일본 도도부현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1,030.5	8,460.5	294.5	2,275.5
도도부현 지사부국	8,597.0	6,601.5	238.0	1,757.5
기타 도도부현 기관	2,433.5	1,859.0	56.5	518.0

주: 1) 도도부현(都道府縣):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을 말하며, 도쿄도(東京都), 홋카이도(北海道),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와 토호쿠(東北) 등 43개의 현(県)으로 구성됨

2) 일본 도도부현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8%임

3)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3〉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기업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시정촌 기관	2,488	1,769	71.1	1,363,140.5	37,433.5	2.75
	(2,460)	(1,910)	(77.6)	(1,353,753.5)	(35,611.5)	(2.63)

주: 1) 시정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8%임

3)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4〉 일본 시정촌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시정촌 기관	37,433.5	28,230.0	1,639.5	7,564.0
	(35,611.5)	(27,700.5)	(1,499.0)	(6,412.0)

주: 1) 시정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시군구(市郡區)와 유사함

2) 일본 시정촌 기관 법정 의무고용률은 2.8%임

3)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도도부현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1,030.5명이며, 실제 고용률은 3.05%임. 도도부현 지사부국은 47개 기관 중 45개 기관이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기타 도도부현 기관은 121개 기관 중 105개 기관이 고용 목표치를 달성함
- 시정촌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37,433.5명이며, 전년보다 1,822명 증가. 실제 고용률은 2.75%로 전년대비 0.12%p 상승함. 2,488개 기관 중 1,769개 기관이 달성하여 달성비율이 71.1%를 나타냄

〈표 18-3-15〉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총 기업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총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전체	93	50	53.8	728,083.5	17,719.0	2.43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47	22	46.8	640,332.5	15,547.5	2.43
시정촌 교육위원회	46	28	60.9	87,751.0	2,171.5	2.47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의무고용률은 2.7%임
2)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6〉 일본 교육위원회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7,719.0	12,582.5	1,056.0	4,080.5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15,547.5	11,153.0	892.0	3,502.5
시정촌 교육위원회	2,171.5	1,429.5	164.0	578.0

주: 1) 일본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 법정 의무고용률은 2.7%임
2)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일본 교육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7,719.0명이며, 실제 고용률은 2.43%로 법정 의무고용률 2.7%에는 미치지 못함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고용률은 2.43%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2.47%)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47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46개 기관 중 28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 기준을 달성함



〈표 18-3-17〉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 현황			고용 현황		
	총 기업 수	달성기관 수	달성비율	총 근로자수	고용 장애인 수	실고용률
전체	373	285	76.4	471,294.0	13,419.0	2.85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제외)	94	80	85.1	219,303.5	6501.0	2.96
국립대학법인	86	65	75.6	150,869.0	4,266.5	2.8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	193	140	72.5	101,121.5	2,651.5	2.62

주: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8%임

3)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표 18-3-18〉 독립 행정법인등의 장애인 고용 현황 -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유형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전체	13,419.0	8,099.5	1,962.5	3,357.0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제외)	6501.0	4,337.0	470.0	1,694.0
국립대학법인	4,266.5	2,213.5	1,090.0	963.0
지방 독립행정법인 등	2,651.5	1,549.0	402.5	700.0

주: 1)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국립대학법인, 지방독립행정법인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 등을 의미함

2) 일본 독립행정법인 등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8%임

3) 2024년 6월 1일 기준임

자료: 후생노동성(2024), 「장애인 고용현황 보고」

- 독립행정법인(법정고용률 2.8%)등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13,419.0명으로 전년보다 539.5명 증가하였으며, 실제 고용률은 2.85%로 전년 대비 0.09%p 상승함
-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법인 등을 제외)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94개 기관 중 80개 기관이 달성하였으며, 국립대학법인은 86개 기관 중 65개 기관이, 지방독립행정법인 등은 193개 기관 중 140개 기관이 달성함

〈표 18-3-19〉 일본 “Hello Work”를 통한 장애인 취업소개 현황 - 연도별

(단위: 건, 명, %)

구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전년대비	유효구직자수	전년대비	취직건수	전년대비	취업률	전년대비
2010년	132,734	5.4	169,116	7.1	52,931	17.0	39.9	3.9
2011년	148,358	11.8	182,535	7.9	59,367	12.2	40.0	0.1
2012년	161,941	9.2	198,755	8.9	68,321	15.1	42.2	2.2
2013년	169,522	4.7	207,956	4.6	77,883	14.0	45.9	3.7
2014년	179,222	5.7	218,913	5.3	84,602	8.6	47.2	1.3
2015년	187,198	4.5	231,066	5.6	90,191	6.6	48.2	1.0
2016년	191,853	2.5	240,744	4.2	93,229	3.4	48.6	0.4
2017년	202,143	5.4	255,612	6.2	97,814	4.9	48.4	△0.2
2018년	211,271	4.5	272,481	6.6	102,318	4.6	48.4	0.0
2019년	223,223	5.7	300,512	10.3	103,163	0.8	46.2	△2.2
2020년	211,923	△5.1	331,260	10.2	89,840	△12.9	42.4	△3.8
2021년	223,971	5.7	358,539	8.2	96,180	7.1	42.9	0.5
2022년	233,429	4.2	382,100	6.6	102,537	6.6	43.9	1.0
2023년	249,490	6.9	406,591	6.4	110,756	8.0	44.4	0.5
2024년	268,107	7.5	390,799	△3.9	115,609	4.4	43.1	△1.3

자료: 후생노동성(2025).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18-3-20〉 일본 “Hello Work”의 장애인 취업소개 건수 - 장애유형별

(단위: 건, 명, %)

구분	신규구직신청건수	전년대비(%)	유효구직자수	전년대비(%)	취직건수	전년대비(%)
전체	268,107	7.5	390,799	△3.9	115,609	4.4
신체장애인	60,252	1.8	108,066	△10.6	22,704	△0.9
지적장애인	40,385	7.7	54,684	△5.8	22,449	1.1
정신장애인	153,223	11.1	211,942	1.2	65,518	8.1
기타	14,247	△4.0	16,107	△11.5	4,938	△2.1

자료: 후생노동성(2025).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268,107건으로 전년 대비 7.5% 성장하였으며, 취업 건수는 115,609건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함.
이 중 정신장애인의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153,223건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고, 취업 건수는 65,518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함
- 취업률(취업 건수/신규 구직 신청 건수)은 43.1%로 전년 대비 1.3p 감소

※※ Hello Work(공공직업안내소)

- 국민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후생노동성)가 설치한 행정기관. 공식 명칭은 공공직업안내소이며, 주로 직업소개 사업을 운영함. 헬로우 워크의 기본적인 업무는 구직자와 기업의 고용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알선임. 고용관계 성립을 위해 구인 소개, 상담창구에서 상담, 자기분석 지원,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 이력서작성 지원, 면접 대책, 추천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
- Hello Work에서는 이처럼 구인 정보 소개 뿐만 아니라 이직/전직에 관한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또한 Hello Work에서 취급하고 있는 채용 정보는 Hello Work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검색·열람이 가능하며, 여기에 게재된 구인 정보는 민간이 운영하는 취업사이트 등에 게재되는 경우도 있음. 이 외에도 고용 보험 제도의 창구로서의 기능도 수행함



〈표 18-3-21〉 장애인 해고 수 - 연도별, 장애유형별

(단위: 명)

구분	해고 수	장애종류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2008년	2,774	1,856	795	123
2009년	2,354	1,561	711	82
2010년	1,333	773	492	68
2011년	1,253	852	342	59
2012년	1,539	1,002	394	143
2013년	1,248	732	376	140
2014년	1,192	714	379	99
2015년	1,448	723	395	330
2016년	1,335	588	428	319
2017년	2,272	714	735	823
2018년	1,980	782	607	591
2019년	2,074	844	636	594
2020년	2,191	951	641	599
2021년	1,656	718	468	470
2022년	1,605	499	562	544
2023년	2,407	738	733	936
2024년	9,312	1,999	3,069	4,244

자료: 후생노동성(2025).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표 18-3-22〉 장애인 해고 수 - 해고 사유별

(단위: 명)

구분	해고 사유			합계
	사업 폐지	사업 축소	기타	
2024년 4월	623 (64)	361 (81)	29 (19)	1,013 (164)
2024년 5월	652 (82)	565 (41)	134 (1)	1,351 (124)
2024년 6월	559 (39)	318 (72)	15 (5)	892 (116)
2024년 7월	76 (57)	33 (63)	4 (4)	113 (124)
2024년 8월	91 (131)	51 (25)	4 (6)	146 (162)
2024년 9월	72 (49)	70 (14)	2 (8)	144 (71)
2024년 10월	56 (46)	24 (45)	7 (18)	87 (109)
2024년 11월	87 (55)	48 (19)	12 (1)	147 (75)
2024년 12월	150 (53)	50 (16)	8 (9)	208 (78)
2025년 1월	83 (61)	56 (33)	4 (8)	143 (102)
2025년 2월	99 (43)	88 (36)	5 (4)	192 (83)
2025년 3월	341 (231)	472 (67)	10 (10)	823 (308)
연도 합계	1,240 (1,020)	1,086 (485)	81 (100)	2,407 (1,605)

주: ()내는 전년도 수치임

자료: 후생노동성(2025). 「장애인 직업소개 현황」

- 장애인 해고 수는 2008년 2,774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그 후 2025년 9,312명으로 급증했다.
- 2023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Hello Work에 신고 된 장애인 해고는 총 2,407명이며, 해고사유 별로는 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 1,240명, 사업 축소로 인한 해고 1,086명, 기타 사유 81명임 (2022년도는 1,605명)

4) 재정

〈표 18-4-1〉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개요 - 2024~2025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전년대비증감액
장애인 시책 관계 예산 총 금액	2,840,856	2,966,967	126,111
분야별 시책 합계	2,840,762	2,966,905	126,143
[안심, 안전한 생활환경의 설비]	1,581,429	1,669,847	88,418
1. 주택의 확보 (어린이가정청·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	1,581,142	1,669,715	88,573
2. 이동하기 쉬운 환경정비 (경찰청·국토교통성)	63	59	-4
3. 접근성에 고려한 시설, 제품 등의 보급촉진 (법무성·국토교통성)	165	18	-147
4. 장애인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 등의 종합적 추진 (경찰청·농림수산성·국토교통성·환경성)	59	55	-4
[정보접근성의 향상 및 의사소통지원의 충실]	6,333	6,202	-131
1. 정보통신에 있어서 정보접근성 향상 (총무성·후생노동성)	2,484	2,215	-269
2. 정보제공의 충실 (총무성·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3,846	3,984	138
3. 의사소통 지원의 충실 (후생노동성)	-	-	-
4. 행정정보 접근성의 향상 (총무성)	3	3	0
[방재, 방법의 추진]	2,789	2,783	-6
1. 방재대책 추진 (내각부·어린이가정청·부흥청·후생노동성·국토교통성)	-	-	-
2.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재해로부터의 부흥의 추진 (부흥청·후생노동성)	1,756	1,770	14
3. 방재대책 추진 (내각부·경찰청·어린이가정청·후생노동성)	953	953	0
4. 소비자 문제 방지 및 피해로부터의 구제 (소비자청·법무성)	80	60	-20
[차별의 해소, 권리옹호의 추진 및 학대방지]	70,429	69,873	-556
1. 권리 옹호의 추진, 학대 방지 (법무성·후생노동성)	51,081	50,853	-228
2.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의 추진 (내각부·경찰청·법무성·후생노동성)	19,348	19,020	-328
[자립 생활 지원, 의사 결정 지원의 추진]	498,627	516,047	17,420
1. 의사결정지원 추진 (후생노동성)	-	-	-
2. 상담 지원 체제 구축 (내각부·후생노동성)	11	11	0
3. 지역 이행 지원, 재택 서비스 등의 충실 (후생노동성)	9,818	9,682	-136
4.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의 충실 (어린이가정청·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487,612	505,168	17,556
5. 장애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등 (후생노동성)	1,186	1,186	0
6. 복지 용구 및 기타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기기의 보급 촉진·연구개발 및 신체장애인 보조견 육성 등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	-	-
7. 장애 복지 지원 인력의 육성·확보 (후생노동성)	-	-	-
[보건, 의료추진]	418,056	427,220	9,164
1. 정신 보건·의료의 적절한 제공 등 (법무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8,327	8,298	-29
2. 보건·의료의 충실 등 (어린이가정청·후생노동성)	249,256	256,877	7,621
3. 보건 의료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 등의 추진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	11,483	11,445	-38
4. 보건·의료 지원 인력의 육성·확보 (후생노동성)	40	40	0
5. 난치병에 대한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 (후생노동성)	148,950	150,560	1,610
6.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등의 예방·치료 (후생노동성)	-	-	-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전년대비증감액
[행정 배려의 충실]	686	676	-10
1. 사법 절차 등에 있어서의 배려 등 (경찰청·법무부·후생노동성)	686	676	-10
2. 선거 등에 있어서의 배려 등 (총무성)	-	-	-
3. 행정기관 등의 배려 및 장애인 이해의 촉진 등 (전 부처)	-	-	-
4. 국가 자격에 대한 배려 등 (전 부처)	-	-	-
[고용/취직, 경제적 자립의 지원]	231,621	243,690	12,069
1. 종합적인 취업 지원 (후생노동성)	24,068	24,657	589
2. 경제적 자립 지원 (전 부처)	202,225	213,610	11,385
3. 장애인 고용 촉진 (전 부처)	4,367	4,556	189
4. 장애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및 다양한 취업 기회의 확보 (총무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국토교통성)	961	867	-94
5. 일반취업이 곤란한 장애아에 대한 지원 (후생노동성)	-	-	-
[교육의 진흥]	29,353	29,114	-239
1. 인클루시브 교육 시스템의 추진 (문부과학성)	27,935	28,265	330
2. 교육 환경의 정비 (문부과학성)	791	4	-787
3. 고등 교육에서 장애 학생 지원의 추진 (문부과학성)	49	49	0
4. 평생을 통한 다양한 학습 활동의 충실 (문부과학성)	578	796	218
[문화예술활동/스포츠 등의 진흥]	1,376	1,419	43
1. 문화 예술 활동, 여가·휴양 활동의 충실을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296	300	4
2.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정비, 패럴림픽등 경쟁 스포츠에 관한 대책 추진 (문부과학성)	1,080	1,119	39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연계의 추진]	63	34	-29
1. 국제 사회를 향한 정보 발신의 추진 등 (내각부·외무성)	63	34	-29
2. 국제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추진 (내각부·외무성)	-	-	-
3. 정부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의 추진 등 (외무성)	-	-	-
4. 장애인의 국제 교류 등의 추진 (내각부·외무성·후생노동성)	-	-	-
[사책의 원활한 추진]	94	62	-32
1. 연계/협력의 확보 (내각부)	26	25	-1
2. 이해촉진/홍보개발에 관련된 대책의 추진 (내각부·법무성·후생노동성·국토교통부)	68	38	-32

주: 1) 표는 장애인 기본 계획 (제4차) (2018~ 2022년도)의 분야별 사책 추진 체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
2) 표는 백만 엔 미만은 반올림해서 백만 단위로 나타내고 있음
3) 「장애인 사책 관계 예산·결산 금액 총계」 항목은 장애인 사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 있는 사책/사업에 합계액임
4) 장애인 사책 관계의 금액을 특정 할 수 없는 사책/사업은 '-'로 표기함
5) 각 분야별 사책 등에 관한 재계 분은 계상하고 있지 않음

자료: 내각부(2024). 「2024년 장애인백서」

5) 복지

〈표 18-5-1〉 장애가구를 위한 주택건설 - 공영주택,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

(단위: 호)

구분	공영주택건설호수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임대조치호수
2004년	132	2,157
2005년	128	1,282
2006년	107	1,663
2007년	66	686
2008년	70	537
2009년	102	674
2010년	97	387
2011년	83	144
2012년	36	213
2013년	20	103
2014년	59	67
2015년	54	183
2016년	49	36
2017년	31	32
2018년	46	244
2019년	11	43
2020년	77	227
2021년	26	27
2022년	51	84
2023년	65	344

주: 1) 도시 재생기구 임대주택의 임대조치 호수에는 고령자 또는 고령자포함가구등에 대한 임대조치 호수를 포함함

2) 임대조치는 당청 확률을 일반보다 20배 높이는 것임

자료: 내각부(2024), 「2024년 장애인백서」

※※ 공공 임대 주택의 배리어프리화 추진

- 신설되는 모든 공영주택, 도시재생기구 임대주택, 개량주택 및 공사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신의 특성에 맞춘 설비 설치를 고려하여 배리어프리를 표준 사양으로 하고 있음.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개축 혹은 개선을 통해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공영주택 건설 시에는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에 따른 조성의 한도액을 특별적으로 상향 조정함

※※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 한 주택 스톡 형성 추진

-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주택 스톡을 형성하기 위해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설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저하 된 경우에도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설계를 고려함.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증권화지원사업인 ‘플랫35S’는 배리어프리성이 우수한 주택에 대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



〈표 18-5-2〉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단차의 해소

(단위: 개소, %)

구분	총 시설 수				이동 원활화 기준				총 시설 수에 대한 비율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철도역	3,546	3,460	3,348	3,251	3,331	3,237	3,135	3,090	93.9	93.6	93.6	95.0
버스터미널	43	44	42	36	40	41	39	34	93.0	93.2	92.9	94.4
여객선터미널	17	15	9	8	16	14	9	8	94.1	93.3	100.0	100.0
공항	43	42	27	16	43	39	27	16	100.0	92.9	100.0	100.0

주: 총 시설 수는 1일당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 시설 수
자료: 국토교통성(2024), 「대중교통이용 등 이동 원활화실적보고서」

〈표 18-5-3〉 여객시설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 장애인용 화장실

(단위: 개소, %)

구분	총 시설 수				이동 원활화 기준				총 시설 수에 대한 비율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철도역	3,303	3,249	3,161	3,074	3,052	2,996	2,906	2,832	92.4	92.2	91.9	92.1
버스터미널	36	35	33	27	26	25	23	27	72.2	71.4	69.7	81.5
여객선터미널	17	13	9	8	16	11	8	8	94.1	84.6	88.9	100.0
공항	43	42	27	16	43	42	27	16	100.0	100.0	100.0	100.0

주: 총 시설 수는 1일당 평균 이용자수 3,000명 이상의 여객 시설 수
자료: 국토교통성(2024), 「대중교통이용 등 이동 원활화 실적 보고서」

〈표 18-5-4〉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

(단위: 개소, %)

구분	총 차량 수				이동 원활화기준을 따른 차량 수				차량 총수에 대한 비율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철도	51,868	52,150	52,535	52,645	31,047	29,699	27,545	40,027	59.9	56.9	53.8	76.0
버스	44,336	44,282	45,496	46,226	31,269	30,117	29,779	29,489	70.5	68.0	65.5	63.8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버스	9,896	10,192	10,961	11,688	847	664	661	674	8.6	6.5	6.0	5.8
공항버스	170	172	165	—	70	69	62	—	41.2	40.1	37.6	—
대여버스	—	—	—	—	1,229	1,157	1,157	—	—	—	—	—
복지택시	—	—	—	175,425	52,553	45,311	42,622	29,657	—	—	—	16.9
여객선	657	659	666	668	380	370	366	356	57.8	56.1	55.0	53.3
비행기	607	602	620	641	607	602	620	639	100.0	100.0	100.0	99.7

자료: 국토교통성(2024), 「대중교통이용 등 이동 원활화 실적 보고서」

〈표 18-5-5〉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등 설치 상황

(단위: 기)

구분	연도별 설치 수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고령자 등 감응 신호기	6,411	6,460	6,506	6,557	6,638	6,655	6,724	6,771
보행자 감응 신호기	1,158	1,199	1,173	1,221	1,261	1,308	1,331	1,346
시각 장애인용 부가 장치	21,236	21,023	20,838	20,621	20,301	20,013	19,680	19,483
음향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	4,620	4,577	4,476	3,569	3,559	3,516	3,469	3,409
보행자 지원 장치	896	844	713	534	510	506	534	536

자료: 내각부(2024). 「2024년 장애인백서」

- 2024년도 장애인백서에 의하면, 고령자 감응 신호기 6,411기, 보행자 감응 신호기 1,158기, 시각 장애인용 부가 장치 21,236기, 음향식 보행자 유도 부가 장치 4,620기, 보행자 지원 장치 896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장애인인의 이용을 배려한 신호기 등의 설치

- 음향을 이용해서 신호 표시 상태를 알려주는 음향식신호등, 신호 표시판에 파란불이 켜지는 시간까지의 대기시간 및 파란불의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경과시간 표시기능이 있는 보행자용 조명 장치, 보행자 등과 차량이 통행하는 시간을 분리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보/차분리형 신호 등의 배리어프리 대응형 신호기 등의 장비를 추진하고 있음



6) 정신건강

〈표 18-6-1〉 정신과병원의 상황 - 병원수, 병상수

(단위: 개소)

내용	병원수	허가병상수	신고 병상수				정신 병동수	휴상중
			계	야간개방	종일폐쇄	이외		
특별기능병원	74	3,102	2,944	801	1,981	162	96	0
지역의료지원병원	103	4,878	4,406	720	3,521	165	119	8
일반병원	330	62,848	60,996	12,077	45,914	3,005	1,187	25
정신 병상만을 보유하는 병원	1,028	233,554	226,466	43,037	173,716	9,713	4,281	100
합계	1,535	304,382	294,812	56,635	225,132	13,045	5,683	133
도도부현립 정신과병원등	141	17,675	15,630	1,819	13,276	535	393	29
지정병원	925	216,631	211,800	39,392	163,468	8,940	4,007	67
비지정병원	469	70,076	67,382	15,424	48,388	3,570	1,280	37
합계	1,535	304,382	294,812	56,635	225,132	13,045	5,683	133

자료: 후생노동성「정신 보건 복지 자료 (2024)」

〈표 18-6-2〉 정신과 병원의 개황

(단위: 개소)

	병원수	병동수	병상수
특정 기능 병원	74	96	3,102
지역 의료 지원 병원	103	119	4,878
일반 병원	330	1,187	62,848
정신병상만 있는 병원	1,028	4,281	233,554
도도부 현립 정신과 병원 등	141	393	17,675
지정 병원	925	4,007	216,631
비지정 병원	469	1,280	70,076

자료: 후생노동성「정신 보건 복지 자료 (2024)」

- 특정 기능 병원: 고도의 의료의 제공, 고도의 의료 기술의 개발 및 고도의 의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능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서, 제2차 의료법 개정에서 있어서 2005년부터 제도와
- 지역 의료 지원 병원: 의료 시설 기능의 체계화의 일환으로서 환자에게 친밀한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소개 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 의료 기기 등의 공동 이용 실시 등을 통해, 제 1 선의 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치과 의사 등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지역 의료의 확보를 도모하는 병원으로서 적절한 구조 설비 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도도부현 지사가 개별적으로 승인
- 일반병원: 상기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상 이외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
- 정신병상만 있는 병원: 모든 병상이 정신병상인 의료기관
- 비해당: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 도도부 현립 정신과 병원 등: 정신 보건 복지법 제19조의 7 제2항에 근거하는, 나라, 도도부현 및 도도부현 이외의 지방 공공 단체가 설립한 지방 독립 행정법인이 설립 주체인 의료 기관(모든 병상이 조치 임원의 수입 가능 병상)
- 지정 병원: 정신 보건 복지법 제19조의 8에 근거하는 지정 병원(일부의 병상이 조치 임원의 수입 가능 병상)
- 비지정 병원: 조사표에서 비지정 병원 혹은 비해당이라고 회답한 시설

IV 지표설명

1. 국내통계 지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함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가구 및 장애인별조사'와 '장애인 심층면접조사'로 나뉨 ▪ 가구 및 장애인별조사 : 가구조사, 장애인별조사 ▪ 장애인 심층면접조사 :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의료·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출현율 ▪ 전국 장애인 출현율은 가구표본조사와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한 것임 ▪ 3년 주기로 산출함(2020년 조사부터 산출하지 않음) -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ADL) ▪ 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으로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이 있음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ADL) ▪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이상의 것으로서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기술, 환경적 상호작용 등이 요구되는 동작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조사항목으로는 전화 사용하기, 물건사기, 식사준비, 집안일, 빨래하기, 약 챙겨먹기,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하기, 본인 물건 관리하기 등이 있음 - 월평균 가구소득 ▪ 기본급, 상여금, 사업소득, 축산·어업·농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보험수령액, 연금, 증권수익, 임대료, 정기적으로 받는 각종 보조금 등 가구원 전원이 1개월간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한 월평균 금액 ▪ 현금, 현물, 사적·공적 이전소득은 포함하며, 배우처 금액은 제외함 ▪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월평균 가구지출 ▪ 식료품비(주부식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피복비, 교통·통신비, 공공금, 내구재구입, 부채 및 이자 납부 등 가구원 전원이 한 달 쓰는 돈을 모두 합한 금액 ▪ 저축, 사업용도,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은 제외 ▪ 연간 총 지출액만 아는 경우에는 연간 총 지출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 ▪ 조사항목으로는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 후 및 노후 대비비, 기타 등이 있음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직장건강보험: 사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 ▪ 의료급여 1종·2종: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는 공적부조제도로, 의료급여 1종·2종에 가입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일반수급가구: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의료·교육·자활·이행급여 특례 • 의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급여. 의료급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1종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가 지원됨 • 교육: 중고등학생 학비로 지출되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함 • 자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급함 • 이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창업에 성공하여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가구들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
조사주기	- 1980년 이후 5년 마다 조사 - 1996년 12월 9일 지정통계로 지정 - 관련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 총 12차례 실시(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정보출처	- http://stat.mw.go.kr - http://www.kihasa.re.kr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 생활체육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 비실행 실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인식'으로 나뉨					
조사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생활체육 참여형태 ▪ 생활체육(운동) : 일상생활 가운데 각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개인의 자발적인 참가의지에 의하여 주 2~3회 이상,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함 ▪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 ▪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목적, 집 안에서 운동하는 자					
	구분	최근 1년간 운동여부	운동 목적	운동 횟수	운동 시간	운동 장소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실시	재활치료 이외	1주일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
장애인 생활체육 불완전 실행자	실시	완전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cst.go.kr - http://www.kosad.or.kr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조사개요

-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건강 관련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함
-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장애인 건강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건강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통계를 제시하고 보급하는게 주된 목적임
-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장애인 진료비', 그리고 '장애인 사망현황'으로 나뉨

조사기관

- 국립재활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이상지질혈증(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등 심혈관질환 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한 개인이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주의군은 한 개인이 2가지 이하 가지고 있는 상태임

구분	기준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혈압 85mmHg 이상 또는 문진표상 '고혈압'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높은 혈당	공복 혈당 100mg/dL 이상 또는 문진표상 '당뇨병'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높은 중성지방혈증	혈관 내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150mg/dL 이상 또는 문진표상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HDL 콜레스테롤이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미만 또는 문진표상 '이상지질혈증'으로 현재 약물치료 중인 자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수검률: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일반건강검진 대상인원*100
 - 실시범위 및 대상: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검진대상	실시주기
지역 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연도 대상자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직장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64세 해당연도 출생자	· 2년에 1회

* 해당연도: 짝수 해는 짝수년도, 홀수 해는 홀수년도

- 주요항목: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 -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 판정 기준

판정 결과	판정 기준
정상A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경계)	일반건강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일반 질환의심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 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자
고혈압·당뇨 질환의심 (확진검사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어 검사 등이 필요한 자
유질환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암검진 수검률
 - 수검률: 암검진 수검인원/암검진 대상인원*100
 - 실시범위, 대상, 실시주기, 검진항목



구분	검진대상	실시 주기	검진항목
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해당연도 출생자	2년	· 위장조영검사 · 위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인 자 전체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 · 대장이종조영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간암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 단,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 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 간세포성 암종, 간암 - 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6개월 (연2회)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인 여성 중 해당연도 출생자	2년	· 유방촬영(양측)
자궁 경부암	· 만 20세 이상인 여성 중 해당연도 출생자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19년 8월부터 실시)	· 만 54~74세 흡수/깍수년도 출생자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급여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	· 저선량흉부CT
* 해당연도: 짝수 해는 짝수년도, 홀수 해는 홀수년도 - 구강검진 수검률 ■ 수검률: 구강검진 수검인원/구강검진 대상인원*100 -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진료실 인원: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중 1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 수 ■ 입내원일수: 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 기재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를 통칭함 ■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 입내원일수/진료실인원 ■ 1회당 진료비: 총 진료비/입내원일수 - 장애인 진료비 현황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및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보험자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 진료비 중 심사 결정된 진료비 ■ 본인부담금: 심사 결정 된 총 진료비 중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rc.go.kr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개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등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위해 조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은 크게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만 9-24세 청소년 자녀'로 나뉨 ▪ 가구 구성표 : 가구 구성, 가구 특성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 :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 ▪ 만 9-24세 청소년 자녀 : 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외국 성장 자녀, 경제 활동 상태
조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조사주기	- 3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gef.go.kr - http://www.kwdi.re.kr/

○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 - 「주택법」 제6조 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내용으로는 현 주택의 거주 특성, 주택가격/임대료, 주택대출금/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거만족도, 주택 가치관,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 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향후 2년 내 이사계획 및 희망주택, 가구현황 등이 있음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주택 ▪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아래의 세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춘 •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일반단독주택(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다가구단독주택(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영업겸용단독주택(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그 외 :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의 주택), 오피스텔(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쪽방(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공식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무보증 월세 또는 일세로 운영되는 주거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옴막(주거용도로 사용되나 건축 재료나 구조축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기타(사람이 거주하나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 점유형태 •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주거지원프로그램 ▪ 주거비 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주거급여가 포함됨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모자가정, 등록장애인,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 입주 대상임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며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하며, 등록장애인의 경우 20% 이내 우선 공급 대상임 • 장기전세주택 : 시중 전세가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하는 Shift가 대표적인 예임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의미로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정부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어 등록장애인은 2순위임 •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 현재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며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임
조사주기	- 1년 주기(일반조사는 짝수해, 특수조사는 홀수해에 실시) - 특수조사 대상으로는 노인가구·장년가구·사설거주 노인, 장애인가구, 임대주택가구, 저소득가구가 있음 • 노인가구·장년가구·사설거주 노인 : 2007년 실시 • 장애인가구 : 2009년, 2015년, 2019년 실시 • 임대주택가구 : 2011년 실시 • 저소득가구 : 2013년 실시 • 신혼부부가구(패널) : 2014년, 2015년 • 주택이외의 거주 : 2017년 실시
정보출처	- http://www.molit.go.kr - http://www.onnara.go.kr

○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조사개요	-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현황을 살펴보고,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정부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교육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교육을 말함. 특수학교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진학률, 취업률 ▪ 진학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전공과,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 •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 * 100 ▪ 취업률 : 특수학교(급)의 고등부과정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 수 대비 취업한 학생비율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e.go.kr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조사개요	-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중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중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mohw.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대상 집단의 규모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경제활동상태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 취업자 • 조사대상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함 •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일시휴직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기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 •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 100 ▪ 실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적극적 구직활동 :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등으로 구분됨 - 총사상자위 ▪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상태 ▪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년 이상, 고용계약 미설자 중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설정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계약 미설정자 중 일정한 사업(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기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개인기업의 경영주나 또는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동일가구 내 자기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 무보수로 18시간 일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로,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일한 사람 - 산업, 직업 ■ 산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내용 ■ 직업 :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 - 구직단념자 ■ 통계청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함 ■ EDI 기준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통계청 기준 노동시장적 사유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직(취업·창업) 정보나 방법을 몰라서 + 자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창업할 능력, 상황이 안 돼서 + 일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지난 1년 내 구직경험 여부 기준 제외)를 의미함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s://edi.l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조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기업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의무사업주 단위, 한 개의 기업체는 다수 사업체(사업장)를 포괄할 수 있으며, 국내 여타 조사의 '사업체'를 단위로 하므로 비교 시 유의 ■ 상시근로자 · 해당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임금산정기초일이 월16일 이상일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산업) ■ 장애인 고용기업체 · 현재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인 기업체 ■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체 ■ 장애인고용의무기업체 ·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기업체 ■ 장애인 고용률 · 상시근로자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조사주기	- 2년 주기 / 2019년부터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s://edi.lead.or.kr

○ 중소기업청·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장애인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조사함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뜻함(「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조사주기	- 2년 주기
정보출처	- www.smba.go.kr

○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조사개요	- 가구특성별 자산과 부채의 규모 등 가계의 재무건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함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로서 봉급, 임금과 상여금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차감한 금액 ▪ 재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자본이득) 및 실물자산소득(임대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장애수당 등 ▪ 사적이전소득: 부모, 자녀, 형제, 친지 및 민간회사나 교회, 비영리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사적인 생활비 보조금 등 - 소비지출액 ▪ 식료품비: 외식비(식당, 패스트푸드, 주점, 커피숍 등)를 포함한 비용임 ▪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등 ▪ 교육비: 보육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규교육, 어린이집, 학원이나 보습교육(사교육), 기타교육 등의 서비스 등 ▪ 의료비: 의약품, 외래의료 서비스, 입원서비스, 치과 서비스 등 ▪ 교통비: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등)나 대중교통비, 차량구입비는 제외 ▪ 통신비: 통신장비(전화기기), 통신 서비스(일반전화 요금,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 기타 소비지출: 의류, 오락 문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등 - 비소비지출액 ▪ 직접세,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등을 의미함 ▪ 세금: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세금 ▪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가구 간 이전지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 자녀 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 비영리단체로 이전: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 이자비용: 금융기관, 직장,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빈곤갭: 빈곤선(중위소득 50%)과 빈곤층 평균 소득 차이의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냄 ▪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가처분 소득: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kostat.go.kr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개요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현황과 건물유형별 및 지역별 설치율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편의시설 종류 ▪ 매개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 기타시설 : 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편의시설 설치율 ▪ 편의시설 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 100
조사주기	- 5년 주기 - 총 5차례 실시(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정보출처	- http://www.mohw.go.kr - http://www.koddi.or.kr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조사개요	-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7대 도시 교통복지수준 및 이동편의지수 평가를 통해 각 도시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를 통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법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조사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조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자상버스, 특별 교통수단 ▪ 자상버스 :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됨 ▪ 특별 교통수단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eak.mltm.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조사개요	- 시계열적 조사·분석을 통해 디지털정보격차해소 정책의 연간 추진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도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함
조사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디지털정보화 수준 및 세부지수 ▪ 디지털정보화수준(디지털정보격차지수)은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격차지수(종합) = 디지털정보접근지수(0.2) + 디지털정보역량지수(0.4) + 디지털정보활용지수(0.4) ▪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여부'로 측정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접근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접근지수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컴퓨터 이용능력'과 '모바일 기기 이용능력'으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역량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역량지수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 ▪ 디지털정보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로 측정되며,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활용 수준을 의미함 * 디지털정보활용지수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실태조사」

조사개요	-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실태를 계량적으로 측정·평가·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 방향 도출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조사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 인식의 용이성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제공,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 자동 재생 금지, 콘텐츠 간 구분 ▪ 운영의 용이성 · 키보드 사용 보장, 초점 이동, 조작 가능, 응답 시간 조절, 정지 기능 제공,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반복 영역 건너뛰기, 제목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 이해의 용이성 · 기본 언어 표시,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콘텐츠 선행 구조, 표의 구성, 레이아웃 제공, 오류 정정 ▪ 견고성 · 마크업 오류 방지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조사개요	-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학대예방, 피해자지원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 제2호에 의거하여 실시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학대 유형(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욕언, 헐뜯,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미움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 ▪ 유기·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조사주기	- 1년 주기
정보출처	- http://www.nia.or.kr



○ 기타자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외)

조사개요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등록 현황 ▪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동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함 - 장애정도심사 ▪ 2007년 4월 중증장애 위탁업무 실시 → 2010년 1월 장애등급 심사제도 시행 및 확대 - 놓여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이란 ▪ 놓여진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 고용 근로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0%에서 2017년부터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제27조, 제28조의2. 시행 2017.1.1.) ○ 2017년 ~ 2018년: 3.2% → 2019년 이후: 3.4% ▪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 2015년 ~ 2016년: 2.7% → 2017년 ~ 2018년: 2.9% → 2019년 이후: 3.1% - 장애인 고용 부담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장애인일자리사업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사각장애인마사지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됨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시간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생산물이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생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여부를 말함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며, 장애연금액은 장애정도(등급)와 가입종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장애1급은 기본연금액 100%, 장애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장애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를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장애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 신재보험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발생시 보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 임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보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금여부를 지급하며, 이때 지급하는 보험금여부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임 ▪ 신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장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

- **장애급여**
 -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장애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애보상연금 또는 장애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됨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급여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하여짐. 다만 다른 급여의 보호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음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연금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임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장애연금법」상 등락한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함
- **장애수당**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지원함
 - 가구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해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특례를 적용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함
-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함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지원함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을 지원함
 - 65세 미만인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되며, 심의 결과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를 선정함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됨. 급여는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됨(활동지원급여:1~15구간,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제)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성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함
 -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언어발달 지원 사업**
 -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시각, 청각 등록장애인이거나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때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자녀를 지원함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를 선정함(소득별 차등지원)
- **장애아가족양육 지원 사업**
 -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함
 -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1~3급 장애아동을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계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저소득 이거나 저학력장애인 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돌봄을 제공함. 또한 부모 양육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제공함. 서비스 대상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함
 - 만 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으로,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기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 서비스 대상은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임. 다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 및 기능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화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수어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를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및 기능 ▪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보호직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보호직업장 또는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정신건강 관련 기관 종류 및 기능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생활지도 등 제공하는 기관 ▪ 정신요양시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제공하는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수립, 조정,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광역, 기초로 구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 ▪ 자살예방센터: 지역사회 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제도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내용: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 지원주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의 장, 장애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공무원 ▪ 지원내용: 신청대상 및 지원 구분에 따라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법: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신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지급대상: 산재근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 지급대상에 해당 하는 자 ▪ 지원내용: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 및 수리비 지원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본인부담금 20%) ▪ 보급품목: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변형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응급알림 e서비스 ▪ 응급알림 e서비스는 위험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이 화재 등의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스·화재·활동 감지 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임
조사주거	-
정보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제도별 사업안내서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



2. 국외통계 지표

1) OECD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조사개요	-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의 이해 도모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두 가지 정의 개념을 이용 ▪ 정책적인 진행절차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자기보고식에 의해 보고한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빈곤위험률 ▪ 빈곤율 = 근로가능연령(20-64세)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내 장애인 비율임 ▪ OECD국가의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위험율(=빈곤율)은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소득임 ▪ 가처분소득에는 사회적 소득이전으로서 공사적연금,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됨 ▪ OECD에서는 빈곤선 설정 시 중위소득 50%, 60%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조사주기	- vol 1 :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2006) - vol 2 : 호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2007) - vol 3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2008) - 종합보고서 발간(2010) - 부정기
정보출처	- http://www.oecd.org/els/disability

○ OECD(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OECD Health Policy series.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정신질환 관련 정책 및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질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별 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인구 10만명당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련 사설 수 ▪ 지역사회 내(Community)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설 - 정신건강 지출 ▪ 정신건강 체계 속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신건강지출수준 ▪ 정신건강지출관련 구체적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 ▪ 이에 OECD에서는 ICD-10(5장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단 알츠하이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가능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련 지출을 소개하고 있음
조사주기	- 부정기
정보출처	- http://www.oecd.org/

○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건강 및 보건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인구 1,000명 당 정신과 관련 병상 수 ▪ 정신과 진료 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병상임. 일반병원의 정신과 병상과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병상을 포함함(OECD, 2013) -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조울증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 조현병으로 인한 초과사망비 : 15세-74세 사이의 인구 중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전체 사망률 / 15세-74세 사이의 인구의 전체 사망률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www.oecd.org/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EX)

조사개요	- OECD 주요국가의 사회복지지출데이터베이스로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Expenditure), 자발적 민간(Voluntary private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Public Social Expenditure)을 포함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중앙정부, 지방정부)과 사회보험급여, 공기업의 교통 및 할인서비스가 포함된 것으로, 사회복자보건노동과 관련된 지출과 사회보험지출을 포함 - OECD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ALMP(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기타 등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지출을 수집하고 있음		
조사기관	- OECD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장애, 산업재해, 질병)	현금급여	-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 산재보험(산재보험)(pensions: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상병급여(산재보험)(paid sick leave: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 기타상병보조금(paid sick leave: other sickness daily allowance) - 기타 현금급여
		현물급여	- 거주돌봄서비스/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 기타 현물급여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장애연금(국민연금 및 지역연금별 장애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 상병급여(산업재해), 기타상병보조금(기타 질병수당), 기타 현금급여(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비율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물급여 ▪ GDP 대비 근로무능력 관련 현금급여(거주 돌봄서비스 및 가사보조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 현물급여) 비율	
조사주기	-		
정보출처	-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소득, 사회적 배제 및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출현율 ▪ 보통 활동들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 ※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포함 ※ For at least the past six months,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 교육수준별 장애인 인구 ▪ low(SCED levels 0-2), medium(SCED levels 3-4), high(SCED levels 5-8) 졸업 인구 중 장애인 비율 ※ 학력수준은 low(SCED levels 0-2), medium(SCED levels 3-4), high(SCED levels 5-8)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초등, 고졸 이하, 대학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 Eurostat, 「2011 EU Labour Force Survey」, 2014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노동시장의 상황과 추세에 대한 정보 제공 - 15세 이상 근로가능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분류하는 목적을 가짐 - '장애 고용' 조사는 2011년에 추가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ad-hoc module)임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정의 ▪ 기본적인 활동들의 어려움 중 하나 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기본적인 활동에는 보기(안경을 쓰고도 보는데 어려움), 듣기(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듣는데 어려움), 걷거나 계단 오르기, 앉거나 서기, 기억하고/집중하기, 의사소통(남의 말을 이해하고, 이해되어짐), 손을 내밀거나 뺀 것, 구부리는 것, 물건을 올리거나 운반하는 것, 잡고/취고/돌리는 것 등임 - 고용률 ▪ 장애인(15-64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 - 장애인 취업자 근로형태 ▪ 장애인(15-64세 인구) 취업자 중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율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15-64세) 중 실업자 비율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2) EU

○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조사개요	- EU 국가들의 소득, 사회적 배제 및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
조사기관	- Eurostat
장애판별 기준	-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출현율 ▪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사람(적어도 과거 6개월 동안, 건강문제 때문에 보통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심각하거나, 제한되지만 심각함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 ※ 보통 수행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 활동들로 씻기, 옷입기(몸단장), 집 청소, 요리하기, 일하기, 학교가기, 쇼핑하기 등을 뜻함 ※ For at least the past six months, to what extent have you been limited because of a health problem in activities people usually do? - 만성질환자 비율 ▪ 지난 6개월 간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주거박탈률 ▪ 주거 내 거주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주거비 과다부담률 ▪ 주거비 과다부담률은 전체 가구 중 주거비가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여기서 주거비는 주택담보 대출 이자, 임대료, 주거유지비, 세금 및 공공요금 등을 포함함 - 교육 관련 지표 ▪ 학업중단율: 18-29세 인구 중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 둔 비율 ▪ 고등교육 이수율: 30-39세 인구 중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비율 - 고용 관련 지표: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빈곤 관련 지표 ▪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에 사는 사람: 낮은 노동 강도는 지난 1년 동안 총 근로가능한 날 중 20% 미만만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 강도가 매우 낮은 가구는 가구 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지난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이 이론적으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기간의 2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함 ▪ 사회적 이전 이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 사회적 이전 이후 소득이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60%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 심각한 물질적 박탈을 겪고 있는 가구는 '경제적 긴장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물질적 박탈 항목 9개 중 최소 4개가 강제로 부족한 가구 비율을 나타냄 1. 대출금, 임대료, 공공금 등 체납 2. 1주일간 집을 떠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능력 3. 2일마다 고기, 닭고기, 생선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능력 4. 예기치 못한 재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5. 가구는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살 수 없음 6. 가구는 컬러 TV를 살 여유가 없음 7. 가구는 세탁기를 살 여유가 없음 8. 가구는 차를 살 여유가 없음 9. 가정 내 적절한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조사주기	- 1년
정보출처	- European comparative data on Europe 2020 & People with disabilities(ANED) - Europe 2020 data & People with disabilities- tables(ANED)



3) 독일

○ Statische Bundesamt(DESTATIS)

조사개요	- 독일의 정치, 행정, 경제 및 시민 등 객관적이고 질적인 가치가 있는 주요 통계적 정보들을 제공 및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가 50 이상(GdB50이상)으로 중증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장애인(사회법전 제9권 제2조 제2항) ▪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침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침해가 사회적 관점과 환경에 근거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6개월 이상 사회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
조사주기	- 매2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Home/_inhalt.html

○ Die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

조사개요	- 독일 인구의 건강상황과 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정보 제공 - 국민보건의 전제조건, 건강 상황, 건강행동과 건강의협요소, 건강문제와 질병, 보건 관리, 보건 및 건강지출, 비용 그리고 국민보건재정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Statistische Bundesamt: DESTATIS) - 로베르트 코흐연구소(Robert Koch-Institu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Statistische Bundesamt(DESTATIS)의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과 동일 - 사회부조(Sozialhilfe) 중 장애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 통합지원은 장애인만을 위한 공적급여로서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 통합지원은 2018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급여자격이 확대됨
조사주기	- 온라인정보시스템: 수시 업그레이드 - 출판물(중점보고서, 논문, 간행물 등): 정기(매달) 또는 비정기
정보출처	- https://www.gbe-bund.de/gbe/

○ Statische Veröffentlichungen der Kulturministerkonferenz

조사개요	- 독일 일반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교육문화부장관협의회(Der Ständige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어 "Kultusministerkonferenz")
장애판별 기준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가 있는 학생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Sonderpädagogischer Förderbedarf)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란 개별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학습을 위한 지원(촉진)을 의미 ▪ 특수교육적 지원은 크게 '학습', '정서 및 사회적 발달', '언어', '지적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정서', '사각', '학습, 언어,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지원 요구', '복합적 지원(또는 분류 어려움)과 같은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촉진학교(예전의 특수학교)의 유형이 됨 -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통합교육비용 및 교육배치 비율 ▪ '장애학생비용'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의미 ▪ '특수학교재학비용'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 ▪ '일반학교재학비용'이란 전체 일반학생 수 대비 일반학교에 통합하여 자원받는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비율을 의미 ▪ '통합비용'이란 전체 특수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학생 수 중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을 의미 ▪ '특수교육적 지원내용'이란 특수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의 교육적 지원 내용을 의미
조사주기	- 매년 (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Schulen) - 2년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적 지원 Sonderpädagogische Förderung in allgemeinen Schulen ohne Förderschulen)
정보출처	- https://www.kmk.org/dokumentation-statistik/statistik/schulstatistik.html

○ BIH Jahresbericht-Hilfen für schwerbehinderte Menschen im Beruf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 - 중증장애인과 사업주에 대한 급여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 (Hauptfu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uersorgestellten (BIH) e.V.)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 ▪ 여기에서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5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 ▪ 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심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고용에서 최대 세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조사주기	- 매년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ih.de/integrationsaemter/medien-und-publikationen/publikationen/jahresberichte/



○ ZB Info-Behinderung und Beruf

조사개요	-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현황과 다양한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합청(Integrationsamt)과 중앙부조사무소(Hauptfuersorgestelle)의 연방노동연합체(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Integrationsämter und Hauptfürsorgestellen (BIH) e.V.)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고용 관련 지출 - 연방통합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의미 - 동 지표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급여, 통합프로젝트 지원,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제도적 지원, 기타급여를 포함함. ① 고용주에 대한 급여: 근로 및 훈련자리 조성, 근로 및 훈련장소의 장애에 적합한 시설,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 직업훈련 수당과 장려금,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 ② 노동시장 프로그램 지원 ③ 중증장애인에 대한 급여: 공학적 근로지원, 근로현장으로의 이동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에 적합한 주거획득 및 유지, 직업적 지식·기능의 유지 확장을 위한 방안참여 지원, 특별한 생활상황 지원, 근로보조인 비용지원, 지원고용 ④ 통합전문가들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심리 상담을 위한 담당자들 급여 ⑤ 제도적 지원 ⑥ 기타 급여 ※ '기업 편입관리 도입을 위한 장려금'은 근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불능상황(병, 출산으로 인한)을 극복하고 고용 당사자들에게 근로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경영관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 '현저한 부담에 있어서의 급여'는 직업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별, 경제적 비용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로 이때 명백하게 발생하는 초과비용을 지원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급여임 ※ '통합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전환기적 지원으로 시설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준비생 등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고용을 위한 지원을 의미하며 직업연수 및 직업중재 등이 속함 ※ 연방통합청 - 중증장애인의 권리, 특히 노동생활 편입을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으로 주마다 조직화된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유사한 기관 주된 기능으로는 크게 중증장애인과 고용주에 대한 급여 실행. - 중증장애인의 해고보호, 고용조정금(고용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등을 포함하며, 통합청 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은 기업들의 고용조정금을 통하여 운영됨
조사주기	- 매년 3~4회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ih.de/integrationsaemter/medien-und-publikationen/publikationen/zb-info/

○ Die Arbeitsmarktberichterstattung: Der Arbeitsmarkt in Deutschland—Die Arbeitsmarktsituation von schwerbehinderten Menschen

조사개요	-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시장의 현황 관찰 - 다양한 근로그룹(장애인, 노인, 여성, 외국인, 실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실업률 -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
조사주기	-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 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 - 매년 발행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Navigation/Statistik/Arbeitsmarktberichte/Personengruppen/Personengruppen-Nav.html

○ Arbeitsmarkt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Jahreszahlen)

조사개요	- 중증장애인의 노동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 제공
조사기관	-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 - 중증장애인 실업 - 고용상황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고용보험의무 사업장을 구하거나 노동에이전트에서 노동중개노력을 하거나 또는 실업자 등록을 하는 장애인(사회법전 제3권 제16조) - 노동정책 -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과 방안에 대한 분석
조사주기	- 매년 20인 이상의 고용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노동 에이전트에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해 고지(사회법전 제9권 제 80조 제2항) 과정에 따른 정보수집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DE/Navigation/Statistiken/Themen-im-Fokus/Menschen-mit-Behinderungen/Menschen-mit-Behinderungen-Nav.html

○ Bundesagentur fuer Arbeit (Statistik)-Arbeitsmarkt in Zahlen

조사개요	- 사회보장보험(의료보험, 연금보험, 돌봄보험, 실업보험) 현황 총괄
조사기관	- 연방노동기구(Bundesagentur fuer Arbeit)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장애인: 장애정도(GdB) 30~40 사이의 장애인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조정금 납부 수준 -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부담금'과 동일한 기능을 함 ※ 조정금 액수 60인 이상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중 실제 고용률에 따라서 115유로에서 290유로까지 다양하게 산정 60인 미만의 근로자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에는 연평균 고용된 의무고용인원에 따라서 산정
조사주기	- (일반적) 고용통계: 매달 - 사회보장보험대상자 현황: 매 3개월 - 고용지속기간과 노동급여 현황: 매년
정보출처	- https://statistik.arbeitsagentur.de/DE/Navigation/Statistiken/Fachstatistiken/Beschaeftigung/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Beschaeftigung-schwerbehinderter-Menschen-Nav.html



○ Eingliederungs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조사개요	- 장애인 통합지원의 수급자와 지출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중증장애인 통합지원 ▪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중증장애 아동도 포함)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편입)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임. 즉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고 또한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제공하는 급여임 ▪ 통합지원은 2020년부터 '연방참여법(Bundesteilhabegesetz)'의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하나의 독립적 형태의 급여로 분리되어 18살 이상의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급여로 변환되었으며 통계 또한 '사회법전 9권에 따른 통합지원(Eingliederungshilfe nach dem SGB IX)'이란 항목으로 독립적으로 산출됨 ▪ 장애인 통합지원의 신청 • 통합지원의 지원금액은 중증장애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확정함 ▪ 제공형태 • 장애인 통합지원은 일반적으로 현금급여의 형태로 제공되지만 개인예산제의 형태로서 현금으로 지급되기도 함
조사주기	-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2019년까지 매 2년(홀수년도)/2020년 이후 매년 - Die Gesundheitsberichterstattung des Bundes: 2020년 이후 매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Soziales/Sozialhilfe/Eingliederungshilfe_Behinderte.html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Soziales/Sozialhilfe/Tabellen/22161-eh-empf-laend-er-ilj-2021.html - https://www.gbe-bund.de/gbe/pkg_isgbe5.prc_menu_olap?p_uid=gast&p_aid=89738684&p_sprache=D&p_help=3&p_indnr=783&p_indsp=&p_ityp=H&p_fid=

○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Kinder und Jugendliche

조사개요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상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 총괄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아동 및 청소년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지원 ▪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은 '청소년부조(사회법전 제8권)'의 틀 안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의 한 형태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예: 독자성과 사회적 능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임 •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급여 중 교육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기관임 ▪ 통합지원제공형태 • 외래 지원: 외래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촉진강좌, 치료 등을 지원 • 부분병동 지원: 유치원, 부분병동 시설 또는 특수교육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유형 • 돌봄지원인 지원: 예를 들면 아동의 적절한 주간돌봄인을 위한 지원 • 주간간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 지원: 예를 들면 생활시설의 지원
조사주기	- 매년 -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Erzieherische Hilfe, Eingliederungshilfe für seelisch behinderte junge Menschen, Hilfe für junge Volljährige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SiteGlobals/Forms/Suche/Servicesuche_Formular.html?documentType=publication&templateQueryString=Eingliederungshilfe+%C3%BC+seelisch+behinderte+Kinder+und+Jugendliche

○ Grunddaten der Krankenhäuser

조사개요	- 독일의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실태, 의료인력과 비의료인력, 병상수치, 그리고 의료기관형태에 따른 의료기계 등에 관한 통계 정보 제공
조사기관	- 연방통계청, 지방통계청
장애판별 기준	-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병원형태: 병원통계를 위한 병원형태는 일반적 병원과 기타 병원으로 구분함 ■ 일반병원: 진료과에 입원병동(입원병상)을 가진 병원 ■ 기타병원: • 전적으로 정신의학적 또는 정신요법적인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신경학적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그리고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 정신의학적, 정신요법적, 신경학적, 노인성 치료 병상을 가진 병원 • 순수한 주간 또는 야간병원
조사주기	- 매년
정보출처	-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Gesundheit/Krankenhaeuser/Publikationen/

○ Reha-Info

조사개요	- 독일의 재활관련 공적기관들의 연합체로서 장애인 재활급여(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재활급여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조사기관	- 각 재활담당기관
장애판별 기준	- 한 개인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큰 개연성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자로서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가 예상되는 자 - 법적 장애인(장애정도: GdB 2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법적 중증장애인(장애정도: GdB 500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주요 지표 개념 및 내용	- 장애인 급여는 사회법전 제9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의료적 재활: 장애를 극복 또는 완화하고, 장애의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급여 ■ 근로에 참여: 장애인의 생업능력을 유지, 증진, 회복시키고,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사회생활에 참여: 일상의 사회생활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에 의한 수발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 ■ 생계지원 및 보충적 급여: 재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급여 - 급여기관으로는 법정의료보험담당기관(연방보건부 소속), 연방노동기구, 법정사고보험담당기관, 법정연금보험담당기관, 전쟁회생자원호와 전쟁회생자복지, 사회부조기관(연방노동사회부), 아동·청소년 조력담당기관 (연방가족·고령자·여성·청년부 소속), 통합청(연방노동사회부 소속)으로 구분
조사주기	- 일년에 6회 온라인 발행
정보출처	- https://www.bar-frankfurt.de/service/reha-info/



4) 프랑스

○ AGEFIPH (2024), 「Le tableau de bord, Emploi et chômage des personnes handicapées, France entière」

조사개요	- AGEFIPH, 「장애인의 고용과 실업」 - 프랑스 장애인의 고용과 실업에 대한 주요 통계 총괄 - 장애인 민간 부문에서의 경제활동 진입을 돕고 유지를 도모함
조사기관	-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장애판별 기준	- 프랑스 구직센터에 장애인 근로자로 등록된 자 - 프랑스 장애인근로자인정자격을 받거나 이와 상응하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고용률 ▪ 근로 가능 장애인 의무 고용(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 고용의무자격(OETH)을 획득한 장애인근로를 고용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구직률 ▪ 구직자 (les demandeurs d'emploi) : 프랑스 구직센터 (Pole emploi)에 등록된 대상을 일컫는 용어로 다음의 다섯 카테고리 나뉘며 실업자를 지칭할 때의 구직자 용어 사용은 A,B,C 카테고리만을 일컫음 - A: 완전 실업 상태 - B: 짧은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하) - C: 시간제 고용 상태 (월 78시간 이상) - D: 실습, 직업훈련,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 상태 - E: 고용된 상태
조사주기	- 2020년을 조사 시점으로 2021년 4월 발간
정보출처	- http://www.agefiph.fr/

○ CNSA(2023), 「Les chiffres clés de l'aide à l'autonomie」

조사개요	- CNSA(2023), 「자립에 대한 지원 통계」 - 장애인 및 노인의 민간 부문에서의 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
조사기관	- 프랑스 노인과 장애인의 자활성을 위한 전국 연대 기금 (CNSA)
장애판별 기준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프랑스의 제5대보험 '자립' ▪ 2020년 8월 7일 '사회적 빛과 자립에 대한 법' (LOI organique n° 2020-991 du 7 août 2020 relative à la dette sociale et à l'autonomie)에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자립' 분야를 제 5대 위험으로 공표함. 이로써 CNSA는 자립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기관으로 지정되었음. 현재 사회보장법전의 세부적인 규칙을 개정 중이며 2025년까지 완료 예정임. -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자출에 대한 보조금 ▪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개인자활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 자활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자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이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을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
조사주기	- 2021년 조사 시점으로 2023년 6월 발간
정보출처	- http://www.cnsa.fr/

○ DARES(2024), 「L'Obligation d'emploi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en 2020 et 2023」

조사개요	- DARES(2022),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제 현황
조사기관	- 프랑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관리기금협회(AGEFIPH), 프랑스 경제산업고용부, 노동·사회관계·가족·연대부 연구조사통계국(DARES)
주요 지표 및 내용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OETH) (1987년 7월 10일부터 실시) ▪ 20인 이상 고용된 산업 및 상업 관련(Epic) 기업체에 적용되며, 전체 고용 인원의 6%를 근로가능장애인고용의무자적(OETH)을 획득한 장애인구를 고용. ▪ 2005년 2월 11일 장애인법 개정에 의하면, 설립 당시 혹은 고용 정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3년 이내로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고용의무 인구 수 계산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인구가 전일제인 경우 전체 포함하여 계산되고, 시간제인 경우 근로 주 당으로 할당하여 계산. 12월 31일 이전에 그만 둔 경우는 제외함. 계약직이나 외부 고용인, 임시직, 기간제, 등인 경우 12개월 이내의 노동 시간을 할당하여 계산. - 고용의무사항 이행 내용 :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임시(대리)직, 전일제, 시간제, 혹은 전문화수련 과정 형태) ▪ OETH 자격을 가진 장애 인구를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호된 영역의 인가된 기업체에 계약을 하는 것 ▪ 하청업체, 납품업체, 맞춤 특수 기업(EA) 장애인 권리자율 위원회에 의해 노동시장으로 안내된 고용 근로가능 장애인구만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재가노동분배센터(CDTE) ▪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노동 담당하는 조직(ESAT). ▪ 직업훈련 인턴 장애인도 의무고용 인구수의 2%로 제한하여 고용 가능 (실습·인턴 장애인은 빈번하지 않은 까닭에 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음). - 기여금(페널티) ▪ 근로 가능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여금(페널티)을 납부해야함. ▪ 이 법은 2005년 장애인 개정법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시간당 최저임금(SMIC)의 400배를 기본으로 하여,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 최대 1500배까지 이를 수 있음.
조사주기	- 2020, 2021년 조사 시점으로 2022년 11월 발간
정보출처	-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

○ DREES(2024), 「Les établissements de sante en 2022」

조사개요	- DREES(2024), 「2022년 건강관련 시설 파노라마」 - 프랑스 정신질환 치료, 수용시설 조사 목적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전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프랑스 건강 관련 시설 연간 통계(SAE) - 프랑스 정신질환관련현황 보고서(RAPSY)
주요 지표 및 내용	- 정신건강관련 시설 ▪ 프랑스 정신질환관련시설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종일제 돌봄·치료시설, 시간제 돌봄·치료시설과 통원치료센터로 나뉨. - 종일제 돌봄, 치료시설 ① 입원치료시설 : 다루기 힘든 심각한 증상으로 격리되어 계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돌봄,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이용 ② 흡스데미치료시설 :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가정에 맡겨져 돌봄을 받는 경우로 중 장기적으로 다른 돌봄치료와 함께 이용 가능 ③ 사회복귀 재적응치료시설 : 심각한 증상으로의 입원치료 후 자치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재적응 하기 위하여 필요한 돌봄 치료 연장의 경우 이용 ④ 거주시설 : 병원을 벗어난 주거돌봄치료시설. 제한된 기간 내, 계속적으로 돌봄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 사회적 재진입을 목적으로 함 ⑤ 재가입원시설(HAD) : 환자의 가정과 공동거주시설도 포함. 제한된 기간에 머무는 것을 원칙으로 재진단, 기간갱신 가능. 재가치료 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 등)들의 협력하에 방문치료가 이루어짐. ⑥ 긴급시설센터 :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각한 증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내내 운영. 단기간 강화된 돌봄 제공



	■ 시간제 돌봄, 치료시설 ① 주간병원 : 주간 특정한 시간에 개인별로 강화되어 복합적인 돌봄치료 제공 ② 야간병원 : 야간 돌봄치료. 주간 동안 어느 정도의 자치능력이 있지만 밤과 주말에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③ 시간제 치료센터 : 주간병원 수준의 강화된 돌봄이 아닌, 사회적 재적응과 자치적인 삶을 재경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약화된 돌봄제공 ④ 치료재활시설 : 사회 혹은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재활을 목적, 수공품, 예술품, 스포츠활동 등을 통한 작업요법 사용 ■ 정신질환관련 미동의 입원 조치 정의 ① 자동(의무)입원(HO) : L'hospitalisation d'office, 정신적 질환이 사회질서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황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는 (사실 종사 의사가 아닌) 의사 진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적용됨(도지사 명령) ② 제3자 요청 입원(HDT) : L'hospitalisation a la demande d'un tiers, 최근 15일 이내의 두 명의 의사 진단서 (입원 필요성 동의 및 정황 설명)를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 일원 중 한 명 또는 관련인의 신청 (단, 사실 종사 중인 요양사는 제외)으로 적용됨. 환자 부모가 의사인 경우 해당 되지 않음 ③ 비동의 입원(HSC) : L'hospitalisation sans consentement,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사설의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즉시 작성되는 진단서를 바탕으로 의사 진단서가 받아들여지면 사실 장은 도청, 지역 정신과 입원 위원회에 관련 서류들을 전송한다. 만일 환자가 입원을 유지할 시, 첫 입원 15일이 만료되기 3일 전에 "15일" 입원 진단서를 작성하며 이 진단서로 1개월의 입원이 유지될 수 있음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매 월 갱신신청을 해야함 ④ 일반 정신질환시설 전일 입원 입소 간수(H) : Nombre d'entrees en hospitalisation complete en psychiatrie generale,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6세 이상의 성인 전일 입원 입소
조사주기	- 2022년 조사 시점으로 2024년 5월 발간
정보출처	- http://www.drees.sante.gouv.fr/

○ DREES(2024), 「Minima sociaux et prestations sociales. Ménages aux revenus modestes et redistribution」

조사개요	- DREES, 2024, 「사회기초수당조사」 - 프랑스 사회기초수당 수혜자, 재정지출 조사 목적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건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장애판별 기준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장애인복지 지출 ■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사회가족복지법 245조 3항에 의하면 1. 인적도움 2. 기술·전문적 도움 3. 집안개조·자동차개조·교통수단 보조수당 4. 특수·예외수당 5. 안내·보호견으로 총 5가지 유형의 장애보상수당으로 분류됨 ① 인적도움: 일상생활(화장실, 옷 입기, 식사하기, 이동 등)하는 데에 활동보조인(가족부양자도 가능)의 도움 ② 기술·전문적 도움: 필요한 장애용구 구입 및 렌트 ③ 집안·자동차 개조: 장애인이 생활 및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맞춤 개조, 교통수단 보조수당: 활동보조인과 동반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 또는 50km 이상 거리의 장소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장애인 맞춤 교통수단 이용 ④ 특수·예외수당: PCH에 속한 유형(인적도움, 기술전문도움, 집안 및 자동차 개조, 교통수단, 안내보호견) 외의 장애 관련한 다른 필요한 수당(예: 의료용 침대 수리비용 등) ⑤ 안내·보호견: 자율성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과 본인이 안내견을 키울 수 있는 경우에 (미리 훈련된)안내·보호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개인자율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이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APA)을 받지 않을 시 계속해서 PCH를 수급받을 수 있음

	▪ 돌봄지원 유형에 따른 지출 • 재가서비스 : 장애인 본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ACTP, PCH 및 APA에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칭함 • 위탁서비스 : 위탁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의 가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장·가족수당 기여금 징수 연합(Urssaf)에 신고하여 허가된 (혈연관계가 아닌)위탁가정에서 행해지는 유료 돌봄서비스
조사주기	- 2021~2023년 조사 시점으로 2024년 10월 발간
정보출처	-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publications-communique-de-presse/panoramas-de-la-drees/241022_Minima_Sociaux_2024

○ DREES(2024), 「l'aide sociale aux personnes agees ou handicapees」

조사개요	- DREES(202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수당」 - 사회적 수당을 받는 노인 및 장애인의 특성을 조사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전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주요 지표 및 내용	-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수당 지역별 현황 - 동 인구의 소득수준 - 거주지 및 거주 환경 - 거주시설
조사주기	- 2022년 조사 시점으로 2024년 10월 발간
정보출처	- https://drees.solidarites-sante.gouv.fr/publications-communique-de-presse-documents-de-reference/panoramas-de-la-drees/241009_Panorama_aide-sociale

○ DREES(2024), 「Panorama de la DREES social. Le handicap en chiffres」

조사개요	- DREES(2024), 「통계로 보는 장애」 - 기존에 발행된 장애인관련 통계자료들을 종합하여 한 눈에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정리 - 모든 연령 및 다양한 상황의 장애인구통계를 담고 있는데 DREES에서 사실 장애인관련 통계를 처음으로 다룸
조사기관	- 프랑스 노동고용보전부 연구조사평가통계국(DREES)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 프랑스 가족수당기금(CNAF) - 프랑스 사회보험기금(CNAV) - 프랑스 연대자립기금(CNSA)
주요 지표 및 내용	- 장애아동 및 학령기 장애인구 특성 및 현황 - 일반가정 거주 성인 장애인구 특성 및 현황 - 거주시설 및 서비스 이용 장애인구 특성 및 현황 - 장애인 근로자 특성 및 현황 - 장애수당 수급자 특성 및 현황
조사주기	- 이용가능한 통계자료에서 가장 최신 날짜의 자료를 담고 있으며 대부분 2019년~2021년 통계임.
정보출처	- http://www.drees.sante.gouv.fr/



○ Gouvernement(2025), 「2024 Rapport d'évaluation des politiques de securite sociale- Autonomie」

조사개요	- Gouvernement(2024), 「사회보장정책평가보고서」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
조사기관	- 사회보장정책국 (Direction de la securite sociale)
장애판별 기준	- 행정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아 장애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프랑스의 제5대보험 '자립' ▪ 2020년 8월 7일 '사회적 빛과 자립에 대한 법' (LOI organique n° 2020-991 du 7 août 2020 relative à la dette sociale et à l'autonomie)에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자립' 분야를 제 5대 위험으로 공표함. 이로써 CNSA는 자립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기관으로 지정되었음. 현재 사회보장법전의 세부적인 규칙을 개정 중이며 2025년까지 완료 예정임. - 제3자보상수당(ACTP)과 장애보상수당(PCH)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보조금 ▪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와 유사함 - 개인자율수당(APA) ▪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이며 정해진 기준에서 1-4급(1급: 자율성 제한 수준이 높음)에 해당하는 자로 혼자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 수단 지출에 대한 보조금 ▪ 3가지 수당은 각각 중복될 수 없으며, 60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APA)이 적용되지만 60세 이전에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은 경우에 한해 60세 이후 장기요양보험(APA)을 원치 않을 시 계속해서 장애보상수당(PCH)을 수급 받을 수 있음 - 프랑스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국연대기금(CNSA) ▪ 2004년 6월 30일 법에 의거하여 2005년 5월에 창설되었으며 주요 미션은 다음과 같음 ▪ 자립성 상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 및 건강보험 예산 관리 및 지출: 노인 및 장애인 개인 자립 수당, MDPH, 의료사회 기관 및 재가지원서비스 교육 재정 ▪ 관련 전문가 및 지역장애인센터(MDPH) 기관에 정보 전달 및 회의 주최 ▪ 노인 및 장애인 활동지원 연구 재정 지원 ▪ 22억 유로 공공예산 관리: MDPH 자원 및 MDPH 업무 경영에 사용됨 ▪ 다양한 기관(각종 협회, 사용자 연맹단체 및 행정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재정 지원
조사주기	- 2024년 조사 시점으로 2025년 5월 발간
정보출처	- https://www.securite-sociale.fr/la-secu-en-detail/gestion-financement-et-performance/repss

○ INSEE(2024), 「Les revenus, les niveaux de vie et la pauvreté」

조사개요	- INSEE(2024), 「삶, 소득수준」 - 프랑스 전체 2022년도 소득 수준 조사 목적 - 통계자료수집의 쉽지 않은 내부적 상황으로 인하여 2020년 자료는 종이 발행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통계자료만을 공개함
조사기관	- 프랑스 경제 통계 연구소(INSEE)
관련 지표 및 내용	- 장애유형별 장애인구 ▪ 넓은 의미의 장애인: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 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 ▪ 좁은 의미의 장애인: 장애를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인구. 본래 행정 의미의 장애인으로 편의상 좁은 의미로 재명명함 - 전체인구 및 다양한 상황에 속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 수준을 알아봄 ▪ 빈곤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프랑스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혹은 60% 이하(경제적 상황이나 기준에 따라)를 빈곤층으로 보고 있음. - 성인장애수당(AAH) 신청 건수 및 수급 인정 건수 ▪ 장애인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다음 기준에 부합해야함 ▪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자, 20세 이상 공식적인 은퇴 연령까지(60- 62세), 소득기준(아래 도표 참고), 장애 정도가 최소 80%의 불능상태 혹은 50-79%의 불능상태로 장애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제한이 있는 자
조사주기	- 2022년 조사시점으로 2024년 7월 발간
정보출처	-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8216285

5) 일본

○ 생활하기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전국재택장애아·장애인 등 실태조사) 결과의 개요 - 令和4年 生活のしづらさなどに関する調査(全国在宅障害児・者等実態調査) 結果の概要

조사개요	- 장애인 사책의 추진을 위한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재택 장애 아동과 등 (난치병 등 환자)와 지금까지의 법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여 생활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보전복지부 기획과		
장애판별 기준	- 전국 약 2,400 센서스 조사구 1에 거주하는 재택 장애 아동과 장애인등 (장애인 수첩 소지자) 2 의사로부터 난치병 진단 된 자, 장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활하고 괴로움이 있는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조사표 배포 수 27,713 명, 조사표 회수 수 14,631 명 (회수율 52.8 %), 유효 회답 수 14,079 명이였다. 1 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 또는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2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으로부터 "안정 등을 사용해도 보이지 않는다" "소리와 목소리가 들리지 않다" "건거나 계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기억하는 것과 집중하는 것이 곤란하다" 등의 답변이 있는 자		
	'재택장애인 수첩소지자 (추정치)는 428.7 만명, 요육수첩소지자 (추정치)는 96.2 만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소지자 (추정치)는 84.1 만명으로 모두 지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증가 - 장애인 수첩 소지자 등의 추계		
	총	87.7만명	2022년 87.7만명
	障害者手帳所持者 장애인 수첩소지자	61만명	2022년 479.2만명
	身体障害者手帳所持者신체장애인 수첩소지자	428.7만명	2022년 386.3만명
	療育手帳所持者요육수첩 소지자	96.2만명	2022년 62.2만명
	精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所持者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소지자	84.1만명	2022년 56.8만명
	障害者手帳非所持者で、自立支援給付等を受けている者 장애인수첩 비소지자중 자립지원혜택을 받은자	33.8만명	2022년 32.0만명
	-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장애인 수첩 소지자중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65세 미만은 32.1 %, 65 세 이상은 19.8 %임		
조사시기	- 5년마다 실시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list/seikatsu_chousa_r04.html		

○ 특별지원교육자료 - 特別支援教育資料 (2022년도)

조사개요	- 조사의 목적 - 특별 지원 교육의 실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클루시브 교육 시스템 을 향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장애를 가진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발달 지연은 아니지만 발달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학생의 실태를 밝히고, 향후 사책의 본연의 자세 나 교육의 본연의 자세 검토의 기초 자료로 함		
조사기관	- 문부과학성 초·중등국 특수교육과		
주요 지표 및 내용	- 특별지원학교 수, 학교 설치 기준 학급 수 재적 유아, 아동 학생 수 및 교직원 수 - 국·공·사립 합계 - - 특별지원학교 지원 장애종별 학교 수, 설치 학급 기준 학급 수 및 재적 유아 아동 학생 수·국·공·사립 합계 - - 특별지원학급 수, 특별지원학급 재적 아동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및 특별 지원 학급 설치 학교 수 - 국·공·사립 - - 통급에 의한 지도를 받고 있는 아동 학생 수 담당 교원 수 및 통급 지도 설치 학교 수 - 공립 - -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아동 학생 수 - 특별지원학교 (학교 설치 기준) 장애 종별 중복 장애 학급 재적 비율 추이 - 국·공·사립 계 -		
조사주기	- 매년 5월1일		
정보출처	- http://www.mext.go.jp/a_menu/shotou/tokubetu/material/1406456.htm		



○ 환자조사 - 患者調査

조사개요	- 이 조사는 병원 및 진료소 (이하 "의료 시설"이라한다)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입원·내원시의 상황과 환자 이름 등의 실태를 밝히고, 아울러 지역별 환자 수를 추정함으로써 의료 행정의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일본 후생 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추정 환자 수: 조사당일, 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에서 진료 한 환자의 추정 수임 - 추정 퇴원 환자 수: 조사 대상 기간 중 (9월 1일 ~ 30일)에 병원, 일반 병원을 퇴원 한 환자의 추정 수임 - 퇴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 조사 대상 기간 중 (9월 1일 ~ 30 일)에 퇴원 한 환자의 입원 일수의 평균임 - 진료율: 추정 환자 수를 인구 10 만 대로 나타낸 숫자임 ▪ 진료율(인구 10 만 대) = 추정 환자 수 / 추계 인구 × 100,000 - 총 환자 수 (병상별 추계): 조사 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조사 일에는 의료 시설에서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함)의 수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추정 한 것임 ▪ 총 환자 수 = 입원 환자 수 + 초진 외래 환자 수 + (기존 외래 환자 수 × 평균 진료 간격 × 조정 계수 (6/7)) - 병상의 종류 ▪ 정신 병상: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을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감염 병상: "감염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 114호)에 규정하는 일류 감염, 2 류 감염 (결핵을 제외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및 지정 감염 및 새로운 감염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결핵 병상: 결핵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요양 병상: 병원의 병상 (정신 병상 감염 병상, 결핵 병상을 제외함) 또는 일반 병원의 병상 중 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말함 ▪ 일반 병상: 정신 병상 감염 병상, 결핵 병상, 요양 병상 이외의 병상을 말함
조사주기	- 3년마다 실시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list/10-20-kekka_gaiyou.html

○ 의료시설 (동태) 조사·병원보고의 개괄 - 医療施設（動態）調査・病院報告の概況

조사개요	- 이 조사는 전국의 의료 시설 (의료법에 규정 된 병원·진료소)의 분포 및 정비 실태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 시설의 진료 기능을 파악하고 의료 행정의 기초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정책총괄관
주요 지표 및 내용	I 의료 시설 조사 - 시설 수: 시설의 종류별로 본 시설 수, 개설자별로 본 시설 수, 병상의 규모별로 본 시설 수, 진료 과목별로 본 시설 수 - 병상 수: 병상의 종류별로 본 병상 수, 개설자별로 본 병상 수, 도도부현별로 본 인구 10만대의 병원 병상 수 II 병원보고 ▪ 환자 수: 1일 평균 입원·신 입원·퇴원 환자 수, 병원의 1일 평균 외래 환자 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 - 병상 이용률 - 평균 입원 일수: 병상의 종류별로 본 평균 입원 일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평균 입원 일수 - 병원 종사자 수: 병원의 직종별로 본 종사자 수, 병원의 직종별로 본 100 병상 당 상근 환산 종사자 수, 병원의 도도부현별로 본 인구 10만대 상근 환산 의사 수
조사주기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saiken/hw/iryosd/21/

○ 장애인백서 - 障害者白書

조사개요	- 장애인 백서는 장애인 기본법 (1970 년 법률 제 84 호) 제 13 조에 따라 1994 년부터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장애인을 위해 강구한 시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임
조사기관	- 일본 내각부
	- 신체 장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기타의 심신 기능의 장애가있어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기에 현저하게 곤란한 자
주요 지표 및 내용	- 제 1 장 : 장애인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 새로운 장애인 기본 계획 (제 4 차)의 책정 - - 제 2 장 :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반 조성 - 제 3 장 : 사회 참여 향환 자립 기반 조성 - 제 4 장 : 일상생활의 기반 만들기 - 제 5 장 : 살기 좋은 환경의 기반 조성 - 제 6 장 : 국제 활동
정보출처	- https://www8.cao.go.jp/shougai/whitepaper/r07hakusho/zenbun/index-pdf.html

○ 장애인고용상태 - 障害者雇用状況

조사개요	- 현재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고용 상황에 대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 등에 보고를 요청하여 집계 한 것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민간 기업> (법정 고용률 2.3 %) - 고용 장애인 수, 실 고용률 모두 증가 ▪ 고용 장애인 수는 677,461.5명, 실 고용률 2.41% ▪ 법정 고용률 달성 기업의 비율은 46.0% <공공 기관> (동 2.8 %,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7 %)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높음 ▪ 국가 : 고용 장애인 수 10,428.0명, 실 고용률 3.07 % ▪ 도도부현 : 고용 장애인 수 11,030.5 명, 실 고용률 3.05 % ▪ 시정촌 : 고용 장애인 수 37,433.5명, 실 고용률 2.75 % ▪ 교육위원회 : 고용 장애인 수 17,719 명, 실 고용률 2.43 % <독립 행정법인 등> (2.8 %) ▪ 고용 장애인 수 및 실제 고용 비율 모두 전년에 비해 높음 ▪ 고용 장애인 수 13,419 명, 실 고용률 2.85 %
조사주기	- 매년 6 월 1 일에 실시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187661.html

○ 장애인의 취업소개 상태 등 - 障害者の職業紹介状況等

조사개요	- 장애인의 취업 상황을 정리 한 것
조사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2024년 신규 구직 신청 건수는 268,107건으로 전년 대비 7.5 %의 성장률을 기록, 취업 건수는 115,609건으로 전년 대비 4.4%의 증가를 기록함 - 장애유형별 취직 건수는 신체장애인 22,704 건, 지적장애인 22,449 건, 정신장애인 65,518 건, 기타장애인 4,038 건으로 전체 115,609 건으로 전년대비 4.4 % 증가함 -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헬로우 워크에 신고가 있던 장애인의 해고자 수는 9,312 명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 (2023 년도는 2,407 명)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208340.html



○ 사회복지시설 등 조사 - 社会福祉施設等調査

조사개요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 재소자, 종사자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회 복지 행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기관	- 후생노동성
주요 지표 및 내용	- 시설 수·정원 ▪ 시설의 종류별 시설 수를 보면, "보육 등"은 27,137 시설로 전년에 비해 872 시설, 3.3 % 증가.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이외)"은 13,525 시설로 전년에 비해 955 시설, 7.6 % 증가. 시설의 종류별로 정원을 보면, "보육 등"은 2,645,050 명으로 전년에 비해 87,917 명, 3.4 % 증가.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이외)"은 518,507 명으로 전년에 비해 35,715 명, 7.4 % 증가 - 경영 주체 별 시설 수 ▪ 시설의 종류별로 경영 주체별 시설 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기타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제외한 각 유형에서 "사회 복지 법인"의 비율이 가장 많아지고 있음. 또한 "유료 양로원 (서비스 고령자 용 주택 제외)"는 비영리법인 (회사)가 82.6 %로 가장 많아짐 - 사업소 수 ▪ 사업의 유형으로 사업소 수를 보면, "주택 개호 사업"이 23,074 사업소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131 사업소 0.6 % 증가함. 다음으로 많은 것은 "중도 방문 개호 사업"이 20,952 사업소이며, 전년에 비해 98업소 0.5 % 감소함. 또한 전년 증가율을 보면, "방과후 등 데이서비스 사업"이 20.4 %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아동 발달 지원 사업"이 20.0 %임 - 경영 주체 별 사업소 수 ▪ 사업 유형별로 경영 주체 별 사업소 수의 구성 비율을 보면, 단기 입소 사업에서는 "사회 복지 법인"이 74.8 %로 가장 많으며, 주택 개호 사업, 중증 방문 개호 사업, 동행 원호 사업에서는 "영리 법인 (회사)"가 가장 많고, 각각 68.1 %, 69.2 %, 70.4 %임
조사주기	-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toukei/saikin/hw/fukushi/17/index.html

○ 공공교통이동 등 원활화 실적보고 - 公共交通移動等円滑化実績報告

조사개요	-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 23 조에 따라 공공교통기관 등은 국토교통장관에게 여객시설 및 차량 등의 배리어프리화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등으로부터 제출 된 이동 등 원활화 실적 등 보고서의 집계 결과임
조사기관	- 일본 국토교통성 교통수비자행정/공공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주요 지표 및 내용	- 대중 교통의 배리어 프리화의 진행 상황 - 여객 시설의 배리어 프리화의 추이 - 차량 등의 배리어 프리화의 추이
조사주기	- 매년 연도말
정보출처	- https://www.mlit.go.jp/sogoseisaku/barrierfree/sosei_barrierfree_mn_000003.html

2025 장애통계연보

발 행 일 : 2025년 9월

발 행 인 : 이경혜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주)행복드림여성장애인가기업

ISSN 3022-0645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